

522.31

농산물 유통개혁대책수립 참고자료집

1998. 5

본 자료집은 농산물 유통개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무자들이 작성한 안으로서, 우리부의 의견과 다를 수 있으므로 자료활용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농림부 자료실 |
| 등록번호: 6864 |
| 등록일: 2001년 9월 13일 |
| 가증: |

농 립 부
농산물유통개혁대책단

일 러 두 기

1. 본 자료는 농산물 유통개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총 5개 개혁분야(산지개선, 직거래, 도매시장 제도개선, 물류개선 및 전자상거래)로 나누고, 추진해야 할 40개 주요 세부과제를 정하여 관련기관 실무자들의 안을 수록한 것임.
2. 각 과제는 현황, 문제점, 외국사례, 개선방안 등의 순서로 작성하였고, 과제별 특성을 감안 필요한 항목은 첨가했으며, 필요한 경우 「참고자료」로 덧붙였음.
3. 본 자료를 기초로 '98. 5. 8일 현재 「유통개혁안」을 마련중에 있으며, 유통개혁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각 과제에 대해 모든 기관으로부터 제출한 것을 수록하였음.

본 자료는 농산물유통개혁대책으로 결정된 내용이 아니며
추가 의견이 있으면 농림부 유통정책과(504 - 9411) 또는
상설작업반(504 - 9420)으로 제출요망.

< 목 차 >

| | |
|---------------------------------|-----|
| I. 직거래 및 소비자 유통개선 | 3 |
| 1. 직거래 제도화 | 3 |
| 2. 물류센터 건설추진 및 운영활성화 | 3 |
| 3.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활성화 | 3 |
| 4. 등급판정사제도 도입 및 유통마진절감 방안 | 3 |
| II. 도매시장 제도개선 | 71 |
| 1. 거래제도 개선 및 관리운영 일원화 | 71 |
| 2. 도매시장개설 및 유통주체의 다양화 | 71 |
| 3. 도매시장 부조리 근절 및 활성화 | 72 |
| 4. 도매시장 고비용구조 타파 | 72 |
| 5. 도매시장 지도, 감독 및 평가강화 | 72 |
| III. 산지유통개선 | 251 |
| 1. 생산자 조직화 | 251 |
| 2. 산지유통시설 활성화 방안 | 251 |
| 3. 산지 유통제도개선 | 251 |
| IV. 물류체계 개선 | 379 |
| 1. 규격농산물 출하체계구축 | 379 |
| 2. 농산물 운송효율화 | 379 |
| 3. 농산물 콜드체인시스템 구축 | 379 |
| 4. 전자 상거래 구축 | 379 |

| | |
|-----------------------|-----|
| V. 가격안정대책 | 531 |
| 1. 채소류 수급안정대책 | 531 |
| 2. 농안기금제도 개선 | 531 |
| 3. 농산물 물가조사제도개선 | 531 |
| 4. 농업관측 강화방안 | 531 |
| 5. 농산물가격안정제도 개발 | 531 |

< 부 록 > 597

| | |
|--------------------------|-----|
| 1. 농산물유통개혁대책 | 597 |
| 2. 농산물유통사업의 평가와 대책 | 597 |
| 3. 농산물유통개혁에 대한 제안 | 597 |
| 4. 농산물유통시설 현황도 | 597 |

I. 직거래 및 소비지 유통개선

1. 직거래 제도화

- 1-1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방안
- 1-2 생산자단체의 소비지 직판기능 강화

2. 물류센터 건설추진 및 운영활성화

- 2-1 물류센터 건설촉진방안
- 2-2 물류센터 수집 및 분산능력 제고방안
- 2-3 물류센터 예약수의거래 정착방안

3.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활성화

- 3-1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활성화

4. 등급판정사제도 도입 및 유통마진절감 방안

- 4-1 등급판정사제도 도입
- 4-2 소매단계의 유통마진절감방안(한국유통정책연구원)

1-1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가. 추진상황

- IMF 경제위기로 어려운 때에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고, 도매시장, 포장센터 등 유통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개선효과가 더딘 점을 감안 직거래를 통해 보완
- 차량순회판매, 정기장터, 금융점포내 직판코너, 기획판매전 등을 통해 4.23일 현재 총 7,199회, 889억원 매출 기록(물류센터 제외)
- 직거래를 통해 생산자는 도매시장에 비해 10 - 20% 수준의 높은 값을 받고, 소비자는 시중가격보다 20 - 30% 싼값으로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남

| | <u>직거래(A)</u> | <u>도매시장경유(B)</u> | <u>(B-A)÷B</u> |
|--------------|---------------|------------------|----------------|
| ○ 농가수취가격(사과) | 1,124원/kg | 900 | △24.9% |
| ○ 소비자 가격 | 1,150 | 2,500 | 38.0% |

나. 문제점

- 초기 사업 추진에 있어 체계적인 지원이 미비했고, 일부사업의 경우 외형적 확대에 치우친 경향이 있음
- 각 생산자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가 부족하여 체계화·제도화 미흡
 -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하여 장기간 지속 가능성에 한계

2. 유형별 추진방향

< 기본 방향 >

- 체계적이고 제도화된 시장화로 경제적·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 소비자에게 농·축·수·임산물을 한 장소에서 일괄 구매 기회 제공
- 생산자·소비자단체, 중앙 및 지방정부간 원활한 협조체제 구축

< 단계별 추진 >

< 제1단계('98.2~3)> : 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추진

- 각 생산자단체가 다양한 사업을 산발적으로 추진
- 경제성에 대한 분석없이 추진되어 효율성 저하

< 제2단계('98.4~5)> : 체계적인 추진으로 제도화 방안 모색

- 경제성·효율성을 분석한 후 제도화 방안 모색
- 생산자단체간 협조체제 구축으로 공동판매 촉진

< 제3단계('98.6~)> : 규모화·제도화로 직거래 시장의 본격 활성화

- 장기 지속 가능한 사업 개발 및 정착
- 법적·제도적 지원체제 확립

→ 직거래 목표 : '95년 5%에서 2001년 12%까지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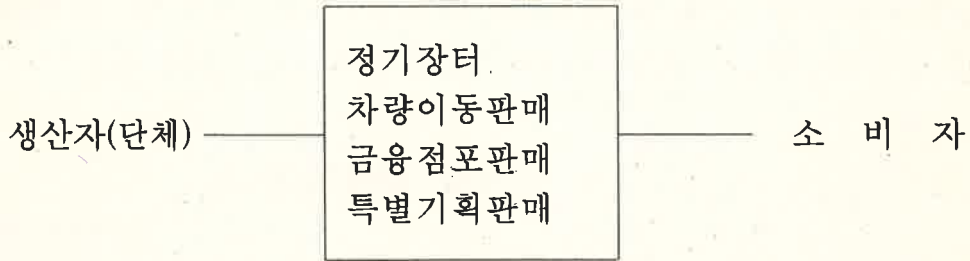
직거래 유형별 시장형태

<공급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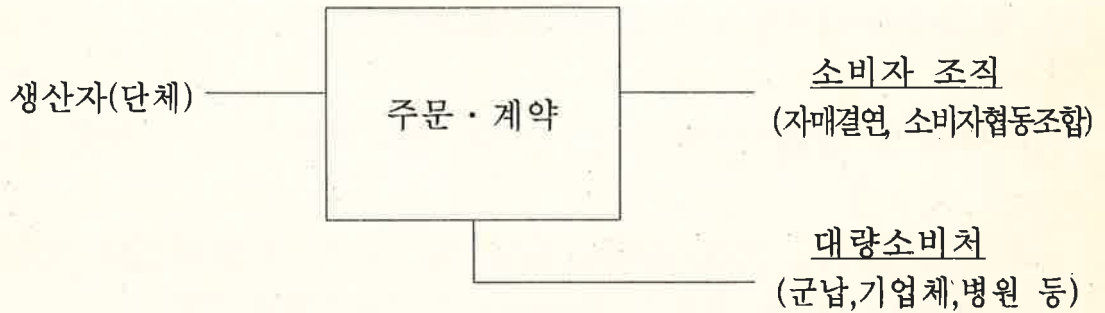
<시장형태>

<수요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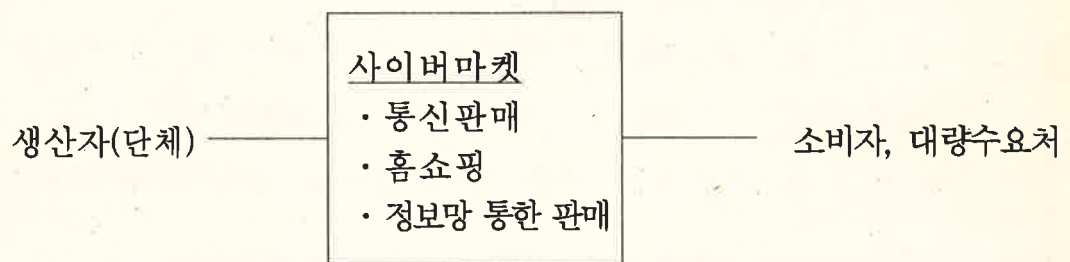
제1유형 : 직거래장터 개설



제2유형 : 주문·계약에 의한 대량판매



제3유형 : 사이버마켓



가. 직거래장터 개설 운영(제1유형)

(1) 규모화된 정기 직거래 장터 확충

□ 현황

- 생산자단체의 금융점포 주변 주차장 또는 점포앞 노변에서 10~30평 규모의 주1회 요일장터로 운영(화요·금요장터 등)

< 규모별 장터현황 >

(단위:개소수)

| 30평이하 | 50평이하 | 50평이상 | 100평이상 | 계 |
|------------|-------|-------|--------|-----|
| 650(80.7%) | 83 | 43 | 29 | 805 |

※ 장소는 대부분 농협 자체장소(87.5%)

□ 사업성 평가(사례분석 : 농협 전북지역본부, 100평 정기장터)

- 농협에게는 연간 66백만원의 손실액이 발생했으나 기존 인력(인건비 63백만원)을 활용을 감안하면 손익분기점에 이름
- 생산자와 소비자에게는 도매시장 경유시보다 상당 수준의 이익 확보

◇ 농협 : 순손실액 65,640천원

○ 비 용 : 73,000천원(6인 인건비 63백만원, 판매비용 10)

○ 매출이익 : 7,360 " (매출이익 736,100천원의 1%)

※ 비용중 인건비는 기존 인력 활용을 감안시 손익분기점에 이름

◇ 생산자이익 52백만원 : 매출액 736백만원 × 7%

(상장수수료 5%+하역비 2%)

◇ 소비자이익 184백만원 : 매출액 736백만원 × 25%(중간상인 이윤)

□ 고객반응 및 문제점

- 이용고객의 97%가 싱싱하고 저렴한 농산물을 인근에서 구입할 수 있어 가게에 도움이 된다는 반응(198명 대상 설문조사)
- 도로점유 등 소규모 산발적인 장터개설로 제도화에 미흡하고, 인근 영세상인(특히 정육점)들의 반발사례 다수 발생

□ 발전방향 : 규모화, 정례화 및 농수축임산물의 공동판매

- 현재 실시되고 있는 대부분의 『정기장터』 형은 규모가 작고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제도화에 한계
⇒ 소비지에 규모화된 장터를 확보하고, 농·수·축·임산물을 공동 판매하는 정례적인 장터개설 방향으로 전환

< 규모화된 직거래 장터 운용모델 >

- 장터규모 : 100평이상의 규모화된 장터 확보
- 취급물량 : 농·수·축·임산물을 동시 판매(One-Stop-Shopping)
- 출하주 : 생산자 직출하 자율판매를 원칙
초기에는 생산자단체가 대행
 - 생산자단체는 최소한 운송료, 비용만 징수
- 개최주기 : 지역 여건에 따라 주당 1~2회이상 개최
- 시설확보 : 농·수·축·임협 공동 주관하에 가설 판매대를 설치,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로 간이화장실 등 편의시설 확보

※ 현재 실시되고 있는 소규모 정기 직거래장터는 직거래 실시 초기 단계로서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추진

- 직거래장터 부지 확보
 - 공원, 학교, 공설운동장,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소유 공터, 「차없는 거리 지역」중 후보지를 농협 중심으로 일제 조사 (조사기간 : 3.20~4.4)

< 직거래장터 후보지 조사 결과 >

- 시도별 후보지 수 : 총 125개소
 - 서울 7, 경기 20, 충남 16, 경북 27, 전남 6 등
- 규모별 개소수

(단위:평,개소)

| 합 계 | 100이상~ 200미만 | 200~500 | 500~1,000 | 1,000이상 |
|-----|-----------------|---------|-----------|---------|
| 125 | 58 | 31 | 20 | 16 |

- ※ 농협에서 지자체에 협조하였으나 지방선거 관계로 비협조 (현재 10개소 운영중)
 - 인구 밀집지역 위주로 우선 개설을 착수하여 조기에 활성화
 - 생산자단체, 농림부가 적극 협의에 나서고 필요할 경우 『경제 대책조정회의』에 상정
- 우선적으로 선정되었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부지를 제공할 경우 각종 부대행사(예 : 농악 등 문화행사, 품물거리 조성) 등을 지원하여 지방자치단체간 경쟁분위기 조성
- 장터에 다양한 품목이 생산자 직출하로, 지역별로 균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생산자단체간 추진 협의회 운영 강화

(2) 차량이동 판매

□ 현황

- 수도권 : 농협(5대), 축협(1대), 수협(2대)이 8대의 특장차를 확보하여 1,000세대이상의 아파트단지 등에 2개팀이 공동판매
- 수도권 이외 지역 : 산지 지역조합 중심으로 차량 100여대가 순회 수집한 농산물을 도시지역에 주 1~2회 방문 판매

□ 사업성 평가(사례분석 : 수도권 직판팀)

- 농·수·축·임협이 수도권 직판 2개팀을 20일간 38개 아파트단지를 순회 판매한 결과 총 40억원 판매 실적
- 생산자와 소비자 각각 도매시장 경유시 보다 매출액의 10~20% 수준 이익

□ 고객반응 및 문제점

- 서민아파트지역을 중심으로 주민 호응도는 좋은 편, 인근 소매업소의 판매가격 인하에 직접적으로 기여
- 일부 아파트단지의 경우 부녀회의 비협조 사례 발생

□ 발전방향 : 호응도가 높은 지역 중심으로 정례판매

- 서민층 아파트지역의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고 상인들의 반발이 적은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정기적 순회판매('98.4부터)
- 반상회보, 지역정보지, 지역유선방송 등을 통해 적극 홍보
- 순회판매용 특장차는 고가임을 감안 추가구입은 자제
- 현재 보유대수 : 농협 34대(공급완료), 축협 1대

(3) 금융점포내 판매

□ 현황

- 금융점포내 판매코너를 설치하여 은행 고객에 판매

< 농협 : 규모별 점포수 >

(단위:개소)

| 5평이하 | 5~10평 | 10~20평 | 20~50평 | 50평이상 | 계 |
|------------|-------|--------|--------|-------|-----|
| 432(68.6%) | 135 | 41 | 14 | 8 | 630 |

※ 축협은 '98.2~3월 중 3개소 설치

- '97년중 1,765억원 매출실적을 올렸으며, 품목별 판매실적을 보면 곡류가 1,412억원으로 전체의 81.0% 차지

□ 사업성 평가

- 평당 연간 매출액은 56백만원으로 농협의 전문판매장(17백만원) 보다 수익성이 높음
 - 판매직원은 청원경찰 또는 파트타임 인력(월60~100만원)을 활용함으로써 경제성 확보

□ 고객반응 및 문제점

- 금융고객에게 농산물의 구입 편의를 제공하여 반응이 호의적임

<농협 신도불이 창구 이용 사유>

(단위:%)

| 구분 | 믿을 수 있어 | 값이 저렴 | 편리하므로 | 기타 |
|-----|---------|-------|-------|-----|
| 구성비 | 68.1 | 7.3 | 21.9 | 2.7 |

* '97. 3. 25, 10개지점 400명 대상 조사

- 그러나 5평이하의 매장이 대부분(68.6%)으로 농·수·축·임산물을 동시 판매하기 어려움이 있음

□ 발전방향 : 판매품목의 다양화 및 생산자 단체간 공동이용

- 농협 금융점포내 직판코너 : ('97) 609개소→('98) 678
 - '98.3월까지 : 냉쇼케이스 133대 설치, 정육용(27), 청과용(106)
 - '98.6까지 냉쇼케이스 40개소 추가 설치 후 확대여부 검토
 - ※ 10평이상일 경우 축산물과 수산물 동시 취급을 원칙으로 하되 매장여건에 따라 자율적 시행
- 축협 금융점포내 직판코너 : ('98.3) 3개소→('98.12) 50개소이상
 - 축협의 단독매장 확대시 농·수산물 공동입점 추진

- 판매장 운영 책임자에게 판매수익금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는 성과급 제도 도입

(4) 특별 기획판매

□ 현황

-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다양한 목적하에 비교적 큰 규모의 직거래 행사를 개최
 - 농협중앙회의 경우 매월 1회 정월대보름맞이, 봄나물 판매행사등

<농·수·축·임협 공동 기획판매 행사>

- 일시 : '98. 4. 9 ~ 4. 12(4일간)
- 장소 : 농협중앙회 대강당
- 주최 : 농·수·축·임협 중앙회
- 판매실적 : 413백만원
- 특징 : 실업근로자 돕기 이벤트행사 개최, 방송 통한 적극적 홍보 실시

□ 성과 및 문제점

-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대규모 장터를 확보하여 다양한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소비자의 높은 호응을 받고 있음
- 다양한 주제에 규모도 커서 행사준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홍보효과는 크나 경제성은 약함

□ 발전방향

- 일시 과잉생산된 품목의 소비촉진, 주요 명절이나 절기에 수요가 급증하는 품목등에 추진

나. 주문·계약에 의한 대량판매(제2유형)

□ 추진현황

- 생산자단체가 소비자단체(소비자협동조합)나 대량 실수요처(기업체, 병원 등)와 자매결연을 맺거나 납품계약을 맺어 판매
 - '97년말 현재 실적 : 약 311억원(자매결연 711건 포함)

□ 문제점

- 자매결연 추진시 부녀회 등의 과도한 기금(5~10%)요구 사례 있음
- 대량 실수요처는 업체와 상인간의 관계가 오래 지속되고 있어 신규진입이 쉽지 않음
- 기업체에서는 일팔납품 원하나 요구품목 중 농·축·수산물의 비중이 낮음(10%)

□ 발전방향 : 자매결연 확대 추진

- 아파트 부녀회 등과의 자매결연 추진
 - ('98) 추진목표 : 1,200건, 1,000억원
 - 추진기간 : '98. 5월말까지 산지농협별 1개소 이상씩 추진
- 기업체와 농도불이 자매결연 추진('98계획 1,400억원)
 - 30대 대기업 노조와 자매결연 추진에 의한 직거래 실시
 - 생산자단체노조와 한국노총간 협조로 산하노조에 협조문서 시달

다. 사이버마켓 개설(제3유형)

□ 현황

- 가상공간에서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접거래로 유통효율 극대화
 - 농림부, 동아일보 마이다스 쇼핑몰, 삼보컴퓨터, 롯데 등에서 일부 농산물에 대해서 실시 중
- 농협 물류센타에서는 EDI 시스템을 금년 1월부터 시범 실시 중
- 시설채소 주산단지(3품목, 9개시·군)를 연결, 생산에서 출하까지 포함하는 농업경영종합정보시스템 시범운영 중

□ 문제점

- 농산물의 특성상 상품의 품질확인 필요성, 짧은 유통기한 등으로 사이버마켓에서의 거래에 애로
- 농촌지역의 정보화 기반 미성숙, 컴퓨터 활용도가 낮음
- 통명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표준규격화율이 낮음

□ 추진계획

- 민간(농협, 통신회사 등) 자율추진을 원칙으로 하되 정부는 통신인프라 구축과 농산물 표준코드화 등 제도적 기반 정비
 - 물류센타의 EDI 시스템 정착과 확산 유도
 - 농업경영인에 대한 컴퓨터 교육 활성화
- 초기에는 생산자조직이 개별 생산자의 정보를 취합하여 제공하고, 정보체계가 안정되면 개별생산자가 정보 공급
 - 시범주산지 및 조합을 우선실시하고 확대 도모
 - 국립농산물검사소의 모니터링 능력제고로 상품의 신뢰성 향상

3. 직거래 정착을 위한 지원체계 확립

가. 관련법령 제정·보완

소비자협동조합법 제정

- 생산자조직과 연계하여 소비자유통을 분담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소비자조직의 육성을 위한 입법

식육이동판매 허용을 위한 제도 마련

- 현재 식육판매에 관해서는 식품위생법시행규칙에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며, 직거래 장터에서의 이동판매는 예외규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시 이동판매에 관한 규정을 명시('98.6.14부터 시행)

나.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

직거래 담당자를 지정하여 원활한 협조체제 유지

직거래장터 부지확보 협조

- 공원, 공설운동장, 체비지와 공터 등 장터로 사용할 수 있는 부지를 생산자 단체가 모색하고 이를 직거래장터로 무상대여하는 방안
- 장터 부속시설(주차장, 화장실 등) 설치지원 및 규제완화

자체 직거래 사업 추진 활성화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직거래 사업을 원활히 추진토록 요청

홍보 및 민원해소

- 관내방송, 반상회보, 소식지 등을 통한 홍보와 부녀회에 원활한 협조 요청
- 소비자 불편사항 및 건의사항 접수하여 농림부 및 생산자단체에 통보하여 제도개선에 기여

다. 홍보체제 구축

농·축·수산물 가격정보의 수집·분산체제 강화

- 각 방송사 주부대상 아침프로그램 등에 물가정보 전파
- 농·축·수협 및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해 수집한 가격정보를 공중정보통신망을 통해 분산

농·축·수협 직판장 중심으로 가격표시 시범사업 추진

- 시장별·매장별 일일 도·소매가격을 매장에 부착하고, 반상회보, 지역정보지에 게재

소비자단체가 시장별·매장별 소비자가격을 조사, 홍보토록 지원

직거래 사업 개선방안(요약)

< 현행 >

- 정기(주말) 장터
 - 소규모(10~30평)
 - 도로 무단 점유 등
- 차량이동판매
 - 장터확보 어려움
 - 주변상인 반발
- 특별기획판매
 - 비용과 인력과다 소요
 - 비정기적 개최



< 개선 >

<규모화된 정기직거래 장터>

- 100평 이상 규모
- 농·축·수·임산물 동시판매
- 생산인 직출하
 - 초기에는 생산자단체 대행
- 주1~2회 정례적 개최
- 가설 판매대, 간이화장실, 청소실시 등

* 기존 사업유형은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실시

- 은행점포내 판매
 - 곡류 중심의 단순판매



- 은행점포내 판매품목 다양화
 - 여건에 따라 농·축·수·임산물 공동판매

- 자매결연·대량
실수요업체 납품
 - 개인연고를 기반으로 한 제한적 거래



- 산지·소비지 조직간 거래 제도화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정

소비자 만족을 지행하는 유통 혁신

□ 우리 농산 식품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 전시회 강화

- 우리 농산 식품의 우수성 및 수입 농산물과의 차별화, 농산물유통관련 지원시책 등 홍보를 통해 소비 촉진
- TV 등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지원
 - 공익광고형태로 홍보물을 제작하여 주부 시청시간대 집중 홍보
 - 문자방송, CA-TV 등 농산물 홍보 전문 채널 확보
 - 일간지, 지하철 등 다중이 이용하는 매체를 통한 홍보
- 농수산물식품 전시홍보회 개최
 - 우리 농수산물 우수제품의 비교 전시 등 식품박람회 확대
 - 대도시 기초 자치단체와 연계한 우리 맛 가공식품 전시홍보회 개최
- 소비자 단체의 교육프로그램 시간을 활용하여 시식회 및 판촉 지원
 - 주부교실 중앙회, 새마을운동본부의 주부 교육
 - 대한 영양사협회, 전국 요리사협회의 영양사 및 조리사 교육
 - 시·군 여성 회관의 요리교육, 규수교육

□ 농산식품 품질 향상 및 소비자 여론 수렴을 위한 주부모니터제 운영

- 농산식품 소비관련 여론 모니터, 설문조사응답, 정기적 간담회 등을 통한 여론 수렴
 - 대형소매점의 주요 농산물 소매가격조사 비교
- 지역별 계층별 인구비례에 따라 모니터 운영
 - 전국적으로 1,500 ~ 2,000명
- 여론수렴결과 농산물 유통정책 수립 및 마케팅 지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생산자에게 피드백시켜 소비자 needs에 부응한 상품 생산 유도

□ 농산물 유통 종합 민원센터 운영

- 농산물 유통과 관련한 소비자의 불만사항 상담 및 소비자 고발 접수
 - 원산지표시위반, 부패·속박이 등 부정 농수산물, 유통기한 경과, 허위표시 농수산물식품 등
- 부정·부패 농산물의 교환 및 환불제 운영

- 농수산가공식품의 리콜제 도입
- 농림부, 시·도,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 유통공사, 생산자단체등에 유통관련 소비자 불만사항 접수 창고 개설 운영
- 유통공사에 농산물 유통상담실 시범 설치 운영중

□ 학교 급식과 연계한 농수산물 소비 촉진

- 서구화 되어가는 학생들에게 학교급식을 통해 우리 농수산 식품의 “입맛” 들이기로 소비 촉진
- 과일 생산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특별식단을 개발하여 각급 학교 급식 식단으로 제공
- <예> 미국 농무성 농산물유통국의 국립학교 Lunch Program
 - 육류, 가금, 생선, 과일, 채소등의 식품을 구매하여 학교급식 지원
- 교육부와 협조하여 급식 식단에 일정 비율이상의 우리 농산물 메뉴 의무화 추진

□ 농산물 유통에 관한 특별 교재를 발간 각급학교 제공

- 초·중·고등학교별 수준에 맞는 특별교재 제작
 - 농산물유통의 특성, 현황과 문제점,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 등
- 각급학교별 일정시간을 배정하여 학교 실정에 맞게 특별교육
 - 초등학교 : 연간 2~3시간
 - 중·고등학교 : 3~5시간
- 농산물 유통 전담 강사 육성을 통해 각급학교 순회교육 병행
 - 농업공무원교육원, 유통공사 유통교육원, 생산자 단체 교육원 등 교수요원중 일정수의 전담교수 육성

□ 개방화 소비지향적 시장구조변화에 대응한 우리농산물의 소비촉진

- 바람직한 한국형 식생활 패턴 개발·보급
 - 국산 농산물(식재료)을 이용한 식단 개발 및 소비자 교육을 통한 보급 확산
- 농업경영체에 대한 소비지 마케팅 전략 전파

- 소비자의 구매패턴 변화, 식품시장 변화 등을 수집분석하여 세미나 등을 통해 농업경영체에 전파
- 산지와 소비지 유통업체간의 연계지원 강화
 - 출하처 정보 및 소비지 주요 바이어 현황 D/B구축으로 거래관련 정보 상시 제공 체제 확립
 - 농업경영체와 소비지 대형 유통업체가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전산 거래시장(Cyber Agri Market)개설 운영

□ 우리농산물 소비형 외식산업 지원

- 점증하는 외식수요에 대응 우리실정에 맞는 메뉴개발 및 지원방법 강구
- 대형 외식업체의 산지직거래 촉진, 품질인증 등 지원방안 추진
- 서울 등 대도시 중심으로 전통음식관 설치 지원
 - 외국 관광객의 왕래가 많은 주요 문화재 소재지 및 광역시에 우선 설치하고 점차 각 도별로 설치 지원

□ 우리 농산물의 안전성 관리 강화

- 농산물의 안전성 기준 및 조사체계 확립
 - 2000년까지 농약 및 동물약품 안전사용 기준을 보완하고 세균수, 제세포수 등 원유위생등급을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
 - 안전성 조사 전담기관 운영 및 분석장비와 전문 분석요원 확충
 - 민간 연구소, 대학 부설연구소 등을 안전성 조사기관으로 지정·운영
- 축산물의 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HACCP System) 도입 추진
 - 사육단계에서부터 도축, 가공, 유통, 판매단계별로 위해요소 발굴제거

1-2 생산자 단체의 소비지 직판기능 강화

1. 현 황

- 농협은 대형 할인매장인 하나로클럽, 소형수퍼마켓 형태의 하나로마트 및 신도블이 창구를 통해 운용
 - 하나로클럽 8개소, 하나로마트 572개소, 신도블이창구 830개소
- 축협은 축산물 시범판매장, 지역축협 판매장, 직매장 및 목우촌 가맹점 등으로 직판기능 수행
 - 축산물 시범판매장 34개소, 지역축협 판매장 475개소, 직매장 103개소, 목우촌 가맹점 50개소
- 농·축협 중앙회 또는 산지 회원조합 단독 또는 공동으로 차량 순회 판매를 실시중
 - 총 1,358회 35억원 ('98. 2. 17 ~ 3. 31)

2. 문 제 점

- 산지·도매 단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매 단계의 인프라 구축이 미흡하고 운영이 부실한 곳도 있음
 - 특히, 축산물의 경우 영세한 식육점 난립, 가격담합 등으로 산지 가격이 소비지 가격에 즉각 반영되지 않음
- 대형 할인 매장 중심의 변화된 소비 형태에 대응한 직판 체제가 필요하나,
 - 대형판매장 건립에는 많은 자금이 소요되어 생산자단체 자체 자금만으로 확충이 어렵고,
 - 기존 직판시설도 생산자단체간 협조체제가 미흡하여 공동입점이 안되어 One-Stop Shopping을 원하는 소비자의 기호를 반영하지 못하고, 시설의 활용도가 낮음
- One-Stop Shopping을 위한 공산품 취급의 한계, 전문경영인 체제 미흡, 부적절한 입지선정 등에 따른 적자 운용

- 직판기능 확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미흡
 - 현행 건축법상 일반 주거지역내 대형매장(약1,000평규모) 설치가 불가능하고
 - 축산물 차량순회 판매에 대한 식품위생법상 명문 규정 미비

3. 직판기능 강화 방안

- One-Stop-Shopping이 가능한 대형 할인매장 형태의 직판장을 설치하되, 전문매장이 필요한 축산물의 경우 직판장 신설
 - 하나로클럽 중심으로 신설하되, 중·소도시의 경우 하나로마트 형태로 설치 : ('98계획) 하나로클럽 5개소, 하나로마트 12개소
 - 축산물 직판기능 강화에 필요한 권역별 집·배송센터 설치 : ('97) 1개소 → ('98) 5개소
 - 축산물 직판장의 확대설치, 일반 정육점의 축협 가맹점화
 - 중양회 시범 판매장 : ('97) 34개소 → ('98) 40개소
 - 목우촌 가맹점 : ('97) 50개소 → ('98) 80개소
 - 축산물 직매장 : ('97) 103개소 → ('98) 155개소

- 생산자단체간 판매장을 공동이용한 One-Stop-Shopping 체계구축

< 공동판매사업 기본 추진방향 >

- 상호 실시가능한 부분부터 추진, 점차확대
- 공동사업 수행을 통한 제반 사업비용 감축 도모
 - 원가성 제고로 생산자와 소비자 동시 보호

< 공동판매장 운영 방안 >

- ◇ 제 1유형 : 기존 판매장에 타조합 생산품 판매
 - 각 협동조합 기존 판매장에 타조합 생산품 우선 취급 또는 타 조합품 판매코너 설치
 - 운영방식은 매취판매 방식
- ◇ 제 2유형 : 금융점포내 직거래코너에 타조합 생산품 판매
 - 일정규모이상 금융점포 직거래코너에 타조합 생산품 취급
 - 물품은 타조합에서 직접 공급(수수료지급 조건)
 - 축협점포에 타조합 생산품 취급 계획 : ('98) 6개소
 - * 농협 신토불이 창구내에 축산물코너 설치 완료 : 2개소 (농협 송파, 방배지점)

◇ 제 3유형 : 공동운영 판매장 신설

- 협동조합이 공동판매장을 신설하여 농수축임산물을 일괄 취급하는 One-Stop-Shopping체제 구축으로 소비자 구매편의 도모

- 공동판매장 운영 계획 : 4개소

· 기존시설 활용 용도변경 또는 확장 설치

· 대상지 : 서울휘경창고, 가락동공판장, 부산사상창고
서울성내동판매장(확장)

* 현 추진 상황

- 일산 소재 서광백화점에 공동판매장 신설 추진('98. 6월예정)

- 서울 소재 체비지 2개소에 임시 공동판매장 설치('98. 9월하순)

○ 직판시설 운용 내실화

- 산지 농협에서 서울등 소비지에 신설한 직판장은 전문성, 상품구색, 임대비용, 정보부족 등으로 부실화 되고있어 개설중지 또는 정리

- 민간 유통업체와의 경쟁을 위한 전문 경영인 체제 도입

○ 제도 개선

- 차량순회 판매 제도화·체계화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및 축산물 가공처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 개발제한 구역내 생산자 단체, 소비자 단체의 직판장 설립허용

: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개정

* 현재 공동화물터미널, 체육시설, 농수산물도매시장·미곡종합처리장 등 공용시설은 허용하고 있음

- 일반주거지역내 대형매장 설치를 현재 1,000m²에서 3,300m²로 확대

: 건축법 시행령

4. 예산 요구내용

< 농 협 >

(단위 : 백만원)

| 사업내용 | '98 | | | | '99 | | | | 2000 | | | |
|-------------------------------------------------------|------|--------|--------|-------|------|--------|--------|--------|------|--------|--------|--------|
| | 사업량 | 총사업비 | 융자 | 자담 | 사업량 | 총사업비 | 융자 | 자담 | 사업량 | 총사업비 | 융자 | 자담 |
| 1. 대형건물 임차, 직거래할인매장 설치(7대도시, 1,000평규모) <임차보증, 시설> | 2개소 | 14,000 | 11,200 | 2,800 | 5개소 | 35,000 | 28,000 | 7,000 | 5개소 | 35,000 | 28,000 | 7,000 |
| 2. 대형 직거래 할인매장 신축 (지자체가 부지 제공, 농협이 건축·운영) <건축, 시설> | 3개소 | 19,500 | 15,600 | 3,900 | 5개소 | 32,500 | 26,000 | 6,500 | 5개소 | 32,500 | 26,000 | 6,500 |
| 3. 농산물 판매 가맹점 확대 (한들마트) <시설비> | 50개소 | 5,000 | 5,000 | - | 20개소 | 2,000 | 2,000 | - | 20개소 | 2,000 | 2,000 | - |
| 계 | - | 38,500 | 31,800 | 6,700 | - | 69,500 | 56,000 | 13,500 | - | 69,500 | 56,000 | 13,500 |

※ 개소당 사업비

- ◇ 대형 건물 임차, 직거래 할인매장 설치 : 70억원
 - 임차보증금 50억원, 내부시설설치비 등 20억원
 - 임차보증금은 국고보조, 내부시설비는 농협 자부담
- ◇ 대형 직거래 할인매장 신축 : 65억원
 - 건축비 50억원 (부지는 지자체가 제공), 내부시설 등 15억원
 - 건축비의 50% 보조, 건축비의 20%는 융자, 건축비의 30% 및 내부시설비는 농협 자부담
- ◇ 농산물 판매가맹점(한들마트)확대 : 1억원(내부시설비)
 - 내부시설비의 70%는 융자, 30%는 가맹점주 자부담
 - 판매장은 가맹점주 부담으로 확보

< 축 협 >

(단위 : 백만원)

| 사업내용 | '9 8 | | | | '9 9 | | | | 2 0 0 0 | | | |
|----------------------------------|------|--------|--------|-----|-------|--------|--------|-------|---------|--------|--------|-------|
| | 사업량 | 총사업비 | 읍자 | 자담 | 사업량 | 총사업비 | 읍자 | 자담 | 사업량 | 총사업비 | 읍자 | 자담 |
| 1. 권역별 집.배송 센터 설치 | 4개소 | 4,000 | 3,200 | 800 | - | - | - | - | - | - | - | - |
| 2. 축산물 직매장(식육점의 가맹점화) 확대 설치(설치비) | 52개소 | 7,750 | 7,750 | - | 103개소 | 5,150 | 5,150 | - | 103개소 | 5,150 | 5,150 | - |
| 3. 목우촌 가맹점 확대(시설비) | 30개소 | 2,250 | 2,250 | - | 20개소 | 1,500 | 1,500 | - | 20개소 | 1,500 | 1,500 | - |
| 4. 축산물 종합판매장 설치(대형매장) | - | - | - | - | 2개소 | 5,700 | 4,560 | 1,140 | 2개소 | 10,000 | 8,000 | 2,000 |
| 5. 차량이동판매를 위한 식육특장차량지원 | 9대 | 630 | 504 | 126 | 5대 | 350 | 280 | 70 | 5대 | 350 | 280 | 70 |
| 계 | - | 14,630 | 13,704 | 926 | - | 12,700 | 11,490 | 1,210 | - | 17,000 | 14,930 | 2,070 |

< 예산요구 합계액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9 8 | | | '9 9 | | | 2 0 0 0 | | |
|-----|--------|--------|-------|--------|--------|--------|---------|--------|--------|
| | 총사업비 | 읍자 | 자담 | 총사업비 | 읍자 | 자담 | 총사업비 | 읍자 | 자담 |
| 농 협 | 38,500 | 31,800 | 6,700 | 69,500 | 56,000 | 13,500 | 69,500 | 56,000 | 13,500 |
| 축 협 | 14,630 | 13,704 | 926 | 12,700 | 11,490 | 1,210 | 17,000 | 14,930 | 2,070 |
| 계 | 53,130 | 45,504 | 7,626 | 82,200 | 67,490 | 14,710 | 86,500 | 70,930 | 15,570 |

2-1 물류센터 건설촉진 방안

1. 물류센터 건설 추진상황

□ 사업내용

- 생산자단체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농림부가 사업대상자로 선정 및 예산지원(농안법 제57조의4 및 농림사업시행지침서)
 - 시설기준 : 부지20,000m²이상, 건물 10,000m² 이상
 - 필수시설 : 집·배송장, 포장·가공실, 저온저장고, 품질관리실, 출하주 대기실, 전산실, 주차시설 등
 - 부수시설 : 직판장, 고객휴게실, 금융점포 등
- 경매 또는 입찰외의 방법으로 농산물을 매매(농안법시행규칙 제32조의3 및 농수산물 물류센터 운영지침)
 - 운영·관리가 통합되어 있고, 산지에서 직구입하여 실수요자에게 판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추진실적

- '95년부터 추진하여 '98현재 전국에서 12개소가 추진 중
 - 수도권 : 양재동(농협), 창동(농협), 용인(중앙개발)
 - 광역시 : 대전(농협+대전시), 부산(수협)
 - 중부권 : 청주(농협), 천안(충남도+농협+축협), 금산(삼협)
 - 호남권 : 전주(농협), 장성(거평)
 - 영남권 : 군위(군+농협), 김해(농협)
- 특히 양재동('98.1.15), 창동('98.5.1) 물류센터가 개장되었으며, 청주(9월), 부산(10월)도 단계적 개장예정

□ 지원조건 비교

- 도매시장을 100% 세원으로 건설하지만 신유통시설인 물류센터건설에는 지원이 적고 자부담이 과도

| 물류센터 | 도매시장 | 공 판 장 |
|---------------------------------------------------|---------------------------------------------------------------|-----------------------------------------------------------|
| ○ 생산자단체·지방자치단체 - 부지구입비: 용자50% - 건축비 : 보조50% | ○ 특별시·광역시 - 국고보조30%, 지방비70% ○ 기타도시 - 국고보조50%, 지방비50% | ○ 보조 : 60% (국고40+지방비20) ○ 국고용자 : 20% ○ 자부담 : 20% |
| ○ 민간유통업자 - 건축비 : 용자60% | | |

* 물류센터 건설시 생산자단체는 사실상 부지구입비 전액 및 건축비 50%를 자부담

- 농협의 양재동과 창동투자액 및 (주)농협유통의 임대료를 보면 물류센터의 출발기반이 도매시장 보다 불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양재동(2,106억원) : 보조402, 용자52, 자담1,652
 - 창 동(952억원) : 보조342, 용자321, 자담289
 - (주)농협유통 임대료 : 91억원(부동산 공시지가의 3%)

2. 문제점

- 유통단계단축 및 유통비용절감이 가능한 직거래시설에 대한 지원기준이 불리하여 생산자단체 참여에 한계
 - 농협의 경우 '98현재 추진중인 12개소중 8개소에 참여하고 있으며, 총 투자예정액은 2,486억원(용자포함시 3,163억원)
- 특히 대규모 부지구입(1만~3만평), 집·배송시설, 저장 및 가공시설 설치 등으로 막대한 투자가 소요되지만 수익은 적은 사업인데도 민간에 대한 지원기준이 현저히 불리하여 참여를 사실상 배제
 - 장성(거평), 용인(삼성에버랜드) 등 2곳만 참여

* 민간대형유통업자들은 수도권에 농산물과 공산품을 공동취급하는 소규모 집배송장을 운영중이나, 대부분 도매시장경유 물량을 취급하는 등 유통개선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

| 구 분 | LG유통 | 신세계 | 해태유통 | 한화유통 |
|-----------|--------------------------------|------------------------|---------------------------------------------|------------------------|
| 규 모 | 대지 5,000평 건물 1,800평 | 대지 5,600평 건평 1,380평 | 대지 4,477평 건평 2,230평 | 대지 2,980평 건평 1,350평 |
| 일거래규모(청과) | 4~5천만 | 5천만 | 65백만원 | 65백만원 |
| 구 입 | 산지(50~60%) 가락(40~50%) | 산지(30%) 가락(70%) | 산지(20%) 가락(80%) | 산지(20%) 가락(80%) |
| 배 송 | 캐더링 150개 가맹점 50개 구매대행 3개 | 대형E마트 9개 | 호주업체(클리밴드) 가 슈퍼 69개, 슈퍼마트 3개 등에 배송 | 직영점 41개 |

○ (주)농협유통의 '98 임대료 총액 91억원은 '98거래예상금액 대비 1.6% 해당하며, '98. 1/4분기 일반관리비용 4,077백만원중 임대료 비중이 41.6%(1,697백만원)에 달하여 심각한 경영압박 요인으로 작용

* 도매시장의 경우 법인이 고정투자없이 거래금액의 0.5%를 사용료로 납부 : '97 가락동 6개법인 사용료 총액 약 88억원(1개법인 연평균 15억원)

3. 개선방안

□ 소비자유통시설 지원기준조정 필요

- 대형할인직판장의 발전 등 유통업 환경변화 추세에 대응하고 직거래의 제도화를 위하여는 물류센타건설 지원강화 필요
- 물류센타는 무차별 분산이 목적이 아니라 생산자와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제고시키고, 산지산업화를 촉진하며,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등 분산의 질을 제고시키는 신유통 시설로서 양재동 개장이후 수많은 상인들의 집합체인 도매시장에서 볼 수 없었던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유통단계 축소(3~4단계), 간단명료한 유통경로 및 유통과정상의 개입자 최소화로 산지정산가격 제고와 소비자 판매가격 인하
 - 통일된 단일의사결정 조직이 운영·관리를 통합하여 수행하므로 시장투자와 시장질서 유지가능
 - 예약수의거래에 의한 홍수출하방지 및 가격안정성 제고, 공동출하, 파렛트출하 등 시장거래방식이 산지유통개선을 자극
 - 물류이동의 기계화, 하역개선, 전산에 의한 수·발주처리(EDI), 소포장·단순가공에 의한 부가가치 창출, 쓰레기없는 청결유지
- 물류센타의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를 확산해 나가기 위하여는 능력있는 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자부담을 완화시켜주고, 운영상의 제도개선 등으로 새로운 유통시설을 꾸준히 육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
- 세제개선, 거래조건의 신축성 부여, 품목전문가 양성, 운영주체 능력 개발 등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분산 확대 가능
- ※ 물류센타내의 하나로클럽은 현대적 감각에 부합하는 소매직판장으로서 수지개선을 통한 건설비 자부담 완화, 잔품처리, 불특정다수 시민에 대한 직거래 농산물 공급, 소매마진지도 등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집·배송능력 개발의 기반으로 작용

□ 지원조건 조정(안)

< 지원의 기본원칙 >

- 추진방식이 다양할 수 있으므로 각 케이스에 알맞게 지원
- 다양한 파급효과를 전파하는 직거래 시설이므로 건설촉진을 위하여 지원조건을 대폭 인상
- 입지, 수집 및 분산능력을 엄격히 심사하여 유통개선효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사업추진

<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매수 건설시 >

- 국비와 지방비로 건설하되 우선건설이 필요한 대도시의 국비보조비율을 기타도시건설시 지원비율 및 현행도매시장 지원비율 보다 우대

| | 국비보조 | 지방비 | 비고(도매시장) |
|-----------|------|-----|---------------|
| - 특별시·광역시 | 50% | 50 | 국비 30, 지방비 70 |
| - 기타도시 | 40 | 60 | 국비 50, 지방비 50 |

* 지방비 부담액의 50%까지 농안기금 지원

- 산지수집능력과 소비지 판매망 등을 어느정도 가지고 있는 농·수·축협 등 생산자단체(농안법상의 유통자회사 포함)의 직거래 물류센터 또는 직판시설로 운영
 - 임대운영 또는 시설사용료 납부(거래금액의 1%)
- 생산자단체는 민간보다 효율성은 떨어지나 직거래추진, 물가안정 및 생산자보호에는 유리

< 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지에 건설시 >

- 지방자치단체 부지제공, 국가 주도로 건설, 생산자단체 운영
 - 건설비 : 국비보조 70%, 지방자치단체 용자 30%
- 생산자단체 주도로 수집 및 분산을 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 임대운영 또는 시설사용료 납부(거래금액의 1%)

< 생산자단체 또는 민간 건설시 >

- 총사업비 중 50% 보조, 30% 용자, 20% 자담
- 단 민간 대형유통업체의 경우 단독 또는 컨소시엄형태로 추진하되 수집 및 분산능력이 있는 경우에만 추진

< 참고자료 >

1. 농수산물 물류센터 현황

- '98현재 12개소 추진중
 - '98개장 4개소 : 양재(1월15일), 창동(5월), 청주(9월), 부산(10월)
 - 건설중 4개소 : 전주, 군위, 천안, 장성
 - 부지확보중 2개소 : 대전, 김해
 - '98신규 2개소 : 금산, 용인

(단위:억원)

| 구분 | 사업규모(평) | | 총사업비(국고) | | | '97까지 | '98예산현액 | | | 사업기간 | 추진상황('98.2) |
|----|---------|--------|----------|-------|-------|--------------|------------|------------|------------|---------|------------------|
| | 부지 | 건물 | 보조 | 융자 | 계 | | 이월 | '98 예산 | 계 | | |
| 양재 | 20,420 | 17,932 | 402 | 52 | 454 | 415 (52) | 39 | - | 39 | 95-97 | 100% |
| 창동 | 10,291 | 11,597 | 342 | 321 | 663 | 586 (321) | 29 | 48 | 77 | 95-98 | 전체공정94% |
| 청주 | 20,000 | 5,559 | 135 | 89 | 224 | 190 (89) | 11 | 23 | 34 | 95-98 | 전체공정80% |
| 부산 | 5,000 | 6,505 | 200 | - | 200 | 116 | 29 | 52 | 81 | 95-98 | 전체공정54% |
| 천안 | 39,757 | 10,000 | 210 | 85 | 295 | 115 (85) | 117 | - | 117 | 96-99 | 기초공사10% |
| 전주 | 10,000 | 6,000 | 126 | 68 | 194 | 87 (67) | 14 | 46 | 60 | 96-99 | 토목공사 중 전체공정5% |
| 군위 | 35,500 | 5,700 | 151 | 65 | 216 | 62 (32) | 50 | - | 50 | 96-99 | 토목공사 중 전체공정2% |
| 장성 | 32,160 | 7,226 | - | 182 | 182 | 60 (60) | 60 (60) | - | 60 (60) | 96-99 | 토목공사95% |
| 대전 | 13,700 | 5,000 | 95 | 82 | 177 | - | 82 (82) | - | 82 (82) | 97-2001 | '98 하반기 부지매입 |
| 김해 | 20,000 | 7,000 | 138 | 60 | 198 | - | 60 (60) | - | 60 (60) | 97-2001 | '98 하반기 부지매입 |
| 금산 | 25,000 | 7,000 | 141 | 75 | 216 | - | - | 47 (47) | 47 (47) | 98-2001 | '98신규 |
| 용인 | 10,440 | 5,843 | - | 159 | 159 | - | - | 64 (64) | 64 (64) | 98-99 | " |
| 계 | | | 1,936 | 1,238 | 3,174 | 1,631 | 491 | 280 | 771 | | |
| 보조 | | | | | | 925 | 289 | 169 | 458 | | |
| 융자 | | | | | | 706 | 202 | 111 | 313 | | |

※ ()내서는 융자

2. 도매시장과 물류센타 비교

| 구 분 | 도 매 시 장 | 물 류 센 타 |
|-------|-----------------------------------------------------------------------------------------------------------------------------------------------------------------------|-------------------------------------------------------------------------------------------------------------------------------------------------------------------------------------------------|
| 거래단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6단계 - 생산자(수집상) - 법인 - 중도매인 (물품납품업자) - 소매점 - 소비자 * 실수요자(생산자·소매점)사이에 대리인(법인·중도매인 등)이 수 없이 존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4단계 - 생산자 - 물류센타 - 소매점 (소비자) * 물류센타가 실수요자를 직접 연결 |
| 거래제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장경매원칙(무차별 반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약수의거래 - 거래처 공급량을 근거로 2~3일 전에 산지 발주 - 가격결정에 생산자와 거래처가 참여 |
| 특 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적이고 경쟁적인 매매 실현으로 수급을 반영하는 공정가격 형성 - 시장대응력이 부족한 생산자 보호 ○ 신속거래로 대량의 농수산물을 신선한 상태로 유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통단계축소 및 유통과정상의 개입자를 최소화하여 유통비용 절감 ○ 홍수출하방지·가격안정성 제고 및 산지유통 개선자극 ○ 통일된 의사결정 주체가 운영·관리를 총괄 ○ 현대적 감각에 부합하는 도·소매 병행 |
| 문 제 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시장의 경우 도·소매 기능 미분리로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음 ○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가격진폭 큼 ○ 무차별로 반입되면 팔아주기 때문에 출하자의 의식개발이 안되고 있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일 운영주체가 분산을 전담 하는데서 오는 초기 물량 분산 능력 의문시 ○ 산지 조건이 완전히 조성되지 않았음 ○ 소매에 치중하고 있음 |

3. 유통경로 조사 결과

가. 물류센터

- 유통경로 : 산지 → 양재물류센터 → 하나로클럽, 하나로마트
- 출하일자 : '98. 3. 29
- 판매일자 : '98. 3. 30
- 조사방법 : 유통경로 추적조사(농협 자체조사)

(단위:%)

| 품목 | 구분 | 농가 수취율 | 단계별 유통비용 | | | | 출하 지역 | 비고 | |
|-----|-----------|-----------|----------|----------|----------|------|----------|----------|--|
| | | | 출하 단계 | 물류 센터 | 소매 단계 | 소계 | | | |
| 채소류 | 풋고추 | 하나로클럽 | 74.2 | 10.1 | 5.2 | 10.5 | 25.8 | 영암 도포 | |
| | | 하나로마트 | 64.8 | 8.7 | 6.9 | 19.6 | 35.2 | | |
| | 무 (저장) | 하나로클럽 | 70.3 | 21.0 | 8.7 | - | 29.7 | 정읍 소성 | |
| | | 하나로마트 | 61.4 | 18.3 | 10.1 | 10.2 | 38.6 | | |
| | 백오이 | 하나로클럽 | 66.6 | 12.9 | 7.5 | 13.0 | 33.4 | 상주 | |
| 과일류 | 딸기 | 하나로클럽 | 77.8 | 7.5 | 4.8 | 9.9 | 22.2 | 부여 구룡 | |
| | | 하나로마트 | 73.7 | 6.8 | 7.0 | 12.5 | 26.3 | | |
| | 사과 | 하나로클럽 | 78.4 | 11.9 | 5.2 | 4.5 | 21.6 | 안동 길안 | |
| | | 하나로마트 | 70.6 | 10.7 | 7.2 | 11.5 | 29.4 | | |
| 평균 | | 70.8 | 12.0 | 7.0 | 11.4 | 29.2 | | | |

나. 도매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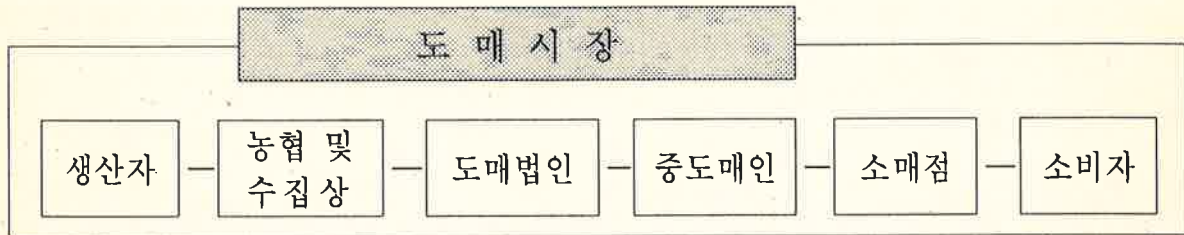
- 유통경로 : 산지 → 도매시장 → 중도매인(중간도매상) → 소매상
- 자료출처 : 「주요농산물 유통실태」(농수산물유통공사 '97.12월 발간)
- 조사시기 : '97. 7 ~ 11월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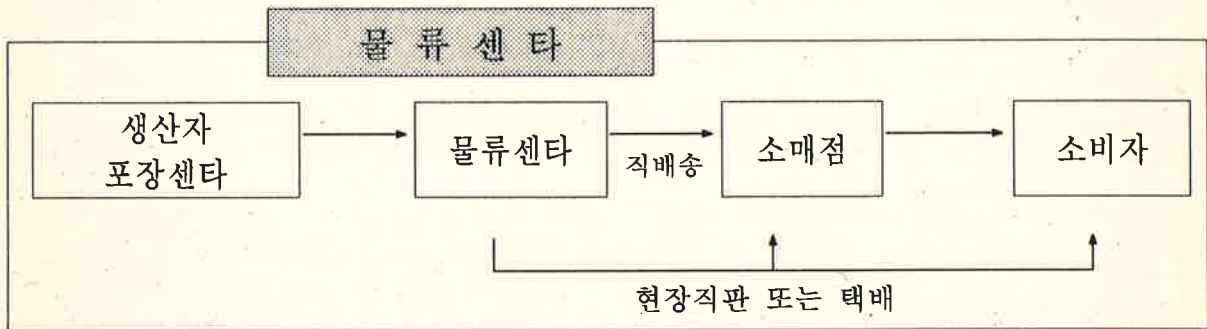
| 품 목 | 농 가 수취율 | 단계별 유통비용 | | | | | 출하지역 | 비고 | |
|-------------|-----------------|----------|----------|----------|----------|------|------|-------------|--------|
| | | 출하 단계 | 도매 시장 | 중도 매인 | 소매 단계 | 소계 | | | |
| 채 소 류 | 풋고추 (직출하) | 57.2 | 5.1 | 4.4 | 5.5 | 27.8 | 42.8 | 춘천→ 가락시장 | '97.8 |
| | 가을무 (수집상) | 30.0 | 12.0 | 3.7 | 18.6 | 35.7 | 70.0 | 고창→ 가락시장 | '97.11 |
| | 오 이 (직출하) | 53.3 | 3.2 | 3.5 | 9.0 | 31.0 | 46.7 | 여주→ 가락시장 | '97.7 |
| | 오 이 (중간도매시장) | 44.2 | 6.1 | 3.7 | 18.0 | 28.0 | 55.8 | 화천→ 가락시장 | '97.7 |
| 과 일 류 | 사 과 (직출하) | 63.8 | 5.2 | 4.3 | 6.7 | 20.0 | 36.2 | 상주→ 가락시장 | '97.11 |
| | 사 과 (수집상) | 52.5 | 16.5 | 4.3 | 6.7 | 20.0 | 47.5 | “ | '97.11 |
| 평 균 | | 50.2 | 8.0 | 4.0 | 10.7 | 27.1 | 49.8 | | |

4. 물류센터 주요 특징(양재동)

가. 산지 생산자조직과 소비지 소매점(소비자)을 직접 연결하여 현재 5~6단계인 유통단계를 3~4단계로 축소(규모화된 직거래를 제도화)



- 실수요자가 아닌 중도매인이 소매점·소비자 등 실수요자를 확보하여 물품을 공급하는 간접전달체계
 - 시장내에서 2-3단계 거친 이후에나 실수요자 구매가능



- 생산자가 직출하하고 실수요자가 직구입(실시수요자 아닌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하는 거래단계를 생략)
 - 전속출하회원('98.3) : 회원농협(362개), 영농법인(51), 작목반(76), 농업인(21)등 510개
 - 거래처('98.3) : 직영(20개), 가맹점(150), 일반유통업체(80) 등 250개
- 유통과정에서의 개입자를 최소화하여 유통비용을 절감
 - 수집상 및 중도매인 마진이 없음
 - 하역노조없음 : 파렛트 출하시 하역비 없음, 비파렛트 출하시 가락동 보다 30~50%절감된 조건으로 외부용역 처리

나. 물류센타가 거래처 요구가격, 생산자 희망가격, 경락가격 등을 종합 고려하여 합의가격(예약수의가격) 도출

- 생산자에게는 예약수의가격에서 5% 마진(상장수수료 해당) 공제후 정산
 - 보통 경락 가격보다 3~5% 높은 수준에서 예약수의가격을 결정하면 생산자 소비자 모두에게 이득
- 거래처에는 예약수의가격으로 공급(배송 요구시 배송료 별도)
- 현장에서는 일정율의 소매마진을 붙인후 직판
 - * 일반적으로 도매시장보다 생산자 정산가격이 높고 소비자 판매가격이 낮은 것으로 조사됨

다. 예약수의거래가 산지유통개선을 자극

- 거래처 공급량을 근거로 2-3일전에 출하물량을 발주하므로 홍수출하가 불가능한 구조
- 포장센타등 산지유통시설의 기능을 활성화하는데도 예약수의거래가 긍정적인 영향
- 실제 양재동 개장으로 예약수의거래가 공동출하(20%), 파렛트출하(10%), 속박이 근절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일본도 경매비율이 하락하면서 예약거래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
 - 중앙도매시장 경매비율 : ('80) 76.4% → ('96) 52.0
 - 지방도매시장 경매비율 : ('80) 81.7% → ('93) 63.4

라. 통일된 의사결정 구조가 운영·관리를 총괄

- 사장, 전무(2), 부장(12)으로 연결되는 단일의사 결정구조만 존재(양재동)
 - 시설관리 하역, 청소, 경비 등을 외부용역으로 처리
 - * 도매시장에 관리사무소, 법인, 중도매인, 물품납품업자, 하역노조, 직판상인 등 각자의 이해관계를 가진 다수의사 결정주체가 존재하는 것과 차이

마. 현대적 감각에 부합하는 도·소매 병행 형태

- 도매 집·배송센터(거래금액의 60~70% 차지)
 - 모든 농산물이 파렛트에 상치된 상태에서 이동 처리
 - 전자문서에 의한 수·발주(EDI) 등 물류를 전산화 하고, 쓰레기 등이 없어 청결유지
 - 하나로클럽 직판시설(거래금액의 30~40% 차지)
 - 외국유통업체와 경쟁가능한 현대식 대형할인직판장 형태로서 가공품, 생필품 등을 동시 취급하여 일괄쇼핑이 가능하며 24시간 영업
 - 도매에서 절약한 것을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전달(소매점을 통할 때보다 1단계 더 단축)
 - 도시내의 소매상 마진을 지도하는 기능
- * 도매시장에서도 소매를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유통업이 개방되면서 대형할인매장 형태가 번창하는 추세

2-2 물류센터 수집 및 분산능력 제고 방안

1. 현 황

- 물류센터의 수집 및 분산능력은 단일 거대도매상에 해당하는 운영주체가 전담(예 : 농협유통)
 - 다수 상인집단이 수집 및 분산을 분리 담당하는 도매시장과 차이
 - ※ 가락동 분산주체 : 중도매인 약2,000명
- 양재동 물류센터의 '98.3월 일평균 청과 거래량은 398톤으로서 가락동(4,500톤)의 7~8% 수준임
 - ※ 일 최대거래량(4.3) : 556톤
- 농협의 경우 산지농협 협력체제로 수집을 하므로 수집능력은 문제되지 않음
- 수집 및 분산능력의 우수성은 물류센터나 도매시장의 이론상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주체의 능력에 좌우되는 측면이 강함

2. 문제점

- 농협유통이 분산을 시도할 때 직면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은 것들임
 - ① 거래선 개발시의 비합리적인 상관행
 - ② 거래업체의 외상거래 선호
 - ③ 유통업체의 오너와 바이어의 분리구조
 - ④ 기존 유통경로를 이용한 무자료 거래의 이점
 - ⑤ 출하물량·시간흐름에 따른 신축성있는 판매가격 제시의 곤란
 - ⑥ 출하지역·등급·품목 등 구색맞추기의 어려움
 - ⑦ 직배송할 대형할인직판장 부족
 - ⑧ 기존에 이용하는 유통경로에 대한 선호경향
 - ⑨ 품목 및 유통전문가의 부족과 자질저하
 - ⑩ 차별화된 상품개발 미흡

- 소비지 조건의 대부분은 바람직하지 못한 유통관행으로서 그 비용이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물류센타의 한계로 보기는 어려움(예 : ①,②,③,⑧번)
- 그러나 거래조건의 경직성, 전문인력 부족, 세금구조의 불리 등 제도상의 장애요소는 이를 해결해주지 않을 경우 늦게 출발한 물류센타가 정착하는데 어려움 예상(예 : ④,⑨,⑩번)

3. 개선방안

□ 물류센타 이용 소매점에 대한 표준소득을 경감 또는 금전등록기 사용허가

- 물류센타를 이용하는 소매업자는 전산처리로 인하여 거래내역이 100% 노출되어 거래를 기피
 - 대형유통업체 등은 도매시장 상인과의 무자료 거래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세제상의 이득을 얻고 있음
 - 물류센타 이용 소매업자가 중도매인 또는 유사도매시장 거래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가맹 소매업자를 표준소득을 경감 대상에 포함시키거나 금전등록기 사용 허용
 - ※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은 자료거래 비율이 높다는 이유로 법정도매시장이 아닌 중개·매매사업자보다 50% 낮은 표준소득율을 적용 받고 있음
- 예) 채소의 경우 (일반) 4.6% → (도매시장) → 2.3%

□ 전문가 양성

- 작황·상품선별·수요처·구매동향·가격결정 등에 정통한 품목 및 유통전문가 육성과 훈련이 물류센타의 장래를 좌우
 - 양재동의 경우 정규직원 263명중 156명(59%)이 중앙회 파견직원
- 농협이 물류센타의 인력을 중앙회와 분리하여 운영하고, 민간 유통전문가 채용 등을 제도화시키는 것이 필요
- 장기적으로는 물류센타 운영조직 모델개발이 필수적

□ 거래목표량 부여

- 물류센타의 조건이나 능력에 맞게 분기별 및 연도별 거래목표 물량(청과)을 부여하여 운영주체를 분발시키는 것이 필요
- 현행처럼 거래목표량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외부거래처 개발에 소극적이면서 하나로클럽 확대로 변질될 우려
- 거래물량 증대시 경제적인 구매와 운반, 상품구색 맞추기, 신속적인 거래조건 제시 등이 동시에 가능해짐(예 : ⑤,⑥번 해결)

4. 추진계획

- 표준소득율 조정 및 금전등록기 사용
 - 국세청 소득세과와 사전협의('98. 9월이전)
 - 조정대상종목에 대한 건의안 제출('98. 11~12월중)
 - 국세청의 조정작업 및 소득표준심의위원회 심의('99.3월중)
- 농협중앙회로부터 (주)농협유통 파견직원 정리방침 및 향후 물류센타 인력운영계획 제출(협동조합 개혁위원회와 연계 추진)
- 거래목표량 부여
 - 창동 개장후 양재동과 창동을 합한 거래목표량을 (주)농협유통에 부여 예정('98.6월중)
 - '98. 3/4분기, 4/4분기, '98년도말 청과부류 거래목표량 시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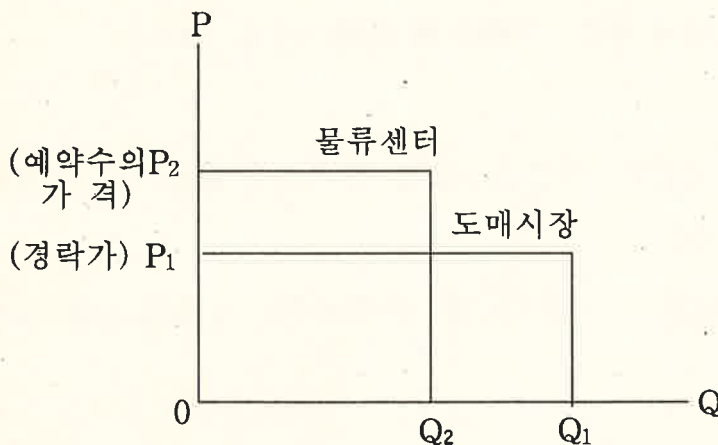
2-3 물류센터 예약수의거래 정착 방안

1. 현황

- 예약수의거래란 물류센터가 출하자와 거래처간의 협의를 거쳐 장래 일정시점에서의 가격과 물량을 합의하여 거래하므로서, 단기적으로는 출하조절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계획생산과 계획구매를 가능케 할 수 있는 거래방법임
 - 경매제로 인한 가격등락폭으로부터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
- '98년 1월 15일 개정된 양재동의 경우 제1단계 예약수의거래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기존 확보된 거래처에 대한 공급물량을 근거로 2~3일전에 산지 발주
 - 최근 주간단위의 일괄 발주체제를 시험실시중
- 현행 예약수의거래 방법만으로도 홍수출하를 방지, 가격안정성 제고 및 산지 유통개선을 자극하는 효과 있음

2. 문제점

□ 홍수출하시 경락가격과 물류센터 예약수의가격과의 관계



<도매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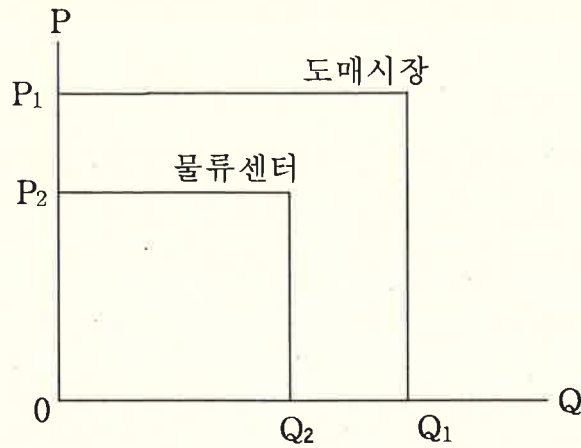
- 홍수출하(Q_1) → 가격폭락 → 경락가격(P_1)

<물류센터>

- 예약수의거래물량(Q_2) → 예약수의 가격(P_2)

⇒ 이 경우 출하는 물류센터로 구매는 도매시장으로 집중되고 결국 비중이 큰 경락가격으로 예약수의가격이 돌아감

□ 과소생산시 경락가격과 물류센터 예약수의가격과의 관계



< 도매시장 >

- 과소출하(Q1) → 가격폭등 → 경락가격(P1)

< 물류센터 >

- 예약수의거래물량(Q2) → 예약수의가격(P2)

⇒ 이 경우 구매는 물류센터로 출하는 도매시장으로 집중되고 결국 비중이 큰 경락가격으로 예약수의가격이 돌아감

□ 농산물 거래형태 변경의 필요성

○ 최근 생산과 소비에서 규모화가 진행됨에 따라 출하자와 최종수요자도 농산물거래에서 투기적인 행태를 버리고 안정적인 거래를 선호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 일본 중앙도매시장 경매비율 하락 추세 : ('80) 76.4%, ('90) 67.4%, ('93) 58.7%, ('96) 5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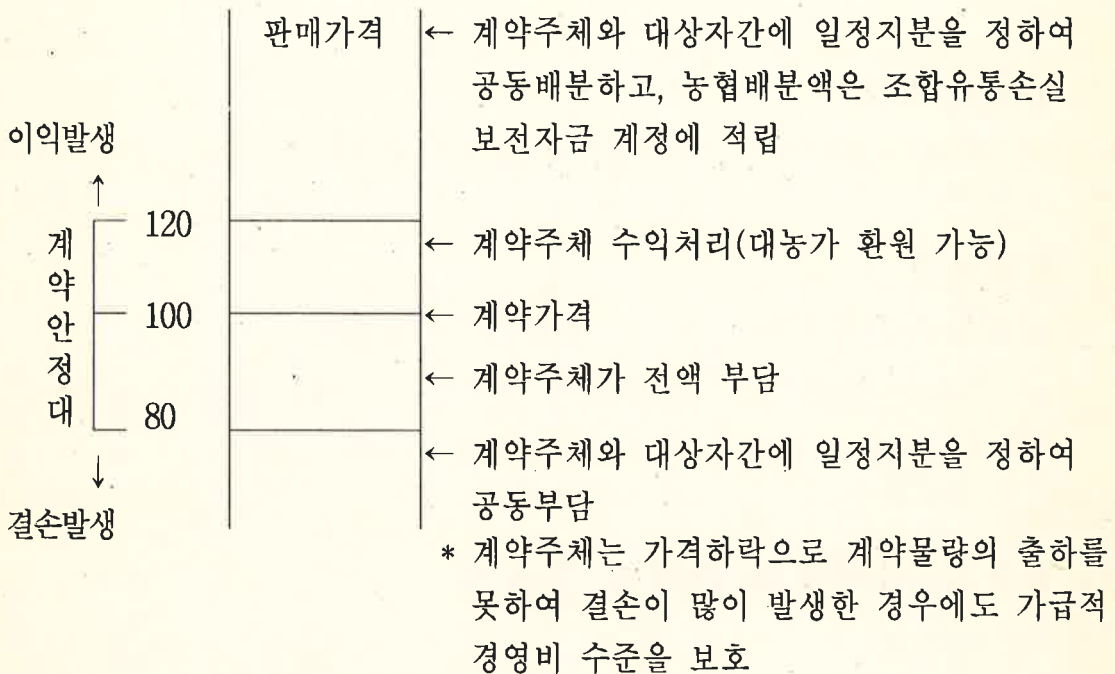
○ 예약수의거래는 가격결정에 생산자와 소비자 참여, 농산물거래에서의 합리성 증대등의 효과가 있으나 금년초 물류센터가 개장될 때까지는 사실상 거래방법으로 개발되지 못함

3. 개선방안

□ 채소가격 안정사업과 예약수의거래를 연계

< 채소가격 안정사업의 내용 >

- 산지농협(계약주체)이 재배농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계약대상자)과 계약재배를 통해 채소의 생산과 출하를 조절
 - 대상품목 : 무, 배추, 마늘, 양파, 파, 고추 등
 - 재 원 : 30,000억원(농안기금)
- 사업정산체계



- 현 제도는 산지가격만 일정수준을 보장하고 출하시의 소비지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는 없음

< 예약수의거래와의 연계 >

- 물류센타가 현재와 같이 산지농협 계약물량을 공급받을 경우 적기 공급, 출하조절, 사전물량확보 등이 잘되지 않고 물류센타의 저온 저장고 설비 등도 이용할 수 없음
- 물류센타를 계약주체에 포함시킬 경우, 물류센타·출하자·거래처의 3자 계약이 가능하여 산지계약가격 보장과 동시에 출하시 소비지가격안정까지도 기대할 수 있음

- 물류센타는 기 확보된 거래처의 공급물량을 근거로 산지에 계약 재배를 하게되므로 장기적으로는 농산물 생산과 구매에서 예측가능성과 합리성을 높일 수 있음

| 현 행 제 도 | 물류센타가 계약재배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지농협과 생산자 사이의 계약 - 구매자와의 계약이 없는 상태 ○ 계약가격과 출하시의 가격 차이를 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하시의 소비지가격 변동을 완화시켜 줄수 없어서 제도의 목적달성(가격안정)에 미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류센타·생산자·거래처의 3자 계약 형태로 발전가능 ○ 계약가격이 바로 출하시의 가격대가 되어 소비자가격 안정까지 달성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계약처 발전 등 물류센타의 노력이 필수적 |

□ 전자수주 및 발주를 위한 EDI체계 구축

- 가격·수량 등의 전자수발주가 이루어질 때 예약수의거래제도 정착 촉진
- 현재 물류센타와 거래처와의 EDI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나 이를 물류센타와 출하농가에까지 확대 필요
 - 전속 출하회원에 PC설치 및 EDI 시스템 구축

4. 추진계획

- 농림사업시행지침 개정('98.하반기) ⇒ 채소가격 안정사업 계약주체에 물류센타 포함
- EDI 체계를 전속 출하조직까지 확대('98 하반기)

3-1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활성화

1. 현 황

- 생활협동조합중앙회가 민법에 의한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활동
 - 중앙회에 등록된 조합별 조합원수 : 78개 조합, 70천명
 - 생활협동조합중앙회 소속이 아닌 조합은 임의 단체로 활동
 - 조합별 조합원수 : 67개 조합, 76천명
 - 조합의 주된 사업은 구매사업, 이용사업이며 일부 의료사업도 실시
 - 구매사업 : 유기농산물 및 기타 생필품 구매사업
 - 이용사업 : 보육, 양로시설 및 직장내 후생시설 운영
- ⇒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어 활동은 미진

< 외국의 예 >

- 일본은 1948년 소비자협동조합법을 제정, 현재 조합수 646개, 조합원수 1,925만명이며 구매, 이용, 공제사업 실시
-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서구 대부분의 국가가 1900년대 초에 소비자협동조합법을 제정하여 공동구매사업 등을 영위

2. 생활협동조합(생협) 활동부진 이유

□ 생협의 설립·활동에 대한 제도적인 뒷받침 미흡

- 법인 설립허가 취득에 애로
 - 민법상의 사단법인 허가취득을 위해서는 사업의 비영리 추구하고 주무관청의 허가 필요
- 생협중앙회 회원조합의 경우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혼재
 - 개인사업자의 경우 공적 사업을 개인(이사장) 명의로 진행하여 생활협동조합의 원칙에 어긋나며 세제부담이 큼

□ 생협의 공신력 결여

- 생협의 설립·활동에 대한 법적근거 불비로 조합원 확보, 출자금 조성, 자금조달에 애로
→ 생활협동조합의 설립 및 사업활동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정필요

3. 생활협동조합법 제정 추진경과

- '94년 「농어촌발전위원회」, 「생협중앙회」의 건의로 입법추진
- 재경원, 통상부 등 관계부처 협의결과 입법보류('95.9)
- '95년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었으나 중소기업중앙회 등의 반대로 보류
- 반대이유 : 세제상 형평성문제, 비조합원의 이용우려 등
-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동법 제정을 대통령 당선자에게 보고('98.2.3)
- 재경부에서 동법의 제정을 검토기로 결정('98.2.25)
- 소비자보호원, KDI, KREI 등에 입법의 필요성 검토의뢰

※ 현재 재정경제부에서 동법제정 추진중

4. 추진계획

- 생활협동조합법 제정시 생협에 대한 세제혜택, 대외공신력 확보 등으로 생협의 설립·활동이 활성화 될 것임
- 생산자(조직)와 생활협동조합과의 직거래를 통해 농산물의 유통단계 및 마진축소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므로 재정경제부의 입법추진에 적극 협조

※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생활협동조합법(안)의 생협 사업내용에 소비생활에 필요한 농림축산물의 구매(직거래)사업, 구매한 농산물의 가공, 운반, 보관 등에 관한 사항 규정

4-1 등급판정사 제도 도입

1. 현 황

□ 필요성

- 농산물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와 판매자, 중도매인과 생산자간의 분쟁을 해결하여 공정거래를 실현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
- 농산물 품질 개선을 통하여 생산자 수취가격 증대와 가격차별화 유도
 - 표준규격에 따른 생산자의 자율적인 등급화 촉진
- 농산물 품질향상으로 개방화 시대의 수입농산물에 대응하고 국제 경쟁력 강화
- 농산물 등급 판정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견본·통명거래, 직거래 및 전자상거래 기초 마련

□ 현행제도

- 농산물 표준규격 출하 사업
 - 목 적 : 농산물을 산지에서 규격포장 및 브랜드화하여 농산물의 대량유통, 견본·통명거래를 가능케함으로써 농산물유통의 현대화실현
 - 근거법령 : 농수산물가공산업 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 연 혁 : '83년 농협에서 표준거래 단위를 제정·고시하여 시행한 이래 '98년 현재 국립농산물 검사소에서 124개 품목의 규격 제정
 - 운 영
 - 농검에서 표준출하규격 제·개정하고 포장재비 지원
 - 생산자조직에서 자율적인 규격출하 실시
 - 농검에서 공영도매시장에 품질관리실 설치하고 사후관리

○ 농산물 품질인증 제도

- 목 적 : 우수농산물 품질인증 실시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 농가 소득 증대, 소비자 신뢰 확보 및 부정 유통 행위 근절
- 근거법령 : 농수산물가공산업 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 연 혁 : '92년부터 특산물 품질인증을 실시한 이래, 축산물과 유기농산물로 확대시행
- 운 영
 - 농검에서 우수농산물에 대하여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사후관리

○ 농산물 품질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 목 적 : 공영도매시장에서의 불량농산물 출하자에 대한 제제 조치하여 농산물 품질향상 유도
- 연 혁 : '97년 가락시장에 처음 도입 시행
- 운 영 : 관리공사, 도매법인, 중도매인, 출하자 등으로 구성 운영

□ 외국 사례

< 미 국 >

○ 표준규격 제정 현황

- 미 농무성에서 300개 품목에 대한 연방 표준규격 제정
 - 「농산물유통법」에 의거 표준규격의 개발과 관리규정
- 등급규정은 의무기준, 허용기준, 임시기준으로 구분 시행

○ 농산물 품질규격 관리기구

- 농무성 농산물 유통처 · 연방곡물검사처 · 국립 해양수산처

○ 농산물 검사 제도

- 각 주 청과물 검사과를 설치하고 검사관 배치
 - 출하자와 상인 요구에 의거 등급판정하고 확인서 발급
 - 품질 분쟁시 확인서의 등급에 따라 가격 조정
- 정부인가 취득자는 누구나 검사업무 수행 가능
- 미국은 농산물 생산농가의 규모가 크고 생산량이 많아 농산물검사 제도가 활성화되고 있으나 신뢰가 구축된 도매상은 이용 감소 추세

< 일본 >

- 표준규격 제정 현황
 - 농림수산성에서 과실류 7개품목, 채소류 27개 품목 등에 대해 국
정규격 설정
 - 지자체 규격(예 : 현)도 존재
- 농산물 품질규격 관리기구
 - 농림수산성 식품유통국, 표준규격시 설정 중앙협의회 및 지역 협의회
- 농산물 검사 제도
 - 생산자 단체(전농) 자율검사 실시하고 정부감독관은 분쟁시 조정
역할 수행하나 등급규격이 정착되어 정부의 역할 무용(당사자 자
율 조정)

3. 추진방향

□ 관련규정 제정

- 등급판정사의 자격, 업무등을 규정하는 훈령 또는 농협지침 제정
- 등급판정사의 자격은 관련기관·단체 근무자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로서 종류별(과실류, 채소류등) 자격시험을 통해 선발 → 교육 실
시(농협, 농유공 교육원 등) → 등급판정사 자격증 부여
- 인원은 수요기관·단체와 협의결정

□ 운영방법

- 경매 또는 입찰을 하지 않는 물류센타 등 직거래시장에 우선 적용
하여 성과 분석 후 공영도매시장 등으로 확대
- 유통비중이 높은 주요품목을 우선, 연차적으로 대상품목 확대
 - 산지에서 규격출하(포장, 등급)된 농산물에 한함
- 산지규격출하 지도는 농협, 생산자단체의 자율검사원이 담당
- 물류센타등에서는 등급판정 결과가 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

□ 표준출하규격의 보완

- 유통비중이 높은 품목부터 연차적으로 개정
 - 품종개발, 소비자 기호에 적합한 규격설정
 -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조사가 필요하며, 생산자가 쉽게 선별·포장할 수 있도록 사진으로 선별기준 제시
- 농산물유통 현대화를 위한 물류센타, 전자상거래·경매등 여건 변화를 고려한 규격 설정

□ 등급화가 잘된 규격출하품의 우대

- 등급판정 결과를 분석, 표준규격에 의해 선별 및 등급표시가 잘되게 출하하는 우수출하주에 대해서는 등급판정 생략, 하차료 면제, 포장재비 보조금지원 등 직접적인 인센티브 부여

□ 관련 기관별 역할 분담

- 등급판정사 제도 운영 : 농협
- 등급판정사의 자격·선발기준, 업무영역 등을 규정하는 훈령 또는 농협지침 제정 : 농림부 또는 농협
- 표준출하규격 개정 : 농검(농협, 한식연, 농유공 협조)
- 등급판정사 보수교육 : 농협교육원(교안작성, 강의는 농검, 농유공 협조)
- 판정사에 대한 수당, 교육에 따른 강사료 등 예산반영·집행 : 농협
- 사무실 설치운영 : 농협 물류센타 품질관리실(필요시 농검 합동근무)

5. 추진 일정

□ 관련 규정 제정

- 농산물 등급판정사 관련훈령 또는 농협지침 제정 : '98. 12
 - 등급판정사 자격, 선발방법, 운영등에 관한 세부규정 등
- 등급판정사 전형, 선발 및 물류센타 품질관리실 인력 배치 : '99 상반기

- 양재동물류센터에 우선실시 : '99. 6 이후
 - 유통비중이 높은 품목을 선정
- 연차적으로 대상품목, 장소 확대 : 2000년 이후

□ 표준출하규격 개정

- 유통비중이 높은 품목에 대한 소비자 기호, 유통현대화를 고려한 규격개정
 - 사과, 배, 복숭아 등 주요 과실류 : '99. 6
 - 기타 과실류 및 주요 과채류 : 2000년
 - 기타 채소류 및 곡류 등 : 2001년

(한국유통정책연구원)

1. 농산물 유통개혁의 기본 인식

□ 농산물 유통개혁의 목적

- 농업의 경쟁력 제고
- 유통비용의 축소 및 유통마진의 절감
: 생산지가격과 소비지가격의 축소

□ 농산물 유통경로의 역할

- 유통을 통한 시간, 공간, 소유의 효용을 창출하여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소비자의 효용을 증대하고 생산자의 판매를 촉진하는데 그 역할이 있음.
- 유통거래비용을 줄여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다같이 가격과 서비스면에서 만족도를 높임.

□ 기본적으로 농산물 유통은 그동안 도매시장을 큰 축으로 하면서 제한된 유통경로이어서 다양한 경로가 출현되지 못하였음. 따라서 다양한 유통경로를 출현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더욱 유통경로간 경쟁을 촉진시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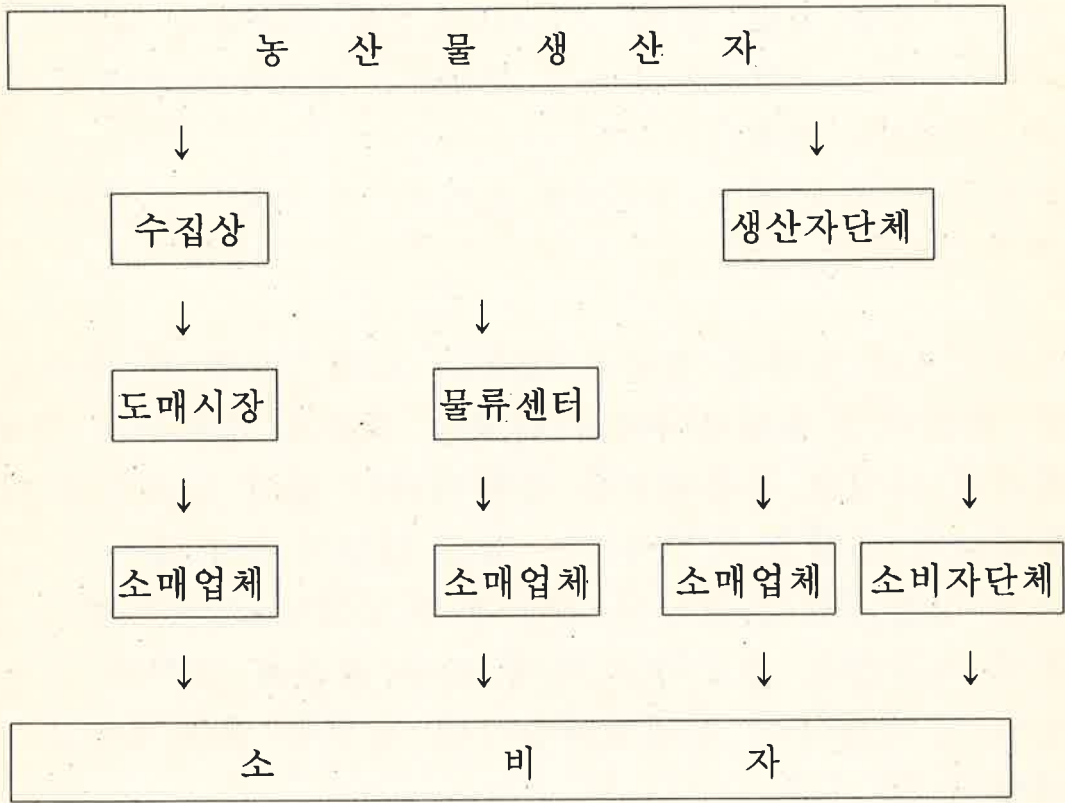
□ 결국 경쟁개념을 농산물 유통에 도입하는 것이야말로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추구하고 이에 따라 생산자 잉여와 소비자 효용이 증대된다는 경제정책철학이 농산물 유통개혁의 바탕이 되어야 함.

□ 따라서 농산물 유통개혁은 경쟁여건을 어떻게 조성하느냐에 그 성패가 달려 있다고 생각하며 농산물 유통부문을 경쟁체제를 바꾸어 나가는데 필요한 제도적 뒷받침과 정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농산물 유통경로에서 다양한 유통경로를 구축하여 경로간 경쟁(channel competition)이 활발해야 함.

- 농산물 유통의 다양한 유통경로의 구축과 경로간 경쟁 유도
- 보다 효율적으로 농산물 유통시키는 유통경로가 경쟁에서 승리하게끔 구조를 변경

다양한 유통경로의 구축과 경로간 경쟁 도입



2. 소매유통의 여건 변화

가. 유통업 구조변화 방향

- 첫째, 유통산업의 기존 구조 파괴
 - 자유로운 출점, 영업시간과 연간휴일 일수 제약 해소 → 초대형점이나 쇼핑센타의 출점 가속화 → 기존 상점가나 어중간한 교외점 도태 촉진
 - 제조업체의 유통경로 지배 붕괴 → 거대 소매기업의 유통경로 지배력 강화

- 둘째, 고도 정보화 사회 급진전, 전자통신판매 증가
 - ECR(Efficient Consumer Response) 활용
 - 외국상품을 인터넷으로 주문, 결제는 신용카드, 국제택배편으로 배달
 - 전자통신판매력을 가진 유통업체 시장 선도
 - 전자통신판매와 물류업자가 기존 도·소매업 역할 대신, 유통산업 파괴

- 셋째, 무한경쟁 시대 정착
 - 변화대응산업 성격 중요
 - 다국적화 진전
 - 독자적인 가치창조 점포 실현
 - 소비자 보호의 강화
 - 향후 유통산업에서는 변화에 대응하는 기업만이 계속 생존해 나갈 것임이 명백

- 넷째, IMF 시대에 있어 유통기업의 경영전략 방향
 - 차입경영 지양 - 현금흐름의 개선
 - 눈 높이 경영 - 고객만족, 고객밀착형 점포 운영
 - 아웃소싱의 활용 - 비핵심적, 간접비 부문은 외부자원 활용하여 저비용, 고품질 경영(점포개발, 교육훈련, 정보수집 등)
 - 자산관리의 극대화 - 상품, 재고, 건물, 인력 등

나. 우리나라 유통업 환경변화 전망

□ 변화 가속화

- 기존업체의 계속적인 다점포화의 출점,
- 많은 기업들의 신업체(D/S, WC 등)에의 진출,
- 지방자치에 따른 지방에의 출점을 위한 입지선점 경쟁
- 유통시장 완전개방에 따른 해외유통업체의 시장조사와 입지확보의 본격화
- 재래시장등의 재래유통업의 침체 지속과 시장재건축 활발
- 중소유통업은 상업협동조합의 결성을 통해 조직화와 협업화 강화
- 병행수입 허용, 해외개발수입 등 국제화의 급진전
- 제조업체의 유통지배력 약화 가속
- 아파트 근린상가과 지하상가의 상권 위축

□ 국제화와 정보화등

- 유통부문과 관련된 부문들의 국제화가 급진전될 것임.
 - 병행수입의 허용률 계기로 하여 해외개발수입, 역수입, 및 개인이 카달로그 등을 통하여 수입하는 개인수입 등 수입형태가 더욱 다양화 되어 질 것임.
 - 유통업체들은 PB(유통업자 상표)상품 비율을 증대하여 상품가격을 낮추기 위해 값싼 생산비용 국가들로부터의 해외소싱을 크게 늘릴 것임.
- 유통정보화의 확산가 가속화되어 정착되어 갈 것임.
 - 과학적인 경영을 위해, 그리고 세분된 소비자 니즈의 파악과 만족 충족을 위해 POS 시스템의 구축과 같은 정보화가 필수적임. 이에 따라 낮은 코스트에 의한 상품관리, 효율적인 고객관리가 가능해지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의 슈퍼마켓 체인업체는 이미 ECR(Efficient Consumer Response)를 활용하기 시작하고 있음.
 - 백화점, 슈퍼체인, 할인점이 중심이 되어 고객 정보와 니즈의 파악 그리고 고객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자사카드(하우스카드)의 발행을 더욱 늘려 나갈 것임.

- CALS(Continuous acquisition and Life-cycle Support)의 실현화로 인해 광속의 상거래가 가능해 지고 이에 따라 설계, 제조, 물류, 유통의 전과정을 정보화체계로 전환하게 될 것임.
- 전세계의 인터넷 확산으로 홈쇼핑을 위시한 전자소매 (electronic retailing)분야가 급성장하면서 Internet's World Wide Web에 실려 전세계 소비자에게 도달하게 될 것임.
- 유통산업에 대한 규제완화의 크게 진전되고 경쟁을 제한하는 제도도 크게 개선되어 경쟁이 보다 자유로와 질 것임.
 - 이미 도·소매업 진흥법을 유통산업발전법으로 개정하여 대형점의 개설허가제를 등록제로 바꾸는 등 유통업에 대한 규제완화가 크게 진전 되고 있음.
 - 또한 공정거래운용을 강화하여 할인특매기간의 제한에 대한 규정을 철폐하였으며 앞으로 국제통상관계상 상관행과 공정거래에서 국제규범준수를 요구하고 경쟁정책(CR)이 보다 현실화되어 갈 것임.
- 유통업계의 고객인 최종소비자를 위한 보호는 더욱 강화될 것임. 기본적으로는 소비자주권이 강화되는 방향일 것임.
 - 일본이 이미 1995.7.1에 시행한 제조물책임제(PL)가 조만간 도입 될 것이며 이는 유통업자가 개발수입한 PB가 다소 위축될 것임.
 - 소비자피해보상기준도 강화될 것임.

다. 유통산업의 발전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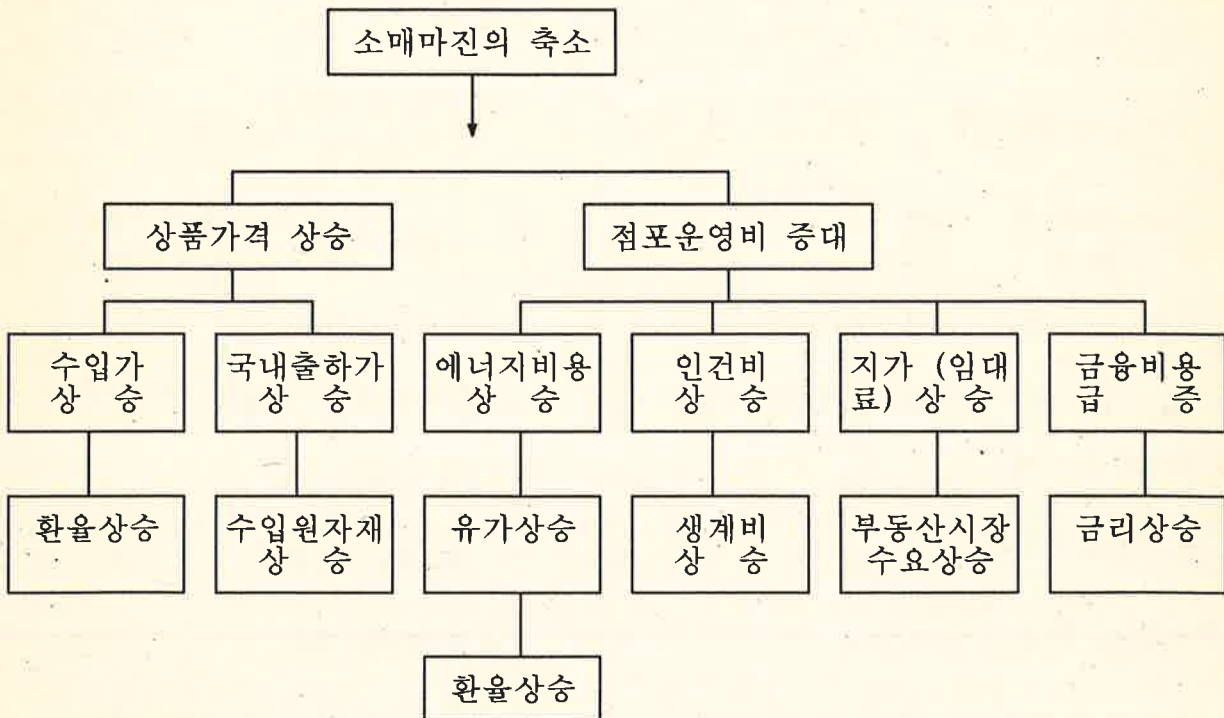
□ 시장규모 전망

- 2000년 우리나라 유통산업의 국민경제적 비중 경상가격기준으로 총 GDP의 약 12%인 364조원으로 추산
 - 도매업은 206조원, 소매업은 158조원으로 추산
- 점포의 대형화, 유통정보화의 확산으로 유통업체 수와 고용 인구 감소할 전망

□ '98년 유통산업 전망

- 경기침체에 따른 매출부진에다 외환위기로 인해 비롯된 IMF 이후 유통산업은 냉각된 소비심리로 인해 매출급감의 어려움에다가 신용시스템의 붕괴로 현금결제 위주로 거래관행이 바뀌는 등 위기에 직면해 있음. 한편 지난해 지방백화점을 위시한 많은 유통업체의 부도는 유통시장 개방 이후 외국 유통업체 진출과 대형점의 지방출점이 본격화되면서 치열한 경쟁으로 시장에서 퇴출하는 유통업체 내부의 구조조정으로 이해하기도 함.
- 진로유통, 한신코아, 태화백화점, 화니백화점, 미도파 등 대형 유통업체의 부도는 경기침체와 경쟁력 약화에도 그 요인이 있으나, 과잉투자과 차입경영의 요인이 더 컸던 것으로 보임.
- 유통업체의 부도를 가속화한 것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대기업의 부도로 국내 금융기관들의 신용도를 떨어뜨려, 외국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 상환 압력을 받게되었고, 국내 금융기관은 대출해준 기업에 대한 여신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부도를 낸, 도미노 현상과도 같은 것임.
- 1998년도는 무엇보다도 금융부문의 불확실성과 높은 금리로 다른 산업보다도 유통업체가 직면한 어려움이 그 어느 때 보다도 클 것임. 현재 금리(회사채 3년 만기)가 30 - 40%에 이르고 있어 금리부담이 2배로 늘어날 것임. 지난해 차입에 의한 과잉투자가 부도의 원인을 제공했듯이 올해도 부채비율이 높은 유통업체는 살아남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매출부진에 따른 경영악화보다는 차입금에 대한 금리부담이 더 어려운 상황을 나타낼 것으로 보임. 따라서 차입금의 규모를 단계적으로 줄이고 업체에 대한 명확한 컨셉을 가지고 목표시장을 공략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 그동안 꾸준히 매출성장을 견지해 왔던 우리 유통산업은 금년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그 요인은 아래에서 찾아 볼 수 있음.
 - 첫째, 소비자의 실질소득의 감소임. 물가상승율이 10% 정도로 예상 하고 있으나, 체감물가상승율은 이를 초월할 것임. 자동차세, 특별소비세, 유류세, 부가세 등 각종 세금인상과 전기세 등 공공요금 인상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임.

- 여기에 실업증가와 고용불안에 따른 소득불안과 각종 세금 인상, 물가상승으로 인한 실질소득 감소로 가처분소득이 급격히 줄어들어 따라 유통업체의 매출은 업태구분 없이 감소될 것으로 보임. 물론 업태에 따라 신규점포 증가에 따른 매출 증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나, 기존 점포의 매출 감소는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둘째, 정리해고, 근로자파견제 도입에 따른 고용불안과 실업증가임. 고용이 불안한 상태에서 소비부분에 대한 지출은 최대한 억제할 것임.
현재의 만족보다는 미래를 위한 고통을 대비하는 길을 선택할 것이기 때문임.
- 셋째, 근로자의 임금동결 및 삭감임. 대부분의 기업이 올해 임금을 동결하고 있음. 대기업은 직급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만 10 - 30% 삭감하고 있음. 봉급생활자의 임금 삭감은 여타 모든 부분에서 지출을 줄일 수 밖에 없음.
- 넷째, 외국업체의 국내 유통업체의 M&A(기업인수합병)에 따른 구조 조정임. 합작과 합병 등의 방법으로 진출한 외국업체는 부진사업 정리, 투자 재조정 등의 감량 구조 조정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됨.



- 이와 같은 매출부진 내지는 감소와 함께 유통업 경영의 비용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위의 그림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비용측면에서 그것이 상품가격이든지 운영비용이든지 비용상승의 플러스(+) 요인만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매마진의 폭은 크게 좁힐 전망이다.

3. 소매업체들의 현황 자료

- 농산물을 취급하고 있는 종합소매업에 속하는 소매업체 단체 현황

| 소매업체 | 직영 점포 수 | 가맹 점포 수 | 주된 소속단체 | 회원수 |
|-----------|---------|---------|----------------|-------------|
| 백화점 | 116 | | 백화점협회 | 36개 업체 |
| 할인점 | 69 | | 한국수퍼체인협회 | 68개 유통업체 |
| 직영점 수퍼체인 | 614 | 14,168 | 한국수퍼체인협회 | " |
| 연쇄화사업체 | 26 | 24,721 | 한국연쇄화사업 협동조합 | 94개 연쇄화 사업체 |
| 수퍼마켓 협동조합 | 3,451 | | 한국수퍼마켓협동 조합연합회 | 39개 조합 |
| 편의점 | 406 | 1,644 | 한국편의점협회 | 8개본부 |

주: 1997년 기준

- 종합소매업 업체별 평균 매장면적과 농수축산물 매장 비율

| 종합소매업체 | 평균 매장면적 (추산) | 농수축산물 매장 비율 (추산) | 점포당 월평균 매출액 | 비고 |
|--------------|--------------|------------------|-------------|------------|
| 직영수퍼마켓 (기업형) | 250~350평 | 50%내외 | 5억원내외 | 점포규모 대형화추세 |
| 백화점 | 5,000~6,000평 | 10% 이상 | 120억원내외 | 점포 출점 중단 |
| 할인점 | 2,000~3,000평 | 40% 내외 | 70억원내외 | 점포 출점 지속 |
| 자영수퍼마켓 (조합형) | 20~40평 | 5%미만 | 5천만원내외 | - |
| 연쇄화사업체 가맹점포 | 10~15평 | 2%미만 | 1,500만원 내외 | - |
| 편의점 점포 | 15~30평 | - | 4,500만원 내외 | - |

주: 평균매장과 월평균 매출액은 추산치이며 가중평균개념을 사용.

4. 농산물 유통개혁의 정책방향

가. 민간기업식 경영의 도입

□ 농산물 유통경로에의 민간부문 참여 확대

- 농산물 유통경로에의 민간기업 경영 참여 유도
 - 물류센터, 도매시장, 포장센터 등
- 물류센터 개발 및 운영에 소매업체의 현실적 참여
 - 물류센터 공동개발
 - 물류센터 공동운영 등
- 포장센터 개발 및 운영에 소매업체의 현실적 참여
 - 포장센터 공동개발
 - 포장센터 공동운영 등
- 다양한 농산물 취급업체의 등장 유도과 지원
 - 농산물 현금무배달업체(cash & carry wholesaler)
 - 트럭도매상 및 소매상
 - 선반도매상(rack wholesaler) 등

□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의 차등지원 해소

- 융자조건에서의 금리차이
 - 물류센터 등
- 부지매입시 국고보조에 대한 민간기업의 배려
- 개발시 공동개발 및 지분참여 등

나. 생산자와 소매업체와의 연계 체제 구축

- 생산자단체와 소매업체와의 협조체제의 구축
 - 대상 : 대형수퍼체인업체
 - 대형소매업체(백화점, 할인점)
 - 수퍼마켓협동조합
 - 연쇄화사업자

- 생산자 단체의 물류센터와 소매업체와의 직거래 강화
 - 가맹점형 체인사업자 및 조합형 체인사업자(상업협동조합)에 대한 농산물 취급에 대한 상품지식 등의 제공
 - 생산자단체(농협, 수협, 축협)의 도매물류기능의 강화
- 지방자치단체의 체비지를 이용하여 농산물위주의 가맹점형 체인의 활성화
- 중소소매상의 공동화, 협업화의 추진에 대한 지원
 - 영세성을 탈피하고 규모의 경제에 의한 비용절감을 위해서 농산물의 공동구매, 공동배송 및 가공을 도모해 나갈 수 있도록 공동화와 협업화에 대한 지원 확대.
 - 농산물 공동구매 및 공동배송을 위한 중소소매상에 대한 자금의 지원
 - 공동구매 및 공동배송을 위한 수송 및 보관기능의 대행기관 설립 지원
 - 현재 공동구매 지원사업이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등에 있으나, 이는 유통부문 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분야의 중소기업체에 대한 공동구매자금이므로 유통에 대한 지원은 극히 미미한 수준에 불과함.

◇ 유통지원사업 : 공동구매사업 지원

- 조직화된 중소유통업체들이 공동구매를 통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상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공동구매사업 자금지원
- 1997년 지원자금 1,600억원(산업용자재, 공산품등)
 - 기업은행 공동사업자금 1,300억원
 - 중소기업(협)공제사업기금 300억원
- 모든 산업분야에 걸쳐 지원
- 지원조건 : 이율 8.5~10%

다. 생산과 유통간의 정보네트워크 구축

□ 유통정보 네트워크 구축

- 도매시장 및 물류센터와 유통업체간의 ECR(Efficient Consumer Response)시스템 구축
 - 궁극적으로는 Supply Chain Management(공급연쇄관리)를 구축
- 농산물 바코드의 도입과 보급 확대
 - 농산물에 있어 점포내에서의 인스토어 마킹(In-Store Marking)의 통일
 - 현재 유럽의 EAN(European Article Number)에서 농산물에 대한 전세계적인 표준바코드를 개발중
 - 상품바코드부여기관인 (재)한국유통정보센터와 농림수산정보센터의 협력관계 구축
- 소비자정보(가격, 품질, 지역판매정보, 품종, 브랜드결정 등)의 체계적인 수집과 생산자에게의 전달
 - 생산자정보에 대한 수집, 가공에 의해 소매업체에 제공, 전달
 - 생산량, 품질상태, 어떤 품종 등의 정보를 소매업체에게 제공
- 소매업체, 특히 중소유통업체에 대한 유통정보화 지원
 - 생산자와 소매업자간의 상품판매동향을 즉시 파악하여 상품별 수주, 발주 및 재고관리 등의 업무를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유통정보시스템의 도입에 대한 지원
- 유통정보화에 대해 주로 POS(Point of Sale)기기의 도입을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이 지원해 주고 있으나, 필요액에 비해 극히 적은 금액에 불과함.

◇ 유통지원사업 : 유통정보화(POS)기기 도입지원

- 조직화된 중소유통업체의 POS기기 도입에 필요한 자금을
- 1997년 지원자금 30억원(산업용자재, 공산품등)
 -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중 구조고도화자금 30억원
- 지원조건 : 이율 6.5%(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농산물 생산자단체와 거래선인 중소형점 소매업체간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종합정보화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도매업과 중소형점 소매업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해야 할 것임.
- 농산물 생산업자, 유통업체, 물류업체간에 서식의 표준화와 통일을 이루는 시스템이 형성되지 못하여 물류정보화는 물론, EDI도 아직 시작단계에 불과함.

□ 농산물 물류정보망의 구축

- 수발주단위의 소량화, 리드 타임(lead time)의 단축화, 수발주 주기의 다빈도화, 긴급배송 의뢰의 증가, 결품을 저하의 요구는 물류표준바코드의 도입, 컴퓨터시스템과 물류기기의 활용 그리고 물류센터의 개선을 통한 물류정보시스템의 구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음.
- 거래단위의 표준화, 전표의 통일, 표준코드의 활용 등으로 거래되는 물동량에 대한 물류자료교환이 자동적으로 가능하도록 물류정보시스템을 표준화
- 농산물의 물류는 QR(Quick Response)이나 ECR(Efficient Consumer response)을 바탕으로 물류정보시스템을 표준화하여 제조업체, 도소매업체 및 물류업체간 정보를 공유
- 농산물 종합물류정보망 구축
 - 유통업체의 전산망 및 POS데이터와 농산물 산지정보망을 연계한 종합물류정보망 구축
 - 농수산물 정보센터에서 추진
 - 산업정보망 사업의 일환으로 ECR의 VAN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한전 네트워크와 협력

◇ 유통지원사업 : 공동물류정보망 구축지원

- 동일업종내 기업들이 물류활동의 효율화를 위하여 공동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지원
- 1997년 지원자금 30억원(제조업체, 유통업체, 물류업체 등)
 - 산업기반자금 30억원
- 지원조건 : 연리 6.5%,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라. 농산물 집배송단지의 건설 지원

- 농산물 유통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는 경우에는 34개의 공영도매시장의 과다시설 및 사용을 저조, 16개 물류센터의 가동을 저하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임.
 - 현재는 농산물 유통개혁에 의한 효과와 도매시장과 물류센터의 추진사업과 논리적으로 배치되고 있음.
- 따라서 만약 계획된 대로 농산물 유통개혁의 성과가 낮은 경우를 대비하여 민간업체, 특히 소매업체들의 농산물 물류센터의 개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임.
 - 비교적 적은 투자에 의해, 경영마인드를 갖고 투자에 대한 자기 책임을 진다는 면에서 수요에 대응하는 적응력이 클 것임.
 - 현재 대형소매업체들은 물류센터를 갖고는 있으나, 전부 가공식품 위주이며 따라서 농산물 물류센터는 하나도 없는 실정임.
- 소매업체들은 농산물 물류를 처리하지 않고서는 개별적으로는 개선을 이루기가 거의 힘든 실정이며, 가장 어려운 점은 물류센터나 집배송센터의 건립용지를 구하기 어렵다는 것임.
 - 최소물류비용의 물류체계형성 아래에서 소비지의 수요규모를 중심으로 교통망의 접근성 등을 주고려요인으로 하여 농산물 공동 집배송 가공센터의 전국적 배치
 - 생산지와 소비지에 수배송·보관·하역·포장 등 물류활동을 일괄 처리할 수 있는 물류거점시설 확대
- 농산물의 공동집하를 비롯하여 공동수송, 공동배송, 공동가공 등의 물류공동화를 위한 공동창고, 공동집배송센터 및 공동 농산물 가공센터의 건설과 확대 지원
 - 농산물 포장센터 및 물류센터와 같은 수준의 지원
 - 유통단지, 공동집배송단지 등 물류시설의 공동화·집적화 촉진
 - 자동화, 정보처리시스템을 갖춘 현대식 집배송센터의 건립지원
- 집배송단지 및 집배송센터에 대한 산업자원부 및 중소기업청의 지원이 일부 있으나 이는 공산품과 산업용 자재 등에 치우쳐 있고 농산물에 대한 집배송시설 지원은 한 건도 없었음.

< 유통업 및 중소기업업을 위한 물류센터 지원 현황 >

◇ 유통지원사업 : 공동집배송단지 건립 지원

- 권역별 공동집배송단지 및 공단내 공동집배송단지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유통합리화 자금에서 지원
- 1997년 지원자금 334억원(기반 공사비 및 건축비의 30%범위내)
 - 산업기반자금 334억원
- 지원조건 : 연리 6.5%, 3년거치 5년 분할 상환

◇ 유통지원사업 : 집배송센터 건립지원

- 낙후된 유통구조의 개선 및 물류비 절감 도모를 위하여 물류비 절감 효과가 큰 유통업체의 집배송센터 건립에 필요한 자금지원
- 1997년 지원자금 100억원(기반공사비 및 건축의 50% 범위내),
 - 산업기반자금 100억원
- 지원조건 : 연리 6.5%,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마. 산지에서의 농산물 상품화

- 포장센터의 확충과 기능충실화의 당위성
 - 수익과 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상에서 타당성 주기적 평가
 - 투자비용은 증가하나, 유통단계에서의 감모, 폐기 및 추가 가공비용의 절감
- 상품규격화와 등급화의 시급
 - 농산물이 깨끗한 상태로 조달되지 못하면 소매업체들은 이를 다시 세척, 소분하는 등 가공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진열되는 상태로 농산물을 누가 공급해 주는냐가 농산물 구매의 결정요인임.
- 계약재배의 경우 현장작업의 어려움 때문에 소매업체는 산지직거래를 어렵게 생각하고 있음. 즉 작업인력의 모집 등 현실적인 부분부터 문제를 안고 있음.
- 따라서 포장센터가 상품을 포장, 등급 분류해 준다면 소매업체의 산지구입은 상당히 진척될 가능성이 큼.

바. 산지직거래를 위한 지원

- 산지직거래를 위해 계약재배를 하는 경우 시세변동이 매우 심하여 이를 보전하는 기능이 필요함.
- 따라서 생산출하약정사업에 민간소매업체들을 고려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봄.
 - 만약 농안기금으로 시세변동에 따라 위험도를 어느 정도 보전시켜 주면 소매업체들은 산지직거래를 하고자 하는 의도가 클 것임.
 - 물론, 이 단계에서의 지원은 모든 유통기관, 농협, 소매업체 나아가 산지 수집상 등에게도 길을 열어 놓아야 할 것임.
- 계약재배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 시세차이가 현저할 경우, 계약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임. 물론 시세에 따른 손실을 계약당사자간에 공평히 배분하면 되나, 현실을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하게 되어 어려움.

사. 농산물 도매물류기능 강화와 생산자단체의 과도한 소매단계 진입 자제

- 물류센터의 활성화
 - 도매물류업체로서의 기능 강화
 - 소매부문에서의 제한된 판매
- 물류센터는 소매상, 특히 중소형 점포에게 협동광고, 판매시점 촉진 보조물, 가격할인 등의 지원에서 거래선인 소매상들의 점포계획에 전문적인 조언을 하고 점포의 관리방법 등에 있어서 지원 내지는 자문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임.
- 농수축협이 소매단계 점포의 지나친 확대에 의해 소매점포의 상권이 위축되고 있음.
- 과도한 출점을 자제하면서 농산물 가격의 안정을 선도하는 소매점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을 기대함.

아. 농산물 물류표준화의 강화

- 물류활동에 관계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표준화, 규격화, 통일화함으로써 화물흐름의 전과정에 걸쳐 단위화물 일관수송체계 (Unit Load System)의 구축을 가능하도록 함
 - 소프트웨어 분야 : 물류용어, 거래단위, 전표, 코드, 포장치수 등
 - 하드웨어 분야 : 팔레트, 컨테이너, 지게차, 트럭 적재함, 래 등 운반
 - 하역·수송·보관시설
- 현재 표준화수준은 저조
 - 물류관련 시설 및 장비의 KS규격(278종)간의 연계성 부족
 - 물류표준화의 전제인 팔레트의 경우 기존 KS규격(7종)중 일관수송용 표준규격을 1,100×1,100mm(일본 규격과 동일)로 정하였으나 ('95. 12), 사용율이 10%수준에 불과
 - 표준팔레트(1,100×1,100mm) 사용율 : 10.9%
 - 표준 하역·보관 설비이용율 : 10%
 - KS 표준 포장규격 사용율 : 10.2%
 - 거래단위, 전표, 코드의 표준화 부진
- 표준화 보급부진 사유
 - 주요국의 표준팔레트규격이 상이하여 수출입물동량의 국제적 일관 수송 및 국내 유럽계 외국인업체에 대한 납품시 사용곤란

<주요국의 표준팔레트 규격>

| 국 별 | 한 국 | 일본,대만 | 미 국 | 유 럽 | 호 주 | ISO |
|-------------|-----------------|-----------------|-----------------|---------------|-----------------|-----|
| 규 격 (mm) | 1,100× 1,100 | 1,100× 1,100 | 1,219× 1,016 | 1,200× 800 | 1,165× 1,165 | 4종 |

- 개별 업체가 일관수송용 팔레트보다 타 규격을 과다 보유하고 있어 보급 지연

<팔레트 규격별 사용실태>

(단위 : %)

| 구 분 | 1,100×1,100 | 1,000×1,200 | 기 타 |
|---------|-------------|-------------|------|
| 사용매수 기준 | 6.0 | 9.4 | 84.6 |
| 응답회사 기준 | 25.3 | 10.1 | 64.6 |

자료 : 대한상의, 『우리나라 기업의 팔레트표준화 실태조사』, '95

- 수송용 화물트럭(4톤 이상)의 36%를 차지하는 중형(4~7톤) 트럭의 적재함 폭이 2,120mm로서 표준팔레트의 2열 적재 곤란으로 효율저하(2열 적재가능 적재함 폭 : 최소 2,280mm 이상)
- 관련 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표준화 부진: 포장, 전표, 코드, 거래단위 등의 표준화 및 일관수송용 표준팔레트와 정합성이 있는 장비의 보급 미흡
- 개선 방안
 - 표준팔레트 및 장비의 구입시 예산 및 세제상 지원 확대
 - 예산, 세제, 인허가 지원대상인 공동집배송단지, 물류센터 사업자의 지정요건에 표준화장비를 사용토록 명문화추진
 - 표준팔레트 이용자에 대한 수송·보관·하역 등 운임 할인
 - 포장, 거래 등 소프트웨어 및 관련 장비의 표준화 유도
 - 표준팔레트의 공동이용제도 도입 및 주요 물류거점에 팔레트 임대서비스 실시

자. 기타

□ 농산물 유통교육훈련의 지원

- 중소형점 소매업자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농산물 유통경영기법을 습득하게 하도록 업종별, 업태별 교육과 연수를 확대함.
- 지역적으로 산재되어 있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중소형점 소매업자들을 위해 통신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면서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연수원에 유통업체 교육과정을 신설함

□ 물류공동화에 대한 지원

- 물류공동화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계약관계의 명확화, 공동수송의 추진 등의 효율화, 하역시설의 정비 등에 대한 관련업계의 협력, 물류공동화를 위한 제도 정비, 지방물류행정 기능 확대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물류공동화는 중소형 점포들의 매장면적을 크게 늘려줌. 이는 여러 슈퍼마켓의 상품보관면적을 공동집배송센터로 돌린데 따른 것임.

- 공동집배송단지의 지속적인 확충과 함께, 지역별·업체별로 중소기업의 농산물 배송가공단지의 모델을 개발하여 중소기업이 물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함.
- 규모가 작은 소매업체들은 공동물류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바람직
 - 공동물류센터의 시설 및 장비 구입에 대한 자금 지원

◇ 유통지원사업 : 물류공동화사업 지원

- 제조업체, 유통업체 등이 공동으로 수송, 배송, 보관 등 물류공동화 사업을 위한 물류센터 설치, 정보시스템 구축, 수배송차량구입 등 물류공동화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 1997년 지원자금 100억원(사업비의 50%범위내, 제조업체와 유통업체)
 - 산업기반자금100억원
- 지원조건 : 연리 6.5%,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 유통지원사업 : 공동창고 건립지원

- 조직화된 중소기업업체들이 공동물류사업을 통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공동창고 건립에 필요한 자금지원
- 1997년 지원자금 154억원
 -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154억원
- 지원조건 : 이율 6.5%(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거래조건의 명확화

- 기본적으로 농산물은 씨뿌리기단계에서부터 수확단계에 이르기까지 수확량, 품질, 가격 등에서 불확실측면이 너무 크기 때문에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가 중요함. 이에 대한 명확한 계약과 거래조건이 중요함.
- 생산자와 소매업자간과의 관계에서 사전에 명확한 거래조건을 확정하여 상세한 조항이 들어 있는 계약을 갖추도록 함.
- 특히 물류부문에 대한 거래조건이 명확히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거래조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물류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도록 함.

II. 도매시장 제도개선

1. 거래제도 개선 및 관리운영 일원화

- 1-1-1 도매시장거래제도 개선방안 검토(도매시장법인협회)
- 1-1-2 도매시장거래제도 개선방안 검토(중도매인연합회)
- 1-1-3 도매시장거래제도 개선방안 검토(서울시도매시장관리공사)
- 1-1-4 도매시장거래제도 개선방안 검토(농협)
- 1-1-5 도매시장거래제도 개선방안 검토(전국농민회총연맹)
- 1-1-6 농산물 도매상제도 도입검토
- 1-2-1 도매시장 관리운영 일원화 방안검토(도매시장법인협회)
- 1-2-2 도매시장 관리운영 일원화 방안검토(중도매인연합회)
- 1-2-3 도매시장 관리운영 일원화 방안검토(산지유통인연합회)
- 1-2-4 도매시장 관리운영 일원화 방안검토(서울시도매시장관리공사)
- 1-2-5 도매시장 관리효율화 방안검토(농수산물유통공사)

2. 도매시장건설 및 유통주체의 다양화

- 2-1-1 민간자본유치 도매시장건설 및 거래자유화 방안
- 2-1-2 민간자본유치 도매시장건설 및 거래자유화 방안(농협)
- 2-2 농수산물공판장 자회사 전환검토(농협)
- 2-3-1 생산자조직의 도매시장유통 참여방안(전국농민회총연맹)

3. 도매시장 부조리 근절 및 활성화

3-1-1 도매시장 공정거래질서 확립방안(서울시도매시장관리공사)

3-1-2 도매시장 공정거래질서 확립방안(한농연)

3-1-3 도매시장 공정거래질서 확립방안(산지유통인연합회)

3-2-1 신설·지방도매시장 활성화방안(인천시도매시장관리사무소)

3-2-2 신설·지방도매시장 활성화방안(도매시장법인연합회)

4. 도매시장 고비용구조 타파

4-1-1 도매시장 유통비용 절감방안(서울시도매시장관리공사)

4-1-2 도매시장 유통비용 절감방안(도매시장법인협회)

4-1-3 도매시장 유통비용 절감방안(중도매인연합회)

4-2-1 도매시장 하역비 절감방안(서울시도매시장관리공사)

4-2-2 도매시장 하역비 절감방안(도매시장법인협회)

4-2-3 도매시장 하역비 절감방안(전국농민회총연맹)

4-3 도매시장 정산회사 설립운영방안검토(서울시도매시장관리공사)

4-4 가락동 도매시장 개보수나 이전방안(서울특별시)

4-5 도매시장 정보화 추진방안(도매시장법인협회)

5. 도매시장 지도, 감독 및 평가강화

5-1 도매시장 평가제도화(농수산물유통공사)

1-1-1 도매시장 거래제도 개선 방안검토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1. 현황

□ 상장경매 추진 현황 및 성과

- 1991년부터 공영도매시장에 상장경매 단계별 추진
 - 상장거래율 : 1985년(가락시장 개장) 20% 수준 → 현재 90% 수준
- 거래의 투명성·공정성과 대금정산의 확실성·신속성·안전성으로 생산자보호 및 도매시장에 대한 생산자단체 공동출하 확대
 - 1997가락시장 공동출하 비율 : 금액대비 70%, 물량대비 51%
- 생산자의 시장교섭력 증대 : 도매시장 경락가를 기준으로 유사시장 도매상·수집상과 거래하므로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 가능
- 품질에 따라 가격이 매겨지므로, 포장화 규격·선별을 촉진하여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 촉진

2. 개선의 필요성

□ 문제점

- 경매가 1985년가락시장 개장당시 20% 수준에서 10여년의 노력끝에 90% 수준까지 올랐으나, 상장경매시 거래과정 공개로 종전의 높은 마진을 취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알타리무·파·마늘 등 투기성이 강한 일부 품목 취급 중도매인들이 기존의 관행을 고수, 산지수집을 계속함에 따라 상장경매 완전정착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일부품목의 상장경매 미정착으로 전체적으로 상장경매가 안되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어 도매시장에 대한 왜곡된 시각 상존

□ 여건변화

- 생산자단체의 적극적인 공동출하 확대추진, 포장센터 건설 등으로 상장경매가 정착되지 못한 일부 채소류 품목도 공동출하 및 포장출하하여 상장경매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 공동출하 : (현재) 40% 수준 → (2004년) 80% 수준
 - 포장센터 : (1996년 까지) 49개소 → (2004년) 160개소
 - 포장지원확대 : 배추·무·대파·마늘·양파 등

3. 개선방안

□ 제기된 대안

- 일부 도매시장의 도매상체제 도입 검토 등 다양성 인정
 - 도매시장의 도매상체제 도입 가능성 검토
 - 경쟁력이 떨어지는 도매시장의 도·소매종합시장, 물류센터 등으로 전환가능성 검토

□ 외국의 사례

| | 일 본 | 미 국 | 한 국 |
|------------|--------------------------------------------------------------------------------------|--------------------------------------------------|--------------------------------------------------------------------------------------|
| 생산규모 | 영세소농 | 대규모생산, 기업농 | 영세소농 |
| 생산자의 시장교섭력 | 취약 | 강함 | 취약 |
| 도매시장 거래체제 | 상장경매체제 | 도매상 체제 | 상장경매체제 |
| 도입배경 | 과거 도매상(위탁상)의 폐해를 근절키 위해 거래과정이 공개되는 상장경매제 도입. | 생산자의 도매상에 대한 통제가능 및 신용정착으로 거래과정 완전노출되어 도매상 체제 가능 | 유사시장 도매상(위탁상)의 폐해를 근절키 위해 거래과정이 공개되는 상장경매제도 도입 |
| 상인구성 | 도매시장법인 : 5개사 - 중도매인 : 205개사 - 매매참가인 : 2,094명 ※ 오다시장(1994) (117천평, 수산 포함) | 도매상 : 69개사 ※ 헨츠포인트시장(1994) (153천평) | 도매시장법인 : 6개사 - 중도매인 : 1,655명 - 매매참가인 : 116명 ※ 가락동시장(1996) (164천평, 수산 포함) |
| 위탁수수료 | 과일 7.0%, 채소 8.5% | 10~15% | 가락시장 5% (지방시장 7%) 유사시장 도매상 8~9% ※수수료외에 가격마진을 취하고 산매비를 출하주가 부담 |
| 시장점유율 | 도매시장 80% 이상 | 30~40% | 공영시장 45% 수준 유사시장 55% 수준 |

□ 대안 가능성 검토

1) 도매시장의 도매상체제 도입 가능성 검토

- 유사시장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도매시장정책은 공정성·투명성·대금정산의 안전성이 확보되는 상장경매정착에 우선해야 하며, 공정성·투명성·대금정산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도매상체제를 도입할 단계가 아님
- 생산자들이 공영도매시장의 경매가를 기준으로 도매시장 출하, 수집상 판매, 유사시장 출하중 가장 유리한 곳을 선택하고 있는데, 도매상체제로 갈 경우 공개되고 신뢰할 수 있는 기준가격이 없어짐에 따라 생산자들이 출하선택에 큰 혼란을 겪고 상인과 직접 거래시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음
- 개설자가 상장예외품목을 지정하여 중도매인 수탁을 허용하고 있으나, 관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사실상 포기하고 있는 실정으로 시장에 있는 사람이면 다 아는 내용임
- 대량물량의 신속처리가 필요한 생산자단체의 공동출하가 상당히 위축
- 다수의 분산담당 소규모상인(하매인·중판·영세중도매인 등)은 도매상으로부터 물건을 확보해야 하므로 유통단계는 줄어들기 어려움
- 도매상체제는 도매시장법인을 수십내지 수백 개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 도매시장법인의 취지인 규모의 경제를 통한 비용절감 효과를 살리지 못해 오히려 비용이 상승할 소지가 많음
 - 가락시장 : 수수료 5%(출하장려금 0.75%, 판매장려금 0.75%, 시장사용료 0.5% 제외시 실질수수료 3.0%임)

미국 도매상 : 수수료 10~15%

유사시장 도매상 : 수수료 8% + 가격마진 + 산매비(출하주 전가)

※ 도매상체제 주장자는 경매는 상장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단계가 늘어 비용이 증가한다고 주장하는데, 유사시장 도매상도 상장수수료를 징수하며 가격마진 취함

- 공영도매시장에 상장경매와 도매상체제를 동시에 도입, 중도매인에게 수탁권을 부여하여 수탁주체를 이원화할 경우, 물건을 확보할 수 있는 중도매인이 경매에 참여하지 않아 경매가 파행적으로 운영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출하생산자 큰 피해 초래
- 상장경매는 정착에 엄청난 시간(10여년)과 노력이 소요되는 바, 한번 무너지면 다시는 회복할 수 없게 되어 20년 전으로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2) 경쟁력이 떨어지는 도매시장의 도소매 종합시장·물류센타로의 전환 가능성 검토

- 도소매 종합시장으로의 전환
 - 공공투자 건설 취지에 반한다는 비판 및 특혜시비 가능
 - 관리사무소(관리공사), 농협공판장, 도매시장법인 폐지 및 이에 대한 대책 선결
- 물류센타로의 전환
 - 관리사무소(관리공사),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폐지 및 이에 대한 대책 선결

□ 우리의 여건

- 영세소농구조 지속 : 미국과 같은 대규모 생산 곤란
- 생산자가 유사시장 도매상과 거래시 불공정거래 소지 상존
- 생산자단체가 시장교섭력을 행사할 수 있고 공동출하확대 및 공동선별·공동정산체제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대량물량을 신속히 거래할 수 있는 상장경매제 지속 추진 필요

□ 개선(안)

- 공정거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기존공영도매시장은 상장경매 골격 유지하면서 시장활성화 및 유통비용 절감 추진
 - 산지 발매기가 많은 채소류의 생산자단체 공동출하 촉진
 - 식품가공업체 등 대량실수요자의 경매참여 확대로 시장활성화
 - 채소류 포장출하, 하역기계화 추진 등으로 유통비용 절감

- 공영도매시장의 도매상체제 도입, 도소매 종합시장·물류센타로의 전환은 신중히 접근하되 도입코자 할 경우 기존 도매시장이 없는 신설 소규모시장 또는 특정 유사도매시장에 시험적으로 도입하여 그 운영 상황을 본 후 도입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위험을 최소화하고 유통혼란을 극소화할 수 있음
 - 도매상체제 도입, 도소매 종합시장으로의 전환시 공정성·투명성·거래과정 100% 노출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강구 필요

1-1-2 도매시장 거래제도 개선방안 검토

(전국농산물중도매인조합연합회)

1. 문제제기

□ 현행제도

- 농수산물도매시장 상장에 있어 '수탁주체' 제한
 - 수탁거래의 원칙하에 도매시장법인에게만 의무적 수탁
- 거래방법의 제한
 - 경매, 입찰의 방법만을 원칙으로 함
 - 정가·수의매는 특별한 경우로 제한 (사실상 사문화)

□ 추진실적(상황 및 추진경과)

- '85년 6월 가락동 공영도매시장개장
 - 용산시장 상인들의 강제이주
 - 농안법의 의무적 '법인수탁·경매거래'의 원칙 적용시작
 - 과일전체의 법인수탁·경매거래(일부 수의매매) 실시
 - 채소와 수산물의 경우 중도매인의 수집물량이 대다수인 상황에서 법인수탁·수의매매 방식의 강제적용
 - 수집 전문의 중도매인들에게 강제적으로 분산기능을 부여
 - * 일본의 경우 수집을 원하는 상인은 모두 수집법인으로 묶음
- '93년 중매인들의 '중개거래' 의무화 농안법개정
- '94년 농안법파동 - 농안법 재개정
 - 중매인의 '중개거래'의 비현실성 확인 → 중개조항 폐지
 - 명칭개정 : 중매인→중도매인 (중도매법인들의 설립)
 - '의무중개' 조항의 폐지는 중도매인들의 '상업차익'을 인정한 것으로 사실상 <도매상체제> 시발의 단초제공
 - '95. 1. 1부터 전품목 상장경매 추진(채소류까지)
 - 수의매매비율 30%로 제한 (형식경매·1:1경매의 상존)

- 상장예외품목의 고시 및 시행 (가락동 도매시장)
 - '95년 1.1부터 전품목 상장경매제 시행과 병행하여,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하여 중도매인 수탁허용
 - '95년 1.1일부터 6.30일까지 강낭콩, 달래등 30개품목을 시범적으로 운영, 7월 1일 부터 동일품목 정식 시행
 - '96년 1.1일 부터 연근, 우영 등 32개품목 추가지정, 청과부류 총 61개품목운영(봄동제외)
 - '98년 1.1일부터 밤, 생강등 32개품목이 추가지정(강낭콩, 치커리, 청경채 등은 경매품목으로 변경), 청과부류 총 90개품목(과일 13개, 채소 77개)
- '98년 3.1일 부터 상장예외품목에 대한 송장검인제 시행

□ 개선 필요성(문제점 및 여건 변화)

< 문제점 >

- 출하자의 '위탁대상'과 '거래방법'의 선택권 박탈
 - 수급조정이 안되어 물량반입 폭주와 가격폭락이 일어날 경우 그 손해위험부담은 고스란히 출하자가 질 수밖에 없음. 출하자의 선택권을 박탈함으로써 경제적 민주주의 훼손.
- 유통비용의 가중
 - 경매관련 제비용(이동비, 선별진열비등), 신선도 저하, 수탁주체별 비경쟁체제로 인해 '도매시장법인'에 RISK 부담없는 독점성 수익 집중
- 시장교섭력을 갖게 된 '수집상'과 '작목반'등의 출하와 수입물량의 출하까지 과잉보호
 - 시장교섭력을 갖춘 출하조직은 자신들의 정보력을 통해 중도매인 수탁시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도매시장에서 언제까지나 보호해 주는 형태의 거래제도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을 것임
 - '97. 유통공사의 자료를 보면 농협계통출하, 수집상 및 저장업체를 통한 출하가 80%를 상회하고 있음

- 이미 경매단계를 거쳤거나 가격이 제시되어 있는 물량에 대해서도 또다시 경매
 - 가격이 제시되어야 출하되는 물량과 산지에서 경매를 거친 물량에 대해 또다시 경매케 함으로써 유통비용 가중. 아울러 도매 시장간에도 이중·삼중 경매
- 의무적인 '법인위탁·경매거래'로 인해 출하량 조절력 미비
 - 다품종의 신선농수산물 거래에 있어 법인에의 경매위탁은 품목별 전문성을 갖춘 중도매인수탁에 비해 현저하게 출하량 조절력 미약
- 농산물 가격 진폭의 심화
 - 농수산물이 수급이 불균형을 이룰 시 그 가격진폭이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경매거래'인데 이러한 제도의 특성을 고려한 탄력적인 제도의 도입이 요청됨

☞ 기본적 문제의식에 대해

- 도매시장의 바람직한 거래제도에 대해 <제로베이스>부터 검토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어떤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가
- 그것은 다음과 같은 어투의 차이에서 그 기본적 입장을 가늠해 볼 수 있다.

문제의식의 표현방법은

- ⇒ 법을 어기고 산지에서부터 물량을 수집해 오기 때문에...
- ⇒ 어느 유통주체가 수집능력을 더 가지고 있는지... 라는 식으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 지금 운용되고 있는 <유통개혁위원회>에서는 후자와 같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사항을 고려하면서, 그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원점에서부터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어야 함

< 여건변화 >

- 정보통신의 발전으로 산지에서 도매시장의 가격동향 파악 용이
- 시장교섭력을 어느 정도 갖춘 산지출하조직과 수집상을 통한 도매 시장출하의 증가 : 수탁경매 무의미
(예: 참다래 유통사업단의 경우 가격 조정력 갖추)
- 가격이 제시될 때에야 출하되는 품목들의 증가
 - 저장성(고구마·감자)·사실상의 가공형태(깐마늘)
- 공영도매시장 밖 각종 유통업체 및 출하선의 증가
 - 서울의 경우 공영도매시장을 거치지 않고 유통되는 물량이 총거래량이 50%를 상회
- 중도매법인의 대거 설립으로 인한 중도매인 규모화 진행
- 소비패턴의 변화로 신선도 높은 물량에 대한 구매력의 증대
- 강제경매 시행으로 분산위주의 중도매인수 증가

2. 정책방향(정책목표)

- 농안법의 기본 정신인 '유통의 원활화'와 '적정가격유지'의 실사구시적 대안 마련
 - 정책방향의 선택에 있어 철저히 경제논리로 접근함으로써 현실에 맞지 않는 이상적 당위사항들의 배제
- 시장경제에 있어 <경쟁의 원리>가 산지에서 소비지에 이르는 유통의 전부분에 통용되도록 함.
- 수탁주체간의 경쟁체제 도입으로 농산물 유통의 거품제거
- 경제적 민주주의의 보장
 - 절대다수인 <출하자> 및 <출하조직>과 <수집상>, <중도매인>, <소비자단체>의 선호에 의한 제도 마련
- 생산자조직과 유통조직, 그리고 유통조직간의 규모화를 통한 거래교섭력제고에 목표를 둔 Soft 분야의 개혁
- 신선농수산물의 유통에 가해지고 있는 규제성 원칙들을 가능한한 폐지하고 규제폐지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향의 정책수립

3. 검토과제

□ 대안제시

- 일정규모 이상의 전문중도매법인에 '수탁도매업' 허용
 - 도매시장에서의 수탁주체로 <도매시장법인>과 <전문중도매법인>을 양립시키고, 거래방법으로 '경매거래'와 '정가 수의매' 병행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장단점을 원용한 <도매시장법인>과 <전문중도매법인>의 장단점을 인정하고, 수탁가능주체를 양립시킴으로써 출하자의 판매대상 선택권을 보장
- 정산회사 설립
 - 중도매법인 수탁의 경우에는 반드시 정산회사를 통하여 대금결제를 하도록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
 - 출하주에 대한 출하대금 미지급 사태를 방지
 - 중도매인은 정산회사가 보증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만 수탁가능
- 출하상품 송장제와 중도매인 신용평가제 도입
 - 도매시장 출입구에서 산지송장검인제를 실시
 - 중도매인에 대해 공기관에서 신용평가를 한 후, 대외적으로 공포함으로써 출하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함

□ 대안별 장단점(현행유지와 개선안 비교)

| | 법인수탁·경매거래제 | 중도매법인 수탁 병행제 |
|----|----------------------------------------------------------------|------------------------------------------------------------------------------------------------------------------------|
| 장점 | -거래투명성 확보 용이 -시장교섭력이 약한 출하자의 보호 | - 수탁주체의 다원화로 경쟁체제가 가능 - 신속한 거래로 물류이동의 효율화 및 신선도 유지에 유리 - 당사자간 거래를 통한 수급조절기능의 강화 - 가격안정성의 제고 - 유통비용 절감,단계축소 |
| 단점 | - 출하자의 선택권 박탈 - 유통비용의 과다 - 체류시간 발생으로 신선도 저하 - 가격진폭 심화 | - 거래투명성 확보 애로 |

- * 도매상제도의 단점인 거래투명성 확보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정산법인을 통한 출하대금의 결제와 송장제실시가 병행되어야 함.

4. 추진방법

신규예산 확보 및 예산확대

- 정산회사 설립기금 저리대출

농안법령 및 관련법규 개정

- 농안법 개정 필요

- 농안법 제28조(수탁판매의 원칙)과 제29조(매매방법)의 보완

관계부처 협의등

- 필요없음

1-1-3 도매시장 거래제도 개선방안 검토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1. 현 황

□ 현행제도

- 도매시장법인에 상장하여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거래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거래가능(농안법 제29조 및 법시행규칙 제20조)
- 상장거래가 적합하지 아니한 농수산물 기타 이에 준하는 농수산물로서 개설자가 그 품목과 기간을 정한 품목은 중도매인이 직접 수탁판매 가능(농안법 제28조 제2항)

□ 추진실적

- 상장경매제 추진
 - 1985. 6. 19 가락시장이 개장되었으나 구 용산시장에서 가락시장으로 이전을 반대하는 상인들을 무마하고 시장활성화를 위하여 구용산시장과 같은 영업행태 계속 허용
 - 1991. 7. 1 부터 경매 가능한 품목부터 단계적으로 품목을 확대해 가는 방법으로 상장경매제 추진

단계별 상장경매 추진현황

(단위 : 품목수)

| 구 분 | 상장 경매품목 지정 | | | 상장 경매 총품목 | | |
|-----------|------------|-----|-----|-----------|-----|-----|
| | 계 | 과 실 | 채 소 | 계 | 과 실 | 채 소 |
| '91. 7. 1 | 21 | 10 | 11 | 21 | 10 | 11 |
| '92. 1. 1 | 29 | 12 | 17 | 50 | 22 | 28 |
| '92. 7. 1 | 3 | 3 | - | 53 | 25 | 28 |
| '94. 9. 1 | 3 | - | 3 | 56 | 25 | 31 |

* 농산물 품목수 : 총 124개 품목(과실 35, 채소 89)

○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

- '94.11.1 시행된 농안법 제28조 제2항에 의거 상장경매가 적합하지 아니한 농수산물에 대하여 개설자가 그 기간과 품목을 정하여 중도매인이 직접 수탁판매 할 수 있도록 허용

도매시장법인 상장 예외품목 허가

(단위 : 품목수)

| 구 분 | 계 | | | 도매시장법인 상장 | | | 상장예외 품목 | | |
|---------|-----|-----|-----|-----------|-----|-----|---------|-----|-----|
| | 계 | 과 실 | 채 소 | 계 | 과 실 | 채 소 | 계 | 과 실 | 채 소 |
| '95.1.1 | 124 | 35 | 89 | 94 | 35 | 59 | 30 | - | 30 |
| '96.1.1 | 147 | 37 | 110 | 86 | 37 | 49 | 61 | - | 61 |
| '98.1.1 | 164 | 39 | 125 | 74 | 26 | 48 | 90 | 13 | 77 |

2. 개선 필요성

□ 문제점

- 지방도매시장의 경우 경매의 필수 조건이라 할 수 있는 도매법인의 수집능력 및 중도매인수가 절대 부족하여 물리적으로 공정경매 불가
- 구리, 수원, 안산, 안양, 청주 등 가락시장 인근 도매시장에서는 가락시장에서 이미 경매를 거친 물품이 반입되더라도 재경매를 강요하고 있어 형식경매, 기록상장 불가피
- 가락시장처럼 상장경매제가 어느 정도 정착된 시장도 IMF이후 경기 침체, 물류센타 및 대형 유통업체 등장, 직거래 확대 등 급변하는 유통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매시장 영업력이 급격히 쇠퇴하여 상인 다수 부도 직면
- 최근 개장한 구리, 안양시장처럼 가락시장과 규모, 상권 등이 불리한 도매시장은 기존 후적지 유사시장을 폐쇄시키지 않는 한 시장활성화 기대 난망

□ 여건변화

- 국민정부 출범이후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물가안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 물류센타 집중건설, 외국업체를 포함한 대형 유통업체 등장, 직거래 확대 등 유통여건 변화에 대응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 이제는 현행 농안법상 강제되고 있는 도매시장법인을 통한 상장경매제의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거래방법 도입 필요성 대두

3. 개선방안

□ 대안제시

- 상장경매제 보완
- 도매상제 도입

□ 거래제도별 장단점

| 거래방법 | 장점 | 단점 |
|-------|--------------------------------------------------------------------------------------------------------------------------------|--------------------------------------------------------------------------------------------------------------------------|
| 상장경매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의 투명성 확보가능 (경매를 통하여 공개적으로 가격이 결정됨으로 공정성 보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통비용 증대 • 가격변동의 진폭이 커 물가 불안정 • 거래시간 장기소요 (경매시간 대기) |
| 도매상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통비용 절감 • 가격변동의 진폭이 적어 물가 하향 안정적 • 거래시간 단기소요 (반입즉시 배송가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의 투명성 확보곤란 (정가·수의매매를 통하여 가격이 임의적으로 결정됨으로 탈세·칼질 가능) |

□ 외국의 사례

| 구 분 | 개 설 자 | 규모(부지/평) | 거래방법 | 관리주체 |
|------------------|-------|----------|-------|-------------|
| 일 본 (오 오 다) | 동 경 도 | 117,000 | 상장경매제 | 동경도 직접관리 |
| 대 만 (대 북) | 대 만 성 | 30,800 | “ | 공공출자법인 |
| 미 국 (헌츠포인트) | 뉴 욕 시 | 150,000 | 도매상제 | 공공출자법인 |
| 캐 나 다 (몬트리올) | 온타리오주 | 50,000 | “ | 공공출자법인 |
| 프 랑 스 (헌 지 스) | 프랑스정부 | 660,000 | “ | 공공출자법인 |

□ 개선(안) : 일부 도매시장 도매상제 도입

○ 도매상제 도입방안 검토

| 구 분 | 도 입 방 안 |
|-------|-----------------------------------------------------------------------------------------|
| 제 1 안 | ○ 가락시장과 경쟁관계가 성립되는 비교적 대규모 도매시장에 우선 도매상제를 도입하고 인근 중소규모 도매시장으로 확대 |
| 제 2 안 | ○ 지방도매시장이나 신설 도매시장 및 수산시장에만 도매상제를 적용하고 가락시장 및 광역시당 1개 공영도매시장은 현행대로 상장경매제 및 상장예외품목 체제 유지 |
| 제 3 안 | ○ 전국의 모든 공영도매시장에 동시에 도매상제 도입 |

○ 도매상제 도입방안 : 제1안

- 장기적으로 광역시 중심의 중앙도매시장은 경매위주로 기준가격을 표출하고 소규모 또는 부실 도매시장은 도매상제를 도입하여 중앙도매시장의 독과점을 견제하고, 유사시장을 흡수하는 체제를 마련함이 바람직하나

- 우선적으로 도매시장 활성화가 부진한 도매시장을 도매상제로 변경하여 가락시장과 경쟁적 관계로 발전시키고 도매상제 표본 시장으로 구축
- ※ 현재는 가락시장이 기준가격을 제시하므로 인근 중소도매시장을 도매상제로 전환하여도 거래성립이 가능한 데, 만약 전부 도매상중심의 시장으로 변경할 경우 기준가격 제시가 불투명

〈 대규모 도매시장에 도매상제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 〉

- ▶ 소규모 시장에 도매상제 도입시 일반 소매시장화가 될 우려로 좋은 본보기 만들 수 없음
- ▶ 대규모 시장이 현 가락시장을 위협할 상태까지 경쟁적이어야만 경매제와 도매상제의 장단점을 비교하기 쉽고, 가락시장 개선에 효과가 있음
- ▶ 일단 대규모 본보기 시장이 성공하면 기존 중·소규모 도매시장도 자연스럽게 도매상 체제로 변경할 수 있음
- ▶ 대규모 도매시장 주변 중소규모 도매시장이 도매상제로 전환된 다음 단계로 경매시장체제와 병립 또는 도매상제 변경 여부 결정

4. 추진계획

□ 추진방향

- 도매시장법인은 나누고 중도매인은 여럿을 합쳐 중도매회사(도매상)설립
- 중도매회사(도매상)에게 산지 수집기능은 물론, 수탁, 판매, 농수산물 수출입 등 모든 유통기능을 수행하도록 허용하여 자유로운 경쟁 속에서 영업하도록 조치(수직적 통합 ⇒ 유통단계 단축 및 유통비용 절감효과)

5. 추진시 검토과제

□ 도매상제 운영시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방안

- 거래물량의 투명화 : 출입문 송품장제 실시
- 안전한 대금정산 체계확립 : 공동정산소(대금결제원) 설치
- 거래내역의 투명화 : 거래내역서(영수증) 발급 의무화
- 중도매회사(도매상) 평가백서 발간
- 시장관리자에게 중도매회사(도매상) 지정, 평가 권한 부여

1-1-4 도매시장 거래제도 개선방안 검토

(농협중앙회)

1. 문제제기

□ 현행제도

- 현행 농안법에서는 도매시장의 거래방법으로 도매시장법인의 수탁 및 경매거래(상장경매)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중도매인에 의한 비상장거래를 예외적으로 허용
(법 제28조, 제29조)

□ 상장경매 추진 현황 및 성과

- 비상장거래(위탁거래)의 폐단 등을 없애고자 1991년부터 상장경매를 단계적 추진하여 현재 90%정도가 상장경매되어 일부품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품목이 정착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봄
- 상장경매로 인해 과거 거래방법보다 공정·투명성을 높이고 판매대금 정산의 안전·정확·신속성을 확보하여 생산자 보호 및 공동출하 제고 등에 크게 기여해 왔음

□ 문제점 (주장내용)

- 수탁주체를 수집능력이 미흡한 도매시장법인으로 제한하고 강제 경매제도를 실시함에 따라 기록상장, 형식경매등 탈법적 거래를 조장하고 불필요한 유통비용이 추가됨
- 산지에서 가격이 형성되었거나 타 도매시장서 1차 경매가가 형성된 품목도 다시 경매함으로써 이중으로 가격이 결정되고, 불필요한 유통비용 발생

2. 거래제도 개선 주장내용

- 일부에서 중도매인에 대하여 수탁판매권을 허용하자는 내용의 도매상 체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음
- 중도매인 수탁판매권 허용시는 우리 여건상 다음과 같은 문제 발생이 우려됨
 - 영세소농구조인 우리나라에서는 농민의 시장교섭력이 미약하여 농민이 위탁상과 직접 수탁거래를 할 경우 거래의 공정성·투명성 보장이 어려움
 - 도매법인과 기능 중복으로 도매시장내 마찰 및 혼란이 극심해짐
 - 도매상체제 도입 여건이 미비된 현상태에서 도매상체제 도입시는 상장경매제가 붕괴되어 위탁상의 각종 폐해가 재발할 가능성이 큼
 - 거래제도 자율선택시 기존유통종사자들도 자유화된 도매시장으로 이동되어 기존 도매시장은 도매상체제가 될 것임
 - 일부 품목의 경우 대형 중도매인이 산지수집상과 결탁 출하물량 및 시세를 조작할 우려
 - IMF사태 이후 유통업체의 도산 증가로 출하농가에 대한 대금지급 안정성 보장이 미흡

3. 검토과제

- 현 단계에서는 도매시장 정책목표의 우선순위를 공정한 가격형성과 거래의 투명성 제고에 두어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바람직함
- 표준규격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표준규격출하가 어느정도 정착되어 통명거래가 가능하는 등 거래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제고된 이후에 도매상체제 도입을 검토
- 따라서 현행과 같이 도매시장법인에 의한 집중수탁 및 상장거래 원칙을 견지하여 수탁주체(도매시장법인)와 분산주체(중도매인)를 분리하여 각각 제역할을 담당토록 함이 바람직
- 다만, 품목 특성상 상장 경매가 부적절 하거나 취급 중도매인수가 부족한 품목은 상장에외품목으로 지정하여 신속적으로 대응

< 가락동 도매시장의 품목별 거래방법 지정현황 >

(단위 : 품목수)

| 년도별 | '95 | | '96-'97 | | '98 | |
|----------|-----------|-----|-----------|-----|-----------|-----|
| 거래 방법 | • 경매 | 72 | • 도매법인상장 | 86 | • 도매법인상장 | 74 |
| | • 정가·수의매매 | 22 | • 법인상장 예외 | 61 | • 법인상장 예외 | 90 |
| | • 법인상장 예외 | 30 | | | | |
| | 계 | 124 | 계 | 147 | 계 | 164 |

- 도매법인 상장품목은 경매거래를 원칙으로 하되, 농안법 시행규칙 제20조(매매방법의 예외)에 의한 정가·수의매매 허용

4. 대안제시

□ 도매시장별 여건에 따른 상장거래품목 및 상장애외품목 선정

- 거래물량, 중도매인수 등 품목별 거래상황을 고려하여 결정
 - 품목별 거래방법은 생산자, 유통중사자, 소비자, 학계 등 각계대표로 구성된 가칭 “도매시장 거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 거래의 객관성·투명성이 확보되는 경우 신설되는 일부 도매시장에 대해 도매상 체제 시범 도입

- 굳이 도매상체제를 도입코자 한다면 새로 신설되는 시장부터 시장 여건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거래제도를 검토하고 시장 시설 설계 및 배치 등도 그에 적합하도록 건설한 후 시범적으로 도입함이 기존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위험부담을 줄이는 방안임
- 도매상체제를 일부 도입하더라도 거래의 객관성·투명성이 확보되는 방안이 우선 강구된 후 도입하여야할 것임
- 또한 비장장거래분과는 달리 거래내역이 전액 노출되는 경매시장의 중도매인에 대하여는 소득표준율을 차별화함으로써 과세의 형평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함

(전국농민회총연맹)

1. 현 황

□ 현행제도

- 농안법 제28조(수탁판매의 원칙)
 - ① 도매시장에서 도매시장법인이 행하는 도매거래는 수탁판매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② 중도매인은 상장된 농산물외의 농산물 거래를 할 수 없다.
- 동법 제29조(매매방법)
 - 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산물은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이를 매매한다.

□ 추진실적

- '92년 가락동시장 1단계 상장경매 추진(채소류 제외)
- '95년 가락동시장 2단계 상장경매 추진(전품목)

2. 개선필요성

□ 문제점

- 생산자 판매선택권의 제한
 - 공영도매시장의 거래제도가 도매시장법인 수탁에 의한 상장경매로 획일화되어 있어 생산자의 판매선택권이 제약을 받고 있음. 이로 인해 생산에서 소비로 직결되는 유기적인 유통시스템 구축에 장애요소가 되고 있음.
- 품목별 특성 및 출하자선택에 따른 거래방법 도입필요
 - 엽채류, 서류의 기록상장, 형식경매와 같은 불합리한 유통관행에 의한 불필요한 유통비용이 발생되고 그 부분이 전부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문제의 해결이 필요함.

- 상장예외품목지정의 한계
 - '94년 농안법 파동 이후 재개정된 농안법상, 상장거래예외규정이 도입되었고 이에 근거하여 가락동 도매시장을 비롯한 공영도매시장에서는 개설자가 상장예외품목에 대한 고시를 하고, 당해 품목에 대하여는 중도매인과 생산자의 직접거래가 허용되고 있으나 도매시장 전체 거래량 중 상장예외품목의 비중은 전체거래물량의 5%에도 미치지 못하여 생산자의 판매선택권 보장에 근원적인 해결이 될 수 없음.
- 도매시장 불법·탈법거래의 성행
 - '97년 검찰 수사결과와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하면, 이미 13년에 걸쳐 상장경매거래를 추진하여 농업인입장에서 현 제도가 가장 정착되었다고 평가하는 가락동시장에서도 기록상장, 형식경매가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음.
- 불법거래의 관행화로 도매시장의 신뢰성 상실
 - 현존하는 실정법을 공공연하게 위반하는 상관행은 중도매인이나 도매시장법인 어느 일방에 의해 자행될 수 없는 것임. 집하능력이 부족한 도매시장법인의 수수료수의 증대목적과 중도매인의 거래물량, 금액의 탈루를 통한 세원의 축소목적이라는 양주체의 이해관계가 상호 결합, 경매제도 내에서 관행화됨.
- 제도내 개선의 한계 확인
 - 관리공사는 관행화된 불법거래품목을 상장경매예외품목으로 고시하여 해결하면 됨에도 시행규칙과 저촉되는 문제점이 있었으며,
 - 주무부처인 농림부에서는 상장경매제도의 붕괴를 우려하여 자치단체가 상장경매를 완화하는 데 제동을 걸었기 때문임.
- 불법거래의 심화로 도매유통 정보제공기능 상실
 - 전세계적으로 소비지 도매시장에서 상장경매거래 비율이 90%이상을 달성한 국가가 실로 전무함. 우리나라에서 90%이상의 상장경매거래 실적이 달성된 것은 현실을 도외시한 불합리한 제도가 발생시킨 농산물 유통 왜곡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음. 이같이 왜곡된 유통정보를 통한 정책수행에 대해서는 관계 행정당국은 물론 유통관계자 모두의 자성이 필요함.

- 기록상장을 통해 조작된 가격이 통계자료화 되는 현실에서 유통 정보의 전파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1995년 가을, 가락동 도매시장에서는 배추 한차에 1,580만원이고 부산의 엄궁동시장은 90만원임. 이처럼 왜곡의 극치를 보이는 유통정보는 거래제도의 전면적 개혁을 통해 반드시 근절되어야함.

□ 여건변화

- 규제를 통한 투명성확보에서 효율성증대를 통한 유통비용의 축소와 유통의 원활성 달성이 더욱 중요함.
- 신설 공영도매시장(구리등)의 부실화는 획일화된 거래제도의 문제점에서 기인하는 것임.
- 거래제도가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수탁독점권을 부여하자 신설도매시장의 경우 출하주의 위탁판매독점권이 특혜화되고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받기위한 부조리 수시발생(창원, 구리, 안산도매시장 등)으로 농민보호는 뒷전이고 이권만이 판을 치는 도매시장이 되고 있음.

3. 개선방안

□ 대안제시

- 농업인의 도매시장 판매선택권 보장(전문중도매법인과 거래허용)
- 도매시장 거래방식의 다양화에 따른 제도적 보완
- 산지경매시장의 강화
- 이중경매 금지 조항 신설
 - ※ 기록상장, 형식경매의 완전해결을 통한 유통비용의 축소와 유통원활화의 증대

□ 추진방안

- 조건을 구비한 전문중도매법인의 수탁권부여.
 - 기존 중도매인중 동일품목을 취급하는 3인이상의 중도매인이 공동으로 법인을 설립(납입자본금 3억원이상)할 경우 전문중도매법인이라 정의하고 수탁주체로 인정

- 전문중도매법인 최소거래금액기준의 상향조정과 관리방안
 - 월평균 거래금액(1억원)을 기준으로 한 자격취소조건은 농수산물 생산의 계절성에 따른 거래금액 변동, 그동안의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일 뿐만 아니라 중도매인 규모화에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있음.
 - 전문중도매법인의 최소거래금액은 연평균 50억원 수준으로 하되, 연간거래금액이 그 미만일 경우 전문중도매법인 자격을 취소함이 바람직함.
- 생산자조직의 도매시장유통참여 제도화
 - 「영농조합법인」, 「품목별 생산자조직」이 유통참여를 위해 전문중도매법인 허가를 신청할 경우,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 전문중도매법인으로 입주한 생산자조직은 도매시장내에서 생산자 직판장의 기능을 수행할 것임. 품목별 생산자조직, 선진작목반과 우수영농조합법인 및 그 연합체가 도매시장유통의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 품목별 생산자의 시장교섭력을 증대하고, 대규모 구매자와 생산자간의 직거래유통을 증대할 수 있도록 도매시장 제도적 측면에서 기반을 조성함.(소비의 변화에 따라 직거래의 새로운 시스템으로 소비자의 구매처인 도매시장에 생산자의 입주가 필요함)

① 생산자의 도매시장 판매선택권 보장

- '96년 경기도 15개 시 군 작목반연합회가 공영도매시장 거래제도의 다양화를 요구하며 도매시장에 농산물 출하를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으며 농민의 요구는 도매시장 출하 농산물을 도매시장법인 및 중도매인 중에서 자유로이 선택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판매선택권의 보장에 대한 요구임.
- 농업인이 자기의사에 따라서 공영도매시장에서 도매시장법인과 위의 조건을 갖춘 전문중도매법인 중 선택하여 판매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② 도매시장법인 상장경매 및 상장예외거래의 보완대책

- ▶ 농민이 판매선택권을 갖고 도매시장법인과 전문중도매법인을 통한 거래를 함에 있어서 최소한 다음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경매사 공영제의 도입

- 경매사가 생산자를 방문하면 생산자로부터 뇌물수수후 경매가격을 높게 해주는 사례가 발생하며(가격이 高價를 형성할때 발생)
- 경매사의 경매주관 장소와 시간이 연중 일정하고 공개되고 있으며, 연중 당해 경매사에 의한 경매에 참여하는 중도매인과의 담합행위가 관행화되어, 가격조작과 경매부조리를 저지를 소지가 상존함.
- 경매사공영제를 실시, 도매시장법인 직원신분인 경매사를 개설자의 직원신분으로 변경.(위 두 경우는 이미 KBS 추적 60분, MBC 시사매거진 2580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방영됨)

※ 각 지역에서 경매사가 생산자조직(작목회)을 방문 감사패나 향응제공이 묵시적으로 요구되며, 경매사의 요구에 의해 감사패를 만들어 주는 사례도 발생함. 물론 이 지역 출하 농산물은 해당 경매사가 높은 경매가격을 형성시켜 주고 있으며 이와같은 사례는 지역별로 다양하게 보고됨.

○ 송장내용 및 판매원표의 정정시 개설자의 사전승인 의무화

- 농민이 경매후 판매원표를 수령하여 귀가하는 중에 도매시장법인의 직원이 전화하여 (출하업무를 수행하는 농민은 휴대폰을 갖고 다니며, 자기 생산물 이외에 여러 농가의 생산물을 수거하여 출하하고 있다) 가격 및 품질에 대한 중도매인의 항의를 이유로 가격정정을 요구하며 대부분 도매시장법인의 요구가 수용되는 실정임.

※ 산지에서 출하업무를 수행하는 농민들의 경우(연중 직출하농민) 지속적으로 판매원표의 정정을 요구받는 집단적인 사례가 보고됨.

○ 정산업무

- 도매시장법인과 전문중도매법인이 출하주에 대해 행하는 정산업무는 개설자가 설립한 정산법인을 통해서만 실시토록 하여 출하대금의 미지급과 같은 불상사가 공영도매시장에서 발생치 않도록 조치.

○ 하역업무 및 하역비용의 도매시장법인 및 전문중도매법인 전담의무화

- 도매시장법인 또는 전문중도매법인에 출하하는 농산물의 하역업무 및 하역비용에 대해서는 수탁주체가 의무적으로 전담.

○ 송장내용 및 판매원표의 정정시 개설자의 사전 승인 의무화

- 품질분쟁 및 가격조작으로부터 출하주 보호 제도화

□ 대안별 장단점(현행유지와 개선안 비교)

| 구분 | 현 제도 | 개선제도 | 비고 | |
|----------|--------------|-----------------------------|------------------------------------|--------------------|
| 경매사의 신분 | 도매시장 법인소속 직원 | 개설자 소속의 직원으로 신분 변경하여 공영제 실시 | 경매참여시간 및 장소 비밀 준수 | 경매거래 시 적용 |
| 정산기능 | 도매시장 법인 실시 | 생산자에 대한 정산은 개설자 고유 업무로 변경 | 도매시장법인의 부도로 인한 생산자 출하대금 변제불이행 원천방지 | 경매 및 상장예외 거래에 동일적용 |
| 하역업무 | 하역노조 주관 | 도매시장법인 고유 업무로 변경 | 하역업무의 효율화 촉진 | |
| 판매원표의 정정 | 개설자에 사후보고 | 개설자(관리공사)의 현장 입회후 승인하에 변경 | 판매원표의 임의변경에 따른 부조리발생 예방 | |

□ 외국의 사례

○ 주요국 도매시장의 거래방법

| 국가별 | 주요농산물도매시장 | 거래방법 |
|------|------------------------------|----------------------------------------|
| 프랑스 | 헌지스(Rungis) 농수산물도매시장 | 수의매매방식 |
| 네덜란드 | 알스미어(Aalsmeer) 화훼도매시장 | 농산물 - 산지경매방식 화훼 - 전자경매방식 |
| 미국 | 헌츠포인트(HuntsPoint) 농산물도매시장 | 도매상 수의매매방식 |
| 대만 | 대북시 청과도매시장 | 경매거래 수의매매 병행방식 72%(전자경매) : 수의매매 28% |
| 일본 | 쓰끼지(築地) 중앙도매시장 | 경매위주방식 경매거래 : 상대거래 - 50% : 50%) |
| 일본 | 오따(大田) 중앙도매시장 | 경매위주방식 경매거래 30% 예약및 선취거래 70% |
| 태국 | 방콕 시몬무앙도매시장 | 수의매매방식 |
| 태국 | 방콕 파클롱도매시장 | 수의매매방식 |

4. 추진과제 및 일정

□ 농안법령 및 관련법규 개정

- 농안법 제2조의 4-1(정의) 개정
 - (추가) 전문중도매법인(도매상)이라 함은 개설자의 승인을 받고 법 제17조의 3에 따른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산물을 위탁받아 판매하거나 이를 매취하여 판매하는 법인을 말한다.
- 동법 제28조(수탁 판매의 원칙) 개정
 - (개정) 도매시장에서 도매시장법인과 전문중도매법인(도매상)이 행하는 도매거래는 수탁 판매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개설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자기계산으로 매매할 수 있다.
- 동법 제29조(매매방법) 개정
 - (추가) 다음 각 호에 정한 경우와 농림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가 또는 수의매매를 할 수 있다.
 1. 타 도매시장과 산지공판장에서 매수집하한 농수산물.
 2. 수입농수산물.
 3. 출하주가 송장으로 가격을 제시하여 출하한 농수산물.
 4. 전문중도매법인이 집하한 농수산물.
- 동법 제38조(도매시장법인협회) 개정
 - (개정) 삭제
- 동법 제55조의 2(유사도매시장의 정비) 개정
 - (개정) (민간도매시장의 정비) 시도지사는 농수산물의 공정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농산물 도매 거래가 행해지는 지역을 민간도매시장을 지정하고 그 구역 내 농수산물 도매업자의 거래방법개선 시설 개선 이전대책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비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하며,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 필요한 조사와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 관련항목에 전문중도매법인(도매상)에 대한 항목 신설

□ 관계부처 협의 계획 등

- 통상산업부
 - 유통산업발전법과 상충되거나 일치하는 부분에 대한 정비

- 협의일정
 - 농안법 개정절차에 따라 협의

1. 도매상제 개황

□ 농산물 도매상제의 정의

- 도매시장에 다수의 도매상이 입주하여 각각 산지로부터 직접 또는 broker를 통하여 농산물을 구매하여 중간도매상 또는 소매상에게 판매하는 시장체제
- 엄격한 의미에서 도매상은 매입판매자이며, 일반적으로 농산물이 도매시장에 도착하기 전에 거래가격이 결정
 - 상품이 시장에 도착한 후 위탁상이 중간도매상 등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위탁상체제와는 구분됨
- 도매상이 매입한 농산물은 중간도매상·소매상에게 수의매매

□ 도매상 종류와 영업형태

- 도매상종류(미국의 신선농산물법, PACA)
 - Commission Merchant : 수수료를 받고 위탁판매
 - Dealer : 자기책임하에 구매와 판매
 - Broker : 중개수수료를 받고 중개
- 도매상들의 영업형태는 자금력, 신용상태, 거래처, 취급품목 등 영업조건에 따라 다르며 대부분 복합적인 형태로 운영됨
 - 위탁판매와 구매·판매를 겸하는 경우
 - 중개와 구매·판매를 겸하는 경우
 - 위탁을 위주로 하는 경우
 - 타도매상으로부터 구입하여 식자재를 공급하는 경우 등

□ 도매상체제의 장단점(경매제와의 비교)

| | 경매제 | 도매상제 |
|----|--------------------------------------------------------------------------------------------------------------------------------------------|--------------------------------------------------------------------------------------------------------------------------------------------|
| 장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격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 출하주에 대한 대금정산 보장 ○ 유사도매시장 횡포 방지 ○ 상품성향상에 기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매시장내 유통비용 절감 ○ 신속한 수집·분산으로 농산물의 신선도 유지 ○ 생산자의 출하 선택권 보장 |
| 단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매상제 장점의 반대 ○ 기록상장, 형식경매 등 불공정 거래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본래의 장점을 살리기 어렵고 유통비용만 증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매제 장점의 반대 ○ 여건 미비로 유통의 효율화와 공정성 확보에 실패 가능성 높아, 사실상 과거의 위탁상의 폐해가 되살아날 가능성이 높음 |

□ 도매상제 성공을 위해서 갖추어져야 할 조건

- 농가의 생산규모가 시장 교섭력을 가질 정도로 크거나 공동출하가 정착되어야 함
 - 상품의 저장성이 있거나 저온유통체계가 확립되어 유통중 품질 손상에 따른 분쟁의 여지가 없어야 함
 - 거래내용이 즉시 공개되는 등 신뢰성 있는 유통정보 제공이 제도화 되어야 함
 - 출하자와 도매상간에 신용거래제도가 확립되어 있고,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함
 - 실물을 보지 않고도 전화 등에 의한 통명거래가 가능해야 함
- ※ 이러한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매시장에 도매상체제를 도입하게 되면 도매상체제가 아닌 위탁상체제로 귀착될 가능성이 높아 공영도매시장 건설의의가 약해짐

□ 도매상제도 운영시 필요한 제도적 장치

- 정부, 개설자, 공공기관 등에 의한 유통정보조사 의무화
- 거래물량 등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반입물량 확인 제도 도입
- 대금결제 등 거래상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거래분쟁조정기구)
- 출하자의 거래처 선택에 필요한 도매상의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신용평가제)

2. 우리나라에서의 도매상제 도입 검토

□ 논의의 경과

- '85년 6월 가락동 도매시장이 개장되기 이전에는 위탁상이 농수산물 도매거래의 거의 전부를 담당하였음
 - 농협에서 운영하는 공판장에서만 경쟁에 의한 공정거래 실시
- 위탁상들의 대금정산지연, 거래내역의 비공개, 산지에 수집상을 거느리고 받떼기에 의한 매점매석 등의 횡포를 막기 위해 공영도매시장을 건설하여 경매제도 시행
 - * 출하자는 자신이 판매위탁한 농산물의 실제 판매가격을 알 수 없음
- '95. 1월부터 전품목 상장경매실시로 거래제도 정착 추진
 - 현재 농수산물 유통량의 50%정도는 제도시장(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에서 경매로 거래되고, 50%가량은 제도시장 밖에서 주로 도매상이 자유스럽게 거래하고 있음
- '94. 5 농안법 파동 이후 유통개혁대책 수립시 공영도매시장에서도 도매상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일부 의견이 있었으나 우리의 유통여건으로 볼 때 적합하지 않는 제도로 결론이 났음
- 최근 일부에서 유통여건의 변화, 공정거래 질서 정착 분위기 조성, 일부 지방도매시장의 활성화 미흡 등을 이유로 경매제도 폐지 또는 경매제와 병행하여 도매상체제를 도입할 것을 강력 주장

□ 우리의 유통여건과 도입 가능성 검토

| 검토항목 | 도매상제의 전제조건 | 현 실 태 |
|-------------|------------------------------------------------------------------------------------------------------------------------------------------------------------------------------------|---------------------------------------------------------------------------------------------------------------------------------------------------------------------------------------------------------------------|
| □ 농민의 시장대응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농가의 규모화 ○ 품목별 생산자 조직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가규모의 영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출하실태를 보면, 4.5톤 한 차에 출하주가 수십명임 ○ 공동출하가 되지 않고 일부된다해도 공동정산이 되지 않아 시장교섭력이 약함 |
| □ 출하농산물의 상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장·규격화가 완비되어 통명·주문거래가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양·크기·무게 등 뿐만 아니라 품질까지 규격화되어 선별·포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배추 등은 아직 산물출하 ○ 포장 출하품도 대부분이 자의로 등급분류, 표시사항 위반, 속박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물 확인 후 거래하는 관행 |
| □ 저온유통체제 확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지에서 예냉·저온·냉동차량으로 수송하여 품위손상에 따른 분쟁의 여지가 적어야 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의 콜드체인 시스템이 거의 구축되지 못하고 있음 |
| □ 도매상규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매상이 법인화·규모화 되어 대외적으로 공신력 확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도매상은 대부분 자연인이고 규모화되지 못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락시장 중도매인 1일 평균 거래량 : 사과 0.3톤, 배 0.1, 귤 0.3, 배추 3.3, 상추 1.1 |

□ 검토의견

<도매상제 전면 도입은 시기상조>

- 경매제와 도매상제는 양제도를 객관적 기준만 갖고 비교하면 각각 장단점이 있어 우열을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그 제도를 실시해야 하는 구체적 여건을 검토하여야 함
- 도매상제도가 비록 장점이 있으나 우리의 유통여건을 감안하게 되면 전면적인 도입은 아직 시기상조임
 - 앞에서 제시한 여건이 성숙되지 못한 상태에서 도매상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도매상제의 장점을 살릴 수 없고 과거 위탁상체제로 전환되어 위탁상 폐해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음
 - ※ 도매상제 주장하는 측에서 가장 앞세우는 유통단계 축소로 인한 유통비용 절감도 규모화되지 못하고 통명거래 여건을 갖추지 못하면 수집상, 중판 등 새로운 유통단계 발생으로 효과 미발생 : 참고로 붙임
- 따라서 우선 상장경매가 정착되도록 하되, 표준규격화 등이 정착되어 통명거래가 가능하게 될 때에 도매상제 도입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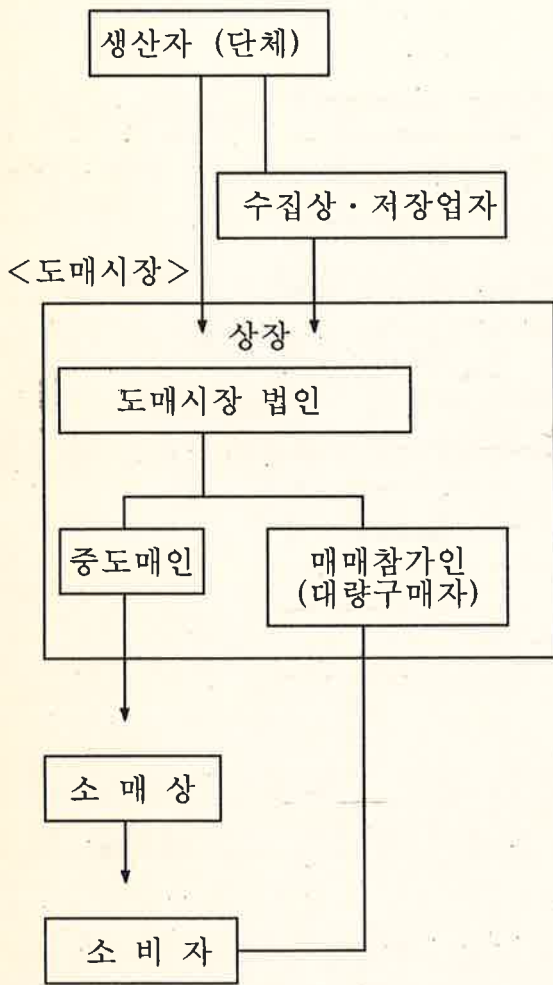
<도매상제의 점진적 도입 검토>

- 현 시점에서 도매상제를 도입할 경우 전면 도입보다는 신설 시장 또는 일부 도매시장부터 도입하되 현재의 영세한 중도매인을 대형화·법인화해야 할 것임
 - ※ 도매상제 시장에서는 시장임대료 현실화, 경매제 시장에서는 세금·시장사용료 부담 완화 조치 필요
 - ※ 도입유형별 장·단점 검토 별첨
- 이와 관련하여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동일한 도매시장에 위탁상 중심의 수의매매체제와 경매체제를 병존시킬 경우, 현재의 상황에서는 수의매매만 존속하게될 가능성이 높음
 - 중도매인의 수탁에 의한 수의매매를 인정하게 되면 도매시장법인에 의해 상장된 농산물을 구입할 상인이 존재하지 않게 되기 때문

< 붙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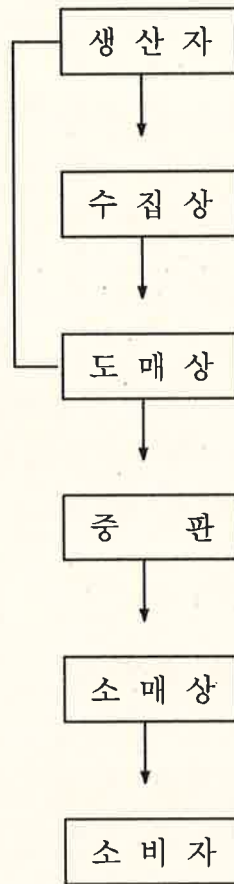
경매제와 도매상제간의 유통경로 비교

< 경매제도 : 공영도매시장 >



(거래단계 : 3~5단계)

< 도매상제도 : 현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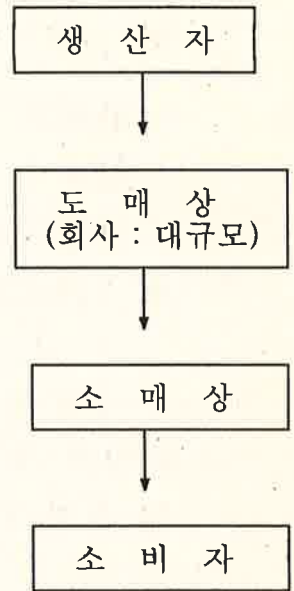


(거래단계 : 4~5단계)

※ 5단계가 주류
(수집상 출하)

< 이상적인 도매상제 >

※ 일부에서 도입주장



(거래단계 3단계)

도매상(위탁상)제 도입범위 검토

| 장 | 점 | 단 | 점 |
|------------------------------------------------------------------------------------------------------------------------------------------------------------------------------------------------|--------------------------------------------------------------------------------------------------------------------------------------------------------------------------------------------------------------------|------------------------------------------------------------------------------------------------------------------------------------------------------------|---------------------------------------------------------------------------------------------------------------------------------------------------------------------------------------------------------------------------------------------------------------|
| <p>< 1안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도매시장은 현 체제를 유지하고, 지방 도매시장은 개설자가 결정 * 중앙도매시장 : 국고지원 도매시장중 특별시·광역시를 개설구역으로 하는 시장 ○ 도매상제 시장은 시설 실비 임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매상제 실시 범위의 객관적 설정 가능 ○ 기존 대규모 도매시장 및 유통전반의 혼란 최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장경매 원칙을 유지하면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개선 가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입범위가 소규모 시장에 한정되어 도매상제를 본격 실험하는데는 한계 ○ 제도개선 의지가 미흡하다는 비난 유발 ○ 기존 지방시장 혼란 및 농협공판장 반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매가 정착된 기존 대도시 시장에 악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권역에서 기존시장은 경매를 하고, 불이행시 형벌까지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 ○ 기존시장 중도매인의 도매상제 도입요구 극대화 ○ 기존 지방시장 혼란 및 농협공판장 반발 |
| <p>< 2안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시·광역시 1개 도매시장만 상장경매제 유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매상제의 본격 실험가능 ○ 상거래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사시장 흡수에도 유리 | | |
| <p>< 3안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별로 예외품목 대폭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매가 잘 안되는 주요품목 위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개정 없이 신속히 제도개선 가능 ○ 단기적인 시장혼란 최소화 ○ 중도매인(특히 도매상제 주창 가락시장 중도매인)의 반발 해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외품목을 주요 품목으로 확대함에 따라 예외품목 지정을 둘러싼 혼란 지속 ○ 경매가 정착된 품목도 중도매인의 불법 수탁을 유발하여 상장경매제가 급속히 와해 가능 | |
| <p>< 4안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도매시장에서 품목제한 없이 상장경매와 중도매인 수탁 병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생산자단체 및 중도매인의 반발 해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장경매제의 급속한 와해 및 심각한 유통상의 혼란 초래 | |

1. 현황

□ 현행제도

- 공기능인 관리업무는 공공기관이, 상기능인 운영은 민간법인이 담당하도록 하여 공공성과 효율성의 조화 도모
 - 관리 : 개설자(市)의 소속공무원으로 구성된 관리사무소에 의한 관리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지방공기업인 관리공사도 가능
 - 운영 : 민간도매시장법인 또는 생산자단체 공판장

□ 추진상황

- 공영도매시장 18개소중 16개소는 관리사무소, 2개소(가락시장, 구리시장)는 관리공사에 의해 관리

2. 개선필요성

□ 문제점

- 개설자와 관리공사관계에서 업무중복·조직비대화·비효율성이 나타남
 - 관리공사는 행정기관이 아닌 지방공기업이기 때문에 공권력을 행사할 수 없음. 따라서 인허가 등 공권력의 행사는 개설자가 해야 하고, 관리공사는 시설물 관리 등 공권력이 필요없는 단순관리만 할 수밖에 없으므로, 관리체계가 이원화·이중구조화 되어 있고, 개설자와 관리공사간에 업무와 권한의 한계가 불명확하여 업무중복·다단계 행정절차 등이 일어나고 공기업의 문제점인 조직비대화(서울시 관리공사 289명)·경직화 현상이 나타남

- 따라서 관리공사를 개설자 소속 행정기관인 소규모의 관리사무소 (부산시 관리사무소 39명)로 바꾸고, 시설물관리 등 단순관리는 민간에 용역을 주면 관리체계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은 자연히 해소되고 현재의 절반의 비용으로 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관리와 운영은 업무성격이나 내용이 전혀 다른 기능으로 업무중복이나 다단계 행정절차가 일어나지 않는데도, 일부에서 업무중복인 것처럼 이야기됨에 따라 도매시장의 관리·운영에 어려움 초래
 - 관리 : 거래질서 유지, 유통종사자 지도감독, 시설물 관리 등 행정업무
 - 운영 : 물량집하, 경매수행, 출하대금 정산 등 상적 업무

3. 개선방안

□ 제기된 방안

- 신규 개설도매시장의 관리·운영 일원화 가능성 검토

□ 외국의 사례

- 도매시장 관리·운영체계

| | 일 본 | 미 국 | 한 국 |
|-----|----------------|-------------------|---------------------------------------------|
| 관 리 | 관리사무소 (공무원) | 도매상(민간) 조합에 위임 | 관리사무소(공무원)원칙 : 16개소 관리공사(지방공기업) 예외 : 2개소 |
| 운 영 | 도매시장법인(민간) | 도매상(민간) | 도매시장법인(민간) |

□ **대안별 장단점**

<관리사무소 · 관리공사 체제 비교>

| | 장 점 | 단 점 |
|-------|----------------------------------------------------------------------------------------------------------------------------|-------------------------------------------------------------------------------------------------------------------------------------------------------------|
| 관리사무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속하고 효과적인 행정력 발휘가능 ○ 상대적으로 적은 인원으로 관리가능 ○ 정책의 일관성 확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잦은 전보시 전문성 저하 |
| 관리공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성 제고 가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기업으로 공권력을 행사할 수 없어 지도감독 기능수행 곤란 ○ 개설자 · 관리공사의 관리체제 이원화로 업무중복, 행정낭비 ○ 공기업으로 조직 비대화 경향 |

<운영주체>

1) 현재와 같이 민간기업인 도매시장법인이 운영 담당

□ **장점**

- 물량유치 · 판매 · 대금정산 등 상기능은 공공기관보다 민간이 하는 것이 적합하고 효율적이며, 시장경제원리에 맞음.
- 물량유치가 법인수익과 연결되므로 물량유치를 위해 생산자가 높은 가격을 받도록 노력하고 생산자에게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려 함.
- 농산물은 부패성이 강하므로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민간이 하는 것이 효과적임.
- 민간기업이므로 가격분쟁 문제발생시 신속히 대처 해결할 수 있다.
- 조직을 시장여건에 따라 신속적으로 배치, 시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 복수 입주시켜 경쟁을 유도, 생산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 **단점** : 경영상 영리추구로 공익성을 다소 소홀히 할 우려가 있다.

2) 도매시장법인을 폐지, 관리사무소나 관리공사가 운영담당

□ 장점 : 운영의 공익성 제고

□ 단점

- 상적기능은 민간이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며, 공공기관이 담당하는 것은 시장경제원칙에 어긋나며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정책에 배치됨
- 관리와 운영은 업무의 성격이 다르므로 통합한다 하더라도 인원이 줄어들기 힘들며, 통합된 후에는 운영마저 관료화되어 인원감축이 더욱 어려워짐
- 관료조직의 특징인 소극적·방어적 운영은 도매시장이 요구하는 신속성·융통성·능률성을 저해시켜 결국 생산자에게 불이익을 주게 됨
- 가격분쟁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정부에 대한 손실보상요구가 증대될 것이나 회계처리상 보상이 늦어지거나 곤란하여 민원이 많이 발생
- 경쟁이 사라져 생산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도 낮아지고 비용만 증가시키는 결과 초래
- 공무원조직으로 할 경우 수천 명의 공무원 증원·직급체계·보수체계 신설 등 많은 문제점 야기

□ 대안

- 도매시장법인을 폐지하고 관리사무소나 관리공사가 운영을 담당하는 것은 시장여건상 생산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고 비용만 오히려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소지가 높으므로, 공영도매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이 운영을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기존 도매시장이 없는 신설 공영도매시장에 대해서는 관리운영 일원화체제 시험 도입, 그 운영상황을 본후 도입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
 - 단, 이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나 관리공사보다 공공출자법인 형태로 하는 것이 관리운영 일원화의 취지에 부합되며
 - 공공출자법인을 설립하고도 도매시장에 관리사무소나 관리공사를 두는 것은 관리체계 3원화를 만드는 결과를 초래

1-2-2 도매시장 관리·운영 일원화 방안검토

(한국농산물중도매인조합연합회)

1. 문제제기

□ 현행제도

- 관리 : 관리사업소 및 관리공사, 운영 : 도매시장법인

□ 추진실적(상황 및 추진경과)

○ 일반상황

- 전국 18개 공영도매시장중 가락동도매시장과 구리도매시장은 관리공사체제이며 나머지 도매시장은 관리사무소체제
- 도매시장의 운영(경매관리, 정산)은 도매시장법인이 전담케 하고 있어 공사와 법인의 구조가 옥상옥 구조
- 손해위험부담을 지고 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중도매인 1인당 1.3명의 생계부담(관리공사,도매시장법인,하역노조 대비 중도매인수)

□ 개선 필요성(문제점 및 여건 변화)

○ 문제점

- 민간영리기업에 공적 성격의 업무(경매)부여로 공공성 훼손
- 관리·운영 업무가 분리되어 있어 유통비용 가중 및 관리운영상의 효율성 훼손
- 도매시장법인('94년이전 : 지정도매회사)에게 수탁권을 독점케 함으로써 현재의 공영도매시장은 公設 私營시장이라는 비판대두

2. 개선방향(정책목표)

- 관리운영의 분리가 초래하는 비효율성과 유통비용 가중현상 타개
- 사설도매시장에 비해 유리한 조건속에서 발생하는 공영도매시장의 수익금이 공익에 환원가능하도록 함
- <상적기능>에 대한 엄밀한 성격규정(risk부담여부)을 통해 관리는 공무원이나 공기업, 상적기능은 사기업이 맡는 방향의 제도마련
- 민간영리기업이 독점적지위나 희소성을 바탕으로 수익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유통의 효율성을 바탕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의 제도마련

3. 검토과제

□ 대안제시

- 관리공사가 설립되어 있는 공영도매시장은 관리공사로 관리운영 통합
 - 경매사 공영제 실시
 - 관리공사가 정산기능 담당
- 도매시장법인은 소극적 개념의 수탁경매관리업자에서 적극적 개념의 산지수집업무를 통한 도매시장 상품공급자 및 판매업자라는 상적기능을 전담토록 함
 - 도매시장법인의 일상적인 매취상장 및 제3자판매 허용
 - 분산중도매인의 법인소속 구분없는 경매참여유도 및 매참인·직판상인의 총체적 경매참여 허용

□ 대안별 장단점(현행유지와 개선안 비교)

| | |
|-----|------------------------------------------------------------------------------------------------------------------------------------------------------------------|
| 개선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상옥 구조의 해소로 관리운영 효율성 제고 - 위탁상장수수료율의 축소 - 도매시장 수익의 재투자 제도화 - 경매등 도매시장 거래체계의 공정성 제고 |
|-----|------------------------------------------------------------------------------------------------------------------------------------------------------------------|

4. 추진방법

신규예산 확보 및 예산확대

- 도매시장법인에 지원된 농안기금의 관리공사 전환

농안법령 및 관련법규 개정

- 농안법 제2조 4호, 제12조2항, 제26조, 제27조 개정

관계부처 협의등

- 행정자치부, 서울특별시등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협조

1-2-3 도매시장 관리·운영 일원화 방안검토

(전국농산물산지유통인중양연합회)

1. 현황

□ 현행제도

- 도매시장의 정책은 공익적 차원에서 정부의 마스터플랜에 입각하여 건설되고 있으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투자로 건설.
- 현행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에 규정하는 바와 같이 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등의 도매시장 내의 유통관련 기구를 두고 있으며, 개설자는 관리공사 또는 관리사업소를 두고 관리운영을 하고 있음.

□ 추진실적

- 현재 가락동 도매시장과 구리도매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공영도매시장은 관리사업소 체제를 운영.

2. 개선의 필요성

□ 문제점

- 관리공사체제
 - 관리공사체제의 경우 운영은 도매시장법인 그리고 관리 및 감독은 관리공사가 담당하고 있으나 관리공사의 시설물 관리기능중 유지보수 그리고 확충에 관한 예산편성 자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통제를 받고 있어 시장시설수요의 발생시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 한편으로 관리감독의 경우에는 당해 시장내에서 농안법을 통한 불법거래행위의 감독(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을 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권의 집행권이 주어지지 않고 있어 불법행위 적발시 즉각적인 제제가 어려운 실정임

- 관리사업소의 경우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도매시장내에서 근무하지만 순환 보직체도로 인하여 전문성이 결여되어 시장통제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실제로 지방도매시장의 경우 농안법내의 도매시장제도의 근간이 되는 상장경매제의 시행은 매우 어려운 상황임.

□ 여건변화

- 유통시장개방으로 외국 유통업체의 국내진출과 함께 선진외국의 도매시장 관리운영에 관한 정보가 국내에 도입되고 있으며 이의 도입에 대한 시도가 이루어 지고 있음.
- IMF관리체제에서 농정분야의 구조조정이 요구되고 있으며 예산집행의 우선순위도 조정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계획한 전국 공영도매시장 건설계획(34개소)에도 조정이 요구되고 도매시장 분야의 공공투자외에도 민간자본의 투자가 거론되고 있음.

3. 개선방안

□ 대안제시

- 관리운영에 관한 권한은 결국은 투자주체가 결정하여야 할 것임.
- 공영도매시장의 경우는 국비와 지방비가 투입되어 형성되는 것이므로 그 시설의 소유권은 농안법에서 규정하는 개설자이거나 개설자가 위임하는 지방공사 또는 사업소가 되어야 할 것임.
- 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공익을 위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이라는 차원에서 공영도매시장을 건설하는 것이므로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법인에게 관리와 운영전체를 위임한다면 그 목적과 의의가 퇴색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특혜시비가 끊이지 않게 될 것임.
- 다만 운영의 경우 지방공사나 사업소의 성격상 조직의 탄력성이거나 사업수행능력을 판단하여 운영권을 민간인에게 위탁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재산을 보유하는 기관에서 유지보수 및 관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임.

- 한편 민간법인이 시장건설과정에서 자기자본을 투자(기부채납의 조건등으로) 한다면 이는 일정기간 후 소유권의 이전을 의미하며 관리운영의 일원화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있을 것임.
- 예를 들어 가락동 도매시장내의 축협공판장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을 것임.

□ 대안별 장단점

| 구 분 | 장 점 | 단 점 |
|-------------------------------------|------------------------------------------------------------------------------------------------------------------------------------------|------------------------------------------------------------------------------------------------------------------------------|
| 관리운영 일원화 (민간자본 건설을 전 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고예산의 절감 및 투자효율을 전제로 함으로 과잉투자 방지 ○ 운영권자가 직접관리까지 함으로 시설유지보수가 신속하여 서어비스 개선 가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수익제고와 회수를 위한 시장사용료의 과다징수로 유통비용 상승우려 ○ 공정거래질서 유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
| 현행체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나 관리사업소가 유지됨으로서 거래질서 확립 ○ 공공투자로 인한 비교적 저렴한 시장사용료로 유통비용 저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감독에 관한 행정권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어 실질적으로 통제가 아닌 도매시장의 법인 및 중도매인의 견제역할에 국한 |

□ 외국사례

- 도매상제도로 운영되는 미국의 NEW YORK TERMINAL MARKET의 경우 NEW YORK항만청에서 관리하다가 관리권을 상인조직으로 이관하였으나 USDA와 FBI의 상주로 시장거래질서를 확립.

□ 개선(안)

- 도매시장건설시 개설자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법인으로 확대하고 투자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관리운영권을 결정
 - 공공투자는 개설자의 판단에 따라 결정
 - 민간투자는 투자자의 판단에 따라 결정
- 한편으로는 도매시장내의 유통주체들의 유통효율화를 위한 관리공사의 관리운영권을 강화하도록 행정권의 집행권을 위임

4. 추진계획

□ 추진방향

- 농산물 도매시장 사업참여의 자유화 및 민간자본 참여유도

□ 주요 추진시책

- 민간자본 참여유도를 위한 정부 적극적 지원
 - “예” 부지는 정부가 제공하되 건설은 민간자본(기부채납조건)참여

1-2-4 도매시장 관리·운영 일원화 방안검토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1. 현 황

□ 현행제도

○ 법적규정(농안법 제12조)

| 구 분 | 관 리 | 운 영 |
|------|----------------------------------------------------------------------------------------------------------------------------------------------------------------------------------------------------|-------------------------------------------------------------------------------------------------------------------------------------------|
| 주 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사무소 • 관리공사 • 공공출자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매시장법인 • 공판장 • 공공출자법인 |
| 주요임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물관리, 거래질서유지 • 유통종사자 지도감독 • 도매법인이 납부한 보증금 및 담보물 관리 • 도매시장사용료, 부수시설 사용료 및 쓰레기유발부담금 징수 • 기타업무규정으로 정한 사항의 시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하주로부터 수탁판매 업무대행(물량수집, 가격형성, 대금정산) • 기타부대업무 (품목의 산지 포장, 선별, 저장등의 출하관련사업) |

○ 공영도매시장 관리운영 실태

- 관 리 : 관리사무소 16개소, 관리공사 2개소, 공공출자법인 전무
- 운 영 : 도매시장법인, 공판장

2. 개선 필요성

□ 문제점

- 현행 유통구조에 따른 비효율 및 유통비용 과중 논란 대두
 - 동일시장내 다수법인의 경매로 시설이용을 저하, 一物多價 발생, 중복 정산체제
 - 관리운영 인력 과다 문제 : 1,358명(관리공사 289, 법인 1,069)
 - 수행기능에 비해 과다한 상장수수료 징수(5~7%) 및 하역비 증가

- 공영도매시장 운영의 특혜 및 공정성 논란 계속
 - 영리법인인 도매시장법인에 수탁 독점권 부여 및 법인 경매원칙 고수로 공영시장의 특혜 시비
 - 경매사가 특정법인 소속하에 있고 경매 가격 결정업무이외에 물량유인, 마수금회수등 부수적 업무수행으로 경매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한계 논란

- 도매시장법인의 기능수행 미흡과 필요성 저하
 - 상활동의 위험부담 없이 위탁판매만 하면서 수수료만 챙긴다는 여론
 - 정보기술의 발달, 생산자 단체의 역할증대 등으로 실질적인 집하 기능 수행등 법인 본원적 기능 필요성 저하

- 시장운영제도 및 관리주체 비효율 논란
 - 동일시장내 이해상반되는 영업주체(법인, 중도매인)와 다수법인 입주에 따른 영업권 조정, 불법시설, 비허가상인, 불공정행위 단속함
 - 관리사무소의 전문인력확보 부족, 시장운영 개선의지 부족과 관리공사의 공권력 행사한계등 비효율 논란

3. 개선방안

□ 대안제시

(제1안) 공공출자법인으로 일원화 방안

(제2안) 관리공사로 일원화 방안

(제3안) 공익적 자본참여 방안

□ 현행제도의 장단점

| 형 태 | 장 점 | 단 점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 : 개설자 (관리사무소, 관리공사) - 운영 : 민간법인 지정 (도매시장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법인의 자율성 활용 ◦ 여건변화에 신속적 대처 가능 ◦ 출하자와 긴밀한 유대관계 ◦ 다수의 도매시장법인간 경쟁성 유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매시장의 건설, 관리, 운영 주체가 달라 비효율 ◦ 관리, 운영주체간 업무중복 역할분담 미흡여론 ◦ 도매시장법인의 고유기능 수행 미흡 ◦ 민간법인 운영시 영리추구 불가피 ◦ 이해집단의 기득권 유지화 경향 ◦ 유통비용의 획기적 절감추진 불가 ◦ 경매업무의 공정성 확보 곤란 ◦ 생산자(단체)의 판매기능 참여제한 -- 수탁독점권 부여 ◦ 이익발생시 공익적 재투자 불가능 |

□ 대안별 장단점

| 방 안 | 장 점 | 단 점 |
|-------------------------------------------------------------------------------------------------------------------------------------------------------------------------------|------------------------------------------------------------------------------------------------------------------------------------------------------------------------------------------------------------------------------------------------------------------------------------------|--------------------------------------------------------------------------------------------------------------------------------------------------------------------------------------------------------------------------------|
| <p>(제1안) 공공출자법인으로 일원화 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관리공사, 법인, 생산자단체등 공동출자 (신설시장) <p>※ 현행 농안법 유지</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운영의 단순화·효율화 ◦ 민간의 자본참여 확대 (자율성, 창의성) ◦ 경영여건 변화에 신속대응 ◦ 산지와 도매시장간 연계 강화 ◦ 유통비용 절감 가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주간 이해조정 지난 ◦ 민간자본 참여는 수익성 보장 불가(이익배당시 생산자·소비자 부담가중) ◦ 주식회사 형태로 각종 세금 등 불리 ◦ 관리시 공권력 행사 약화 ◦ 대규모투자사업 시행 불가 ◦ 새로운 제도 시행의 위험 부담 |
| <p>(제2안) 관리공사로 일원화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매시장법인 폐지 - 법인기능을 관리공사가 직접수행 <p>※ 농안법 개정필요</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영도매시장의 비영리적 운영 ◦ 유통비용의 획기적 절감 가능 ◦ 시설사용의 효율성 극대화 ◦ 경매업무의 공정성 확보 ◦ 유통전문인력 육성 용이 ◦ 유통정보 업무의 발전 ◦ 공기업으로 각종 세금 절감 용이 ◦ 현행 체제에서 단계적 접근가능(운영인력 수용등) ◦ 실효적 관리능력 증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권력 행사 제한 ◦ 운영의 경직화 경향 ◦ 도매시장법인의 직접적 저항 예상 |
| <p>(제3안) 공익적 자본참여 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도매시장법인에 개설자(관리공사), 생산자단체가 경영권 참여 - 부실법인부터 자본금의 50%이상 투자 <p>※ 농안법 개정필요</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도매시장법인의 영업형태 유지 가능 ◦ 공익적 운영 실현가능 ◦ 생산자단체의 도매시장 경영참여 가능 ◦ 다수의 도매시장법인간 경쟁성 유지 ◦ 유통비용 절감 가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주주의 이익배당 불가피 ◦ 적대적 M&A 여론 ◦ 도매시장법인 경영층 반발예상 |

□ 외국의 사례

- 일본 동경도의 사례
 - 관리대상 : 11개 도매시장, 4개분장
(총 관리대상 면적 : 가락시장의 2배 면적)
 - 관리형태 : 공무원 조직으로 총786명 근무(전문성 확보위해 전보제한, 우리나라의 직영기업과 유사한 형태)
 - 운영 형태 : 우리나라와 같은 도매시장 법인형태이나 통일된 회계 기준 적용 및 이익배당 제한
- 대만 대북시의 사례
 - 관리대상 : 3개 도매시장, 73개 소매시장
 - 관리 및 운영 : 공공법인이 직접 관리와 운영
 - 배당은 철저히 제한되며, 이익금은 생산자 지원사업에 사용
 - 저율의 상장수수료 징수 : 출하자 부담 1.6% (우리나라 : 5~7%)
 - ※ 전국 도매시장 중 대북시 제1, 제2 도매시장만 경매방식 채택
(기타는 지자체 자율 선택)

□ 우리의 여건

- 현재 개장 운영중인 18개 공영도매시장이 모두 관리와 운영 이원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 일부 활성화가 미흡한 도매시장과 신설도매시장에 대한 관리운영 이원화방안이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분위기

□ 개선(안)

- 공공기관에 의한 관리운영 이원화 하되, 도매상제 도입방안과 연계하여 도입추진
- 위치, 규모, 상권에 맞는 관리운영시스템 도입
 - 도매상 중심의 도매시장의 관리·운영 ⇒ 관리공사 형태가 운영용이
 - ※ 강력한 공권력 행사가 불필요하고 공익적 통제시스템(품질, 안전성, 신용평가등)과 전문적 행정서비스(유통정보, 거래내역 투명화, 시설물 적기 개보수등) 필요

- 경매 위주의 도매시장의 운영(기존 시장중 경매시장으로 유지할 경우)

- 품목별 경매 실시
- 전자식 경매제 실시
- 공동정산소 운영

※ 도매시장법인은 위탁인을 대신하여 상장시켜 주는 역할 수행(증권회사 운영형태) ⇒ 자연히 상장수수료는 인하가 가능하고 경매사는 단순 경매진행만 하므로 관리공사 직원화

- 신설도매시장을 경매시장으로 할 경우(예, 서남권시장)

- 생산자 단체가 도매법인대신 직접 상장경매
- 관리공사는 경매운영 및 공공질서 유지 업무 수행

1. 현황

□ 현행제도

- 도매시장개설자는 소속공무원으로 구성된 도매시장 관리사무소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관리공사 및 공공출자법인으로 하여금 시설물 관리, 거래질서유지, 유통종사자지도 감독 등 도매시장의 관리업무를 하게 할 수 있음(농안법 제12조제2항)

□ 추진실적

- 공영도매시장관리는 현행 농안법에 의거 자자체가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 직접관리하거나 지방공기업을 설립하여 위탁관리
 - 관리공사체제(2개소) : 가락동도매시장, 구리시도매시장
 - 관리사무소체제(17개소) : 기타 지방공영도매시장

2. 개선 필요성

□ 문제점

- 대부분의 경우 지자체 공무원에 의한 직접관리로 관리운영상의 비효율초래
 - 담당공무원의 잦은 전보에 의한 전문성저하와 현장근무 기피로 관리소홀 경향
 - 전국 공영도매시장간 유기적 연계운영이 어려워 일관되고 전국적인 도매유통정책추진에 애로

□ 여건변화

- 공영도매시장의 개장확대에 따라 도매시장의 기능과 역할 증대
- 물류센터, 직배센터 등 신물류유통체계의 고효율, 저비용 실현을 위한 직거래확산

3. 개선방안

□ 대안제시

- 지자체 공무원의 직접관리방식
- 자자체별 관리공사설립방식
- 유통전문기관에 의한 위탁관리방식

□ 대안별 장단점

| 구분 | 현행 | | 개선안 |
|----|----------------------------|-----------------------------------------------------------------------------|--------------------------------------------------------------------------------------------------------------|
| | 제1안 (지자체직접관리방식) | 제2안 (자자체별관리공사설립방식) | 제3안 (유통전문기관위탁관리방식) |
| 장점 | ○ 시장질서유지 및 통제를 위한 공권력 행사용이 | ○ 시장관리업무의 전문성 제고 | ○ 시장관리업무의 전문성 제고 ○ 최소의인력 및 예산으로 시장관리가능 ○ 전국적인 도매시장관리 체제구축가능 - 일관성있는 유통정책 추진가능 - 도매시장유통정보공유 체제구축등 |
| 단점 | ○ 담당공무원의 전문성결여 및 시장근무기피성향 | ○ 다수의지방공기업신설이 불가피 ○ 시장거래규모 및 수입 예산감안시 개별공기업 설립은 무리 ○ 전국공영도매시장의 연계운영곤란 | ○ 지자체, 지방의회의 반대 가능성 |

□ 외국의 사례

- 미국 뉴욕 헌트포인트도매시장
 - 도매상대표로 구성된 Coop(도매상조합)이 관리운영권을 가지고 있으며, Coop은 관리 전문회사인 ABC Management Co.에 위임하고 있음
- 프랑스 런지스도매시장
 - 파리 런지스도매시장정비관리공사(SEMMARIS)가 개설자로부터 위임받아 관리운영하고 있음

□ 우리의 여건

- 최근 각 지자체가 시장관리를 전담할 시장관리공사 설립을 구상 또는 추진중에 있어 다수의 지방공기업이 더 신설될 것으로 전망됨
 - 관리공사 설립시 막대한 예산 및 인력 소요예상

□ 개선(안)

- 운영은 현행제도를 유지하되, 관리체제는 시장관리의 전문성제고, 전국 도매시장간 연계관리 및 유통정보공유체계 구축 등이 용이한 위탁관리방식도입
 - 공익법인인 유통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관리일원화 추진

4.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지방공무원들의 전문성결여 및 인력부족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관리담당 직원의 업무전문화로 시장관리의 효율성을 제고
- 전국권 공영도매시장관리체계확립으로 도매시장기능을 강화
 - 전국권 유통정보 종합관리 및 신속제공으로 생산농가 보호
 - 정부의 도매시장에 대한 일관된 정책 추진가능

- 지방자치단체별 관리공사 설립운영시 소요되는 불필요한 인력절감으로 관리성경비의 최소화
 - 최소한의 인력운영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 부담경감
 - 급여 등의 최소경상비를 제외한 수입은 개설자 귀속으로 지방자치단체 세입증가에 기여

주요추진시책

- 시장개설자인 지자체의 입장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 우선 유통전문기관에 위탁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농안법에 마련
 - 실제 시장위탁관리에 있어서도 지자체의 위탁의사가 있는 시장부터 우선 위탁관리추진
- 위탁관리시 위탁관리 비용지급,정산결과에 따른 손익처리 등에 있어서는 위탁관리기관과 해당 지자체간 체결될 위탁계약내용에 반영

신규사업개발

- 해당없음

5. 추진과제 및 일정

예산이나 기금확보

- 기존 도매시장운영개선사업비에 반영

농안법령 및 관련업무 개정

- 도매시장위탁관리근거마련(농안법)

관계부처협의 등(해당없음)

6. 투융자 계획(해당 없음)

2-1-1 민간자본유치 도매시장건설 및 거래자유화 방안

1. 공영도매시장 건설 추진배경

□ '91.6월 농수산물유통구조개선 대책에 따라 공영도매시장건설 추진

- 건설목표 : 2001년까지 전국 주요도시에 34개소 건설
 - 서울 3개소, 5개광역시 각 2개소, 기타 21개시 각 1개소

< 당시의 상황 >

- 공영도매시장건설 지연으로 유사도매시장 거래성행
 - 공영도매시장이 가락동 등 6개소에 불과(가락, 대전, 대구, 청주, 울산, 광주)
 - 공영도매시장 건설부지 확보 애로

□ '94.12월 농수산물유통개혁대책 세부실천계획에 따라 공영도매시장 건설계획을 당초 2001년에서 '98년까지 조기 건설 추진

- 공영도매시장 조기 건설로 유사시장을 제도권내로 흡수('94.5월 농안법 파동이후)

2. 현재까지 건설 추진상황

(단위:개소)

| 계 | 개장 | 건 설 추 진 중 | | | 비고 |
|----|----|-----------|-------------|-------------|----|
| | | 건축공사중 | '98상반기 착공예정 | '98하반기 착공예정 | |
| 34 | 18 | 8 | 4 | 4 | |

※ 이와는 별도로 공영도매시장이 없는 중소도시에 공판장건설 추진 ('89이후 국고지원으로 34개소 건설 추진 : 21개소 개장, 13개소 건설중)

3. 시장현황

| 구 분 | 개 설 | 운영방식 | 개장상황 |
|---------|--------------------------------------------------|-----------------------------|---------------------------------------|
| 공영도매시장 | ○ 시(市)가 공공투자로 농림부장관 또는 도지사허가를 얻어 개설 | ○ 상장경매체제 | ○ 34개 목표중, 18개소 개장, 16개소 건설 추진중 |
| 공 판 장 | ○ 농·수·축협이 시·도지사 의 승인을 얻어 개설 (‘89이후에는 국고지원) | ○ " (필요시 거래방법을 달리할 수 있음) | ○ 67개 목표중, 54개소 개장, 13개소 건설 추진중 |
| 사설도매시장 | ○ 개설자는 시장(市長)이 나 소유자는 민간(일부 는 시에 기부채납) | ○ 상장경매체제 | ○ 총17개소(청과) |
| 유 사 시 장 | ○ 개설자없이 자연발생 적으로 형성(도매시장 명칭 사용불가) | ○ 제한없음 | ○ 전국에 산재 |

※ 농안법상 도매시장 개설자 : 특·광역시, 시

※ 농안법상 공영도매시장중 국고지원으로 건설된 특·광역시, 도청 소재지 소재 시장 및 2이상 시(市)가 공동투자한 시장(13개소)이외의 시장과 사설도매시장은 지방도매시장으로 분류

4. 개선필요성

□ 문제점

- 도매시장 개설자에 민간인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어 민간자율을 강조하는 시대적 분위기에 적절치 못함
- 일부 소규모 지방도매시장의 경우 상당수 품목이 상장경매체제가 제대로 안되고 있어 법과 관행의 괴리 발생
- 도축시설과의 연계가 필요한 축산물도매시장의 경우 시 지역에만 도매시장개설을 허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음

□ 여건변화

- 유통시장개방에 따라 농산물유통업체에 외국업체 참여 증가
- 전 산업분야에 대한 규제 완화로 자율경쟁 촉진

5 개선방안

□ 대안제시

- 도매시장 구분 재조정

| 구 분 | 현 행 | 개 선 안 |
|-------------|---------------------------------------------------|---------------------------------------------------------|
| 중 앙 도매시장 | ○ 국고지원으로 건설된 특·광역시, 도청소재지 소재 시장과 2 이상 시가 공동투자한 시장 | ○ 국고지원으로 건설된 특·광역시 소재 시장과 2 이상 시가 공동투자한 시장 |
| 지 방 도매시장 | ○ 위 시장이외의 시장 (일반시 지역 소재 시장, 지방정부투자 시장, 사설도매시장) | ○ 위 시장이외의 시장 (국고지원 도청소재지 및 일반시 소재 시장, 지방정부투자시장, 사설도매시장) |

- 지방도매시장은 민간자본의 개설허용 및 거래방식의 민간자율 결정
- 다만, 과잉투자 방지를 위해 공영도매시장 건설 지역은 배제
- 군(郡) 지역도 도매시장개설 허용

□ 민간자본 유치 도매시장 개설허용시 장·단점

| 장 점 | 단 점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중소도시에서 민간의 도매시장 개설 허용으로 규제완화 및 기존 도매시장, 공판장과의 경쟁촉진 ○ 거래방식 자유화로 출하자의 선택권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 참여시장이 늘어날 경우 과잉투자로 인한 문제점 상존 ○ 공영도매시장 건설 지역외에서 공판장을 운영하는 농협측의 반발예상 |

※ 공판장 개설지역까지 배제할 경우는 개선의 실익이 없음

6. 추진계획

- 민간자본 도매시장 개설허용에 따른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농협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유통개혁대책단에서 검토

< 참고자료 >

1. 공영도매시장 및 공판장 건설 추진현황

□ 공영도매시장 : 2001년까지 34개소 건설

(단위:개소)

| 계 | 개장 | 건설추진중 | | | 비고 |
|----|----|-------|-------------|-------------|----|
| | | 건축공사중 | '98상반기 착공예정 | '98하반기 착공예정 | |
| 34 | 18 | 8 | 4 | 4 | |

- 개장운영(18개소) : 가락동,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수원, 청주, 전주, 울산, 천안, 창원, 충주, 춘천, 구리, 안양, 안산, 익산
- 건설추진중(16개소)
 - 건축공사중(8개소) : 부산제2, 진주, 성남, 정읍, 서울서남, 인천제2, 안동, 강릉
 - '98착공예정(8개소)
 - 상반기(4개소) : 대전제2, 고양, 순천, 포항
 - 하반기(4개소) : 구미, 원주, 광주제2, 마산

□ 공판장 : '98까지 34개소 건설

| 계 | 개장 | 건설추진중 | | 비고 |
|----|----|-------|---------|----|
| | | 건축공사중 | '98착공예정 | |
| 34 | 21 | 10 | 3 | |

※ 농협자체 확보분 33개소 포함시는 총 67개소임

2. 민간자본 유치 도매시장건설 가능지역(개선방안 적용시)

| 지역별 | 행정구역상 市(A) | 공영도매시장 및 공판장수 | | 민간개설가능 지역(A-B) | 비고 |
|-----|---------------|---------------|--------|-------------------|--------|
| | | 도매시장(B) | 공판장 | | |
| 서울 | 1 | 2(1) | - | (중앙도매시장) | 민간유치불허 |
| 부산 | 1 | 2(1) | - | " | |
| 대구 | 1 | 1 | - | " | |
| 인천 | 1 | 2(1) | - | " | |
| 광주 | 1 | 2(1) | - | " | |
| 대전 | 1 | 2(1) | - | " | |
| 울산 | 1 | 1 | - | " | |
| 경기 | 21 | 6(2) | - | 15 | 지방도매시장 |
| 강원 | 7 | 3(2) | 1(1) | 4 | |
| 충북 | 3 | 2 | 2 | 1 | |
| 충남 | 6 | 1 | 7(5) | 5 | |
| 전북 | 6 | 3(1) | 5(1) | 3 | |
| 전남 | 6 | 1(1) | 5(2) | 5 | |
| 경북 | 10 | 3(3) | 8(1) | 7 | |
| 경남 | 9 | 3(2) | 5(2) | 6 | |
| 제주 | 2 | - | 1(1) | 2 | |
| 계 | 77 | 34(16) | 34(13) | 48 | |

※ ()내서는 건설추진중인 지역이며, ¹⁾은 시(市)지역까지만 허용시의 가능지역임

2-1-2 민간자본유치 도매시장건설 및 거래자유화 방안

(농협중앙회)

1. 현 황

가. 농산물공판장 건설 사업 추진현황

추진방향

- '98년까지 34개소 건설
- 공영도매시장이 없는 중소도시의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가격안정 도모

사업목적

- 중소도시 지역의 농산물 유통량 증가에 따른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가격안정 도모
- 관내 농산물의 판매처리능력 제고 및 공정거래로 상거래 질서 유지의 선도적 역할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농협 회원조합
- 지원내용 : 농산물공판장 건설 부지매입비 및 건물건축비
- 지원기준 및 조건
 - 국고보조 40%, 지방비보조 20%, 국고융자 20%, 자부담 20%

□ 공판장 건설 추진현황(보조사업 건설)

(단위 : 개소)

| 계 | 개장 | 건설추진중 | | |
|----|----|-------|----------------|----|
| | | 건축공사중 | '98상반기 착공예정 | 비고 |
| 34 | 21 | 10 | 3 | |

□ 농협회원조합 공판장 운영현황('97.12.31현재)

| 운영수(개소) | 사업실적 | | 비고 |
|---------|--------|--------|----|
| | 물량(천톤) | 금액(억원) | |
| 76 | 1,241 | 9,534 | |

나. 공판장 기능 및 역할

- 공영도매시장이 없는 중소도시의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가격안정 도모
- 관내 출하농산물을 집하하여 관내공판장을 통하여 판매(분산)함으로써 생산농가의 노동력 및 유통비용 절감으로 농가 실익 제공
- 하급품, 소량다품목(순회수집) 등과 같이 대도시에 출하하기에는 경쟁력이 낮은 농산물에 대한 유리한 판매처를 제공
- 농산물도매시장이 부족한 현실에서 농산물을 적절히 배분하는 지방도매시장 역할 수행
 - 생산지농산물의 판매처리능력 제고, 상장경매에 의한 공정거래로 지방농산물유통의 선도적 역할 담당

2. 개선필요성

□ 문제점

-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도매시장을 개설할 경우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도매시장으로 과연 농업인편에서 수취가격 제고를 위할 것인가부터 신중히 검토되어야 함
 -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농협공판장은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수취가격 제고를 위해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
- 민간참여시장이 늘어나 기존공판장과 중복될 경우 과잉투자는 물론 공판장의 기능과 역할은 없어지고 민간자본도매시장이 오히려 활성화 될 것이며, 공익적 기능 수행은 기대할 수 없을 것임
- 공영도매시장, 공판장 개설(인근지역 포함)지역에 민간자본 도매시장 개설 및 거래방식의 자유화시는 기존의 유통종사자들도 현제도의 도매시장을 떠나 거래가 자유화된 도매시장으로 이동 우려가 있음
- 검토과제로 도입시 현재의 공영도매시장 및 농산물공판장까지 파급이 확대되어 농안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체계의 붕괴 등 농수산물 유통질서의 혼란이 일어날 소지가 있음
 - 민간자본의 지방도매시장 개설허용 및 거래방식의 민간자율결정은 결국은 농수산물도매시장제도가 도매상체제로 가게 될 것임
- 중소도시 지역내 기존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과의 경쟁은 촉진될지라도 종사자들의 현상유지를 위한 유통비용 발생은 증가될 것임

3. 개선방안

□ 대안제시

- 지방도매시장 민간자본의 개설 허용시 및 거래방식의 자율 결정을 도입할 경우 과잉투자 방지 및 공익적 기능 수행을 위해 공영도매시장과 공판장 건설지역은 배제하여야 함

- 공판장 개설지역까지 배제할 경우는 개선의 실익이 없다는 데 대하여는?
 - 현행 농산물공판장이 개설(개설예정 포함)된 중소도시지역의 여러여건상(지역내농산물 생산 및 소비량, 중도매인 규모등) 공판장의 기능을 확대하고, 사업량을 증대함으로써 지역도매시장 역할 수행은 가능할 것임
 - 공판장에서 상장경매제가 제대로 안되는 등 불공정 거래로 인한 문제점은 거의 없음

< 농협 회원조합 연도별 사업실적 증가 현황 >

| 구 분 | '94년 | '95년 | '96년 | '97년 | 성장을 ('94대비) |
|--------------|-------|-------|-------|-------|-----------------|
| 금 액 (백만원) | 6,447 | 7,058 | 8,901 | 9,534 | 48% |

○ 공판장의 기능 확대 추진

< 필요성 및 효과 >

- 기존의 산지공판장 기능에 선별, 포장, 저장, 단순가공 기능을 보완 복합적 운영으로 산지유통 기능의 효율성 극대화
- 기능을 확대함으로써 소매업체의 대형화 및 물류센타 등에 의한 직거래 증가등 소비지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산지유통기반 취약점 보완
- 농가의 인력부족에 의한 산물출하 및 순회수집품목 등을 선별·포장화로 상품성을 제고함으로써 농가수익 증대 효과

< 추진방향 >

- 기존의 집하, 분산기능과 함께 소포장, 저장등을 겸한 종합처리(집하→선별→포장,단순가공→저장,예냉→ 분산,도매)
- 선별, 포장, 저장기능을 추가 건설시 시설자금 지원 필요

< 참고자료 >

농협공판장 시·도별 운영 현황

(‘97. 12. 31현재)

(단위: 개소수, 억원)

| 구 분 | 계 | | 중앙회공판장 | | 회원조합공판장 | |
|-----|-----|--------|--------|-------|---------|-------|
| | 개소수 | 사업실적 | 개소수 | 사업실적 | 개소수 | 사업실적 |
| 서울 | 4 | 3,507 | 4 | 3,507 | | |
| 부산 | 3 | 1,336 | 3 | 1,336 | | |
| 대구 | 3 | 1,204 | 2 | 949 | 1 | 255 |
| 인천 | 4 | 608 | | | 4 | 608 |
| 광주 | 3 | 1,379 | 1 | 319 | 2 | 1,060 |
| 대전 | 2 | 845 | 1 | 732 | 1 | 113 |
| 울산 | 1 | 341 | | | 1 | 341 |
| 경기 | 6 | 1,130 | 2 | 469 | 4 | 661 |
| 강원 | 2 | 255 | | | 2 | 255 |
| 충북 | 4 | 512 | | | 4 | 512 |
| 충남 | 3 | 358 | | | 3 | 358 |
| 전북 | 9 | 1,495 | | | 9 | 1,495 |
| 전남 | 7 | 972 | | | 7 | 972 |
| 경북 | 25 | 1,415 | | | 25 | 1,415 |
| 경남 | 13 | 1,608 | 1 | 278 | 12 | 1,330 |
| 제주 | 1 | 159 | | | 1 | 159 |
| 계 | 90 | 17,124 | 14 | 7,590 | 76 | 9,534 |

2-2 농수산물 공판장 자회사 전환 검토

(농협중앙회)

1. 현 황

□ 농협공판장 운영현황

○ 운영 개소수('97.12.31현재)

| 구 분 | 계 | 중앙회공판장 | 회원조합공판장 |
|-------------|----|--------|---------|
| 공영도매시장입주공판장 | 19 | 7 | 12 |
| 자체공판장 | 71 | 7 | 64 |
| 계 | 90 | 14 | 76 |

○ 사업실적('97.12.31현재)

(단위 : 억원,천톤)

| 구 분 | 계 | 중앙회공판장 | 회원조합공판장 |
|-----|----------|---------|---------|
| 물 량 | (1,275) | (606) | (669) |
| | 2,040 | 799 | 1,241 |
| 금 액 | (10,743) | (5,295) | (5,448) |
| | 17,124 | 7,590 | 9,534 |

주) ()내는 공영도매시장 입주공판장 실적임

□ 현행제도

○ 농수산물 공판장의 정의

농업협동조합·임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이하 “농림축수협등”이라 한다)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이 농수산물을 판매하기 위하여 개설·운영하는 사업장(농안법 제2조제3호)

※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시행령 제3조)

- 농수산물 유통공사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공사
- 공판장의 개설
농림축수협등이 공판장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함(법 제39조)
- 유통자회사의 설립
농림축수협등은 농수산물 유통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수산물물류센터의 운영 및 기타 유통사업을 수행하는 별도의 법인(이하 “유통자회사”라 한다)을 설립·운영할 수 있음
유통자회사는 상법상 회사이어야 함(법 제57의5)

※ 유통자회사의 사업범위(시행규칙 제32조의 3)

- 농수산물 수퍼 및 농수산물 직판장등 소비자유통사업
- 농수산물의 상품화 촉진을 위한 규격화 및 포장개선 사업
- 기타 농수산물의 운송·저장사업등 농수산물 유통의 효율화를 위한 사업

□ 추진실적

- 농림부 업무 협의
 - 농협공판장의 자회사 전환 설립에 관한 업무 협의
- 서울시 업무 협조 요청
 - 가락공판장 자회사 전환 추진을 위해 서울시에 협조 요청
 - 개설자(서울시)의 의견을 받은후 추진코자, 농협공판장의 도매시장법인으로서 지정 등에 관한 협조 요청
- 농림부 100대 과제 세부추진 계획사항
 - 도매시장의 효율성 증진과 공정거래 확보→도매시장내 농협공판장의 자회사 전환 추진

2. 개선필요성

□ 추진 필요성

- 농수산물도매시장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
- 주식회사 형태의 중앙회 자회사로 전환하여 경영 효율성 제고
- 농협의 물류센타 개장과 더불어 농산물 도매업무의 전문화 도모

□ 문제점

- 현행 제도상 농림축수협등의 자체 농수산물공판장은 자회사 전환 추진이 불가함
- 공영도매시장 입주공판장의 경우 도매시장법인 형식으로 개설자의 지정을 받아야 자회사 전환 설립이 가능하여 추진이 지난함
- 도매시장법인 형식으로 자회사화 하는 경우 농안법상 생산자단체에 대한 우대지원 조항을 적용받지 못함

3. 개선방안

□ 대안제시

- 농안법에 농림수축협의 기존 공판장을 자회사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농림축수협등이 설립 운영하는 유통자회사도 농수산물공판장을 개설 운영 가능토록 농안법 개정
 - 생산자단체 우선지원 등에서 유통자회사도 농림축수협등과 동일하게 적용 받도록 농안법 관련규정 개정
 - ※ 농안법 개정(안) 검토(현행대비) : 붙임

□ 대안별 장단점

- 제 I 안(현행) : 농림축수협 의 농수산물공판장 운영
- 제 II 안(자회사 설립) : 유통자회사를 설립하여 농림축수협등의 기존 공판장을 운영 또는 신규 개설
- 장단점

<제 I 안>

(장점)

- 거래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에 초점을 두고 공익적 운영
- 농안법상 특례 운영
→ 지정·재지정 절차가 없음, 특례 운영으로 유통성 확보

(단점)

- 조직 운영 경직성으로 경쟁력 열세
- 공공성, 공익성 위주 경영으로 운영 내실화 소홀

<제 II 안>

(장점)

- 기업경영방식에 의한 독립성 부여로 책임경영체제 구축 용이
- 조직, 인력, 예산 등의 탄력적 경영으로 경쟁력 확보
- 유통환경변화에 따른 신속한 대응 및 도매업무의 전문화 도모

(단점) 없음

4.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상법상주식회사 형태 자회사화
- 농협 100% 출자 전환 설립
- 대상 공판장
 - 기존 공영도매시장 입주공판장중 입주 도매법인과의 경쟁이 치열한 공판장 ⇒ 가락공판장
 - 공판장 1개소를 '98 상반기에 추진하고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98하반기 이후 단계적 확대 검토

5. 추진과제 및 일정

농안법령 및 관련법규 개정

- 농안법 개정(안) 검토(현행대비) : 불임

6. 투융자 계획

“없음”

< 참고자료 >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관한법률 개정안(현행대비)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 2의3. (생략)</p> <p>3. “농수산물공판장”이라 함은 농업협동조합·임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이하“농림축수협등”이라 한다)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법인으로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이 농수산물을 판매하기 위하여 개설·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p> <p>4. ~ 10. (생략)</p> |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 2의3. (생략)</p> <p>3. “농수산물공판장”이라 함은 농업협동조합·임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이하“농림축수협등”이라 한다) 또는 제57조의5의 규정에 의한 유통자회사(이하 “유통자회사”라 한다)와 공익상 필요하다고인정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이다</p> <p>이.....</p> <p>4. ~ 10. (생략)</p> |
| <p>제39조(공판장 개설) 농림축수협등 또는 공익법인이 공판장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신설)</p> | <p>제39조(공판장 개설) ① 농림축수협등과 유통자회사 또는 공공익법인이.....</p> <p>② 농림축수협등은 그가 개설 운영하는 공판장의 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통자회사가 운영하는 공판장으로 전환할 수 있다.</p> |

| 현행 | 개정안 |
|--------------------------------------------------------------------------------------------------------------------------------------------------------------------------------------------------------------------------------------------------------------------------------------|------------------------------------------------------------------------------------------------------------------------------------------------------------------------------------------------------------------------|
| <p>제42조(우선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설치한 농수산물 유통 시설에 대하여 생산자단체 또는 농림축수협중앙회나 공익법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시설이용·면적배정등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p> <p>제57조의5(유통자회사의 설립) ① 농림축수협등은 농수산물유통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수산물물류센터의 운영 및 기타 유통사업을 수행하는 별도의 법인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p> | <p>제42조(우선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생산자단체 및 농림축수협중앙회 또는 유통자회사나 공익법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p> <p>제57조의5(유통자회사의 설립) ① 농수산물공판장 및 농수산물물류센터의 운영과 기타 유통사업을 ② ~ ③ (생략)</p> |

2. 농협공판장 시·도별 운영 현황

('97. 12. 31현재)

(단위 : 개소수, 억원)

| 구분 | 계 | | 중앙회공판장 | | 회원조합공판장 | |
|----|-----|--------|--------|-------|---------|-------|
| | 개소수 | 사업실적 | 개소수 | 사업실적 | 개소수 | 사업실적 |
| 서울 | 4 | 3,507 | 4 | 3,507 | | |
| 부산 | 3 | 1,336 | 3 | 1,336 | | |
| 대구 | 3 | 1,204 | 2 | 949 | 1 | 255 |
| 인천 | 4 | 608 | | | 4 | 608 |
| 광주 | 3 | 1,379 | 1 | 319 | 2 | 1,060 |
| 대전 | 2 | 845 | 1 | 732 | 1 | 113 |
| 울산 | 1 | 341 | | | 1 | 341 |
| 경기 | 6 | 1,130 | 2 | 469 | 4 | 661 |
| 강원 | 2 | 255 | | | 2 | 255 |
| 충북 | 4 | 512 | | | 4 | 512 |
| 충남 | 3 | 358 | | | 3 | 358 |
| 전북 | 9 | 1,495 | | | 9 | 1,495 |
| 전남 | 7 | 972 | | | 7 | 972 |
| 경북 | 25 | 1,415 | | | 25 | 1,415 |
| 경남 | 13 | 1,608 | 1 | 278 | 12 | 1,330 |
| 제주 | 1 | 159 | | | 1 | 159 |
| 계 | 90 | 17,124 | 14 | 7,590 | 76 | 9,534 |

2-3-1 생산자조직의 도매시장유통 참여방안

(전국농민회총연맹)

1. 현 황

가. 현행제도

- 농협이 중앙회 또는 원협차원에서 소비지공영도매시장에 공판장을 개설하고 있음(서울, 부산, 대구등 전국 18개 공영도매시장에 참여)
- 농안법 제2조 3항(정의)
 - 농수산물공판장이라 함은 농림축수협과 그 중앙회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하여 개설·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 농안법 제28조(수탁판매의 원칙)
 - ① 도매시장에서 도매시장법인이 행하는 도매거래는 수탁판매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② 중도매인은 상장된 농산물외의 농산물 거래를 할 수 없다.
- 동법 제29조(매매방법)
 - 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산물은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이를 매매한다.

나. 추진실적

- 가락동 도매시장에 유기농산물을 판매하는 물류센타 1개소 운영중.

2. 개선필요성

가. 문제점

- 품목별 생산자조직의 참여 제한
 - 공영도매시장의 거래제도가 도매시장법인(공판장) 수탁에 의한 상장경매로 획일화되어 있음.
 -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이나 품목별 생산자조직(경기시설채소, 무안양념채소, 해남참다래 등)은 도매유통 참여를 강력하게 요구하나 현제도로 인해 제약을 받고 있음.
- 생산자와 소비자간 유기적 연결체계의 불비
 - 현제도에서는 규모화된 생산자(영농조합법인, 품목별생산자조직)와 조직화된 소비자집단(단체급식시설, 할인점, 백화점, 슈퍼체인 등)이 최대의 상품거래공간인 도매시장에서 직결되는 유기적인 유통시스템 구축이 불가능 함.
- 유통구조상 생산자의 견제 능력 발휘 불가
 - 담합에 의한 경매부조리 발생으로 농민 피해 속출.
 - 국가가 건설한 공영도매시장이 사실상 공설 사영시장화되고 있으며 생산자의 견제가 제도화되지 못함.
 - 품목별로 규모화된 생산자조직의 도매유통 직접참여로 생산자조직의 유통활성화와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도매유통업자(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에 대한 견제방안 마련이 절실함.

※ 정부가 공영도매시장에서 농민의 생산물에 대한 판매방식을 도매시장법인(공판장)에 의한 위탁판매방식으로 규제하려면 모든 농산물에 대하여 생산비를 보장함이 당연함. 정부가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면 생산자의 도매유통참여와 판매선택권을 확실하게 보장하여야 할 것임

나. 여건변화

- 품목별 생산자조직이 농산물을 연중 지속출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있음. (산지포장센타연합, 참다래유통사업단, 경기도시설채소연합, 무안양념채소 등)
- 대규모 소비자집단(단체급식처, 할인점, 백화점, 슈퍼체인등)의 경우 자신들이 필요로하는 상품을 상시 구입하는 도매시장에서 생산자조직과 직거래를 통해 유통비용의 절감(상장수수료, 중도매인마진이 절감되는)하고 구입하기를 요청함.
- 획일화된 거래제도로 인해 공설 사영화된 도매시장에 대한 생산자의 불신을 해소할 새로운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됨.
 - 신설도매시장의 경우 도매시장법인이 특권화되고 법인지정을 받기위한 부조리가 수시로 발생함(창원, 구리, 안산도매시장 등)
 - 농민의 도매시장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음.

3. 개선방안

- 거래제도의 개선을 통한 전문중도매법인체제 도입
- 농민직영 전문중도매법인의 육성
- 농민 직거래 대리점의 육성
- 농업인의 도매시장 판매선택권 보장(전문중도매법인과 거래허용)
- 도매시장 거래방식의 다양화에 따른 제도적 보완
- 이중경매 금지 조항 신설(타지역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을 경유한 농산물에 대하여 중도매인의 상장예외거래 허용)
 - ※ 기록상장, 형식경매의 완전해결을 통한 유통비용의 축소와 유통원활화의 증대

가. 대안제시

□ 전문중도매법인의 육성.(소규모 출하농민의 선택권보장)

○ 설립방식

- 기존 중도매인중 동일품목을 취급하는 3인이상의 중도매인이 공동으로 법인을 설립(납입자본금 3억원이상)할 경우 전문중도매법인이라 정의하고 수탁주체로 인정

○ 전문중도매법인 최소거래금액기준의 상향조정과 관리방안

- 월평균 거래금액(1억원)을 기준으로 한 자격취소조건은 농수산물 생산의 계절성에 따른 거래금액 변동, 그동안의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일 뿐만 아니라 중도매인 규모화에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있음.
- 전문중도매법인의 최소거래금액은 연평균 50억원 수준으로 하되, 연간거래금액이 그 미만일 경우 전문중도매법인 자격을 취소함이 바람직함.

□ 농민직영 전문중도매법인의 육성(조직화된 품목별생산자 조직)

○ 규모화된 생산자조직(법인체)의 도매시장 전문중도매법인 입주 및 판매방식의 자율권 보장.

- 공영도매시장의 중도매인 점포는 거의 무상 제공되고 있어 생산자조직이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유통에 참여할 수 있음.
- 농민직영 전문중도매법인이 도매시장을 이용하는 대형소비자집단과 직접거래함으로써 유통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

- 유통비용 절감

< 상장수수료 5-7% + 중도매인 마진 7% => 최소 12-14%이상 절감
=> 생산자, 소비자로 환원 >

※ 농민직영 전문중도매법인의 판매가격이 경매가격과 중도매인의 판매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됨 => 생산자, 소비자보호 효과 발생.

□ 농민 직거래 대리점의 육성

- 법인화된 품목별 생산자조직(법인체)이 소비지 도매시장 전문중도매 법인을 대리점으로 계약하고, 대리점으로 계약한 전문중도매법인은 생산자조직과 농산물 직거래시 상장예외거래의 방식으로함
- 도매시장의 생산자조직 대리점은 전문중도매법인으로 하며 개별 중도매인은 제외함.
- 품목별 생산자조직의 대리점으로 지정된 전문중도매법인은 생산자 단체에 대하여 대리점 보증금을 최소 1억원 이상 선납하여야 하며, 생산자 대리점은 보증금의 범위내에서 생산자조직이 결정한 가격에 상품을 공급받을 수 있음

※ 공설 사영화된 도매시장을 공영도매시장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도매시장으로 환원하는 가장 실천적인 방안은 생산자의 판매교섭력의 강화를 최우선 목적으로 하는 것임

나. 추진방안

< 1안 : 농민직영 전문도매법인 육성 >

□ 생산자조직의 공영도매시장 전문중도매법인 입주 및 육성 추진.

- 조건을 갖춘 생산자조직이 도매시장내 전문중도매법인으로 입주신청시 우선입주 및 육성.
(이미 개장중인 도매시장의 경우 생산자 전문중도매법인이 전체 중도매인의 10%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민간 유통업자의 중도매인 신규허가나 기존 중도매인에 대한 점포면적의 확대를 금지)

< 2안 : 농민 직거래 도매상 육성 >

□ 추진방향

- 도매시장 전문중도매법인과 산지 생산자조직간의 계약체결을 통한 판매대리점운영 및 거래방식의 다양성 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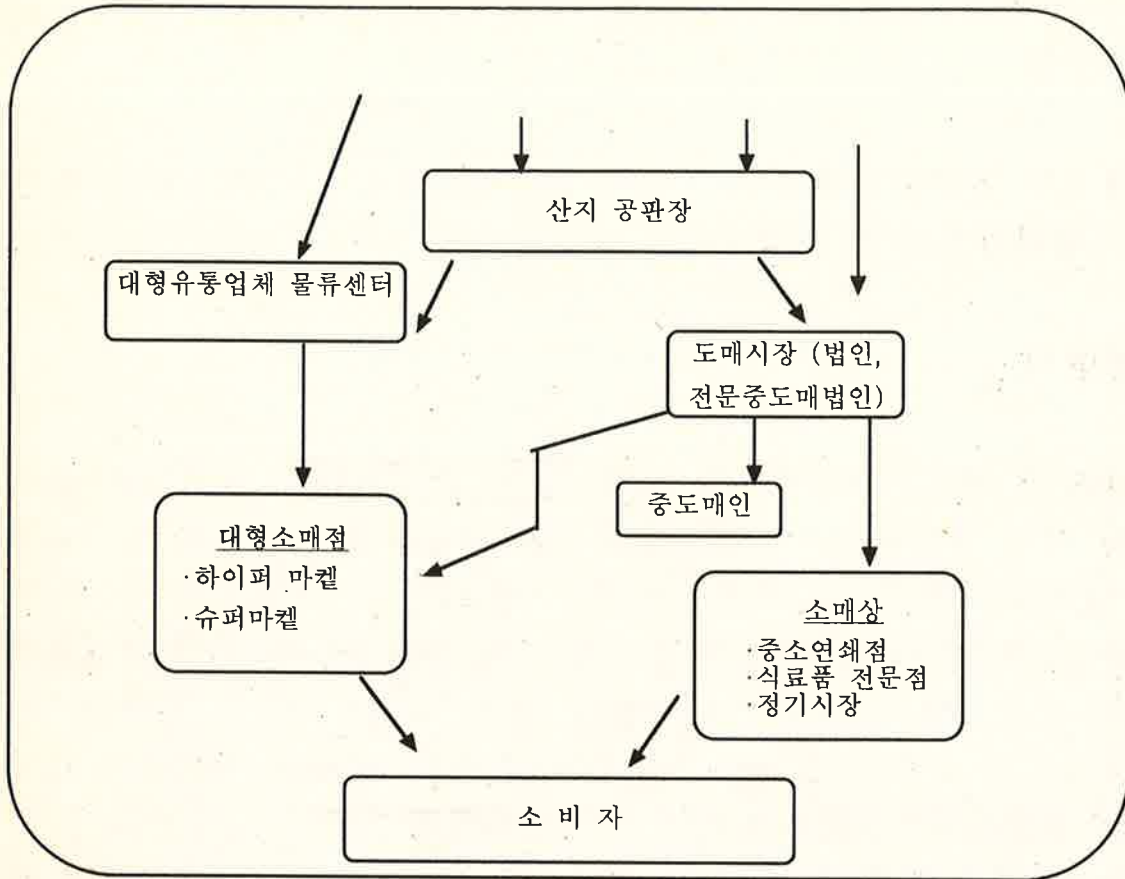
□ 운영방식

- 도매시장 전문중도매법인은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신고하고 법인화된 산지 생산자조직에 거래보증금을 납부하고 보증금의 범위내에서 대리점(가전회사의 대리점식)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전문중도매법인이 대리점으로 신고할 경우, 산지생산자조직에 거래보증금을 최소 1억원 이상 선납하여야 하며, 거래보증금의 범위내에서 도매시장내 상품의 반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반입된 농산물에 대하여는 상장거래예외품목에 준하는 거래방식에 준함.
- 생산자조직은 가격 및 수량, 등급을 명시한 송장을 2부 작성하여 개설자에게 제출함. 단 상품가격은 생산자조직과 전문중도매법인이 상품의 출하전에 사전협의 결정하여야 하며, 사후 결정은 불가함.
- 생산자조직이 제출한 송장의 기재사항과 수량 및 등급이 상이할 경우 전문중도매법인은 즉시 개설자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가 있을 경우 개설자는 즉시 현장입회조사를 실시하고 중재를 실시함.

다. 대안별 장단점(현행유지와 개선안 비교)

| 구 분 | 현 제도 | 개선 제도 | 비고 |
|------------------|----------------------------|------------------------------|--------------------------------------------|
| 생산자의 도매유통참여 | 공판장 | 규모화된 생산자조직의 전문중도매법인 입주허용 | 공설 사영도매시장화된 공영도매시장을 생산자 와 소비자 주도로 개편 |
| 전문중도매법인의 업무범위 | 경매참여 및 상장예외품목 수탁권 부여 | 수탁권 부여 및 생산자조 직의 대리점기능 수행 | 공영도매시장의 본래 취지와 기능을 회복함. |

신 유통 체계도



□ 외국의 사례

○ 주요국 도매시장의 거래방법

| 국가별 | 주요농산물도매시장 | 생산자의 참여실태 |
|------|--------------------------|-------------------------------------|
| 프랑스 | 헌지스(Rungis) 농수산물도매시장 | 전체도매상의 1/3이 생산자회사임 |
| 네덜란드 | 알스미어(Aalsmeer) 화훼도매시장 | 품목별 생산자조직에 의해 도매시장이 관리 운영이 전담되고 있음. |
| 대만 | 대북시 청과도매시장 | 생산자가 지방정부와 공동출자하여 도매시장의 관리 운영을 전담함. |

4. 추진과제 및 일정

가. 농안법령 및 관련법규 개정

- 농안법 제2조의 4-1(정의) 개정
 - (추가) 전문중도매법인이라 함은 개설자의 승인을 받고 법 제17조의 3에 따른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산물을 위탁받아 판매하거나 개설자에 신고후 법인화된 생산자단체와 계약에 의해 공급받는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법인을 말한다.
- 농안법 제2조의 4-2(정의) 개정
 - (추가) 생산자전문중도매법인이라 함은 개설자의 승인을 받고 법 제17조의 3에 따른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산물을 위탁받아 판매하거나 이를 매취하여 판매하는 법인을 말한다.
- 동법 제28조(수탁 판매의 원칙) 개정
 - (개정) 도매시장에서 도매시장법인과 전문중도매법인(도매상)이 행하는 도매거래는 수탁 판매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개설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자기계산으로 매매할 수 있다.
- 동법 제28조(수탁 판매의 원칙) 2항 개정
 - (개정) 중도매인은 상장된 농수산물외의 농수산물을 거래할 수 없다. 다만 생산자 전문중도매법인이 자기생산물을 집하한 경우와 전문중도매법인이 법인화된 생산자단체로부터 계약에 의해 공급받는 농수산물과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상장거래가 적합하지..... 품목과 기한을 정하여.....
- 동법 제29조(매매방법) 개정
 - (추가) 다음 각 호에 정한 경우와 농림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가 또는 수의매매를 할 수 있다.
 1. 타지역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서 매수집하한 농수산물.
 2. 수입농수산물.
 3. 출하주가 송장으로 가격을 제시하여 출하한 농수산물.
 4. 전문중도매법인이 집하한 농수산물.
- 동법 제38조(도매시장법인협회) 개정
 - (개정) 삭제

- 동법 제55조의 2(유사도매시장의 정비) 개정
 - (개정) (민간도매시장의 정비) 시도지사는 농수산물의 공정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농산물 도매 거래가 행해지는 지역을 민간도매시장을 지정하고 그 구역 내 농수산물 도매업자의 거래방법개선 시설 개선 이전대책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비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하며,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 필요한 조사와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 관련항목에 전문중도매법인(도매상)에 대한 항목 신설

나. 관계부처 협의 계획 등

- 통상산업부
 - 유통산업발전법상 유사도매시장에 대해 저촉되는 부분에 대한 정비
- 협의일정
 - 농안법 개정절차에 따라 협의

3-1-1 도매시장 공정거래질서 확립방안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1. 현 황

□ 현행제도

- 도매시장 거래형태
 - 상장경매원칙
 - 공정한 가격형성, 거래의 투명성 확보로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
 - 상장예외거래
 - 상장거래가 적합하지 아니한 품목에 한해 예외적으로 중도매인 직 접집하 거래인정
- 도매시장법인 지정, 중도매업 허가, 경매사 등록제 시행
 - 거래관계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거래의 공정성 확보
- 기타 도매시장내 공정거래를 위한 제기능
 - 농산물 안전성검사 실시
 - 원산지표시 및 부정 계량행위 단속
 - 전자식 경매 및 경매업무 전산화 추진
 - 비허가 상인 및 질서 저해행위 단속
 - 출하물량 품질 사전 검사제 시행
 - 농수산물 표준규격 출하유도

□ 추진실적(서울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기준)

- 상장예외품목 확대 운영
 - ('95) 30개품목 ⇒ ('98) 90개품목
- 산지수집상 등록제 실시로 불법 위탁거래 감소

- 농산물 안전성검사, 원산지 표시제 강화로 소비자 보호
 - 안전성검사 건수확대 : ('95)1,355건 ⇒('97)2,982건 ⇒('98) 15,000건목표
 - 원산지표시 품목확대 : ('93) 189개 ⇒('97) 428개
- 출하물량 품질 사전검사 실시하여 불량출하 농산물 감소
 - 일일평균 150건 표본검사하여 불량출하품은 불이익 조치
- 경매업무 전산화 추진
 - 일부 도매시장법인 전광판 설치하여 경매결과 즉시 표출 시현 및 경매내역 전산자료 총괄관리 ⇒ 유통정보 제공

2. 개선 필요성

< 제도적 측면 >

- 도매시장내에서의 농수산물 거래방식을 획일화함으로써 제도의 경직성으로 인한 유통부조리 발생
 - 도매시장법인의 산지수집기능 취약품목도 상장경매토록 하여 형식·기록상장 유발
 - 타 도매시장의 상장을 거쳐 반입된 물량을 강제 상장경매토록 함으로 이중의 유통비용 발생
- 공정가격 형성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는 경매사의 법인소속화로 공정성 저해
 - 출하주에게 시세보전 차원에서 중도매인에게 균등분배(강매) 사례조정 사례
 - 수집중도매인에게 경락하기 위하여 고가로 낙찰후 경락가격 조정 사례
 - ※ 동일품목을 경매사 1~2명이 연중 경매진행으로 담합사례 (사전 비공개원칙 필요)
 - 상장수수료 수입증대 목적으로 위장상장거래 묵인 사례
- 도매시장법인 지정, 중도매인 허가제도 시행으로 이권화 경향
 - 기득권 유지차원에서 담합 또는 상호 공존체제 유지

< 구조적 측면 >

- 도소매기능 혼재로 건전한 상거래 질서 문란
 - 신설공영도매시장 개장시 유사도매시장 상인 흡수로 영세상인 다수 입주
 - 한 시장내 경락가, 도매가, 소매가 혼재
 - 일반 소비자 출입으로 교통혼잡 및 환경문제 야기
- 시설부족으로 인한 각종 부조리 발생
 - 도매시장법인
 - 도매시장법인 영업구역내 각종 비허가 상인, 매매참가인에게 영업공간을 제공하여 물량 강매 또는 부실중도매인 대리하여 거래에 참여케 하는 사례 발생
 - 중도매인, 임대상인
 - 능력에 맞지않는 점포면적 사용으로 점포 불법전대행위 성행

□ 여건변화

- 농산물 유통시장 개방, 대형 물류센터 개장등 급격한 유통환경 변화로 기존체계 고수시 공영도매시장 공멸 위기 직면
- 공정거래, 투명거래에 대한 소비자 수요 급증으로 도매시장내 공정거래질서의 확립이 긴요

3. 개선방안

□ 거래제도의 합리적 정비

- 도매시장의 위치, 상권, 시설규모별로 2원 체제 운영
 - 광역시이상 대규모 도매시장 : 상장경매제 보완
 - 중소규모 도매시장 : 도매상제 또는 물류센터화 검토
- 부류별 특성에 의한 거래방법 탄력적 운영
 - 청과, 축산부류 도매시장 : 상장경매제 보완
 - 양곡, 수산부류 도매시장 : 도매상 중심운영(도·소매기능 혼용 허용)

※ 2원 체제 운영시 기대효과

- ① 출하자의 출하선택권 확대 --- 경매시장, 도매상중 유리한 시장 출하
- ② 중소규모 공영도매시장의 활성화 기대 --- 유사시장과 선의의 경쟁
- ③ 획일적 상장경매제 문제 보완 --- 일부 유통주체의 독점적 횡포 저지

○ 상장경매제의 미비점 보완

- 상장예외품목 지정운용 확대 (거래량 위주 → 품목별 특성 고려)
- 전자식 경매제도 조기시행(경매부조리 해소, 거래의 투명성 최대한 확보)
- 경매참여 인원 확충 (중소시장의 중도매인이 경매시장 경매참여 허용)
- 대형유통업체 및 대량수요처의 매참인 영업 확대 (경매 활성화)
- 상거래 질서 확립으로 소비자 보호(품질검사, 안전성 검사등 철저시행)

□ 관리공사의 도매시장 관리권한 보장

○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지정권, 평가권, 취소권한을 공사에 부여

※ 관리권한 관련 전문가 의견

- 행정기관에 추천·처분요청사항 또는 도매시장내 법인·중도매인의 업무검사는 행정처분이 아니며 일반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개념이 아니므로 시설물 소유자로서 관리권 행사 가능 (변호사)
- 행정권은 1차적으로 행정기관이 행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독립성, 능률성, 전문성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법령으로서 행정기관이 아닌 특수조직, 특정개인에게도 위탁 가능 (서울대 권영성 교수)

□ 도·소매기능 분리 추진(가락시장의 경우)

○ 중앙로를 동·서경계로 하여 시장기능을 도·소매권으로 분리

- 청과시장동(동편) : 완전도매권
- 수산시장동(서편) : 도·소매 혼합권

※ 도매권역내 잡상인, 소매행위 근절조치 병행

- 도매권 개장시간이후 소비자 출입제한
 - 제한시간 : 오후 1시~6시(개장시간 18:00~익일13:00)
 - 물량분산을 위한 화물차량 출입 허용

□ 공정거래질서 확립

- 비허가 상인 및 질서저해 행위 단속 강화
 - 법인별 해당구역내 비허가상인 단속책임 부여 (법인평가 반영)
 - 잡상인 사용 집기류 시장내 반입 단속 (24시간 출입문 통제와 연계)
- 중도매업 허가와 점포사용권 분리
 - 중도매인 영업능력에 따라 점포사용면적 조정
 - 점포전대등 위규행위시 허가취소이전에 시설물 우선 회수
 - 중도매인의 규모화를 촉진하여 소매행위 억제 (도매, 납품위주 영업)
- 24시간 출입문통제실시 (출하자등록제, 출입문송장제, 화물차등록제 등)

□ 부족시설 확충

- 채소경매장 및 주차장 신축
- 저온저장 시설 확충 --- 청과 중도매인점포 간이식 저온창고, 수산 시장 저온창고, 신축채소경매장내 저온창고 등

< 참고자료 >

감독기관별 주요권한 보유현황

| 권 한 | 업 무 내 용 | 기 관 별 | | | 비 고 |
|-------------------|-------------------------------------------------------|-------|------------------|------------|---------------------------|
| | | 농림부 | 개 설 자 (관리사무소) | 관 리 공 사 | |
| 상 인 선 정 | ○ 도매시장법인 지정 | - | ○ | - | 제17조 제1항 |
| | ○ 중도매인 허가 | - | ○ | - | 제23조 제1항 |
| | ○ 매매참가인 등록 | - | ○ | ○ | 제24조 제1항, 시행령 제43조 제3항 |
| | ○ 경매사임면 승인 | - | ○ | ○ | 제26조 제2항, 시행령 제43조 제3항 |
| | ○ 기타 직관·관련상품 상인허가 | - | - | ○ | 공사시설물 운영관리 규정 제6조 |
| 거 래 질 서 단 속 | ○ 도매시장법인 휴업 승인 | - | ○ | ○ | 제22조 제3항 시행령 제43조 제3항 |
| | ○ 중도매인 상장애외품목 거래허가 | - | ○ | - | 제28조 제2항 |
| | ○ 원산지 표시 단속 | ○ | ○ | - | 제58조 제3항 |
| | ○ 거래질서 유지를위한 조치 | ○ | ○ | - | 제37조 |
| | - 정상적인거래·시설물의 공공적 이용 방해 단속 - 적절한위생, 환경의유지 저해 단속 | | | | |
| 감 독 | ○ 도매시장 업무와 이와관련된 장부 검사 | ○ | ○ | - | 제61조 제1항 |
| | ○ 도매시장법인의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 보고 명령 | ○ | ○ | - | 제60조 제1항 |
| | ○ 중도매인·매매참가인·수집상의 업무집행상황 보고 명령 | - | ○ | ○ | 제60조 제2항, 시행령 제43조 제3항 |
| | ○ 도매시장 평가 | ○ | ○ | - | 제59조의 3 |
| | ○ 도매시장법인 업무정지(과징금부과), 지정 취소 | ○ | ○ | - | 제63조 제2항 |
| | ○ 중도매인 업무정지(과징금부과) 허가 취소 | - | ○ | | 제63조 제3항 |

1. 도매시장 발전방향 논의시 '생산자 의견수렴 우선원칙' 확립

□ 제안사유

- 지금까지 상장경매, 수의매매 등 도매시장 거래방식을 논의하는데 있어 시장내 유통주체간의 대립이 주가 되어 왔으며 농산물을 직접 생산해서 출하하는 농업인의 입장은 소외되어 온 것이 사실임
- 실제로 생산자들의 경우 도매시장내 논쟁의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정보접근에도 민감하지 못해 적절한 대응을 못하고 있는 사이에 생산·출하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논의가 진행되어온 것이 대부분임
- 오랫동안 논의되어온 도매시장내 거래방식을 논의하는데 있어서는 가장 큰 이해관계가 달린 생산자들의 의견을 집중적으로 수렴하여 개선사항을 시행하는데 있어 힘이 실리도록 해야 함
- 또한 도매시장 물류개선 등에 대해서도 생산자 의견수렴을 최우선하여 현실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여야만 정책혼선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음

□ 제안내용

- 농림부 산하에 「도매시장관리위원회」를 상설하여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 대형구매자 등이 도매시장 제도개선에 대해 일상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함
- 도매법인 평가 및 재지정 문제 등을 「도매시장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관리감독 권한 부여

2. 도매시장내 각종 불공정거래행위 일소

□ 제안내용

- 기록상장, 장외거래, 점포 불법전대 등 각종 불법거래행위를 청산하여 생산출하자에게 신뢰받는 선진적인 도매시장으로 변화시켜야 함

□ 현제도의 문제점

- 감자, 고구마의 경우 경매를 거친 것처럼 형식적으로만 서류를 작성하고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의 거래금액을 절반으로 줄여주고 이에 대해 상장수수료를 5%씩 납부받는 기록상장이 아직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음
- 또한 매매하거나 세를 놓을 수 없는 중도매인점포의 경우 불법인 점포임대가 당연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관리공사의 단속의지 미흡 등으로 대부분의 점포가 임대되어 있음. 물론 중도매인의 경우 잔품처리 필요성 등을 호소하지만 시장내 거래질서 확립 차원의 확고한 조치가 있어야 함
- * 카메라 출동(MBC 뉴스데스크 98.3.8) 보도내용 : 중도매인이 서울시로부터 6평짜리 점포를 650만원에 분양받음 → 세입자에게 보증금 4천5백만원, 월 350만원에 불법임대(보증금만 7배가 넘음) → 중도매인이 계속 세를 올려달라며 세입자 닥달 → 세입자가 감사원 진정으로 파문일자 관리공사가 점포 폐쇄조치
- 도매시장의 불신을 해소하고 운영을 현대화하기 위해서는 내부 유통주체들의 경영을 투명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임
 - ⇒ 도매법인 뿐만 아니라 중도매인들의 거래내역 및 경영실적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함
 - ⇒ 특히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도매상체제의 도입과 관련 이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중도매인의 경영실적 공개는 필수적임
 - ⇒ 이를 위해 관리공사의 시장내 유통주체에 대한 관리기능이 획기적으로 강화되어야 함

□ 제안제도의 추진방법

- 기록상장, 점포불법전대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단하는 관리주체의 노력이 있어야 함
- 기록상장, 전포임대 등에 불법행위가 누적될 경우 도매시장내에서 퇴출시키는 적극적인 시정노력을 기울여야 함
⇒ 도매법인 재지정 평가의 엄정 적용, 중도매인 허가 취소 등
- 세무조사 등 탈법적인 방법에 의한 음성적인 소득을 징구할 수 있는 방안 적극 동원
- 도매법인의 수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매법인과 산지대형출하주간의 출하협의기구를 구성함
⇒ 주산지단위 지자체와 농협, 영농조합법인 등이 공동참여하여 도매법인과 생산자간의 긴밀한 협조관계 유지
- 도매시장을 이용하는 생산자,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도매시장감독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리공사(또는 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시 기능을 부여
- 관리공사에 대한 도매법인 및 중도매인의 경영실적보고 의무화

□ 기대효과

- 도매법인의 수집능력 향상으로 중도매인에 의한 물량유치를 줄임으로써 기록상장의 원천을 제거하고 시장운영의 정상화 도모
- 일벌백계의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도매시장내 위협부담율을 높임으로써 공정한 거래 유도
- 부실한 관리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 시장의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구조를 만들어 감
- 도매시장 관리공사의 감시감독기능 정상화 유도

□ 행정지원사항

- 생산자·소비자단체로 구성되는 도매시장감독위원회 설립근거 마련
- 불법·탈법행위에 대한 징계수단 강화
- 주산지 지자체 중심의 출하협의기구 적극 육성

3. 각종 비도매시장적 요소 청산

□ 제안내용

- 도매시장내 각종 소매행위, 일반인의 시장출입, 전근대적·비효율적 하역체계 등 도매시장의 효율적 기능수행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시급히 제거해야 도매시장의 안정적 발전이 보장될 수 있음

□ 제안사유

- 유사도매시장 정리부실로 인해 도매시장 거래질서의 확산이 부진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공영도매시장의 유사도매시장화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 전근대적이고 낙후된 비효율적인 하역체계로 인해 물류비용의 상승 등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 피해를 끼칠뿐 아니라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확고한 개혁의지와 추진력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음

□ 제안제도의 추진방법

- 단기적으로 도매시장내에 도소매 시간을 분리하여 운영함
⇒ 물량이 집중되고 거래가 활발한 시간에는 소매행위를 금지하고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함
- 장기적으로는 도매시장내 소매행위를 중단하고 시장운영에 불필요한 일반인의 출입도 통제하는 선진국형 시장운영체계를 확립하도록 함
- 하역체계 개선을 위하여 현재 도매법인이 하역을 책임지는 형태로 전환
⇒ 하역작업의 즉각적인 기계화추진을 전제로 하역노조의 도매법인 직원화 유도

4. 출하약정제의 개선

□ 제안사유

- 현재의 출하약정제는 개별출하주에게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실시되어 출하주의 불편을 사고 있으며, 실질적인 물량분산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 출하약정제를 개별출하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법에서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공동출하조직과의 사전협의를 활성화하여 경매제도에 따른 가격불안정을 완화하여야 함

□ 제안 내용

- 공동출하조직을 대상으로 출하약정제를 확대시행하고 일정 출하량 이상의 출하단체에는 최저경락가를 보장하는 방식의 제도운영 검토

5. 품목별 전문생산조직 육성

□ 제안사유

- 기초 생산자조직의 활성화가 미비하여 대단위 물류의 전제가 되는 규모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경지규모가 작은 현실에서 개별농가의 규모화만으로 대단위 물류유통에 대응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 제안내용

- 기초생산자 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대단위 생산 및 유통시설 지원을 최소화하고, 기초생산조직에 대한 출하선도금, 규격화 출하선도금 등의 금융관련 지원을 강화
- 산지유통시설 역시 기초생산자조직의 규모에 맞는 중소규모 시설 지원에 역점을 둠

- 절대적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발전이 더딘 품목조직의 발전을 위해 농촌진흥청, 농협, 축협, 한농연 등의 품목조직을 총괄하는 (가칭) '품목별 생산조직 협의기구'를 농림부가 주관하여 유기적 협력 관계 구축과 전체적인 발전을 도모하도록 함

□ 제도의 추진방법

- 출하선도금의 적기공급 원칙을 확립하고 지원규모를 현실화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함
- 경영실적에 따른 지원규모의 차별화와 저리유통자금을 확대해 나감
- 출하계약제를 도입, 철저히 시행하여 지역조합의 작목반, 영농조합법인과의 지원 협력체계 구축

< 첨부자료 >

『품목별생산자조직 협의기구』 (가칭) 구성(안)

1. 제안배경

- 농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품목별생산자조직의 역할과 기능이 보다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품목별생산자조직의 활동이 형식적 운영에 그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고 제반사항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협의기구가 필요하며 정부의 책임성있는 역할이 요구됨
- 21세기에 알맞는 협업경영체의 모델이 제시되어야 하며, 지역중심의 품목조직활동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중대과제에 대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품목별생산자조직의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2. 명 칭

- (가칭) 『품목별생산자조직 협의기구』

3. 협의기구 구성

- 농림부, 농협 품목별전국협의회, 축협 축종별위원회, 한농연 품목위원회, 농촌진흥청 품목별 전문 지도연구원의 대표로 구성
- ※ 필요하다면 주요 품목별로 위의 협의기구 참여단체와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등도 포함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농업의 활성화와 구체적 정책방향을 도출해 낼 수도 있음

4. 협의기구 구성의 필요성

- 농림부의 품목별협의회는 해당 품목과에서 담당하나 체계적으로 감독하고 육성할 수 있는 정부부서가 없음

- 품목별생산자조직 육성 지원계획에 축산분야가 제외되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고, 근거를 마련하여 논의기구에 축산분야 품목조직도 참여시킬 필요가 있음
- 각 품목조직간의 역할분담이 없으며 형식적 운영에 그치고 있음
- 생산조정과 출하조절에 있어서도 유관기관, 단체간의 협의를 통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함
- 품목별생산자조직의 육성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아이템 개발이 필요함
- 품목별 생산자조직의 육성정책 및 자금지원 등에 대한 협의체제 구축
- 장기적으로 산만한 품목조직의 체계 정비와 조직간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함
- 21세기에 우리농업에 알맞는 협업경영체의 모델 개발이 시급함

5. 협의기구의 역할

- 품목별생산자조직의 육성정책 방향 논의
- 품목별생산자조직의 육성방안에 대한 구체적 아이템 개발
- 주요 품목별로 정부, 생산자조직(영농조합법인, 작목반, 기타 품목조직 등 포함)간의 소위원회를 구성, 정책방향 조율 및 품목별 가격안정대책 마련
- 품목조직간 장단점을 살려 지역현장 중심으로 육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필요
 - ⇒ 사례로, 경북 영천시 포도영농조합법인은 포도를 재배하는 농업경영인이 중심이 되어 출자하고, 정부·농협의 지원이 결합되어 생산, 포장, 출하까지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사례로 손꼽히고 있음
- 농산물유통의 책임경영체계 확립 및 품목조직별 역할분담
 - ⇒ 농축협이 지원하고 농진청이 지도하는 형태의 품목별생산자조직을 시험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함
- 생산조정 및 공동출하기구 육성을 위한 기초조직으로 발전시켜 나감
- 생산시설 공동이용, 출하계약제 도입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감
- 품목별 수급조정, 시장개척, 교육·홍보 등 필요사항에 대한 상호 협의체계 구축
- 품목별생산자조직 발전과 정책과제에 대한 연구·조사사업 공동실시

1. 현황

□ 현행제도

- 현재 농산물 수집상은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수집상의 등록), 제39조의3(공판장의 거래관계자), 제39조의5(도매시장 공판장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하여 개설자에게 등록하고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 또는 농수산물 공판장에 출하하도록 되어 있음.

2. 개선의 필요성

□ 문제점

- 농안법에 따르면 출해주란 공영도매시장에 농산물을 출하하는 출하자로서 생산자와 수집상들만을 규정하고 있음.
- 실제로는 수집상인데도 불구하고 농민으로 위장하거나 미등록 수집상이 위장출하할 경우에 구별이 가능토록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등록된 산지유통인(수집상)만 세금을 내는 등 일방적인 불이익을 당함.
- 도매시장법인과 출하약정시 생산자나 수집상에 대한 확인 절차가 전혀 없어 출하실명제를 통한 차별화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수집상 등록제도는 유명무실화되고 있음.

□ 여건변화

- 수집상이 제도권에 포함되고 정부가 수집상에 대한 제도적인 순기능으로 유도하기 위한 장치를 구상하고 있음.
- 공영도매시장 내에서는 산물출하상품의 출하 점유율 8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므로 출해주로서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음.

3. 개선방안

□ 대안제시

- 전국 공영도매시장에 출하시 도매시장법인과 출하약정을 체결할 경우 출하자와 생산자와의 정확한 구분을 위한 구비서류를 제출의무화
 - 수집상과 생산자의 명확한 구분으로 위장출하를 예방하고, 출하한 상품에 대한 분쟁발생시 책임소재의 명확성 확보와 투명한 세원관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농산물 출하자들의 실명제를 강력하게 시행해야 함. 이를 위한 대안은 다음과 같을 수 있을 것임.

(예시)

- 생산자농민 : 출하약정을 체결시 토지(농지)세 납입증명서를 제출하고 본인명의로 도매시장등에 출하하는 자.
- 수집상 : 자기 토지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도매시장(공판장)에 출하하는 자외에 농산물을 구매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자. 즉, 농산물을 수집하여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 출하하는 모든 개인 또는 법인.

□ 장점

- 상거래상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되며, 출하 실명제로 인한 농산물 거래가 투명해지고, 출하 예약제가 가능해 짐.
- 출하 예약제가 되면 수급조절 가능으로 가격의 등락폭이 적어지고 출하자나 생산농민의 수취가격이 상승하여 생산비 보장이 가능.
- 위장 수집상(중도매인 등)이 없어지므로 농안법상 도매시장내 유통주체들의 세수 증대 예상.
- 중도매인의 산지 수집행위 근절 계기가되어 분산주체로서 역할전념.
- 도매시장내 유통주체들의 책임의식 고취로 전문성 배가.

□ 우리의 의견

- 산지유통을 담당하는 산지유통인(수집상)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육성은 유통의 효율화를 기하고 새로운 유통구조 형성의 기틀인 산지직거래의 기본틀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추진하는 정부의 부정적 시각.
- 산지 수집상은 가격결정에 참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조작 또는 폭리의 주범으로 매도하고 있음. 그러나 산지유통인은 단순한 중간상인이 아닌 선물거래를 통한 임차농이나 상업적영농의 주체임.
- 그러나 산지에서 생산,수확,출하까지의 생산 및 물류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나 단순한 중간상인이라는 시각 때문에 출하주로서의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음.

□ 개선(안)

- 등록수집상은 세금을 내는 성실 납세자로서 반드시 비등록수집상과 차별화 되어야 함.
- 차별화 방안
 - 1차적으로 공영도매시장의 도매법인회사에 농산물을 출하할때 차감하는 상장수수료는 당연히 출하주를 중심으로 사용되어야 하므로 도매법인에서 출하주에게 주던 출하장려금 0.75%를 등록된 출하주와 비등록 출하주 또는 수집상과는 차등지급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산지수집상은 가락시장 배추반입물량의 90%이상 차지하므로 우량 출하주로서 각 도매시장법인의 영업사정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의 영업비에서 차등적으로 지급하여 상품 수집의 경쟁적 분위기 조성을 통하여 우량출하주의 권익을 보장.
 - 3차적으로 등록수집상과 위장수집상의 철저한 세원조사가 이루어져 위장수집상을 발본색원하여 함.

4.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출하 실명제 시행
 - 현재 도매법인은 별도 출하약정을 맺지않은 출하주에 대하여는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의무적 약정을 체결 출하주가 누구인지 (수집상, 농민)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되어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모든 실적에 따라 세금 부과가 투명해질 수 있도록 해야함.
- 출하 예약제 실시
 - 도매시장의 가격형성은 그날의 반입물동량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격폭락 및 폭등이 있어도 출하조절이 되지 못하고 있음. 출하실명제를 통한 도매법인은 출하 예약제를 실시하여 적정 반입물동량으로 농가 수취가격을 보장 해 주어야 함.

5. 추진과제 및 일정

□ 농안법령 및 관계법규개정

-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수집상의 등록), 제39조의3(공판장의 거래관계자), 제39조의5(도매시장 공판장 운영에 관한 특례) 및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지침을 보완하여 출하자중에서 수집상과 농민을 분명히 차별화하고 위장 수집상과 위장 생산농민이 발 붙일 여지를 없애야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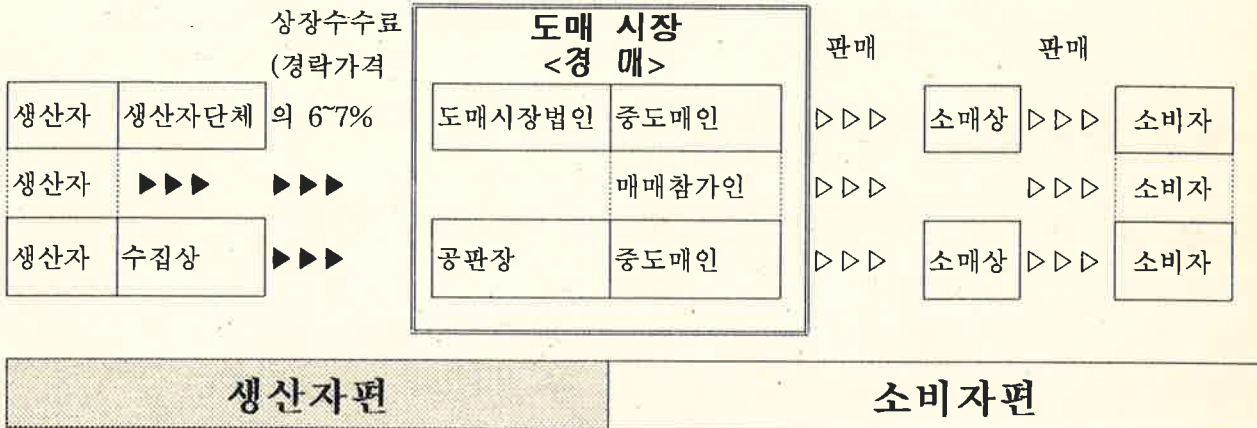
3-2-1 신설 · 지방도매시장 활성화 방안

(인천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1. 현 황

□ 현행제도

○ 도매시장 구조



○ 거래형성 원리

- 출하자(생산자)가 도매시장법인(공판장)에 판매 위탁
- 도매시장법인(임직원=경매사)가 경매방식에 의해서 최고가격을 제시한 중도매인(매매참가인)을 낙찰자로 선정 판매
- 도매시장법인은 위탁판매의 대가로 경락된 가격을 기준으로 70/1000(청과), 60/1000(수산)의 상장수수료를 출하자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에서 공제한 후 지급
- 도매시장법인의 수입이 되는 상장수수료의 정률제 시행으로 경락가격을 높게 받고자 하는 동기유발(출하자의 수취가격 증대욕구와 이해관계 합치 = 생산자편)
- 중도매인은 가장 낮은가격으로 경락을 받아야 수익 최대화 가능-단골.매출.수익증대, 외상.잔품 risk 최소화 가능(소비자,소매상의 저가구매 욕구와 이해관계 합치 = 소매상,소비자편)
- 대량, 공개, 공정, 투명거래 실현, 시장경쟁원리에 따라 합리적인 거래 실현(시장왜곡 배제)

□ 추진실적

- 건립계획 : 전국 34개소
- 건립개장 : 전국 18개소
(서울가락동, 대전, 대구, 청주, 울산, 광주, 수원, 전주, 부산, 인천, 천안, 창원, 충주, 춘천, 구리, 익산, 안양, 안산)
- 추진 중 : 전국 16개소
(부산동부, 진주, 성남, 서울서남, 광주2, 고양, 인천2, 안동, 포항, 원주, 강릉, 정읍, 대전2, 순천, 구미, 마산)

2. 개선 필요성

□ 문제점

- 제도자체의 결함보다 운영 미숙에 의한 목표달성 저조
- 시설물 설치시 전문 도매시장 기능에 부적합한 시설 배치
- 구 도심권 유사도매시장 정비 입주시 역할 분담 잘못(집하위주영업자-도매법인 임직원 입주, 분산위주 영업자 - 중도매인으로 입주)
- 도매시장법인의 소속 경매사 통제 관리 소홀
- 하드웨어에 치중 소프트웨어적 측면 준비 소홀
- 관리주체의 전문.계속.일관성 결여, 사기저하로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과 전략 개발 시행 미흡
- 관리주체의 책임, 권한 분리로 소신있는 업무추진 불가능
- 이해관계자간 대립 논쟁으로 엄격한 법 집행 지연

□ 여건변화

- IMF 여파와 시장개방으로 국내 이해관계자 집단간 이권다툼의 의미 추락(양보, 개선할 것이냐?, 송두리채 내어줄 것이냐?)
- 민주적 정권교체로 공개적 국민의견 수렴 기회 확대
- 기존 유통제도 시행에 대한 불신 팽배로 제도자체에 대한 재정비 필요
- 농안법 파동이후 변화된 시장환경에 맞는 더 발전적 제도 시행 욕구 분출

3. 추진계획

□ 추진방향

- 발전적 개선방안의 제도화를 위해 법률 개정
- 관리기능의 전문화, 구체적 지원
- 미흡한 제도의 보완
- 유통비용 발생요인이 되는 조직의 구조 및 경영개선
- 일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범위의 경제원리』에 맞는 범위 내에서 집하중심의 중도매인을 통폐합하여 도매시장법인으로 재조정, 거래 방법 일원화
- 철저한 역할분담에 의한 경쟁원리 실현으로 비공개, 독점적 횡포방지, 제도자체의 공정성 시비 종결
- 수요 공급에 따라 계속 적정한 가격이 결정되는 합리적인 시장구조 유지(중간상인의 왜곡 방지)

□ 주요추진 시책

- 도매시장 기능에 맞는 시설만 배치
- 유통전문공무원 직렬 신설 및 인사우대
(생산중심 ⇒ 유통중심)
- 『특수업무수당』 『행정관리지원비』 지급
- 『유통경찰제』 시행
- 공익근무요원 활용
- 경매사 감독 및 처벌기준 강화
- 전자식 경매 추진 촉진
- 『상품성평가』 기능 강화
- 『불량품 출하자 공개제』 실시
- 상장수수료 유지 및 하역비 도매시장법인 부담
- 출하.판매장려금 지급률 인하로 유통개선 추진
- 폐장시간 제한에 의한 전문도매시장 기능 수행
- 정가.수의매매로 경매제도 보완
- 수탁능력자- 도매시장법인, 판매능력자-중도매인으로 재정비

- 박리다매 실현을 위한 행정전략 개발 추진
- 소량거래 품목 『공동출하유치 경매제』 실시
- 쓰레기 자체처리 실시
- 시설물 공동관리에 의한 비용 절감
- 중도매인 시장사용료 부과
- 신설도매시장 『개설운영지원단』 파견

□ 항목별 추진 계획

| 항 목 별 | 현 황 | 문 제 점 | 개 선 방 안 |
|--------|--------------------------------------------------------------------------------------------------------|-----------------------------------------------------------------------------------------------------------------------------------------------------------------------------------------------------------------------------------------|----------------------------------------------------------------------------------------------------------------------------------------------------------------------------------------------------------------------------------------------------------------------------------------------|
| ① 시설설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립계획 34개소 ○ 건립개장 19개소 ○ 추진중 15개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매인점포, 소매점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 전대, 소매 등 - 불필요한 유통단계 ○ 재고보유, 신속분산 불리, 경쟁촉진 불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매기능만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매장, 배송장 - 잔품 선도유지 장치 ○ 전문도매시장제 정착 |
| ② 관리기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공사(서울.구리)2 ○ 관리사무소 1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영도매시장 건립 목표 달성, 제도 정착위해 강력한 공권력 필요 ○ 관리공사-업무위임한계, 공권력미흡 ○ 관리사무소-근무여건 조악, 사기저하, 장기근속 기피, 전문 우수 인력 확보 불가 (평균15.5월근무) ○ 업무 전문성, 계속성, 일관성 확보 곤란, 업무장악 능력 부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사무소 체제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직렬 신설, - 인사우대 조치 ○ 특수업무수당, 행정관리지원비 지급 (예: 시립대 근무자) ○ 유통경찰제 도입 (사법경찰권 부여) ○ 공익근무요원 활용 ○ 작고 강한 효율적인 조직, 인력 확보 |

| 항 목 별 | 현 황 | 문 제 점 | 개 선 방 안 |
|-------------|------------------------------------------------------------------------------------------------------------------------------------------------------------------------------------------------------------------------------------------------------------------------------------------------------------------------------------------------------------------------------------------|-------------------------------------------------------------------------------------------------------------------------------------------------------------------------------------------------------------------------------------------|----------------------------------------------------------------------------------------------------------------------------------------------------------------------------------------------------------------------------------------------------------------------------------------------------------------------------------------------------|
| ③ 경매제도 보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식경매 원칙 ○ 거수수지식 경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량,신속,공개,공정 투명거래 - 생산,출하 조절 - 상품성 향상 - 포장개선 촉진 - 신속한 대금결제 - 공동출하 촉진 - 저급품 판로 제공 등 유통개선에 기여 ○ 경매사자격 제도 ○ 전자식경매 보급 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급별 가격형성 기능 미흡 ○ 일부 경매사 불공정 ○ 경매사 불신 상존 ○ 전자식경매 준비 지연(포장,선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확한 음성, 투명한 공개, 입의수정 금지 ○ 경매사 감독 강화 (부적격자 정지,취소) ○ 전자식 경매 추진 ○ 상품성평가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질등급기준보강 - 등급사 제도 실시 - 품질등급별 가격결정 오차 최소화 - 유통정보 제공 ○ 불량 출하자 공개제도입(속박이, 저급품, 농약 사용 등) |
| ④ 수탁 하역개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역노조 ○ 별도징수 - 15 ○ 도매법인부담 - 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하자 별도부담 ○ 하역 서비스 개선 및 비용 절감 노력 미흡 ○ 상장수수료 인하로 전체적 구조 및 경영개선 동기 저하 ○ 유통구조 조정,개선 미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장수수료 유지 ○ 하역주체-도매법인 ○ 하역비 부담경감- 포장,하역 개선 동기유발 ○ 판매,출하장려금지급률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장,하역,물류개선 추진 |
| ⑤ 폐장시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전 - 종일 개장 ○ 최근 - 12:00까지 개장 추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매시장화(소매상인이용기피-시장퇴조) ○ 불필요한 유통단계 발생-유통비용 증가 ○ 장내정리 시간 부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장시간 제한 통제 ○ 매잔품 선도유지 장치 및 폐문설비 ○ 폐장후 반출 장치-반출중 (도매법인확인) |
| ⑥ 정가수의매매 제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매제도+정가수의매매 제도+상장의 품목제 ○ 역활분담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매법인 정물제 (생산자편) - 중도매인(싸게사야 담골증가,재고감소 수입증가) ○ 협력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도매인은 수요 - 도매법인은 공급 - 각기 수요창출,공급 창출 ○ 상장 예외 품목 제도 시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량거래품목, 중도매인수 적은 품목, 경매 부적합(양채,두채류, 단순히 팔리거나 값은 가공품 등) ○ 중도매인이 집하하여 기록 상장 ○ 싸게 구입, 비싸게 판매, 독점적거래 ○ 예외거래 점진적 증가(악화가 양화구축) ○ 도매시장 유통비용을 증가 (수수료⇒마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탁주체, 판매주체 엄격한 구분 ○ 정가수의매매 품목도 도매 시장법인이 수탁공급(도매법인-공급자간계약, 전담경매사 지정, 정가수의매매, 매일 보고) ○ 다수 중도매인 육성 ○ 가능한 품목 경매 전환 ○ 일정시점에서 수탁능력자는 도매시장법인, 판매능력자는 중도매인으로 교통정리(규모의 경제⇒범위,속도의 경제) ○ 중도매인 수탁 금지 |

| 항 목 별 | 현 황 | 문 제 점 | 개 선 방 안 |
|----------|-------------------------------------------------------------------------------------------------------------------------------|---------------------------------------------------------------------------------------------------------------------------|---------------------------------------------------------------------------------------------------------------------------------------------|
| ⑦박리다매 실현 | ○정부목표 : 상인목표 (박리다매)(폭리소매) 대량 ⇔ 소량 신속 ⇔ 천천히 공정 ⇔ 덜공정 투명 ⇔ 덜투명 | ○도매시장 건립 목적 - 박리다매(수수료) ○영세상인 폭리소매 - 상권집중, 주차유리 - 잔품처리 구실로 높은 마진 ○목표설정과 수단의 배치만 으로는 목표 달성 불가능 | ○최저거래금액 상향 ○우수 중도매인 발굴 (지속적 경쟁유발) ○소포장화 추진 ○포장해체 판매 금지 ○매매참가인 확대 ○판매소표제시제 실시 ○소매단계 경쟁유발 - 직거래 확대 추진 - 유통경로 다원화 |
| ⑧공동출하 유치 | ○계절적으로 소량거래 품목 중소도매시장 차단위로 산지 직접 출하유치 곤란 ○인근 대도시도매시장 에서 반입거래 ○2중경매, 물류역류 | ○유통단계 증가 ○상품성 저하품 공급 ○산지출하선 원천단절 ○저급품 고가이용 ○타도시에 경제적중속 초래 ○과다한 사회경제적 비용 유발 | ○시장별,권역별 공동 출하유 치 ○공동경매실시(공동 경매위원 회,판매원표 주거래법인별 분류 대금결제) ○저급품수탁금지 제재 ○품질별 가격차별화 유도(경 매사,중도매인) |
| ⑨쓰레기 처리 | ○비포장 출하품 쓰레 기 과다발생 (무, 배추, 마늘) ○시장이용자 쓰레기 불법 반입 투기 | ○쓰레기 과다 발생 ○쓰레기처리 용역비 과다 ○유통비용 증가 원인 ○생산자,소비자에 직간접 전가 | ○쓰레기 자체처리 시장환경 위원회 설치 운영(자금,장비, 인력) ○쓰레기감량기 설치 운영 ○포장, 정선출하 추진 ○포장기기,포장비 지원 ○비포장 출하품 가격 서비스 차별화 |
| ⑩시설물 관리 | ○관리사무소,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등 개별관리 | ○시설물 노후화 가중 ○시설관리비 과다소요 ○직간접으로 생산자, 소비자 에 전가 ○유통비용 과다 요인 | ○시설물 집중관리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부과 징수 ○관리비 절감 ○이용자부담 경감 |
| ⑪시장사용료 | <출하자쪽> ○출하자⇒도매법인 (상장수수료 거래금액 의 7%) ○도매법인⇒개설자 (시장사용료 거래금액 의 0.5% - 연간) <구입자쪽> ○중도매인점포 있는 경우 시설사용료징수 | ○출하자 시장사용료 간접 부담 ○중도매인점포 없는 경우 구 입자측 시장 사용료 부담 없음 ○출하자에게 받은 상장수수 료 수입의 일부를 중도매인 에게 판매장려금으로 지급 부적당 | ○형평원리, 수익자부담 원칙 적용 ○중도매인도 구입금액 기준 으로 시장사용료 부과 검토 (거래금액의 5/1000) ○경영행정, 시설, 포장 제도개 선 추진 ○판매장려금 지급여력으로 서비스의 질적인 개선 추진 |

| 항 목 별 | 현 황 | 문 제 점 | 개 선 방 안 |
|------------------------------|------------------------------------------------------|------------------------------------------------------------------------------------------|--------------------------------------------------------------|
| ⑫ 신설 도매시장 개설 운영 준 비 지원 | ○지방도시별 도매시장 건립.개장 준비 ○일반행정 담당공무원 이 연구하면서 준비 | ○조직적인 개설.운영 준비 미흡 ○이해관계자간 이전으로 운 영 준비 혼란 ○목표달성을 위한 초기대응 곤란 ○구조개선 적기 일실 | ○개장준비지원단 지원 (농림부) ○건립.개장준비 지도 ○주요 의사결정사항 자문 및 조정 |

4. 추진과제 및 일정

□ 예산이나 기금 확보

- 특수업무수당 지급(지방비)
- 행정관리지원비 지급(농안기금)
- 공익근무요원 급여 등(지방비)
- 전자식 경매 추진사업비(국비, 지방비, 농안기금)
- 상품성평가 강화 추진(국비, 지방비, 농안기금)
- 신설 도매시장 개설운영지원단 활동비(국비)

□ 농안법령 및 관련 법규 개정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 제4호 및 제3조 1항 1급 내지 9급 직급표
상 행정직군, 행정직렬에 『유통행정』 직류 추가 신설
-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14조(특수업무수당) 특수행정분야 18호
「사」항 신설
사. 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자
- 농안법 제47조 제2항에 근거 동법시행령 제30조 제3호 신설
3. 동법 제12조 제2항에 의한 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자에
게 지급하는 행정관리지원비
- 농안법 제17조 3항 2호(도매시장법인 지정) 요건 강화
“도매시장.공판장 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험있는 업무집행 담당
임원 2인 이상“을 ”5년이상 종사한 경험있는 업무집행 담당 임원 2
인이상“으로 개정

- 농안법 제27조(경매사의 임무 및 신분)
 - 제1항 4호 신설 상장된 농수산물의 상품성 평가
 - 제2항 ‘경매사는 개설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삭제(헌법 상 직업선택의 자유에 위배되므로 삭제가 마땅함)
- 농안법 제33조의 2(하역업무)도매시장법인 하역업무수행 및 효율화 추진 의무화
 - 하역업무 도매시장법인 부담, 하역업체와 계약체결도 가능
 - 하역체계 개선, 기계화 촉진, 포장 및 물류개선 촉진 의무화
- 농안법 제37조의 3(사법경찰권) 신설
 - ‘유통감독공무원’은 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와 관련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업무의 일시적인 정지, 해당 물품의 이동 또는 제거 등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전항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유통감독공무원의 자격 및 자격 및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법에 의하여 규정한 내용이나 이법에 위반하는 행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검사장의지명에의한사법경찰관리) 28호 추가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도매시장관리사무소와, 시.군.구에 근무하면서 유통감독업무를 담당하는 5급 내지 9급의 지방공무원
- 농안법 제63조 제2항(업무정지 또는 허가취소 등) 경매사, 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조치 추가
- 농안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변경
 - “1. 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으로 부터 도매시장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징수하는 도매시장사용료”를
 - “1. 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 또는 중도매인으로 부터(점포가 없는 도매시장) 도매시장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징수

하는 도매시장사용료”로 수정

- 농안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1호
 - “1. 개설자가 징수할 사용료의 총액은 당해 도매시장의 거래금액의 1천분의5를 초과할 수 없다.”를
 - “1. 개설자가 징수할 사용료의 총액은 당해 도매시장의 거래금액의 1천분의10을 초과할 수 없다.”로 수정
- 농안법 시행규칙 제29조(창고경매 및 포전경매)
 - 창고경매나 포전경매시 선도유지, 물류비 절감등 필요시 표본경매 가능 명시
- 농안법제64조, 동시행령 제43조 제2항 제8호신설
 - 동법 제63조 제2항 행정조치 권한위임
- 농안법 시행규칙 제31조(시설기준) 부수시설 중 중도매인점포를 배송장으로 변경
- 농안법시행규칙 제16조 제3항(경매사자격 시험) 과목 추가
 - 필기시험 중 ‘상품성평가’ 과목 추가
- 농안법 제58조 제4항 신설
 - 농림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상품성 향상과 공정한 거래실현을 위하여 상품성평가를 강화하는 제반조치와 등급사제도의 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전항의 상품성평가 및 등급사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 관계부처 협의 계획 등

- 전문 직렬 신설 - 행정자치부
- 특수업무수당 지급 - 행정자치부
- 행정관리지원비 지급 - 농림부, 농수산물유통공사
- 유통경찰제 시행 - 행정자치부, 법무부

5. 투융자 계획

□ 세부 사업별 투융자 계획

(단위 : 백만원)

| 사 업 량 | '97 실적 | '98 예산 | '99 요구안 | 2000년 - 2002년 | 2003년 - 2004년 | 계 |
|---------------------------------|--------|--------|--------------------------------------------------------|--------------------------------------------------------|--------------------------------------------------------|------------------------------------------------------------|
| 계 | | | 19,355.4 | 50,784 | 34,291 | 104,430.4 |
| 1. 특수업무 수당 | | | 864 (지방) | 3,240 (지방) | 2,160 (지방) | 6,264 (지방) |
| 2. 행정관리 지원비 | | | 4,046.4 (농안기금) | 15,174 (농안기금) | 10,116 (농안기금) | 29,336.4 (농안기금) |
| 3. 공익요원 급여 | | | 1,080 (지방) | 4,050 (지방) | 2,700 (지방) | 7,830 (지방) |
| 4. 전자경매 준비 | | | 12,000 3,600(국) 3,600(지) 2,400(자) 2,400(농) | 24,000 7,200(국) 7,200(지) 4,800(자) 4,800(농) | 16,000 4,800(국) 4,800(지) 3,200(자) 3,200(농) | 52,000 15,600(국) 15,600(지) 10,400(자) 10,400(농) |
| 5. 상품성 평가강화 - 품질등급 - 교육훈련 | | | 1,050(국) 150 900 | 3,960(국) 450 3,510 | 2,640(국) 300 2,340 | 7,650(국) 900 6,750 |
| 6. 개장준비 지원 | | | 315 (국) | 360 (국) | 675 (국) | 1,350 (국) |

○ 특수업무 수당(지방비)

- 전국 도매시장관리사무소 근무 450명, 7급기준
- 신설 15개 도매시장 99년 150명, 2000년 150명 증가 예상
- 99년 120,000원 X 600명 X 12월 = 864,000,000원
- 2000~2년 120,000원 X 750명 X 12월 X 3년 = 3,240,000,000원
- 2003~4년 120,000 X 750명 X 12월 X 2년 = 2,160,000,000원

- 행정관리지원비(농안기금)
 - 인천시립대 근무 7급기준
 - '99년 562,000원 X 600명 X 12월 = 4,046,400,000원
 - 2000~2002년 562,000원 X 750명 X 12월 X 3년 = 15,174,000,000원
 - 2003~2004년 562,000원 X 750명 X 12월 X 2년 = 10,116,000,000원

- 공익근무요원 급여 등(지방비)
 - '99년 150,000원 X 600명 X 12월 = 1,080,000,000원
 - 2000~2년 150,000원 X 750명 X 12월 X 3년 = 4,050,000,000원
 - 2003~4년 150,000 X 750명 X 12월 X 2년 = 2,700,000,000원

- 전자식 경매 추진사업비(국비, 지방비, 농안기금)
 - '99년 30개회사 X 400,000,000원 = 12,000,000,000원
 - 2000~2년 20개회사 X 400,000,000원 X 3년 = 24,000,000,000원
 - 2003~4년 20개회사 X 400,000,000원 X 2년 = 16,000,000,000원

- 상품성평가 강화 추진 사업비(국비)
 - 품질등급기준 보장 150품목 X 1,000,000원 = 150,000,000원
 - 교육 훈련비(농산물검사소)
 - '99년 도매시장법인(공판장)100개사 X 2부류 X 평균 3명 X 30일 X 50,000원 = 900,000,000원 + 150,000,000원 = 1,050,000,000원
 - 2000~2002년 130개사 X 2부류 X 평균 3명 X 30일 X 50,000원 X 3년 = 3,510,000,000원 + (150,000,000 X 3년) = 3,960,000,000원
 - 2003~2004년 130개사 X 2부류 X 평균 3명 X 30일 X 50,000원 X 2년 = 2,340,000,000 + (150,000,000 X 2년) = 2,640,000,000원

- 신설 도매시장 개설준비지원단 활동비(국비)
 - 99년 3명 X 5,000,000원 X 3월 X 7개소 = 315,000,000원
 - 2000~2년 3명 X 5,000,000원 X 3월 X 8개소 = 360,000,000원

□ 사업비 조달 계획

(단위 : 백만원)

| 사 업 량 | '97 실적 | '98 예산 | '99 요구안 | 2000년 - 2002년 | 2003년 - 2004년 | 계 |
|-------|--------|--------|----------|------------------|------------------|-----------|
| 계 | | | 19,355.4 | 50,784 | 34,291 | 104,430.4 |
| 국고 보조 | | | 4,965 | 11,520 | 8,115 | 24,600 |
| 국고 융자 | | | - | - | - | - |
| 지방비 | | | 5,544 | 14,490 | 9,660 | 29,694 |
| 자부담 | | | 2,400 | 4,800 | 3,200 | 10,400 |
| 농안기금 | | | 6,446.4 | 19,974 | 13,316 | 39,736.4 |

※ 사업비 구분

- 특수업무수당은 전액 지방비
- 행정관리지원비는 전액 농안기금
- 공익요원 급여는 전액 지방비
- 전자경매지원 사업비는 국비30%, 지방비30%,
자부담20%, 농안기금융자20%
- 상품성평가강화 사업비 전액 국비
- 신설도매시장 개설준비 지원 전액 국비

<참고자료>

공영도매시장 건립 목표 · 수단 · 전략

| 1. 목 표 〈표 적〉 | ⇒ | 2. 수 단 〈무 기〉 | ⇒ | 3. 전 략 〈전 술〉 |
|--------------------------------------------------------------------------------------------------------------------------------------------------------------------------------------------------------------------------------------------------------------------------------------------------------------------------------------------------------------------------------------------------------------------------------------------------------------------------------------------|---|----------------------------------------------------------------------------------------------------------------------------------------------------------------------------------------------------------------------------------------------------------------------------------------------------------------------------------------------------------------------------------------------------------------------------------------------------------------------------------------------------------------------------------------------------------------|---|------------------------------------------------------------------------------------------------------------------------------------------------------------------------------------------------------------------------------------------------------------------------------------------------------------------------------------------------------------------------------------------------|
| <p>① 정 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통단계 축소 - 유통비용 절감 - 대량, 신속거래 - 공정, 투명거래 - 지역경제 활성화 <p>② 생산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하편익 - 신속한 대금결제 - 수취가격 증대 <p>③ 소비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물품을 신선하게 공급 - 적정가격, 안정공급 <p>④ 유통종사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중된 상권 - 적정한 이윤 - 안정적인 생활 | | <p>① 이 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량준비의 원리 (수요·공급) - 거래총수 최소화 - 자원배분 적정화 (유통정보) - 견제균형경쟁의 원리 - 상호협력의 원리 <p>② 법 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헌법(123조④항) 농안법, 업무규정 - 행정지시 <p>③ 조 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지방자치단체, 관리사무소 공공출자법인 - 도매시장법인 -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수집상 - 하역, 청소, 정산회사, 관련상가 <p>④ 시 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 건물, 시설, 장비(필요한 최소의 시설 → 창고 + 도매기능) | | <p>① 철저한 실태조사</p> <p>② 엄격한 입주자 선정(교육, 각서)</p> <p>③ 부적격자 지속적 도태(최저거래금액)</p> <p>④ 거래제한 및 단속</p> <p>⑤ 소매시장화 배제(시간, 장소제한, 소분판매금지)</p> <p>⑥ 불필요한 유통단계 척결(앞자리상)</p> <p>⑦ 상장경매거래 정착</p> <p>⑧ 역할분담 실현(집하-도매시장법인, 분산-중도매인)</p> <p>⑨ 지속적 경쟁유발(독점,담합,폭리X),</p> <p>⑩ 비용발생요인 최소화(하역,쓰레기,물류)</p> <p>⑪ 차량소통 원활</p> <p>⑫ 시장이용 홍보</p> <p>⑬ 정가수의매매제도 정착</p> <p>⑭ 지속적 개혁 추진</p> <p>⑮ 무결점운동 추진 ZD(Zero Defect)</p> |

3-2-2 신설 · 지방도매시장 활성화 방안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1. 현황

□ 현행제도

- 도매시장 중도매인 정원제도
 - 농안법에서는 도매시장의 중도매인정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 업무규정에 중도매인 정원(적정 중도매인 수)을 규정하여 정원이상의 중도매인 허가를 규제하고 있음.

□ 도매시장 중도매인 현황

- 중도매인 현황(96. 12 현재)

(단위 : 명)

| | 계 | 청과 | 수산 | 축산 | 양곡 | 기타 |
|-----------|-------|-------|-------|-----|-----|----|
| 계 | 6,660 | 5,125 | 1,046 | 276 | 168 | 45 |
| 공영도매시장 | 5,360 | 4,513 | 797 | 50 | - | - |
| 일반법정 도매시장 | 1,300 | 612 | 249 | 226 | 168 | 45 |

- 중도매인 정원 현황(청과)

(단위 : 명)

| | 계 | 과일 | 채소 |
|-------------|-------|-----|-----|
| 서울 가락동 도매시장 | 1,187 | 470 | 717 |
| 부산 엄궁동 도매시장 | 500 | - | - |
| 청주 도매시장 | 110 | 54 | 56 |
| 전주 도매시장 | 152 | 117 | 35 |

2. 개선필요성

□ 문제점

- 도매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영업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고령 중도매인·부실 중도매인을 분산능력이 우수한 상인을 신규 중도매인으로 영입하여 교체하여야 하나
- 고령중도매인·부실 중도매인에 대한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시장이 위축될 뿐만 아니라, 점포불법전대등 위법 행위를 조장시키고 있음
- 특히 중도매인 정원제를 도입함에 따라 분산능력이 우수한 상인의 신규 중도매인 영입이 어려워져 시장 활성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부실중도매인의 점포 불법전매를 더욱 조장하는 역기능을 일으키고 있음

□ 여건 변화

- 도매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분산능력이 우수한 상인의 신규 영입 절실 필요
- 도매시장의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필요한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점포 불법전대등 비용 낭비요인 근절 필요

3. 개선방안

- 중도매인 정원제를 폐지하여, 개설자가 시장여건 및 필요에 따라 중도매인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정당한 사유없이 일정기간 경매에 참여하지 않는 중도매인에 대해서는 허가취소 또는 재허가 제외 규정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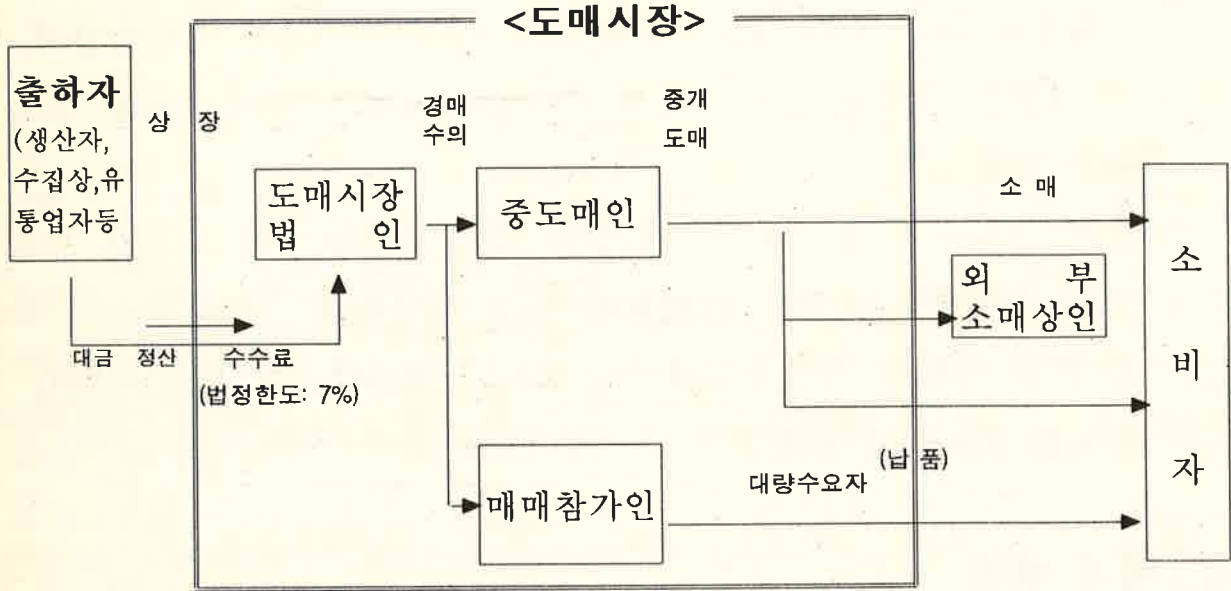
4-1-1 도매시장 유통비용 절감방안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1. 현 황

□ 현행제도

○ 농안법상 유통체계



○ 유통마진 분석 (가락시장)

| 구분 | 생산자 | 유통과정 | | | | | | | | |
|-----|-------|------|-----|-------|-----|-----|------|-----|----|-------------|
| | | 55% | | | | | | | | |
| 단계별 | 수취율 | 출하단계 | | 도매단계 | | | 소매단계 | | | |
| | 45% | 23% | | 11% | | | 21% | | | |
| 장소별 | 도매시장내 | | | 도매시장외 | | | | | | |
| | 16% | | | 39% | | | | | | |
| 경비별 | 직접경비 | | | | | | | | | 간접경비. 이윤 |
| | 소계 | 작업비 | 운송비 | 포장비 | 창고비 | 하역비 | 청소비 | 수수료 | 감모 | |
| | 36% | 12 | 7 | 4 | 1 | 2 | 0.3 | 4 | 6 | |

<주>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조사자료 (1997.9월)

- 조사품목 : 가락시장 주요반입품목중 10개품목 (과실3,채소7)
- 조사방법 : 유통단계별로 동일시점 청취조사

2. 개선 필요성

□ 문제점

- 생산자의 영세적인 시장대응 및 중간 유통단계의 비합리적인 구조로 인하여 중간단계의 마진율이 높아 농산물의 생산자 수취가격은 낮고 소비자는 비싸게 구입
- 도매시장의 독점적 위치로 유통비용 절감의 한계
 -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하역노조 등 유통종사자는 기득권 유지화 경향
 - 기존 상관습과 제도하에서 직접적인 개혁 단행시 혼란만 가중
 - ※ 이익단체의 집단적 세력화 대응시 결국은 생산자·소비자 피해 유발
- 농수산물 유통의 근본적인 물류시스템 낙후
 - 산지 유통시설의 미비와 규격포장화 여건 미성숙
 - 도매시장의 전근대적인 하역체계와 기계화·자동화 시설 미비
- 유통비용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관리 미흡
 - 유통단계 축소위주의 단순한 접근은 실질적 비용절감 효과 의문
 - ※ 필요비용은 누가 그 기능을 담당한다 해도 여전히 발생하고 욕구변화에 따라 새로운 유통서비스(비용) 증가 불가피
 - 품목별 유통비용 발생의 요인분석 및 절감대책 수립 미흡
- 획일적인 상장경매체제 시행으로 불필요한 유통비용 유발
 - 도매시장의 위치, 규모, 상권을 무시한 거래방법 적용으로 이중의 비용 발생(지방도매시장의 이중경매, 물량역류현상, 공영도매시장 이용기피)
 - 품목별 특성보다는 거래량 위주의 상장경매품목 지정으로 기록상장, 형식경매 잔존
- 도매시장법인마다 개별정산업무 수행으로 유통비용 과다 발생
 - 도매시장법인별 정산인력 15~20명 소요(가락시장 약 110여명 종사)
 - 정산관련 장비의 유지관리비용 및 신규개발비용 계속 증가
 - 도매시장법인의 미수금 부담 가중

□ 여건변화

- IMF 사태이후 고물가, 저소득시대 도래로 물가안정과 비용절감이 핵심과제로 대두
- 농산물 유통환경의 급변, 유통주체간 경쟁가속으로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산물 유통구조 및 비합리적인 유통환경에 대한 시대적인 개선 요구
⇒ 유통비용 축소를 통한 생산자·소비자 보호

3. 개선방안

□ 도매시장내 유통비용 절감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생산, 도매, 소매 전과정의 총체적인 비용절감 방안을 세워야만 효율적 절감 가능

□ 주요 품목별 유통비용 원가관리체계 구축

- 농수산물의 주요품목에 대한 생산~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유통비용을 조사·분석하여
- 비정상적인 유통비용 발생요인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절감전략을 수립 시행하는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

- 대상품목 : 청과 10여개 품목
 - 청과 : 배추, 무, 감자, 양파, 상추, 사과, 배, 감귤 등
 - ※ 주요 품목이 총거래물량의 85% 차지
- 조사방법 : 생산·도매·소매 유통단계별 현장실사
- 조사대상자 : 생산자, 출하자,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소매상인, 포장업자, 운송업자, 하역업자, 창고업자, 청소업자, 소비자 등
- 분석관리
 - 유통마진 취득자별·비용발생요소별 심층분석
 - 품목별·유형별 원가분석에 의한 절감요소 도출
 - 분석결과의 홍보 및 합리적인 절감대책 수립시행

□ 도매시장내 유통비용 절감 추진

- 위탁상장수수료 인하
 - 도매시장법인 자체 경영합리화 추진, 상장수수료 인하
 - 운영업비용 절감, 임직원 수 감축 등 경비 절감
 - 개설자(관리공사)가 징수하는 시장사용료 인하
 - 출하장려금, 판매장려금 인하
 - 위탁상장수수료 변경안 (가락시장 기준)

| 구 분 | 현 행 | 변 경 | 비 고 |
|------------|----------------|---------------|------------|
| 위탁상장수수료 | 거래금액의 50/1000 | 거래금액의 38/1000 | 현행의 76% 수준 |
| 도매법인 수입수수료 | 거래금액의 30/1000 | 거래금액의 25/1000 | 현행의 83% 수준 |
| 출하장려금 | 거래금액의 7.5/1000 | 거래금액의 5 /1000 | 현행의 67% 수준 |
| 판매장려금 | 거래금액의 7.5/1000 | 거래금액의 5 /1000 | 현행의 67% 수준 |
| 시장사용료 | 거래금액의 5 /1000 | 거래금액의 3 /1000 | 현행의 60% 수준 |

⇒ **현행 5% ⇒ 3.8%로 인하 (1.2% 절감)**

※ 상장수수료 인하에 따른 효과('97년가락시장실적 기준)

- 도매시장법인 수입수수료
 - 운영업비용 절감을 통한 수수료 인하 : '97년기준 2.3%→1.8%
 - 6개 도매시장법인(공판장 포함) 연간 수수료수입 9,187백만원 감소 전망(1개법인 평균 1,531백만원 감소)

***도매시장법인 경영합리화 방안 : 별첨**

- 출하장려금
 - 가락시장 출하자는 연간 총 2,881백만원의 장려금수입 감소
- 판매장려금
 - 중도매인 1인당 평균 연간 2백만원의 장려금수입 감소
- 시장개설자가 징수하는 시장사용료
 - 관리공사(서울시) 시장사용료 수입 3,507백만원 수입감소
- 시장사용료 징수 제도 개선 : 세부시행안 별첨
 - 시장사용료의 거래금액할 징수 ⇒ 사용면적할 징수 검토
 - 현행제도보다 17.3% 인하효과

- 중도매인 마진 축소 유도
 - 영세 중도매인의 통폐합 및 법인화를 통한 합리적 경영
 - 박리다매형 영업형태 유도(대형유통업체의 중계 역할 수행)
- 하역비 절감
 - 하역비를 상장수수료에 흡수하여 하역비 절감 및 기계화 촉진
 - 하역장비 지원 확대 및 인력감축으로 하역비 상승 억제
 - 포장출하품 및 비현실적인 하역단가 인하조정
- 기타비용 절감
 - 쓰레기 감량화를 통한 청소비 절감
 - 포장화 사업 지속 추진으로 감모율 축소
 - 시장내 환경개선 및 시설물 제기능 유지로 관리비용 절감 등

□ 도매시장법인의 대금정산체계 개선

- 공동정산소 설치 ----- 도매시장법인 공동 투자 운영
 - 대금지급방법 : 중도매인이 정산소에 직불하거나 은행자동결제
 - 주거래은행(농수축협)의 신용보증한도에 따라 중도매인 거래한도액의 탄력적 운용(미수금 운용방법 개선)
 - 도매시장법인 거래장표 표준화 및 전자식 거래체제 구축
- 공동정산소 설치에 따라 동일시장내 중도매인의 여러 도매시장법인 경매참여 활성화 추진
 - 경매참가인원 부족해소 --> 경매의 공정성 증대
 - 실질적인 자유경쟁체제 실현 --> 생산자 수취가격 상승 효과

< 첨부자료 >

1. 도매시장법인 경영합리화 방안

- 도매시장법인 상근 임원수 감축
 - (현행) 법인당 평균 16명 ⇨ (개선) 법인당 4~5명
 - ※ '98. 3월 현재 총임원수 79명(서울4, 중앙20, 동화19, 한국17, 대아19)
- 소비성 경비 절감
 - 기밀비, 접대비(업무추진비), 광고선전비 등 소비성 경비를 적정 수준으로 절감

< '97년도 법인별 소비성 경비 지출현황 >

| 구 분 | 계 | 서울 청과 | 농협 (공) | 중앙 청과 | 동화 청과 | 한국 청과 | 대아 청과 |
|---------------|-------|----------|-----------|----------|----------|----------|----------|
| 금 액 (백만원) | 3,048 | 685 | 20 | 848 | 868 | 443 | 184 |
| 영업비용 대비(%) | 4.2% | 5.3 | 0.2 | 6.4 | 6.3 | 2.9 | 2.7 |

- 법인별 대손상각비 축소
 - 중도매인 미수금에 대한 채권관리 철저로 손실 최소화

< '97년도 법인별 대손상각비(대손충당금 전입액 포함) 현황 >

| 구 분 | 계 | 서울 청과 | 농협 (공) | 중앙 청과 | 동화 청과 | 한국 청과 | 대아 청과 |
|--------------|-------|----------|-----------|----------|----------|----------|----------|
| 금 액 (백만원) | 2,776 | 1,771 | - | 23 | - | 961 | 21 |

- 기타 경상경비 절감도모
 - 인건비, 복리후생비, 수도광열비, 수선유지비,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도서인쇄비 등

2. 시장사용료 제도개선 방안

가. 현 황

□ 현행제도

- 시장사용료 : 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으로부터 도매시장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징수하는 금원
- 시장사용료 요율 : 총거래금액의 0.5%(거래금액할 50%, 사용면적할 50%)
 - ※ 면적할 사용료 총액은 총사용료의 1/2초과 불가(농안법시행규칙 제1항 제2호)
- 시장사용료 징수 : 도매시장법인이 상장수수료(5%)중 일정액을 관리공사에 납부

□ 추진실적

- 최근 가락시장 시장사용료 징수 현황

(단위:백만원)

| 년도 | '90 | '91 | '92 | '93 | '94 | '95 | '96 | '97 |
|----|-------|-------|-------|-------|-------|-------|--------|--------|
| 금액 | 3,712 | 5,274 | 6,376 | 7,536 | 9,281 | 9,667 | 11,057 | 11,313 |

- '85년 개장이후 매년 거래금액의 증가에 따라 시장사용료 수입이 계속 상승추세였으나 '98년부터는 수도권 도매시장의 개장 및 현 경제여건상 감소예상
- '97시장사용료는 관리공사 영업수익의 31.8%수준
- 시장사용료 요율의 적정성 분석('95년도 원가계산 용역결과)
 - 타 공공요금 결정방식과 같은 적정보수주의 방식(총괄원가보상)에 의하면 가락시장의 경우 거래금액의 1.38%가 적정하나
 - 공영도매시장의 공익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최소의 관리비용 징수

나. 개선필요성

□ 문제점

- 거래금액 중심의 시장사용료 요율 기준으로 불합리성
 - 면적할 부분이 일부 있으나 사실상 영향이 미미하여 도매시장시설의 비효율적 활용(법인별 취급물량과 사용시설의 불균형 초래)
 - 시설물의 자산가치 하락시에도 거래금액이 증가하면 시장사용료는 계속 증가
 - 거래물량, 거래금액의 정확한 파악을 위한 관리비용 증가
 - 현행 시장사용료 요율 책정기준의 불명
 - 전국 공영도매시장이 확일적으로 거래금액의 0.5%를 징수하고 있으나 일부시장은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의 비용에도 불충분
 - 도매시장개설 초기에 일본의 제도와 유사하게 책정되었으나 총거래금액의 0.5%한도라는 포괄적규정으로 면적할 도외시
- ※ 일본의 시장사용료 요율
- * 거래금액할 0.25% + 면적할 m²당 단가책정(거래금액할의 178%수준)

□ 여건 변화

- 도매시장내 자유시장경제 원리 도입 필요성 증대
 - 시장시설을 능력있고 경쟁력 있는 상인에게 배분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경매장등 도매시장 필수시설의 효율성 증대방안 모색 필요
- 일부 도매시장의 도매상제 도입시 대안마련
 - 거래의 투명성 확보는 대금정산체계와 출입문 통제로 보강
 - 시설사용료와 거래금액과의 상관관계는 무의미

3. 개선방안

□ 대안제시

| | 제1안 | 제2안 | 현행 |
|----|------------------------------------------------------------------------------------------------------|-----------------------------------------------------------------------------------------------------------|---------------------------------------------------------------------------------------------------------------------|
| 구분 | ○ 면적할 시장사용료 범위 확대(거래금액할 축소) | ○ 면적할 시장사용료 징수 (거래금액할 폐지) | |
| 장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물의 효율적이용 • 도매시장별 특성반영가능 (개설자의 자율성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금액 관리비용 절감 • 경쟁원리도입가능 • 시설물효율적 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정적 수입재원 확보 |
| 단점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산가치상승시 유통 비용 증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면적의 비탄력적 운영 불가피 • 거래금액 관리비 증가 • 점포관련 부조리 상존 |

□ 외국의 사례

| 구분 | 일본 (동경) | 대만 (대북) | 미국 (뉴욕) | 프랑스 (파리) | 태국 (시몬무앙) |
|----------|---------------------------------------------------|-----------------------------------------|--------------------------------------|-------------------------------|--------------------|
| 시장사용료 | -거래금액할0.25% -면적할 별도 (단위면적당) | -관리비의 10% (공사→시정부) | -임대료 징수 ※거래물량에 대한 수수료 일부징수 (송장집계) | -임대료징수 ※임대료83% 시설사용료17% | -임대료 징수 ※민간법인개설 |
| 위탁상장 수수료 | -과실7% -채소8.5% -수산5.5% -식육3.5% -화훼9.5% | - 3.2% (출하자 1.6%, 구매자 1.6%) ※관리비로 징수 | - 없음 | - 없음 | - 품목별 중량 기준 |

□ 개 선 (안)

- 면적할 시장사용료 범위 확대(거래금액할 축소)
 - 거래금액할 시장사용료 : 0.5% ⇒ 0.2%
 - 면적할 시장사용료 : 재산 감정가액의 년 1%징수

< 거래금액 1조5천억원 가정시 비교 >

(단위:백만원)

| 구 분 | 현 행 | 개 선 | 차 액 | | |
|-------|--------------------|-------|-------------|-------|-------|
| 계 | 7,500 | 6,202 | △ 1,298 | | |
| 거래금액할 | 거래금액의 × 0.5% × 1/2 | 3,750 | 거래금액 × 0.2% | 3,000 | △ 750 |
| 면 적 할 | 총시장사용료 × 1/2 | 3,750 | 재산가액 × 1% | 3,202 | △ 548 |

※ '98년도 청과도매시장법인 시설사용면적의 연간 재산가액 기준
(사용면적 179,079m², m²당 감정액 1,788천원)

- 도매상제 도입시 재산가액의 년3%내에서 자율결정

라. 추진과제

□ 농안법 시행규칙 개정

- 제25조 제1항 각호 개정(안)

1. 개설자가 징수할 연간 사용료는 도매시장법인의 사용시설면적(관리시설 면적을 포함한다)에 대한 재산가액의 1천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개설자가 정한다.

2.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의 사용시설면적할 의한 사용료 징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도매시장법인의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한 금액과 합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총 사용료가 거래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 지방자치단체별 특성과 도매시장간 형평성 고려전제

□ 소요예산 및 관계부서 협의 : 불요

4-1-2

도매시장 유통비용 절감 방안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1. 현황

□ 현행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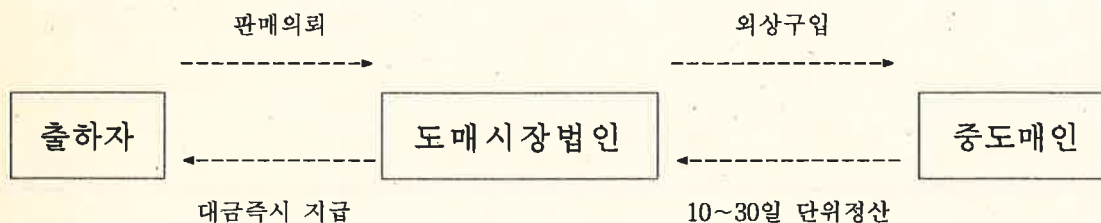
1) 상장수수료

-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로부터 위탁상장수수료 5~7% 징수
- 0.5%는 개설자에게 시장사용료로 납부하고, 0.75%~1%는 출하자에게 출하장려금으로 환원하고, 0.75%~1%는 중도매인에게 판매장려금으로 지급

| | 상장수수료 | 구 성 | | | |
|--------|-------|-------|-------|-------|--------|
| | | 시장사용료 | 출하장려금 | 판매장려금 | 수입 수수료 |
| 가락시장 | 5.0% | 0.5 | 0.75 | 0.75 | 3.0 |
| 가락시장 외 | 7.0% | 0.5 | 1.0 | 1.0 | 4.5 |

2) 대금정산

- 경락즉시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에게 대금정산
-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에게 보증금을 납부, 외상으로 물건을 구입하고 평균 10~30일 단위로 외상미수금을 정산



2. 개선 필요성

□ 여건변화

1) 법인수지

- 1996년 이후 가락시장 당기순이익이 줄어들고 있으며, 특히 IMF 이후 거래감소, 금리인상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 등으로 당분간 법인수지가 상당히 어려울 전망이다

(단위 : 백만원)

| | 1996 | | | 1997 | | |
|-------|-----------|--------|-------|-----------|-------|-------|
| | 거래액 | 당기순이익 | 비율 | 거래액 | 당기순이익 | 비율 |
| 가락시장 | 1,463,901 | 10,935 | 0,75% | 1,522,348 | 5,941 | 0,39% |
| 가락시장외 | 802,811 | 3,243 | 0,40% | 897,757 | 3,524 | 0,39% |

※ 춘천·창원 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은 적자 실현

- 가락시장 최근 거래동향

(단위 : 천톤, 백만원)

| 1997 (1~2월) | | 1998 (1~2월) | | 증 감 | | | |
|-------------|---------|-------------|---------|-----|-------|---------|-------|
| 물량 | 금액 | 물량 | 금액 | 물량 | 비율(%) | 금액 | 비율(%) |
| 228 | 225,164 | 223 | 182,749 | △5 | △2 | △43,415 | △18 |

※ 전국 도매시장 공히 거래감소 현상을 나타냄

2) 대금정산

-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에게 보증금의 5~6배, 최고 8배 수준까지 외상으로 물건을 공급해주고 있는데, IMF 이후 유통업체의 도산 등으로 중도매인들이 자금난을 겪음에 따라, 도매시장법인들이 중도매인들로부터의 미수금 회수에 많은 어려움을 겪음은 물론 부실채권이 될 소지가 많은 미수금이 증가함에 따라 자금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3. 개선방안

□ 대안제시

- 1) 상장수수료 인하
- 2) 정산회사 설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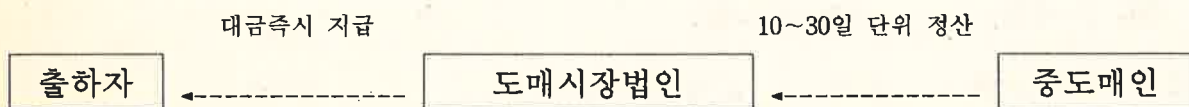
□ 외국의 사례

1) 상장수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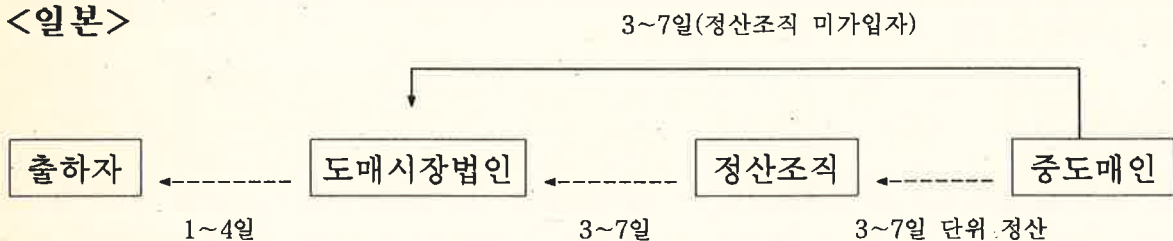
| | 일 본 | 미 국 | 한 국 |
|---------|--------------------|--------|---------------------|
| 상장수수료 | 과실 7.0% 채소 8.5% | 10~15% | 가락시장 5% 가락시장외 7% |
| (시장사용료) | (0.25%) | (임대료) | (0.5%) |

□ 대금정산체제

<한국>



<일본>



- 우리나라는 출하주에게는 당일즉시 지급하고, 외상미수금은 평균 10~30일단위로 정산받는데 비해, 일본은 출하주에게는 1~4일째 지급하고, 외상미수금은 3~7일째 받고 있어, 일본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는 출하주나 중도매인 모두 정산면에서 유리

□ 대안별 검토

1) 상장수수료 인하

<도매시장법인 수수료 및 수지현황>

(단위 : 백만원)

| | 거 래 액 | 수수료수입 | 시장사용료 | 출하장려금 | 판매장려금 | 당기 순이익 |
|-------|-----------|-------------------|------------------|------------------|-------------------|------------------|
| 가락시장 | 1,522,348 | 75,358 (4.95%) | 7,552 (0.50%) | 9,365 (0.62%) | 8,647 (0.57%) | 5,941 (0.39%) |
| 가락시장외 | 897,757 | 59,494 (6.63%) | 4,258 (0.50%) | 5,256 (0.59%) | 10,336 (1.15%) | 3,524 (0.39%) |

- 수수료 인하시 검토대상 내용(예 : 가락시장)
 - 시장사용료 0.50%, 출하장려금 0.62%, 판매장려금 0.57%, 도매시장법인 당기순이익 0.39%
- 검토대상별 고려 요인
 - 시장사용료는 도매시장의 수지, 채투자 실적, 외국의 예(일본 0.25%) 등을 종합하여 결정
 - 출하장려금은 공동출하를 수행하는 생산자단체의 공동출하경비로 운용되고 있는 바, 출하장려금 폐지시 공동출하가 매우 어렵게 될 것이므로, 공동출하가 와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공동출하를 실제수행하는 생산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판매장려금은 중도매인의 구매력을 향상시켜 시장을 활성화하고, 농민들에게 즉시 대금을 정산하는 대신 중도매인에게 외상으로 공급한 외상미수금의 납입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판매장려금제도 폐지시 외상미수금 회수가 매우 어렵게 되고, 이는 농민들에 대한 대금정산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외상미수금 회수에 큰 차질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검토되어야 하며 관련단체의 의견수렴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법인 순이익은 법인의 최저수지는 보장되는 범위내에서 검토되어야 하며, 최근의 거래감소에 따른 법인수지 악화를 고려하여 결정

2) 정산회사 설립

① 출하주에 대한 대금정산에 관한 정산회사 설립

- 현재 도매시장법인이 경락즉시 출하주에게 지급(온라인 또는 현금)하고 있으므로, 어떤 정산조직을 설치하더라도 현재의 정산체계보다 불리함
- 여러 도매시장법인의 정산조직을 통합하여 1개 회사로 만드는 방안은
 - 도매시장법인의 정산조직은 출하주에 대한 대금정산 뿐만 아니라, 세무·회계·봉급 등 법인 경리전반에 관한 업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정산회사를 만들더라도 법인정산조직은 그대로 존속되어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정산조직 2원화를 초래, 별도 정산회사를 운영하는 비용만 낭비하고
 - 출하주가 물건은 법인에 판매의뢰하고 대금은 제3의 기관에서 정산받도록 하는 것은 출하주를 매우 불편하게 할 뿐 아니라, 당사자 거래원칙에도 적합하지 않음. 출하주는 법인에서 대금만 받는 것이 아니라 출하상당 지도도 받고 정보도 얻고 있다는 중요한 점을 간과하고 있음

② 중도매인 외상미수금 정산에 관한 정산회사 설립

- 정산회사 설립 재원 마련 및 운영비 확보 방안
- 중도매인 개인 상거래에 정부출연 타당성 및 가능한지 여부 검토

□ 개선(안)

1) 수수료 인하

- 상장수수료는 인하하되, 시장사용료의 적정수준, 출하장려금 및 판매장려금의 존치와 폐지 또는 인하시 예상되는 문제점, 법인의 최저수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

2) 정산회사 설립

- 출하주 대금정산을 위한 별도의 정산회사 설립은 도매시장법인의 정산조직과 이중되어 예산만 낭비시키고 출하주에게 불편만 초래시킴
- 중도매인 외상미수금 정산을 위한 정산회사는 재원 및 운영비 확보 방안, 정부지원 타당성 및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

4-1-3 도매시장 유통비용 절감 방안

(한국농산물중도매인조합연합회)

1. 문제제기

현행제도

- 도매시장법인이 출하주 상품을 경매를 통해 판매하여 준 후 위탁상장수수료(5-7%) 징수
- 출하주 대금정산시 도매시장내 하역비 공제

추진실적(상황 및 추진경과)

- 생략

개선 필요성(문제점 및 여건 변화)

- 문제점
 - 도매시장법인의 효율적 노력없는 수익 발생
 - 하역 업무의 효율화 추진 미흡
 - 출하장려금, 판매장려금 지급의 명분 약화
 - 경매를 통한 '거래단계'의 축소가 가능한 부분마저, 강제적으로 경매를 시행함으로써 불필요한 유통비용가중

2. 개선방향(정책목표)

- SOC로서의 공영도매시장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공익환원
- 유통비용의 절감을 위한 경쟁체제 도입과 구조조정
- 도매시장별 상황에 맞도록 탄력적으로 수수료를 결정
- 하역비단가의 결정을 위한 교섭당사자의 명확화를 통하여 합리적 교섭유도
- 합리적인 거래제도와 경쟁체제의 도입을 통해 유통과정의 거품현상 제거

3. 검토과제

□ 대안제시

-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경영진단 의무제 도입(임직원수 및 급여 수준, 배당율에 대한 평가)으로 경영합리화 달성.
 - 판매, 출하장려금 폐지
 - 시장별 도매시장운영관리위원회에서 상장수수료를 결정(하역비포함)
- 하역비는 수탁주체가 부담토록 하고, 하역단가의 교섭 실무담자
 - 하역업무의 수탁주체 전담(상장수수료에 하역비 포함)
- <전문중도매법인> 수탁판매 및 정가수익매 허용
 - 일정규모 이상의 중도매법인에게 수탁도매업을 허용함으로써 상장수수료 부분의 거품을 제거

* 일부에서 도매시장법인이 받는 상장수수료율(5%)이나, 중도매인이 받는 수수료율(유사8%, 예외품목6%)이 같다고 주장하기도 함
그러나 도매시장법인의 수수료율은 경락가격 대비 요율이기 때문에 결국 생산자가 받아가는 대금으로 놓고 따져 본다면 직접적인 판매가의 요율을 제하는 중도매인에 비해 낮기 마련임

<산식>

⇒ 도매법인 수탁시 출하자가 가져가는 금액

오이 1Box 경락가 18,000 원의 경우
 $18,000 - 900 = 17,100$ 원

⇒ 중도매인 수탁시 출하자가 가져가는 금액(유사8% 적용)

직접판매가 19,000원
 $19,000 - 950 = 18,050$ 원

※ 아울러 중도매인 수탁의 경우 진열비나 선별비 운송비용등이 생략되므로 유통비용의 절감가능

- 송장검인제 실시 및 정산법인 설립을 통한 대금정산의 정확성을 담보

- 하역노조의 용역업체화
 - 기계화를 통해 하역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토록 하되, 인원감축 부분에 대한 정부지원

대안별 장단점(현행유지와 개선안 비교)

| | |
|-----|-----------------------------------------------------------------------------------------------------------------------------------------------------------------------------|
| 개선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매시장 별 상장수수료의 결정에 생산자, 소비자 참여로 탄력적인 수수료율의 결정 - 경매단계의 축소로 유통비용 절감 - 하역단가 교섭을 실무담자가 행함으로써 하역비 부분의 거품 제거 |
|-----|-----------------------------------------------------------------------------------------------------------------------------------------------------------------------------|

4. 추진방법

신규예산 확보 및 예산확대

- 하역노조의 인원 감축시 정부보조 필요

농안법령 및 관련법규 개정

- 농안법 '제6장 농수산물 유통기구의 정비'에 도매시장별 <도매시장 관리위원회> 설치근거 마련
- 농안법 제28조 및 제29조 보완(중도매법인 수탁·수의매 허용)

관계부처 협의등

- 필요없음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1. 현 황

□ 현행제도

- 하역의 개념 : 농산물이 도매시장에 반입되어 반출되기까지의 물류기능 (하차, 선별, 진열, 이송, 상차 등)
- 하역비 부담: 하차·선별·진열 - 출하주 부담, 이송·상차 - 중도매인 부담
※ 부담주체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관행에 따라 유지
- 하역업무의 법적 근거 : 농안법 제33조의2
 - 개설자의 의무조항 : 하역체계 개선, 하역기계화 촉진 노력
 - 도매시장법인의 역할 : 하역전문업체 등과 용역계약 체결 가능
- 가락동 도매시장의 하역 : 하역노조원에 의해 수행
 - 하역노조 : 2개단체(항운노조, 연합노조)소속 5개조합(청과3, 수산2)운영
 - 하역인력 : 약 1,694명(청과 1,411, 수산 283)

□ 추진실적

'95. 6월 부터 배추, 무 등 차상경매 품목의 하역비 부담 징수관련 문제 제기와 하역비 부담주체에 관한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여, '96.7.10자 정부와 관리공사는 가락시장 하역업무 개선대책을 수립시행 하였으나 이해주체간 마찰과 하역기계화 여건미비 등으로 현재까지 개선 성과가 미흡한 실정임

< 하역비 부담주체의 변경 >

- 하역비는 수탁주체인 도매시장법인(공판장)이 부담토록 노력
 - '98~2000년도 도매시장법인 지정시 조건 부여

< 하역비 정산 >

- 당초 상장수수료 1% 인상분으로 관리공사, 도매시장법인, 하역회사가 공동 정산코자 하였으나 하역회사 설립 보류(부가세 면세조치 불가등 사유)로 사실상 무산

< 하역회사 설립 및 하역인력 감축 추진 >

- 당초 청과부류 3개 하역회사 설립으로 현 하역 인력의 1/4을 감축 추진 코자 하였으나 전제여건 미비로 추진 유보
 - 관계기관(당시 재경원)에 부가세 면제 조치를 건의 하였으나 유사한 형태의 타업계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곤란하다는 견해 회시
 - 부가세 발생시 매년 30억원 이상 추가 유통비용 발생
 - 하역인력 감축은 기계화 진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감축 추진
 - 일정수준(현원의 50%정도) 감축 후 도매시장법인의 직원화 유도

< 하역장비 확보 및 운영 >

- '97년도 하역장비 확보 : 지게차 15대, 파레트 3,500대
 - 관리공사의 쓰레기유발부담금으로 장비구입지원(지게차 6대, 파레트 3,000대)
- 지게차 운전요원 확보 : 하역원 52명
 - 국가기술자격시험 수시검정 실시('96.12.13)
- 비규격 파레트(1050 x 1050)에 대한 정부지원 및 사용가능
- 화물차 적재함 개조 허용 건의(건설교통부)

< '98년 하역노임 동결 >

- 매년 15~20% 인상하던 하역노임을 '98년도에는 동결조치 합의

< 기타사항 >

- 포장 및 파레트 적재 출하를 통한 하역기계화 시범사업 실시
 - 배추, 사과, 배, 오이, 양배추, 감자, 고구마, 양파, 수박등 9개 품목
 - 세미나, 시연회 개최등 12차례 실시(하역기계화 타당성 검증)
- 규격포장 및 파레트 적재출하 홍보 (신문광고, 책자, 팜플렛 제작 배포)
- 포장출하품 적치를 위한 비가림시설 설치(7개동 639평)

2. 개선 필요성

□ 문제점

- 수작업에 의존하는 하역체계로 인한 유통비용 가중
 - 현행 하역장비는 수동식기기(손수레, 핸드카)가 대부분으로 효율성 저하
 - 작업환경이 열악하여 최근 인건비가 계속 상승하고 하역인력 증가
- 하역노조에 의한 하역작업의 독점성과 배타적 경향
 - 실질적인 하역 주체가 없이 하역노조원에 의한 하역비 절감난이
 - 하역노조의 강력한 내부 결속력으로 세력화 대응
 - 하역기계화시 인력감축, 임금저하를 우려하여 하역체계 개선에 비협조적
- 하역요율 책정방식의 원가개념 미흡
 - 하역작업에 대한 정밀한 측정(투입인력, 소요시간, 난이도 등)이 없이 관행적으로 수량단위, 포장단위의 하역단가 책정 운용
- 하역기계화에 필요한 산지유통여건 미성숙
 - 규격화, 포장화, 등급화 등이 미흡하여 하역기계화 저해
 - 소량 개별농가 출하시 하역기계화 작업 난이
- 하역업무 개선을 위한 노력에 비해 가시적 성과 미흡
 - '80년대 이후 지속적인 연구, 논의가 있었으나 실질적인 대안 부재
 - 도매시장 하역비 절감을 위해 정부의 대폭적인 지원 필요

□ 여건변화

- 도매시장법인의 하역비 부담에 대한 인식 변화
 - 하차·선별·진열은 경매를 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인 바 기존의 하역비 단순 전달방식에서 벗어나 하역업무에 직접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인식 추세
 -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도 규격 포장화와 하역기계화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추진하여야 할 절대과제임을 인식할 필요

- 하역노조에서도 유통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 분위기
 - IMF체제의 영향과 유통경로 다원화 정책으로 인한 거래물량 감소로 현재의 하역인력 유지는 임금저하로 직결되므로 자구책 마련 필요

3. 개선방안

□ 하역조직의 개선대안

| 구 분 | 하역전문회사 용역 | 도매시장법인 직원화 | 하역노조(현행) |
|-----|---------------------------------------------------------------------------------------------------------------|--------------------------------------------------------------------------------------------------------------------------------------|------------------------------------------------------------------------------------------------------|
| 장 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역기계화 추진 용이 • 하역비 절감가능 (경쟁입찰) • 하역기술 향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장화 적극유치 • 하역서비스향상 • 하역원 복지 및 작업여건 향상 • 하역기계화의 점진적 추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역노조와 마찰 최소화 |
| 단 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비용발생 (부가가치세, 설립비용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매법인 경영압박 (조직비대화 초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역기계화 저해 • 하역비 증가 추세 • 작업환경 열악 |
| 검 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하역노조가 주도한 전문회사 설립이 필요하나 자금력이 부족하여 외부의 전폭적인 지원필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적인 직원화는 사실상 어려움 있어 기계화 추진단계별 인력감축 후 직원화 바람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하역노조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할 필요 |

□ 하역비 부담주체의 개선대안

| 구 분 | 도매시장법인 부담 | 출하주 부담(현행) |
|-----|-----------------------------------------------------------------------------------------------------------|-----------------------------------------------------------------------------------------------------------------------------------|
| 장 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경쟁력 강화 • 하역비 절감추진용이 • 하역비 관련 갈등해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관행의 유지 |
| 단 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매시장법인 경영압박 (상장수수료와 연계 불가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역비 부담 주체 관련 논란 계속 • 하역업무 개선미흡 • 하역비 절감 미비 (하역노조에 체계적 대응불가) |

□ 하역비 인하방안

- 하역비를 상장수수료에 흡수
 - 기존 상장수수료율(가락시장 5%) 범위내에서 하역비 지급
 - 출하장려금(0.75%) 판매장려금(0.75%) 폐지
 - 부족분은 도매시장법인의 자체경영합리화로 해결
 - ※ 하역비 비율 = 과실류 0.88%, 포장채소류 1.31%, 비포장채소류 2.12%

- 포장출하품 하역단가 인하 ----- 하역노조 협조
 - 하역원의 실질적 임금계산과 노력제공도를 정확히 평가(객관적 검증)
 - 비현실적인 하역단가 및 포장출하품 하역단가 인하조정

- 하역인력 감축 보조금 지급 : 도매시장법인에 농안기금 용자지원
(도매법인 직원화시)
 - 현 하역 노조원 등록 관리(제도권 흡수)
 - 기계화 정도에 따른 단계적 감축계획 수립(5개년 계획)
 - 하역노조원의 개인별 심사 및 권리금 검증
 - 도매시장법인과 하역노조간 단순노동 공급계약시 실직보상금 포괄계약 삼입

- 하역기계화 장비 확보 지원 ----- 관리공사 보조 확대
 - 하역장비(지게차, 팔레트등)의 법인별 소요량 신청
 - 포장화, 하역기계화 정도를 감안하여 연도별 구입수량 산정
 - 매년 관리공사의 재원(쓰레기 유발부담금)으로 장비구입 지원

4. 추진과제

□ 추진방향

- 하역전문용역회사 설립 운영으로 하역비 절감
- 하역비 부담주체를 도매시장법인으로 강제화 또는 규정화
- 하역인력 감축 및 하역기계화 사업 적극 지원

□ 주요과제

- 하역비 부담 주체의 도매시장법인 의무화
 - 농안법 시행규칙 또는 업무규정에 관련조항 삽입
- 하역전문회사 설립운영시 세제지원 방안 재추진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관련 동법시행령 제35조에 관련조항 삽입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에 공영도매시장의 하역용역을 포함시킴

- 쓰레기 유발 부담금 사용 범위 확대
 - 농안법 제35조 제2항의 부담금 사용범위 규정보완
(당 초) 농수산물의 규격출하 촉진을 위한 사업재원으로 사용
(변 경) 농수산물의 규격출하 및 하역기계화 촉진을 위한 사업재원으로 사용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1. 현황

□ 현행제도

- 도매시장 하역은 하역노조가 담당
- 하역비
 - 개설자 주관하에 하역노조가 제시한 하역요금표를 출하단체 대표 · 도매시장법인 · 중도매인 · 학계전문가 등이 참석한 하역료조정회의에서 조정, 결정

□ 하역비 현황

○ 1997년 하역비 현황

(단위 : 백만원)

| | 거래액 | 하역비 | 비율 |
|-------|-----------|--------|------|
| 가락시장 | 1,522,348 | 20,390 | 1.3% |
| 가락시장외 | 897,757 | 13,934 | 1.4% |

2. 개선 필요성

□ 문제점

- 하역이 하역노조원의 수작업에 의해 이루어지고 기계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하역비 절감 곤란
- 기계화작업이 되기 위해서는 출하단계에서 포장화 · 파레트화가 되어야 하나, 영세소농구조화에서 파레트단위 출하가 되지 않고 있음은 물론 업체류는 포장조차 되지 않고 산물로 출하되고 있어 쓰레기처리 비용 등 유통비용을 증가시키고 있음

3. 개선방안

□ 대안제시

| | 일 본 | 대 만 | 한 국 |
|--------|--------------------------------------------------------|------------------------|--------|
| 하역형태 | 출하자에 의한 직접하역, 출하자와 운송업자의 계약에 의한 운송업자 하역, 하역전담회사에 의한 하역 | 시장관리기구가 하역원을 직원으로 채용 | 하역노조 |
| 기계화 정도 | 대부분 기계화 | 대부분 인력 | 대부분 인력 |
| 하역비 부담 | 출하자. 기계화 되고, 법인직원이 보조하고 있어 하역비가 경미함 | 출하자. 농회를 통한 출하시 하역비 면제 | 출하자 |

□ 장단점

| | 장 점 | 단 점 |
|-----------|----------------|---------------------------------------------|
| 하역노조 (현행) | ○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음 | ○ 기계화 곤란 ○ 하역노조원 감축 곤란 |
| 하역회사 | ○ 하역기계화 촉진 | ○ 부가세 면제가 되지 않을 경우 10% 비용증가 |
| 법인직원화 | ○ 하역기계화 촉진 | ○ 집단파업시 시장혼란 ○ 중도매인물건의 하역을 위한 별도 하역조직 필요 |

□ 대안

- 우선 하역기계화가 될 수 있는 여건 마련하여 우선 추진
 - 생산자단체의 공동선별·공동출하·파레트출하 추진
 - ※ 생산자단체 공동정산·파레트출하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필요
- 하역기계화 여건 추이를 보아가며 하역회사 검토
 - 단, 부가세 면제 선결 필요
 - ※ 기존 도매시장의 하역노조원 법인직원화는 파업시 문제점이나 중도매인 배송 별도 하역조직 필요성을 감안할 때 곤란

(전국농민회총연맹)

1. 현 황

□ 현행제도

○ 농안법 제33조의 2(하역업무)

① 개설자는 도매시장내 하역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하역체제의 개선, 하역기계화의 촉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하역비의 절감으로 출하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내의 하역업무에 대하여 하역전문업체등과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추진실적

○ 하역체계개선 및 하역기계화 추진 미비

○ 농산물 규격포장화를 위한 산지 포장박스출하가 일반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 파렛트규격화 및 하역기계화업무는 현재까지도 실용화단계에 와 있지 못함.

○ 도매시장법인이 하역비 부담주체가 되고 하역노조원을 도매시장법인의 직원화한다고 몇 년째 하역비인상때마다 공표하고 있으나 추진사항은 전무함.

2. 개선필요성

□ 문제점

○ 도매시장 하역비는 현재 방식대로 출하자가 모두 부담하는 것은 부당함.

- 도매시장에서 출하주가 부담하는 하역비는 하역노조와 도매시장법인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단 한차례도 인하된 적이 없음.
- 현재 생산지에서는 작업인부의 품값을 30%이상 인하하는 등 절약형농업을 위한 다각적인 생산비절감방안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영도매시장의 하역단가는 무풍지대로 있음. 또한 그 누구도 생산자를 위하여 하역비의 인하를 주장하는 주체가 없는 실정임. 이러한 체제에서는 하역비의 절감대책이 마련될 수 없음.
- 하역업무의 기계화와 효율화의 추진을 하역노동조합에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으며, 하역업무의 효율화가 경영수지와 직결되는 체제의 도입을 통해 자체적 노력을 통해 하역비가 절감되도록하는 시스템의 개발이 절실히 요청됨
- 농안법을 개정하여 관행적으로 하역노조에 의해 실시되던 하역업무를 도매시장법인 및 전문중도매법인의 전담업무가 되도록 하여야 함.

□ 여건변화

- 단 한차례도 인하된 적이 없는 하역비가 농수산물 도매유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대되어 하역비의 인하방안이 유통비용축소의 중요 과제로 부각됨.

< 가락동시장 수수료율과 하역비용의 비교 >

| | | | |
|------------------|-------------|--------------------------------|------------------------------------------------------------------|
| 상장수수료 : 거래금액의 5% | | 하역비거래금액의 1.26% (공판장수익의 42%) | 출하선도금을 지급하는등 재정의 투자와 위탁판매에 의한 경매의 대가로 징수하는 공판장의 수익에 비해 하역비가 과도함. |
| 출하장려금 | 거래금액의 0.75% | | |
| 판매장려금 | 거래금액의 0.75% | | |
| 시장사용료 | 거래금액의 0.5% | | |
| 공판장수익 : 거래금액의 3% | | | |

3. 개선방안

□ 대안제시

- 하역비용 절감을 통한 유통비용 축소
- 하역인원의 작업여건 개선 및 복지 증진
- 하역업무 효율화를 위한 산지출하체계 개선
- 규격포장화 촉진을 위한 유인책 제공
- 규격포장화 출하품에 대한 거래우선원칙 확립
 - 표준파레트 기준 설정, 홍보 및 보급, 자금지원
- 하역작업의 기계화 촉진 위한 파레트 적재 필요
- 통일된 기준 마련 및 확대 사용을 위한 홍보 및 자금지원

□ 추진방안

- 수탁자 또는 구매자에 의한 하역비 부담 체계화
- 경매품목은 도매시장법인이 하역비 부담
 - 부류별 상장수수료를 체계를 품목별·규격별로 세분화
- 비경매품목은 중도매인이 하역비 부담
- 하역노조체계를 하역용역회사체계로 전환
- 하역용역회사는 도매시장법인, 전문중도매법인(도매상) 또는 중도매인과 하역계약 체결

□ 대안별 장단점(현행유지와 개선안 비교)

| 구분 | 현 제도 | 개선제도 | 비고 | |
|----------|---------------------|-----------------------------------|---------------------------------------|------------------------------------------|
| 하역 업무 | 관행적으로 하역노조 관장 | 도매시장법인 및 전문중도매법인의 고유 업무로 변경 | 하역업무의 효율 화 및 하역기계 화 촉진 | 경매 및 상장에외 거래에 동일적용 |
| 하역 비용 | 출하자부담 | 도매시장법인 및 전문중도매법인 부 담 | 수탁자 또는 구 매자에 의한 하 역비 부담 체계 화 | 하역노조원의 법인 직원화 또는 전문 용역회사 설립 검 토 |

□ 외국의 사례

○ 주요국 도매시장의 하역업무주체

| 국가명 | 도매시장 | 하역업무주체 |
|-----|-------------------------|----------------------------------------------------------------------------|
| 프랑스 | 헌지스(Rungis) 농수산물도매시장 | Semmaris(관리공사)가 허가한 하역업체중 도매상이 직접 하역업체를 선정하여 하역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소요비용은 도매상이 부담 |
| 벨기에 | 브라바(Brava) 도매시장 | 출하자가 시장까지 운송하면 시장직원이 상하차 무료지원 |
| 미국 | LA 농산물도매시장 | 운수업자 |
| | LA 조합도매회사 | 운수업자 |
| | 샌프란시스코 청과도매시장 | 노동조합 |
| | 탐파 청과도매시장 | 비조합 노동자 |
| | 중앙뉴욕 지역시장 | 도매상인 |
| 대만 | 대북시 청과도매시장 | 하역비 : 생산자 및 출하주가 부담 하역노조는 공사에서 관리 |
| | 대북시 수산물도매시장 | 公社 |
| | 대북시 화훼시장 | 公社 |
| 일본 | 동경도(東京都) | 도매시장법인 |
| | 쓰끼지(築地) 중앙도매시장 | 도매시장법인 및 중도매인 |
| | 오사카(大阪) 중앙도매시장 | 도매시장법인 및 중도매인 |
| 태국 | 방콕 시몬무앙도매시장 | 출하자나 상인 |
| | 방콕 파클롱도매시장 | 출하자나 상인 |

□ 개선(안)

- 도매시장반입 농수산물에 대한 하역비는 수탁자가 부담
- 하역노조를 도매시장법인, 전문중도매법인 또는 중도매인의 직원으로 흡수하거나 용역업체로 전환.

4. 추진계획

□ 추진방향

- 하역업무 및 비용부담주체의 변경을 통한 하역업무의 효율화 촉진과 물류체계의 개선.

5. 추진과제 및 일정

□ 농안법령 및 관련법규 개정

- 농안법 제33조의 2 (하역업무)
(개정 및 추가보완)
 - ② 도매시장에 반입된 농수산물에 대한 하역비는 그 농수산물을 수탁받은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③ 도매시장의 하역업무는 도매시장법인, 전문중도매법인 또는 중도매인이 직접 수행하거나 개설자가 선정한 용역업체와 계약을 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④ 개설자는 도매시장의 하역업무를 전담하는 하역용역업체를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도매시장법인과 전문중도매법인 또는 중도매인이 직원을 채용하여 하역업무를 전담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⑤ 하역전문업체는 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거 하역업무내용을 개설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 관계부처 협의 계획 등

- 노동부(노동조합의 하역업체 전환에 따른 고용안정방안),
재경부(하역전문업체에 대한 세제지원)

4-3 도매시장 정산회사 설립 운영방안 검토

(서울특별시도매시장관리공사)

1. 대금정산 현황

【 출하자와 도매시장법인의 정산 】

- 도매시장법인에서 경매 당일 개별 출하주에게 직접정산
- 상장수수료, 운임, 하차비, 작업비등 공제금을 제외하고 도매시장법인이 정산
- ※ 상장예외품목은 해당 중도매인이 출하자에 직접 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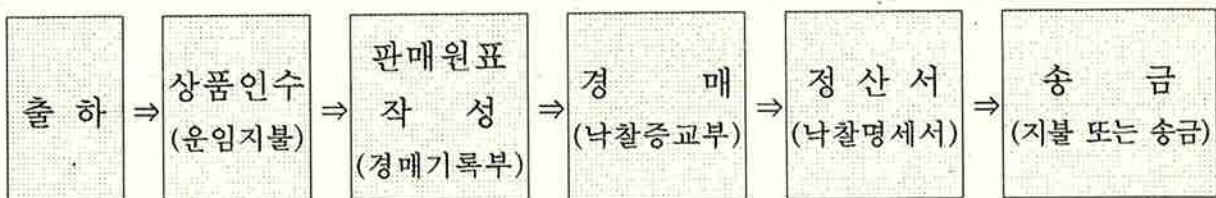
【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의 정산 】

- 중도매인의 보증금(담보) 제공 한도내에서 거래하고 매월 결제기한 내 정산
- 대금결제의 지불유예에 관한 특약을 도매시장법인별로 설정 운용
- ※ 매월 10일단위, 15일단위, 30일단위

【 중도매인과 소매상의 정산 】

- 보증금(담보)없이 신용거래, 평균정산기일은 10~30일 소요
- ※ 일반적으로 도매시장 대금정산의 개념에서 제외

〈 도매시장의 대금정산 체계 〉



- 운전자 지불 (법인, 하역반)
- 도매법인작성
- 낙찰증(중도매인)
- 법인→출하자
- 법인→출하자
- 배달전표(하역반)
- 법인→중도매인
- 중도매인→법인

2. 문제점 (개선필요성)

- 도매시장법인마다 개별정산업무 수행으로 유통비용 과다 발생
 - 도매시장법인별 정산인력 15~20명 소요 (가락시장 약150여명 종사)
 - 정산관련 장비의 유지관리비용 및 신규개발비용 계속 증가
- 현행 농안법상 중도매인의 도매시장법인 소속제 폐지제도 사실상 사문화
 - 거래보증금을 이중삼중으로 부담해야 하는 재정부담 가중
 - 법인별 품목별로 조직된 배타적 중도매인 사조직에 의해 배제
- 보증금등 담보제공 관련 이해주체간 이견 상존
 - 보증금의 예치 이자를 중도매인에게 환원 주장(중도매인측)
 - 물품대금 연체이자발생분 손실 보전 주장(도매시장법인측)
 - 정산방법, 담보설정, 거래한도액, 미수금정산등 관련 마찰 지속
- 도매시장법인의 미수금 부담 가중
 - 중도매인의 경영악화시 장기 미수금 과다 발생
 - 담당경매사에게 미수금 회수 책임을 전가하는 사례 발생

3. 개선방안 ----- 정산회사의 설립운영

- | | |
|----------------------|------------------------|
| ○ 1도매시장 부류별 1정산체제 구축 | ⇒ 유통비용 절감 |
| ○ 중도매인의 경매참여기회 확대 | ⇒ 경매의 활성화 및 공정성 |
| ○ 대금정산업무의 표준화, 자료화 | ⇒ 도매시장 거래의 투명성, 신뢰성 제고 |

□ 정산회사의 설립방안

(제1안) 공공출자법인 형태

- 개설자(관리공사),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지정금융기관 공동 출자
- 출자비율 산정은 정산업무의 주체인 도매시장법인이 주축이 되어야 하므로 전체금액의 49% 출자

(제2안) 도매시장법인 공동출자

(제3안) 관리공사 전액출자

※ 일본의 청과물 중양도매시장 정산회사 출자비율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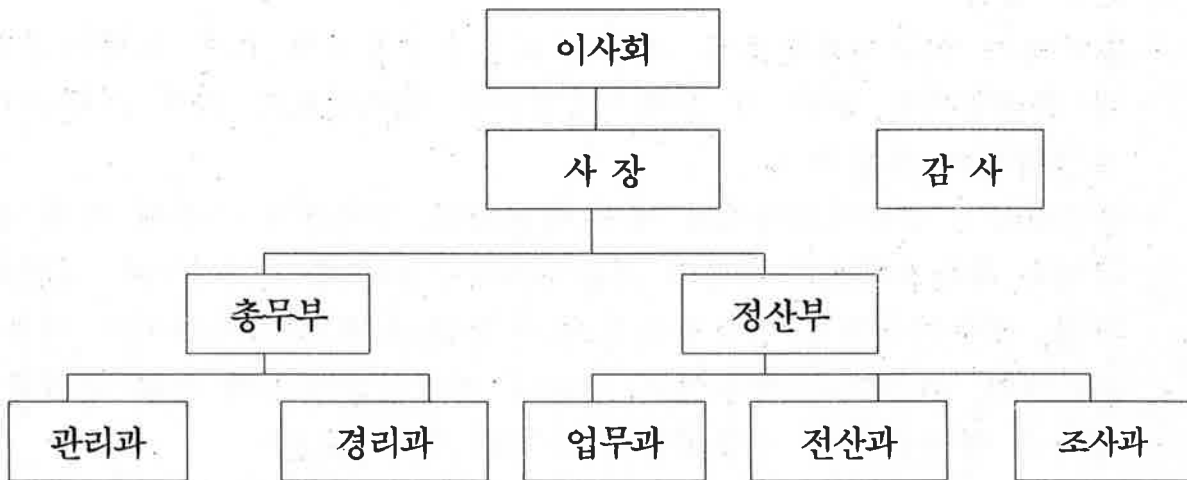
| 구 분 | 도매업자 | 중도매업자 | 매매참가인 | 개설자 | 은행 등 금융기관 |
|--------|------|-------|-------|-----|--------------|
| 구성비(%) | 47 | 20 | 14 | 15 | 4 |

○ 설립절차

- 정산회사 설립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전문회계기관 용역 추진)
- 발기인 구성 및 사업계획서 작성
- 정관제정 및 발기인의 주식 인수(출자)
- 이사, 감사의 선임, 창립총회 개최
- 법인설립 등기 및 사업자 등록 신고

○ 정산회사 조직 (구상)

- 이사회, 사장, 감사, 2부 5과로 최소한 인력 운용(약5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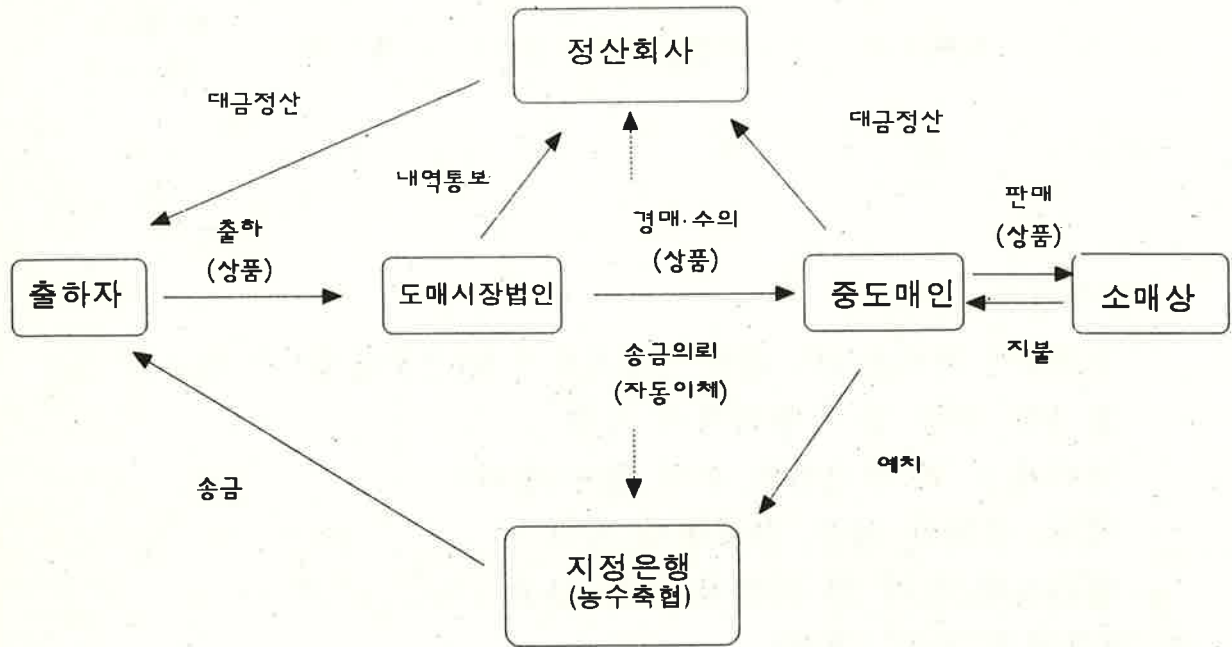
□ 정산회사의 운영

○ 주요업무

- 출하자와 도매시장법인,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매참인)간 대금결제
- 도매시장법인 보증금, 중도매인 거래보증금의 금융기관 예치 관리
- 지정금융기관과 대금정산에 관한 출납대행 계약 체결
- 출하장려금, 판매장려금의 운용관리
- 채권관리, 신용정보관리, 자료작성등 업무

※ 필요시 상장예외품목 정산업무 수행 확대

○ 운영 체계



○ 운영 방법

- 출하자가 입금계좌번호를 기재한 표준송장양식에 의거 도매시장법인에 판매위탁을 하면 각 도매시장법인은 판매원표와 함께 거래내역을 정산회사에 통보하고
- 정산회사는 당일거래내역의 개별 출하자별, 수탁계약 조건에 의해 결제금액을 분류집계하고 시장내 금융기관(농수축협)에 출하자구좌, 정산회사구좌, 매수인구좌를 통보함으로써 자동대체 결제(자기테이프 이용)
- 중도매인, 매참인등 매수인은 시장내 지정금융기관에 전원 구좌를 개설하고 일정한도내 자동대출이 가능한 특약 설정
- 거래보증금은 연간 매수예정액, 신용상태를 고려 개인별 지불유예 특약기간 평균 매수액의 일정비율을 정산회사에 보관관리 (필요시 이자지급 가능)

□ 정산회사 운영인력 검토

○ 총원 55명(임원2, 직원 53)

- 임 원 : 사장, 감사 각 1명
- 직 원 : 부장 2명, 과장 5명, 대리 10명, 사원 36명 (일반12, Coding24)

※ 1인당 Coding건수 : 495건/1일 가정(50%증대)

< 법인별 정산담당 인력현황 >

(’98. 3월현재)

| 구 분 | 계 | 서울 | 농협 | 중앙 | 동화 | 한국 | 대아 |
|---------|-----|----|----|----|----|----|----|
| 정산인력(명) | 110 | 16 | 13 | 24 | 24 | 19 | 14 |

※ 청과법인 총임직원 638명의 17.2% 수준

- ’97년도 도매시장 법인의 일평균 판매원표 거래건수 : 11,859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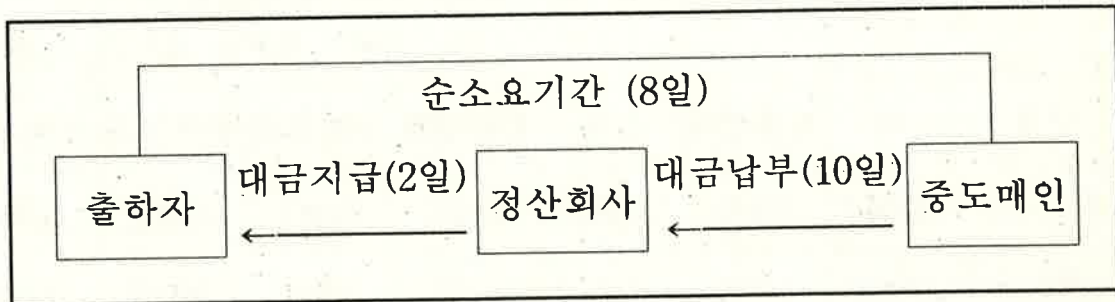
- 거래내역 Coding 인력 : 약 36명(법인별 평균 6명)

※ Coding 인력의 1인당 정산건수 : 약 330건 /1일

□ 정산회사의 운전자금 산정

○ 대금정산 순소요기간(8일) × 일평균 거래금액 = 42,136백만원

※ 대금정산 순소요기간 (가정)



< ’97청과법인 일평균 거래금액 현황 >

| 구 분 | 계 | 서울청과 | 농협 | 중앙청과 | 동화청과 | 한국청과 | 대아청과 |
|--------------|-------|------|-----|-------|------|-------|------|
| 금 액 (백만원) | 5,267 | 947 | 695 | 1,060 | 964 | 1,124 | 477 |

< 법인별 대금정산 소요기간 현황 >

('98. 3월현재)

| 구 분 | 서울청과 | 농협 | 중앙청과 | 동화청과 | 한국청과 | 대아청과 |
|--------------------|------|-----|------|------|----------------|------|
| 출 하 자 (대금정산) | 2일 | 2일 | 2일 | 2일 | 2일 | 2일 |
| 중도매인 (미수금 마감단위) | 10일 | 30일 | 15일 | 10일 | 과일15일 채소10일 | 10일 |

□ 운전자금 확보방안

- 정산회사 설립자본금 = 약 120억원 (총 운전자금의 30%수준)
- 농안기금 융자금 = 약 321억원 (현 지원수준의 2배규모)
- ※ 설립자본금의 규모 및 배분비율은 협의 조정

<법인별 운전자금 및 거래보증금 확보현황>

(단위 : 백만원, '97. 12. 31현재)

| 구분 | 계 | 서울청과 | 농협 | 중앙청과 | 동화청과 | 한국청과 | 대아청과 |
|-------|--------|-------|--------|--------|-------|--------|-------|
| 운전자금 | 60,044 | 6,949 | 18,995 | 10,487 | 6,847 | 10,902 | 5,864 |
| 거래보증금 | 9,867 | 1,894 | 220 | 1,473 | 2,311 | 2,516 | 1,453 |

<법인별 농안기금 융자액 현황>

(단위 : 백만원, '98.3월현재)

| 구 분 | 계 | 서울청과 | 농협 | 중앙청과 | 동화청과 | 한국청과 | 대아청과 |
|-------|--------|-------|-------|-------|-------|-------|-------|
| 계 | 37,464 | 5,800 | 9,310 | 5,450 | 6,785 | 6,821 | 3,298 |
| 선도자금용 | 22,064 | 2,617 | 9,310 | 1,898 | 3,489 | 3,001 | 1,749 |
| 결제자금용 | 15,400 | 3,183 | - | 3,552 | 3,296 | 3,820 | 1,549 |

□ 정산회사의 수입지출 추정

< 수입 > - - - - - 년 5,045백만원 수준

- 정산수수료 수입 --- 거래금액의 0.1%수준
 - '97년간 거래금액 1,753,739백만원 \times 0.1% = 1,754백만원
- 거래보증금 운전자금 운용이자 수입 3,291백만원
 - 거래보증금 이자 9,867백만원 \times 년12% = 1,184백만원
 - 운전자금 이자 42,136백만원 \times 년 5% = 2,107백만원

< 지출 > - - - - - 년 4,969백만원 수준

- 임직원 인건비 추정
 - 임 원 : 사장 년45백만원, 감사 년40백만원
 - 직 원 : 부장 년38백만원 \times 2명 = 76백만원
 - 과장 년33백만원 \times 5명 = 165백만원
 - 대리 년28백만원 \times 10명 = 280백만원
 - 사원 년23백만원 \times 36명 = 828백만원
 - 합 계 : 1,434백만원
- 복리후생비등 제경비 추정
 - '97년도 농협가락공판장 인건비대 제경비 비율 적용
 - ※ 사업관리비 3,090백만원, 인건비 1,685백만원, 제경비 1,405백만원
 - 산출 = 1,434백만원 \times 84% = 1,190백만원
- 농안기금 지급이자
 - 융자금액 321억원 \times 년5% = 1,605백만원
- 거래보증금 이자보상
 - 보증금 9,867백만원 \times 년7.5% = 740백만원

4. 개선시 기대효과

□ 유통비용의 절감

○ 대금정산 관련 인건비 절감

| 구분 | 현행 | 개선 | 절감효과 |
|---------|--------------|------------|------------|
| 소요인력 | 110명 + 임원13명 | 53명 + 임원2명 | 약 68명감소 |
| 인건비(년간) | 3,760백만원 | 1,434백만원 | 약 2,326백만원 |

< '97년도 도매시장법인별 인건비 지급 현황('97결산결과) >

| 구분 | | 계 | 서울청과 | 농협 | 중앙청과 | 동화청과 | 한국청과 | 대아청과 |
|-------------------|----|--------|--------|--------|--------|--------|--------|--------|
| 인원수 (명) | 총원 | 638 | 93 | 59 | 129 | 133 | 134 | 90 |
| | 임원 | 79 | 4 | - | 20 | 19 | 17 | 19 |
| | 직원 | 559 | 89 | 59 | 109 | 114 | 117 | 71 |
| 년간 인건비 (백만원) | | 19,504 | 2,439 | 1,685 | 3,628 | 4,249 | 4,294 | 3,209 |
| 1인당 평균인건비 (천원) | | 30,570 | 26,226 | 28,559 | 28,124 | 31,947 | 32,045 | 35,655 |

○ 인건비관련 경비 및 정산업무 제비용 대폭 절감

※ 도매시장법인 일반관리비(장려금, 시장사용료, 손실보전금, 대손상각비 제외)중 인건비 비율을 40%가정시 9,400백만원 절감 추정

○ 상장수수료 요율 인하 가능성

- 절감요율 0.67% - 정산수수료 요율0.1% = 0.57%

※ 절감요율 = 절감가능액(11,726백만원) ÷ '97거래금액(1,753,739백만원)

□ 거래의 투명성 확보

○ 정산회사의 정산처리결과를 활용함으로써 제반통계의 정확성 유지

○ 대금결제의 공공성이 확보되고 거래당사자의 취급 방지

○ 상장예외품목까지 확대시 안정적 대금정산 및 투명성 확보

□ 경매거래 활성화

- 보증금 금융부담 경감으로 인한 다수법인의 경매참여로 경매 활성화
- 중도매인 소속제 폐지에 대한 법률집행의 실효성 확보

□ 도매시장법인의 미수금 관리업무 부담 해소

5. 추진시 검토 과제

□ 농안기금 용자지원 확대

- 현행 15,400백만원(연리8%) ⇒ 변경 32,100백만원(연리 5%)

□ 농안법 개정 필요

- 현행 농안법 제25조에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간 특약에 의한 정산 조직 설립근거만 규정되었으므로 개설자(관리공사), 지정금융기관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보완

□ 정산회사 설립운영 관련 전문기관 용역추진

- 이해관계단체의 혼란방지 및 사업추진의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전문 기관(유통분야 + 회계분야 + 전산분야)의 연구용역 필요
- 시장별, 부류별 정산방식, 참여자의 범위, 정산기간, 정산수수료등 제반 검토요소에 대하여 이해관련자와 충분한 협의절차 필요

□ 설립운영시 정산회사에 대한 세제지원방안 강구

□ 정산회사 설립운영시 전제요건 검토

- 중도매인 개인별 거래한도 책정관련 예상 문제점 해결
- 전자식 경매(품목별 경매) 체제 구축
 - ※ 비용절감과 경매활성화를 위한 목적이라면 회사형태 보다는 정산소 형태가 바람직

< 참고자료 >

1. 도매시장법인별 인력운용 현황

| 법인명 | 계 | 임원 | 직원 | 운 용 현 황 | | |
|-------|-----|----|-----|---------|------------------|-------------|
| | | | | 관리업무 | 수집 및 가격 결정 업무 | 대금정산 업 무 |
| 계 | 638 | 79 | 559 | 160 | 289 | 110 |
| 서울청과 | 93 | 4 | 89 | 18 | 55 | 16 |
| 농협(공) | 59 | - | 59 | 14 | 32 | 13 |
| 중앙청과 | 129 | 20 | 109 | 27 | 58 | 24 |
| 동화청과 | 133 | 19 | 114 | 34 | 56 | 24 |
| 한국청과 | 134 | 17 | 117 | 40 | 58 | 19 |
| 대아청과 | 90 | 19 | 71 | 27 | 30 | 14 |

2. 법인별 일평균 판매원표 거래건수

| 법인명 | 계 | 서울청과 | 농협(공) | 중앙청과 | 동화청과 | 한국청과 | 대아청과 |
|-----|--------|-------|-------|-------|-------|-------|------|
| 2월 | 7,180 | 1,431 | 1,202 | 1,440 | 1,410 | 1,481 | 216 |
| 10월 | 11,859 | 2,347 | 2,066 | 2,419 | 2,350 | 2,322 | 355 |
| 평균 | 9,519 | 1,889 | 1,634 | 1,929 | 1,880 | 1,901 | 286 |

※ 개장일수 : 법정(333일), 영업(307일)

3. '97법인별 일평균 거래금액

(단위:백만원)

| 법인명 | 서울청과 | 농협(공) | 중앙청과 | 동화청과 | 한국청과 | 대아청과 | 합계 |
|-------------|---------|---------|---------|---------|---------|---------|-----------|
| 년 간 금 액 | 315,423 | 231,300 | 352,915 | 320,905 | 374,219 | 158,977 | 1,753,739 |
| 월 평균 금 액 | 26,285 | 19,275 | 29,410 | 26,742 | 31,185 | 13,248 | 146,145 |
| 일 평균 금 액 | 947 | 695 | 1,060 | 964 | 1,124 | 477 | 5,267 |

※ 개장일수 : 법정(333일), 영업(307일)

4. '97년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 손익현황

(단위:백만원)

| 구 분 | 자본금 | 상 장 수수료 | '97년도 당기순이익 | '96년도 당기순이익 | 전년대비 (%) | 당기순이익 /자본금(%) | 임직원 인건비 |
|-------|--------|------------|----------------|----------------|-------------|------------------|------------|
| 계 | 27,360 | 86,903 | 6,691 | 9,300 | 71.95 | 25.7 | 19,504 |
| 서울청과 | 5,000 | 15,510 | 1,047 | 2,089 | 50.12 | 20.9 | 2,439 |
| 농협(공) | - | 11,545 | 750 | ▽1,400 | - | - | 1,685 |
| 중앙청과 | 5,010 | 17,422 | 1,509 | 3,273 | 46.10 | 30.1 | 3,628 |
| 동화청과 | 4,900 | 15,913 | 964 | 1,280 | 75.31 | 26.4 | 4,249 |
| 한국청과 | 7,000 | 18,576 | 1,907 | 2,309 | 82.59 | 27.2 | 4,294 |
| 대아청과 | 5,450 | 7,936 | 514 | 1,984 | 25.91 | 9.4 | 3,209 |

5. 농안기금 대출현황

(단위:백만원)

| 법 인 명 | 용 자 액 ('98.2.28현재) | | | 대출일자 및 금액 | | | 상환예정 | |
|-------|-----------------------|--------|--------|-----------|--------|--------|-----------|--------|
| | 계 | 선도자금 | 결제자금 | 대출일 | 선도자금 | 결제자금 | 상환일 | 금 액 |
| 합 계 | 37,464 | 22,064 | 15,400 | - | 22,064 | 15,400 | - | 37,464 |
| 서울청과 | 5,800 | 2,617 | 3,183 | '97.04.10 | 732 | 1,113 | '98.04.08 | 1,845 |
| | | | | '98.12.26 | - | 2,070 | '98.12.17 | |
| 농협(공) | 9,310 | 9,310 | - | '98.01.10 | 1,885 | - | '98.12.17 | 3,955 |
| | | | | '97.04.01 | 4,860 | - | '98.03.30 | 4,860 |
| 중앙청과 | 5,450 | 1,898 | 3,552 | '97.11.14 | 4,450 | - | '98.11.04 | 4,450 |
| | | | | '97.05.09 | 938 | 1,219 | '98.04.07 | 2,157 |
| 동화청과 | 6,785 | 3,489 | 3,296 | '97.12.24 | 677 | 2,333 | '98.12.17 | |
| | | | | '98.01.14 | 283 | - | '98.12.17 | 3,293 |
| 한국청과 | 6,821 | 3,001 | 3,820 | '97.04.17 | 1,018 | 1,155 | '98.04.07 | 2,173 |
| | | | | '97.12.30 | 2,471 | 2,141 | '98.12.17 | 4,612 |
| 대아청과 | 3,298 | 1,749 | 1,549 | '97.04.16 | 1,039 | 1,325 | '98.04.07 | 2,364 |
| | | | | '97.12.26 | 1,962 | 2,495 | '98.12.17 | 4,457 |
| 대아청과 | 3,298 | 1,749 | 1,549 | '97.04.18 | 483 | 488 | '98.04.07 | 971 |
| | | | | '97.12.31 | 1,266 | 1,061 | '98.12.17 | 2,327 |

6. 운전자금 현황

(단위:천원, '97.12.31현재)

| 구분 | 법상확보 기준액 | 금월말 확보액 | 확보율(%) | '96확보액 (백만원) | 전년대비 | |
|----|-------------|------------|------------|-----------------|--------|-----|
| 합계 | 31,215,337 | 79,220,896 | 254 | 64,694 | 122 | |
| 청과 | 소계 | 25,348,741 | 60,044,000 | 237 | 47,769 | 126 |
| | 서울청과 | 4,564,553 | 6,949,399 | 152 | 9,347 | 74 |
| | 농협(공) | 3,379,999 | 18,995,416 | 562 | 9,967 | 191 |
| | 중앙청과 | 5,020,895 | 10,487,155 | 209 | 11,164 | 94 |
| | 동화청과 | 4,731,758 | 6,846,618 | 145 | 7,344 | 93 |
| | 한국청과 | 5,364,994 | 10,901,531 | 203 | 3,243 | 336 |
| | 대아청과 | 2,286,542 | 5,863,881 | 256 | 6,704 | 87 |
| 수산 | 소계 | 5,866,596 | 19,176,896 | 327 | 16,925 | 113 |
| | 강동수산 | 2,864,727 | 8,128,604 | 284 | 5,231 | 155 |
| | 수협(공) | 949,721 | 7,045,637 | 742 | 5,255 | 134 |
| | 서울건해 | 2,052,148 | 4,002,655 | 195 | 6,439 | 62 |

※ 농안법 시행규칙 제11조(도매시장법인의 운전자금) : 전년도 연간 거래금액의 1천분의 15이상

7. 법인별 대금정산 평균소요 일수(출하자, 중도매인)

| 법인명 | 서울청과 | 농협(공) | 중앙청과 | 동화청과 | 한국청과 | 대아청과 |
|-----------------|------------|----------|-----------|-----------|--------------------|-----------|
| 출하자 (대금정산) | 2일 | 2일 | 2일 | 2일 | 2일 | 2일 |
| 중도매인 (미수금마감) | 10일. 단위 | 1달 단위 | 15일 단위 | 10일 단위 | 과일(15일) 채소(10일) | 10일 단위 |

1. 현 황

□ 물류시설현황

○ 기본시설

- 부지 : 542,920m²(164,232평)
- 건평 : 260,721m² (78,868평)
- 주차장 : 4,707대(동시 주차능력)

○ 저온창고 : 12개소(청과 8, 수산 4)

- 저장능력 : 1,274톤(청과 734, 수산 540)

○ 냉동창고 : 1개소

- 냉동처리능력 : 25톤/일
- 냉장처리능력 : 1,700톤/일
- 제빙처리능력 : 20톤/일

○ 기타 배송시설, 포장센터, 유통가공센터 등 현대적인 물류지원 시설은 없음

- 데크시설 : 청과, 수산시장동 미설치
- 하역운반 : 인력에 의한 하역, 리어카 운반이 주종
 - 파레트사용, 지게차 하역, 전동차 운반은 일부에 국한
 - 하역노조원 현황 : 1,469명(청과)
 - '97하역비 : 234억원(청과) -> 133만원/인/일

□ 주요시설 정비실적

- 건물신축 : 12개동 ('98.3현재 총 48개동)
- 기계설비, 종합보수 등 : 매년 30여건 보완, 유지보수

< 연도별 시설투자금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 연 도 | 계 | '85~'89 | '90~'94 | '95~'97 | 비 고 |
|-----|--------|---------|---------|---------|---------------------|
| 금 액 | 47,383 | 14,755 | 11,512 | 21,116 | 시장사용료징수액의 64% 투자 |

* '98 시설투자비 예산액 : 67억원

2. 개선 필요성

□ 문제점

- 물량반입 과다로 시설부족, 교통혼잡
 - 4,680톤/일(계획물량) -> 7,686톤/일('97 거래량)
- 도매시장법인등 상인 과다 입주, 도소매 혼재로 물류저해
 - 중도매인점포(청과,수산) 2인 1점포 입주
 - 수산경매장 및 건어부류 중도매인점포 통로는 직판상인 점유 영업
- 상장경매제 확대실시를 위한 가설경매장 설치로 주차장 잠식
 - 채소, 수산 임시경매장, 마늘경매장 등 가설물
- 당초 건물의 평면적 배치로 부지이용을 저하(용적을 43%)
- 시설 노후화 및 시장특성상 보수비용 매년 증가 추세
('95년 이후 매년 70억원 소요)

□ 여건변화

- 건립 당시 도매시장의 입지가 시외곽으로 교통원활 등 접근성이 양호하였으나 주변지역의 도심화로 교통, 환경문제 발생
- Unit Road System 도입, 확산 추세로 도매시장내 하역기계화 여건 조성필요
- 고품질, 안전농수산물 선호 등 소비자 기호변화 등에 따른 저온냉장수송, 저온보관, 판매를 위한 시설필요
- 시장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 필요

3. 개선방안

□ 대안제시

(제1안) : 현대적 시설로 개,보수

- 중,장기 개,보수계획을 수립추진
- 유통여건 변화에 대비하여 가변적 시설구조로 개,보수
 - 저온창고, 냉동창고, 배송센터, 소포장센터 등

(제2안) : 새로운 시장 건립, 이전

- 입지가 양호한 지역에 현대적 시장을 건립, 이전

□ 대안별 장단점

(제1안)

- 장점
 - 기존 시장을 재건축하는 형태이므로 시장이전에 따른 상인 반발이 없고, 안정적 상권활성화 유지가능
 - 새로운 시장건설에 필요한 막대한 예산 절감 가능
- 단점
 - 기존 시설과 연계하여 개,보수하여야 하므로 획기적인 시설현대화 곤란

(제2안)

- 장점
 - 새로운 시장으로 현대적 첨단시설의 설계 및 건립추진 용이
- 단점
 - 수도권 지역의 대규모 도매시장 부지확보 곤란 및 막대한 예산소요
 - 사업계획 수립후에도 토지수용, 보상, 이주자 대책 등으로 공사기간 장기간 소요(10년이상)

4. 추진계획

□ 추진방안

- 수도권 농수산물 유통정책적인 차원에서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필요 시설 개,보수하되 개장한지 십여년밖에 안된 가락시장을 폐쇄하고 새로운 시장을 건설하여 이전하는 것은 중복 투자로 인한 자원낭비(막대한 예산 소요), 대규모 부지확보 곤란, 관련상인 반발 등이 예상되므로 현재로서는 곤란
- 비용발생 억제를 위해 새로운 시설이 필요할 경우(저온저장시설, 데크시설 등)우선 투자
- 비용발생 요인을 면밀히 추적, 진단하여 비용절감방안 수립시행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1. 현 황

□ 현행제도

○ 경매제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이라 함) 제 30조 3항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은 전자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거수수지식·기록식·서면 입찰식 등의 방법으로 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출하 예약제 및 정보망구축 등 : (관련 법규 없음)

□ 추진실적

○ 전자식 경매

- 도매시장법인은 자체계획에 따라 전자식경매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음
- 추진 단계를 3단계로 분류

➡ 제1단계 : 경매전 판매 원표 입·출력 시스템 도입

- 서울청과(주) - 전품목 운영
- 동화청과(주) - 일부품목 운영

➡ 제2단계 : 전광판 표출식 경매시스템 도입

- 한국청과(주) - 포장 채소류 운영

➡ 제3단계 : 유·무선 응찰기 사용 완전 전자경매 시스템 도입

- (주)중앙청과 - 무선응찰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제작의뢰중 (6월 초 : 과일경매에 도입, 시행 예정)
- 대전중앙청과(주) - 전품목 제2단계 시스템도입 완료, 현재 응찰기 제작중

- 출하예약제 및 정보망 구축
 - 도매시장법인협회 전산실 및 전문요원 확보
 - 판매전략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중

2. 개선 필요성

□ 문제점

- 수지식 경매
 - 경매결과에 대한 불신 상존
- 전자식 경매
 - 표준 송장 사용이 정착되지 않고 있음
 - 이동 경매 곤란
 - 무선형태의 기계식(리모콘) 전자경매는 오작동 가능성 있음
- 출하예약제
 - 산지 출하동향 사전 파악 불가
 - 입하후 출하량 파악으로 출하조절이 어려움(도매시장간 출하조절이 불가능함)
 - 경락가격 등락이 심함
 - 도매시장법인은 경매업무(송장 접수·판매원표 작성·상품진열 등) 준비에 바쁨
- 도매시장 정보망 구축
 - 도매시장 출하예약·입하동향·경락가격이 실시간내 제공되지 못하고 있음
 - 사용자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정보분석 미흡
 - 판매원표 입력 전산화가 개발중에 있어 정착이 지연
 - 도매시장의 정보 인프라가 낙후되어 있음(현장 전산시스템, Network망)
 - 코드의 표준화 미흡

□ 여건변화

○ 전자식 경매

- 가락동 도매시장법인·대전중앙청과 등을 중심으로 전자경매시스템 개발에 착수하여 개발중에 있음
- 도매시장법인의 의욕고취
- 중소형 도매시장법인은 대형법인의 개발성과에 따라 적극적인 도입의사를 갖고 있음

○ 출하예약제 및 도매시장 정보망 구축

- 농민·출하자들의 정보 요구도가 증가
- 농촌지역 컴퓨터 보급 확산

3. 개선방안

□ 대안제시

- 전자경매 : 제2단계인 표출식 전자경매시스템과 제3단계인 완전 전자경매시스템 도입

○ 출하예약 및 정보망 구축

- 출하자(농민)의 편의도모를 위한 전국 통합출하예약시스템 구축
- 전국 공영도매시장의 경매단계별 정보를 실시간내로 수집시스템 구축
- 전국 공영도매시장의 판매전략정보분석 및 분산시스템 구축

□ 장단점(현행 유지와 개선안 비교)

○ 전자경매

| 현행 | 개선안 |
|----------------------------------------------------------------------------------------------------------------------------------------------------------------------------------------------------------------------------------------------------------------------------------|------------------------------------------------------------------------------------------------------------------------------------------------------------------------------------------------------------------------------------------------------------------------------------------------------------------------------------------------------------------------------------------|
| <p><수지식 경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속한 경매처리 ○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의 불신 잔존 | <p><전자식 경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의 불신 해소 - 경매사의 공정성 확보 ○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매시간 지연 - 송장사전입력, 경매속도가 늦다. - 경매흐름 방해 - 시스템 개발 및 도입에 막대한 자금 소요 |

○ 출하예약

| 개선안 | 장단점 |
|----------------------|------------------------------------------------------------------------------------------------------------------------------------------|
| 1) 도매시장법인별 출하예약시스템도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예약물량 파악이 불가 ○ 여러법인 거래시 예약에 불편 ○ 법인별 시스템 구축에 따른 투자비용의 중복 |
| 2) 도매시장별 출하예약시스템 도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예약물량 파악이 어려움 ○ 여러 도매시장 거래시 예약에 불편 ○ 투자비용이 많이 듦 |
| 3) 전국 통합출하예약 시스템 도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도매시장법인별 예약물량 파악이 가능 ○ 한번 접속으로 여러 도매시장법인 예약 가능 ○ 시설투자 및 운용비용 최소화 |

○ 정보망 구축

| 현행 | 개선안 |
|-------------------------------------------------------------------------------|-------------------------------------------------------------------------------------------------------------------------------------------------------------|
| 1) 신속·정확한 개개인대응 거래내역 수집분산이 어려움 2) 정보분석·분산내용이 이용자 편의측면 보다 구축자 편의측면이 강조되어 있음 | 1) 출하자나 도매시장 이용자가 직접 거래에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2) 도매시장 업무과정별로 실시간에 제공될 수 있어야 함 3) 정보제공자에 대한 편의 제공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4) 관리와 무관한 정보제공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져야 함 |

□ 외국의 사례

○ 전자경매

대만 : 제2단계에 해당하는 전광판 표출식 경매를 하고 있음

일본 : 고정식 유선전자경매 도입 실패로 수지식 경매존속

○ 출하예약·정보망 구축

< 대만 >

- 모든 출하자는 도매시장에 등록하고, 도매시장에서는 출하자별로 코드부여

- 매월 15일까지 다음달 출하계획을 받아 출하자 별로 일별 출하량 할당

< 일본 >

- 할당량을 이행치 않은 출하자에게는 다음달 할당량 축소 및 판매 후순위 조정

- 단위농협을 통한 조직화·공동출하체계가 잘 되어 있어 단협이 현 경제연합과 NTT의 공중통신망을 통한 출하

□ 우리의 여건

- 도매시장 및 도매시장법인
 - 전산인력, 장비 낙후로 한정된 업무 전산처리에 국한
 - 법인·출하자간 통신망 미구축
 - 코드 미 표준화
 - 도매시장 경매장 여건상 유선식 전자경매가 어려워 무선식 전자경매방법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무선식 전자경매를 실시하는 도매시장(외국까지 포함)이 없고 전자기술상의 문제점도 많아 프로그램 개발과 기기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산지
 - PC 보급을 저조
 - 통신이용 저조 및 통신시설 낙후

4.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전자경매
 - 수지식 경매를 전자경매화 하기 위해서는 기계적인 부분이 우선 되어져서는 성공하기 어렵고 수지식 경매 기능수용이 최대한 적용 되어져야 함. 따라서, 도매시장법인별로 개별특성에 맞는 전자경매 시스템을 개발 시행후 문제점을 도출 보완하여 발전시키고자 함
 - 중소형법인은 투자여력이 부족함으로 대형 도매시장법인의 개발 및 검증후 실정에 맞는 시스템 구축
- 출하예약·정보망 구축 등
 - 도매시장 거래과정별로 출하예약단계·입하단계·경매단계로 구분하여 실시간 정보제공 및 실거래에 직접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출하자·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소매상·소비자 등의 도매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내용이 즉시 공개되어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를 실거래 또는 계획수립에 활용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 주요추진시책

- 판매전략 정보시스템 구축
 - H/W 구축
 - 전산장비 도입 및 통신망 구축
 - S/W 개발
 - 출하예약 및 분석정보 제공 S/W 개발(실시간 정보)
 - 입하정보 수집 및 분산 S/W 개발(실시간 정보)
 - 경매정보 수집 및 분산 S/W 개발
 - 실시간 정보 - 전자경매 도입 법인
 - 정산 정보 - 전자경매 미도입 법인
 - 현황분석 정보 및 분산 S/W 개발

5. 추진과제 및 일정

□ 예산

- 전자경매
 - 도매시장법인협회에서 전자경매 도입 도매시장법인 지원
 - 전 공영도매시장 일괄도입시 정부지원 필요
- 출하예약 및 정보망구축사업
 - 도매시장법인협회 예산으로 추진

□ 농안법 및 관계법규 개정

(해당사항 없음)

□ 관계부처 협의 계획 등

- 통신사용료 할인
- 통신망 구축
- 도매시장법인 의사 수렴

1. 현황

□ 현행제도

-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개설자는 당해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의 관리, 운영에 대한 평가 실시
- 농림부장관은 개설자 자체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중앙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 대하여 부진사항의 시정을 명하거나 개설자로 하여금 도매시장법인 또는 도매시장공판장에 대한 시설사용면적의 조정, 차등지원 등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음(농안법 제59조의 3)

□ 추진실적

- 공영도매시장의 거래질서 확립하여 운영을 조기에 정상화시키기 위해 '91.6 도매시장평가제도를 도입 운영
 - 평가대상은 개설자, 도매시장법인 및 공판장, 중도매인(중도매인 평가는 개설자가 실시)

< 연도별 평가실적 >

(단위 : 개소)

| 연도별 | 계 | 개설자 | 도매시장법인 | 공판장 |
|-----|----|-----|--------|-----|
| '93 | 18 | 6 | 12 | - |
| '94 | 19 | 6 | 13 | - |
| '95 | 42 | 10 | 22 | 10 |
| '96 | 43 | 10 | 23 | 10 |
| '97 | 66 | 13 | 36 | 17 |

- 평가결과를 도매시장 육성시책추진에 적극활용
 -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정책자금의 20~30% 확대지원하고 법인지정유효기간 장기간설정 등 우대
 - 부진업체에 대해서는 정책자금의 50% 축소지원하고 운영개선지도 실시

- 도매시장평가제도운영을 통해 정부의 도매시장정책의지를 반영하고 도매시장법인 및 공판장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
 - 체계적인 산지개발활용으로 도매법인 집하력 증대
 - 공정거래 정착유도로 상장경매율 향상
 - 자본금증자를 통한 도매법인 기능강화
 - 거래내용 및 유통정보제공노력으로 거래의 투명성제고

2. 개선 필요성

□ 문제점

- 현행의 도매시장 평가제도는 간접적인 정책수행방법으로 도매시장 운영관리의 획기적인 개선방법으로 미흡
 - 평가관리에 있어 주로 도매시장에 대한 정부시책이행점검 및 자료수집에 역점을 두고 있어 유통시장개방등 여건변화에 대응한 유통의 효율성증대에 기여하지 못함
 - 지방자치단체가 평가결과조치에 대해 소극적임
 - 평가결과에 대한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제재조치에 한계
 - 평가제운영을 통해 단기간내에 유통종사자의 자발적인 공정거래 개선노력 기대에 한계

□ 여건변화

- 신설 공영도매시장의 개장확대에 따라 도매시장의 기능과 역할증대
 - 시장 개설자 및 유통종사자의 도매시장 제 기능발휘를 위한 평가, 지원, 제재 등 일관된 감독기능 필요성 대두

- 사회전반에 걸친 신용거래의 대중화, 보편화추세에 따라 향후 농산물유통업의 거래방식은 신용을 위주로 한 거래가 예상됨
- 농산물거래시 유통사업자의 거래처에 대한 평판,신용력 등 거래관련정보 및 각종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증대됨

3. 개선방안

□ 대안제시

- 도매시장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종합적인 도매시장 평가,지원, 제재 등 일관된 감독 및 지도업무를 수행
- 유통조사자의 객관적인 신용평가를 통한 안정적인 거래질서확립으로 공정거래달성

□ 대안별 장단점

| 구분 | 현행 | 개선안 |
|----|----------------------------------------------------------------------------------------------------------------------------------------------------------------------------------------------------------------|---------------------------------------------------------------------------------------------------------------------------------------------------------------------------------------------------------------------------------------|
| 장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조사 및 평가방법등 평가관리의 용이 ○ 평가를 통해 현재의 도매법인운영실태 파악용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설자 및 도매법인의 평가, 감독,제재 등에 대한 행정력 강화 ○ 전국적으로 일관된 감독기능 발휘 용이 ○ 최소의 조직운영을 통해 공공성 확보가능 ○ 평가대상자로 하여금 자발적인 도매시장운영개선 유도 ○ 평가결과의 상거래에 필요한 거래참고자료로 활용가능 |
| 단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평가결과에 대한 지자체의 결과조치 미온적 ○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제재 조치한계 ○ 개설자의 업무집행상황파악 애로 ○ 정부의 시책이행점검수단으로 평가결과의 활용도저조 ○ 주로 서면실적자료에 의존되어 심층파악곤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조직 신설에 대한 거부감 상존 ○ 지자체에 대한 감독기능 강화시 불만 ○ 고도의 평가조사 및 평가방법등 평가관리가 요구됨 |

□ 외국의 사례

○ 일본의 도매시장심의회 운영

- 중앙도매시장에는 도매시장심의회, 지방도매시장에는 도도부현도매시장심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음

< 도매시장심의회 >

- 설치 : 농림수산성에 도매시장심의회를 둠
- 임무 : 도매시장법에 의해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는 외에 농림수산성 장관의 자문에 응하고 동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조사심의함
- 구성 : 위원은 10명이내이며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농림수산성 장관이 임명하고 비상근임

< 도도부현 도매시장심의회 >

- 도도부현지사의 자문에 응하고, 도도부현도매시장정비계획에 관한 사항, 기타 도매시장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심의하게 하기위하여 조례로 도도부현도매시장심의회를 둠

○ 미국의 유통종사자 신용평가제 운영

- 평가대상은 도매상만이 아닌 농업관련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용평가에 포함되어 있으며 전문신용평가기관에 의해 평가되고있음
- 신용평가기관은 신용평가를 통한 거래편람의 발간 대여뿐만 아니라 회원의 거래로 인한 분쟁발생시 중재역할 수행, 불량채권의 수금대행 서비스제공도 하고 있음
- 평가대상자의 평가항목에는 재무 및 금융신용상태는 물론 사업자의 사업의 성실성, 책임성 등 도덕성까지도 포함되어있음

□ 우리의 여건

- 도매시장별로 도매시장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해당 도매시장의 활성화방안수립 및 현안사항 등을 협의하고 있을 뿐으며 전국적인 시장관리기구는 없음
- 농산물유통사업자의 신용평가실시를 위한 법적 장비미비와 신용평가에 대한 인지도가 저조함

□ 개선(안)

- 전국 공영도매시장의 관리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감독 및 지도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도매시장관리위원회 설치
- 유통중사자의 상거래에 필요한 신용정보제공과 자발적인 공정거래 유도를 위한 신용평가제 도입

4.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중앙정부의 도매시장에 대한 직접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
- 유통중사자의 상거래에 필요한 신용정보제공과 자발적인 공정거래 유도를 위한 신용평가제 도입

□ 주요추진시책

- 도매시장관리위원회 및 사무국설치
 - 설치 : 농림부산하에 도매시장관리위원회설치
 - 기능 :
 - 도매시장 육성지원 종합대책수립
 - 도매시장평가, 감독기능 및 제재
 - 부실경영법인 운영개선지도기능
 - 거래당사자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기능
 - 중도매업 육성지원기능
 - 도매시장활성화자금지원기능
 - 경매사 육성지원 및 자격관리기능
 - 도매시장 업무처리지침정비 및 제고개선기능
 - 시장개설자 협의체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전국 법정, 유사도매시장 현황조사 및 정비
 - 기타 도매시장관련업무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을 둠

○ 신용평가제도입

- 도매시장평가제도의 신용평가관련지표반영에 의한 기반조성후,점진적으로 신용거래정착을 위한 지표중점관리로 평가제 정착
- 도매시장평가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평가지표개발
- 평가결과의 객관성 및 정확성확보를 위한 평가방법개선
- 평가결과의 활용성증대를 위한 공시방법의 개선
- 신용평가와 연계한 운영개선지도,조정 및 중재 서비스제공 등 업무의 다각화

○ 농안법에 설립근거 반영

신규사업개발

- 해당없음

5. 추진과제 및 일정

예산이나 기금확보

- 기존 도매시장운영개선사업비에 반영

농안법령 및 관련업무 개정

- 도매시장관리위원회 설립근거마련(농안법)
- 신용평가 의무조항 신설(농안법)

관계부처협의 등(해당없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정보업자 지정

6. 투융자 계획(해당 없음)

III. 산지유통개선

1. 생산자 조직화

- 1-1 산지유통혁신을 위한 시범농협 육성
- 1-2 생산자조직육성
- 1-3-1 생산자조직 중심의 산지유통 강화방안(농경연)
- 1-3-2 생산자조직 중심의 산지유통 강화방안(전농)
- 1-3-3 축산물 생산자조직 중심의 산지유통 강화방안(축협)

2. 산지유통시설 활성화 방안

- 2-1 농산물포장센터 적정성 검토
- 2-2 축산물종합처리장을 중심으로 냉장유통체계 구축
- 2-3 산지공판장 기능강화방안(농협)
- 2-4 농수산물 가공공장 운영현황 및 대책

3. 산지 유통제도개선

- 3-1 농산물 유통혁신을 위한 지자체 역할(충남)
- 3-2 농산물유통혁신을 위한 제도개선
- 3-3 생산자단체와 민간의 지원조건완화

1-1 산지유통 혁신을 위한 시범농협 육성

1. 추진배경

□ 농산물유통개선의 핵심과제는 유통단계 축소와 물류비 절감이며, 이를 위해서는 산지에서 대량 규격 농산물 출하 체제가 구축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경우 이에 대한 기반 미구축

- 농가단위 : 영세한 영농규모에 따른 소량생산과 농촌의 인력난으로 농업인의 유통참여 어려움
- 작목반·영농조합법인 : 농가별 재배기술·품종의 다양화에 따른 품질 격차, 공동체의식 부족으로 인한 농가별출하·속박이 등으로 대량의 규격 농산물출하 곤란
 - 1개 차량당 경매건수 : 120-130건
 - 속박이 비율 : 사과·배 10-15%, 딸기·참외 30-40%
- 산지농협 : 손실우려 있는 경제사업보다 안전한 신용사업위주 영업으로 농산물 유통에 대한 참여 저조
 - 산지농협의 농산물유통 점유비율 : 40%수준 (일본 80%수준)
 - 농협의 계약재배율 : 고랭지 배추, 마늘·양파·파 등 생산량의 5%수준

□ 소규모 영농구조나 농업인의 공동체 의식 부족, 영세한 작목반·영농조합법인 및 대형유통업체 주도의 소비지 유통여건변화 등을 감안할 때, 산지에서 대량의 규격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농협이 산지 농산물 유통을 책임지고 추진필요

⇒ 산지유통개선이 시급한 품목의 주산지 농협을 시범농협으로 선정하여 계약재배·공동출하·공동계산과 포장화·기계화·파렛트화 및 대형유통업체·물류센타와 직거래하는 선진유통모델을 정착하고, 이를 전 농협으로 확대

2. 추진방향

- 산지유통개선이 시급한 과채류 주산지농협을 중심으로 계약생산·공동출하 비율이 높은 농협을 시범농협으로 선정
- 시범농협에 대해서는 지원가능한 정부 및 농협의 각종시설·장비 및 운영 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우선 지원대상사업을 계속 확대
- 시범농협은 발전단계에 따라 계약생산·공동출하·공동계산과 포장출하·하역기계화·파렛트화 및 물류센타·대형유통업체 직거래 등 선진유통모델 사업 추진
- '97년 30개, '98년 30개 농협을 선정하여 시범 실시후 성과를 보아 타 품목 및 농협 이외의 타조직에게도 확대

3. 세부추진계획

가. 선정 : 사업지침시달 → 신청(151개소) → 평가 → 선정(30개소)

□ 대상품목 : 20개('97년 10개, '98년 10개)

- 중간상의 포전매취 비율이 높고 농협의 유통참여 비율이 낮아 산지유통 개선이 시급하나 산지농협 자체 능력만으로는 단기내 개선이 어려운 품목
- 주산지 생산비율이 높고 기존의 사업내용 범위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시범농협 사업의 조기정착이 가능한 품목
 - '97년 : 고랭지무·배추, 마늘, 양파, 파, 고추, 토마토, 참외, 오이, 수박, 화훼
 - '98년 : 배추, 호박, 당근, 감자, 버섯,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 대상농협 선정기준

- 해당품목 생산량의 공동출하 비율이 높고 취급규모가 큰 농협
- 해당품목 관내 생산량이 전국 생산량의 상당부분을 점유하는 농협
- 규격 농산물 생산, 숙박이근절 등을 위한 전담요원을 운영하는 농협
- 해당품목 작목반중 선진 작목반 비율이 높은 농협
- 생산자조직 평가결과 우수 생산자 조직으로 평가된 농협
- 기타 품목별 전국협의회에 가입한 농협이나 조합의 사업의지가 강한 농협 등

□ '98대상농협 : 30개

- 배추(2) : 전북 고창신림, 전남 해남문내
- 호박(3) : 경기 이천부발, 강원 춘천동면, 충북 청주강외
- 당근(2) : 강원 평창도암, 제주구좌
- 감자(2) : 충남 당진송악, 제주성산
- 버섯(3) : 경기 포천포천, 강원 횡성공근, 충남 청양정산
- 사과(5) : 충북 충주사과농협, 충남 예산능금, 경북 안동길안, 문경가은, 경남 거창사과
- 배(4) : 경기 안성과수, 충남 연기조치원, 전남 나주배원예, 경북 상주외서
- 복숭아(4) : 경기 동부과수원예, 강원 원주원주, 충북 음성감곡, 전북 전주전주
- 포도(3) : 충북 영동영동, 충남 천안입장, 경북 김천직지
- 단감(2) : 전남 광주원예, 경남 진주문산

나. 시범농협의 역할

□ 관내 생산량의 30% 수준 계약재배로 중간상의 농간 견제

- '96년 전국 계약재배 비율 : 고랭지 16%, 무·배추·대파3%, 마늘·양파5%
- 시범농협 : 고랭지배추 38%, 마늘·양파 10%, 파15%

- 계약재배 비율이 낮은 시범농협은 1단계(2001년)20%, 2단계(2004년) 30%까지 계약재배 유도
- 계약재배가 시급한 배추의 시범농협 선정('98)
- 계약재배 비율이 높은 시범농협은 이행을 제고 등 사업내실화

□ 관내 생산량의 80%수준 공동출하로 시장교섭력 제고

- 전국 공동출하비율 : 채소류 38%(배추15.8%,마늘8.1%)
- 시범농협 : 토마토·오이·참외·마늘·고추 70%수준, 수박·양파 50-60%수준, 고랭지 배추 40%수준, 파 20%수준
- 공동출하비율이 높은 시범농협은 공동계산·브랜드 출하로 발전
- 공동출하비율이 낮은 시범농협은 공동출하 비율을 1단계 50%,2단계 80%수준으로 제고

□ 산물출하 채소류 포장출하율을 90% 수준으로 제고

- 채소류 포장출하 및 규격출하비율
- 포장출하율 : 참외99%, 오이81%, 무11%, 수박4%, 배추0.1%
- 동일등급 출하율 : 채소류6%, 오이12%, 참외8%, 토마토16%
- 포장화율이 낮은 수박·배추 등의 시범농협은 1단계로 50%, 2단계로 90%수준까지 포장출하 유도
- 포장화율이 높은 시범농협은 동일등급 출하비율을 1단계로 30%, 2단계로 70%수준까지 제고하고 속박이 근절

□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ULS시스템에 의한 일관수송, 기계화 하역

- 포장센타 등을 소유한 시범농협은 지게차, 하역·파렛트 출하
- 저온저장고, 냉장차량에 의한 콜드체인시스템 구축

다. 시범농협 지원

□ 정부 우대지원사업

- 간이집하장 시설보완 : 간이집하장에 포장기, 선별기 등 시설보완 자금 우선 지원
- 포장센터 건설 : 포장센터 건설과 시설개보수 자금 우선 지원
- 공동규격 출하자금 매취자금 : 시범농협 우선지원
- 생산자조직 육성 자금 : 시범농협 우선지원
- 채소계약재배자금 : '97년 계약재배자금 2,475억원중 하반기에 마늘·양파 등 시범농협에 우선 지원
- 파렛트·지게차 등 하역기계화 장비 지원 : 시범농협으로 하여금 파렛트·지게차 등 하역기계화 장비 구입 적극 추진 유도
- 포장재 보조 : 수집상의 포장출하 기피로 부진한 배추·수박 포장활성화를 위해 시범농협의 적극 참여 유도
- 정부수매나 산지폐기시 산지시범 농협관내 농산물 우선수매나 폐기

□ 농협 우대지원사업

- 유통저리자금 : '98년중 60개 시범농협('98시범농협에 100억원 기지원)
 - '98년 유통저리 자금규모 : 4,300억원
 - ('97, '98시범농협에 100억원 기지원)
- 물류표준화, 하역기계화장비 : 포장기, 선별기, 지게차, 파렛트, 수송차량 등 '98년 예산반영 지원

< '97시범농협 지원 실적 >

□ 정 부

- 간이집하장 시설보완자금 : 236백만원
- 공동규격 출하자금 : 90억원
- 품목별조직 육성자금 : 10억원
- 매취사업자금 : 16억원
- 포장센터건설 : 춘천신북농협, 정선임계농협 포장센터 건설 '98 정부 사업에 반영

□ 농 협

- 유통저리자금 : 50억원(조합당 1-3억원)
- 유통시설장비 : 616백만원(포장, 선별, 수송 및 물류표준화장비 등)

4. 추진일정

| 구 분 | 내 용 | 일 정 | 비 고 |
|------------------------------------------------------------------|----------------------------------------------|----------|------------|
| ○ '98사업추진계획 확정 추진 | 출하량, 출하방법 출하처등 | '98. 4 | '97선정 시범농협 |
| ○ '98시범농협 선정 · 시범농협 확정 · 시범농협 지원 -시범농협별 품목별 자금 및 물류장비 등 | 채소류,과실류 주산지농협 | '98. 4~6 | 신규선정 (30개) |
| ○ 사업추진 지도 및 사례발굴 홍보 | 공동선별·공동출하, 물류센터 등을 통한 파렛트출하 직거래를 통한 유통비 절감 등 | 연 중 | |
| ○ 우수시범농협 표창 건의 | 농림부 | '98. 11 | |
| ○ 시범농협 육성 평가 | | '98. 12 | |

< 참고자료 >

'98시범농협 신청 및 선정

| 품 목 | 신 청 | 선 정 |
|-----|-------------------------------------------|----------------------------------|
| 배 추 | 양주광적,삼척하장,아산배방,고창신림, 해남문내(5) | 고창신림,해남문내(2) |
| 호 박 | 이천부발,춘천동면,청주강외,전주전주, 광주대촌,의령의령(6) | 이천부발,춘천동면, 청주강외(3) |
| 당 근 | 이천대월,평창도암,북제주구좌(3) | 평창도암,북제주구좌(2) |
| 감 자 | 홍천내면,당진송악,남원금송,보성득량, 남제주성산(5) | 당진송악,남제주성산(2) |
| 버 섯 | 포천포천,횡성공근,청양정산,진안진안, 장흥유치,문경동로(6) | 포천포천,횡성공근, 청양정산(3) |
| 사 과 | 가평가평,충주사과,예산능금,장수장수, 안동길안,문경가은,거창사과(7) | 충주사과,예산능금,안동길 안,문경가은, 거창사과(5) |
| 배 | 평택과수,안성과수,연기조치원,전주 북전주,나주배원예,상주외서(6) | 안성과수,연기조치원, 나주배원예,상주외서(4) |
| 복숭아 | 동부과수,원주원주,음성감곡,전주전주 청도화양(5) | 동부과수,원주원주, 음성감곡, 전주전주(4) |
| 포 도 | 오산송산,영동영동,천안입장,김제백구, 김천직지(5) | 영동영동,천안입장, 김천직지(3) |
| 단 감 | 광주원협,진주문산,경남단감(3) | 광주원협,진주문산(2) |
| 계 | 51 | 30 |

1. 현 황

- 품목별 전국협의회 결성확대 : ('93) 5개소 → ('97) 20개소
 - 채소류(8개) : 마늘, 양파, 대파, 생강, 고랭지 채소, 고추, 가을 무·배추, 첨단원예
 - 과실류(9개) : 사과, 배, 감귤, 유자, 단감, 포도, 복숭아, 참다래, 밤
 - 기 타(3개) : 화훼, 약용작물, 버섯
- 20개 전국협의회에서 일부품목을 주산지를 중심으로 시·군 및 도단위 협의회도 구성운영
 - 도단위협의회 : 단감(경남, 전남)
 - 군단위협의회 : 생강(태안, 서산, 원주)
- 생산자조직육성자금 지원품목과 규모확대로 품목별 사업추진의 기반조성
 - 품목별 생산자조직자금 : ('93) 300억원 → ('97) 1,000억원
- 자율적인 생산, 출하조정 등 생산자조직에 의한 사전적인 가격안정 사업 가능성 제시
 - '96년산 마늘 자율폐기 : 78개 농협 8,882농가, 656ha(약8,000톤)
 - 포도, 신규식재 억제지도를 통해 수입개방에 대응

2. 문제점 및 보완과제

(1) 농협중앙회와 정부의 체계적인 육성 부족

- 전국협의회, 도·군협의회, 사무국의 역할 등이 모호
- 품목별 협의회별로 각 품목과에서 담당하나 체계적으로 감독하고 육성할 수 있는 정부부서가 없음
- 품목별 전국협의회 사무국의 전담인원이 2명에 불과하고 별도 사무실 조차 갖추지 못한 실정임(사무국장인 차장급)
- 농협의 전국협의회에 대한 운영자금 지원 전무

(2) 전국 품목별 협의회 가입의 유인요인이 적음

- 전국품목별 협의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연회비(10만원~100만원)를 납부해야 하나,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혜택이 없음
 - 비회원에 비해 품목별 생산자조직 육성자금 지원됨(회원당 2.5억원 용자)
 - 가입회원 감소(사과 전국협의회) : ('94) 50개농협 → ('97) 27개 농협
- 농협 중심조직으로서 영농조합법인이나 품목별 협회 등 농협이외의 조직은 참여실적 미미
 - 지역농협 560, 전문농협 36, 영농조합법인 1, 기타 3
 - 농협전국협의회에 선진유통 품목별 조직인 참다래 유통사업단, 전 문화체조합 등 미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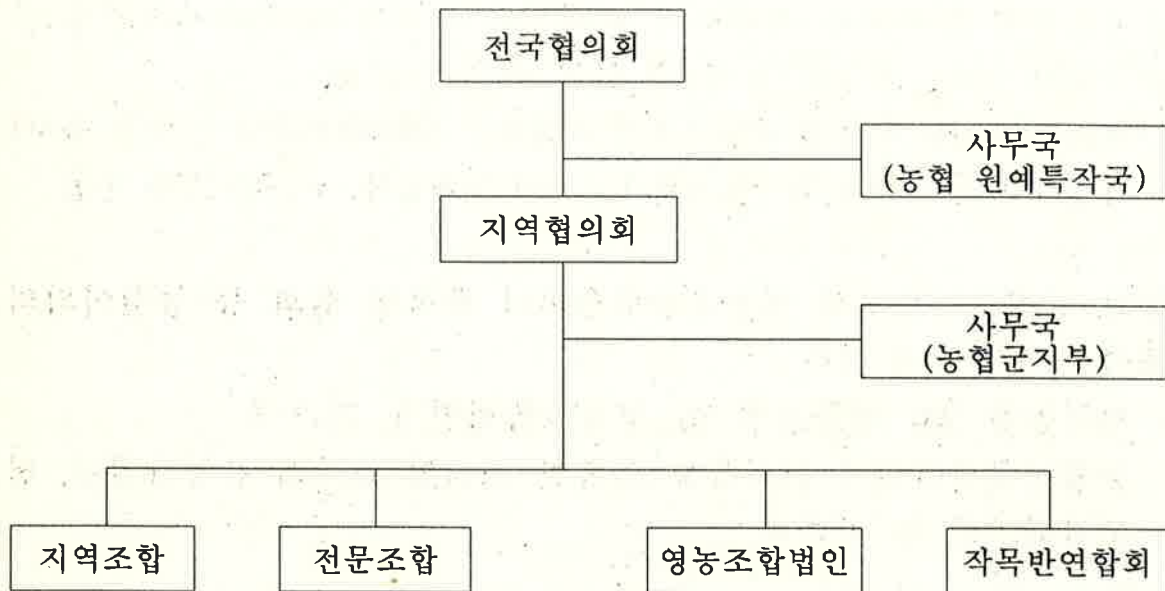
(3) 품목별 전국협의회의 기능 활성화 미흡

- 조직의 목적인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을 위한 기능이나 능력 미비
 -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을 위한 농업관측 기능 미약
 - 생산조정과 출하조절을 할 수 있는 자조금 조성 등 제도적 뒷받침 미비
- 단순한 친목단체에 불과하다는 비판제기
- 조직평가에 의한 차별지원 체제가 미구축
 - '96년까지 품목별 전국 생산자조직에 대한 평가실적 없음

3. 세부추진계획

- 전국적인 농업관측과 생산조정, 출하조절을 할 수 있는 품목별 전국 생산자육성
 - 농협의 20개 품목별 전국협의회 기능 강화 및 협의회 신규 결성 확대
 - 생산자조직과 관련된 수급안정자금은 품목별로 통합, 지원
- 품목별 생산자조직의 벤치마킹제도입, 발전단계에 맞는 사업 추진으로 사업효과를 극대화

가. 전국 생산자조직 역할 정립



< 농 림 부 > : 품목별 생산자조직육성 정책기관

- 유통정책국 : 전국 생산자조직 육성 총괄
- 각 품목국 : 품목별 전국생산자조직 지도·감독 및 관련사업 추진

< 전국협의회 > : 최고 의사결정기관

- 회원규약·자조금 규정제정 및 회비·자조금 각출액 결정
- 정부정책자금·농협저리자금·자조금 회원별 지원액 결정
- 생산조정 및 출하조직을 위한 회원별 재배면적, 출하량 결정 등

< 사무국 > : 농협중앙회 원예특작부를 품목별협의회 사무국으로 개편

- 자체 농업관측 및 타기관 농업관측 결과분석, 농업관측 제공
- 품목별 협의회 회원조합의 현황관리 및 사업추진 지도
- 자조금 관리, 집행, 사후관리 등 협의회 결정사항 집행 등

< 회원조직 > : 사업집행조직

- 협의회에서 결정 사업수행

나. 품목별 생산자조직 강화

< 협의회 >

- 농협의 품목별 생산자조직 추가 결성
 - 대상 : 수급불안 품목(4개) : 고추, 시설채소, 가을무·배추

- 전국협의회 신규회원 확대
 - 회원농협 이외 규모화된 품목별 생산자조직은 전국협회에 직접 가입
 - (예) 회원수가 300명 이상이며, 사업지역이 1개군 이상인 생산자 조직
 - 전국협회 품목별규약 “표준화”를 통한 가입근거 마련
 - 한농연 등 농업관련단체 전국협회에 가입유도
- 품목별 수급조정, 시장개척, 교육·홍보 등 필요한 사항은 농협 품목별협의회·한농연 품목위원회등과 상호 협의체제 구축

< 사무국 >

- 농협중앙회 품목별 전국생산자조직 사무국 기구 확대
- 농협중앙회 담당부서의 품목별 세분화(예 : 과수부, 화훼부, 채소부 등)

< 지역협의회 >

- 지역단위협의회 구성으로 지방자치단체와의 지역농업협력체제 강화
 - 행정, 지도, 학계, 유통업체, 농협대표자로 구성된 자문지원단 구성
 - 지도소, 농협, 새농민상 수상자 등으로 구성된 영농기술지도 지원단 운영

< 영암군 원예연합회 결성사례 >

- 구성 : 4개 분과협의회(수박, 시설원예, 과수, 화훼)87개 조직
(작목반 60, 영농조합법인 27개) 1,768 농가 참여
- 영암군 원예연합회 영농지도단
 - 회원농협 영농지도자, 군지부 담당직원 등 13명으로 구성
- 영암군 영농지도요원 통합운용사업 협의회 : 군지부장, 조합장, 행정기관 15명
- 영암군 원예연합회 자문기관
 - 군청, 지도소, 농검, 전남대, 시설원예연구실, 호남온실작물연구소, 전남 농촌진흥원, 나주배연구소, 도의원, 군위원 참여
- 사업개발실적
 - 군단위 통일상표인 『영암월출』 및 포장재 디자인 공동개발
 - ⇒ 단감, 수박, 방울토마토, 등 17개 품목 포장재 조제, 활용('96년 451매)

- 소규모 영농조합법인은 지역단위 협의회 가입

< 회원조직 >

- 협의회 가입조합의 품목별 특화 유도

다. 전국적인 농업관측과 생산, 출하조절을 위한 자금 등 우선지원

- 정부 : 농안기금을 통합하여 품목별 생산자조직에게 집중지원
- 농협 : 유통저리자금 등을 품목별 생산자조직을 통해 지원

| 단계별 | 중요과제 | 정부 및 농협지원 |
|-----|---------------------------------------------------------------------------------------------------------------------------------------------------------------------------------------------|-------------------------------------------------------------------------------------------------------------------------------------------------------------------------------------------------------------------------------------------------------------------------------------------------------------------------------------------------------------------------------------------------------------------------------------------------------------------------------------|
| 과종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배의향조사 ○ 종자판매량조사 ○ 재배면적조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관측조사비 지원(정부) ○ 재배면적조정에 협조하는 농민에게 자조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조금 조성(정부, 농협) ○ 계약재배 자금지원 확대(정부, 농협) |
| 생육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예상량조사 ○ 과잉생산우려시 수확전 산지폐기 ○ 출하조절 ○ 저장, 가공 ○ 정부수매 ○ 소비촉진 ○ 수출 ○ 수확후 산지폐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관측조사비 지원(정부) ○ 산지폐기자금지원(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비에서 미투입 비용고려 ○ 출하조절자금지원(정부) ○ 유통저리자금지원(농협) ○ 저장, 가공자금지원(정부) ○ 정부수매자금지원(정부) ○ 유통저리자금(농협) ○ 홍보비 지원(농협) ○ 수출수매 및 부대비 지원(정부) ○ 수출시장개척지원(유통공사) ○ 산지폐기자금지원(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비 수준 |

라. 전국적인 생산자조직 평가실시

- 품목별 생산자조직의 자체평가와 농림부, 농협, 유통공사의 현지 확인평가 병행 실시
- 관계공무원, 생산자단체, 관계전문가로 생산자조직 평가위원회 설치
 - 평가계획 및 우수생산자조직에 대한 차별지원조건 의결
 - 생산자조직의 구성, 기능, 기금관리 등을 평가하여 등급별 전산관리
- 각종 지원자금(조직육성, 운영자금 등)이 우수조직에 집중지원될 수 있는 배정기준 마련
- 벤치마킹 목표 달성을 위한 발전단계에 맞는 지원 실시

| 구 분 | 기 준 | 지 원 내 용 |
|-------|-------------|------------------------------------------------------------------|
| 최우수조직 | 종합점수 80점 이상 | 품목별 자체 농업관측기능부여, 생산출하조정을 위한 자조금조성지원, 정부비축·홍보사업의 대행 등 |
| 우수조직 | 종합점수 70점 이상 | 유통정보제공을 위한 정보기기 지원, 소비촉진, 수출확대를 위한 홍보지원, 농업관측 기능수행을 위한 농업관측 정보제공 |
| 일반조직 | 종합점수 60점 이상 | 전국생산자조직 회원확대를 위한 지원 농안기금 사후관리를 위한 지도강화 |

4. 추진일정

□ 전국생산자조직 평가('98. 상반기)

- 전국생산자조직 및 회원 단위조직 현지확인 평가
- 생산자조직 평가위원회 개최, 최우수, 우수, 일반생산자조직 선정
- '99년 농안기금 운용계획 수립, '98년 농안기금 수정계획에 평가결과 반영

□ 생산자조직의 자조금 조성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 농발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 자조금 지원대상품목 확대 및 지원기준 상향조정
- 농협중앙회는 품목별전국협의회 자조금 기본규정을 제정
품목별협의회에서 약결('98년중)
- 품목별 자조금 규정 제정, 농림부 승인('98년중)

< 참고자료 >

품목별 전국생산자조직 벤치마킹 모델 및 평가지표

| | I | II | III |
|------------------------------|-----------|-------------------------------|-----------------------------------|
| <input type="checkbox"/> 조직화 | | | |
| ○ 법인 | 비법인 | 비법인 | 법인 |
| ○ 전국시장점유비 | 10% 미만 | 10~30% | 30% 이상 |
| ○ 전문조합이나 영농조합법인 | 10% 미만 | 10~50% | 50% 이상 |
| ○ 상설사무실 | 미 확보 | 확보(불충분) | 확보(충분) -1인당 6m ² 이상 |
| ○ 전임자 확보 | 미 확보 | 확보(불충분) -회원상호간 연락 정도 역할 | 확보(충분) -수급예측, 생산 조정능력 |
| ○ 회비징수 | 5천만원 미만 | 5천만원~1억원 | 1억원 이상 |
| ○ 회원관리 | 미 관리 | 수작업관리 | 컴퓨터 자동화리 |
| <input type="checkbox"/> 기능 | | | |
| ○ 생산조정협의회 설치 | 미설치 | 형식적 운영 | 실질적 운영 |
| ○ 농업관측체제구축 | 농업관측 미 실시 | 타기관 자료이용 농업관측 | 자체농업 관측 조사결과 이용 |
| ○ 생산조정시스템 | 미구비 | 계획만 수립 | 실제 운영 |
| ○ 유통정보제공 | 미제공 | 팜프렛등 활용 | 컴퓨터 온라인망 |

| | I | II | III |
|----------------------------------|------------------------|-------------------|------------------------------------|
| ○ 소비·수출홍보 | 미 실시 | 잡지, 신문 | TV |
| ○ 규격포장출하비율 | 70% 미만 | 70~90% | 90% 이상 |
| ○ 선진작목반비율 | 30% 미만 | 30~50% | 50% 이상 |
| ○ 품질인증 건수 | 10건 미만 | 10~50건 | 50건 이상 |
| ○ 자조금 | 미 조성 | 조성(미흡) | 조성 -10% 이상 구매 가능 |
| <input type="checkbox"/> 농안기금 관리 | | | |
| ○ 배정결정 | 하향식 | 대표협의회 또는 운영위원회 | 회원의 1/2 이상 또는 운영위원회 의 2/3 이상 |
| ○ 주산지 집중지원 | 주산지와 관계없이 일부조직 집중지원 | 주산지 관계없이 분산지원 | 주산지조직에 집 중지원 |
| ○ 품목별 생산자조직 육성자금 3개월 이내 대출 | 70% 미만 | 70~95% | 95% 이상 |
| ○ 품목별 생산자조직 육성자금 운용계획 대실적 | 70% 미만 | 70~95% | 95% 이상 |
| ○ 사후관리 | 미흡 | 수작업 관리 | 컴퓨터 관리 |

1-3-1 생산자조직 중심의 산지유통 강화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 생산자조직의 산지유통 현황

- 농산물 산지유통에 참여하는 지역농협, 전문농협, 지역축협, 작목반(회), 영농조합법인 및 농정조직인 전농과 경영인연합회의 지역조직임.
- 협동조합의 계통출하는 조합에서 순회수집 등 농산물을 수집하여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경우와 작목반에서 직접 출하하는 경우로 나누어지며, 작목반단위의 출하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
- 지역농협과 전문농협은 농산물수집, 출하에서 경쟁적인 관계에 있음
- 산지유통에서 가장 경쟁이 심한 조직은 영농조합법인과 지역농협 또는 전문농협임
- 영농조합법인은 회원이 평균 24명 정도로 작목반 회원수와 비슷하나, 일부 규모화된 영농조합법인은 농산물 포장센타를 운영하면서 전문적인 유통활동을 함

2. 생산자조직의 산지유통 문제점

가. 생산자조직간 경쟁으로 거래교섭력 약화

- 산지간 지역농협간 경쟁, 지역농협과 전문농협의 경쟁, 농협과 영농조합법인의 경쟁, 영농조합법인과 작목반의 경쟁 등 농산물출하에서 경쟁을 함에 따라 도매시장 뿐 아니라 대형소매유통업체에서 복수경로관리를 가능케 하여 생산자조직의 거래교섭력이 약화되고 거래상대자의 가격착취 대상이 됨.

나. 산지유통시설의 개별적 이용으로 가동률 저조

-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등에서 농산물 포장센타, 간이집하장, 저온저장고 등 산지유통시설을 개별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유통시설의 물량확보가 어렵고 가동률이 저조해짐.

다. 기초조직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의 개별출하로 유통효율 저하와 거래교섭력 취약

- 소수인원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심지어 개별농가별로 개별출하함에 따라 수송단가 등 유통비용이 늘어나고, 규모화·체인화되어 가는 대형유통업체나 대량수요처에 대해 거래교섭력이 떨어짐.
- 작목반과 영농조합법인의 회원농가들의 개별출하가 18.2%, 조직자체의 공동판매가 54%, 농협을 통한 계통출하가 30%임(농경연 조사).

< 기초조직의 농산물 출하방법 >

단위 : %

| 구 분 | 농가 개별판매 | 공동판매 방법 | | | | 농협 계통판매 | 기 타 | 계 |
|------------|----------------|----------------|----------------|-----------------|----------------|----------------|--------------|----------------|
| | | 수송만 공동 | 수송과 선별 공동 | 수송,선별 및 공동계산 | 계 | | | |
| 영농조합 법인 | 14.9 (6.1) | 36.7 (15.3) | 20.2 (8.3) | 11.2 (4.6) | 68.1 (28.2) | 14.6 (6.0) | 2.4 (1) | 100.0 (41) |
| 작목반 | 20.1 (14.3) | 34.3 (24.4) | 8.2 (5.8) | 2.6 (1.8) | 45.1 (32.0) | 34.3 (24.4) | 0.6 (0.4) | 100.0 (71) |
| 합 계 | 18.2 (20.4) | 35.2 (39.4) | 12.6 (14.1) | 6.4 (5.7) | 53.9 (59.2) | 30.4 (27.1) | 1.4 (1.3) | 100.0 (112) |

자료 : 농경연, 21세기에 대응한 농수산물 유통개선 연구, 1997

- 농협 계통출하도 실제로는 작목반 단위 또는 농가 개별적으로 출하하고 대금정산만 농협에서 해 주는 경우가 많음.
- 농협 계통출하 방법에서 농산물 수송 및 대금정산을 해 주는 경우가 30.7%로 가장 많았고, 판매대금 정산만 해주는 경우는 29.6%, 공동선별·농협명의 포장출하·공동수송 및 정산 등 다양한 기능을 해주는 경우가 23.8%임(농경연 보고서).

라. 지역농협과 전문농협간 기능 경합

- 산지유통에서 동일지역에 있는 지역농협과 전문농협간 기능이 경합되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고 유통의 규모화가 미흡함.

마. 개별조직별 브랜드화로 브랜드 이미지 형성 미흡

- 인근주산지의 농협, 동일지역의 작목반, 영농조합법인들이 개별적으로 브랜드화하여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며, 브랜드 이미지 형성이 부족하여 품질에 따른 가격프리미엄을 많이 받지 못함.

바. 품목별 전국연합회의 기반 취약으로 전국적 또는 지역적인 수급 및 가격조절기능 수행 부족

- 농협중앙회의 품목별 전국협의회 생산자조직 기반이 취약하여, 수급불안정에 의한 가격불안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 산지유통에서 공동출하 비율이 33% 정도로 계속 확대되고 산지유통에서의 경쟁척도로서의 시장견제력이 있지만, 생산자조직간 연계성과 역할분담이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아, 생산자 중심적인 산지유통이 어렵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수집상유통을 효과적으로 대체하지 못함

3. 산지유통개선의 기본방향

- 산지간 경쟁, 조직간 경쟁(수평적 경쟁)을 탈피하고 수직적 경쟁체제 구축으로 거래교섭력 극대화
- 생산자조직의 생산 및 유통활동 전문화를 위해 조직의 규모화, 계열화, 연대 뿐 아니라 전략적 제휴 방안도 모색
- 산지 유통시설의 공동이용체제를 구축하여 가동률 제고
- 공동계산제 활성화로 ULS에 부응하고 등급별 거래교섭력 제고
- 품목별 전문조합 및 전국협의회 기반 강화로 농산물 수급 및 가격조절기능 수행

4. 산지유통 개선방안

가. 생산자조직의 재정비 및 산지유통 역할 분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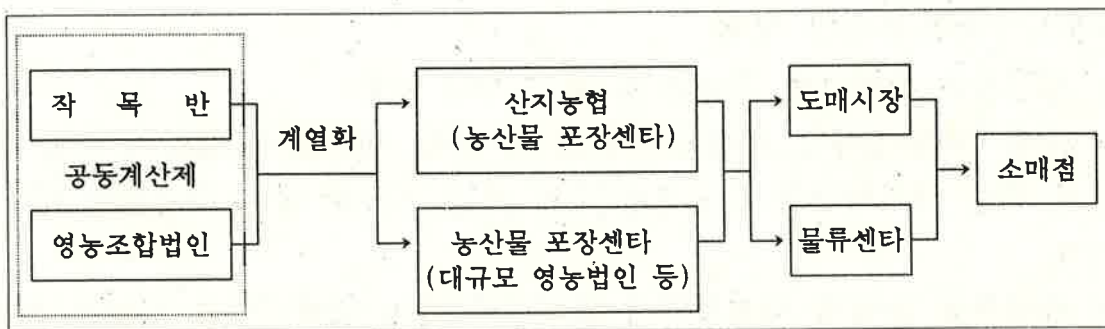
- 농촌의 각종 경제사업 조직체의 정비 및 계열화체제 구축으로 규모에 따른 역할 분담
 - 기초조직 : 작목반 및 영농조합법인의 재정비와 판매 이전단계의 생산 및 상품화(선별, 포장)에 전문화
 - 협동조합 : 지역농협은 조합원을 농가대상 일반회원과 영농조합법인·작목반 등 조직회원으로 구분하여 조직회원 중심으로 판매사업 추진
- 생산자조직의 기능 전문화를 통한 판매활동 강화
 - 협동조합의 농산물 판매부서 확대를 통해 유통전문화 유도
 - 협동조합 차원에서 기능별 전문성 부족과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해 협동조합간 수평적·수직적 통합, 공동출자 자회사 설립·운영
 - 유통전문으로 규모화된 영농조합법인, 민간유통업체와도 전략적 제휴(strategic alliance) 또는 파트너쉽을 추진하여 인적, 물적 자원의 공동이용과 역할 분담

나. 산지 유통시설의 집중육성과 공동이용체제 구축

- ⇒ 모든 농산물의 표준규격화를 통한 통명거래, 주문발주체제와 소비자 구매단위의 완제품 공급 기반 구축
- 2004년까지 160개소를 설치 지원하기로 한 농산물 포장센터의 개소수를 탄력적으로 확대하고, 지원규모를 현재의 소규모에서 다양화함으로써 경영능력에 맞도록 차등 지원
 - 매년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추가적인 지원도 가능하도록 함.
 - 간이집하장, 저온저장고 등을 운영하고 있는 조직에게도 경영능력과 공동출하실적 등을 평가하여 농산물 포장센터로 발전하도록 지원함.
 - 농산물 포장센터의 경우 미국과 같이 전문포장업체를 육성하기 위해 기계화된 시설에서 대량으로 소분포장할 수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대규모 지원

- 산지유통시설을 생산자조직 중심으로 지원하되 경쟁촉진 또는 산지유통의 보완을 위해 전문 유통상인조직에도 지원
- 농산물 포장센터, RPC 등에서 소비지 주문에 의해 소분포장 등 완제품을 생산하도록 선별, 세척, 절단 등 전처리시설과 소분포장시설, 저장 및 저온차량 등 시설지원 확대
- 농산물 포장센터, RPC를 중심으로 농산물을 공동선별·포장·상표화하고 무조건 위탁 및 공동계산제도(pooling system)를 도입하도록 유도함.
 - 산지유통시설에서 공동선별·포장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특별 인증 표기를 함으로써 품질을 인정하고 가격차별화를 유도함(일본의 공선 표기).

< 생산자조직의 공동계산제와 계열화 체계도 >



- 물류센터, 소매유통업체에서 농산물 포장센터 등에 OEM방식 등을 활성화하고 농산물 포장센터, RPC의 고유상표화를 촉진함.
- 모든 농산물의 산지 포장을 유도하기 위해 도매시장에서 재선별, 가공 등의 행위 및 비포장 농산물의 반입을 금지하고, 쓰레기발생 부담금을 대폭 인상함.

다. 산지 거래제도 개선 (포전거래제도 개선)

- 수집상에 대해서는 계약의 이행 정도를 높일 수 있도록 서면계약을 일반화하고, 수집상과의 포전거래계약방식을 채소가격안정사업의 계약제 배방식 중, 농협과 농가 사이에 체결되어 계약후 가격 폭등, 폭락시 상호 위험분담을 하도록 한 방식을 적용토록 함.

- 미국의 산지거래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재배방식에서도 출하가격이 폭등하면 10% 이상의 이익이 발생할 경우 중간상(country assemblers 또는 local buyers)이 생산자에게 이익(또는 손실)의 절반을 분배하여 중간상 폭리(또는 적자) 문제를 해소하고 있음.

라. 주산지 공판장 설치 운영

- 지역적으로 전문화된 주산품목 또는 계절품목에 대해 산지공판장 개설을 지원하여 생산자조직 주도적 공동판매 유도
- 주산지 공판장에서 경락된 농산물은 도매시장에서의 경락 예외로 함.

마. 채소가격안정사업의 보완 또는 유통명령제 도입

- 채소가격안정사업 보완
 - 생산량과 출하량을 조절할 수 있는 수단 보완
 - 채소가격안정사업 대상품목에 고추, 마늘, 양파를 포함하여 이들 품목에 대한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들 품목에 대한 사업물량 대폭 확대
 - 사업수행 농협의 사업물량이 확대됨에 따라 필연적으로 따르는 문제로 사업수행 농협의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자금지원 조건을 유리하게 하는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사업을 수행하는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전문가 양성 등 조합의 사업능력 배양
- 유통명령제 도입
 - 공황에 가까운 경기침체상황에서 생산농민들은 생산비는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농산물을 생산해 봤자 소비부진으로 수취가격이 하락하여 소득이 줄어들고, 소비자들은 실질소득 감소로 소비를 축소하지만 유통비용 증가 등으로 식료품 구입가격이 높아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농산물의 유통여건을 질서있게 조절하여 농가 수취가격의 하락을 억제하고, 반면 생산자조직의 공동출하 등을 확대하여 중간유통단계를 축소하고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갖추으로써 소비자 구매가격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음.

- 단계별 도입 및 추진방식
 - 감귤, 고랭지배추 등 지역집중성이 높은 품목부터 시범적 실시
 - 시범실시 평가후 품목 확대
 - 농안기금의 집중적 투입
 - 추진방식 : 생산자단체와 유통업자들이 농림부에 유통명령제 제안서 제출
 - ⇒ 공청회 등 농민 및 유통업계 의견 수렴
 - ⇒ 농민투표를 실시

※ 미국의 유통명령제

- 1930년대 대공황기에 과일·채소 협동조합에서 자발적인 유통통제 및 생산규제를 실시하고 품질기준을 설정하여 일정기준 이하의 규격을 유통시키지 않도록 함으로써 시장가격을 유지하였음.
- 그러나 자발적인 생산·유통통제로 무임승차자(free-rider) 문제가 심해짐에 따라 1937년 농산물판매협정법(AMAA)에서 연방유통명령제를 규정하여 제도화하였음.
- 유통명령제 목적
 - ① 농산물 판매조절로 패리티가격을 유지하여 농가소득지지
 - ② 가격안정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패리티가격 이상을 억제함.
 - ③ 생산연구, 포장용기 설정·품질 및 숙성도의 최저표준 설정·등급 및 검사기준 설정 등 유통관련 연구개발프로젝트 수행
 - ④ 출하조절로 홍수출하와 가격폭락 방지

바. 산지유통시설의 매매, 처분, 임대 기준 마련

- 산지유통시설의 이용효율 증진과 공동이용체제 구축을 위한 restructuring을 위해 정부지원 유통시설의 매매, 처분, 임대기준을 마련함.
- 또한 산지유통시설의 이용효율 증진을 위해 비수기의 목적외 이용도 가능하도록 함

1-3-2 생산자조직 중심의 산지유통 강화방안

(전국농민회총연맹)

1. 현 황

□ 현행제도

○ 농안법 제2조 3항(정의)

- 농수산물공판장이라 함은 농림축수협과 그 중앙회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하여 개설·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 동법 제43조(포전매매의 계약)

- ①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채소류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의 포전매매의 계약은 서면에 의한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 ②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는 포전매매의 표준계약서 양식을 정하여 이를 계약서의 작성기준으로 이용할 것을 권장하여야 한다.
- ③ 농림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산자 및 소비자의 보호나 농산물의 가격과 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상품목·지역과 신고기간등을 정하여 계약당사자에게 포전매매계약의 내용을 신고하도록 할 수 있다.

□ 추진실적

- 농협에 의한 채소유통안정화 사업
- 유통공사의 수매비축사업
- 산지공판장 97년말 현재 88개소

2. 개선필요성

□ 문제점

- 산지유통시설에 대한 입체적이며 유기적인 연계가 부실하여 대표적인 산지유통시설인 공판장과 포장센타가 각기 부실화되고 있음.
- 채소유통활성화 사업에 농협을 통해 총 3,000억원이 투자되고 있으나 수집상에 의한 포전거래는 축소되지 않고 농협이 수집상에 비해 경영능력 부족으로 채소유통활성화자금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함.
- 소비자 농수산물 도매업자(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의 산지공판장 참여 제한으로 공판장사업의 활성화 미흡.

□ 여건변화

- 농민에 의한 산지에서의 출하조절기능의 발휘가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확보할 수 있으나 전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소비지에 집결되어서야 출하량에 대한 확인이 되고 있어 주산지에서는 생산물을 포장센타와 연계된 공판장으로 집하시켜 과잉, 과소출하시에 조절을 하여야 함(과다 집하시 포장센타에 부속된 저온창고에 비축).
- 이미 능력의 한계를 보이고 있는 농협에만 채소유통활성화사업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수집상의 경제 마인드를 가격안정정책에 결합시켜 무, 배추의 포전거래에 대한 이윤분배 및 손해위험분담을 제도화 시킬 필요성 대두.

3. 개선방안

□ 대안제시

① 산지공판장의 확대

- 품목별 주산단지를 중심으로 산지공판장을 개설하고 소비자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및 대형유통업체가 자유로이 경매에 참여하여 상품을 구입하도록 한다.

- 산지공판장 구입물량에 대하여
 - ⇒ 도매시장법인의 매취상장 및 시장의 제3자판매 허용
 - ⇒ 중도매인의 상장애외품목의 허가
- 산지공판장의 개설자 다양화(현재는 농협만 가능)
 - ⇒ 지방자치단체
 - ⇒ 영농조합법인 및 그 연합체
 - ⇒ 자치단체, 영농조합법인, 민간자본의 공동출자(제3섹터방식)

② 채소유통활성화 자금의 집행주체의 다양화

- 주산지의 적정 출하량조정과 생산조정을 통해 농산물가격의 근원적인 안정화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실적이 부진한 농협에 계속 의존할 것이 아니라 산지생산자, 수집상간의 포전거래시 손해위험부담을 축소시키는 방안으로 운영합이 필요함.
- 채소유통활성화 자금의 집행을 농협의 계약생산에 의한 계통출하에 국한시키지 말고 농협의 입회하에 수집상과 농민이 관인계약서에 의한 계약을 하고 수확후 상품을 공영도매시장(또는 산지공판장)에 출하하여 판매한 뒤 채소유통활성화사업에 정한 범위에서 이익과 손해를 분담하도록 함.(단 이때 포전계약된 상품의 출하주는 농민이어야 하며, 자금지원이후 상품의 소유권은 농협, 농민, 수집상의 공동 소유가 되어야 한다)

□ 대안별 장단점(현행유지와 개선안 비교)

- ⇒ 이중경매로 인한 불합리한 유통단계 및 불필요한 유통비용의 절감
- ⇒ 경매참여자의 확대로 인한 구매경쟁확대로 농가수취가 상승
- ⇒ 대형구매자의 산지구매 편리성 제고로 유통단계의 축소
- ⇒ 경매과정에 대한 생산자의 현장 확인으로 경매부조리 예방
- ⇒ 포장센터와 연계하여 과일생산시 출하 조절 용이
- ⇒ 생산자 손해위험부담의 축소 및 포전거래시 과도한 이윤에 대한 생산자분배 제도화.

□ 외국의 사례

- 수집상제도가 발달한 미국은 수집상이 생산자와 손해 및 이윤을 분배하는 관행이 정착되어 있음(각 10%초과시).
- 산지공판장이 활성화된 유럽의 경우 공판장과 포장센터가 같은 곳에 배치되어 과잉출하시의 비축을 하고 과소출하시의 방출을 하여 가격안정을 함으로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함.

4.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이중경매의 금지를 통한 불필요한 유통비용의 축소
- 주산단지별 산지공판장의 개설을 확대하고 공판장을 포장센터와 연계 설치하여 생산자에 의한 출하조절기능을 증대시켜 가격불안정성을 축소.

5. 추진과제 및 일정

□ 예산이나 기금 확보

- 소비지도매시장 건설을 축소하고 그예산을 산지공판장과 포장센터 건설예산으로 전용.
- 채소유통활성화자금의 활용에 농협과 동등한 손해 및 이윤분배를 조건부로 수집상에게 배정(단 관인계약서에 의한 계약과 공판장 및 공영도매시장 출하를 조건부로 함)

□ 농안법령 및 관련법규 개정

○ 농안법 제43조(포전매매의 계약) 개정

< 개정 >

- ① 농산물 포전매매의 계약은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양식에 의거 서면에 의한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 ② 농촌지도소,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는 농림부장관이 정한 표준계약서 양식을 비치 배포하여야 한다.
- ③ 농림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산자 및 소비자의 보호나 농산물의 가격과 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포전매매거래가 활발한 대상품목·지역을 고시하고 신고기간등을 정하여 계약당사자에게 포전매매계약의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 동법 제39조(공판장 개설) 개정

< 추가 >

- 자치단체 및 영농조합법인 등이 독자적 또는 제3섹터방식을 통하여 공판장 개설을 하도록 함

○ 동법 제28조 개정관련

- 도매시장법인과 전문중도매법인(도매상)의 산지 공판장 경매참여 및 산지경매 농산물에 대한 상장예외거래 인정

1-3-3 축산물 생산자조직 중심의 산지유통 강화방안

(축협중앙회)

I. 가축시장 통폐합 및 시장기능 활성화

1. 현 황

□ 현행제도

- 농림부 : 종합지도감독, 가축시장 거래가축등 지정
- 시(군)·도 : 가축시장개설권고, 개설허가, 감독 등
- 축협 : 가축시장 재편정비 사업 관리기관, 가축 매매수수료 결정, 일반가축공체금 지급기준 결정, 시장관리 및 운영 등

※ 산지 생축유통의 거점인 가축시장이 '95 의무거래제 폐지이후 출장 두수가 감소함에 따라 기능이 취약한 소규모 가축시장을 점차 정리 하고 있으며 '97말 현재 113조합에서 144개소의 가축시장을 운영 관리 하고 있음.

□ 추진실적

- 가축시장 재편정비사업 추진실적

| 구 분 | '90 | '91 | '92 | '93 | '94 | '95 | '96 | '97 |
|------|-----|-----|-----|-----|-----|-----|-----|-----|
| 폐쇄시장 | - | 15 | 14 | 46 | 13 | 39 | 10 | 6 |
| 운영시장 | 286 | 271 | 257 | 211 | 198 | 160 | 149 | 144 |

2. 개선 필요성

□ 문제점

< 가축시장 운영상 >

- 도매시장 직출하, 계열화 브랜드 등 유통여건 변화로 1일 출장두수가 50두 이하인 영세가축시장 48% 점유
 - 중간 상인에 의한 산지가격 결정으로 공정거래 질서 문란
- LPC중심 계열화 생산시 가축시장 존립기반 위협
- 가축시장 부문 수지적자 누증으로 이용편익시설 확충지연(서비스지난)
- 일반가축공제제도 의의 상실
 - 소 사육성향 변천 : 역용장기사육 → 육용단기사육
 - 축산업의 전기업화 : 공제금지급대상에서 제외
 - 수익자 부담원칙과 상충 : 공제료 부담없이 공제금 수입

< 재편정비 추진상 >

- 지가상승, 토지거래규제, 환경보전법 강화등으로 이전부지 확보 지난
- 폐쇄시장 매각대금으로 가축시장 이전 육성토록되어 있으나 통폐합 시장이 없거나 매각대금이 적어 재원 확보 지난
- 이전 및 시설개선에 따른 소요자금 과다 발생으로 사업 추진 지연
→ 투자 기대효과 미약
- 조합의 이권보존 의도와 행정기관의 마찰, 폐쇄반대 민원등으로 기능상실된 시장 및 영세가축시장에 대한 폐쇄기피

3. 개선방안

□ 대안제시

- 가축시장 시설개선을 위한 재편 정비사업 지속 추진
 - 영세가축시장 폐쇄, 다두거래 가축시장 육성

□ 대안별 장단점

○ 장 점

- 가축시장 거래제도 개선으로 대양축가 서비스제고 및 시장경영 내실화 도모
- 가축 경매제도 조기정착을 통한 공정거래 질서 확립으로 농가 수취 가격제고

○ 단점

- 소규모 사육농가의 상인에 의한 문전 출하관행 완전 개선지난

4. 추진방향 및 목표

□ 추진방향

○ 가축시장 재편정비

- 육성 : 지역별 주YG축시장을 육성시장으로 지정 시설·거래제도 중점개선
- 폐쇄 : 1일 50두 이하 출장가축시장

□ 목표

- 1일 출장두수 50두 이상 규모의 전국 77개 시장 육성
 - 가축시장정비 : ('97) 144 ⇒ (2004) 77
- 시설현대화와 편익시설을 갖춘 대형가축시장으로 육성

5. 세부추진계획

□ 가축시장 재편정비 사업

○ 육성 대상시장

- 목표 : 2004년까지 전국 77개 시장
 - 소사육두수 : 40천두당 1개소(현재평균 20천두당 1개소)

- 기준설정

- 1개 조합당 1개 이내원칙(1시장 일평균 100두 출장시장 2개이상 보유시 예외 인정)
- 1시장 일평균 50두 이상 출장시장
- 50두 이하 출장시장중 도서, 오지 및 인근시장과 원거리 위치등 특수여건 구비(3개소) - 강원 양구, 전남 진도, 제주 한림
- 동일 조건중 조합자립도 상위 조합

○ 정리대상 가축시장

- 무출장시장 및 20두 미만시장 (50두이하 시장도 조기 폐쇄 유도)
- 1조합 2개 이상 시장중 소규모 시장
- 도심지, 주택지가 인접되어 있어 민원대상인 시장

○ 단계별 추진목표

- 1차 (2000년까지) - 1시장 50두이하 출장 시장(51개소) 폐쇄
- 2차(2004년까지) - 16개 시장 폐쇄

□ 가축시장관련 제도 및 시설개선

○ 가축시장매매수수료 징수제도 개선

- 시장시설 개보수등 관리비용 확보를 위하여 가축시장매매수수료 징수제도를 폐지하고 가축시장 사용료(입장료) 징수방안 검토(거래형성 여부에 관계없이 징수)

○ 가축공제사업의 일원화

- 일반가축 공제제도를 폐지하고 특수가축공제 제도 확대 시행
 - 특수가축공제 기금 조성운용
 - 공제기금 조성은 정부보조, 축협, 양축농가에서 분담
 - 공제기금 발생이자로 공제사업 추진

○ 가축공정거래제도 정착

- 가축 전자식 경매거래 도입 검토

○ 소전산화 사업과 연계 정보전산망 구축

6. 추진과제 및 일정

예산이나 기금확보

-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거 산지유통개선사업으로 신청

농안법령 및 관련법규 개정

- 일반가축공제제도 폐지 : 불임

관계부처 협의 계획 등

- 관계부처 : 농림부 축산국 축산물유통과

7. 투융자계획

- 가축시장 재편정비 사업

| 구 분 | '98 | '99-2000 | '2001-'04 | 계 |
|------|------|----------|-----------|------|
| ○사업량 | 11개소 | 40개소 | 16개소 | 67개소 |
| ○사업비 | - | - | - | - |

- 육성시장 시설개선사업
해당사항 없음

II. 소 계통 및 계약 출하체계 구축

1. 현 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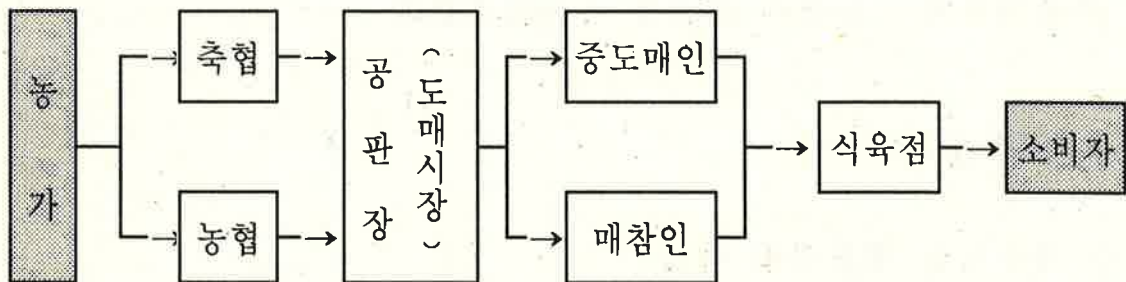
□ 현행 산지 출하형태

- 축산물의 품목별 산지유통 경로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생산자단체를 통한 계통(계약)출하, 수집상 또는 가축시장을 거쳐 도축(가공)단계로 유통되고 있음

- 생산농가의 출하형태별 취급비율

- 가축시장 23%, 수집상에 의한 문전거래 42%,
- 계통출하 26%, 계약출하 9%

- 계통 출하체계



□ 소 처리능력 및 도축실적('97)

| 구 분 | | 계 | 민간 | 축협 | | |
|---------------|----------|-------------|-----------|---------|-----|-----|
| | | | | 소계 | 중앙회 | 조합 |
| 총괄 | 개소수 | 118 | 105 | 13 | 5 | 8 |
| | 처리능력/일 | 10,837(100) | 9,889(91) | 948(9) | 538 | 410 |
| | 도축실적(천두) | 1,125(100) | 895(80) | 230(20) | 179 | 51 |
| 도매시장 (공판장) | 개소수 | 13 | 8 | 5 | 3 | 2 |
| | 처리능력/일 | 2,082(100) | 1,424(68) | 658(32) | 488 | 170 |
| | 도축실적(천두) | 360(100) | 175(49) | 185(51) | 157 | 28 |

※ ()내는 %임

2. 개선 필요성

□ 문제점

- 생산자의 소 출하가 중간 상인에 의한 문전거래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42%) 시장 교섭력이 약한 양축농가의 가격협상 불리로 공정한 농가수취가격 보장 미약
 - 헐값판매로 생산 농가피해
- 계통, 계약출하(35%)이외의 물량중 일부가 영세 도축장에서 도축되고 있어 위생안전문제는 물론 거래상 부조리 발생

□ 여건변화

- 고급육 생산단지를 중심으로 브랜드육, 계열화생산에 의한 출하물량이 증대하고 있음
 - 지육, 냉동육 중심의 유통에서 최근 부분육 냉장육 유통증대
- LPC 신규가동에 따른 기존 도축장과 출하물량 확보 경쟁 심화

3. 추진방향 및 목표

□ 추진방향

- 양축가, 조합, 도매시장(공판장)간에 계획·계통출하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강화
 - 도매시장, 조합, 양축가간에 정보교환, 홍보 및 서비스 강화
 - 조합의 매취사업 확대
- LPC 활성화를 위한 계열생산 출하농가 사전확보체제 구축

□ 추진목표

- 축협생산자조직 및 LPC을 통한 계통(계약)출하 목표(총도축물량대비)
 - 축협 계통출하물량(농협물량 포함) : ('97) 185천두(16%)
(2004) 235천두(21%)
 - 축협 및 LPC 총 출하물량 기준 : ('97) 185천두(16%)
(2004) 447천두(39%)

4. 세부 추진계획

□ 개선(안)

- 출하조직 결성 등으로 계약출하 유도
 - 계통출하조합 143개소, 축산계, 한우회, 영농법인, 브랜드업체 등 적극 활용
- 계통출하 우수 조합 및 양축농가 우대제도 실시
 - 출하활성화 자금지원, 계통판매장 우선 공급, 컨설팅 및 방역지원 등
- 생산자 조직을 통한 계통출하활성화 자금 및 가축수송 전용차량의 지원
 - 계통출하 활성화 자금 지원(400억원)
 - 지원대상 : 계통출하조합, 영농조합법인, 축산작목반, 축산계등
 - 지원한도 : 농가당 30백만원이내(법인및생산자조직은 농가수준)
 - 지원기간 : 4개월단위 회전(무이자 지원)
 - 계통출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가축수송 전용차량 지원
 - 대상 : 지원희망조합(시범실시)
- 2004년까지 축산물 종합처리장(LPC) 10개소 개장으로 계약출하생산 활성화

□ 기대효과

- 계통(계약)출하 및 계약출하 생산체계 확대 구축으로 출하조절을 통한 사육기반의 안정적인 구축과 가격안정 도모
- 공동출하에 의한 수송비용 절감, 중간상인거래 배제로 농가수취가격 제고
 - 직거래활성화로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산지와 소비자가격의 연동)

5. 추진과제 및 일정

예산이나 기금 확보

-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계통출하 활성화지원 자금으로 신청

농안법령 및 관련법규 개정

- 해당사항 없음

관계부처 협의 계획 등

- 농림부 축산국 축산물유통과

6. 투융자계획

- 계통출하 활성화자금 지원

(단위 : 백만원)

| 구 분 | '98까지 | '99 | 2000 - 4 | 계 |
|--------|-------|----------|----------|----------|
| ○사업량 | - | 1,320개소 | 계속 | 1,320 |
| ○사업비 | - | 40,000 | 4,000 | 40,000 |
| - 축발음자 | - | (40,000) | (40,000) | (40,000) |

- 가축수송전용차량 지원

- 가축수송전용차량 희망조합 대상으로 시범실시후 운용결과를 검토하여 확대여부 결정

< 첨부자료 >

1. 소 계통출하 물량 추정

(단위:천두, %)

| 구 분 | '97(실적) | | 2004(추정) | |
|-----------|----------|--------|----------|--------|
| | 취급두수 | 비율 | 취급두수 | 비율 |
| ○ 축산물도매시장 | 360(185) | 32(16) | 420(235) | 37(21) |
| ○ LPC | - | - | 212 | 19 |
| ○ 일반도축장 | 765 | 68 | 493 | 44 |
| 계 | 1,125 | 100 | 1,125 | 100 |

- 주) 1. ()내는 축협공판장 전체 계통출하 취급두수 및 비율임
2. 2004년 도축두수는 '97년수준으로 가정
3. LPC(10개소) 1일 예상 도축능력(총 1,010/1일) 기준대비
70%가 가동되는 것으로 봄

Ⅲ. 육계 유통 활성화 방안

1. 유통현황

□ 현행제도

- 양계산물은 농산물과 달리 입식,양계,출하,도계공정을 반드시 거쳐야만 유통가능.

(유통유형 I : 현유통)

병아리입식→수집반출상→도계→도매상→중간상→소매

(유통유형 II : 축협,계열주체주도)

병아리입식 → 도계 → 도매 → 소매

□ 추진실적

- 양계단지 및 계열화사업 지원
 - 양계단지 지원 : ('96년까지) 32개소
 - 닭계열화업체 지원: ('96년까지) 14개소
- 단지,계열업체중심의 자체 유통망 구축등 기존사업의 내실화 유도

2. 개선 필요성

□ 문제점

- 양계농가의 수집반출상에 대한 높은 금융의존도로 문전거래 성행으로 가격협상 불합리
- 수집반출상의 시장점유율 65%이상으로 산지시장 형성없이 상인주도적 임의가격형성
- 계열주체의 계열생산량 35%수준 및 계열업체의 영세성으로 계열농가에 대한 사육비지급의 어음결제관행으로 양계농가의 계열화사업 참여기피.

- 도계시설의 낙후 및 위생수준 취약
 - 61개 도계장중 26개소만 3만수이상 처리
 - 영세도계장,간이도계장들의 비위생적도계 및 유통
 - 유통시설의 cold system 미비로 비위생적임.
- 통닭(수수)기준의 전근대적인 거래관행 성행
 - 육계생산량의 10%이상이 시장상황에 따른 비규격품발생
 - 비인기 규격에대한 처리문제로 계열업체의 경영압박요인.
 - 육계에 대한 2차 가공 방법개발 미비로 가공도 낮음.
- 계열업체의 유통판매기능 부재와 생산물량 집착으로 시장가격형성 주도권 상실
- 수집반출상의 유통주체 및 중간유통단계의 복잡화
 - 수집반출상,중간도매상 과다로 산지가격과 소비자가격과의 연동 효과반영이 적음.
 - 공판기능 결여로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 지남
- 소비량의 여름철 편중 및 기호식품으로 소비량 불안정 및 2차가공의 불활성화로 수요공급의 완충작용이 없음.
- 계열업체중 일부대리점,외식체인점,유통점에서만 자료발생하고 기타 대부분은 무자료거래가 주종임.

□ 여건변화

- 축산단체의 농가표준모델제시 및 consulting기능활성화 시도
- 양계의 규모화유도및 생산성향상 도모로 단지활성화의식
- 계열업체지원의 생산시설에서 유통시설지원방향으로 선회
- 양계유통의 brand화 붐(boom)및 직판기능강화

3. 개선방안

□ 대안제시

- 육계계열화 생산기능 확대로 시장점유율 제고
 - 가격결정권확보 → 가격 안정기능 강화역할
 - 안정적사육으로 농가소득 증대
 - 육계농가의 규모화 유도 가능

- 유통구조개선
 - 중소매단계의 cold chain화
 - 육계산물 공판장설치로 가격조절기능
- 안전하고 위생적인 고품질 닭고기 생산공급체계구축
 - HACCP 도입
 - 생산물량위주 유통에서 고품질, 위생, bland육 유통으로 전환
- 무자료 거래 개선 방안
 - 간이도계장에 공공수의사 배치감시→ 병력특례자활용
 - 합동단속반 상시개설(세무,위생)→제보자에게보상금지급
- 닭고기 수출기반조성위한 지원 사업

□ 대안별 장단점

| 구 분 | 장 점 | 단 점 |
|---------------------------|---------------------------------------------------------------------|------------------------------------------------------------|
| 1.도계장시설 현대화 사업 | ·도계장시설현대화사업을통해 경영합리화 및 유통구조개선 유도 | ·재정자립도 낮은업체 선정시 유통부문투자 부실우려 |
| 2.직판점지원 | ·계열화업체의 유통망 확보 ·계열업체의 단순도계사업 에서 해방 ·육계가격안정화및 도매 가격형성 가능 | ·육계만 유통시 손익분기점 도달지않 ·계열주체의 점유율낮은상태에 서 가격주도권 유명무실화 |
| 3.육계수급조절 사업 | ·육계산물의 가격안정 및 수매 비축기능 | ·수매육의 활용도방안강구 |
| 4.수출업체지원 사업 | ·육계수출활성화 유도 | ·육계수출기반 미형성으로 탁상공론화 우려 |
| 5.Haccp도입 및 브랜드화 유도 | ·육계안정성제고 및 신선육은 위생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소비량 제고 ·생산제 책임제 도입가능 | ·Haccp도입에 따른 운영경비 증가 및 시설비 부담가중 |

4. 추진계획

가. 도계장 시설 현대화 사업

□ 추진방향

- 도계장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 계열화업체지원:(’96까지)14개소→(’2002)35개
- 위생계육 생산공급위한 도계,가공,수송 보관시설 현대화를 통한 경영합리화유도 및 유통구조개선
- 계육의 안정성 보장과 신선도유지로 안정적 소비 기반구축
- 도계과정에서 발생하는 우모,내장등 부산물의 적정처리로 환경오염 방지 및 부산물자원화

□ 현황및 문제점

- 도계시설의 낙후 및 위생수준 취약
 - 61개도계장중 26개소만 3만수이상 처리
 - 영세도계장,간이도계장들의 비위생적도계 및 유통
 - 유통시설의 cold system 미비로 비위생적임.
 - 육계에 대한 2차가공방법개발 미비로 가공도 낮음.
- 노계처리장 부족으로 노계육에 대한효과적 도계가 어려움.
- 환경문제 심화로 기존영세도계장에서 우모등 처리가 어려운 실정으로 공해문제발생 다발.

□ 지원 방안

- 지원대상
 - 도계시설 개선 및 도계부산물처리설비를 설치코자 하는 도계장 경영자
 - 부분육,가공용작업 위한 작업장 위생개선시설 포함

○ 지원조건

- 사업비의 70% 용자

→ 년리8%,생산자단체5%/5년거치10년균등상환

○ 지원내역

| 구 분 | | 도 계 장 시설현대화 | 노계도계 시설개선 | 부산물처리 시설 개선 | 합 계 |
|-------|-----|----------------|--------------|----------------|--------|
| '98년 | 개소 | 3 | 1 | 4 | 8 |
| | 백만원 | 4,500 | 2,000 | 2,000 | 8,500 |
| '99년 | 개소 | 3 | 1 | 4 | 8 |
| | 백만원 | 4,500 | 2,000 | 2,000 | 8,500 |
| 2000년 | 개소 | 5 | 1 | 6 | 12 |
| | 백만원 | 7,500 | 2,000 | 3,000 | 12,500 |
| 2001년 | 개소 | 5 | 1 | 6 | 12 |
| | 백만원 | 7,500 | 2,000 | 3,000 | 12,500 |
| 2002년 | 개소 | 5 | 1 | 6 | 12 |
| | 백만원 | 7,500 | 2,000 | 3,000 | 12,500 |
| 합 계 | 개소 | 21 | 5 | 26 | 52 |
| | 백만원 | 31,500 | 10,000 | 13,000 | 54,500 |

※ 시설단가 추정

- 도계장시설현대화 1,000백만원/개

- 노계처리장 2,000백만원/개

- 부산물처리장 500백만원/개

나. 계열업체 직판점 지원사업

□ 추진방향

○ 생산에서 유통에 이르는 제단계를 통합 경영화하여 제비용 절감

○ 유통과정상의 cold chain 화

○ 계열업체 주도의 닭고기 직판점 개설로 유통단계단축

- 자체유통망이용 유통단계축소

- 통닭위주유통에서 부분육,가공육위주유통으로 전환

- 각 계열업체의 직판기능 확대지원을 위해 체인점개설자를 대상으로 일정자금을 융자지원.

□ 현황 및 문제점

- 육계유통구조상 계열화업체가 직판기능이 미약하여 수직계열화의 통합경영 잇점 발휘못함.
- 대다수 계열화업체 경영압박 해소위한 단순 도계물량 확대에만 집착

□ 지원방안

- 지원대상
 - 각 계열업체의 직판기능 확대지원을 위해 체인점개설자를 대상으로 일정자금을 융자지원.
 - 계열화 업체당 50개소 내외의 체인점 개설지원
 - 자금용도 : 시설 장비 인테리어비등
- 지원조건
 - 재원 : 축산발전기금
 - 지원조건 : 3년거치5년균분상환 연리5 %
 - 지원액 : 체인점당 15백만원융자
- 지원내역

| 구 분 | '98년 | '99년 | 2000년 | 2001년 | 2002년 | 합 계 |
|-----|----------|-------|-------|-------|-------|-------|
| 사업량 | 100개소 | 100 | 100 | 100 | 100 | 500 |
| 사업비 | 1,500백만원 | 1,500 | 1,500 | 1,500 | 1,500 | 7,500 |

다. 육계수급조절 및 수출업체 지원사업

□ 추진방향

- 육계가격 폭락시 구매비축을 통한 가격안정 완충역할이 가능토록 계열화주체의 비축자금 지원
- 고품질 위생적인 수출계육 생산을 위한 수출전문업체육성
- 국산닭고기 우수성홍보를 위한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
- 닭고기 수출추진으로 개방시대 육계경쟁력향상을 선도하는 견인차 역할수행
- 닭고기 수출활성화로 국내 수출 수급조절 및 소비촉진의 계기를 마련함으로 육계산업의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

□ 현황 및 문제점

- 양계산물의 가격은 수집반출상이 생닭유통의 65%나 담당하여 가격등락 영향으로 가격폭락, 폭등이 반복되어 투기적시장으로 인식됨.
- 일본닭고기수입량이 529천톤에 이르고있으나 지리적 잇점에도 불구하고 삼계탕을 제외한 품질규격과 위생상태불량으로 수출불가.
- 수출품질에 적합한 위생적인 가공시설이 부족함
- 일본의 위생조건에 맞는 위생육생산을 위한 도축, 가공시설의 부재

□ 지원방안

| | | |
|-----|---------------------------------------------------------------|--------------------------------------------------------|
| 구 분 | 육계비축자금 | 수출추진자금 |
| 대 상 | 계열화 업체 | 수출하려는 계열화업체 |
| 기 준 | ·육계가격 생산비이하 ·가격폭락시 -적정사육량103%이내 시 까지 비축 -비축금액전액지원 | ·가공시설개선자금 ·수출계육구매자금의 50%융자(생산비1500원기 준 750원/수 |
| 재 원 | ·축발기금 | ·축발기금 |
| 조 건 | ·1년거치 일시상환 ·년리 5% | ·시설개선;사업비70%융자 5년거치10년균등상환 년리8%생산자 5% |

□ 수출지원내역

| 구 분 | | 1999년 | 2000년 | 2001년 | 2002년 | 합 계 |
|----------|-----|-------|-------|-------|--------|--------|
| 시설 개선 | 개 소 | 2 | 2 | 1 | 1 | 6 |
| | 백만원 | 1,400 | 1,400 | 700 | 700 | 4,200 |
| 구매 자금 | 백만수 | - | 5 | 10 | 15 | 30 |
| | 백만원 | - | 3,750 | 7,500 | 11,250 | 22,500 |
| 합 계 | | 1,400 | 5,150 | 8,200 | 11,950 | 26,700 |

라. HACCP 및 브랜드육 도입 연구

□ 추진방향

- 닭고기 수입자유화에 대응하여 국내산닭고기의 위생처리 강화로 안전한 닭고기공급을 통한 국내육계업 소비기반 확보
- 명확한 위생도계 관리기준을 제시하여 신선닭고기의 품질향상도모
- 위생적인 제품의 자신감에서 소비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브랜드육 도입으로 신뢰성 확보.
- 고품질 위생적인 수출계육생산 위한 견인차 역할수행

□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축산물위생처리법상 도계,해체방법이 불명확하여 시중에 유통되는 계육의 경우 허파,정강이,머리부분등 불가식부위가 도체에 붙어있어 소비자로부터 외면받는 사례가 있음.
- 최근 일본에서는 중국산 신선계육의 수입증가가 되고있으며 향후 국내신선육신장의 위협요인이 될 수 있음.
- 비위생적으로인해 소비자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으며,수출또한 진행이 어려운상태임.

□ 지원방안

HACCP

- haccp 준비기간(유예기간 포함): 2년
 - 도계 및 닭고기 유통실태조사
 - 도살해체방법 세부안마련
 - 의견수렴 및 시행

브랜드육

- 계열주체대상 HACCP실시 위한 내부설비 개선지원으로 BI 도입 적극 유도
 - 계열화업체당 BI 도입 비용, HACCP시설 개수비용 등
- 지원조건
 - 재원 : 축산발전기금
 - 지원조건 : 2년거치3년균분상환 연리5 %
 - 지원액 : 계열업체당 소요액의 70% 지원
- 지원내역

| 구 분 | 2000년 | 2001년 | 2002년 | 합 계 |
|-----|-------|-------|-------|---------|
| 사업량 | 3 | 3 | 3 | 9개소 |
| 사업비 | 1,050 | 1,050 | 1,050 | 3,150백만 |

* HACCP 및 BI작업비 500백만원/개소

IV. 산지 계란집하장(GP센터) 설치 확대

1. 현 황

□ 현행제도

- 지난 '88년부터 안정적인 계란생산 기반조성과 산지 유통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계란집하장 설치사업을 실시하였으며, 현재는 닭 경쟁력강화사업으로 지원중에 있음
 - 그러나 현재 계란집하장에서 선별포장한 위생란은 유통단계에서 등급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품질차별화가 미흡하고 적정가격을 수취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계란은 여타 축산물과 달리 가격결정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도매시장(공판장)이 없어 중간상인에 의하여 계란가격이 좌우되고 있음

□ 추진실적

- 계란집하장 수 : 18개소(전국유통량의 약 15% 처리)
 - 1일 처리능력 : 668만개

2. 개선필요성

□ 문제점

- 현재 전업화 및 양계단지화 지원에 따른 사육규모 확대 등으로 계란의 개별농가 유통보다는 조직단위의 공동유통 형태로의 전환 추세임
 - 개별유통시 계란상인이 직접 농가를 방문하여 계란을 수집함에 따라 수집차량에 의한 질병전파 등 방역상 취약점을 갖고 있음
- 계란집하장의 선별포장 기능(Grading & Packing)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추어 지지 않음
 - 계란의 품질차별화가 미비하며, 소비자의 위생란에 대한 인식이 낮음

□ 여건변화

- 국민소득 수준향상과 식생활에 대한 다양한 정보의 확산으로 안전한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 근년에 브랜드화 및 기능란의 확산에 따라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와 이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의 필요성이 나타나고 있음
 - 계란의 브랜드화를 통한 부가가치 제고에 생산농가의 관심이 높아짐
 - 가정소비 계란의 대부분이 기존의 판란에서 캡슐포장란으로 전환이 가속화 되고 있음

3. 개선방안

□ 대안제시

- 수도권 계란공판장의 우선 설치와 이들 공판장 상장계란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생산자조직인 축협, 영농조합법인, 협업단지, 양계단지 중심의 산지 계란유통기반 시설인 계란집하장(GP센타)의 설치 확대 및 현대화를 지속 지원
- 계란의 유통은 질병전파 차단을 위해 수집반출상인이 직접 농가에서 계란을 수집하는 관행을 탈피하여 계란집하장 또는 계란공판장을 통한 계란의 유통체계가 확립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 계란의 등급(품질, 중량) 기준을 마련하여 계란공판장과 계란집하장 등에서 우선 적용
 - 계란공판장의 계란 상장 및 경매기준으로 하여 공정한 거래를 통한 계란의 차별화 및 고품질화 지향

□ 대안별 장단점(현행유지와 개선안 비교)

<장 점>

- 안정적인 계란생산 기반조성을 위해산지 유통시설의 현대화를 지원
 - 소비지 계란공판장(도매시장)이 상장계란의 공급기지 역할 수행

- 계란 수집반출상인의 농가출입 차단으로 가금 전염성 질병발생 및 전파 최소화
- 계란의 선별과 포장 및 브랜드화를 통한 품질향상 도모
- 계란의 등급(품질, 중량)제도 마련과 이의 정착을 선도할 생산자조직의 유통시설에 대한 종합지원으로 양계농가의 지속적인 소득증가와 경쟁력 강화 유도

<단 점>

- 계란의 품질등급제도의 마련과 정착 및 소비지 계란공판장 건설이 우선되지 않을시 계란집하장의 고유기능인 선별, 포장의 잇점을 살릴 수 없음

□ 외국의 사례

○ 일본

- 전국 농장생산 계란의 약 80%가 GP센타에 반입되고 있음
- GP센타에서 세란, 건조, 검란한 후 '계란의 거래규격'에 따라 선별, 포장하고 있음

○ 미국

- 전국 계란공급량중 3/4이 수집 및 가공장을 통하여 유통되고 있음
- 1970년 계란생산물 검사법을 마련하여 계란에 대한 등급 및 검사를 철저히 하고 있음

□ 우리의 여건

- 산란계 전문경영농가 2,500여호중 대부분이 수집상인을 통해 거래하고 있으며, 20% 내외만이 축협, 협업단지, 양계단지의 계란집하장을 통해 유통하고 있음

□ 개선(안)

- 생산자 출하조직인 산지계란 유통시설(GP센터) 확충을 통해 수취가격 체고 및 가격안정과 수급조절 도모

4. 추진계획

□ 주요 추진시책

- 생산된 계란의 상품화와 판매가 생산자에 의해 적정하게 관리되어 농가소득에 직결될 수 있도록 유통기반시설을 지원
- 2004년 전업농가 1,000호 육성에 적정한 산지 계란유통시설 확보
 - 계란집하장(1일 30만개 처리규모)50개소 : 전국유통량의 50% 점유
- 기타 계란공판장 건설 지원 및 계란품질등급 마련

5. 추진과제 및 일정

□ 예산이나 기금 확보

-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의거 닭 경쟁력강화사업(차율)으로 신청
- 개소당 사업비 : 1,200백만원(부지구입비 별도)
- 현재 닭 경쟁력강화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유통시설(계란집하장, 계란저온저장시설, 계란가공시설)의 지원은 산지유통기반시설로 자금회수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을 감안 저리로 자금지원 필요
 - 지원금리 우대 : (현행) 연리 5% → (조정) 3%

□ 관계부처 협의 계획 등

- 관계부처 : 농림부 축산국 축산물유통과
- 산지 계란집하장설치 확대는 '97. 10월 농림부 축산물유통개선종합대책 수립시 제시한 바 있음

6. 투융자계획

(단위 : 백만원)

| | '97실적 | '98예산 | '99요구안 | 2000~2002 | 2003~2004 | 계 |
|-------|-------|-------|--------|-----------|-----------|--------|
| 사업량 | | | 2 | 15 | 15 | 32 |
| 사업비 | | | 2,400 | 18,000 | 18,000 | 38,400 |
| -기금융자 | | | 1,680 | 12,600 | 12,600 | 26,880 |
| -자부담 | | | 720 | 5,400 | 5,400 | 11,520 |

2-1 농산물포장센터 적정성 검토

1. 현황

□ 현행제도

- 지원배경
 - 농수산물유통개혁대책('94.9)의 일환으로 산지유통시설 확충을 위하여 95년부터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착수
- 사업목표
 - '95~2004년까지 160개소 건설지원
- 시행근거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 법률 제41조의 2, 동법 제47조 제1항
 - 농림사업시행지침(지원대상,사업량,사업비,지원조건 및 절차 등)
- 지원조건('98): 국고보조 30%, 국고융자30, 지방교부금20, 자부담20

□ 추진실적

- 사업실적('95~'98): 108개소
 - ('95): 21개소, ('96): 27개소, ('97): 28개소, ('98): 32개소
 - 지역별 분포

(단위: 개소)

| | 계 | 부산 | 울산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 시.군수 | 69 | 1 | 1 | 3 | 9 | 4 | 11 | 7 | 11 | 13 | 8 | 3 |
| 개소수 | 108 | 1 | 1 | 3 | 15 | 5 | 20 | 7 | 19 | 19 | 13 | 7 |

* 청과물종합유통시설 25개소 및 청과물종합처리장 3개소는 제외

○ 지원제도 개선

- 산지 생산기반, 집하 및 출하여건을 감안하여 포장센터 개소당 사업비를 축소 조정하여, 초기 과잉 시설투자 억제
 - ('95) : 30억원 ⇒ ('96이후) : 15억원
- 보조비율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자부담 비율을 높여, 포장센터 사업자의 책임경영여건 조성
 - '95~'96 : 국고보조 40%, 지방교부금 30, 자담 30
 - '97 : 국고보조 40%, 국고융자 20, 지방교부금 20, 자담 20
 - '98 : 국고보조 30%, 국고융자 30, 지방교부금 20, 자담 20
 - '99~2000 : 국고보조 20%, 국고융자 40, 지방교부금 20, 자담 20
 - 2000이후 : 보조지원을 전액융자로 전환(국고융자 80%, 자담 20)
- '96부터 신청 사업계획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자 선정심의 기준으로 활용
- '97부터 포장센터의 운영실적 평가를 실시하여, 원료매취자금 차등지원 기준 활용

< 외국(일본)의 사례 >

생산자조직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농산물 선과장 사업자 선정할 때, 중앙정부에서 사업성을 심사하고, 운영실적 평가를 통해 사후관리

2. 지원성과와 향후전망

□ 지원성과

- 농산물 표준규격출하 촉진 여건 조성
 - 포장센터의 선별·포장 기계화로 정부에서 제정한 농산물 표준규격출하 확산 및 물류비용 절감 기반 마련
- 농업인 조직화 촉진 및 농가소득 제고
 - 농가별로 선별포장하던 것을 포장센터에서 일괄하여 기계선별을 함으로서 지역농업인의 결속력 제고 및 농가 소득 증대

- 상품성 향상으로 소비자 신뢰도 제고 및 도매시장에서의 경매능률 향상과 산지유통기능 활성화
- 농산물을 산지에서 세척, 선별, 규격포장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고 이를 농업인에게 환원하므로서 실질소득증대 및 도시에 쓰레기 반입 억제
-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다듬기 재포장으로 인한 유통비용절감
 - 절감된 비용만큼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이익
- 선진유통기법을 가진 외국유통업체의 국내진출에 대응할 우리농산물의 상품화 촉진

□ 문제점

- 유통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급증하고 있는 포장센타 건설수요를 현재의 사업목표량으로 충족 곤란
 - 선별·규격포장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증가 추세에 따라, 지역별 생산량에 기초한 적정수준의 포장센타 건설 필요
- 자치단체에서 포장센타를 무분별하게 유치하려고 추진
 - 농특세를 재원으로 하므로 지방비 부담이 없고, 타 사업에 비하여 보조율이 높아 보다 많이 유치하려고 노력.
- 생산자조직의 포장센타사업에 대한 의식과 사업기반 취약
 - 포장센타를 이재의 도구로 인식하여 조직별로 보유하려는 경향에 따라 기-설치된 지역에서 신규 신청자가 집중
 - 생산자조직의 대부분이 경제사업에 대한 경험이 부족할 뿐 아니라, 포장센타의 적정 가동을 유지에 필요한 물량수집 기반취약
 - 생산자조직의 자본력이 취약하여 포장센타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외부차입에 의존
 - 생산자조직에서 조합원을 규합하는 결속력과 유대관계가 약하여 조직의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여건 미성숙

□ 향후전망

- 농산물의 공동출하 및 규격상품화 촉진과 통명·견본거래실현에 필요한 기본시설로 포장센터에 대한 사회적 수요증가 예상
 - 유통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 필요 특히, 정부에서 표방하는 산지직거래를 위한 거점시설로 활용
- 지방자치단체(시·군)의 포장센터에 대한 건설요구 지속
 - 건설요구가 충족될 때까지 계속적인 사업신청 예상
- 포장센터 신청사업자의 지역 집중화 현상 지속
 - 기 지원된 시·군에서 신규 사업신청 계속 발생 예상
- 생산자조직의 경제사업기반과 포장센터에 대한 인식이 발전적으로 개선되기에는 앞으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
 - 사업자 선정심사, 운영실적평가 강화 및 운영활성화 지원

3. 대책

□ 유통 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정소요량을 산정하여 목표량 수정

□ 지역(시·군)별 배치기준을 책정하여 시·군별로 포장센터의 과소·과밀건설 사전 통제

- 지역이기주의에 따른 자치단체간 무분별한 유치경쟁 조정
 - 포장센터 신청사업자의 지역집중화 사전 방지
- 생산자조직의 경제사업 기반과 포장센터에 대한 인식이 발전적으로 개선되도록 지도 및 지원
 - 경영지도, 운영자금 지원 등

4. 농산물 포장센터 건설목표 수정 및 지역별 배치기준 책정(시안)

□ 건설목표('95~2004): 253개소

- 농산물포장센터 : 225개소(완료 108 / 향후소요 117)
- 농산물종합유통시설 : 25개소(완료)
- 농산물종합처리장 : 3개소(완료)

□ 포장센터 처리가능 물량

- 대상품목: 사과, 배, 단감, 감귤, 복숭아, 토마토, 무, 배추, 파, 감자, 당근, 마늘, 양파, 밤, 버섯류 등 20개 품목
- 처리기준물량 : ('98) 529천톤 ⇒ (2004) 900천톤
- 지역(시·군)별 생산량의 5% ~ 30%를 처리기준물량으로 설정

| 대 상 품 목 | 사과,배,단감 버섯류 | 감귤,복숭아,감자 밤,마늘,양파 | 토마토,방울토마 토,고구마,당근, 참외 | 오이,양배추, 배추,파,무 |
|----------|----------------|----------------------|-----------------------------|-------------------|
| 처리 비율 | 30% | 20% | 10% | 5% |

※ 처리비율은 지역별 생산·유통지원시설 처리가능물량(1,600천톤)을 제외한 후의 잔여물량 기준

□ 향후, 포장센터 지역(시·군)별 배치기준

- 신규 포장센터 배치 및 사업자 선정기준으로 활용
 - 지역별 밀집 및 과소지역 조정(과밀지역은 사업자 선정시 통제)
 - 정부 재정의 효율적 배분으로 투자효율성 극대화 도모

※ 건설목표 및 배치기준 도출시 감안사항

- 농산물포장센터 지역별 건설수요에 관한 연구(유통공사/97.12)
 - 시.군별 생산 전망치에 기초하여 선별·규격포장에 필요한 전국 권 포장센터 건설수요량 도출

| | 계 | 부산 | 울산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 배치기준 | 253 | 1 | 1 | 14 | 25 | 11 | 37 | 21 | 46 | 52 | 30 | 15 |
| 기 선정 | 136(28) | 1 | 1 | 6(3) | 17(2) | 6(1) | 22(2) | 10(3) | 23(4) | 26(7) | 17(6) | 7 |
| 추가소요 | 117 | - | - | 8 | 8 | 5 | 15 | 11 | 23 | 26 | 13 | 8 |

※ ()는 청과물종합유통시설 및 처리장의 개소수 임.

- 각 도를 대상으로 포장센터건설수요 조사, 지역적 특수성 수렴
 - 계량적 분석결과의 미비점을 보완, 현실성있는 건설수요 도출

< 포장센터 건설목표 설정을 위한 조사·연구결과 비교 >

| | 현행 목표 (a) | 조정 목표 (b) | 조사 및 연구결과 | | 증감 (b-a) |
|------|-----------------|-----------------|-----------|------|-------------|
| | | | 수요연구 | 각도의견 | |
| 기 선정 | 108 | 108 | 108 | 108 | - |
| 건설목표 | 160 | 225 | 222 | 253 | 65 |

- ※ 포장센터 건설주체인 생산자조직을 대상으로 포장센터 건설의향조사, 잠재적 건설수요량을 파악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결정
 - 조사대상 : 2,450개소(영농법인 1,318 / 지역농협 1,132)

□ 후속 조치과제 및 일정

- 생산자조직의 포장센터 건설의향 조사 결과 분석 : '98.4
 - 지역농협, 영농법인의 포장센터 건설수요

- 포장센터 건설목표 및 지역별 배치기준 확정 : '98. 5
 - 건설수요에 관한 연구결과, 각 도의 의견 및 생산자조직의 포장센터 건설의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확정

- 농산물포장센터 건설지원에 소요되는 연차별 소요예산 확보를 위하여 관련부처 협의: '98. 6 ~

4. 투융자계획

- 농산물포장센터의 건설목표 및 지역별 배치기준 정립 결과에 기초하여, 연차별 사업량과 소요예산 산정

<참고자료>

1. 농산물포장센터 건설목표 및 지역별 배치기준(시안)

가. 총괄

(단위: 개소)

| 시.도 | 포장센터 건설목표 | | | 산지 선별·포장 유통시설(종합) | | | |
|-----|-----------|------|------|-------------------|------|----------|---------|
| | 건설목표 | 기 설치 | 향후소요 | 계 | 포장센터 | 청과물 유통시설 | 청과물 처리장 |
| 계 | 225 | 108 | 117 | 253 | 225 | 25 | 3 |
| 부산 | 1 | 1 | - | 1 | 1 | 1 | - |
| 울산 | 1 | 1 | - | 1 | 1 | - | - |
| 경기 | 11 | 3 | 8 | 14 | 11 | 3 | - |
| 강원 | 23 | 15 | 8 | 25 | 23 | 2 | - |
| 충북 | 10 | 5 | 5 | 11 | 10 | 1 | - |
| 충남 | 35 | 20 | 15 | 37 | 35 | 2 | - |
| 전북 | 18 | 7 | 11 | 21 | 18 | 3 | - |
| 전남 | 42 | 19 | 23 | 46 | 42 | 3 | 1 |
| 경북 | 45 | 19 | 26 | 52 | 45 | 6 | 1 |
| 경남 | 24 | 11 | 13 | 30 | 24 | 5 | 1 |
| 제주 | 15 | 7 | 8 | 15 | 15 | - | - |

* 기 설치에 '98선정사업자 포함

* 동일조직에 추가 지원된 경우는 1개소로 간주

나. 지역(시.군)별 배치기준

< 경기도 >

(단위: 개소)

| | 총소 요량 (a+b) | 기 설치 (a) | 향후 소요 (b) | 소요전망 | | 비 고 |
|-----|-------------------|----------------|-----------------|----------|-----------|-----------|
| | | | | 수요 연구 | 시.도 요구 | |
| 계 | 11 (14) | 3 (3) | 8 | 8 | 8 | |
| 의정부 | - | - | - | - | - | |
| 평택 | 1 | - | 1 | 1 | 1 | |
| 구리 | 1 | - | 1 | - | 1 | 지자체 의견 수용 |
| 남양주 | 1 | - | 1 | 1 | 1 | |
| 하남 | - | - | - | - | - | |
| 이천 | 1 (3) | 1 (2) | - | - | - | |
| 파주 | 1 | - | 1 | 1 | 1 | |
| 용인 | - | - | - | - | - | |
| 양주 | - | - | - | - | - | |
| 여주 | 1 | - | 1 | 1 | 1 | |
| 화성 | 1 | - | 1 | - | 1 | 지자체 의견 수용 |
| 광주 | - | - | - | - | - | |
| 연천 | 1 | - | 1 | 4 | 1 | 지자체 의견 수용 |
| 포천 | - | - | - | - | - | |
| 가평 | - | - | - | - | - | |
| 안성 | 1 (2) | 1 (1) | - | - | - | |
| 양평 | 1 | - | 1 | - | 1 | 지자체 의견 수용 |
| 고양 | 1 | 1 | - | - | - | |

* 기설치의 ()내는 청과물유통시설 개소수이며, 총소요량의 ()내는 청과물유통시설을 포함한 것임.

< 강원도 >

(단위: 개소)

| | 총소 요량 (a+b) | 기 설치 (a) | 향후 소요 (b) | 소요전망 | | 비 고 |
|-----|-------------------|----------------|-----------------|----------|-----------|-----------|
| | | | | 수요 연구 | 시.도 요구 | |
| 계 | 23 (25) | 15 (2) | 8 | 3 | 8 | |
| 춘 천 | 2 | 2 | - | - | - | |
| 원 주 | 1 | 1 | - | - | - | |
| 강 릉 | 2 | 1 | 1 | 1 | 1 | |
| 동 해 | - | - | - | - | - | |
| 태 백 | 1 | 1 | - | - | - | |
| 속 초 | - | - | - | - | - | |
| 삼 척 | 1 | - | 1 | 1 | 1 | |
| 홍 천 | 1 | 1 | - | - | - | |
| 횡 성 | 1 | 1 | - | - | - | |
| 영 월 | 1 | - | 1 | - | 1 | 지자체 의견 수용 |
| 평 창 | 4 (5) | 4 (1) | - | - | - | |
| 정 선 | 3 | 3 | - | - | - | |
| 철 원 | 1 | - | 1 | - | 1 | 지자체 의견 수용 |
| 화 천 | 1 | 1 | - | - | - | |
| 양 구 | 1 | - | 1 | 1 | 1 | |
| 인 제 | 1 (2) | - (1) | 1 | - | 1 | 지자체 의견 수용 |
| 고 성 | 1 | - | 1 | - | 1 | 지자체 의견 수용 |
| 양 양 | 1 | - | 1 | - | 1 | 지자체 의견 수용 |

* 기설치의 ()내는 청과물유통시설 개소수이며, 총소요량의 ()내는 청과물유통 시설을 포함한 것임.

< 충청북도 >

(단위: 개소)

| | 총소 요량 (a+b) | 기 설치 (a) | 향후 소요 (b) | 소요전망 | | 비 고 |
|-----|-------------------|----------------|-----------------|----------|-----------|-------------|
| | | | | 수요 연구 | 시.도 요구 | |
| 계 | 10 (11) | 5 (1) | 5 | 5 | 7 | |
| 청 주 | - | - | - | - | - | |
| 충 주 | 1 (2) | 1 (1) | - | - | 1 | 기존시설 활용도 제고 |
| 제 천 | 1 | - | 1 | - | 1 | 지자체 의견 수용 |
| 청 원 | 1 | - | 1 | 1 | 1 | |
| 보 은 | 2 | 2 | - | - | 1 | 수요물량 미약 |
| 옥 천 | - | - | - | - | - | |
| 영 동 | 2 | 1 | 1 | 2 | 1 | 지자체 의견 수용 |
| 진 천 | - | - | - | - | - | |
| 괴 산 | 1 | - | 1 | 1 | 1 | |
| 음 성 | 1 | - | 1 | 1 | 1 | |
| 단 양 | 1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설치의 ()내는 청과물유통시설 개소수이며, 총소요량의 ()내는 청과물유통 시설을 포함한 것임.

< 충청남도 >

(단위: 개소)

| | 총소 요량 (a+b) | 기 설치 (a) | 향후 소요 (b) | 소요전망 | | 비 고 |
|-----|-------------------|----------------|-----------------|----------|-----------|--------------|
| | | | | 수요 연구 | 시.도 요구 | |
| 계 | 35 (37) | 20 (2) | 15 | 10 | 20 | |
| 천 안 | 3 | 2 | 1 | - | 1 | 지자체 의견 수용 |
| 공 주 | 2 | 1 | 1 | 1 | 2 | 연구결과 적용 |
| 보 령 | 3 | 2 | 1 | - | 2 | 지자체 의견 일부 수용 |
| 아 산 | 5 | 4 | 1 | - | 1 | 지자체 의견 수용 |
| 서 산 | - | - | - | 3 | - | 지자체 의견 수용 |
| 논 산 | 3 (4) | 2 (1) | 1 | - | 2 | 지자체 의견 일부 수용 |
| 금 산 | 1 | 1 | - | - | - | |
| 연 기 | 2 | 1 | 1 | - | 1 | 지자체 의견 수용 |
| 부 여 | 5 | 3 | 2 | 2 | 3 | 연구결과 적용 |
| 서 천 | 2 | 1 | 1 | - | 1 | 지자체 의견 수용 |
| 청 양 | 1 | - | 1 | - | 1 | 지자체 의견 수용 |
| 예 산 | 2 (3) | - (1) | 2 | 1 | 2 | 지자체 의견 수용 |
| 홍 성 | 3 | 2 | 1 | 1 | 2 | 건설수요연구 적용 |
| 태 안 | - | - | - | - | - | |
| 당 진 | 3 | 1 | 2 | 2 | 2 | |

* 기설치의 ()내는 청과물유통시설 개소수이며, 총소요량의 ()내는 청과물유통 시설을 포함한 것임.

< 전라북도 >

(단위: 개소)

| | 총소 요량 (a+b) | 기 설치 (a) | 향후 소요 (b) | 소요전망 | | 비 고 |
|-----|-------------------|----------------|-----------------|----------|-----------|-----------|
| | | | | 수요 연구 | 시.도 요구 | |
| 계 | 18 (21) | 7 (3) | 11 | 3 | 11 | |
| 전 주 | 2 (3) | 1 (1) | 1 | - | 1 | 지자체 의견 수용 |
| 익 산 | 1 (2) | 1 (1) | - | - | - | |
| 정 읍 | 1 | 1 | - | - | - | |
| 남 원 | 2 | 1 | 1 | - | 1 | 지자체 의견 수용 |
| 김 제 | 1 | - | 1 | - | 1 | 지자체 의견 수용 |
| 완 주 | 1 | 1 | - | - | - | |
| 진 안 | 1 | - | 1 | - | 1 | 지자체 의견 수용 |
| 무 주 | 1 | - | 1 | - | 1 | 지자체 의견 수용 |
| 장 수 | 1 (2) | - (1) | 1 | - | 1 | 지자체 의견 수용 |
| 임 실 | 1 | - | 1 | - | 1 | 지자체 의견 수용 |
| 고 창 | 4 | 1 | 3 | 3 | 3 | 지자체 의견 수용 |
| 부 안 | 2 | 1 | 1 | - | 1 | 지자체 의견 수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설치의 ()내는 청과물유통시설 개소수이며, 총소요량의 ()내는 청과물유통 시설을 포함한 것임.

< 전라남도 >

(단위: 개소)

| | 총소 요량 (a+b) | 기 설치 (a) | 향후 소요 (b) | 소요전망 | | 비 고 |
|-----|-------------------|----------------|-----------------|----------|-----------|--------------------|
| | | | | 수요 연구 | 시.도 요구 | |
| 계 | 42 (46) | 19 (3/1) | 23 | 28 | 29 | |
| 목 포 | - | - | - | - | - | |
| 순 천 | 3 | - | 3 | 2 | 3 | 지자체 의견 수용(승주군과 통합) |
| 나 주 | 5 (7) | 3 (1/1) | 2 | 7 | 3 | 기존시설 활용 유도 |
| 광 양 | 2 | 1 | 1 | - | - | 잠재수요 반영 |
| 담 양 | - | - | - | 1 | - | 지자체 의견 수용 |
| 곡 성 | 1 | 1 | - | - | - | |
| 구 례 | - | - | - | - | - | |
| 여 천 | - | - | - | - | - | |
| 고 흥 | 1 (2) | - (1) | 1 | 1 | 1 | |
| 보 성 | 2 | - | 2 | 2 | 2 | |
| 화 순 | 1 | 1 | - | - | - | |
| 장 흥 | 1 | - | 1 | 1 | 1 | |
| 강 진 | 1 | 1 | - | - | - | |
| 해 남 | 6 | 4 | 2 | 2 | 1 | 연구결과 적용 |
| 영 압 | 4 | 1 | 3 | 4 | 4 | 간이집하장 활용 유도 |
| 무 안 | 3 | 1 | 2 | 4 | 8 | 간이집하장 활용 유도 |
| 함 평 | 3 | 2 | 1 | - | 1 | 지자체 의견 수용 |
| 영 광 | 3 | 2 | 1 | - | - | 잠재수요 반영 |
| 장 성 | 1 | - | 1 | 1 | 1 | |
| 진 도 | 2 (3) | 1 (1) | 1 | - | 1 | 지자체 의견 수용 |
| 신 안 | 3 | 1 | 2 | 3 | 3 | 간이집하장 활용 유도 |
| 완 도 | - | - | - | - | - | |

* 기설치의 (/)내는 청과물유통시설/ 청과물종합처리장 개소수이며, 총소요량의 ()내는 청과물유통시설과 종합처리장을 포함한 것임.

< 경상북도 >

(단위: 개소)

| | 총소요량 (a+b) | 기설치 (a) | 향후 소요 | 소요전망 | | 비 고 |
|----|---------------|-------------|----------|----------|-----------|---------------------------|
| | | | | 수요 연구 | 시.도 요구 | |
| 계 | 45 (52) | 19 (6/1) | 26 | 24 | 33 | |
| 포항 | 3 (4) | 1 (1) | 2 | - | 3 | 지자체 의견 일부 수용 (영일군과 통합) |
| 경주 | 2 | - | 2 | 1 | 3 | 지자체 의견 일부 수용 |
| 김천 | 3 | 1 | 2 | 1 | 3 | 지자체 의견 일부 수용 |
| 안동 | - (2) | - (1/1) | - | 1 | 1 | 기존시설 활용 유도 |
| 구미 | 2 | - | 2 | - | 3 | 지자체 의견 일부 수용 |
| 영주 | 2 (3) | 1 (1) | 1 | - | 1 | 지자체 의견 수용 |
| 영천 | 4 (5) | 4 (1) | - | - | - | |
| 상주 | 2 (3) | - (1) | 2 | 2 | 2 | |
| 문경 | 3 | 1 | 2 | 2 | 2 | |
| 경산 | 2 | 1 | 1 | 1 | 2 | 연구결과 적용 |
| 의성 | 4 | 2 | 2 | 4 | - | 잠재수요 반영 |
| 청송 | 1 | - | 1 | 3 | 1 | 지자체 의견수용 |
| 영양 | 1 | 1 | - | - | - | |
| 영덕 | 2 | 1 | 1 | 1 | 1 | |
| 고령 | 1 | - | 1 | 1 | 2 | 연구결과 적용 |
| 청도 | 3 | 1 | 2 | 4 | 2 | 지자체 의견수용 |
| 성주 | 1 | - | 1 | 3 | 3 | 간이집하장 활용 유도 |
| 칠곡 | 2 | 1 | 1 | - | 1 | 지자체 의견수용 |
| 예천 | 3 | 3 | - | - | - | |
| 봉화 | 2 | 1 | 1 | - | 1 | 지자체 의견수용 |
| 군위 | 1 (2) | - (1) | 1 | - | 1 | 지자체 의견수용 |
| 울진 | 1 | - | 1 | - | 1 | 지자체 의견수용 |

* 기설치의 (/)내는 청과물유통시설/ 청과물종합처리장 개소수이며, 총소요량의 ()내는 청과물유통시설과 종합처리장을 포함한 것 임

< 경상남도 >

(단위: 개소)

| | 총소 요량 (a+b) | 기 설치 (a) | 향후 소요 (b) | 소요전망 | | 비 고 |
|-----|-------------------|----------------|-----------------|----------|-----------|----------|
| | | | | 수요 연구 | 시.도 요구 | |
| 계 | 24 (30) | 11 (5/1) | 13 | 11 | 13 | |
| 창 원 | - (1) | - (1) | - | - | - | |
| 마 산 | - | - | - | - | - | |
| 진 주 | 1 | - | 1 | - | 1 | |
| 진 해 | - | - | - | - | - | |
| 통 영 | - | - | - | - | - | |
| 사 천 | 1 | 1 | - | - | - | |
| 김 해 | 2 (3) | - (1) | 2 | 2 | 2 | |
| 밀 양 | 2 | 1 | 1 | 1 | 1 | |
| 양 산 | - (1) | - (1) | - | - | - | |
| 거 제 | - (1) | - (1) | - | - | - | |
| 의 령 | 1 | - | 1 | 1 | 1 | |
| 합 안 | 2 | - | 2 | 2 | 2 | |
| 창 녕 | 5 | 3 | 2 | 3 | 2 | 지자체 의견수용 |
| 고 성 | 2 | - | 2 | 1 | 2 | 지자체 의견수용 |
| 남 해 | 2 | 2 | - | - | - | |
| 하 동 | 3 | 2 | 1 | - | 1 | 지자체 의견수용 |
| 산 청 | - | - | - | - | - | |
| 합 양 | 2 | 2 | - | - | - | |
| 거 창 | 1 (3) | - (1/1) | - | - | - | |
| 합 천 | 1 | - | 1 | 1 | 1 | |

* 기설치의 (/)내는 청과물유통시설/ 청과물종합처리장 개소수이며, 총소요량의 ()내는 청과물유통시설과 종합처리장을 포함한 것임.

< 제주도 >

(단위: 개소)

| | 총소 요량 (a+b) | 기 설치 (a) | 향후 소요 (b) | 소요전망 | | 비 고 |
|-----|-------------------|----------------|-----------------|----------|-----------|------------|
| | | | | 수요 연구 | 시.도 요구 | |
| 계 | 15 | 7 | 8 | 22 | 16 | |
| 제주시 | - | - | - | - | - | |
| 서귀포 | 2 | 1 | 1 | 8 | - | 잠재수요 반영 |
| 북제주 | 7 | 3 | 4 | 6 | 9 | 간이집하장 활용유도 |
| 남제주 | 6 | 3 | 3 | 8 | 7 | 간이집하장 활용유도 |

< 울산광역시 >

(단위: 개소)

| | 총소 요량 (a+b) | 기 설치 (a) | 향후 소요 (b) | 소요전망 | | 비 고 |
|-----|-------------------|----------------|-----------------|----------|-----------|-----|
| | | | | 수요 연구 | 시.도 요구 | |
| 울산시 | 1 | 1 | - | - | - | |

< 부산직할시 >

(단위: 개소)

| | 총소 요량 (a+b) | 기 설치 (a) | 향후 소요 (b) | 소요전망 | | 비 고 |
|-----|-------------------|----------------|-----------------|----------|-----------|-----|
| | | | | 수요 연구 | 시.도 요구 | |
| 기장군 | 1 | 1 | - | - | - | |

2-2 축산물종합처리장을 중심으로 냉장유통체계 구축

1. 축산물종합처리장 개요

가. 건설배경

- 2001년 쇠고기 수입 전면개방시 세계적인 고기도매업체 (Packer : IBP, 몽포드 등)의 국내 진출과 고품질의 냉장육 수입이 본격화 될 경우 국내 쇠고기 시장의 급속한 잠식 우려
- 국내 축산물 유통구조가 복잡하고 과도한 유통비용 발생
 - 산지소값이 하락되는 만큼 소비자가격이 하락되지 않아 생산자와 소비자가 동시에 피해를 입고 있음
 - 가축생산, 수집, 도축, 가공, 판매, 운송 등 5-6단계로 복잡
- 도축가공시설 낙후로 육류의 품질과 위생수준 취약
 - 기존 도축장은 규모가 영세하고 설치후 10년 이상 경과
⇒ 수입개방과 고비용 유통구조에 대응하는 축산물종합처리장을 중축으로 하는 신거래 유통체계 확립 추진

나. LPC(Livestock Packing Center) 개요

- LPC의 개념
 - 육류유통망을 가진 우량 민간업체가 단독 또는 다른 유통업체 및 생산자단체와 콘소시엄을 형성
 - 선진국 수준의 위생적인 도축, 가공시설을 건설하여 전업농·협업체 및 단지등 양축가와 계열화 또는 계약생산으로 안정적인 원료확보
 - 도축, 가공후 자체브랜드를 붙여 소비지 판매시설과 연계하여 냉장육으로 판매 또는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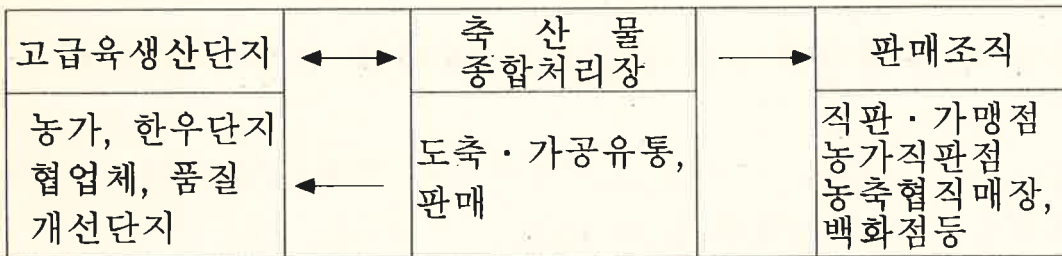
시설규모(처리능력)

- 대규모 LPG : 1일 소 100두, 돼지 1,500 ~ 2,000두 도축·가공
- 중규모 LPG : 1일 소 50두, 돼지 750 ~ 1,000두 도축·가공

건설 표준사업비

- 대규모 LPG : 115,332백만원 (축발기금 12,091, 자담 3,241)
- 중규모 LPG : 8,000백만원 (축발기금 6,320, 자담 1,680)

표준 운영모델



2. 건설현황 및 성과

가. 건설계획

- '99년까지 축산물종합처리장 10개소를 건설하여 국내산 쇠고기·돼지고기 유통량의 30~40% 처리

투자계획

- '95~'99년까지 총 1,418억 투입 : 축발기금 1,123(79%), 자부담 294(21)

나. 추진현황

- 대상자 선정 완료 : '94.12~'97.3까지 3차에 걸쳐 12개소 선정

- 수도권 : 4개소, 중부권 : 3개소, 호남권 : 2개소, 영남권 : 3개소

□ 건설 추진 : 10개소

- 사업포기 : 2개소(서울 경기양돈조합, 거창축협)
- 준공계획 : '98년 4개소, '99년 : 6개소

□ 업체별 추진현황

| 업체명 | 착수 년월 | 준공 예정 | 사업 기간 | 추진현황 |
|------------------------|-------------|----------------|------------|-----------------------------------------------------------------------------------------------|
| 안성축산 동아축산 (경북군위) | '94.12 “ | '98.4 '98.6 | 3년 3.5년 | ○ '98.2완공, 3월 시운전, 4.9 개장식 ○ '98.4월 완공, 6월까지 가동목표 - 운영자금 부족으로 제삼자 매각추진 |
| 북원농산 (경기남양주) | '95.9 | '99.말 | 4년 | ○ 인근주민 민원으로 건설 지연 ○ 건설장소 이전 추진중 (4월중 완료) - (당초) 경기 남양주 → (변경) 포천 - 장소변경이 확정되면 착공(5월) |
| (주)부천 (전북익산) | “ | '98.6 | 3년 | ○ 공정을 95%, '98.5월 완공, 시운전, 6월 개장식 |
| 진승산업 (경기연천) | '97.3 | '98.11 | 2년 | ○ 부지매입, 설계완료, '98.3월 착공, 9월 완공 - 10월 개장식 예정 |
| 하이미트 (강원원주) | “ | '99말 | 3년 | ○ 부지매입, 설계완료, '98.4월 착공 - '98년까지 : 공정을 50%, '99.11 : 준공 |
| 박달한우 (충북제천) | “ | '99말 | 2년 | ○ 부지매입, 설계완료, '98.5월 착공 - '98년까지 : 공정을 50%, '99.10 : 준공 |
| 푸른육원 (충남홍성) | “ | '99말 | 3년 | ○ 부지매입 및 설계중, '98. 하반기 착공 - '98까지 : 투자승인, 부지정리, 착공 - '99.11 : 완공, 12 : 준공 |
| 거평팜랜드 (전남장성) | “ | '99말 | 3년 | ○ 부지매입, 설계완료 - '98까지 : 토목완료, 착공, 공정을 20% |
| 명신산업 (경북포항) | “ | '99.3 | 2년 | ○ 부지매입, 설계완료, '98.3월 착공 - '98상반기 : 공정을 60%, 10월 : 완공 '98.12월 : 준공 |

다. 그간의 성과 및 문제점

- 우량 민간업체와 생산자단체가 컨소시엄 및 계열화 추진으로 안정적인 유통계열화 도모
- 금년부터 일부 가동이 시작되므로 육류유통의 개선과 대일 돈육 수출의 견인차 역할 기대
 - 유사사업으로 추진하여 '95년부터 가공중인 축협, 한냉 종합육가공장으로 인하여 국내 육류유통이 냉장육·브랜드육 유통으로 급속하게 전환되고 소비자의 인식 제고에 기여
- 도축, 가공장 설치에 대한 인근 주민 민원체기로 건설지연
 - 오폐수, 악취, 생축수송 등으로 인해 건설 기피
- 기존도축장과의 원료확보 경쟁 및 지원상의 형평성 문제
 - 기존도축장과의 도축원료 확보경쟁으로 지속적인 민원체기 우려
 - LPC에 대한 대규모 지원으로 도축업계에서 반발

3. LPC 운영계획

가. 기본방향

- LPC를 계열화 주체로 육성, 안정적인 원료확보체계 구축
 - 농가 조직화 추진 및 참여농가에 대한 지원체계 확립
- 고품질 육류생산 기지화
 - HACCP제도를 도입하여 위생적인 도축, 가공
 - 기존 현대화된 도축장을 LPC계열공장으로 흡수통합하여 육성

□ 유통구조개선 및 소비지 판매시설 확보

- 유통단계 축소 및 유통비용 절감으로 육류유통구조 개선
- 소비지 판매시설을 확보하여 직거래 유통체계 구축

□ 대일냉장 돼지고기수출의 전진기지화

- LPC 1개소당 돼지고기 10~20백만 수출목표 달성 추진

나. 안정적인 원료확보체계 조기 구축

(1) 가축계열화사업 주체로 육성

□ 목표 : 가동 3년내에 적정 확보두수의 70%를 계열화 또는 계약생산

- 확보목표 : 1년차 30%, 2년차 50%, 3년차 70%

□ 추진방법

- 사료제조업체와 연계하여 LPC소재지 인근의 전업농, 개량단지, 고급육생산농가 등을 중심으로 계열화
 - 사료업체에서 동일사료, 사양관리 및 방역지도 협조
- 직영 번식농장 또는 송아지 생산기지등과 연계해 계열참여농가에게 우량 송아지 공급체계 구축
- 2004년까지 한우전업농 육성목표 10천호중 8천호를 LPC로 계열화

□ 계열화 운영체계

< 축산물종합처리장(계열주체)>

- 계열농가에게 자돈(우), 모돈, 사료를 통일하여 공급
 - 계열주체는 번식농장(자돈농장), 비육·육성농가 확보
- 계열농가에 대한 표준사양기술 보급 및 지도
 - 번식 및 육성, 비육농가에게 단계별로 표준화된 사양관리지도

- 계열농가에 생산된 가축은 등급별 일괄구매(구매거부 금지)
 - 등급판정 결과에 대한 정보제공 및 고급육생산 유도
- 계열농가에 대한 사양관리, 방역지도 및 경영지도 실시
 - 사료회사, 수의과학연구소, 축산기술연구소 연계 추진

< 계열참여농가 >

- 계열주체와 연계된 동일 사료, 자돈(우), 사양관리체계 유지
- 계획생산된 가축은 LPC에 전두수 출하
- 사양관리, 방역관리, 경영지도 일지 작성 비치

다. 고품질의 위생육류 생산 기지화

□ HACCP제 도입 시범 운영

- HACCP의 정의
 - 가축 사육단계부터 도축, 가공, 유통, 판매단계별로 위해요소를 찾아내어 제거해 나가는 식품안전성 확보방안
- HACCP 운영방법
 - 농가출하 : 휴약기간 준수 및 건강한 가축 출하
 - 가축 수송 : 장거리수송 가축은 충분한 휴식과 사료와 물 공급
 - 도축, 가공과정 : 시설, 작업도구 및 종업원 위생관리
 - Cold chain system : 선도·온도·위생·포장기술 관리
 - 제품 관리 : 세균수 등 미생물 검사 실시

□ 수출검사(잔류물질) 면제업체 지정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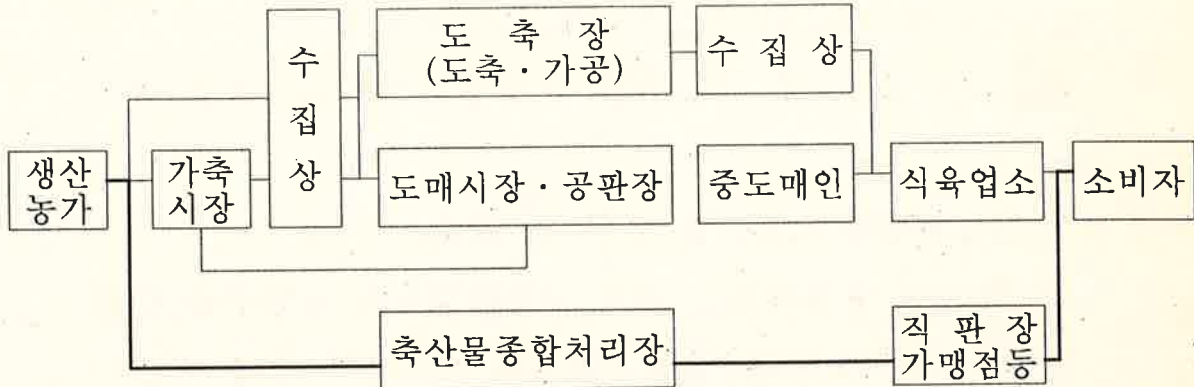
- 수출검사 면제를 받음으로써 냉장육 수출 용이
- 생산, 도축, 가공, 판매 전 과정에서 객관적인 검증 실시

□ 도축·가공시설의 규모화·조직화 추진

- LPC의 경쟁력 제고 및 위생적인 부분육·냉장육 유통확대를 위하여 기존 도축장(108개소)을 흡수하여 LPC 계열공장으로 규모화 추진

라. 유통구조 개선 및 소비지 판매시설 확보

(1) 유통단계 축소로 가격 및 품질경쟁력 강화



- 현행 5-6단계의 육류 유통구조를 3단계로 축소하여 소비자가격 경쟁력 확보
- 중간도매상이 배제되어 20%이상의 유통마진 절감
 - 유통마진 절감액은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환원
 - 산지소값 변동에 따른 소비자가격 탄력적으로 적용

(2) 소비지 판매시설 확보

□ 계열판매망(직판·가맹점) 설치 운영

- 직판점은 자체 자금으로, 브랜드육 가맹점은 정부자금 지원
- 가맹점 지원계획 : 총 1,100개소
 - LPC 별로 대규모는 100개소, 중규모 50개소 설치 지원
 - 가맹점 1개소 지원단가 : 75-100백만원
 - 지원조건 : 3년거치 5년상환

□ 위탁판매망 확보

- 위탁판매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 강화
- 위탁판매망
 - 대규모 시설 : 농협 하나로마트, 백화점, 할인점, 유통업체
 - 소규모 시설 : 한우전문점, 농가 직판점, 식육업소, 요소업소 등

마. 대일 냉장 돼지고기 수출전지기지화

- 총 생산물량의 30%이상을 수출(개소당 연간 1-2천만불 이상수출)
 - HACCP제 도입 및 수출검사 면제업체 지정 운영
 - 대일수출 냉장돈육 유통기한 : (현행) 20일 → (개선) 40일

- 한우 고급냉장육 대일수출 추진 및 확대
 - 고급육생산 출현확대로 한우 고급냉장육의 대일수출 추진
 - LPC에서의 1등급(A₁ B₁) 출현율을 50%까지 확대 유도
 - 1등급 출현율 : ('98) 18%(전체평균) → (2000) 50%(LPC)

2-3 산지공판장 기능강화 방안

(농협중앙회)

1. 공판장 현황

□ 공판장 기능 및 역할

- 농업인의 자주적 조직인 협동조합이 공동판매장을 개설하여 농산물의 판로확대와 농가수취가격 제고 역할 수행
- 상인들의 불공정거래를 견제함으로써 유통합리화에 기여하고 시장 교섭력이 미약한 농가 보호
- 공공·공익적 차원의 운영으로 수급조절, 공정가격 결정, 상품성제고 등 유통개선의 선도적 역할 담당
- 공영도매시장이 없는 중소도시의 농산물유통의 원활화
- 주산지에서 집하하여 관내공판장을 통하여 판매함으로써 생산농가의 노동력 및 유통비용 절감으로 농가실익 제공

유통비용 절감비교

- 대상공판장 : 남지농협 공판장
- 기준 : '97년도 취급량 : 16,196톤, 금액 : 21,514백만원
- 가락공판장대비 972백만원, 부산공판장대비 863백만원 절감
(단위 : 백만원)

| 공판장 | 상장수수료 | | 운송비 | 하차임 | 계(차액) |
|-------|-------|-------|-----|-----|------------|
| | 비율 | 금액 | | | |
| 남지공판장 | 5% | 1,076 | | | 1,076 |
| 가락공판장 | 5% | 1,076 | 810 | 162 | 2,048(972) |
| 부산공판장 | 6% | 1,291 | 486 | 162 | 1,939(863) |

주) 운송비는 가락공판장 톤당 50,000원, 부산공판장 톤당 30,000원
하차임은 톤당 10,000원씩 적용 → 남지농협공판장은 출하농민이 직접 하차

□ 공판장 제도 필요성 (도매시장과의 비교 관련)

- 공판장은 거래방식등에서는 도매시장과 같으나 그 역할과 기능면에서 도매시장과는 다른 고유기능 수행
- 생산자단체 지원육성이라는 정책의 일관성 유지 필요
- 40여년 이상 사용된 명칭으로서 공판장이 쌓아온 브랜드(상표)가치 보호(신뢰성 등)
 - 농협공판장은 공영도매시장 개설이전인 1957년부터 자체적으로 개설 운영하여 왔음

□ 공판장 운영 현황

(단위 : 개소, 억원)

| 구 분 | 개 소 수 | | | | '97취급액 | 비고 |
|----------|-------|----|--------------|----|--------|-------|
| | 자체 | 보조 | 공영도매 시장입주 | 계 | | |
| 중 앙 회 | 7 | - | 7 | 14 | 7,590 | |
| 회원 조합 | 지역조합 | 23 | 10 | 1 | 34 | 2,807 |
| | 전문조합 | 24 | 8 | 10 | 42 | 6,727 |
| | 소계 | 47 | 18 | 11 | 76 | 9,534 |
| 합 계 | 54 | 18 | 18 | 90 | 17,124 | |

2. 공판장 운영상 문제점

- 대부분의 공판장은 운영기반을 구축하여 활성화되어 있으나 일부공판장은 지역별, 공판장별로 운영기반이 취약
- 순회수집에 따른 직원의 노력과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소량다품목 경매로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
- 출하규모가 영세하고 소량다품목 출하로 경매 효율성 저위
- 취급상 어려움이 많고 수지기여도가 낮은 품목은 농협으로 출하하는 경향
- 산지공판장 중도매인의 경우 자금규모가 영세

- 대형소매점이 증가되고 이들의 산지 직구입 선호등 소비지 유통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산지공판장 대처 미흡
 - 산지공판장 시설 부족(선별, 포장, 저온저장, 단순가공등)
 - 소비지 정보 부족 (소비지도매시장, 물류센터, 직판장 등)

3. 산지공판장 기능강화

< 목적 >

- 구매자(중도매인, 매매참가인)를 산지로 유도하여 판매자(생산자)의 거래교섭력 제고
- 산지공판장을 포장센터와 더불어 산지유통의 거점으로 육성함으로써, 대형소매업체의 증가 등 소비지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한 산지유통 개선 도모

□ 산지공판장 확대 설치

- 경매식집하장의 공판장전환 지속 추진
 - 연간 180일이상 개장 운영중인 경매식집하장(32개소) 중 시설기준이 적합한 경매식 집하장을 공판장으로 전환 추진
- 국고보조사업 농산물공판장 건설 지속 추진
- 연도별 공판장 설치계획

| 구 분 | '98 | 2001까지 | 2,004까지 |
|------|------|--------|---------|
| (신설) | (7) | (20) | (13) |
| 계 | 97개소 | 117개소 | 130개소 |

- 신설계획(40개소) : 국고보조건설 10, 경매식 집하장에서 전환 20
신규건설 10

□ 산지공판장의 기능 확대 추진

- 기존의 집하, 분산기능과 함께 선별, 소포장, 저장등 복합적 기능 수행이 가능한 산지유통의 거점시설로 육성
 - ☞ 집하 → 선별 → 포장, 단순가공 → 저장(예냉) → 분산(도매)

- 기능을 확대함으로써 소매업체의 대형화 및 물류센터 등에 의한 직거래 증가등 소비지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한 산지유통 기반 강화
- 농가의 인력부족에 의한 산물출하 및 순회수집품목 등을 선별·포장화로 상품성을 제고
- 선별, 포장, 저장기능 등을 추가 건설시 시설자금 지원 추진

□ 품목별 전문공판장으로 육성하여 경쟁력 강화

- 생산의 전문화·단지화 진전으로 지역별 특화작목 생산이 뚜렷해지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품목별 전문공판장 육성 필요
- 기존의 다품목 취급중심에서 관내 지역특화품목 2-3개를 주요 취급 품목으로 하는 품목별 전문공판장 육성

□ 포전경매 및 창고경매제 적극 실시

- 농가의 포전(밭떼기)거래 비율이 높은 품목의 포전판매 수취가격 제고 및 수집상에 대한 견제 역할
- 무, 배추, 양파, 마늘 등 밭떼기 성행 품목을 대상으로 실시
- 포전경매와 창고경매를 하고자 할때에는 농가로 부터 위임동의서를 받아 창고 또는 포전상태로 상장
- 농가별로 판매시기와 판매규모를 신청받아 포전에서 판매농가 입하에 거래인을 상대로 경매실시

□ 산지공판장과 대량거래처와의 직거래 추진

- 최근 급속히 확대되는 대형소매점, 신유통업체 등 대량거래처를 산지공판장의 거래선으로 확보 추진
- 산지공판장에 포장센터와 같은 산지유통시설 투자를 증대하여 농산물의 공동출하, 포장화, 등급화, 콜드체인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새로운 대형 유통업체와의 연계를 높여 안정적 판로 확보

□ 산지공판장 지도·지원 강화

- 공판장 운영기반 구축이 취약한 공판장에 대하여 농안기금 및 유통저리자금 우선 지원
- 산지경매제도의 활성화 및 우수사례 발굴 보급
- 공판부문의 독립적인 경영분석 실시로 경영내실화 강화

< 참고자료 >

1. 산지공판장 기능강화 추진후 공판장 모습

(단위 : 개소, 억원)

| 구 분 | | | '95 | '96 | '97 | '98 | 2001 | 2004 |
|-----|------------------|-----|--------|--------|--------|--------|--------|--------|
| 산지 | □ 공판장 | 개소수 | 57 | 59 | 60 | 66 | 76 | 89 |
| | | 취급액 | 4,175 | 5,409 | 5,352 | 6,750 | 9,000 | 15,000 |
| | □ 경매식 집하장 | 개소수 | 82 | 82 | 81 | 80 | 75 | 70 |
| | | 취급액 | 2,745 | 3,180 | 3,370 | 3,700 | 5,000 | 7,000 |
| 소비지 | □ 공영도매시 장내공판장 | 개소수 | 13 | 15 | 18 | 19 | 34 | 34 |
| | | 취급액 | 6,477 | 7,788 | 9,028 | 12,400 | 20,000 | 30,000 |
| | □ 도청소재지 이상공판장 | 개소수 | 15 | 13 | 12 | 11 | 7 | 7 |
| | | 취급액 | 3,121 | 2,702 | 2,744 | 2,500 | 4,000 | 5,000 |
| 계 | □ 공판장 | 개소수 | 85 | 87 | 90 | 97 | 117 | 130 |
| | | 취급액 | 13,773 | 15,899 | 17,124 | 21,650 | 33,000 | 50,000 |
| | □ 경매식 집하장 | 개소수 | 82 | 82 | 81 | 80 | 75 | 70 |
| | | 취급액 | 2,745 | 3,180 | 3,370 | 3,700 | 5,000 | 7,000 |
| | 계 | 취급액 | 16,518 | 19,079 | 20,494 | 25,350 | 38,000 | 57,000 |

2. 중앙회공판장 현황

('97.12.31 현재)

(단위 : 백만원)

| 공판장명 | 설치 연도 | 시설규모(평) | | 사업실적 | 조수익 | 순손익 | 비고 |
|------|----------|------------------|------------------|---------|--------|--------|-------|
| | | 대 지 | 건 물 | | | | |
| 가락 | '85 | - | 6,661 | 231,300 | 4,063 | 750 | |
| 중부 | '66 | 663 | 1,674 | 15,544 | 521 | -128 | |
| 구리 | '97 | - | 4,208 | 44,020 | 755 | -993 | '97신설 |
| 영등포 | '74 | 2,460 | 2,419 | 66,636 | 2,621 | 1,108 | |
| 부산 | '93 | - | 6,919 | 100,767 | 2,836 | 1,022 | |
| 부전 | '61 | 879 | 1,398 | 28,771 | 1,200 | 121 | |
| 대전 | '87 | - | 2,324 | 73,232 | 1,958 | 597 | |
| 광주 | '62 | 879 | 1,395 | 31,894 | 1,195 | 228 | |
| 대구 | '62 | (1,159) 1,179 | (1,072) 1,423 | 45,425 | 1,515 | -324 | |
| 북대구 | '88 | - | 1,725 | 49,493 | 1,510 | 421 | |
| 창원 | '95 | - | 1,426 | 27,827 | 844 | 65 | |
| 안산 | '97 | - | 936 | 2,862 | 23 | -147 | '97신설 |
| 부산화훼 | '97 | 6,071 | 2,900 | 4,054 | -2,332 | -3,305 | '97신설 |
| 계 | | | | 721,825 | 16,709 | -585 | |

주) 1. 가락, 구리, 부산, 대전, 북대구, 창원, 안산은 공영도매시장
입주공판장

2. ()외서는 태평로판장

3. 회원농협공판장 현황

('97. 12. 31)

| 지 역 본 부 | 공 판 장 | 설치 년도 | 시설규모(평) | | 사업실적(백만원) | | |
|-------------------|----------|----------|-----------|-------|-----------|--------|--------|
| | | | 대지 | 건물 | '95 | '96 | '97 |
| 경 기 (4) | 동 두 천 | '71 | 764 | 418 | 5,597 | 3,863 | 4,543 |
| | 안 양(원) | '78 | (25,445) | 5,372 | 13,958 | 16,539 | 27,469 |
| | 부 천(원) | '73 | 483 | 107 | 3,193 | 3,808 | 4,404 |
| | 수 원(원) | '93 | (13,700) | 1,498 | 22,952 | 28,623 | 29,743 |
| 강 원 (2) | 춘 천(원) | '87 | (8,554) | 1,940 | 5,667 | 4,032 | 9,931 |
| | 원 주(원) | '58 | 1,688 | 835 | 9,476 | 12,952 | 15,538 |
| 충 북 (4) | 괴 산 | '97 | 1,665 | 1,073 | - | - | 184 |
| | 충북(원)충주 | '80 | (7,900) | 553 | 498 | 6,036 | 8,219 |
| | “ 청주 | '88 | (10,400) | 772 | 24,172 | 28,586 | 30,906 |
| | 제 천 | '82 | 1,541 | 574 | 6,069 | 11,032 | 11,889 |
| 대 전 충 남 (4) | 천 안 | '73 | (11,540)) | 1,081 | 8,966 | 16,901 | 17,619 |
| | 공 주 | '93 | 958 | 487 | 10,390 | 11,521 | 14,019 |
| | 아 산(원) | '93 | 2,669 | 548 | 4,078 | 4,988 | 4,183 |
| | 대 전(원) | '96 | 1,650 | 1,415 | - | 9,033 | 11,264 |
| 전 북 (9) | 전 주 | '97 | 4,409 | 1,812 | - | - | 12,820 |
| | 전 주(원) | '59 | (18,200) | 1,835 | 40,971 | 48,005 | 48,091 |
| | 군 산(원) | '96 | 4,425 | 1,068 | - | 28,750 | 24,176 |
| | 익산(원)창인동 | '69 | 705 | 86 | 14,228 | 15,434 | 15,340 |
| | “ 인화동 | '61 | 780 | 600 | 13,435 | 14,989 | 15,541 |
| | “ 영등동 | '81 | 440 | 280 | 3,236 | 3,515 | 3,799 |
| | 정 읍(원) | '65 | 1,296 | 420 | 7,245 | 8,305 | 8,381 |
| | 남 원(원) | '75 | 2,245 | 1,010 | 15,042 | 19,180 | 14,569 |
| | 김 제(원) | '89 | 3,587 | 1,205 | 5,016 | 5,777 | 6,773 |

| 지 역 본 부 | 공 판 장 | 설치 년도 | 시설규모(평) | | 사업실적(백만원) | | |
|-------------------|---------|----------|----------|-------|-----------|--------|--------|
| | | | 대지 | 건물 | '95 | '96 | '97 |
| 광 주 전 남 (9) | 광 주(원) | '91 | (16,900) | 2,475 | 90,473 | 97,041 | 97,084 |
| | 목 포(원) | '80 | 413 | 380 | 15,003 | 17,407 | 18,421 |
| | 여 수(원) | '65 | 407 | 272 | 7,146 | 9,462 | 11,607 |
| | “ 여천 | '95 | 547 | 1,089 | 2,120 | 2,985 | 2,985 |
| | 순 천(원) | '76 | 471 | 471 | 13,911 | 16,493 | 18,665 |
| | 나 주(원) | '93 | 5,571 | 1,490 | 20,558 | 26,483 | 30,560 |
| | 광 양(원) | '96 | 3,390 | 770 | - | 6,134 | 8,302 |
| | 나 주 남 부 | '82 | 1,465 | 482 | 6,277 | 6,090 | 6,674 |
| | 송 정 | '95 | 1,540 | 856 | 7,196 | 9,750 | 8,898 |
| 대 구 경 북 | 군 위 | '94 | 2,591 | 180 | 1,079 | 1,078 | 1,843 |
| | 효 령 | '94 | 2,395 | 565 | 892 | 619 | 882 |
| | 안 동 | '73 | 1,860 | 947 | 24,328 | 24,141 | 29,959 |
| | 포 향(청과) | '81 | 1,201 | 441 | 4,623 | 6,309 | 6,597 |
| | “ (채소) | '86 | 508 | 288 | 5,744 | 5,368 | 4,833 |
| | 경 주 | '78 | 645 | 273 | 1,913 | 2,254 | 2,714 |
| | 경 산 | '94 | 1,954 | 401 | 1,661 | 2,718 | 1,179 |
| | 왜 관 | '94 | 1,088 | 214 | 2,162 | 3,178 | 3,379 |
| | 김 천 | '88 | 2,328 | 1,098 | 12,731 | 22,550 | 14,853 |
| | 구 미 | '83 | 1,115 | 467 | 8,423 | 8,084 | 9,093 |
| | 상 주 | '83 | 1,495 | 337 | 6,312 | 4,161 | 7,455 |
| | 점 촌 | '90 | 3,854 | 402 | 2,520 | 3,172 | 3,090 |
| | 영 주 | '78 | 1,139 | 916 | 5,896 | 7,949 | 7,020 |
| | 풍 기 | '94 | 1,300 | 251 | 4,673 | 4,674 | 6,779 |
| | 부 석 | '94 | 955 | 353 | 2,727 | 3,059 | 3,642 |
| | 영 천 | '97 | 4,718 | 636 | - | - | 3,208 |
| | 청 도 | '95 | 1,922 | 449 | 3,691 | 7,149 | 7,346 |
| | 화 양 | '95 | 638 | 204 | 1,438 | 1,797 | 1,483 |
| | 각 남 | '95 | 861 | 245 | 1,411 | 2,031 | 2,269 |
| | 상 주(원) | '94 | 407 | 407 | 4,087 | 10,818 | 6,042 |

| 지 역 본 부 | 공 판 장 | 설치 년도 | 시설규모(평) | | 사업실적(백만원) | | |
|-------------------|----------|----------|----------|-------|-----------|---------|---------|
| | | | 대지 | 건물 | '95 | '96 | '97 |
| 대구 경 북 (26) | 경북능금(영천) | '64 | 534 | 112 | 6,354 | 9,368 | 5,824 |
| | “ (포항) | '73 | 465 | 292 | 4,671 | 6,503 | 6,962 |
| | “ (하양) | '94 | 805 | 200 | 1,438 | 1,807 | 1,133 |
| | “ (청도) | '94 | 2,707 | 1,717 | 2,736 | 3,985 | 3,168 |
| | “ (왜관) | '94 | 1,653 | 961 | 1,450 | 1,395 | 797 |
| | 대구경북(원) | '77 | (12,232) | 1,258 | 12,123 | 17,732 | 25,474 |
| 경 남 (12) | 진 주 동 부 | '84 | 565 | 480 | 5,670 | 10,724 | 8,100 |
| | 통 영 | '79 | 584 | 1,027 | 5,158 | 5,836 | 5,477 |
| | 삼 천 포 | '93 | 2,739 | 860 | 6,518 | 7,270 | 6,867 |
| | 마산(원)본장 | '90 | 1,290 | 1,233 | 16,796 | 20,594 | 19,629 |
| | “ 서마산 | '82 | 457 | 418 | 7,348 | 10,545 | 11,174 |
| | 진주(원)본장 | '71 | 1,053 | 814 | 22,058 | 14,316 | 14,404 |
| | “ 수정 | '78 | 207 | 200 | 3,098 | 3,526 | 3,086 |
| | 고 성 | '95 | 1,308 | 593 | 5,342 | 16,149 | 16,724 |
| | 창 녕 | '95 | 893 | 315 | 6,171 | 4,563 | 6,154 |
| | 남 지 | '95 | 1,727 | 572 | 16,466 | 21,406 | 21,514 |
| | 이 방 | '95 | 1,186 | 298 | - | 4,100 | 5,653 |
| | 부산경남(원) | '96 | 902 | 484 | - | 12,921 | 14,200 |
| 제 주 | 제 주 | '85 | 1,236 | 996 | 10,604 | 14,626 | 15,946 |
| 인 천 (4) | 인천(원)송림 | '59 | 1,453 | 500 | 5,820 | 7,626 | 7,379 |
| | “ 동인천 | '58 | 988 | 653 | 5,146 | 5,817 | 5,076 |
| | “ 부평 | '60 | 469 | 274 | 2,895 | 4,090 | 3,658 |
| | “ 구월 | '94 | (18,200) | 1,338 | 28,690 | 38,304 | 44,653 |
| 울산 | 울 산 배(원) | '93 | (12,000) | 1,908 | 29,161 | 31,992 | 34,085 |
| 계 | 76개소 | | | | 705,832 | 890,107 | 953,400 |

※()내서는 공영도매시장 입주공판장

4. 남지농협공판장 운영사례

1. 일반현황

연혁

- '80. 10. 20 산지 경매식집하장 개장
- '88. 3. 2 집하장 구내 대신지소 설치
- '95. 8. 26 공판장 전환

시설

| | | | | | |
|--------|------|------|--------|-------|------|
| 대 지 | 건 물 | 경매장 | 주차장 | 간이저장고 | 기타시설 |
| 1,724평 | 571평 | 315평 | 1,005평 | 70평 | 157평 |

조직

| 조합원 | 준조합원 | 계 | 협동조직 | | |
|--------|--------|--------|------|-----|------|
| | | | 영농회 | 부녀회 | 작목반 |
| 2,603명 | 3,363명 | 5,966명 | 39개 | 39개 | 103개 |

- 공판장 종사직원 : 14명 (대신지소 직원 포함)

2. 생산 및 판매현황

생산 및 판매조직

▣ 생산조직

| 작목회 | 작목반 | 작목 반원 | 재배면적(ha) | | | 생산량(톤) | |
|-----|------|----------|----------|----|------|--------|-------|
| | | | 봄 | | 가을오이 | 풋고추 | 오이 |
| | | | 풋고추 | 오이 | | | |
| 1개소 | 16개소 | 602명 | 103 | 12 | 115 | 4,130 | 9,000 |

▣ 중도매인 지역별 취급실적

(단위 : 백만원,명,%)

| 구분 | 부산 | 대구 | 마산 | 울산 | 기타 | 계 |
|------|-------|-------|-------|------|-------|--------|
| 중도매인 | 23 | 23 | 4 | 2 | 3 | 55 |
| 취급금액 | 7,540 | 6,837 | 1,556 | 161 | 1,054 | 17,148 |
| 구성비 | 43.97 | 39.87 | 9.07 | 0.94 | 6.15 | 100 |

연도별 취급실적

(단위 : 톤,백만원,%)

| 품목 연도 | 전체 | | | 오이 | | | 풋고추 | | |
|----------|--------|--------|-----|--------|-------|------|-------|--------|------|
| | 수량 | 금액 | 비율 | 수량 | 금액 | 비율 | 수량 | 금액 | 비율 |
| 1995 | 14,877 | 15,611 | 100 | 8,440 | 7,388 | 47.3 | 4,753 | 6,896 | 44.2 |
| 1996 | 16,776 | 21,406 | 100 | 10,937 | 9,644 | 45.0 | 4,115 | 10,483 | 49.0 |
| 1997 | 16,196 | 21,514 | 100 | 10,063 | 8,642 | 40.2 | 4,068 | 11,744 | 54.6 |

- 풋고추, 오이 품목은 관내 생산량의 97%이상을 취급

3. 운영 사례

- 개장기간 및 경매시간 : 년중무휴, 매일 14 : 30분부터 경매
- 신선도 유지를 위해 오전에 수확,선별,포장하여 오후 2시까지 경매장에 집하하고 14: 30분부터 경매시작
 - 수확 당일 부산, 대구, 마산등지의 소비자에게 도달
- 공판장에 반입되는 물량의 대부분이 관내 조합원 출하품임
- 관내 오이, 풋고추 생산량의 97%이상이 공판장에 출하되고 수집상 판매나 소비지 직출하는 거의 없음
- 경매사 운용을 조합원중에서 생산조직의 추천에 의거 선발하여 운용함으로써 출하자의 신뢰 증대
- 공판협의회 구성 운영
 - 구성원 : 농민, 작목반장, 중도매인, 공판장 관계자
 - 공판장 이용 주체들로 구성 각종 문제점과 발전적 의견을 제시 공판장 운영 활성화 기여

- 가격보전기금 운용
 - 경락대금중 0.5%를 징수 기금으로 적립
 - 흥수출하시 출하조절에 의한 경락가격 차액을 보전

4. 공판장 수수료 배분 및 사용

| 구 분 | 비 율 | 사 용 방 법 |
|---------|------|-------------------------|
| 공판장 수익 | 2.5% | 인건비,규격박스보조,경비,선도금,미수금운용 |
| 중도매인장려금 | 1.5% | 중도매인 경비보조 |
| 작목반환원 | 0.5% | 견학비,씨앗구입비,부락공동경비 |
| 가격보전기금 | 0.5% | 손실가격보전,자재지원,타시장출하차액보전등 |
| 계 | 5.0% | |

< 유통비용 절감효과 >

- 가락공판장대비 972백만원 절감
- 부산공판장대비 863 “ ”

(단위 : 백만원)

| 공판장 | 상장수수료 | | 운송비 | 하차임 | 계 |
|-------|-------|-------|-----|-----|-------|
| | 비율 | 금액 | | | |
| 남지공판장 | 5% | 1,076 | | | 1,076 |
| 가락공판장 | 5% | 1,076 | 810 | 162 | 2,048 |
| 부산공판장 | 6% | 1,291 | 486 | 162 | 1,939 |

- 주) 1. 기준 → '97년도 취급량 : 16,196 톤, 금액 : 21,514 백만원
 2. 운송비는 가락공판장 톤당 50,000원, 부산공판장 톤당 30,000원
 상,하차임은 톤당 10,000원씩 적용

2-4 농수산물 가공공장 운영현황 및 대책

1. 농수산물 가공산업육성 개요

가. 가공산업육성 목적

- 우리농산물의 새로운 수요개발과 부가가치 제고로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
- 농산물의 원료수매 및 구입으로 농산물수급 및 가격안정 도모
- 전통식품의 개발과 보급확대로 전통식문화 계승 및 대중화 기여

나. 추진방향

-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를 산지가공산업의 주체로 육성
- 가공제품 포장·디자인 및 용기개발 지원으로 포장개선
- 운영자금으로 원료구입자금 지원
- 전통가공식품을 수출산업으로 육성

다. 추진경과

- '89년 농수산물가공산업 장기발전계획 수립
 - 2004년까지 2000개소의 가공공장 건설
- '68년도부터 지원 설치된 특산단지(식품부문) 477개소를 전통식품가공 공장으로 인수하였음.
- '93년 6월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제정
- '97년 3월 동 법률 개정(농수산물의 안전성 조사)
 - '97년 10월 동법시행령 개정, '97년 12월 동법시행규칙 개정
- '98년 3월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사업중 수산분야 사업 해양수산부로 업무이관
 - 수산물가공산업 업무이관(314개업체)에 따른 농수산물가공공장 건설 목표 축소 : 2,000개소 → 1,500개소

2. 가공공장 건설 지원

- 지원대상
 - 농어가공동,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농·축·임·삼협 등 생산자단체 및 일반업체
- 지원시설의 종류 : 가공공장, 일반창고, 저온창고, 기타부속건물, 오·폐수처리시설, 가공기계류(부지구입비 제외)
- 대상품목 : 전통식품으로 지정된 품목 및 국내산 농수산물을 원료로 가공하는 품목
- 기준사업비
 - 전통식품개발사업 : 업체당 250백만원
 - 산지일반가공사업 : 업체당 1,000백만원
- 지원비율
 - 국고보조 : ('96까지) 50 → ('97) 40 → ('98) 30%
 - 융 자 : ('96까지) 30 → ('97) 40 → ('98) 50%
- 융자조건 : 연리5%, 3년거치 7년상환(일반업체 : 연리8%, 3년거치 7년상환)
- 추가지원 : 추가사업비의 70% 범위내에서 융자지원
- 사업지선정 추진체계
 - 사업자 → 시·도 → 시·군 → 농림부 → 농수산물유통공사(평가) → 심의회(심의) → 지정(장관)
- 추진실적

(단위 : 억원)

| 구 분 | '95까지 | '96 | '97 | 계 | 계 | |
|-----|---------|-----|-----|-------|-------|-----|
| | | | | | 농산물 | 수산물 |
| 업체수 | 1,048개소 | 177 | 124 | 1,349 | 1,035 | 314 |
| 지원액 | 1,979 | 586 | 414 | 2,979 | 2,566 | 413 |

* 수산물가공공장 314개소는 해양수산부로 이관 ('98. 3. 28)

3. 가공원료 구입자금 지원

- 지원목적
 - 농수산물의 특성상 원료수매자금이 일시에 집중됨으로써 자금난을 겪고 있는 정부지원 가공업체에 대한 운영자금지원으로 경영활성화를 기하고 농수산물 가격안정에 기여
- 지원대상
 - 정부에서 시설지원한 농수산물 가공업체(전통식품 품질인증업체 및 전통식품명인 포함)
- 지원기준 및 한도
 - 업체당 연간 15억원 한도로 하되, 수출업체 및 농수산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품목은 5억원까지 초과 지원
- '98 지원규모(농안기금) : 1,220억원
- 지원조건
 - 대출기간 : 1년 이내 (단, 정부지원 가공업체는 경영자금 압박에 대한 충격완화 차원에서 '98까지 대출기간을 2년 이내로 함)
 - 대출금리 : 연리 5% (일반업체는 연리 8%)

○ 연도별 지원내역

(단위 : 억원)

| 연도별 | '91 | '92 | '93 | '94 | '95 | '96 | '97 |
|-----|-----|-----|-----|-----|-----|-----|-----|
| 지원액 | 40 | 100 | 250 | 300 | 700 | 700 | 859 |

4. 포장개선사업 지원

- 목적
 - 농수산물 가공제품의 포장개선(디자인 및 용기)을 통한 상품성 제고로 판로확대 도모
 - 수출상품의 포장개선을 통하여 수출확대 도모

○ 지원대상

- 정부지원 전통식품가공업체
- 산지일반 가공업체중 생산자단체
- 전통식품 품질인증업체
- 전통식품 명인지정업체

○ 지원부문

- 포장디자인개발(제품홍보물 디자인개발 포함) 및 용기금형개발

○ '98 지원계획

- 기준사업비 : 업체당 최고 10백만원
- 지원비율 : 국고보조 30%, 융자 50%
- 융자기간 : 1년거치 4년상환(연리 5%)

○ '98 사업계획

(단위 : 백만원)

| 사업량 | 사업비 | | | |
|-----------|-------|---------|--------|--------|
| | 계 | 보조(30%) | 융자(50) | 자담(20) |
| 개소 110 | 1,500 | 450 | 750 | 300 |

○ 연도별 지원실적

- '91년부터 '97년까지 904개소에 14,756백만원을 지원

(단위 : 백만원)

| 구분 | '91 | '92 | '93 | '94 | '95 | '96 | '97 |
|-----|------|-----|-----|-------|-------|-------|-------|
| 업체수 | 37개소 | 65 | 70 | 109 | 146 | 291 | 186 |
| 지원액 | 323 | 960 | 960 | 1,440 | 1,920 | 6,284 | 2,869 |

5. 가공업체 경영실태 조사

가. 목 적

정부가 지원한 농산물 가공공장의 경영실태를 조사하여 앞으로의 업체별 경영지도에 활용하고 사업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은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

나. 조사기간

- 1차조사 : '96. 4~9월
- 2차조사 : '97. 5~9월

다. 조사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경영지도처)

라. 조사결과

○ 투자규모별 업체수

| 합 계 | 1억원미만 | 1~2.5억원미만 | 2.5~5억원미만 | 5~10억원미만 | 10억원이상 |
|-----------------|-------------|-------------|-------------|------------|-------------|
| 814개소 (100%) | 196 (24) | 253 (31) | 166 (20) | 87 (11) | 112 (14) |

- 5억미만이 75%로 규모가 영세함

○ 가동율

- 가동일수기준 : 67.5% (연간가동일수 202.4일/연간 300일기준)
- 생산능력기준 : 30.6% (연간생산량 247천톤/생산능력 807천톤)

○ 가동일수별 업체수

| 합 계 | 90일미만 | 90~150일미만 | 150~210일미만 | 210~300일미만 | 300일 이상 |
|-----------------|------------|-------------|-------------|-------------|-------------|
| 814개소 (100%) | 84 (10) | 165 (20) | 163 (20) | 142 (18) | 260 (32) |

○ 가공원료 조달처 분포율

| 합 계 | 자가생산 | 계약재배 | 산지농가 | 산지종합 | 도매시장 | 산지수집상 | 기 타 |
|-----|------|------|------|------|------|-------|-----|
| % | | | | | | | |
| 100 | 10 | 10 | 46 | 11 | 7 | 8 | 8 |

- 대부분 산지농가로 부터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음(46%)

○ 제품 판매망 이용율

| 합 계 | 농·수·축협 | 백화점 | 도·소매점 | 직 판 | 대 량 소비처 | OEM | 우편주문 | 기 타 |
|-----|--------|-----|-------|-----|---------|-----|------|-----|
| % | | | | | | | | |
| 100 | 19 | 9 | 31 | 10 | 16 | 7 | 5 | 3 |

- 수산물의 경우 농협판매망을 많이 이용하고 있음.

○ 제품홍보상황

- 홍보업체는 354개소로서 43%를 차지하며, 57%인 460개업체가 홍보를 실시하지 않음.
- 팜플렛이 홍보의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TV·라디오·신문 등을 이용하는 업체도 다수 있음.

○ 가공공장 경영비용(사업비용) 구성비율

| 합 계 | 원료매입비 | 인건비 | 이 자 | 동력비 | 기 타 |
|-------|-------|------|-----|-----|-----|
| % | | | | | |
| 100.0 | 68.0 | 19.3 | 5.4 | 1.8 | 5.5 |

○ 경영장부 기록수준

| 구 분 | 합 계 | 기업회계수준 | 간이장부수준 | 메모 또는 미작성 |
|-----|-------|--------|--------|-----------|
| 업체수 | 814개소 | 153 | 461 | 200 |
| 비 율 | 100% | 19 | 57 | 24 |

- 기업회계수준의 경영장부기록은 19%로서 경영장부기록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함.

○ 농수산물 가공업체 연도별 판매실적

(단위 : 개소, 억원)

| | | | | | | |
|-------|-----|-------|-------|-------|-------|-------|
| 구 분 | '92 | '93 | '94 | '95 | '96 | '97 |
| 업 체 수 | 145 | 686 | 723 | 784 | 851 | 962 |
| 판 매 액 | 780 | 2,987 | 3,870 | 3,986 | 4,533 | 4,971 |

○ '97수출실적 : 22,873천\$

- 인삼 4,997천\$, 김치·절임류 4,227천\$, 축산물 2,331천\$, 음료류 1,587천\$, 김·미역·다시마 등 수산물 7,025천\$임

○ 가공공장 운영현황

(단위 : 개소)

| 계 | 가 동 업 체 | | | | 공장건설· 생산준비중 | 부실업체 | 타사업전환 (지정취소) |
|-------|---------|-----|-----|----|----------------|------|-----------------|
| | 계 | 양호 | 보통 | 미흡 | | | |
| 1,349 | 814 | 303 | 461 | 50 | 324 | 61 | 150 |

* 주 : 공장건설·생산준비중인 업체중에는 '97지원업체(124개소)포함

6. 가공공장의 경영미흡 및 부실원인

- 경영능력이 없는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이 가공공장을 건설함으로써 부실업체 발생
 - 지정취소업체수 : '97년까지 150개소 (수산물가공업체 57개소 포함)
 - 특히, '68년도부터 소규모로 지원된 가내수공업형태의 특산단지의 국내외 여건변화에 따라 경쟁력 미흡으로 사업포기업체가 많이 발생(104개소)
 - * 특산단지의 사업포기업체수가 전체포기업체수의 70% 차지
- 업체의 영세성으로 판로개척 및 홍보능력 부족
- 가공공장은 건설하였으나 운영자금부족으로 공장운영이 어려움
 - 담부부족으로 융자 불가업체도 있음.
- 가공원료 생산의 계절성으로 가동율이 저조한 업체 발생

7. 금후대책

- 회생불가능업체
 - 과감하게 지정취소 하고 국고보조 및 융자금 회수조치

- 회생가능업체
 - 경영·기술지도 특별관리업체로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중점지도

- 신규업체
 - '99년도부터 국고보조를 융자로 전환하여 자생력이 있는 우수경영체를 선정
 - 신규지정 업체수를 줄이고 사업타당성, 경영능력 등을 엄격히 평가하여 선정

- 기존업체
 - 현대화, 자동화, 오·폐수정화시설 등에 추가지원 확대
 - 가공공장 운영실태 확인을 강화하여 지도·감독 철저
 - 서울과 지방의 전통식품전시판매장을 거점으로 판매망 구축
 - 각종 판촉행사 지원 및 우수농수산물대축제 행사 실시

- 가공사업 성공·실패사례집 발간 홍보

< 참고자료 >

농수산물 가공공장 운영현황 보고 (요약)

□ 가공공장 건설지원 실적

(단위 : 억원)

| 구 분 | '95까지 | '96 | '97 | 계 | 농수산물 | |
|-----|---------|-----|-----|-------|-------|-----|
| | | | | | 농산물 | 수산물 |
| 업체수 | 1,048개소 | 177 | 124 | 1,349 | 1,035 | 314 |
| 지원액 | 1,979 | 586 | 414 | 2,979 | 2,566 | 413 |

* 수산물가공공장 314개소는 해양수산부로 이관 ('98. 3. 28)

○ 기준사업비

- 전통식품개발사업 : 업체당 250백만원
- 산지일반가공사업 : 업체당 1,000백만원

○ 지원비율

- 국고보조 : ('96까지) 50 → ('97) 40 → ('98) 30%
- 용 자 : ('96까지) 30 → ('97) 40 → ('98) 50%

○ 용자조건 : 연리5%, 3년거치 7년상환(일반업체 : 연리8%, 3년거치 7년상환)

○ 추가지원 : 추가사업비의 70% 범위내에서 용자지원

○ 사업지선정 추진체계

- 사업자 → 시·도 → 시·군 → 농림부 → 농수산물유통공사(평가) → 심의회(심의) → 지정(장관)

□ 가공공장 운영현황 ('96~'97유통공사 조사결과)

(단위 : 개소)

| 계 | 가 동 업 체 | | | | 공장건설· 생산준비중 | 부실업체 | 타사업전환 (지정취소) |
|-------|---------|-----|-----|----|----------------|------|-----------------|
| | 계 | 양호 | 보통 | 미흡 | | | |
| 1,349 | 814 | 303 | 461 | 50 | 324 | 61 | 150 |

* 주 : 공장건설·생산준비중인 업체중에는 '97지원업체(124개소)포함

□ 가공공장 부실원인

- 경영능력이 없는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이 가공공장을 건설함으로써 부실업체 발생
 - 지정취소업체수 : '97년까지 150개소 (수산물가공업체 57개소 포함)
 - 특히, '68년도부터 소규모로 지원된 가내수공업형태의 특산단지의 국내외 여건변화에 따라 경쟁력 미흡으로 사업포기업체가 많이 발생(104개소)
 - * 특산단지의 사업포기업체수가 전체포기업체수의 70% 차지
- 업체의 영세성으로 판로개척 및 홍보능력 부족
- 가공공장은 건설하였으나 운영자금부족으로 공장운영이 어려움
 - 담보부족으로 융자 불가업체도 있음.
- 가공원료 생산의 계절성으로 가동율이 저조한 업체 발생

□ 금후대책

- 회생불가능업체
 - 과감하게 지정취소 하고 국고보조 및 융자금 회수조치
- 회생가능업체
 - 경영·기술지도 특별관리업체로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중점지도
- 신규업체
 - '99년도부터 국고보조를 융자로 전환하여 자생력이 있는 우수경영체를 선정
 - 신규지정 업체수를 줄이고 사업타당성, 경영능력 등을 엄격히 평가하여 선정
- 기존업체
 - 현대화, 자동화, 오·폐수정화시설 등에 추가지원 확대
 - 가공공장 운영실태 확인을 강화하여 지도·감독 철저
 - 서울과 지방의 전통식품전시판매장을 거점으로 판매망 구축
 - 각종 판촉행사 지원 및 우수농수산물대축제 행사 실시
- 가공사업 성공·실패사례집 발간 홍보

I. 서언

- 유통은 흐름이며 시스템이다.
- 따라서 유통과정의 각단계에 대한 접근보다는 우선은 전체적인 시스템의 틀속에서 하나하나에 대한 개선을 추구해 나가야 하며 항상 전체적인 흐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시스템은 항상 유동적이긴 하지만 지역적인 범위내에서 이루어진다.
- 따라서 개선을 위한 노력이나 정책도 관리에 있어서는 일정규모의 지역을 대상으로 유기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전국단위의관리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그 관리대상 지역의 규모를 지나치게 적게 잡을 경우 개선의 성과를 가시적으로 바로 얻을 수 있는 반면 비효율을 초래하기 쉽고 관리 대상지역을 지나치게 크게 잡을 경우 관리업무 추진자체가 매우 어려워지고 개선의 성과도 가시적으로 얻기가 쉽지 않다.
- 본인의 생각으로는 우리나라의 경우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경쟁을 촉발시키면서 서울특별시와 6대 광역도시권역을 소비권역으로 대별하여 유통시스템의 관리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 이것은 지방자치제의 본격적인 시행과 더불어 점차 결집되어져가는 지역의 역량을 유통정책에 활용하는 것이기도 한데 선을 굿듯이 유통의 권역을 나누자는 것이 아니라 產地유통의 혁신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현 상황에서 그의 관리주체와 단위 또는 관리영역을 설정해 나가자는 것이다.

II. 시급한 정책적 과제

1. 유통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 농정의 입장에서 보면 정책대상을 농업인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모든 사고는 產地, 농업인, 농산물(생산물)에서 출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그러나 오늘날의 상업농업시대에 유통정책에 있어서 만큼은 분명히 모든 사고와 정책의 틀은 소비지, 소비자, 상품에서 출발되어야 한다.
- 물론 농산물의 흐름이야 생산지에서 소비지로 흘러가는 것이지만 그전에 먼저 정보의 흐름이 소비지에서 생산지로 원활히 흘러가도록 해야 하며 그래야만 팔릴 수 있는 물건을 생산해내고 생산자선에서 품질관리, 가격관리가 가능해지며 농업인의 소득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유통소프트웨어의 확충

- 따라서 유통정책의 과제도 산지에 대한 시설투자에 못지않게 소비지에서 생산지로 정보가 전달되고 모든 생산농업인에게 원활하게 전파되며,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의 확충이 시급한 과제이다.
- 그래야만 투자시설의 운용측면에서 투자효율성이 확보될 수 있다. 소프트웨어가 부족한 상태에서 설치된 하드웨어는 1년에 고작 30일~40일 사용되는 낮은 효용성 밖에는 가질 수 없는 것이다.

3. 유통교육체계의 혁신

- 농업인에게는 수많은 기술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유통교육만큼은 현실적으로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기껏해야 지방의 농민교육원이나 유통공사에서 2~3일짜리 교육프로그램이 겨우 설치되어 있다.
- 물론 크게는 경영교육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하겠지만 유통교육은 생산기술교육보다 선행되어야 할 과제로서 소비지의 정확한 정보에 따라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생산에서 저장, 선별, 출하 및 수송판매까지 모든 과정에 대한 전문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 생산농업인이 유통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생산자단체나 상인이 유통의 주체가 될 것이므로 이들에 대한 교육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일이며 생산농업인에게도 중요한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고 추진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Ⅲ.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앞서의 정책과제와 현재 당면한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지자체와 물류센타 협력하에 유통교육체계 구축

- 앞서 산지유통의 혁신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그 주체는 도와 같은 광역자치단체와 전국에 16개소 설치계획인 물류센타(대체로 도단위 1개소 이상은 설치되고 있음)의 협력사업으로 행정주체와 구매자(농민측에서 볼때)가 함께 추진할 때 가장 강력하며 효과적일 수 있다.
- 특히 충남도의 중부 농수축산물물류센타(천안소재)와 같이 지자체와 농민단체가 공동출자한 형태의 물류센타는 앞서서 중요한 과제로 언급한 소비자의 정보전달이나 산지유통혁신을 위한 생산자교육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현재 계획하고 있는 중부 농수축산물 물류센타의 유통교육체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중부 농수축산물 물류센터의 유통교육계획 >

- 주 체 : 충남도 + (주) 중부농수축산물물류센터
- 장 소 : 충남 천안시 성거읍 송남리 소재
(주) 중부농수축산물물류센터내 교육원
 - 교육원 : 물류센터 건물(지하1층, 지상3층)내 2~3층에 강의실, 기숙사 등을 갖추고 이론교육과 물류센터내 현장교육을 병행
- 대 상 : 생산자(농업인), 유통인, 공무원, 생산자단체직원, 물류센터 직원 등
- 교육내용 : 산지 포장규격화 요령, 소비지정보 및 가격정보 취득 및 관리요령 등 대상자별로 교육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이론, 실습, 현장교육 실시
- 발전계획 : 2단계로 발전도모
 - 1단계(초기1~2년) : 회사내 연수원 형태로 농업인, 회사직원, 생산자단체직원, 유통인 교육 추진
 - 2단계(2~3년내) : 농수축산물 유통전문대학 형태로 1단계 대상자 외에 고교졸업생을 받아들여 우리나라의 젊은 농수축산물 유통인력 양성

- 이러한 형태의 물류센터에 교육체계를 구축할 수 없는 경우의 지자체에서는 농민교육원을 통해 유통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데
- 이러한 유통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림부에서
 - i) 유통교육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메뉴사업으로 제시하고
 - ii) 일정수준의 교육비용을 지원하며
(농민교육원이나 물류센터나 동일하게 교육비용 일보 보조)
 - iii) 지자체에서 해당지역 여건에 맞게 선택하여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 현재와 같은 전국단위로 어느 특정장소 1개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은 수료후 지역으로 돌아와서 지역농정이나 구매자와 연계 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큰 효과를 거둘수가 없음을 유념해야 한다.

2. 도단위 수급조절사업 추진

- 그동안에는 구조개선정책 중심으로 농업정책방향이 설정되어 왔으나 이와 병행하여 가격관리(수급조절)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 그래야만 농업인이 농정을 신뢰하고 사업구상이 가능하며 “정부가 지원하고도 가격폭락으로 욕먹는”, 경우에 따라서는 “지원해서 망하게 하는”- 지원을 안했으면 사업을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자기 부담 투자도 안했을텐데.... 하는 어느 농민의 정부에 대한 원망도 있는 현실에서 - 사례를 줄여 나갈수 있기 때문이다.
- 이러한 정책수행과정에서 도단위의 지방자치단체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민선도지사 입장에서는 가격관리(가격안정이라는 하향조정 이미지의 의미가 아니며 가격보장이라는 시장경제원리를 무시하는 의미가 아님) 정책이야 말로 중요한 사명감을 가지게 될 것이며 -최근에 재경원에서 물가관리를 지자체의 중요임무로 부가시킴으로 열심히 뛰고 있는 것이 사실- 지역의 농수축협과 민간유통업체, 물류센타 등과 함께 대응해 나간다면 항상 한발 늦게 개입하여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하는 전국단위의 가격관리(수급조절) 정책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개입이 가능하다.
- 물론 이러한 재원은 농안기금을 지자체에 저리(3%이하)로 지원하여 수급조절사업을 직접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면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3. 도단위 산지규격 표준화사업 추진

- 농산물유통의 혁신은 근본적으로 산지규격 표준화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임은 주지의 사실이며 가장 핵심적인 과제라고 생각한다.

- 따라서 강력한 산지구격, 표준화사업의 추진이 요구되고 있는데 도와 시군, 농수축협, 도매시장, 물류센터 등 지역농정주체의 총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이의 종합적인 조정은 도단위 지자체에서 담당해줘야 한다.
- 그러기 위해서는 “농산물 산지구격표준화사업”이라는 다소 포괄적인 사업메뉴를 마련하고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포장 관련사업(포장재와 디자인 개선), 파렛트 등 기자재 간이포장센터 등의 유통시설 등의 필요사업을 선택하여 총체적인 역량의 결집(협의, 상호협조)하에 추진할 수 있도록하며
- 농림부에서는 철저하게 산지표준화실적을 평가하고 획기적인 차등지원 제도를 시행해 나가야 한다.

4. 농특산물 상품개발사업 추진

- 농산물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은 상품이며 상품성을 얼마나 가지느냐에 따라서 부가가치가 결정된다.
따라서 상품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그의 주체는 농업인이지만 지자체에서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야 한다.
- 특히 도·시군단위에서는 자기지역 농산물을 특산물로 육성해 가기위해 도지사 추천제도, 판촉지원, 홍보직접추진 등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의욕을 농림부에서는 충분히 북돋아주고 지원해 나갈 필요가 있다.
- 따라서 상품개발사업도 지자체에 대한 공공사업메뉴로 책정하고 일정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야하며 사업과정에서는 한식연 등 전문기관의 지원체계도 함께 갖추어야 한다.
- 여기에서 특별히 농림부에 건의코자 하는 것은 지자체에 대한 지원은 거의 전부가 하드웨어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유통부분에 대하여 만큼은 소프트웨어적인 부문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5. 지역 농특산물 홍보기금 마련

- 상품개발사업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홍보분야이다.
특히 생산농민이 직접 홍보활동에 나서기는 자금력이나 방법, 시간적인 모든 측면에서 불가능하며 지극히 비효율적이다.
- 따라서 지자체의 자기지역 농특산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은 생산농민을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것이며 상품성 확보를 위한 지름길이다.
- 물론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일정 자격심사를 위해 전문가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우수상품에 대한 홍보지원을 하여야 할 것이다.
- 여기에서 농림부는 홍보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을 해주어야 한다. 즉 지자체의 자구노력을 위해 i) 매칭펀드로 도단위의 홍보기금을 지원 ii) 원산지 표시위반 과태료, 도매시장 수익금의 일부 등 가능한 기금재원을 마련 iii) 농수축협 등 지역단체와의 공동기금 조성방안 등을 검토하여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줘야 할 것이다.

6. 정보전달체계 마련

- 소비지와 생산지를 연결하는 정보망의 확대가 필요하며 PC통신 등의 컴퓨터를 활용하는 정보화가 가장 효율적이다.
- 그러나 아직 우리 농업인의 정보처리능력이 이에 뒤따라 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FAX망의 구축, 정보지 등을 활용하는 다양한 형태의 정보전달체계가 강구되어야 한다.
- 충청도에서 중부 농수축산물 물류센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사항으로 도내 유리온실 등 전천후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는 주요 작목반, 영농법인 등 200여명내외의 산지회원 FAX망 구축사업은 이러한 점에서 주목받을만 하며
- 이는 앞으로 농수축협 등과 함께 지자체가 공동 노력해 나가야 할 분야이고 농림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7. 간이포장센터 확대 보급

- 유통인프라를 구축함에 있어 가급적 공동활용을 유도하는 것은 투자 효율성 및 규모의 경제적 효과를 위해 불가피하지만 사업메뉴를 다양화하여 대.중.소 규모의 사업메뉴가 마련되어야 한다.
- 특히 포장센터의 경우 대규모법인, 농협 등에 대하여는 현재와 같은 대규모 포장센터 지원사업이 지속되어야 하겠지만 작목반 등의 소규모 협업체나 개별농가 단위에도 포장규격화를 위한 간이포장센터시설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러한 소규모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다만, 농촌중심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여건이 열악함을 고려하고 일정부분의 보조정책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3-2 농산물 유통혁신을 위한 제도개선

1. 개발제한구역내 농산물 물류센터 및 직판장 건립허용

□ 현 황

- 농산물 물류센터는 '94년 농안법 파동을 계기로 마련된 「농산물 유통 개혁 대책」의 핵심과제로 2004년까지 대도시 주변에 16개소를 건립할 계획임
- 농산물 직판장(농협의 하나로클럽 등)은 농안법 제57조의 3에 의거, 농수산물을 직접 구입하여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유통시설임
 - 파주 하나로클럽 ('97. 9월개장), 경기김포, 대구수성, 대구성서등에 건립 추진중

□ 문제점

- 농산물 물류센터 및 직판장은 생산자 수취가격과 제고와 소비자가 격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시설로
-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대도시 인근에 입지하여야 하나 높은 지가, 교통여건, 개발제한 등으로 인하여 입지선정이 어려우며
-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시도에서 시행하는 사업 (체육시설, 연구시설, 도매시장 등)과 같은 공공시설임에도 농산물 물류센터는 동 구역내에서 건립이 불가하여 사업추진이 지남

□ 건의사항

- 농수축임협등 생산자 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농산물 물류센터 및 직판장을 개발제한구역내에 건립이 가능토록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1항3호의 공익시설·공공용시설 및 공용시설 등에 포함

<개발제한구역내에서 건립이 가능하도록 허용한 사업의 사례>

- ◆ 경기 의왕시 및 경남 양산군 일원에 건설하는 화물유통촉진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화물터미널 및 부대시설
- ◆ 국제경기대회 개최에 대비하여 건설하는 체육시설(과천 승마경기장, 진해훈련장, 미사리 조정경기장, 연습용잔디축구시설 등)
- ◆ 부산광역시가 해운대구 석대동에 설치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
- ◆ 농협이 설치하는 미곡종합처리장

2. 농산물 물류센터 건립투자비 지원확대

□ 현황

- 농협은 현재 서울양재('98.1.15개장), 창동('98.5월개장), 청주('98.7월개장), 전주, 군위, 천안, 김해, 대전에 총3,025억원을 투자하여 농산물 물류센터를 건립 추진중
- 총투자액 내역
- 보조 1,320, 융자 677억원, 자부담 1,028

□ 문제점

- 농산물 물류센터는 새로운 형태의 직거래시장으로서 유통구조개선과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사회간접자본 성격의 공익시설이나 정부의 사업지원비율이 낮아 추가 사업추진이 지난한 실정
- 공영도매시장은 전액 정부 재정으로 건립

- ◆ 물류센터 운영에 적합한 인구, 상권, 교통등 종합적인 유통여건에 적합한 부지확보에 투자비 과다 소요
- 대도시 권역별로 물류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정부의 취지임
- ◆ 부지가격이 비싸 (서울창동 : 약628만원/평, 양재동 : 약800만원/평, 공시지가기준)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사업지원비율 비교>

| 물류센터 | 도매시장 | 공판장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지매입비의 50% 국고융자 ◆ 건축비의 50%국고 보조 (민간의 경우 건축비의 60% 융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의 50% 국고보조 (특·광역시는 30%보조), 잔여 사업비는 지방비 보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의 40% 국고보조, 20% 지방비 보조, 국고융자 20%, 자담 20%) |

□ 제도개선사항

- 농산물 물류센터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공공시설인 바 ① 도매시장처럼 전액 정부재정으로 건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거나 ② 사업지원비율을 농산물 공판장 지원수준으로 확대 필요

3. 표준규격화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 현황 및 문제점

- 엽근채류를 제외하고는 과류, 과채류, 하우스재배 엽채류 등은 포장화 정착단계
- 포장화율 30% 미만 부진품목
 - 양배추,딸기,무,밤,피만,깻잎,수박,배추,상추,시금치 등
- 도매시장의 표준규격화 제고방안 미흡
 - 상장수수료 비차등화 : 상장수수료 6% 수준 정율제 실시
 - 경매우선권 미부여와 하역료, 쓰레기유발부담금 등 징수
- 재선별 실시 : 도매시장내 재선별, 다듬기, 재포장행위 방치
- 경매투명성 미흡 : 등급 판정기능이 없고, 중도매인의 도소매 겸업

□ 개선 필요성

- 표준규격화의 정착없이는 물류표준화를 통한 물류비 절감과 유통효율성 제고가 불가능
- 소비지에서의 포장화 유도 전격 실시단계에 진입

□ 제도개선방안

- 포장재 국고보조의 확대 및 개선

| 구분 | 현행 | 개선 |
|---------|-----------------|-------------------------------------------------|
| 지원금액 | ('96) 22,382백만원 | ○ 50,000백만원 수준 |
| 지원대상 품목 | ('96) 36개 품목 | ○ 표준규격 출하부진 15개품목 집중 지원 |
| 지원대상 | 생산자조직,단체 | ○ 일정물량이상 공동출하,공동계산 실시 작목반, 조합, 포장센터, 물류센터 한정 |

- 상장수수료 차등화 : 표준규격화 수준, 경매단위에 따라 차등 적용
- (현행) 6% ⇒ (개선) 3~10%
- 비포장품에 대한 제재 강화
(1단계) : 쓰레기 유발부담금 부과, 재선별비용 부담
(2단계) : 일정기간 예고후 도매시장 반입금지
- 정액요율제 실시
- 경매건당 기본요율에 거래금액(물량)을 감안하여 가산요율 적용
- 도매시장내 재포장,선별 정선,다듬기 등 금지
- 도매시장평가제 보완
- 「표준규격화정착 기여도」 항목 신설 및 특별가중치 부여
- 각 도매법인의 표준규격품 적극적 출하유치 촉진
- 「가공산업 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제 12조 2항」의 우선 상장 조기 실시
- 우선적 하역·경매, 유리한 장소 배정 등

4. 신속·정확한 농산물 유통정보 수집 및 분산체계 구축

□ 현황

1) 유통정보의 수집

- 산지시세 : 전국 지역별 88개 농협 전산망을 통하여 연간 18개 품목의 농가 수취가격을 조사
- 소비자 시세 : 22개 농협공판장에서 163개 품목의 경락가를 조사

2) 유통정보의 분산

- 농림부 및 관련기관을 통한 분산
- 언론매체를 통한 분산
- 농협중앙회 사업장 및 회원농협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계통 분산
- 농협 ARS를 통한 전화 및 FAX로 대농민 가격정보 분산

□ 문제점

- 농산물 출하시 등급별 세분화 미흡으로 정보의 정확성에 한계
- 도매시장 전산화 미흡에 따른 Real-Time 분산에 어려움
- 단순 가격정보 제공에 따른 정보 효용의 한계성
- 유통정보 제공기관의 중복에 따른 전문성 결여

□ 농협추진대책

- 물류정보 표준화 구축 및 전산경매 방식의 조기 도입 추진
- 새벽시간에 TV 등을 통하여 정보를 분산 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농림부 및 타기관간 정보자료 공유로 초고속정보통신망 기반 마련
- 각 농업정보의 DB화로 공영도매시장간 종합정보 통신망 구축

□ 정부차원의 제도개선 사항

- 농가, 관련기관등에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한 전산설비 지원

- 유통정보 주체들 (농림부, 유통공사, 도매시장관리공사, 농수축협등) 간의 공개적인 정보교환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시스템 확립
- 정보 성격에 따른 분산주체의 명확화 (동일정보 중복분산에 따른 비효율성 제거)

5. 개발부담금 감면제도에 관한 제도개선

□ 개발부담금 감면제도 현황

- 관계법령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
- 감면대상 개발사업 (농협 사업의 경우)

| 구 분 | 조 항 | 감면대상사업 |
|------|------------------------|------------------------------------------------------------------------------------------------|
| 부과감면 | 법 제7조2항 시행령제5조2항·3항 | 농협이 시행하는 다음사업의 경우 50/100경감 - 택지개발·공업단지조성·도심지개발·관광단지·유통조성사업 - 양곡관리법 제22조에 의한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사업 |
| 부과제외 | 시행령제4조1항 규칙제3조의2 | 도시계획법에 의한 유통업무설비 설치사업중 농안법상의 농수산물집하장, 농수산물종합처리장 및 농수산물물류센터 설치사업 |

※ 사업시행 지역별 일정규모이하 개발사업의 경우 개발부담금 면제 (시행령 제4조)

□ 문제점

- 현행 개정법령하에서 농안법상의 유통시설과 미곡종합처리장을 제외한 산지가공공장, 저온저장고, 직판장 등의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사업은 개발부담금을 면제 또는 경감받을 수 없음

| | | |
|---------------------------|-------------------------------------------------------------------|-----------------------------------------------------------------------|
| 구 분 | 구법령 ('93. 6월, 8월개정이전) | 현행법령('93. 6월,8월개정이전) |
| 규정내용 (법 제7조, 령 제5조) | ○ 개발부담금 감면과 관련 농협(중앙회)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음(행정소송제기 등 논란발생) | ○ 농협(중앙회)이 시행하는 일정한 개발사업의 경우 개발부담금을 50/100 경감 |
| 판 례 | ○ 특별법(농협법제8조 ; 공과의 면제)우선 원칙을 적용하여 농협(중앙회)의 개발사업에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음 | ○ 농협법 제8조(공과의면제)보다 우선 적용(신법우선의 원칙)되므로 경감대상 사업이 아니면 개발부담금 감면이 불가(고등법원) |

□ 개선방향

- 농산물 판매시설, 저온저장고, 가공공장 등 생산자단체의 농산물유통·가공시설에 대한 개발부담금이 경감될 수 있도록 추진
- 경감 또는 부과제외 시설대상에 전 농산물유통·가공시설을 열거하여 포함시킬 필요 있음(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

6. 농산물 유통·가공시설에 대한 농사용 전기료 적용확대

□ 현 황

- 전기료 부과기준

| 전력구분 | 적용대상시설 | 기본전기료 (원/1kw) | 비 고 |
|---------------|-------------------------------------------------|------------------|------------------|
| 농사용 (병) | ○ 농산물 저온저장고 ○ RPC 시설중 건조·보관시설 | 950원 | 농산물 건조수용등에 대한 특례 |
| 산업용 (13여종) | ○ 기타 농산물 유통·가공시설 (RPC가공시설, 청과물종합처리장, 물류센터 등) | 3,810~ 3,070 | 농사용의 3.2 ~ 4.0배 |

○ '96 전기료 부과실례

| 유통가공 시설명 | 실제부과내역 (연간) | | 농사용적용시 부과 추정액(B) | 대 비 | |
|--------------|-------------|--------|---------------------|---------|---------|
| | 전기료적용 | 금액(A) | | 차액(A-B) | 비율(A대비) |
| 청산농협 김치공장 | 산업용 | 47,850 | 18,125 | 29,725 | 62.1 |
| 양촌농협 RPC | 계 | 22,274 | 13,007 | 9,267 | 41.6 |
| | 산업용(도정) | 14,917 | 5,650 | 9,267 | 62.1 |
| | 농사용(건조) | 7,357 | 7,357 | - | - |

□ 문제점

- 제품생산원가 증가로 가공공장 경영 악화와 사업 경쟁력 약화
- 원가증가요인이 소비자 가격인상으로 전환됨

□ 개선방안

- 농산물 유통·가공시설에 대한 농사용 전기료 확대 적용
- 한전의 전기공급규정 개정 필요

□ 농사용 전기료 적용확대에 대한 정부의 의견

- 농사용 전기요금이 원가의 44% 수준에 공급되고 있고 이를 확대할 경우 타분야와 형평성 및 한전 재정부담등으로 어려움 있음
- 농사용요금은 본래 취지상 농수산물의 직접생산에 소요되는 전력에 한 적용함이 원칙임

※ 일본의 경우 관개용에 한하여 농사용 요금을 적용하고 있음

7. 우수 생산자조직 위주로 자금 집중 지원

□ 추진현황

- 생산자조직에 지원되는 유통개선 사업자 선정시 사전평가후 지원
 - '96평가사업 : 포장재보조, 규격출하사업, 매취사업, 포장센터건설
 - '97 평가사업 : 간이집하장, 품목별 생산자조직 육성
- 유통관련 자금이 우수생산자 조직에게 우선지원되도록 통합실시요령 개정
 - '96 ; 8개사업 (3,467억원), '97 ; 12개사업 (6,236억원) 지원

□ 문제점

- 생산자조직(단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평가체제 미흡
 -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회원농협 등 다양한 생산자 조직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제 미흡
- 작목반에 대한 평가는 농협과 농검으로 이원화되어 평가중복과 평가상위로 조직 및 농가의 혼란 초래

<농협과 농검의 작목반 평가 비교>

| 구 분 | 농 협 | 농 검 |
|----------------|-------------------------------------------------------------------------------------------------|------------------------------------------------------------------------------------------------|
| ○ 평가목적 | 작목반 관리·육성 | 포장재보조, 공동규격출하용자, 매취사업 사업자지정 |
| ○ 평가내용 | 조직관리, 공동사업, 규격출하 정도 | 공동규격 출하정도 |
| ○ 평가주체 | 군지부 평가위원회 (농검관계관, 행정·지도소 관계관) | 농검 공무원(농협과 합동평가) |
| ○ 평가대상 및 작목반분류 | 전작목반 - 선 진 : 6,297 (26%) - 일 반 : 6,479 (27%) - 기 초 : 11,315 (47%) 계 : 24,091 (100%) | 사업신청 작목반 - 최우수 : 273 (5%) - 우 수 : 4,361 (75%) - 일 반 : 1,185 (20%) 계 : 5,819 (100%) |
| ○ 관 리 | 전산 관리 | 수작업 관리 |

○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 결여

- 평가대상 조직수에 비하여 평가인력 부족으로 평가의 객관성 결여
 - 농검 : 출장소당 101개조직 평가 (사업신청자만 평가)
 - 유통공사 : 인력부족으로 현지확인 평가보다 서류평가에 의존
- 평가내용이 현실적으로 확인곤란하여 평가자의 주관에 좌우
 - 동일등급 포장여부, 규격출하량 비율등은 현실적으로 확인 곤란
 - '96 농검평가 결과 최우수조직 : (무안군) 90%, (함평군) 10%
- 향후 대량유통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조직규모의 광역화가 필요
하나 조직의 규모는 평가항목에 미반영

○ 평가결과 우수생산자 조직에 대한 우대 미흡

- 많은조직과 품목에 지원하다보니 지원규모가 적고 지원조건도 유리 하지않아 평가에 대한 유인책이 적음
 - 포장재 보조 : 7,788개, 조직당 1,433천원 보조 (농가당 41천원)
 - '97공동규격출하용자(연 5%) : 8,518개, 조직당19백만원(농가당 2,460천원)

· 매취사업용자(연5%) : 199개, 조합당 207백만원, 법인당 143백만원

○ 회원농협을 작목반·영농조합법인등 기초조직과 동일선상에서 취급

- 회원농협은 기초 생산자조직의 육성·지원을 주관하는 생산자단체인 반면 작목반·영농조합법인은 직접 생산·출하하는 실천조직임
- 영농조합법인을 조직규모 및 사업역량 면에서 회원농협과 동일한 위치에서 평가함은 불합리

○ 유통공사는 계통조직 부재로 전국에 산재해 있는 생산자조직을 평가하기는 현실적으로 지난

- 생산자조직 평가는 해당품목의 농가소득 증대와 수급 및 가격안정 사업과 연계 추진되어야 하나 유통공사 주관시 이러한 기능 발휘가 어려움

□ 제도개선 사항

<생산자 조직에 대한 평가>

○ 1차평가 (생산자조직 자체 평가)

- 농협 계통조직 평가는 농림부 평가계획에 따라 농협중앙회가 주관하여 평가후 평가결과 농림부 제출

- 2차평가 (현지확인 평가)
 - 농림부, 농협, 유통공사 합동 표본평가
- 평가·분석에 대한 검증 및 지원조건 차별화 심의
 - 평가위원회 (농림부, 농협 등 생산자단체, 유통공사)에서 결정

<생산자 조직 자금지원제도 개선>

- 현 기관별 지원규모 ('97)

| 구 분 | 농 협 | 유통공사 | 임 협 | 계 |
|-----|---------|---------|-----------|---------|
| 품 목 | 마늘등 14개 | 참다래, 화훼 | 밤, 표고, 대추 | 15개 |
| 금 액 | 795억원 | 305억원 | 63억원 | 1,030억원 |

- 문제점
 - 밤, 참다래, 버섯(표고)전국협의회는 농협을 통한 지원이 없음
 - 화훼는 농협의 생산자조직 수에 비하여 지원금액 과소
(농협 : 43개조합 20억원, 유통공사 28개조직 280억원)
- 개선안
 - 단기적으로는 생산자조직 구성수에 비례하여 기관별로 균등지원
 - 장기적으로는 생산자조직 전담육성기관으로 지원 일원화

<작목반 평가기관의 통합 >

- 작목반은 농협내부 조직으로서 농협의 육성계획에 따라 평가·운영 되어야 할 것임 (「작목반 육성 및 지도지원 지침」에 의거 평가)
- 농검의 평가는 농안기금 지원에 대한 규격출하 이행여부의 객관적 평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농협의 평가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음
- 금후 작목반 육성·평가 및 지도·지원은 농협 고유의 역할뿐 아니라 평가의 일관성 유지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농협이 주도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임

3-3 생산자단체와 민간의 지원조건 완화

1. 현 황

□ 현행제도

- RPC, 농수산물물류센타, 농산물포장센타, 축산물종합처리장 등의 정부 지원시 금리나 지원조건 등이 민간유통업체보다생산자(단체)에 유리함

□ 지원조건 현황

- 미곡종합처리장 : 농특회계

(단위:%)

| 사업자 | 국고보조 | 국고융자 | 자부담 | 융자조건 |
|--------|------|------|-----|-----------------|
| 생산자단체 | 50 | 30 | 20 | 연리5%, 3년거치 7년상환 |
| 민간유통업체 | - | 80 | 20 | " , " |

- 농수산물물류센타 : 농특세 전입금
 - 생산자단체 : 건설공사비의 50%국고보조, 부지구입비의 50%국고융자
 - 융자조건 : 연리 3%, 5년거치 10년상환
 - 민간유통업체 : 건설공사비(부지구입비 제외)의 60%국고융자
 - 융자조건 : 연리 5%, 5년거치 10년상환
- 농산물포장센타 : 농특세 전입금
 - 지원대상 : 생산자단체 및 민간유통인(법인)
 - 지원조건 : 국고보조 30%, 국고융자 30%, 지방비 20%, 자부담 20%
 - 융자조건 : 연리 5%(민간 8%), 3년거치 7년상환

○ 축산물종합처리장 : 축발기금

| 사업자 | 도축장 | 오·폐수시설 | 육가공시설 | 용자조건 |
|--------|-------|--------|-------|------------------|
| 생산자단체 | 용자80% | 용자100% | 용자70% | 연리3%, 5년거치 10년상환 |
| 민간유통업체 | " | " | " | 연리5%, " |

○ 계란가공시설 및 운영 : 축발기금

- 지원대상 : 생산자단체, 산란계계열업체, 계란가공업체, 농가 등
- 지원규모 및 조건
 - 지원규모 : 총 사업비의 70%이내 용자
 - 지원조건 : 5년거치 10년상환, 연리 5%(계란가공업체 8%)

○ 한우전문판매점 설치 운영 : 축발기금

- 지원대상 : 축협, (주)축산유통, 한냉(주), 농협, 축산관련협회, 한우농가 협업체 및 영농조합법인, 백화점협회, 일반식육판매업소 등
- 지원조건 : 연간 5%(민간 8%),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

2. 추진실적

○ 미곡종합처리장(RPC)

| | '95까지 | '96 | '97 | 계 |
|-----|-------|-----|-----|-----|
| 민간 | 58 | 15 | 15 | 88 |
| 생산자 | 129 | 18 | 18 | 165 |
| 계 | 187 | 33 | 33 | 253 |

○ 농산물 물류센터

| | '95까지 | '96 | '97 | 계 |
|-----|-------|-----|-----|----|
| 민간 | - | 1 | - | 1 |
| 생산자 | 4 | 3 | 2 | 9 |
| 계 | 4 | 4 | 2 | 10 |

○ 농산물포장센터

| | '95까지 | '96 | '97 | 계 |
|-----|-------|-----|-----|----|
| 민 간 | - | - | - | - |
| 생산자 | 21 | 28 | 29 | 78 |
| 계 | 21 | 28 | 29 | 78 |

○ 축산물종합처리장

| | '95까지 | '96 | '97 | 계 |
|-----|-------|-----|-----|----|
| 민 간 | 4 | - | 6 | 10 |
| 생산자 | - | - | - | - |
| 계 | 4 | - | 6 | 10 |

○ 계란가공시설

| | '95까지 | '96 | '97 | 계 |
|-----|-------|-----|-----|---|
| 민 간 | 2 | 2 | 1 | 5 |
| 생산자 | 1 | - | - | 1 |
| 계 | 3 | 2 | 1 | 6 |

○ 한우전문판매점

| | '95까지 | '96 | '97 | 계 |
|-----|-------|-----|-----|-----|
| 민 간 | 134 | 44 | 49 | 227 |
| 생산자 | 211 | 61 | 49 | 321 |
| 계 | 345 | 105 | 98 | 548 |

3. 개선 필요성

□ 문제점

- 민간유통업체와 생산자단체 등과의 지원조건이 상이하여 민간유통업체가 불리한 상황에서 생산자단체와 경쟁을 함으로써 불만의 소리가 높음
-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여 경쟁력 없는 생산자 단체가 보조금을 받기 위해 사업신청하는 사례가 발생

□ 여건변화

- 생산자단체에 대한 경제사업과 신용사업 분리 추진
- 생산자단체의 산지유통개선사업 집중육성

4. 개선방안

□ 대안제시

| | 제1안 (전부문 생산자와 민간지원 동일) | 제2안 (소비지유통지원 부문만 동일) |
|-----|------------------------------------------------------------------------------------------------|-------------------------------------------------------------------------------------|
| 장 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논리에 의거 수행 ○ 민간이 수행시 효율적인 부문도 있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지 유통은 농업윤리보다는 시장논리에 의거 수행이 타당 |
| 단 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자 우대가 없음 ○ 생산자의 사기저하로 농업 위축 우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자단체의 반발 예상 |

□ 개선(안)

- 산지유통(RPC, 포장센터, 축산물종합처리장 등) 부문은 단위농협 및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단체를 민간유통업체보다 우대지원하여 산지유통개선 사업을 생산자단체 위주로 개선하고 민간유통업체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옳바름
- 소비지 유통(물류센터, 한우전문판매점 설치 및 운영 등) 부문은 자율적인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하여 생산자(단체)와 민간유통업체의 지원조건을 동일시 추진
- 제2안에 따라 소비지 유통부문은 지원조건을 동일시 하고, 산지유통 부문은 생산자(단체) 우대 추진

5. 추진계획

□ 추진방향

- 물류센터 : 추가건설사업은 민간유통업체 위주로 지원하고, 지원조건차별도 철폐
 - 물류센터 개장성과를 보아 중·소형물류센터 추가건설 추진
- 한우전문판매점 : 생산자단체와 같은 금리로 조정

□ 추진일정

- '98. 4 : 추진방향 확정
- '98. 5 : 정책심의회 상정
- '98. 6 : 농림부(안) 확정
- '98. 7 : 재정경제부, 예산청과 협의
- '98.11 : '99년 예산확정

IV. 물류체계 개선

1. 규격농산물 출하체계구축

- 1-1 농산물 표준출하규격 정비 및 보급확대방안(농수산물유통공사)
- 1-2 농산물 포장규격화 및 브랜드화 촉진방안(한국식품개발연구원)

2. 농산물 운송효율화

- 2-1 파렛트풀시스템 구축으로 파렛트출하 확대(파렛트협회)
- 2-2 농산물 유통시설의 물류시스템 개조·지원(농수산물유통공사)
- 2-3 GIS, GPS를 활용한 농산물 운송효율화 방안

3. 농산물 콜드체인시스템 구축

- 3-1 콜드체인시스템 구축방안(한국식품개발연구원)

4. 전자 상거래 구축

- 4-1 전자상거래에 의한 직거래 확대방안
- 4-2 유통정보 개선방안

1-1 농산물표준출하규격 정비 및 보급확대 방안

(농수산물유통공사)

1. 현 황

□ 현행제도

-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 관한법률 제12조에 의거 농산물의 표준출하규격(포장규격+등급규격) 제정·고시
 - 제정·고시권자 : 농산물(농검소장), 임산물(산림청장)
 - 제·개정절차 : 기초자료조사 → 규격(안) 작성 → 의견조회 → 심의회심의 → 제정 및 고시

□ 추진실적

- 농산물표준출하규격 조기정착을 위하여 '84년부터 농산물 포장재비 지원
 - 농산물규격출하사업(보조)과 공동규격출하사업(음자) 병행 실시
 - 사과, 배, 감귤, 오이 등 대부분의 농산물은 포장출하되고 있으나 무, 배추, 파 등 일부 채소류의 포장화율 저조
 - 포장재비 지원(국고) : ('97) 131억원 → ('98) 144억원
- 산지유통시설 확충으로 대량의 규격농산물 출하기반 구축추진
 - 간이집하장, 포장센터, 미곡종합처리장 건설 지원
- ULS통칙 제정에 따라 농산물포장규격 개정실시
 - 기제정된 124개 품목중 86개 품목에 대하여 ULS에 정합되게 제·개정 완료
 - 소비자형 소·분포장 및 개방형포장 등을 신규 설정

2. 개선필요성

□ 문제점

- '97년부터 농산물표준출하규격을 일관수송체계와 연계하여 개정하고 있으나 일부 품목 미개정 및 보완 필요
 - 기제정 운용되고 있는 124개품목중 86개품목 개정완료
- 농산물표준출하규격을 제정 시행하고 있으나 출하자와 유통종사자의 참여 미흡으로 규격출하 부진
- 산지기반 시설이 취약하고 농가 출하상태 불량으로 도매시장내 재선별 포장
 - 유통비용 추가발생 및 불공정거래의 원인
- 일관운송체계 미정착, 포장화율 저조 등 물류시스템 낙후로 물류효율저하 및 물류비지출 과다
 - 물류비(GDP대비) : 한국 15.7%, 미국10.5%

□ 여건변화

- '95년 ULS통칙으로 T-11형을 국가표준파렛트로 정함에 따라 농산물포장규격 정비없이 일관수송체계 구축 불가능
- 국민소득 증가에 따라 소비성향과 구매패턴이 급속하게 변화
 - 소비수준 향상, 핵가족화, 여성 취업증가 등으로 소량화된 상품과 간편한 식료품 및 가공식품 구입의 증가
- 물류비절감이 농산물 경쟁력 제고의 핵심과제로 대두
 - 대량의 규격농산물 출하, 파렛트적재·하역기계화 추진

3. 개선방안

□ 개선방안

- 농산물표준출하규격 개정
 - 현행 규격을 표준형파렛트(1100×1100mm)에 정합되게 포장규격 지속정비

- 규격포장출하 촉진을 위한 포장재 구입자금 지원
- 포장재비 절감과 환경친화적인 범용포장재 개발
- 물류표준화 교육·홍보 강화

□ 외국의 사례

- 주요 선진국의 표준출하규격은 정부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으나 국가별 유통여건에 따라 적용방식은 차이가 있음
 - 미 국 : 연방정부규격과 주정부규격을 구분하여 사용
 - 유 럽 : EU 공통의 표준출하규격 사용
 - 일 본 : 정부의 출하규격 보다 현(縣)규격을 사용 함으로써 출하지역 마다 규격이 다양함

□ 우리의 여건

- 기 고시된 정부 표준출하규격은 T-11형 파렛트 적재효율이 낮아 단위화물적재시스템(Unit Road System) 구축이 어려움
- 현행 표준출하규격집은 농협 및 관공서 위주로 보급되어 실수요자의 접근이 용이치 않고 표준출하규격에 대한 교육, 홍보 미흡
- 표준출하규격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미흡으로 표준규격에 대한 인식 부족 → 골판지상자 출하를 표준규격출하로 인식

4. 추진 계획

□ 추진방향

- 농산물 포장재규격을 표준형 파렛트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일관운송체계 구축 기반 제공
 - 주요 도매시장의 표준출하규격품 출하실태 파악
- 규격포장재비 지원확대로 표준출하규격 조기정착 유도
- 반영구적 사용이 가능한 수송용 범용포장상자 개발로 물류비 절감
 - 수송용 범용상자에 적합한 소포장용 포장재 개발
- 표준출하규격집 제작·배포 및 홍보 강화

□ 세부 추진계획

가. 농산물 표준출하규격 정비

< 농산물 표준규격 개정 >

○ 일관운송용 농산물 표준출하규격 개정 대상품목 현황

- 농산물 표준출하규격 제정 대상 : 124품목
 - 표준규격 검토완료 및 고시 : 86품목
 - 정비대상 품목 : 38품목
- 부류별 검토 품목수

| | | | | | | |
|-----|-----|-----|-----|-----|----|----|
| 부 류 | 과실류 | 과채류 | 엽채류 | 임산물 | 기타 | 계 |
| 품목수 | 11 | 4 | 12 | 8 | 3 | 38 |

○ 추진방안

- 관계기관 전문가로 표준출하규격 개정작업반 구성 추진
- 표준출하규격 유통실태 파악
 - 조사 대상 : 도매시장에 거래되는 사과등 주요농산물
 - 조사결과 활용 :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표준출하규격품 유통실태 파악으로 유통정책자료로 활용

< 농산물 등급규격 개정 >

○ 농산물 등급규격 제정 현황

| | | | | | |
|--------|-------|-----|-----|-----|-----|
| 계 | '93까지 | '94 | '95 | '96 | '97 |
| 124 품목 | 35 | 46 | 19 | 15 | 9 |

○ 추진 방향

- 등급규격 4단계(특, 상, 중, 하)를 3단계(특, 상, 보통)로 조정
- 크기위주 규격을 품위와 크기로 이원화
- 출하량이 많고 유통품질과 차이가 있는 것부터 연차적으로 보완

○ 추진 계획

- '98년 : 사과, 배 등 5종
- '99년 이후 : 과실류, 과채류 등으로 확대 개정

나. 농산물 규격포장재비 지원확대 및 지원방식 개선

- 규격출하 농산물 포장재비 지원금액 확대
- 포장재비 지원방식 개선으로 투자효율 제고
 - 정부고시규격외 사용할 때 지원중단
 - 생산자조직을 평가하여 우수조직 우선지원으로 경쟁유발
 - 보조사업과 융자사업 연계지원으로 효율성 제고

다. 수송용 범용 포장방식 개발

- 추진방향
 - 범용 포장용기를 이용한 농산물 포장방법 개발
 - 수송용 범용 포장상자에 적합한 소포장 개발
- 대상품목
 - '97년 검토 품목중 범용 포장상자 이용이 가능한 품목 우선검토
 - 양파, 마늘, 부추, 열무, 표고버섯 등
 - '98년 제·개정 품목으로 확대 실시
- 추진방안
 - 표준출하규격 제·개정 추진일정과 병행 실시

라. 농산물표준출하규격 보급 및 홍보실시

- 표준출하규격집을 다양하게 제작 보급
 - 현행 총람식 규격집에서 부류별, 품목별, 보급대상에 맞게 다양화
 - 원색화보 형태로 제작하여 이용자의 활용도 제고
- 교육 및 홍보 강화
 - 유통관련 종사자교육, 홍보 강화
 - 농어민신문, 농축수산신문 등 물류관련 매체 활용홍보
 - 정보통신 매체를 통한 집중 홍보로 이용자의 접근성 증진

5. 추진과제 및 일정

□ 예산이나 기금 확보

- 농어촌특별회계,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에 반영

□ 추진일정

- 표준출하규격 개정 : '98년
- 수송용 범용 포장방법 개발 : '98년

6. 투융자 계획

가. 포장재 구입자금 지원

(단위: 백만원, 백만매)

| 구 분 | '97실적 | '98예산 | '99요구안 | '00-'02 | '03-'04 | 계 |
|-------|---------|---------|---------|-----------|-----------|-----------|
| 사 업 량 | 135 | 140 | 240 | 1,772 | 1,716 | 4,003 |
| 국고보조 | 13,122 | 14,364 | 43,200 | 357,560 | 386,520 | 814,766 |
| 국고융자 | 165,250 | 183,446 | 201,790 | 734,700 | 620,382 | 1,905,568 |
| 지 방 비 | 13,122 | 14,364 | 43,200 | 357,560 | 386,520 | 814,766 |
| 자 부 담 | 39,366 | 43,092 | 129,600 | 1,072,680 | 1,159,560 | 2,444,298 |

* 융자금액은 규격출하촉진자금으로 연차적으로 10%씩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

< 산출내역 >

(단위: 백만원, 백만매)

| 구 분 | '99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
| 골판지상자 필요량 | 800 | 840 | 880 | 920 | 960 | 1,000 |
| 사업량(예상포장율) | 240(30%) | 420(50%) | 616(70%) | 736(80%) | 816(85%) | 900(90%) |
| 기준단가(원/매) | 900 | 950 | 1,000 | 1,050 | 1,100 | 1,150 |
| 지원금액 | 43,200 | 79,800 | 123,200 | 154,560 | 179,520 | 207,000 |

* 지원비율 : 보조 20% 적용

나. 표준출하규격집 제작비 : 300백만원

- 부류별(4개 부류)규격 5,000부, 품목별(124 품목)규격 10,000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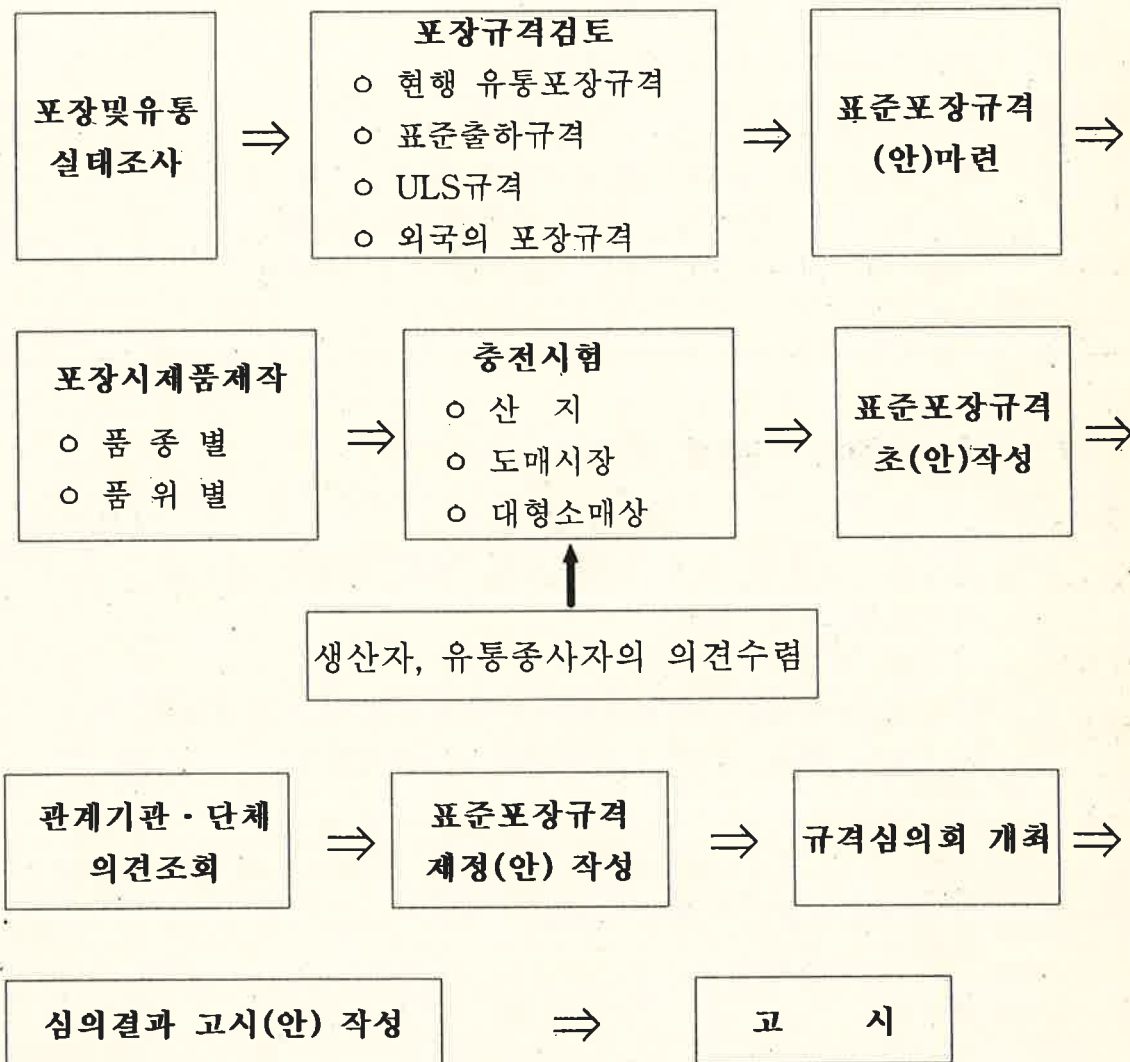
< 참고자료 >

1. 농산물 표준출하규격 현황

1. 제정 목적

농산물의 상품성제고, 유통능률 향상과 공정한 거래여건 조성을 위하여 농산물의 품질, 크기, 쓰임새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된 농산물 표준출하규격(포장규격+등급규격)을 제정 시행

2. 추진체계도



3. 농산물 표준출하규격 제정 현황

□ 제정대상 품목 : 124개 품목

○ 제정 완료('97) : 86개 품목

| 부 류 | 대 상 품 목 | 품목수 |
|-------|-------------------------------------------------------------------------------------------------------------------------------------------|-----|
| 과실류 | 사과, 배, 단감, 감귤, 금감, 복숭아, 자두, 포도, 참다래 | 9 |
| 과채류 | 건고추, 풋고추, 파리고추, 홍고추, 오이, 호박, 가지, 피만 토마토, 방울토마토, 참외, 딸기, 수박, 조롱수박, 메론만 | 15 |
| 엽·근채류 | 양파, 마늘, 파, 무, 열무, 배추, 얼갈이배추, 양배추, 당근, 시금치, 상추, 깻잎, 부추, 생강, 연근, 우엉, 쑥갓, 미나리, 양미나리(샐러리), 신선초, 두릅, 알타리무, 삼엽채, 아욱, 근대, 엔디브, 치커리, 청경채 | 28 |
| 서 류 | 감자, 고구마 | 2 |
| 특작류 | 참깨, 피땅콩, 알땅콩, 들깨 | 4 |
| 버섯류 | 느타리버섯, 양송이버섯, 팽이버섯 | 3 |
| 임산물 | 마른취나물, 생표고버섯, 건대추, 밤 | 4 |
| 곡 류 | 쌀, 찰쌀, 현미, 보리쌀, 눌린보리쌀, 할맥, 좁쌀, 울무쌀, 콩, 팥, 녹두, 수수쌀, 기장쌀, 찰옥수수쌀, 옥수수 | 15 |
| 화훼류 | 국화, 카네이션, 장미, 백합, 글라디올라스, 거베라 | 6 |
| 계 | - | 78 |

○ 검토 대상 ('98) : 38개 품목

| 부 류 | 대 상 품 목 | 품목수 |
|-----|-------------------------------------------------------------------|-----|
| 과실류 | 홍시감, 뚝은감, 유자, 모과, 석류, 앵두, 양앵두, 무화과, 파인애플, 매실, 살구 | 11 |
| 과채류 | 완두콩, 풋옥수수, 풋콩 | 3 |
| 엽채류 | 꽃양배추, 녹색꽃양배추, 마늘종, 향미나리, 붉은꽃양배추, 고구마순, 케일, 콩나물, 갓, 더덕, 마, 생도라지 | 12 |
| 버섯류 | 영지버섯 | 1 |
| 임산물 | 은행, 간장, 호두, 마른표고버섯, 꽃감, 생대추, 마른고사리, 생취나물 | 8 |
| 화훼류 | 아이리스, 튜립, | 2 |
| 곡 류 | 메밀 | 1 |
| 계 | - | 38 |

2. 주요농산물 표준출하규격 현황('97 개정)

| 품목 | 중량(kg) | 기존표준출하규격 | | | 표준출하규격 | | | |
|----|----------|----------------|----------------|--------|---------|------------------------------------|-----------|----------------------------------|
| | | 길이×너비×높이 | 포장형태 | 적재율(%) | ULS NO | 가로×세로×높이 | 적재율(%) | 포장형태 |
| 사과 | 5 | 314×235×170±10 | 골판지(손잡이) | 97.6 | 54 | 314×235×170±10 | 97.6 | 0206+0216 (손잡이) |
| | | 550×366×110±10 | 골판지(개방형) | 99.8 | 25 | 550×366×110±10 | 99.8 | 0301, 0435 1단 |
| | 10 | 550×366×190±10 | 골판지 (2단난자) | 99.8 | 25 | 550×366×190±10 | 99.8 | 0201, 0435 2단 |
| | 15 | 550×366×280±10 | 골판지 (3단난자) | 99.8 | 25 | 550×366×280±10 | 99.8 | 0201, 3단 |
| | 5 | 330×120×310±10 | 미장골판지 | 88.0 | - | 폐 지 | - | - |
| 배 | 5 | 314×235×230±20 | 골판지(손잡이) | 97.6 | 54 | 314×235×230 | 97.6 | 0206+0216 (손잡이) |
| | | - | - | - | 39 | 440×330×130±10 | 96.0 | 0301 |
| | 10 | 458×320×240±10 | 골판지 (2단난자) | 96.9 | 39 | 440×330×240±10 | 96.0 | 0201, 2단 |
| | 15 | 550×366×240±10 | 골판지 (3단난자) | 99.8 | 25 | 550×366×240±10 | 99.8 | 0201, 2단 |
| | 5 | 330×125×320±10 | 미장골판지 | 92.0 | - | 폐 지 | - | - |
| 단감 | 5 | 330×165×320±20 | 미장골판지 (손잡이) | 81.0 | - | 폐 지 | - | - |
| | | 314×235×160±10 | 골판지 | 97.6 | 47 | 440×330×100±20 | 99.8 | 0435 |
| | 10 | 440×330×160±10 | 골판지 | 96.0 | 39 | 440×330×160±20 | 96.0 | 0201 |
| | 15 | 440×330×230±10 | 골판지 | 96.0 | 39 | 440×330×230±20 | 96.0 | 0201 |
| 감귤 | 5 | 366×275×130±10 | 골판지(씩운형) | 99.8 | 47 | 366×275×120±10 | 99.8 | 0301 |
| | | 340×145×200±20 | 미장골판지 | 89.6 | - | 폐 지 | - | - |
| | 10 | 366×275×200±10 | 골판지(봉합형) | 99.8 | 39 | 440×330×160±10 | 96.0 | 0201 |
| | 15 | 440×330×230±10 | 골판지(봉합형) | 96.0 | 39 | 440×330×225±10 | 96.0 | 0201 |
| 금감 | 4 (1) | - - | - - | - - | 51 - | 330×220×140±10 (161×105×130±10) | 96.0 - | 0206+0216 (손잡이) 0216+윗날개제거 |
| | 10 | 366×275×210±10 | 골판지(봉합형) | 99.8 | 47 | 366×275×220±10 | 99.8 | 0201 |

| 품목 | 중량 (kg) | 기존표준출하규격 | | | 표준출하규격 | | | |
|------------|----------------|----------------|-------------------|------------|-----------|----------------------------|------------|-----------------|
| | | 길이×너비×높이 | 포장형태 | 적재율 (%) | ULS NO | 가로×세로×높이 | 적재율 (%) | 포장형태 |
| 복숭아 | 5 | 290×170×260±20 | 손잡이 | 98.0 | - | 폐 지 | - | - |
| | | 471×314×100±10 | 0201,0301 0435 | 98.0 | 33 | 471×314×100±10 | 97.8 | 0435 |
| | 10 | 471×314×210±10 | 0201 | 98.0 | 33 | 471×314×210±10 | 97.8 | 0201 |
| | 15 | 471×314×290±10 | 0201 | 98.0 | 33 | 471×314×290±10 | 97.8 | 0201 |
| 천 도 복숭아 | 10 | - | - | - | 39 | 440×330×180±10 | 96.0 | 0201 |
| | 15 | - | - | - | 33 | 440×330×225±10 | 96.0 | 0201 |
| 자두 | 5 | 300×150×325±20 | 손잡이 | 89.0 | - | 폐 지 | - | - |
| | 10 | 315×315×345±10 | 0201 | 74.0 | 25 | 550×366×120±10 | 99.8 | 0435형 |
| | 15 | 380×310×275±10 | 0201 | 89.0 | 25 | 550×366×180±10 | 99.8 | 0435형 |
| | 15 | 540×330×310±20 | 목상자 | 88.0 | - | 폐 지 | - | - |
| 포 도 | 1 | - | - | - | - | 260×125×115±10 | - | E골,0215 |
| | 2 | 265×165×140±20 | 손잡이 | 94.0 | - | 폐 지 | - | - |
| | 4 | 265×165×270±20 | 손잡이 | 94.0 | 56 | 300×250×170±10 | 99.2 | 0215 (거봉용) |
| | 5 | 350×275×235±10 | 0201 | 95.0 | 47 | 366×275×185±10 | 99.8 | 0435 |
| | 8 | - | - | - | 26 | 550×275×250±10 (1kg×8개) | 99.8 | B+E골,0201 |
| | 10 | 488×350×280±10 | 0201 | 93.0 | 25 | 550×366×190±10 | 99.8 | 0435 |
| | 15 | 495×385×320±10 | 0201 | 63.0 | - | 폐 지 | - | - |
| | 10 | 520×280×250±10 | 목상자 | 96.0 | - | 폐 지 | - | - |
| 참다래 | 3 | - | - | - | 39 | 440×330×70±10 | 96.0 | 0425(산 물) |
| | 6 | - | - | - | 39 | 440×330×120±10 | 96.0 | 0435(분포장) |
| | (1) | - | - | - | - | (151×137×110) | - | 0216(윗날개 제거) |
| | 10 | 350×275×265±10 | 이중양면 | 95.0 | 39 | 440×330×170±10 | 96.0 | 0201, 0435 |
| 5 | 350×275×130±10 | 양면골판지 | 95.0 | - | 폐 지 | - | - | |

| 품 목 | 중량 (kg) | 기존표준출하규격 | | | 표준출하규격 | | | |
|----------|------------|-----------------|------|------------|-----------|-------------------|------------|------|
| | | 가로×세로×높이 | 포장형태 | 적재율 (%) | ULS NO | 가로×세로×높이 | 적재율 (%) | 포장형태 |
| 건고추 | 6 | - | - | - | - | 950±30×650×0.03 | 100 | P.E |
| | 15 | 1200±30×750 | P.P | - | - | 1,470±30×700 | - | P.P |
| | 3 | 700±30×500×0.03 | P.E | - | - | (700±30×500×0.03) | 100 | P.E |
| | 3 | 750±30×500 | 그물망 | - | - | 폐 지 | - | - |
| | 10 | 1000±30×700 | P.P | - | - | 폐 지 | - | - |
| | 20 | 1250±30×850 | P.P | - | - | 폐 지 | - | - |
| | 40 | 1400±30×950 | P.P | - | - | 폐 지 | - | - |
| 풋고추 | 5 | 366×275×200±10 | 0201 | 99.8 | 39 | 440×330×145±20 | 96.0 | 0201 |
| | 10 | 471×314×270±10 | 0201 | 97.8 | 39 | 440×330×275±20 | 96.0 | 0201 |
| | 3 | 700±30×500×0.03 | P.E | - | - | 폐 지 | - | - |
| | 10 | 850±30×500×0.05 | P.E | - | - | 폐 지 | - | - |
| | 20 | 1100±30×600×0.1 | P.E | - | - | 폐 지 | - | - |
| | | 550×366×370±10 | 0201 | 99.8 | - | 폐 지 | - | - |
| 파리 고추 | 4 | - | - | - | 39 | 440×330×140±10 | 96.0 | 0201 |
| | 5 | 400×250×270±10 | 0201 | 83.0 | - | 폐 지 | - | - |
| | 10 | 550×365×270±10 | 0201 | 99.8 | 39 | 440×330×310±10 | 96.0 | 0201 |
| | 20 | 640×455×350±10 | 0201 | 96.0 | - | 폐 지 | - | - |
| | 5 | 650±30×400×0.03 | PE | - | - | 폐 지 | - | - |
| | 10 | 750±30×500×0.05 | PE | - | - | 폐 지 | - | - |
| | 20 | 900±30×650×0.1 | PE | - | - | 폐 지 | - | - |
| 홍고추 | 10 | 480×350×230±10 | 0201 | 83.0 | 39 | 440×330×275±30 | 96.0 | 0201 |
| | 20 | 495×385×385±10 | 0201 | 63.0 | 25 | 550×366×330±30 | 99.8 | 0201 |

| 품 목 | 중량 (kg) | 기존표준출하규격 | | | 표준출하규격 | | | |
|------------|------------|-----------------|------|------------|-----------|----------------|------------|------|
| | | 가로×세로×높이 | 포장형태 | 적재율 (%) | ULS NO | 가로×세로×높이 | 적재율 (%) | 포장형태 |
| 오 이 | 10 | 412×275×220±10 | 장과형 | 83.0 | 42 | 412×275×170±20 | 93.6 | 0201 |
| | | 440×330×180±10 | 중소과형 | 96.0 | 39 | 440×330×175±20 | 96.0 | 0201 |
| | 15 | 440×330×220±10 | 중소과형 | 96.0 | 39 | 440×330×210±20 | 96.0 | 0201 |
| | | | | | 29 | 500×300×240±20 | 99.2 | 0201 |
| | 20 | 440×330×300±10 | 중소과형 | 96.0 | 39 | 440×330×300±20 | 96.0 | 0201 |
| | | | | | 29 | 500×300×240±20 | 99.2 | 0201 |
| | 10 | 700±30×400×0.05 | PE | - | - | 폐 지 | - | - |
| | 15 | 900±30×400×0.07 | PE | - | - | 폐 지 | - | - |
| | | 412±30×275×300 | 장과형 | 93.6 | - | 폐 지 | - | - |
| | 20 | 870±30×500×0.1 | PE | - | - | 폐 지 | - | - |
| 애호박 | 5 | - | - | - | 54 | 314×235×160±10 | 97.6 | 0201 |
| | 8 | 440×330×140±10 | 0201 | 96.0 | 39 | 440×330×140±10 | 96.0 | 0201 |
| | 15 | 440×330×210±10 | 0201 | 96.0 | - | 폐 지 | - | - |
| | 20 | 440×330×290±10 | 0201 | 96.0 | - | 폐 지 | - | - |
| | 10 | 800±30×400×0.05 | 그물망 | - | - | 폐 지 | - | - |
| | 15 | 900±30×400×0.07 | 그물망 | - | - | 폐 지 | - | - |
| | 20 | 900±30×500×0.1 | 그물망 | - | - | 폐 지 | - | - |
| | 10 | 500×250×205±10 | 목상자 | - | - | 폐 지 | - | - |
| 풋호박 | 10 | - | - | - | 26 | 550×275×210±20 | 99.8 | 0201 |
| 쭈키니 호 박 | 10 | - | - | - | 39 | 440×330×160±20 | 96.0 | 0201 |

| 품목 | 중량 (kg) | 기존표준출하규격 | | | 표준출하규격 | | | |
|-----------------------|----------------|-----------------|--------------------|------------|-----------|----------------|------------|---------------------------------------|
| | | 가로×세로×높이 | 포장형태 | 적재율 (%) | ULS NO | 가로×세로×높이 | 적재율 (%) | 포장형태 |
| 가 지 | 50개 (장과용) | - | - | - | 39 | 440×330×240±20 | 96.0 | 0201 |
| | 50개 (단과용) | - | - | - | 29 | 500×300×200±20 | 99.2 | 0201 |
| | 10 | 385×310×315±10 | 0201 | 89.0 | - | 폐 지 | - | - |
| | 15 | 480×350×315±10 | 0201 | 83.0 | - | 폐 지 | - | - |
| | 20 | 495×385×365±10 | 0201 | 63.0 | - | 폐 지 | - | - |
| | 10 | 930±30×400×0.05 | PE | - | - | 폐 지 | - | - |
| | 15 | 930±30×500×0.07 | PE | - | - | 폐 지 | - | - |
| | 20 | 1000±30×600×0.1 | PE | - | - | 폐 지 | - | - |
| | 10 | 540×280×235±10 | 목상자 | 100 | - | 폐 지 | - | - |
| | 15 | 540×330×310±10 | 목상자 | 88.0 | - | 폐 지 | - | - |
| | 20 | 610×330×350±10 | 목상자 | 67.0 | - | 폐 지 | - | - |
| 토 마 토 | 4 | - | - | - | 39 | 440×330×85±10 | 96.0 | 0435형, B골양면 |
| | 5 | 290×150×245±10 | 손잡이 | 86.0 | - | 폐 지 | - | - |
| | | 314×235×160±10 | 0201,0203 +0216 | 100 | - | 폐 지 | - | - |
| | 10 | 366×275×230±10 | 0201 | 100 | 39 | 440×330×180±20 | 96.0 | 0201 |
| | 15 | 440×330×230±10 | 0201 | 96.0 | 39 | 440×330×220±20 | 96.0 | 0201 |
| 20 | 440×330×320±10 | 0201 | 96.0 | - | 폐 지 | - | - | |
| 방 울 토 마 토 | 4 (1) | 300×210×155±10 | 양면골판지 | 83.0 | 51 | 330×220×130±10 | 96.0 | 0201+0216 +손잡이, 0216 (윗날개제거) |
| | 5 | - | - | - | - | (161×105×120) | - | - |
| | 5 | - | - | - | 51 | 330×220×155±10 | 96.0 | 0201(산물) |
| | 10 | 370×270×210±10 | 이중양면 | 83.0 | 42 | 412×275×190±10 | 93.6 | 0201 |
| 4 | 255×140×220±10 | 미장골판지 | 94.0 | - | 폐 지 | - | - | |

| 품목 | 중량 (kg) | 기존표준출하규격 | | | 표준출하규격 | | | |
|------|------------------|----------------|-----------|---------|--------|------------------|---------|-------------------|
| | | 길이×너비×높이 | 포장형태 | 적재율 (%) | ULS NO | 가로×세로×높이 | 적재율 (%) | 포장형태 |
| 참외 | 5 | - | - | - | 39 | 440×330×115±10 | 96.0 | 0201,0209 |
| | 10 | 488×305×180±10 | 0201,0209 | 98.0 | 39 | 440×330×170±10 | 96.0 | 0209 |
| | 15 | 488×305×240±10 | 0201,0209 | 98.0 | 39 | 440×330×240±10 | 96.0 | 0209 |
| | 20 | 488×305×340±10 | 0201,0209 | 98.0 | 39 | 440×330×305±10 | 96.0 | 0209 |
| 딸기 | 2 | - | - | - | 48 | 366×244×80±10 | 95.9 | 0425 (산물,분포장) |
| | (1) | - | - | - | - | (225×165×30) | - | 0216 (E골또는PET) |
| | 8 | - | - | - | 25 | 550×366×125±10 | 99.8 | 0425 (분포장) |
| | (1) | - | - | - | - | (169×124×120) | - | 0216 (E골또는PET) |
| | 8 | - | - | - | 25 | 550×366×120±10 | 99.8 | 0425(산물) |
| | 2 | 360×170×150±20 | 스티로폴 | 91.0 | - | 360×170×150 | 91.0 | 스티로폴 |
| | 8 | 565×410×150±10 | 스티로폴 | 77.0 | - | 565×410×150 | 77.0 | 스티로폴 |
| | 5 | 480×250×95±10 | 골판지 | 79.0 | - | 폐 지 | - | - |
| | 10 | 500×250×215±10 | 골판지 | 83.0 | - | 폐 지 | - | - |
| | 15 | 500×250×310±10 | 골판지 | 83.0 | - | 폐 지 | - | - |
| 수박 | 10 | 450×230×240±10 | 0209 | 68.0 | - | 폐 지 | - | - |
| | 15 | 450×430×240±10 | 0209 | 64.0 | - | 폐 지 | - | - |
| | 15-20 | 440×330×220±10 | 0209 | 96.0 | - | 폐 지 | - | - |
| | 1 개 | - | - | - | 60 | 275×275×270±20 | 100 | 0201 |
| | 2-3개 | - | - | - | 26 | 550×275×270±20 | 99.8 | 0201 |
| | 30-40개 (팔각상자) | - | - | - | 1 | 1100×1100×600±20 | 99.7 | 0310 |
| 조롱수박 | 5 | 350×280×180±10 | 0201 | 73.0 | 47 | 366×275×175±10 | 99.8 | 0201 |
| 메론 | 5 | 350×275×155±10 | 0201 | 95.0 | 47 | 366×275×175±10 | 99.8 | 0201,0209 |
| | 10 | 350×275×300±10 | 0201 | 95.0 | - | 폐 지 | - | - |

| 품목 | 중량 (kg) | 기존표준출하규격 | | | 표준출하규격 | | | |
|----|--------------|----------------|-------|------------|-------------------|----------------------|------------|--------------|
| | | 가로×세로×높이 | 포장형태 | 적재율 (%) | ULS NO | 가로×세로×높이 | 적재율 (%) | 포장형태 |
| 피만 | 10 (0.34) | 480×350×305±10 | 이중양면 | 83.0 | 25 | 550×366×270±10 | 99.8 | 0201(산 물) |
| | | - | - | - | 25 | 550×366×280±10 | 99.8 | 0201(분포장) |
| | - | - | - | - | (300±30×250×0.03) | - | P.E | |
| | 20 | 550×365×360±10 | 이중양면 | 99.8 | - | 폐 지 | - | - |
| 양파 | 5 | 275×220×200±10 | 골판지상자 | 100 | 61 | 275×220×200±20 | 100 | 0201 |
| | 10 | 366×275×220±10 | 골판지상자 | 99.8 | 29 | 500×300×160±20 | 99.2 | 0201 |
| | 15 | 440×330×230±10 | 골판지상자 | 96.0 | 29 | 500×300×220±20 | 99.2 | 0201 |
| | 20 | 440×330×290±10 | 골판지상자 | 96.0 | 29 | 500×300×280±20 | 99.2 | 0210 |
| | 5 | 550±30×200 | 그물망 | - | - | 폐 지 | - | - |
| | 10 (1) | 700±30×250 | - | - | - | 670×340 (250×150) | - | 그물망 (그물망) |
| | - | - | - | - | - | - | - | - |
| | 15 | - | - | - | - | 720×340 | - | 그물망 |
| 20 | 800±30×400 | 그물망 | - | - | 670×500 | - | 그물망 | |
| 마늘 | 5 | 275×220×200±10 | 0201 | 100 | 61 | 275×220×230±20 | 100 | 0201 |
| | 10 | 366×275×220±10 | 0201 | 99.8 | 29 | 500×300×200±20 | 99.2 | 0201 |
| | 15 | 440×330×230±10 | 0201 | 96.0 | 29 | 500×300×280±20 | 99.2 | 0201 |
| | 20 | 440×330×290±10 | 0201 | 96.0 | 29 | 500×300×350±20 | 99.2 | 0201 |
| | 5 | 550±30×200 | 그물망 | - | - | 폐 지 | - | - |
| | 10 | 820±30×250 | 그물망 | - | - | 750±30×330 | 97 | 그물망 (난지형) |
| | 20 | 800±30×450 | 그물망 | - | - | 720±30×510 | 94 | 그물망 (난지형) |
| | 100 개 | - | - | - | - | 470±30×240 | 96 | 그물망 (한지형) |

| 품 목 | 중 량 (kg) | 기존표준출하규격 | | | 표준출하규격 | | | | |
|-----------------------|-----------------|-----------------|----------------|------------|-----------|----------------|--------------------------------------------|-----------|-----------|
| | | 길이×너비×높이 | 포장형태 | 적재율 (%) | ULS NO | 가로×세로×높이 | 적재율 (%) | 포장형태 | |
| 과 과 | 대 과 | 5 | 650×225×180±10 | 대과 잎과 | 96.7 | 7 | 711×388×110±20 | 91.8 | 0209(단간형) |
| | | 10 | 650×450×160±10 | 대과 잎과 | 96.7 | 7 | 711×388×160±20 | 91.8 | 0209(단간형) |
| | 쪽 과 | 10 | 440×330×300±10 | 쪽과 | 96.0 | 39 | 440×330×290±20 (0.5kg×20개) (1kg×10개) | 96.0 | 0201(단간형) |
| | | | - | - | - | 28 | 523×288×260±10 (0.5kg×20개) (1kg×10개) | 99.6 | 0201(장간형) |
| | 간 쪽 과 | 0.2 | - | - | - | - | 570±30×125×0.01 | - | PE |
| | | 2 | - | - | - | 28 | 523×288×90±10 (0.2kg×10개) | 99.6 | 0201 |
| | | 4 | - | - | - | 28 | 523×288×140±10 (0.2kg×20개) | 99.6 | 0201 |
| | 무 | 6-12개 | 550×366×200±10 | 0201,0209 | 99.8 | 25 | 550×366×200±20 | 99.8 | 0201,0209 |
| | | 15-20개 | 550×366×350±10 | 0201,0209 | 99.8 | - | 폐 지 | - | - |
| 14-21개 | | - | - | - | 25 | 550×366×350±20 | 99.8 | P-Box | |
| 20 | | 800±30×550 | PP | - | - | 폐 지 | - | - | |
| 40 | | 1,100±30×600 | PP | - | - | 폐 지 | - | - | |
| 열 무 | 4 | 385×235×215±10 | 0201 | 90.0 | 42 | 412×275×190±10 | 93.6 | 0209 | |
| | 10 | 550×365×240±10 | 0201 | 99.8 | - | 폐 지 | - | - | |
| | 15 | 550×365×360±10 | 0201 | 99.8 | - | 폐 지 | - | - | |
| 배 추 | 4-6 | 366×275×200±10 | 0209 | 99.8 | - | 폐 지 | - | - | |
| | 3-4개 | 550×366×200±10 | 0209 | 99.8 | 25 | 550×366×200±20 | 99.8 | 0201,0209 | |
| | 15-20 | 550×366×350±10 | 0209 | 99.8 | - | 폐 지 | - | - | |
| | 6-8개 | 550×366×350±10 | PVC | 99.8 | 25 | 550×366×350±10 | 99.8 | P-Box | |
| | 10 | 600±30×500 | 그물망 | - | - | 폐 지 | - | - | |
| | 15 | 800±30×500 | 그물망 | - | - | 폐 지 | - | - | |
| 열 갈 이 배 추 | 4 | - | - | - | 42 | 412×275×190±10 | 93.6 | 0201 | |
| | 5 | 470×310×175±10 | 0209 | 96.0 | - | 폐 지 | - | - | |
| | 10 | 550×365×240±10 | 0209 | 99.8 | - | 폐 지 | - | - | |
| | 15 | 550×365×360±10 | 0209 | 99.8 | - | 폐 지 | - | - | |
| | 5 | 650±30×500×0.03 | PE | - | - | 폐 지 | - | - | |
| | 10 | 850±10×550×0.05 | PE | - | - | 폐 지 | - | - | |
| 15 | 950±10×600×0.07 | PE | - | - | 폐 지 | - | - | | |

| 품목 | 중량 (kg) | 기준표준출하규격 | | | 표준출하규격 | | | |
|-------------|------------|-----------------|-----------|------------|-----------|-------------------|------------|----------------|
| | | 길이×너비×높이 | 포장형태 | 적재율 (%) | ULS NO | 가로×세로×높이 | 적재율 (%) | 포장형태 |
| 양 배 추 | 4-6개 | 550×365×200±10 | 0201,0209 | 99.8 | 25 | 550×366×200±20 | 99.8 | 0209 |
| | 10-20kg | 550×365×350±10 | 0201,0209 | 99.8 | - | 폐 지 | - | - |
| | 8-12개 | - | - | - | 25 | 550×366×350±20 | 99.8 | P-Box |
| | 10 | 700±30×500×0.05 | PE | - | - | 폐 지 | - | - |
| | 20 | 900±30×600×0.1 | PE | - | - | 폐 지 | - | - |
| | 10 | 600±30×350 | 그물망 | - | - | 폐 지 | - | - |
| | 3-4개 | - | - | - | - | 570±30×380 | - | 그물망 |
| 당 근 | 10 | 700±30×400×0.05 | P.E | 100 | - | 770±30×380×0.05 | 100 | P.E |
| | (0.5) | - | - | - | - | (330±30×175×0.03) | - | P.E |
| | | - | - | - | 25 | 550×366×140±10 | 99.8 | 0435 |
| | 20 | 480×350×280±10 | 이중양면 | 83.0 | 39 | 440×330×245±20 | 96.0 | 0209 |
| | 10 | 385×310×205±10 | 이중양면 | 89.0 | - | 폐 지 | - | - |
| | 20 | 980±30×400×0.1 | P.E | - | - | 폐 지 | - | - |
| 시 금 치 | 4 | 400×250×200±10 | 골판지상자 | 93.6 | 42 | 412×275×190±20 | 93.6 | 0201 |
| | 10 | - | - | - | 25 | 550×366×280±20 | 99.8 | 0201 |
| | 2 | 275×195×180±10 | 골판지상자 | 93.0 | - | 폐 지 | - | - |
| | 5 | 350×275×240±10 | 골판지상자 | 96.0 | - | 폐 지 | - | - |
| | 20 | 500×400×350±10 | 골판지상자 | 66.0 | - | 폐 지 | - | - |
| 상 추 | 4 | 500×300×200±10 | 양면골판지 | 99.2 | 29 | 500×300×200±10 | 99.2 | 0201 (축면상추) |
| | | - | - | - | 42 | 412×275×220±10 | 93.6 | 0201 (치마상추) |
| | 2 | 366×275×210±10 | 양면골판지 | 99.8 | - | 폐 지 | - | - |
| | 5 | 500×300×250±10 | 양면골판지 | 99.2 | - | 폐 지 | - | - |
| 깻 잎 | 2 | 366×275×200±10 | 골판지상자 | 99.8 | 47 | 366×275×200±10 | 99.8 | 0201 |
| | 4 | 440×330×210±10 | 골판지상자 | 96.0 | 39 | 440×330×210±10 | 96.0 | 0201 |
| | 5 | 440×330×230±10 | 골판지상자 | 96.0 | - | 폐 지 | - | - |

3. ULS MODULE 현황

| 모듈번호 | 길 이 | 넓 이 | 적재율(%) | 모듈번호 | 길 이 | 넓 이 | 적재율(%) |
|------|-------|-------|--------|------|-----|-----|--------|
| 1 | 1,100 | 1,100 | 100 | 36 | 458 | 213 | 96.7 |
| 2 | 1,100 | 550 | 100 | 37 | 450 | 325 | 96.7 |
| 3 | 1,100 | 366 | 99.8 | 38 | 450 | 216 | 96.4 |
| 4 | 1,100 | 275 | 100 | 39 | 440 | 330 | 96 |
| 5 | 1,100 | 220 | 100 | 40 | 440 | 220 | 96 |
| 6 | 733 | 366 | 88.7 | 41 | 412 | 343 | 93.4 |
| 7 | 711 | 388 | 91.2 | 42 | 412 | 275 | 93.6 |
| 8 | 687 | 412 | 93.6 | 43 | 412 | 229 | 93.6 |
| 9 | 687 | 206 | 93.6 | 44 | 388 | 355 | 91.1 |
| 10 | 660 | 440 | 96 | 45 | 388 | 237 | 91.2 |
| 11 | 660 | 220 | 96 | 46 | 366 | 366 | 99.6 |
| 12 | 650 | 450 | 96.7 | 47 | 366 | 275 | 99.8 |
| 13 | 650 | 225 | 96.7 | 48 | 366 | 244 | 95.9 |
| 14 | 641 | 458 | 97.1 | 49 | 366 | 220 | 99.8 |
| 15 | 641 | 229 | 97.1 | 50 | 343 | 206 | 93.8 |
| 16 | 628 | 471 | 97.8 | 51 | 330 | 220 | 96 |
| 17 | 628 | 235 | 91.6 | 52 | 325 | 225 | 96.7 |
| 18 | 611 | 488 | 98.6 | 53 | 320 | 229 | 96.9 |
| 19 | 611 | 244 | 98.6 | 54 | 314 | 235 | 97.6 |
| 20 | 600 | 500 | 99.2 | 55 | 305 | 244 | 98.4 |
| 21 | 600 | 250 | 99.2 | 56 | 300 | 250 | 99.2 |
| 22 | 576 | 523 | 99.6 | 57 | 300 | 200 | 99.2 |
| 23 | 576 | 261 | 99.4 | 58 | 293 | 220 | 95.9 |
| 24 | 550 | 550 | 100 | 59 | 288 | 261 | 99.4 |
| 25 | 550 | 366 | 99.8 | 60 | 275 | 275 | 100 |
| 26 | 550 | 275 | 100 | 61 | 275 | 220 | 100 |
| 27 | 550 | 220 | 100 | 62 | 275 | 206 | 98.3 |
| 28 | 523 | 288 | 99.6 | 63 | 250 | 200 | 99.2 |
| 29 | 500 | 300 | 99.2 | 64 | 244 | 203 | 98.2 |
| 30 | 500 | 200 | 99.2 | 65 | 235 | 209 | 97.4 |
| 31 | 488 | 305 | 98.4 | 66 | 229 | 213 | 96.7 |
| 32 | 488 | 203 | 98.2 | 67 | 229 | 206 | 97.4 |
| 33 | 471 | 314 | 97.8 | 68 | 225 | 216 | 96.4 |
| 34 | 471 | 209 | 97.6 | 69 | 220 | 220 | 100 |
| 35 | 458 | 320 | 96.9 | | | | |

1-2 농산물포장규격화 및 브랜드화 촉진방안

(한국식품개발연구원)

1. 현 황

□ 현행제도

<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 >

- 농산물 표준규격화(법제2호)
 - 농산물의 상품성제고·유통능력 향상과 공정거래 실현을 위해 표준화규격 제정
 - 유기농산물 품질기준 제정 시행
- 품질인증제도(법제17조)
 - 수입농산물, 국내농산물, 가공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 실시
 - 원산지 허위표시, 위장판매시 처벌
- ※ 상표법 : 상표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신용유지, 산업발전 기여, 수요자 이익보호를 위한 법으로 침해죄, 허위표시죄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음

□ 추진실적

- 농산물의 포장·규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규격출하사업 실시
 - 포장재비지원 : ('96) 112억원 → ('97) 131억원 → ('98) 144억원
 - '84년부터 규격 출하사업 실시로 무, 배추 등 일부 품목외는 대부분 포장 출하
 - 포장화율('97) : 사과 91.3%, 배 99.7%, 참외 98.9%, 상추 99.1%, 당근 89.0%
- 생산자조직 육성 및 산지유통시설 확충으로 포장규격화·브랜드화 진전
 - 생산자 조직 : 작목반 23,383개, 영농조합·회사법인 4,799개, 품목별협의회 20개
 - 유통 시설 : 간이집하장 3,290개, 포장센터 78개, RPC 253개, 가공공장 1,367개

- 특산물 품질인증제 실시로 브랜드화 촉진 및 농가소득 증대
 - 우수 특산물에 대하여 농검이 인증하고 사후관리 실시
 - 품질인증물량 : ('93) 5만톤 → ('97) 17만톤
- 원산지 표시제 강화로 국내농산물간, 국내외농산물간 차별화 촉진
 - 대상품목 : ('93) 189개 → ('97) 404개
 - 이행율 : ('93) 50% → ('97) 91%
- 포장이 안되고 있는 배추 등의 포장화 시범사업 실시
 - 대상품목 : 무, 배추, 파, 양배추, 수박
 - 시행방법 : 가락, 구리, 안양도매시장 출하시 포장재비 지원
- 농산물 포장규격 및 등급규격인 농산물 표준출하 규격 제정
 - 규격제정품목수 : ('96) 115개 품목 → ('97) 124개 품목
 - 현재 기존 규격을 ULS규격과 소비자 기호를 반영 개정 추진중

□ 외국 사례

- 일본은 농림수산성에서 과실류, 과채류 등 34개품목에 대해 국정규격을 설정 운영하고 있으며, 지자체(현)규격도 있음
 - 포장기준보다 등급기준을 중시하고 도매시장 거래시 완전규격포장
 - 소비자 기호에 맞는 소포장 거래가 보편화되고 등급별 가격차이가 큼
- 미국은 농산물유통법에 따라 농무성에서 300개품목의 표준규격을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농산물검사제도 정착
- 선진국은 신선도 유지와 품질 등급화를 위한 등급화용 칼라차트, 크기측정용 게이지개발 보급, 소비자 편의를 위한 포장, 국민 건강, 위생을 위한 포장수준까지 발전
 - 포장재는 골판지, EPS, 목상자, 플라스틱 사용하고 포장율은 90% 이상임
 - 포장재 및 포장규격이 다양하고, 특히 소비자 단계에서 소포장이 많음

2. 문제점

- **농산물 포장규격 출하사업을 실시하여 과실·과채류는 포장화가 정착되고 있으나 무, 배추 등 일부 품목의 비포장 출하로 많은 문제점 야기**
 - 쓰레기 발생 및 환경오염, 상품성 저하, 감모과다 발생, 공정거래 저해, 하역기계화 곤란으로 물류비 과다소모 등 유통효율 저하
 - '96 가락시장 쓰레기 발생량 15만톤(처리비용 57억원)

- **포장규격품, 브랜드상품에 대한 성가보장 미흡 및 홍보부족**
 - 농가의 노력만큼의 추가 수취가격 미상승 및 생산자는 단기적 관점에서 가격상승 기대
 - 포장품과 비포장품, 브랜드상품간의 차별화 조치 미흡
 - 생산농가의 영세성으로 브랜드 개발 및 홍보 마케팅 소홀
 - 생산자, 유통인, 소비자의 인식 전환을 위한 체계적 홍보 필요

- **지역단위 브랜드화로 생산의 규모화가 필요하나 농가단위 출하 또는 조직의 영세성으로 대량의 브랜드화된 상품 공급 곤란**
 - 일부 명목상 생산자조직이 다수이며 조직의 협동화, 규모화 소홀
 - 조직화된 경우도 공동계산제로 발전하지 못함
 - 농가단위 출하 → 지역단위 출하 → 광역단위 출하로 발전 필요

- **상표도용, 허위표시 판매에 대한 단속의 한계**
 - 상표등록에 대한 인식부족과 상표도용에 따른 단속의 한계
 - 원산지표시 단속공무원들의 식별능력과 인력부족
 - 지리표시제 미도입으로 국내외 상표보호 기능 미약

- **농산물 규격상품화·브랜드화 추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조치 미흡**
 - 농산물지리적표시제, 유기농산물표시제, 리콜제 도입 미흡
 - 농산물의 규격·품질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법 제정필요

3. 개선방안

□ 브랜드상품, 포장품, 비포장품간의 차별화 촉진

- 포장품과 브랜드상품 우대조치 및 비포장품 제재 조치 강화
- 비포장품의 도매시장, 물류센터, 공판장 반입금지 검토
- 브랜드상품을 농협, 물류센터 및 가맹점, 직거래에 우선 공급
- 시범포장 작업단 운영으로 포장작업 기술제공 및 농업인 포장유도

□ 정책자금 지원방식 개편으로 규격브랜드 단위출하 촉진 및 우수 생산자조직 육성

- 우수생산자 조직 집중 지원하여 브랜드상품 생산조직으로 육성
 - 주산지 시범 생산조직 선정 육성
 - 농가단위 출하 → 지역단위 출하 → 광역브랜드 단위출하
- 포장센터, RPC, 축산물 종합처리장을 브랜드상품 생산 거점시설화

□ 원산지 표시제도 보완등으로 브랜드 도용행위 강력 단속

- 원산지 표시제도 개선, 지리적 표시제 도입으로 브랜드상품 보호
- 단속공무원 식별능력 향상 및 사법경찰권 부여로 단속 효과 제고

□ 「농산물 품질 관리법」 제정등 법적·제도적 정비

-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농산물 품질 관리법」을 제정하고 지리적 표시제 도입
- 「환경농업육성법」 하위법령에 유기농산물 품질 기준 명시
- 농산물 품질인증 제도 개선

□ 농산물표준출하규격 개정 및 브랜드 개발, 홍보지원

- 농산물 표준 출하규격을 URS와 소비자 선호도를 반영, 정비
- 지역특산물에 대한 고유브랜드 개발 지원
- 생산자, 유통인, 소비자 등에게 체계적인 홍보실시

4. 세부추진계획

□ 브랜드상품, 포장품, 비포장품간의 차별화 촉진

- 포장품과 브랜드상품 우대조치 및 비포장품 제재 조치 강화
 - 우대조치 : 포장재비 지원, 하역료 및 상장수수료 인하, 쓰레기유발 부담금 면제, 우선경매, 출하선도금 우선지원
 - 제재조치 : 쓰레기유발부담금 단계적 인상, 하역료 및 상장수수료 인상, 시장내 다듬기 금지, 선도금 지원중단
- 비포장품의 도매시장, 공판장 반입금지 검토

<제1단계>

- 대상시장 및 품목 : 공영도매시장내 배추, 마늘부터 우선실시
- 실시시기 : 배추('99.1.1~'99.4.30, 마늘('99.1.1~'99.12.31)

<제2단계> : 제1단계의 성과를 분석 확대 시행

- 브랜드상품을 농협등에 우선 공급
 - 우선구매대상 : 농협, 물류센타, 하나로클럽 및 가맹점, 특판행사 등
 - 우선구매협조 : 대형할인점, 백화점 등

□ 정책자금 지원방식 개편으로 규격 브랜드 농산물 생산 촉진

- 주산지 중심의 우수생산자조직에 규격출하자금, 생산자조직육성자금 등을 집중 지원하여 대량의 규격브랜드 농산물 생산출하
 - 우수 생산자조직 우선 지원으로 조직의 상향 발전 유도
- 유통량이 많고 비포장 출하되고 있는 배추 등 채소류에 지원을 확대하고, 포장출하가 정착된 과실류 등은 지원 축소
 - 포장재지원대상 농산물 : (현재) 40개 품목 → (개선) 12개 품목
- 시·군별 「집중육성 작목」을 선정하여 지역특산물 브랜드화 촉진
- 농산물 출하단위의 규모화 유도
 - 30개 시범농협을 중심으로 공동출하, 공동계산 모델정착
 - 농협의 단순 순회수집 역할을 공동규격출하 역할로 완전정착
- 포장센터, RPC 등 유통시설 중심으로 대량의 농산물 규격 출하 정착
 - 포장센터, RPC, 생산유통지원시설 지원시 규격브랜드 생산 조건부 지원

□ 원산지 표시제도 보완등으로 브랜드 도용행위 강력 단속

- 원산지 표시제도 개선
 - 원산지 대상품목 확대 : ('98) 399개 품목 → ('98) 428
 - 민간인 명예감시원 확대 및 운영 활성화
 - 미표시 적발 위주에서 허위표시, 둔갑판매, 브랜드 도용 단속 위주로 전환
- 단속공무원 식별능력 향상 및 사법경찰권 부여로 단속 효과 제고
 - 단속공무원 식별능력 향상 및 최신기기를 이용한 식별방법 개발
 - 사법경찰권 부여에 따른 사전 교육철저로 효율성 제고

□ 「농산물 품질 관리법」 제정등 법적·제도적 정비

-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농산물 품질 관리법」을 제정하고 지리적 표시제 도입
 - 「농산물 품질 관리법」 제정 : '98. 9월 국회 상정
 - 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규칙에 유기농산물품질관리기준 마련 : '98. 7월
 - 농산물표준출하규격 정비 : '98년중
- 농산물 품질인증 제도 개선
 - 농가단위 인증에서 생산자조직 단위 인증으로 전환
 - 인증물량 확대, 절차간소화, 기준의 객관화 및 사후 관리 강화

□ 농산물 포장·등급규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포장규격화 조기 정착

- 농산물출하규격을 ULS체제에 맞게 정비(124개)
 - '97년 : 86개 품목 정비완료, '98년 : 38개 품목 재정비
- 농산물 등급규격을 소비자의 기호와 유통효율에 맞게 개선
 - 등급의 이원화 : (종전) 크기 → (개정) 품위 및 크기
 - 등급규격 : (종전) 특, 상, 중, 하 → (개정) 특, 상, 보통
 - 출하량이 많고 유통상 품질의 차이가 있는 품목부터 추진
 - ('98) 5개품목(사과, 배 등) → ('99이후) 매년 10개씩 개정
- 수송용 범용포장방식 도입으로 포장재비 절감
 - PVC 상자 등을 이용한 범용포장방법 및 범용포장용 소포장 개발

□ 농산물 표준출하규격 보급, 브랜드 개발 및 홍보 지원

- 시범포장 작업단 운영으로 포장기술 보급 및 포장유도
 - 농산물표준출하규격에 대한 포장방법지도 및 농업인 포장유도
 - 배추, 무 등 비포장 출하되는 품목 우선 지원
 - 지원대상 농산물 : 무, 배추, 수박, 알타리무, 대파, 쪽파
 - 농검 및 농협 합동으로 지역별 작업단 구성 운영
- 이해하기 쉬운 농산물표준출하규격 컬러집 제작·보급
 - 대상품목 : 표준출하규격 품목중 유통량이 많은 품목부터 점차 확대
(‘99) 10개 품목 → (2001까지) 전 품목 완료
- 지역특산물에 대한 고유브랜드 개발 지원
 - 지자체, 생산자단체의 고유브랜드 개발지원
- 생산자, 유통인, 소비자에게 체계적인 홍보실시
 - 관계기관, 단체로 농산물홍보협의회 구성
 - 농업 관련 교육기관(농림부, 농진청, 농협, 농유공 등)을 통한 교육실시

□ 기타 농산물규격출하 촉진방안 검토과제

- 용도별 포장재와 포장기술 개발
 - 품목별 또는 용도별 포장재 개발
 - 포장재 가격인하를 위한 포장기술 개발
 - 포장상자의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 방안
- 농산물 유통관련 정책자금 지원사업과의 효율적인 연계방안 강구
 - 채소가격안정사업, 생산유통지원사업 등과 연계 방안
 - 농안기금지원사업과의 연계방안 등

5. 추진 과제 및 일정

□ 예산 및 기금

< '98년 사업 : 2,552백만원 >

○ 포장재비 : 2,086백만원

| 구 분 | 사업량 (천톤) | 차량수 (5톤) | 적재수량 (매) | 포장재단가 (원) | 금 액 (백만원) |
|------|-------------|-------------|-------------|--------------|--------------|
| 배 추 | 10 | 2,000 | 700 | 850 | 1,190 |
| 수 박 | 5 | 1,000 | 700 | 800 | 560 |
| 알타리무 | 1 | 200 | 700 | 800 | 112 |
| 대 파 | 1 | 200 | 700 | 800 | 112 |
| 쪽 파 | 1 | 200 | 700 | 800 | 112 |
| 합 계 | 18 | 3,600 | - | - | 2,086 |

○ 시범작업인건비 및 기타비용 : 316백만원

○ 시범사업을 위한 포장재 품질관리 평가비 : 150백만원

< '99년 예산 요구안 : 6,182백만원 >

가) 시범사업비 : 2,552백만원

○ 포장재비 : 2,086백만원

| 구 분 | 사업량 (천톤) | 차량수 (5톤) | 적재수량 (매) | 포장재단가 (원) | 금 액 (백만원) |
|------|-------------|-------------|-------------|--------------|--------------|
| 배 추 | 10 | 2,000 | 700 | 850 | 1,190 |
| 수 박 | 5 | 1,000 | 700 | 800 | 560 |
| 알타리무 | 1 | 200 | 700 | 800 | 112 |
| 대 파 | 1 | 200 | 700 | 800 | 112 |
| 쪽 파 | 1 | 200 | 700 | 800 | 112 |
| 합 계 | 18 | 3,600 | - | - | 2,086 |

○ 시범사업을 위한 포장재 품질관리 평가비 : 150백만원

○ 시범작업인건비 및 기타비용 : 316백만원

나) 포장기술개발사업비 : 2,430백만원

농산물 감모율 과일 10%, 채소 20%를 각기 5%와 10%로 낮추기 위해 신선도 유지 포장기술, 경매투명성 제고를 위한 초장센타와 작목반용 칼라화트, 게이지 개발비 산정

○ 감모율 저하용 포장기술 개발

4대 과일, 5대 채소에 대해 1차년도에는 기초포장기술 개발

- 9종×3종류포장재×3처리 방법별×10백만원/각종 = 810백만원

○ 칼라화트, 게이지 개발을 위한 1차년도 과일, 채소의 지역별, 품종별 품위, 크기측정비

과일 15품목, 채소 10품목, 3개 주산지, 종당 3품종기준

- 15×10×3×3×1백만원 = 1,350백만원

- 15×10×2×3×0.2백만원 = 270백만원

다) 브랜드 개발 사업비 : 1,200백만원

○ 과일류 브랜드 개발비

- 10종×5백만원(1차시안)×10백만원(시안확정) = 500백만원

○ 채소류 브랜드 개발비

- 10종×5백만원(1차시안)×10백만원(시안확정) = 500백만원

○ 브랜드 전문가 집단공청회 및 평가비 200백만원

< 2단계 사업(2000-2002) : 22,650백만원 >

○ 시범사업 : 2,552백만원

- 포장재비 : 2,086백만원

| 구분 | 사업량 (천톤) | 차량수 (5톤) | 적재수량 (매) | 포장재단가 (원) | 금액 (백만원) |
|------|-------------|-------------|-------------|--------------|-------------|
| 배추 | 10 | 2,000 | 700 | 850 | 1,190 |
| 수박 | 5 | 1,000 | 700 | 800 | 560 |
| 알타리무 | 1 | 200 | 700 | 800 | 112 |
| 대파 | 1 | 200 | 700 | 800 | 112 |
| 쪽파 | 1 | 200 | 700 | 800 | 112 |
| 합계 | 18 | 3,600 | - | - | 2,086 |

- 시범작업인건비 및 기타비용 : 136백만원
- 시범사업을 위한 포장재 품질관리 평가비 : 150백만원
- 포장기술개발 보급사업 : 7,290백만원
- 포장재 사전, 사후 관리 사업
 - 농산물(80종×30개지역×20상자/종×품질측정비7,000원/매×3년)=1,089백만원
- 포장 상자 개발 사업 : 7,720백만원
 - 80품목×3품목(3개지역)×10,000천원/품목×3년= 7,200백만원
- 브랜드 개발 사업 : 4,600억원
 - 개발비 3,600백만원
 - 칼라차트, 게이지 보급용제작비1,000백만원

< 3단계 사업(2003-2004) : 21,400백만원 >

- 소포장, 신선도 유지관련 포장기술개발사업 : 4,800백만원
- 물류 표준화, 포장기술 피드백 사업 : 2,000백만원
- 브랜드개발 사업 : 14,600백만원
 - 개발사업 3,600백만원
 - 인지도제고사업 : 11,000백만원

6. 투융자 계획

(단위: 백만원)

| 구 분 | 98 | 99 | 2000~2002 | 2003~2004 | 계 |
|------|-------|-------|-----------|-----------|--------|
| 사업량 | - | - | - | - | - |
| 국고보조 | 2,552 | 6,182 | 22,650 | 21,400 | 52,784 |
| 국고융자 | - | - | - | - | - |
| 지방비 | - | - | - | - | - |
| 자부담 | - | - | - | - | - |
| 계 | 2,552 | 6,182 | 22,650 | 21,400 | 52,784 |

< 참고자료 >

1. 농산물 품목별 브랜드 현황('97.3)

품목별 브랜드 현황

| 구 분 | 계 | 채소류 | 과실류 | 특작류 | 곡류·서류 | 화훼류 | 공통 |
|-----|--------|-----|-----|-----|-------|-----|-----|
| 계 | 1,751개 | 776 | 463 | 190 | 185 | 16 | 121 |
| 등록 | 173 | 39 | 50 | 9 | 30 | - | 45 |
| 미등록 | 1,578 | 737 | 413 | 181 | 155 | 16 | 76 |

시·도별 브랜드 등록현황

| 계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광역시 |
|------|----|----|----|----|----|----|----|----|----|-----|
| 173개 | 18 | 13 | 32 | 33 | 1 | 13 | 22 | 33 | 5 | 3 |

- 행정기관 : 78, 생산자단체 : 55, 생산자조직 : 23, 개인 : 17

쌀

□ 농협 RPC를 통한 쌀 고유 브랜드

| 계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인천 |
|------|----|----|----|----|----|----|----|----|----|
| 150개 | 19 | 7 | 13 | 19 | 26 | 33 | 16 | 16 | 1 |

○ 상표등록 브랜드 : 14개

- 임금님표(인천), 황금들녘(청원), 청풍명월(충남), EQ2000(전북), 풍광수토(전남) 등

○ 도단위 공동브랜드 : 3개

- 청풍명월(충남), EQ2000(전북), 풍광수토(전남)

축산물

□ 축협을 통한 축산물 브랜드

- 한 우 : 양양한우(양양), 대관령한우(평창), 팔공산한우(대구) 등 7개
- 돼지고기 : 목우촌(축협), 도드람(이천), 바로포그(연기) 등 17개
- 계란·닭고기 : 양계촌(천안), 계림마을(김제), 정성란(대구) 등 6개

과실류 및 과채류

□ 생산자조직 고유브랜드

- 이화회 배(평택), 이목회(이천), 예산사과(예산), 얼음골사과(밀양), 사천단감(사천), 효돈감귤(서귀포), 애월유자(북제주), 백마강수박(부여), 돌산갓(여천), 대가참외(김천)

공 동

□ 시·군단위 생산농산물에 대한 공동사용 브랜드

- 안성마춤(안성), 소양강(춘천), 치악산(원주), 영암월출(영암), 청자골(강진), 함평천지(함평), 한려거북(여수), 굴비골(영광) 등

2. 농산물 포장개선사업 추진 당위성

□ 소비지의 쓰레기 발생방지 및 도매시장 환경 개선

- 산지에서 다듬기로 소비지 쓰레기 감소
- 도매시장 환경개선 및 쓰레기 처리문제 해결
 - 가락시장 연간 쓰레기 발생량 15만톤(처리비용 약 57억원)
-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적극 동참

□ 상품성 저하방지 및 감모축소

- 골판지 포장으로 배추 상품성 향상 및 유통기간 연장 효과발생
- 상차, 운송, 하차 과정에서의 감모 축소

□ 공정거래 실현과 유통마진 축소

- 산물출하시 정확한 수량도 모르는채 거래되고 속박이 성행
- 이윤추구 곤란 및 다듬기 불필요로 마진축소

□ 상차, 운송, 하차 과정에서의 기계화 가능

- 지게차, 파렛트에 의한 운송, 하역이 가능하여 물류비 크게 절감
 - 파렛트화 추진시 운송·하역비 40% 절감가능
 - 하역시간 단축, 하역후 경매가능, 시장내 교통체증완화, 차량대기 시간 단축

□ 시장개방화, 유통경로 다원화에 따른 경쟁력 제고

- '97. 7월부터 거의 완전 시장개방과 대형할인점, 물류센타 개장에 대비
 - 현 농산물 포장수준, 인력에 의한 하역으로 인한 고비용 저효율 구조로는 경쟁불가
- 일부 대형유통업체는 경쟁력약화로 파산하는 등 유통업체간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질 것임

3. 농산물 브랜드화 관련 시책

1.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 목 적 : 농산물을 산지에서 규격포장 및 브랜드화하여 대량 유통, 견본·통명거래로 유통효율화 도모
- 사업내용 : 생산자조직에 포장재비 지원(국고20%, 지방비20%)
- 예산현황 : ('97) 131억원 → ('98) 144

2. 농산물 품질인증제

- 목 적 : 우수농산물, 지역특산물 품질인증으로 우리 농산물의 차별화 및 고품질 생산으로 경쟁력 강화
- 사업내용 : 우수농산물에 대한 품질을 정부가 인증표시
- 인증현황 : ('97) 15만톤 → ('98) 20

3. 원산지표시제

- 목 적 : 농산물의 부정유통을 근원적으로 방지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고 개방화에 따른 국제 경쟁력 강화
- 사업내용 : 원산지 미표시 또는 허위표시 단속, 처벌
- 대상품목 : ('97) 399개 품목 → ('98) 428

4. 지리적표시제

- 목 적 : 지리적표시 보호제도의 대상은 농산물과 그 가공품이 대상이므로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유명 지리적 표시를 보호받고 우리 농산물의 대외경쟁력 확보
- 정 의 : 지리적표시는 상품의 품질이 생산지의 기후, 풍토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경우 상품의 생산지를 알리는 표시를 하여 지리적 근원에 대한 일반 대중의 오인을 유발하는 방법으로 명령 또는 표시하는 모든 수단의 사용행위 등을 금지시키는 제도
- 진행사항 : '98년중 지리적표시제 도입을 위한 입법 준비중

4. 지리적표시제 도입 추진계획

1. 추진목적

- 지역특산물을 개발·육성·보호하여 상품의 품질향상, 공정한 거래 실현,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소비자 보호

2. 현황

- WTO/TRIPs의 지리적표시 관련규정
 - 정의 : 상품의 명성이나 품질등이 지리적인 근원에 기초하는 상품표시
· 예 : Evian생수, Havana담배, 고려인삼, 순창고추장, 영덕계 등
 - 이행시한 : 선진국은 '96.1.1, 개도국은 '00.1.1, 최빈개도국은 '06.1.1
- 한·EU 기본협력협정 : '98. 7. 1부터 지리적표시제 이행
 - EU의 '92공동농업정책(CAP)은 지리적표시제도, 특산물인증제도, 유기농산물인증제도 등 품질차별화 정책을 중요한 농업정책으로 채택
- 세계 각국의 지리적표시제 도입 추진상황
 - EU : 『지리적표시 관련규정』을 '92. 7월 공표(치즈류등 406개품목)
 - 미·일·APEC 및 EU 등 30개국 : 지리적표시제 관련법을 WTO에 제출
- 우리나라의 지리적표시제 도입 추진현황
 - 특허청 : 상표법을 개정('97.8), WTO 가입국의 주류에 대한 지리적 표시를 보호
 - 농림부 : 동제도 도입추진 중

3. 지리적 표시제도 도입 추진의 기본방향

- 근거법령 제정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정시 지리적표시 관련조항 신설추진
- 문제점은 관계부처와 계속 협의
 - 주류, 가공품 포함여부, 지리적명칭 사용상표 규제방안 마련 등

4. 향후 추진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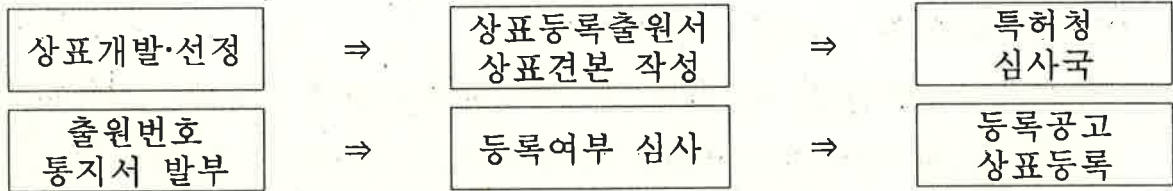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안)』 마련 : '98. 8월까지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안)』 국회 제출 : '98. 9월

5. 상표 및 의장등록 절차

1. 필요성

- 자체개발상표 및 의장에 대한 법적보호, 상표(의장)권 행사
- 유사상표 사용 및 타인의 상표도용행위 방지

2. 출원절차



3. 심사 및 존속기간

- 심사 및 등록기간 : 출원일로부터 12개월-16개월
- 상표(의장)권 존속기간 : 등록일로부터 10년, 단 존속기간 만료 1년전에 존속기간 갱신등록에 의하여 10년씩 연장가능

4. 제출서류

- 상표(의장)출원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 위임장 1부(변리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상표견본 10매 (의장등록은 도면 및 포장재 실물 1점)

5. 상표(의장)등록 출원시 유의사항

- 상표출원 및 등록은 先願主義이므로 특허청 단말기, 상표(의장), 공보 등을 통하여 선 출원, 선 등록이 없음을 확인한 후 출원
 - ※ 先願主義 :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상표는 최초 출원자에게 등록을 허용한다는 원칙
- 출원할 상표가 상표법상(제6,7조) 등록요건 부합여부 확인
 - 농산물은 대부분 생산지명을 상표로 사용하는데 현저하게 인지되는 지리적 명칭은 등록이 불가능함
 - 예) 행정구역 명칭(수원시, 문경군), 유명한 산·강(지리산, 금강)
- 직접 출원할 수 없는 경우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출원

6. 등록상표 표시

- 상표가 등록된 경우 등록상표란 문자와 등록번호를 표시하거나 “®”이란 기호를 상표명 우측상단에 표시

6. 상표 및 원산지표시제 위반시 벌칙

1. 상표법

○ 목적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신용유지, 산업발전에 기여, 수요자의 이익 보호

○ 상표정의

상품을 생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등

○ 처벌규정

- 침해죄 :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허위표시제 : 상표 허위 표시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 목적

농산물의 부정유통을 근원적으로 방지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농산물의 질적 차별화로 개방화에 따른 국제 경쟁력 제고

○ 표시방법

수입농산물은 해당국명, 국산농산물은 생산 시, 군명 표시

○ 처벌규정

- 원산지 허위표시등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원산지 미표시, 표시사항 또는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1 파렛트풀시스템 구축으로 파렛트 출하 확대

(한국파렛트협회)

1. 현 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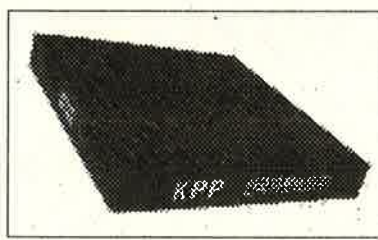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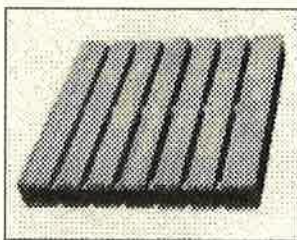
- 비료 파렛트풀시스템 구축 -

□ 현행제도

- 비료수입개방에 대응한 물류비용의 획기적 절감을 위하여 비료파렛트화 출하 및 인수
- '98년도부터 파렛트 출하가 불가능한 비료제조회사는 인수희망조합에 납품불가(입찰제한)
 - 파렛타이저 시설개조계약서를 납품희망등록시에 제출
 - 시설개조를 하지 않는 회사는 '98 비료분부터 농협납품 제한
- 인수희망조합에 파렛트에 적재하지 않고 납품시 톤당 5,000원의 지게차 운영비 부담
- '99년부터 파렛트 출하지역을 전체 50%이상 인수가능 조합으로 확대실시 → 인수가능 창고별로 파렛트 출하 실시

□ 추진실적

- 렌탈방식에 의한 파렛트풀시스템 구축
 - 파렛트는 국가 표준파렛트(T-11형)로 KPP(한국파렛트풀(주))에서 렌탈하여 사용



◀ KPP 표준파렛트
(좌 : 목재 T-11형)
(우 : 플라스틱 T-11형)

→ KPP, 농협, 비료업체(12개 업체)간 파렛트풀운용계약 체결

- '97년도 4개 시범군을 선정하여 파렛트에 의한 시범수송 실시
 - 시범실시군: 경주시, 영천시, 밀양시, 창녕군
 - 파렛트(KPP 풀파렛트)에 적재된 비료만 인수
 - '98년도부터 전국 확대 실시
- 노동력부족등 물류환경 악화에 따른 수송의 기계화 기여
- 비료수급의 안정과 물류개선에 따른 비료가격인하로 농민에 실익 제공
- 파렛트풀시스템 구축에 의한 물류비용 절감
 - 농협자체 운영시보다 연간 45% 비용절감

2. 개선필요성

- 현 농산물 물류활동의 문제와 여건변화 -

□ 문제점

- 산지에서의 포장·규격출하 체계 미흡
- Non-Pallet화(비규격 파렛트) 및 비포장, 1회용 골판지 출하
 - 파렛트 및 골판지 구입, 관리부담 큼
- 유통시설과 장비가 물류표준화 기준없이 건설·제작
- 물류표준화(합리화)에 대한 농업인, 유통종사자들의 인식부족
- 정보표준화는 초기 단계임
- 우리나라의 물류시스템은 선진국보다 낙후되어 있으며, 특히 농산물은 초보단계로 개선의 여지가 큼
 - 농산물 물류비('96 : 5조 7천억원(농업GDP의 27.1%))

□ 여건변화

- 농산물 및 유통 시장 개방에 대응해서 물류표준화를 통한 품질 및 가격경쟁력 제고
- 생산지와 소비지가 멀리 떨어져 있음.
 - 장거리 수송 불가피 → 파렛트 회송운임 과다발생
- 물동량은 언제나 변동이 심함
 - 파렛트풀시스템 운영
 - 물동량변동에 능동적 대처
- 물동량은 다품종, 소량화 되고 있음.
- 일손부족과 인건비 상승 및 3D현상의 발생(상하차작업의 인력 의존(하역비 비중 : 농산물 13.2%))
 - 파렛트에 의한 하역의 기계화 필요성 대두
 - 파렛트풀 운영시 상하차비 절감액 : 2,699억원
- 폐기물의 대량발생(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의한 비용부담)
 - 쓰레기유발 부담금 : 5,000원/톤
 - 1회용 골판지 폐기물 증가
 - 산물출하에 의한 쓰레기 발생(감모·청소비 : 농산물 17.2%)
- 농산물의 비규격화, 비포장화등 비효율성에 대한 근원적 문제 대두
 - 농산물 물류효율화의 가장 큰 장애 농산물 쓰레기 발생의 주된요인

3. 개선방안

□ 대안제시

- 농산물 물류 합리화의 기준은 농산물의 파렛트화
 - 효율적 파렛트 운영이 물류합리화 성공여부의 관건
- 농산물 단독 파렛트풀시스템 운영
 - KPP를 중심으로 한 농산물만의 파렛트풀시스템 구축운영
 - 효율적 파렛트 운영이 물류합리화 성공여부의 관건

- 비료와 농산물의 파렛트풀 연계운용
 - KPP와 농협을 중심으로 한 결합 파렛트풀시스템 구축운영
 - 조합에 공급된 비료파렛트를 이용하여 농산물을 파렛트로 출하

□ 대안별 장단점

- 농산물 단독 파렛트풀시스템 운영시

| 구분 | 파렛트풀시스템 (KPP) | 현행유지 (파렛트풀시스템 배제) |
|----|-------------------------------------------------------------------------------------------------------------------------------------------------------------------------------------------------------------------------------------|----------------------------------------------------------------------------------------------------------------------------------------------------------------|
| 장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수 Network로 회수문제 해결 · 물동량변동에 신속적으로 대응 → 적정량의 파렛트만 소요 · 출하차별 파렛트 선별관리 불필요 · 파렛트 관리비용 대폭 절감 (년간 약 300억원 절감-추정치) · 주문, 투명거래(거래표준화) 체제 기반마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고보조에 의한 파렛트 구입자금 부담 경감 · 파렛트운영의 직접관여로 운영의 일관성 |
| 단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풀이용료의 부담요소문제 · 관리의 명확한 책임소재 필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수비용증가 및 장기화 · 대규모의 파렛트 소요 · 출하차별 파렛트 선별관리 문제 · 파렛트 관리비용 과다지출 (년간 552억원 지출-추정치) |

- 비료와 농산물 결합 파렛트풀시스템 운영시

| 구분 | 결합 파렛트풀시스템 | |
|----|------------------------------------------------------------------------------------------------------------------------------------------------------------------------------------|----------------------------------------------------------------------------------------------------------------------------------------------------------------------|
| | 장점 | 단점 |
| 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 단독 파렛트풀시스템 운영시 장점 그대로 유지 · 비료에서 농산물까지 일관파렛트화 실현 · 운영비용 및 파렛트량 추가 절감 · 파렛트 구입자금지원 불필요로 국고보조 절감효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의 복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의 전산화 필요 · 관리의 명확한 책임소재 필요 |

☞ PPS 결합추진시 비용비교

| 항 목 | 농 협 | | | K P P | | | | | |
|--------|------------|------------|-------|-----------|------|-------|-----------|------|-------|
| | 비 료 부 분 | 농산물 부 분 | 계 | PPS 결합운영전 | | | PPS 결합운영후 | | |
| | | | | 비료 | 농산물 | 계 | 비료 | 농산물 | 계 |
| 파렛트소요량 | 90만매 | 75만매 | 165만매 | 60만매 | 45만매 | 105만매 | 60만매 | 15만매 | 75만매 |
| 총 비용 | 112억원 | 141억원 | 253억원 | 50억원 | 60억원 | 110억원 | 44억원 | 43억원 | 87억원 |
| 절 감 액 | | | | 62억원 | 81억원 | 143억원 | 68억원 | 98억원 | 166억원 |
| 비 율 | (기준) | (기준) | (기준) | 55% | 57% | 56% | 61% | 70% | 66% |
| 추가절감액 | | | | | | | 6억원 | 17억원 | 23억원 |
| 추가절감율 | | | | | | | 5% | 13% | 10% |

□ 외국의 사례

- 호주의 파렛트풀시스템 회사인 CHEP에 의하여 유럽의 농산물의 파렛트풀시스템 운영
 - 유럽의 표준파렛트(1200×800)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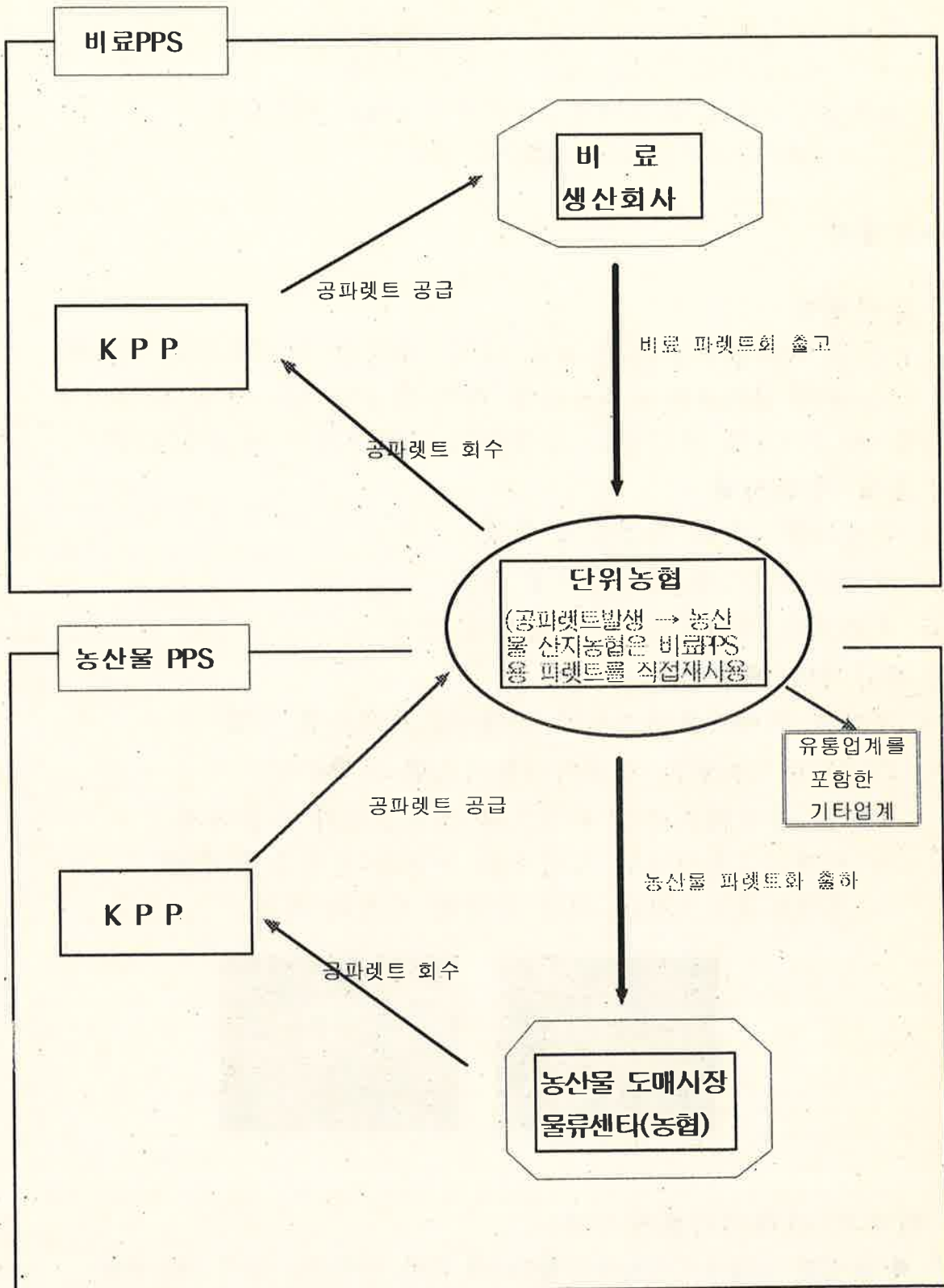
- ▶ 파렛트풀시스템으로 산지에서 농산물시장, 각 유통점까지 농산물 파렛트화 출하

□ 우리의 여건

- 정부 및 각 농산물 분야 관련기관의 농산물 물류합리화 추진
 - 농산물 물류합리화 여건 조성
- 비료파렛트풀시스템 구축
 - 전국 각단위농협과 KPP간 파렛트풀 거점화 토대 마련
 - 비료파렛트풀로 운영에 필요한 장비(지게차등) 단위농협 기지원

□ 개선(안)

○ 비료와 농산물의 파렛트풀시스템 결합 운영 FLOW



○ 운영 방법

- ① 산지(단위농협)에서 필요일에 파렛트 수량을 KPP에 입고요청
- ② 전국 각 산지(단위농협)으로 공파렛트 입고
 - ☞ 비료PPS용 파렛트 입고후 직접 재사용
- ③ 농협물류센터 및 도매시장로부터 공파렛트 회수요청
 - KPP 공파렛트 회수 (렌탈료 종료)

4. 추진계획

□ 추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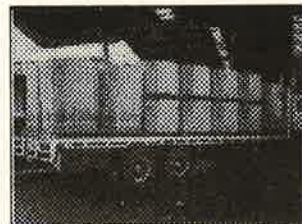
농산물 물류표준화를 통하여 하역·수송을 기계화하고 비료와 농산물의 결합파렛트폴시스템 최적 운영방식을 결정, 물류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농산물의 가격경쟁력 제고에 기여

□ 주요 추진시책

- 파렛트폴시스템 운영방법 확정
- 파렛트폴시스템 관리정보망 설치
- 파렛트화 작업을 위한 제반시설 정비

□ 신규사업 개발

- 농산물 파렛트폴시스템에 컨테이너폴시스템 도입
 - 파렛트폴시스템과 컨테이너폴시스템 복합운영
- 농산물 물류합리화는 농산물의 선포장화가 우선과제
→ 컨테이너폴시스템 도입으로 농산물 유통효율 증대
→ 파렛트폴시스템에 의한 하역의 기계화 촉진



* 외국의 컨테이너폴시스템

- ◀ 유럽의 컨테이너폴회사인 IFCO에 의한 컨테이너 폴시스템 운영 (절첩식 플라스틱박스 사용)

5. 추진과제 및 일정

□ 예산이나 기금 확보

- 파렛트 구입지원자금 대체 문제
 - 파렛트풀시스템 이용으로 유희된 파렛트 구입지원자금은 풀이용료로 대체지원
 - 농산물 물류합리화 유도정책의 일환으로써 지원
 - 초기년도부터 3년간 100% 지원
- 현재 1회성 골판지에만 국한된 정부지원자금의 반복사용이 가능한 컨테이너(플라스틱박스)로의 확대
 - 컨테이너풀시스템 운영시 유희된 컨테이너 구입자금을 풀이용료로 대체 지원
- 5톤 중형트럭 적재함 광폭화 개조비와 지게차 구입비 지원
 - 개조비 100%, 구입비 60%선까지
 - 지게차는 유통 최초단계인 생산지까지 지원
(현재 일부 지원되고 있음)

* 중형트럭(5톤) 광폭 개조비용

| 구 분 | 개조비용 최고 80만원/대 | 개조비용 최저 50만원/대 |
|----------------------|-------------------|-------------------|
| 개조대상대수(농협) 1,500대 | 12억원 | 7.5억원 |
| 지원금액(100%) | 12억원 | 7.5억원 |

* 지게차 구입비용

| 구 분 | 초기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계 |
|---------------|------|------|------|--------|
| 구입대수 | 500대 | 500대 | 500대 | 1,500대 |
| 구입비용 | 90억원 | 90억원 | 90억원 | 270억원 |
| 지원금액 (60%) | 54억원 | 54억원 | 54억원 | 162억원 |

註) 지게차 구입단가: 2톤기준 1,800만원/대

- 농산물 물류(파렛트풀시스템 포함)의 전산화 설치 비용의 지원

□ 농안법령 및 관계법규 개정

- 면허분류에 있어서 지게차 면허형태를 건설기계 조종사면허에서 일반 자동차 면허로 분류
 - 등록과 검사기준의 완화
 - 건설기계 면허 특례의 개정
- ☞ 관련법규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 1항』 개정

□ 관계부처 협의

- 하역비부담주체를 출하자에서 도매법인으로 전환
 - 하역비를 도매법인이 부담하고 하역인원을 법인 직원화함으로써 하역비 절감노력 극대화
 - 파렛트 풀시스템 유도 촉진
- 포장·파렛트 출하품 및 비포장출하품의 차별화 촉진
 - 포장 및 파렛트 출하품에 대한 하역료 대폭인하, 청소비 면제등 우대

2-2 농산물 유통시설의 물류시스템 개조·지원

(농수산물유통공사)

1. 현 황

- 물류표준화 개념 도입 전부터 유통개선시책의 일환으로 산지 및 소비지 유통시설 건설 지원
 - 산지 : 집하장, 청과물유통시설, 포장센터, 생산 및 유통지원시설, RPC 등
 - 소비지 : 공영도매시장, 물류센터, 직판장

- '96년부터 물류표준화 개념 도입하여 포장·시설·장비표준화 추진
 - '95. 12 공업진흥청에서 ULS 통칙을 제정하여 T-11을 국가표준파렛트로 설정
 -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물류비절감 시책 추진

- 우리부에서는 '97년부터 예산사업으로 물류표준화사업 추진중
 - '97년 파렛트, 지게차, 전동차 등 물류기기 70억원 용자 지원
 - '98년 부터는 기존시설 개·보완 병행 추진

-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은 초보적 단계이므로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 소요
 - 농산물 유통시설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파렛트 사용을 극히 저조
 - 도매시장 하역체계 미개선, 생산자조직 규모화 미흡 및 영농 규모 영세성, 유통종사자 인식부족 등 사회적 여건미비

2. 개선의 필요성

□ 문제점

- 일관수송체계 미구축 등 물류표준화 추진여건 미비로 물류시설 장비 지원에 대한 수요가 적음
 - '97, '98 물류표준화사업 추진결과 수요자 부족으로 상당한 애로
 - 융자지원으로 영세한 유통시설사업자의 지원효과 미흡
- 도매시장 등 산지와 소비지의 인력에 의한 하역 관행화
 - 하역기반 미흡과 하역체계(하역노조)가 후진국 수준에서 답보상태
- 유통시설 운영자가 물류표준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표준장비 도입 및 시설 개선 소극적
- 지게차 보급이 확대되고 있으나 지게차가 건설장비로 분류되어 있어 특수면허 취득에 따른 운전자 확보 애로

□ 여건변화

- 국내 유통시장 완전 개방으로 인한 무한경쟁 체제에서 현재와 같은 낙후된 물류체계하에서는 경쟁력우위 확보 곤란
 - 물류수요의 증대, 노동력의 고령화, 교통혼잡 등으로 물류비용 과다로 기계화, 자동화가 불가피
- 물류센터, 포장센터 등 유통시설 건설 확대로 대규모 유통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물동량의 규모화 추세
- 범정부적 차원의 물류표준화 추진으로 공산품 분야와 함께 일관수송체계 도입이 가속화될 전망

3. 추진계획

□ 추진방향

- 단위화물 적재시스템에 맞는 장비·시설을 보급하여 산지에서부터 파렛트 적재, 기계화 하역으로 일관수송체계 구축
 - 유통시설운영자에게 물류장비(지게차, 광폭차량 등) 보급 확대
 - 신규 유통시설은 ULS통칙에 맞게 건설하고 기존 낙후된 시설 개보수 추진
- 물류표준화 자금지원규모 확대 및 보조금 지급방안 강구
 - 현행 용자지원 방식에서 보조와 용자 병행지원 추진
- 물류장비 운용관련 제도 개선
 - 지게차 운전면허제도 개선

□ 추진시책

가. 유통시설의 물류진단을 통한 개보수 지원

- 대상시설 : 도매시장, 포장센터, 저온저장시설, 간이집하장 등
- 추진방안
 - 농산물유통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에 따라 자금지원

나. 물류기기·장비 보급 지원확대

- 농산물 운송, 보관, 하역 등과 관련된 기기, 장비 보급 확대
 - 지게차, 전동차, 컨베이어에서 선별기, 포장기, 스트레칭기 등 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물류장비 지원품목 확대
- 추진방안
 - 물류진단을 통해 물류효율화를 추진하는 유통시설 우선지원

다. 물류표준화 지원방식 개선 및 지원규모 확대

- 현 행
 - 소요금액의 80% 용자지원
 - 파렛트, 지게차, 전동차 등 물류기기별로 구분 지원
- 개선방안
 - 소요금액의 80% 지원하되 국고보조 20%, 지방비보조 20%, 국고용자 40% 지원
 - 물류기기별 지원방식에서 물류기기, 시설보완을 통합 지원하여 선택 범위 확대

라. 지게차 운전면허 제도 개선

- 현 행
 - 물류표준화 추진 지원으로 지게차의 보급이 확대되고 있으나 지게차는 특수운전면허증을 보유해야 운전가능하여 운전자 확보가 곤란함
- 개선방안
 - 건설교통부에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건의
 - 지게차 운전자격을 현행 특수운전면허 소지자에서 2종 보통 운전면허 자격증 소지자로 자격 완화
 - 지게차를 운전하고자 하는자는 2종보통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지게차 운전기능 강습 별도 이수

4. 추진과제 및 일정

예산이나 기금확보

- 농특회계에서 물류표준화 사업비 확대지원 및 국고보조 추진

농안법령 및 관련법규 개정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건의

□ 관련부처 협의

- 건설교통부와 지게차 운전면허제도 개선 협의

□ 추진일정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 '98년 하반기
- 예산지원 확대 및 지원방식변경 : '99년

5. 투융자 계획

□ 물류기기 및 시설보완 자금 지원

- 지원대상 : 공영도매시장, 포장센터, 물류센터, 저온저장시설, 간이집하장 등 산지, 소지비 유통시설
- 지원조건 : 국고보조 20%, 국고융자 40%, 지방비 20% 자부담20%
- 지원단가 : ('98) 8천만원 → (2000년부터) 2억원이내

(단위 : 백만원)

| 구 분 | | '97실적 | '98예산 | '99요구안 | '00-'02 | '03-'04 | 계 |
|-------------------|------|-------|-------|--------|---------|---------|---------|
| 시설 개 보 수 | 사업비계 | 8,750 | 7,225 | 15,000 | 90,000 | 100,000 | 220,975 |
| | 보 조 | - | - | 3,000 | 18,000 | 20,000 | 41,000 |
| | 융 자 | 7,000 | 5,780 | 6,000 | 36,000 | 40,000 | 94,780 |
| | 지방비 | - | - | 3,000 | 18,000 | 20,000 | 41,000 |
| | 자부담 | 1,750 | 1,445 | 3,000 | 18,000 | 20,000 | 44,195 |

< 참고 자료 >

1. 단위화물적재시스템(ULS) 통칙 제정내용

□ 용어의 정의

- 단위화물적재시스템이란 운송기술의 한 형태로 화물을 하나씩 따로 포장하여 하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역 및 운송에 적합한 단위로 조작하여 하역, 운송, 보관을 기계화하는 방식
 - 한개 또는 몇개의 물건을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일관해서 기계하역 안전하고 능률적인 수송 및 보관되도록 파렛트, 컨테이너 등을 사용하여 하나의 단위로 만듦

□ 추진목적

- 물류에 관련된 규격들이 부분적이고 각론적인 표준으로서만 제정되어 있고 조직적이고 종합적인 물류표준이 제정되지 못해 물류표준화를 위해 종합규격의 기본적인 ULS(Unit Load System)통칙 제정
 - 운반, 하역장비, 보관용 선반, 컨테이너, 시설 등의 규격을 통합하여 ULS통칙 제정
- 표준파렛트를 중심으로 한 적합성이 있는 물류기기의 규격체계를 정리하여 일관파렛트화 추진에 기여

□ 추진내용

- T-11(1,100×1,100mm)형 파렛트를 표준파렛트로 선정
- 일관수송과 관련 대상시설에 대한 규격 재조정

□ 제정기관 및 시행일 : 중소기업청('95, 12)

※ 주요 선진국의 표준파렛트 규격

- 유럽 : 1,200×1,000mm, 1,200×800mm
- 미국 : 1,219×1,016mm(48×40인치)
- 호주 : 1,140×1,140mm(컨테이너규격)
- 한국, 일본, 대만 : 1,100×1,100mm

2.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현황

가. 설치현황

□ 시·도별 현황

○ 시설별

(단위 : 개소)

| 구 분 | 광역시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계 |
|----------|------------|--------------|------------|------------|--------------|------------|------------|------------|------------|------------|--------------|
| 간이집하장 | 62 | 110 | 472 | 246 | 636 | 274 | 392 | 463 | 298 | 92 | 3,045 |
| 집하장 | 15 | 74 | 43 | 207 | 354 | 25 | 42 | 82 | 107 | 18 | 967 |
| 경매식집하장 | 4 | 4 | - | 3 | 1 | 5 | 3 | 22 | 33 | - | 75 |
| 저온창고 | 235 | 957 | 81 | 203 | 359 | 281 | 323 | 161 | 433 | 43 | 3,076 |
| 개량저장고 | 4 | 17 | 27 | 21 | 29 | 15 | 26 | 20 | 19 | 1 | 179 |
| 예냉시설 | - | 8 | 12 | 5 | 24 | 15 | 23 | 8 | 21 | 5 | 121 |
| 선과장 | 7 | 4 | 2 | 14 | 5 | 5 | 8 | 37 | 26 | 543 | 651 |
| 포장센터 | 2 | 3 | 6 | 1 | 7 | 6 | 8 | 8 | 6 | 1 | 48 |
| 청과물종합처리장 | - | - | - | - | - | - | 1 | 1 | 1 | - | 3 |
| 청과물유통시설 | - | 3 | 2 | 1 | 2 | 3 | 3 | 6 | 5 | - | 25 |
| 계 | 329 | 1,180 | 645 | 701 | 1,417 | 629 | 829 | 808 | 949 | 703 | 8,190 |

○ 개소당 평균시설규모

(단위 : 평)

| 구 분 | 광역시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평균 |
|-----------|-----------|-----------|-----------|-----------|-----------|-----------|------------|------------|------------|------------|-----------|
| 간이집하장 | 96 | 77 | 64 | 65 | 65 | 81 | 93 | 81 | 94 | 105 | 77 |
| 집하장 | 106 | 66 | 106 | 49 | 73 | 112 | 107 | 134 | 121 | 132 | 84 |
| 경매식집하장 | 207 | 257 | - | 314 | 178 | 221 | 182 | 156 | 168 | - | 181 |
| 저온창고 | 26 | 33 | 67 | 48 | 49 | 43 | 142 | 174 | 120 | 139 | 70 |
| 개량저장고 | 165 | 111 | 99 | 104 | 102 | 100 | 98 | 96 | 99 | 200 | 103 |
| 예냉시설 | - | 42 | 60 | 34 | 48 | 39 | 47 | 59 | 80 | 50 | 53 |
| 선과장 | 98 | 123 | 165 | 151 | 162 | 150 | 281 | 129 | 85 | 95 | 101 |
| 포장센터 | 417 | 253 | 361 | 180 | 350 | 241 | 426 | 358 | 368 | 241 | 345 |
| 청과물종합처리장 | - | - | - | - | - | - | 2,127 | 1,639 | 2,094 | - | 1,953 |
| 청과물유통시설 | - | 529 | 339 | 1,638 | 710 | 563 | 581 | 578 | 715 | - | 632 |
| 평균 | 50 | 43 | 72 | 61 | 66 | 70 | 121 | 117 | 118 | 100 | 82 |

□ 운영주체별 현황

○ 시설별

(단위 : 개소)

| 구 분 | 작목반 | 영농조합 | 영농회 | 농협 | 수협 | 영농회사 | 저장업체 | 가공업체 | 개인 | 기타 | 계 |
|----------|-------|------|-----|-------|----|------|------|------|-------|-----|-------|
| 간이집하장 | 1,272 | 342 | 699 | 654 | 38 | 9 | - | - | - | 31 | 3,045 |
| 집하장 | 438 | 82 | 149 | 222 | - | 1 | 4 | 3 | 47 | 21 | 967 |
| 경매식집하장 | - | - | - | 75 | - | - | - | - | - | - | 75 |
| 저온창고 | 291 | 277 | 71 | 245 | 2 | 4 | 258 | 35 | 1,801 | 92 | 3,076 |
| 개량저장고 | - | - | - | 179 | - | - | - | - | - | - | 179 |
| 예냉시설 | 6 | 97 | 1 | 4 | - | 4 | 1 | - | 2 | 6 | 121 |
| 선과장 | 351 | 39 | 2 | 54 | - | - | 3 | - | 8 | 194 | 651 |
| 포장센터 | - | 33 | - | 12 | - | - | - | - | - | 3 | 48 |
| 청과물종합처리장 | - | - | - | 2 | - | - | - | - | - | 1 | 3 |
| 청과물유통시설 | - | - | - | 25 | - | - | - | - | - | - | 25 |
| 계 | 2,358 | 870 | 922 | 1,472 | 40 | 18 | 266 | 38 | 1,858 | 348 | 8,190 |

○ 개소당 평균 시설규모

(단위 : 평)

| 구 분 | 작목반 | 영농조합 | 영농회 | 농협 | 수협 | 영농회사 | 저장업체 | 가공업체 | 개인 | 기타 | 평균 |
|----------|-----|------|-----|-------|-----|------|------|------|-----|-------|-------|
| 간이집하장 | 68 | 108 | 63 | 92 | 102 | 107 | - | - | - | 101 | 77 |
| 집하장 | 57 | 120 | 49 | 148 | - | 50 | 211 | 92 | 42 | 113 | 84 |
| 경매식집하장 | - | - | - | 181 | - | - | - | - | - | - | 181 |
| 저온창고 | 42 | 102 | 54 | 155 | 55 | 40 | 278 | 114 | 27 | 91 | 70 |
| 개량저장고 | - | - | - | 103 | - | - | - | - | - | - | 103 |
| 예냉시설 | 52 | 55 | 30 | 45 | - | 45 | 20 | - | 38 | 58 | 53 |
| 선과장 | 81 | 140 | 40 | 175 | - | - | 140 | - | 125 | 108 | 101 |
| 포장센터 | - | 342 | - | 381 | - | - | - | - | - | 233 | 345 |
| 청과물종합처리장 | - | - | - | 2,111 | - | - | - | - | - | 1,639 | 1,953 |
| 청과물유통시설 | - | - | - | 632 | - | - | - | - | - | - | 632 |
| 평균 | 65 | 111 | 60 | 134 | 100 | 75 | 274 | 112 | 27 | 108 | 82 |

나. 활용실적

□ 개소당 평균 활용일수

○ 시설별

(단위 : 일수)

| 구 분 | 광역시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평균 |
|-----------|-----|-----|-----|-----|-----|-----|-----|-----|-----|-----|-----|
| 간이집하장 | 125 | 129 | 173 | 158 | 170 | 141 | 171 | 131 | 141 | 200 | 158 |
| 집 하 장 | 134 | 136 | 177 | 129 | 163 | 203 | 184 | 159 | 165 | 189 | 156 |
| 경매식집하장 | 140 | 209 | - | 173 | 240 | 212 | 215 | 168 | 182 | - | 181 |
| 저 온 창 고 | 111 | 178 | 175 | 150 | 168 | 177 | 181 | 230 | 196 | 192 | 175 |
| 개 량 저 장 고 | 224 | 234 | 213 | 243 | 194 | 225 | 204 | 202 | 162 | 120 | 208 |
| 예 냉 시 설 | - | 238 | 195 | 186 | 231 | 174 | 219 | 222 | 187 | 190 | 207 |
| 선 과 장 | 154 | 146 | 180 | 134 | 144 | 66 | 115 | 153 | 103 | 123 | 124 |
| 포 장 센 타 | - | - | 212 | 55 | 269 | 238 | 113 | 170 | 50 | 118 | 163 |
| 청과물종합처리장 | - | - | - | - | - | - | - | - | - | - | - |
| 청과물유통시설 | - | 77 | 235 | 98 | 233 | 45 | 85 | 56 | 57 | - | 91 |
| 평 균 | 117 | 174 | 176 | 149 | 169 | 164 | 177 | 161 | 170 | 137 | 164 |

○ 운영주체별

(단위 : 일수)

| 구 분 | 작목반 | 영농조합 | 영농회 | 농협 | 수협 | 영농회사 | 저장업체 | 가공업체 | 개인 | 기타 | 평균 |
|-----------|-----|------|-----|-----|-----|------|------|------|-----|-----|-----|
| 간이집하장 | 155 | 174 | 143 | 169 | 213 | 164 | - | - | - | 155 | 158 |
| 집 하 장 | 143 | 181 | 136 | 192 | - | 100 | 203 | 150 | 106 | 213 | 156 |
| 경매식집하장 | - | - | - | 181 | - | - | - | - | - | - | 181 |
| 저 온 창 고 | 160 | 194 | 156 | 235 | 190 | 103 | 238 | 251 | 156 | 200 | 175 |
| 개 량 저 장 고 | - | - | 180 | 208 | - | - | - | - | - | - | 208 |
| 예 냉 시 설 | 252 | 201 | 240 | 210 | - | 170 | 350 | - | 150 | 236 | 207 |
| 선 과 장 | 125 | 144 | 165 | 136 | - | - | 193 | - | 117 | 114 | 124 |
| 포 장 센 타 | - | 172 | - | 153 | - | - | - | - | - | 140 | 163 |
| 청과물종합처리장 | - | - | - | - | - | - | - | - | - | - | - |
| 청과물유통시설 | - | - | - | 91 | - | - | - | - | - | - | 91 |
| 평 균 | 149 | 183 | 143 | 187 | 212 | 144 | 237 | 243 | 155 | 148 | 164 |

□ 개소당 평균 취급실적

○ 시설별

(단위 : 톤)

| 구 분 | 광역시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평균 |
|-----------|-------|-------|-------|-------|-------|-------|-------|-------|-------|-------|-------|
| 간이집하장 | 1,032 | 461 | 286 | 341 | 454 | 256 | 895 | 497 | 566 | 2,123 | 525 |
| 집 하 장 | 4,225 | 791 | 1,535 | 278 | 732 | 3,508 | 2,200 | 2,347 | 1,736 | 2,592 | 1,135 |
| 경매식집하장 | 4,187 | 2,616 | - | 1,813 | 5,320 | 2,429 | 4,055 | 4,437 | 7,153 | - | 5,294 |
| 저 온 창 고 | 436 | 159 | 615 | 352 | 485 | 428 | 1,467 | 2,210 | 869 | 843 | 621 |
| 개 량 저 장 고 | 195 | 345 | 344 | 329 | 78 | 229 | 236 | 275 | 161 | 150 | 242 |
| 예 냉 시설 | - | 151 | 587 | 488 | 496 | 625 | 282 | 613 | 1,092 | 86 | 557 |
| 선 과 장 | 2,922 | 205 | 1,975 | 1,110 | 1,410 | 1,340 | 7,585 | 1,188 | 543 | 1,072 | 1,161 |
| 포 장 센 타 | - | - | 1,372 | 385 | 1,701 | 826 | 1,343 | 513 | 319 | 2,316 | 971 |
| 청과물종합처리장 | - | - | - | - | - | - | - | - | - | - | - |
| 청과물유통시설 | - | 458 | 1,750 | 477 | 1,351 | 212 | 233 | 158 | 192 | - | 452 |
| 평 균 | 780 | 230 | 435 | 348 | 538 | 512 | 1,234 | 1,244 | 1,074 | 1,193 | 730 |

○ 운영주체별

(단위 : 톤)

| 구 분 | 작목반 | 영농조합 | 영농회 | 농협 | 수협 | 영농회사 | 저장업체 | 가공업체 | 개인 | 기타 | 평균 |
|-----------|-----|-------|-------|-------|-------|------|-------|------|-------|-------|-------|
| 간이집하장 | 370 | 636 | 241 | 964 | 2,553 | 316 | - | - | - | 482 | 525 |
| 집 하 장 | 575 | 1,830 | 387 | 2,584 | - | 150 | 1,065 | 340 | 240 | 2,471 | 1,135 |
| 경매식집하장 | - | - | - | 5,294 | - | - | - | - | - | - | 5,294 |
| 저 온 창 고 | 297 | 1,028 | 407 | 1,745 | 200 | 169 | 2,200 | 964 | 244 | 494 | 621 |
| 개 량 저 장 고 | - | - | - | 242 | - | - | - | - | - | - | 242 |
| 예 냉 시설 | 233 | 640 | 1,280 | 155 | - | 212 | 120 | - | 201 | 310 | 557 |
| 선 과 장 | 682 | 2,466 | 370 | 1,809 | - | - | 1,713 | - | 1,110 | 1,597 | 1,161 |
| 포 장 센 타 | - | 1,021 | - | 895 | - | - | - | - | - | - | 971 |
| 청과물종합처리장 | - | - | - | - | - | - | - | - | - | - | - |
| 청과물유통시설 | - | - | - | 452 | - | - | - | - | - | - | 452 |
| 평 균 | 451 | 986 | 280 | 1,509 | 2,406 | 245 | 2,170 | 915 | 247 | 1,234 | 730 |

□ 주 취급품목

○ 운영주체별

(단위 : 개소)

| 구 분 | 작목반 | 영농조합 | 영농회 | 농협 | 수협 | 영농회사 | 저장업체 | 가공업체 | 개인 | 기타 | 계 |
|------|-------|------|-------|-------|----|------|------|------|-------|-----|-------|
| 과실류 | 1,084 | 369 | 280 | 585 | - | 6 | 118 | 7 | 1,238 | 268 | 3,955 |
| 채소류 | 1,123 | 413 | 602 | 925 | 2 | 8 | 202 | 17 | 429 | 58 | 3,779 |
| 식량작물 | 124 | 52 | 160 | 282 | - | 4 | 8 | 1 | 26 | 14 | 671 |
| 기 타 | 290 | 162 | 84 | 214 | 38 | 2 | 30 | 20 | 275 | 49 | 1,164 |
| 계 | 2,621 | 996 | 1,126 | 2,006 | 40 | 20 | 358 | 45 | 1,968 | 389 | 9,569 |

주) 기타 : 화훼류, 특용작물, 약용작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 등

○ 시설별

(단위 : 개소)

| 구 분 | 간이- 집하장 | 집하 장 | 경매식 집하장 | 저온- 저장고 | 개량- 저장고 | 예냉 시설 | 선과 장 | 포장 센터 | 청과물 종합- 처리장 | 청과물 유통- 시설 | 계 |
|------|------------|---------|------------|------------|------------|----------|---------|----------|-------------------|------------------|-------|
| 과실류 | 944 | 357 | 23 | 1880 | 51 | 12 | 637 | 27 | 3 | 21 | 3,955 |
| 채소류 | 1978 | 582 | 47 | 947 | 63 | 101 | 22 | 23 | 2 | 14 | 3,779 |
| 식량작물 | 415 | 74 | - | 75 | 91 | 4 | 1 | 8 | - | 3 | 671 |
| 기 타 | 437 | 111 | 8 | 541 | 31 | 22 | 4 | 9 | - | 1 | 1,164 |
| 계 | 3,774 | 1,124 | 78 | 3443 | 236 | 139 | 664 | 67 | 5 | 39 | 9,569 |

3. 일본의 지게차 운전면허 자격범위

□ 지게차의 형태상 분류

산업차량으로 분류되며, 소형특수자동차와 대형특수자동차로 구분됨

□ 소형특수자동차와 대형특수자동차의 구분

| 구분 | 소형특수자동차 | 대형특수자동차 |
|------|------------|-------------------------------------|
| 전장 | 4,700mm 이하 | 소형특수차 경우 제한범위 어느 하나라도 초과하면 대형특수차로 됨 |
| 전폭 | 1,700mm 이하 | |
| 전고 | 2,000mm 이하 | |
| 최고속도 | 15km/h 이하 | |
| 배기량 | 1,500cc 이하 | |

□ 운전자격 범위

| 구분 | 소형특수차 | | 대형특수차 | |
|------|----------------------------------------------------------|---------------|------------------------|---------------|
| | 공공도로 주행합 | 공공도로 주행안합 | 공공도로 주행합 | 공공도로 주행안합 |
| 운전자격 | 지게차운전기능강습 수료증 과 소형특수면허·보통면허, 2종면허중 어느 하나 또는 대형면허, 대형특수면허 | 지게차운전기능강습 수료증 | 지게차운전기능강습 수료증 과 대형특수면허 | 지게차운전기능강습 수료증 |

□ 소형특수차 및 대형특수차 등록에 필요한 서류수속

< 소형특수차 >

- (서류만 제출)
 시, 구, 동 사무소에 신청
 · 소형특수자동차 신청서
 (경자동차세 신청서 및 소형특수차 표시교부 신청서)
 · 신청인(소유자)의 소재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 대형특수차 >

- 차량과 함께 등록
 육운지국 또는 자동차 검사 등록사무소에
 · 신규등록 신청서
 · 자동차 보관장소 증명서(차고 증명)
 · 인감증명서
 ·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 증명서
 · 양도증명서
 · 위임장
 · 자동차 중량세 납부서
 · 방범카드
 · 수수료 납부 통지서

2-3 GIS, GPS를 활용한 농산물 운송효율화 방안

1. 현 황

- 농산물 운송차량은 농협등의 자가차량 또는 개별화물차량을 이용하여 도매시장 등에 출하
 - 출하자가 출하처를 미리 정하여 차량 이용하고 운송료 지불
 - 농산물 수송차량 대부분이 정보망 미흡으로 공차율이 높고 시장 정보 미제공

- 최근 통신망 발달로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PS(Gloval Positioning System) 활용분야 다양화 추세
 - 건교부에서 종합물류정보전산망 구축 추진('95년부터)
 - 한국통신 등이 통신, 교통, 상하수도 분야에 GIS 도입
 - 한국통신에서 화물운송정보(CVO : Commercial Vehicle Operation) 서비스 상용화 완료 예정
 - 한국도로공사, 서울시 개별화물운송조합 등이 화물운송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통신업체와 GPS 도입 추진중
 - 포스테이타, 농심에서 GPS를 이용한 선박·차량 관리 실시

- 미국등 선진국에서는 교통관제와 함께 화물차량 운송에 GIS, GPS를 광범위하게 운용
 - 미국은 '89년 도입한 이래 15만대 이상이 GPS 단말기 설치(추정)

- 농산물유통정보망 발달로 다양한 정보 분산실시
 - 도매시장전산망 구축등으로 농산물유통정보 분산가능

2. 개선 필요성

□ 문제점

- 농산물 수송의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여 출하상황 파악곤란 및 공차율이 높아 물류비 과다
- 교통체증 등 물류환경 악화로 운송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신선도가 저하되고 일부 경매시간 후 도착으로 출하자 피해 발생
 - 경매에 의한 도매시장체제에서는 정시도착이 필수
- 산지 및 소비지 유통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으로 생산자와 대형수요처간 효율적인 수송체계 마련 필요
 - 농협 운송차량간 또는 개별화물차량의 연계로 규모화 촉진
- 농산물가격정보망 확충과 동시에 정보를 출하자에게 신속히 전달하는 체계 미비로 가격 불안정
- 공산품, 서비스분야에 활용되는 첨단운송시스템을 농산물 분야에 적용하여 운송효율화 및 서비스개선 필요

□ 여건 변화

- 농산물유통개선으로 산지와 소비지에 포장센터, 물류센터, 도매시장 등 유통시설이 확충됨에 따라 체계적인 농산물 운송 필요
-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농산물 유통정보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선진국의 GIS, GPS 기술이 국내에 도입되어 상용화 단계
 - 한국통신 등 통신업체와 화물운송업체간의 GPS를 이용한 수송체계 구축 활발
 - 민간업체에서는 GPS를 이용한 자체시스템 구축 상용화

3. 개선 방안

□ 대안 제시

- 제 1 안 : 한국통신의 화물운송정보시스템(CVO) 활용
- 제 2 안 : 농산물 운송정보시스템 별도구축

| 안 별 | 장 점 | 단 점 |
|-------|---------------------------------------------------------------------------------------------------------------------------------------------------------------------------------------------------------------------------------------------------------------------------------------------------------------------|----------------------------------------------------------------------------------------------------------------------------------------------------------------------------------------------------------------------------------------|
| 제 1 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 시스템 구축 불필요로 투자비용 저렴 ○ 타분야와 연계 가능으로 양방향 수송 가능 ○ 운영비 등 부대비용 절감 가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 분야 부가서비스 제공 제약 ○ 공용에 따른 농산물 특성 적용 곤란 예상 |
| 제 2 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분야 활용도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송분야에서 타분야로 확대적용 용이 ○ 농산물 특성을 감안한 부가서비스 제공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 유통시설 현황, 작황정보, 가격정보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스템 구축에 대한 막대한 예산 소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중투자로 국가적 낭비 요인 ○ 공산품수송, 서비스분야와 상호연계 제약 ○ 이용자수 제한으로 경제성 저하 |

□ 우리의 여건

- 국가종합물류정보망 사업의 일환으로 CVO(화물운송정보시스템) 등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어 GIS, GPS의 상용화 단계
- 정보통신업체에서 GIS, GPS를 적용한 서비스를 다양하게 구축중
- 전국산지유통인연합회에서 GPS를 이용한 차량위치확인시스템 시범 도입 예정
- 그러나 화물운송업자나 농산물 유통종사자의 인식 부족으로 농산물분야의 적용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 개선(안)

- 농산물분야에 GPS 도입은 중·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하되 개별 시스템 구축보다 한국통신의 CVO와 연계 활용방안 강구

< 사유 >

- 농산물 전문운송업체가 없고, 농협이 운송차량을 보유(약 4,800대)하고 있으나, 전문 운송체계를 갖추지 못한 회원조합 개별 소유형태임
- 국내에서 화물운송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나, 초기단계이며 무궁화위성, 무선통신망, PCS 등 사용방법에 따른 효율성 비교분석 곤란
- 국내 단말기 생산업체가 없어 IMF 영향으로 가격 상승
 - PCS에 GPS기능을 포함하는 단말기를 국내 개발중
- 건교부(한국통신)에서 추진하는 국가종합물류정보망을 이용하는 것이 국가 전체적으로 이익이 되고 비용과 시간면에서 유리

4. 추진 계획

□ 추진 방향

- 정부물류정보망과 연계한 농산물화물운송정보시스템 구축
 - 공산품 및 서비스 분야와 농산물운송을 연계
- 농협 단독 또는 합작으로 별도의 운송회사 설립 추진

□ 주요 추진시책

- 화물운송정보시스템을 농산물분야에 활용하는 방안 마련
 - 현장애로 기술개발 연구과제 또는 용역 실시
- 농산물 CVO사업 시범실시
 - 운영주체 : 농협중앙회
 - 대상차량 : 농협중앙회 회원 소유 차량
- 시범사업 실시결과와 건교부의 종합물류정보망 구축 성과를 비교·분석하여 최선의 방안 선택 추진

5. 추진과제 및 일정

□ 예산 확보

- 농산물 CVO 구축방안 용역 및 시범사업 추진비 확보 : 3억원
 - 용역비 : 2억원
 - 시범사업비 : 1억원
 - 1,000대(차량) × 1백만원(단말기 비용의 50%)
- 농산물 CVO 구축 사업비 확보 : 4억원

□ 추진일정

- 연구용역 및 시범사업 실시 : '99년
- 농산물화물운송체계 구축 : 2000년

□ 관계부처 협의

- 국가종합물류정보망 활용 계획 협의
 - 협의 대상기관 : 건설교통부, 한국통신

6. 투융자계획

(단위: 백만원)

| 구 분 | '97실적 | '98예산 | '99요구안 | '00-'02 | '03-'04 | 계 |
|--------|-------|-------|--------|---------|---------|-------|
| 사업량(대) | - | - | 1,000 | 4,000 | - | 5,000 |
| 사업비계 | - | - | 300 | 800 | - | 1,100 |
| 국고보조 | - | - | 300 | 400 | - | 700 |
| 국고융자 | - | - | - | - | - | - |
| 지방비 | - | - | - | - | - | - |
| 자부담 | - | - | - | 400 | - | 400 |

※ 농협 소유 차량에만 지원시 산출금액임(민간에 지원시 별도계상)

< 참고자료 >

1. GIS · GPS 현황

가. 지리정보시스템(GIS :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 개념

- GIS는 지리정보시스템이라고 하며 종이로 만든 지도를 전산화 후, 토지, 자원, 사회간접시설 및 각종 통계자료 등을 전산화된 지도위에 체계적으로 입력하여 통합관리하고 이를 활용하는 의사결정체계
- 국토 계획에서부터 도시계획, 수자원, 통신운송망, 토지, 환경생태, 지하매설물 등 국가가 소유한 모든 자원 및 공간정보를 컴퓨터로 관리하는 종합공간정보관리시스템

□ 도입목적

- 도면관리, 업무의 효율화 · 고도화, 시설의 최적화, 서비스개선

□ 연혁

- 캐나다 : 1960년대에 1/50,000의 토지이용 데이터 작성이용
- 미 국 : 1970년 국세조사에 DIME를 개발 이용한이후 상무국에서 개발한 ACG(Address Coding Guide)가 통계조사, 재산조사에 사용되는 등 각 분야에서 매우 발달.

□ GIS 응용분야

- 시설물관리, 토지정보, 교통, 수도, 통신, 소방, 경찰정보 등

□ 농산물 분야 도입 가능예

- 농경지 분포도 및 농지이용 현황도
- 농산물유통시설 현황도
- 농작물의 생육상태 관찰 및 삼림의 분포상태 파악 등

나. 지상위치 탐색 시스템(GPS : Global Positioning System)

□ 개념

- GPS는 지상위치탐색시스템이라고 하며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차량등의 위치를 파악하는 시스템
- GPS의 차량위치 식별기능을 활용하여 시점(Real time)정보와 각종 응용서비스를 제공
 - ※ GPS와 GIS를 결합하는 장치를 개발 상용화 추세

□ 도입목적

- 인공위성을 활용하여 운송차량의 위치 등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수요자의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고 공차율을 낮추는 등 운송의 효율화로 물류비 절감

□ 연 혁

- 1970년대 미국 국방부에서 군사용으로 개발, 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치추적시스템
- 우리나라는 무선데이터통신망, GIS, 수치지도 등 관련 기반시설 미구축으로 사용이 없었으나 최근에 다양한 응용시스템 개발 사용

□ GPS 응용분야

- 화물차량 관제시스템
- 차량 항법시스템(CNS)
- 버스 도착시간 자동안내시스템
- 위성 항법시스템(GPS, GNSS)

□ 농산물분야 도입 가능 예

- 농산물 운송차량 위치확인시스템

2. GIS · GPS 운용사례

가. 국가지리정보체계(NGIS) 구축

□ 개 념

- 지도를 전산화한 후 토지, 자원, 사회간접시설 및 각종 통계자료등을 전산화된 지도위에 체계적으로 입력하여 국가가 소유한 모든 자원 및 공간정보를 컴퓨터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 및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

□ 추진기간 및 소요예산 : 1995 ~ 2000, 2,802억원

□ 추진체계 및 역할

| 조 직 | 주관기간 | 업 무 내 용 | 비 고 |
|----------|-------|------------------|------------|
| GIS추진위원회 | 건설교통부 | 기본계획수립,평가, | 재경원, 농림부 등 |
| 민간자문위원회 | 건설교통부 | 위원회 자문역할 | 민간 15인 |
| 총괄분과위 | 건설교통부 | 기본설계,시범체계 개발등 | 국토개발원,과천시 |
| 지리정보분과위 | 건설교통부 | 지형도, 지하매설물 수치지도화 | 국립지리원 |
| 기술개발분과위 | 과학기술처 |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 |
| 표준화분과위 | 정보통신부 | 기본도 데이터 표준화 | 한국전산원 |
| 토지정보분과위 | 내 무 부 | 지적도 전산화 사업 | |

□ 추진실적

- 지형도 수치지도화 제작 완료 및 공통주제도의 수치지도화 시범 제작
- GIS 기술도입 또는 자체기술 독자개발 병행추진
- 공공목적의 GIS 활용 체계 개발 추진 ('97년부터 시범지역 실시)

□ 향후 추진계획

- 수치지도 제작완료 및 보완작업 실시, 공통주제도 '99년 완료 예정
- 각 기관별 공공목적의 GIS기술 활용체계를 개발하여 다양하게 활용
- NGIS체계 완료는 2000년 이후가 될 전망

나. 화물운송정보(CVO : Commercial Vehicle Operation) 서비스

□ 목 적

- 운행중인 화물차량, 선박의 현재위치, 화물의 종류, 화물량 및 현업무상황 등을 실시간 파악
- 차량, 선박과 센터간의 필요한 정보를 고신뢰도의 무선통신망을 이용하여 상호교신으로 운행효율 증진
 - ※ '95년부터 건교부에서 추진중인 종합물류정보전산망의 일환으로 전담사업자인 한국통신에서 추진중

□ 추진기간 : '95 ~ 2005

□ 추진실적

- 화물 및 화물차량 관리('98년 상용화 완료)
- 화물차량 전자통관, 위험물차량 관리(2000년 완료예정)
- 노변자동검색(2001~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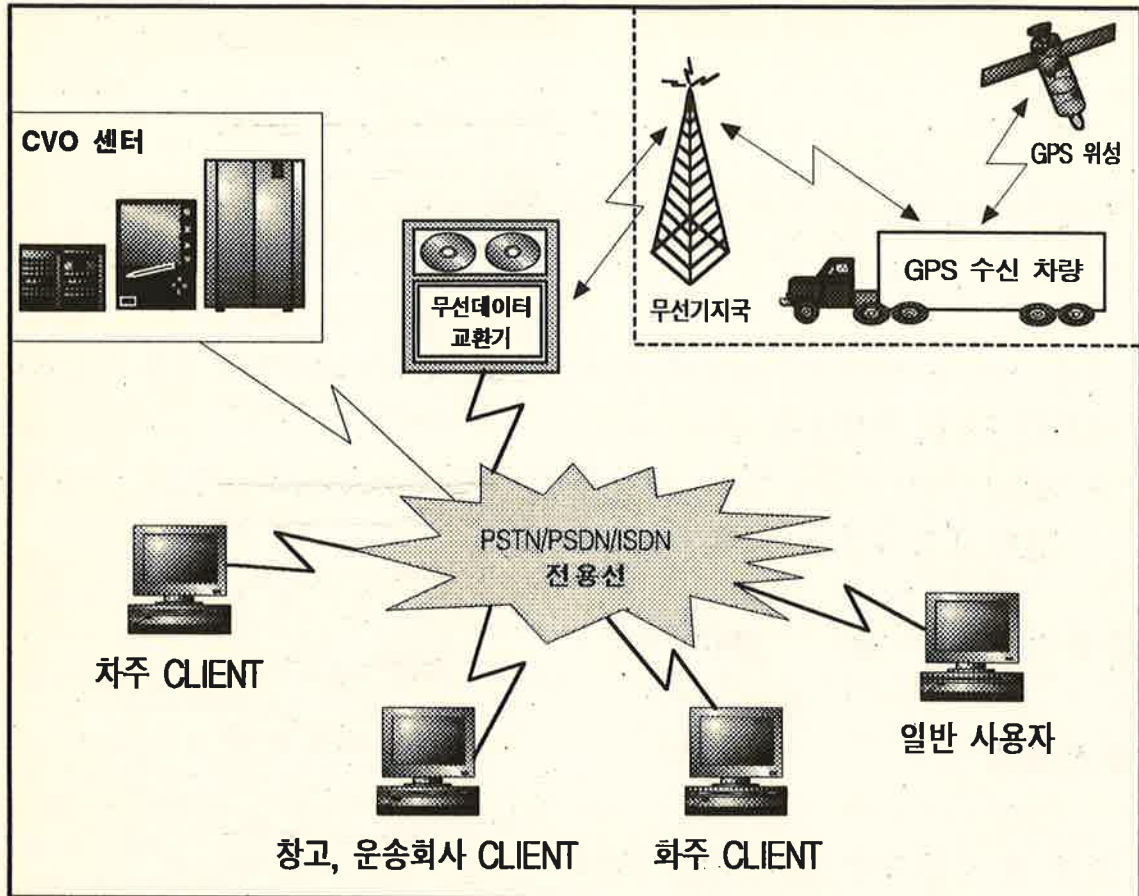
□ 효과

- 화물 및 화물차량의 효율적 관리로 물류비 절감
- 정보체계에 의한 최적노선 선택과 최단거리 운송에 따른 시간 및 비용절감
- 과적 위반차량 근절 및 교통사고 감소, 안전성 향상

□ 활용분야

- 운송업체 : 최적 수·배송 노선지시, 차량운행 상황 파악
- 화주 : 화물 및 화물차량의 실시간 위치정보 파악

□ CVO 추진 개념도



□ 종합물류정보망 서비스 소요비용

- 무궁화위성 사용시
 - 차량단말기 : 500만원, 정보이용료, 위성망사용료 : 6만원/월
- 무선데이터 사용시
 - 차량단말기 : 150~200만원
 - 정보이용료, 무선데이터사용료 : 4만원/월
- PCS 사용시
 - 차량단말기 : 40만원, 정보이용료, PCS사용료 : 미정
- TRS 사용시
 - 차량단말기 : 150만원
 - 정보이용료, TRS사용료 : 35천원/월('99년 서비스실시 예정)
- GPS 위성 사용시
 - 차량단말기 : 150~200만원(별도시스템 구축필요)
 - 정보이용료, 사용료 : 현재는 무료

다. 지능형 교통시스템 시범사업

□ 목 적

- 지능형교통시스템(ITS : Intelligent Transport System)은 교통체계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존의 교통체계에 전자, 정보, 통신, 제어 등의 첨단기술을 접목시켜 교통관리, 교통정보제공, 대중교통 및 화물차량의 운영에 이르기까지 교통 전분야에 걸쳐 신기술을 응용한 과학적인 교통시설의 운영·관리를 통해 날로 심화되고 있는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신속, 안전, 쾌적한 교통체계 구현이 목표

□ 추진기간 : '94 ~ '97

□ 실시지역 : 과천시

□ 시범사업 내용

- 구 간 : 인덕원~과천~사당사거리/양재사거리
- 제공서비스 : 교통량 감응 신호체계, 버스도착 안내, 버스노선 안내, 도로 소통정보 안내, 주행 안내, 과적차량 자동계중, 통행료 및 주차요금 자동 징수 등
- 진행 상태 : 교통량 감응 신호체계, 도로교통 정보안내 등 일부 완공 실시중

□ 향후 추진 계획

- ITS 국가기본 계획 수립 추진
- 수도권 도로교통정보시스템 구축

※ ITS 국가기본계획의 일환으로 과천시 지역 시범 실시

라. 농산물 수송차량 위치 확인시스템

□ 목 적

- 농산물 경쟁력 제고와 상품성 유지를 위한 물류체계 개선
- 수요자인 수집상이 원하는 시간에 가장 가까이 있는 차량을 호출 배차함으로써 운송의 효율화 도모
- 운송중에도 각 도매시장 농산물 가격정보를 수집·분석 전달함으로써 농산물 집중 방지 및 효율적 분산 역할로 가격안정
- 차량의 공차율을 낮추어 운송 비용 절감

□ 운영주체 : 전국산지유통인연합회

- 농산물 전문 운송사업단 발족에 따른 운송능률 극대화를 위해 도입

□ 운송차량

- 5톤트럭 250대, 윙바디차량 50대, 냉동차량 30대
- 고려운송('97)과 임차계약

□ GPS 시설

- 중앙관계 센터설치, 차량단말기 설치((주)신화 TGPS시스템 이용)

□ 문 제 점

- 유통정보체계 미구축으로 살아있는 정보 전달부족
- 이론상 기대효과보다 실제효과가 미흡하여 경제성 저하
- 냉동탑차에 의한 신선농산물의 경락가격이 일반농산물과 동일하여 추진 효과 감소, 도매시장에서 파렛드 적재하역 기반 취약도 한 요인

□ 현재 추진상태

- '97년 시범추진하였으나 정보제공 제약등으로 중단하고 '98년 정일 운수와 40대 계약하여 재추진 예정

마. 차량항법시스템(CNS : Car Navigation Sytem)

□ 목 적

- 차량의 현재위치, 목표위치, 차량속도 등을 화면을 통해 보여줌으로써 운전자의 안전과 편의도모

□ 기 능

- GPS 수신기를 이용해 수신된 위치 정보를 GIS SW와 결합하여 차량의 위치와 가고자 하는 목표 위치를 모니터상의 전자지도에 표시해주는 장치

□ 추진실적

- 현대전자와 핵심텔레텍이 CNS를 개발 상품화 완료
- 쌍용정보통신도 개발 완료하는 등 5개업체가 상용화 단계

□ 향후전망

- 현재는 전자지도를 모니터상에 보여주는 정도에 불과, 향후는 GPS 수신기가 소형·저가격화되면서 GPS수신기능이 포함된 제품으로 발전 추세

바. 차량위치 추적시스템(AVLS: Automatis Vehicle Location System)

□ 목 적

- 수요자의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고 차량의 공차율을 낮추는 등 최근 급증하는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함

□ 기 능

- GPS수신로 파악된 차량의 위치정보를 무선데이터망이나 TRS망을 통해 중앙센터로 보내 차량의 현위치를 전자지도상에 표시해주는 장치

□ 추진실적

- 서울TRS와 통익정보통신시스템이 '98. 2. 시연회 개최

□ 향후전망

- 현재의 AVLS는 GPS수신기와 자사통신 단말기를 함께 판매하는 정도에 불과하지만 향후는 통신단말기에 GPS수신기를 내장하여 상용화될 전망

사. 화물 운송 정보시스템

□ 목 적

- 화물운송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운송비용 절감효과, 공차율 대폭감축

□ 추진내용

- 서울시 개별화물 사업조합은 운송비 절감을 위해 9천여대의 개인 화물차에 인공위성으로 위치확인 가능한 화물운송 정보시스템 구축
- 관제센터 설치 및 40대의 화물차에 수신용단말기 설치 시범운영

□ 문 제 점

- 단말기 외국에서 수입 및 차량 1대당 140만원의 시설비 부담

□ 현재 추진 상태

- 서울시와 운송조합이 작년부터 가입을 종용하였으나 현재 40명만 가입한 상태

아. 도시정보시스템(UIS : Urban Information System)

□ 목 적

- 도시의 지형공간과 시설물, 도로, 지하매설물(상하수도, 가스관, 전화·전력선 등)을 데이터화하여 컴퓨터에 입력관리함으로써 체계적 도시 계획 수립·관리와 안전성 향상 및 서비스 개선도모

□ 추진내용

- 대구시 : 국내 최초로 UIS 구축완료
- 서울시 : 서울시정연구개발원에서 추진중('98말 완료 예정)

□ 대구시 활용사례

- UIS도면을 통신업자, 지하매설물업자에게 판매
- 지하매설물 굴착업자는 UIS도면을 구입하여 공사내용을 기록한 후 관공서 제출 의무화(조례)

3. GIS · GPS를 활용한 영화 소개

□ 제목 : 어쌔신(ASSASSINS)

○ 감독 : 리차드 도너

○ 주연 : 실베스타 스텔론, 안토니오 반데라스

○ 내용

- 스텔론은 얼굴없는 지령자로부터 컴퓨터를 통해서 사건을 청탁받고 거금을 받는 최고의 전문 청부살인업자.

어느날 공동묘지 장례식에 참석하는 억만장자를 살해하라는 청탁을 받고 현장에 갔으나 다른 살인자가 먼저 살해하고 도주하다가 경찰에 체포되는 것을 목격한다.

그 살인자가 호송도중 경찰을 죽이고 탈출하자 스텔론은 택시를 탈취하여 살인자를 태우고 도망가면서 자기가 계약한 사건을 가로챈 경우를 따지면서 다투지만 두사람은 과거부터 청부살인업자로서 경쟁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스텔론은 살인자를 택시에 내려버리고 도주하는데 경찰이 추적한다. 스텔론은 영업용 택시의 자동항법장치(GIS를 이용한)가 표시하는 『차량기지』로 차를 몰아 똑같은 형태의 수많은 택시속으로 사라진다.

차량과 헬기를 이용하여 추적하던 경찰은 차량기지에서 목표물을 놓치고 스텔론은 다른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유유히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는데 성공하고 청부살인업자로서 더 큰 사건을 맡아 거금을 손에 넣는다. 끝

□ 제목 : 클리프 행어(Cliffhanger)

○ 감독 : 데니 할린

○ 주연 : 실베스타 스텔론, 잔 리스코우

○ 내용

- 미 재무성은 거액의 1천불짜리 지폐를 항공기를 이용하여 비밀장소로 운반하는데 재무성관리와 깡단이 결탁하여 비행기를 공중에서 납치, 3개의 돈가방을 탈취하려다 돈가방은 험악한 눈덮인 산속으로 떨어져 잃어버리고 깡단의 비행기는 산속에 겨우 비상착륙한다.

깡단은 산악구조대에 구조를 요청하고 스텔론은 동료와 같이 구조에 나서지만 깡단에게 납치되어 산악 길잡이로 이용되어 험악한 산속에서 돈가방을 찾아나선다.

GPS를 이용한 위치추적장치로 위치를 확인한 깡단은 산악구조대를 앞세워 첫 번째 돈가방을 찾는데 성공하나, 스텔론은 탈출하고 돈을 산속에 날려버린다.

두 번째 돈가방을 찾기위하여 스텔론과 깡단이 대결을 벌이나 스텔론이 먼저 찾아 눈덮인 산속에서 밤에 보온을 위한 불쏘시개로 사용한다.

마지막 남은 한 개의 가방을 찾기위하여 치열한 싸움이 전개되지만 스텔론이 한 발 앞서 돈가방을 찾고, 가방속의 추적장치 단말기를 토끼 몸에 매달아 깡단을 유혹한다.

추적장치를 통해 돈가방을 찾던 깡단은 토끼의 움직임에 혼동되어 스텔론에게 처치되고 돈가방은 재무성에 전달된다. 끝

1. 현 황

□ 현행제도

- 콜드체인시스템 도입을 위한 정책적인 마스터플랜이 없이 정책부서 간에 개별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음.
- 콜드체인시스템의 적극적인 보급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이 산지시설에만 부분적으로 적용되고 있을 뿐 소비지시설에 대해서는 정책상의 지원이 미비함.

□ 추진실적

- 1996년말 현재 121개소 예냉시설(6,000여평) 설치 운영중
(시설채소유통지원사업, 포장센타사업의 일환)
- 예냉시설 표준설계도 및 지침서 보급중(채소특작과,한식연)
- 물류표준화사업의 일환으로 콜드체인시스템 구축방안 검토 (1997)

2. 개선필요성

□ 문제점

- 농산물의 신선도제고, 출하조절, 안전성확보를 위해 조기 도입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콜드체인시스템 도입을 위한 마스터 플랜 없이 정책부서간에 독립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져 시설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파급효과가 저조함.
- 콜드체인시스템 도입을 위해서는 생산지의 예냉, 저장, 수송시설과 함께 소비지 도매시장, 물류센타 및 소매점에서의 저온시설이 병행되어야 함에도 특히 소비지 시설 구축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미흡함.

- 포장센터, 물류센터등 유통시설의 신규 설치시 콜드체인시스템 구축을 대비한 시설의 계획적인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향후 콜드체인시스템 도입시 재투자를 해야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음.
- 기반시설 구축과 함께 운용기술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시설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정책자금으로 지원되는 시설중 표준 모델이 없이 예산만 지원하는 사례가 있어 효율적인 설치가 미흡함.

□ 여건변화

- 국민 소득 증대에 따라 식습관의 고급화, 안전성 추구, 편의성 추구에 따라 고품질 농산물의 요구가 급증하고, 아울러 수입 농산물에 대한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품질 우위에 의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콜드체인시스템의 조기 도입이 요구됨.
- 산지직거래 시스템 도입과 물류비 감소를 위한 공동출하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선도유지와 출하기능을 부여할 수 있는 콜드체인 시스템 도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 특히 신유통체계하에서 출하조절기능을 구비함으로써 농산물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산지예냉과 저온유통에 의한 홍수 출하시의 비축기능이 필수적임.

3. 개선방향

□ 대안제시

- 콜드체인시스템 도입을 위한 생산지시설과 소비지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구축, 운용 계획 수립 필요(마스터플랜)
-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관련 사업예산의 확보
- 효율적인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시범연수시설의 설치 및 운영필요
- 시설의 보급과 함께 운영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함께 보급함으로써 조기정착 및 활성화 기대

- 콜드체인시스템의 파급 효과의 극대화를 기하기 위한 단계적 도입의 경제성있는 모델 마련
- 관련기반시설의 보급시 표준모델의 도입과 함께 전문기관의 기술 검토와 지원을 반드시 거침으로서 시행착오 최소화 및 효율적인 정착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개선안 및 그 효과

| 현 행 | 개 선 안 | 효 과 |
|-----------------------------------|-----------------------------------------|------------------------------------------------------------------------|
| ○콜드체인시스템 구축을 위한 종합계획 없이 사업별 독립 추진 | ○마스터플랜에 의한 체계적인 추진 | ○산지와 소비지의 연계성을 갖는 사업 추진으로 기반시설의 동시 조기 구축 ○기반시설 구축에 필요한 연차적 예산 확보 가능 |
| ○시범사업이나 홍보 없이 바로 시행 | ○시범사업 수행후 단계별 보급 ○사업 효과의 홍보 병행 | ○시행착오없이 효율적으로 조기 보급 가능 ○사업 결과의 홍보로 생산자는 물론 소비자에게도 필요성을 인식시켜 보급 촉진 |
| ○기반시설에 대한 설치 및 운영 모델 미흡 | ○주요 기반시설(예냉,저온저장고등)에 대한 표준 모델(안) 제작, 보급 | ○정책사업의 내실을 기하고 효율적인 기반시설 구축 촉진 |
| ○하드웨어 위주보급 | ○소프트웨어 병행 보급(설치 및 운용 기술 지침서) | ○사업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사업의 효율적인 정착을 촉진하여 효과 극대화 |

□ 외국의 사례

< 일본의 경우 >

- 1965년 과학기술청 자원조사회가 「식생활의 체계적 개선에 관한 식료 유통 체계 근대화에 관한 권고 - 콜드체인 권고」가 나오
고 이듬해 당시 2억엔의 예산으로 대규모 콜드체인 시범시험을 거
치면서 필요성이 급속히 부각됨.
- 당시 캘리포니아에 시찰단을 파견 현지 조사후 長野縣 洗馬에 진공
예냉장치 1호기를 설치하면서 본격적인 계도에 진입(미국은 1915년
부터)
- 보급 초기 단계에는 소비자의 인식부족으로 콜드체인유통된 청과물
에 대한 차별화가 미흡해 보급과 함께 홍보 병행 - 정착단계까지 5
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
- 시설 보급과 함께 품목별 운영 소프트웨어는 현재까지도 연구기관에
서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보급중임(지침서, 산지실용화기술 등)
- 산지시설과 함께 소비지시설 보급 병행
 - 예냉시설 3,500여개소, 도매시장의 저온매장 32,000m², 도매시장의
저온·보냉시설 38,000m² 구축
- 그후 콜드체인시스템 구축과 보급을 위한 정책사업의 지속적 추진
 - 1965년 : 콜드체인의 권고, 저온유통기구에 관한 사례적 실험조사
 - 1970년 : 청과물 저온출하체제정비촉진사업
 - 1973년 : 저온유통방식등 개발사업
 - 1975년 : 야채 저온유통기술개발연수시설설치사업
 - 1978년 : 야채 수송합리화추진사업
 - 1982년 : 야채 단경기 평준화 모델사업
 - 1986년 : 야채 고도생산유통시스템화 사업
 - 1988년 : 야채 신유통방식모델대책사업

□ 우리의 여건

- 우리나라의 현재 농산물 유통 여건은 일본의 1965년과 비교할 때 GNP규모에서 10,000달러로 비슷하나 국민의 식습관 수준과 WTO 체제하에서 외국농산물의 수입이 자유화된 국제적인 여건을 고려하면 콜드체인시스템 도입의 당위성은 말할 여지가 없음.
- 국내 농산물을 수출산업화한다 했을 때 초기선도유지는 필수적이며 외국농산물에 대한 경쟁력을 품질우위에서 찾겠다고 했을 때는 조기 도입이 요구되어짐.

4.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콜드체인시스템의 조기정착을 목표로 ①관련예산 확보 ②시범사업을 통한 관련기술 확립과 콜드체인 도입의 당위성 홍보 ③기반시설의 조기 구축 및 보급을 추구함.
- 사업 추진은 5개년 계획으로 초기 1년차는 시범사업실시, 2~3년차는 2단계 시범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함께 기반시설 구축, 정비, 4~5년차는 보급, 확산사업으로 단계적 추진을 기하도록 함.

□ 주요 추진시책

- 콜드체인시스템 조기도입을 위한 기반시설구축 촉진 시책 마련
- 콜드체인시스템이 정착될 때까지 저온유통청과물에 대한 「우선 구매」, 「가격보전」 등의 정책적 지원시책 마련
- 저온판매시설에 대한 온도 관리 규정 마련

□ 신규사업 개발

- 콜드체인 시범연수시설 설치 및 운영 사업
- 콜드체인 관련 기반시설의 연차적 구축 사업
- 포장센타, 물류센타, 도매시장의 저온화 사업
- 포장용기 개선 사업
- 수송기술 합리화 사업

시범사업 추진 방향

- 시범사업은 ①시범시설 설치 ②운영기술지원 ③홍보 및 콜드체인 유통농산물에 대한 merit 부여로 조기정착 및 보급촉진 추구
- 시범사업시설은 콜드체인 신기술 도입 및 연수센터로 활용하고 정착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기술지원 및 운영비 지원
- 시범사업시설 설치는 ①예냉 및 콜드체인 적용효과가 가장 큰 품목과 지역 위주로 선정(1차로 4개소 정도) 추진하고 ②단계적으로 권역별로 품목별 시범모델 시설 설치 확대 운영
- 시범시설의 지속적 운영을 통한 기술지침서 제작, 보급

5. 추진과제 및 일정

- 구체적 추진계획안 작성 및 시범사업(안) 마련 : ~'98.12
- '99 예산 편성시 시범사업 시행 예산 반영 : '98.9
- 산지예냉 및 저온저장고 표준모델(안) 제작 : ~'98.12
- 관련 농림사업시행지침 개정, 보완 : ~98.10
- 시범연수시설의 설치 : '99.1~'99.6
- 시범연수시설의 운영 및 시범사업 시행 : '99.7~'99.12
- 시범사업 효과 홍보 : '99.9~'99.12
- 2단계 시범연수시설 확충 (권역별, 품목별 표준 시범시설 설치, 운영) : 2000~2004
- 기반시설 구축 : '99~2004
 - 산지시설 : 예냉시설, 저온저장고, 수송시설 등
 - 소비지시설 : 저온매장, 저온보관시설, 냉장판매시설 등
- 포장용기 개선 사업 : '99~2004
- 포장센터, 물류센터, 도매시장의 저온화사업 : '99~2004
- 수송기술 합리화 사업 : 2000~2004
- 콜드체인시스템 설치 및 운영 지침서 작성 보급 : '99~2000
- 콜드체인 관련 법규 제정 및 HACCP 작성 : 2000~2004

6. 투융자 계획

(단위 : 백만원)

| | '97실적 | '98예산 | '99요구안 | 2000~2002 | 2003~2004 | 계 |
|------|-------|-------|--------|-----------|-----------|--------|
| 국고보조 | | 50 | 1512 | 31,463 | 33,500 | 66,525 |
| 국고융자 | | | | 9,439 | 10,050 | 19,489 |
| 지방비 | | | | 9,438 | 10,050 | 19,488 |
| 자부담 | | | 648 | 12,585 | 13,400 | 26,633 |

< 참고자료 >

1. 투융자 계획 세부 예산 내역

가. '98예산 : 산지예냉시설 및 저온저장고 기준 모델(안) 제작 - 5,000만원

나. '99 요구안 : 20억원

□ 시범연수시설 설치 및 운영 사업 : 21억 6천만원

○ 시범시설 설치 4개소

- 진공예냉시설 1개소(강원) : 14억원

- 차압예냉시설 2개소(중부, 남부 각 1개소) : 4억원

- 냉수냉각시설 1개소(경기) : 1억원

- 냉장차 4대 : 1억6천만원

○ 시범시설 운영사업비(수송차량, 포장용기임차, 시료, 분석, 평가, 홍보 등)

- 개소당 2,500만원 × 4개소 = 1억원

* 시설채소유통지원사업, 포장센터사업에서 지원되는 예냉시설은 별도

다. 2000~2002 : 629억 2천5백만원

○ 산지예냉시설 설치(2단계 시범시설 포함)

- 진공예냉시설 10개소 × 14억/개소 = 140억원

- 차압예냉시설 90개소 × 2억원/개소 = 180억원

- 냉수냉각시설 15개소 × 1억원/개소 = 15억원

- 농가단위 소규모 예냉시설(강제통풍식)

100개소 × 2천5백만원/개소 = 25억원

○ 포장용기 개선 사업 : 3억원(과일류, 채소류, 근채류 각 1억원)

○ 소비지 저온보관시설(물류센터등)

10개소 × 12억5천만원/개소 = 125억원

○ 포장센터, 물류센터, 도매시장의 저온화사업

50개소 × 2억원/개소 = 100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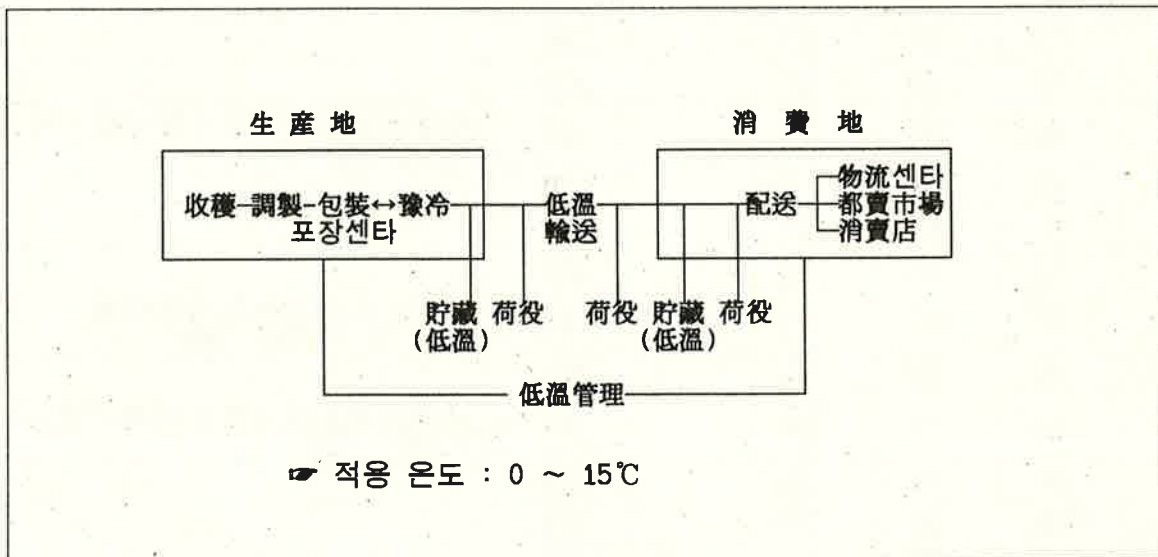
○ 수송시설 115대 × 3,500만원/대 = 40억 2천5백만원

○ 콜드체인시스템 설치 및 운영 기술지침서 작성, 보급(시범시설 기술 지원포함) : 1억원

다. 2003~2004 : 670억원

- 산지예시설 설치
 - 진공예냉시설 10개소 × 14억/개소 = 140억원
 - 차압예냉시설 100개소 × 2억원/개소 = 200억원
 - 냉수냉각시설 20개소 × 1억원/개소 = 20억원
 - 농가단위 소규모 예냉시설(강제통풍식)
200개소 × 2천5백만원/개소 = 50억원
- 소비지 저온보관시설(물류센터등)
10개소 × 12억5천만원/개소 = 125억원
- 포장센터, 물류센터, 도매시장의 저온화사업
50개소 × 2억원/개소 = 100억원
- 수송시설 100대 × 3,500만원/대 = 35억원

2. 농산물 콜드체인시스템의 기본 모델



3. 일본의 예냉시설의 종류별 연도별 설치 현황

가. 일본의 예냉시설의 종류별 연도별 설치 현황

(단위 : 대수)

| 연도 | 예냉고 | | | | | 비고 |
|------|------------|------------|-----|-----|-------|--------------------------------------|
| | 감동식 냉동식 | 찬동식 냉동식 | 진공식 | 냉수식 | 계 | |
| 1965 | 1 | | | | 1 | 과학기술청 자원조사회에 의한 저온유통(cold-chain)의 권고 |
| 1966 | | | | | | 과학기술청에서 「저온유통기구에 관한 사례적실험조사」의 실시 |
| 1967 | 1 | | | | 1 | |
| 1968 | 3 | | | | 3 | |
| 1969 | 3 | | | | 3 | |
| 1970 | 15 | | | | 15 | 농림성에서 「청과물저온출하체제 정비촉진사업」의 실시 |
| 1971 | 23 | | | | 23 | |
| 1972 | 29 | | | | 29 | |
| 1973 | 36 | | 5 | | 41 | 농림성의 실시 「저온유통방식등개발사업」의 실시 |
| 1974 | 31 | | | | 31 | |
| 1975 | 36 | | 1 | | 37 | 「야채저온유통기술개발연수시설 설치사업」의 실시 |
| 1976 | 38 | | 7 | | 45 | |
| 1977 | 59 | | 11 | | 70 | |
| 1978 | 91 | 7 | 12 | | 110 | 「야채수송합리화추진사업」의 실시 |
| 1979 | 98 | 10 | 11 | | 119 | |
| 1980 | 119 | 18 | 22 | | 159 | |
| 1981 | 81 | 42 | 27 | | 150 | |
| 1982 | 65 | 47 | 15 | | 127 | 「야채단경기평준화모델사업」의 실시(82~87) |
| 1983 | 69 | 71 | 9 | | 149 | |
| 1984 | 81 | 83 | 18 | | 182 | |
| 1985 | 64 | 75 | 12 | | 151 | |
| 1986 | 76 | 66 | 26 | | 168 | 「야채고도생산유통시스템화 사업」의 실시(86~90) |
| 1987 | 79 | 99 | 38 | | 216 | |
| 1988 | 90 | 73 | 28 | | 191 | 「야채신유통방식모델대책사업」의 실시(87~91) |
| 1989 | 109 | 78 | 32 | | 219 | |
| 1990 | 144 | 92 | 39 | | 275 | |
| 1991 | 114 | 63 | 37 | 1 | 215 | |
| 1992 | 135 | 57 | 21 | | 213 | |
| 1993 | 97 | 39 | 26 | | 162 | |
| 1994 | 88 | 20 | 11 | | 119 | |
| 계 | 1,875 | 940 | 408 | 1 | 3,224 | |

나. 일본 중앙도매시장에 있어서 청과물 저온 및 보냉 시설

| 시설 | 1990년 | | | 1996년 | | |
|----------------|-------|-----|-----------------------|-------|-----|-----------------------|
| | 시장수 | 개소수 | 총면적 (m ²) | 시장수 | 개소수 | 총면적 (m ²) |
| 저온·보냉등 보냉시설 | 37 | 46 | 28,247 | 46 | 59 | 37,653 |
| 저온도매장 | 31 | 36 | 16,274 | 47 | 64 | 31,753 |

다. 일본의 농산물 저온매장시설 개요

| 장소 | 東京都 大田市場 | 横 兵 市 A | 横 兵 市 B | 名古屋市 | 京都市 |
|---------------------------|------------------------|-----------------------------|----------------|----------------|---------------------------|
| 공 간(m) | 18×27×3실 12×27×2실 | 17×34×2실 8.5×11.3×2실 | 12.5×20×2 실 | 30.4×30×1실 | 15×11×4실 |
| 면 적(m ²) | 486×3실 324×2실 | 578×2실 96×2실 | 250×2실 | 912×1실 | 165×4실 |
| 유효용적 (m ³) | 2,624×3실 1,750×2실 | 2,890×2실 480×2실 | 1,125×2실 | 4,391×1실 | 809×4실 |
| 사용온도 (℃) | 5~15℃ | 10~15℃ | 10~15℃ | 5~15℃ | 15℃ |
| 냉각 장치 | 냉동기 LTS-6CM-A 5대 | LTS-12CM-A 2대 LTS3C-A 2대 | LTS-61C-A 2대 | LTS-61C-AGA 4대 | LTS-5CW 3대 LTS-61CW 1대 |
| | 냉각기 RUS-200 10 대 | RUS-150 6대 RUS-120 8대 | RUS-280 4대 | RUS-200 12대 | RUS-165 12대 |
| 총동력(kW) | 130.5 | 109.6 | 45 | 106 | 75.5 |

라. 일본의 채소 예냉 출하량의 추이

(단위 :천톤, %)

| | 1980 | 1982 | 1984 | 1986 | 1988 | 1991 | 1995 |
|---------|--------|--------|--------|--------|-------------|-------------|-------------|
| 예냉시설누계 | 687 | 964 | 1,295 | 1,614 | 2,021 | 2,515 | 3,224 |
| 예냉출하량 A | 339.8 | 585.2 | 764.4 | 940.0 | 1,231. 3 | 1,466. 4 | 1,760. 3 |
| 전출하량 B | 11,914 | 12,178 | 11,930 | 12,185 | 11,676 | 11,576 | 10,837 |
| A/B | 2.9 | 4.8 | 6.4 | 7.7 | 10.5 | 12.7 | 16.2 |

마. 일본의 냉동·냉장차 생산대수의 추이

| 종류 년 | 냉 동 차 | | | | 냉 장 차 | | | | 합 계 |
|---------|-------|--------|-------|--------|-------|-------|-------|--------|--------|
| | 경4륜 | 소형 | 보통 | 계 | 경4륜 | 소형 | 보통 | 계 | |
| 1963 | | | | 120 | | | | 449 | 569 |
| 1964 | | 23 | 45 | 68 | | 380 | 288 | 608 | 676 |
| 1965 | | 3 | 53 | 56 | | 516 | 285 | 801 | 857 |
| 1966 | | 9 | 129 | 138 | | 575 | 813 | 1,388 | 1,526 |
| 1967 | | 27 | 184 | 211 | | 748 | 1,033 | 1,781 | 1,992 |
| 1968 | | 39 | 259 | 298 | | 1,235 | 1,128 | 2,363 | 2,661 |
| 1969 | | 130 | 261 | 391 | | 1,610 | 1,213 | 2,823 | 3,241 |
| 1970 | | 667 | 911 | 1,578 | | 1,668 | 1,961 | 4,629 | 6,207 |
| 1971 | | 646 | 772 | 1,418 | | 2,271 | 2,752 | 5,023 | 6,441 |
| 1972 | | 1,240 | 1,189 | 2,429 | | 4,528 | 2,975 | 7,503 | 9,932 |
| 1973 | | 2,314 | 1,412 | 3,726 | | 6,234 | 3,349 | 9,583 | 13,309 |
| 1974 | | 2,416 | 1,465 | 3,881 | | 4,717 | 2,471 | 7,188 | 11,069 |
| 1975 | 605 | 1,833 | 1,437 | 3,875 | 2,922 | 3,474 | 2,845 | 9,241 | 13,116 |
| 1976 | 96 | 3,430 | 1,404 | 4,980 | 1,029 | 5,968 | 3,618 | 10,165 | 15,145 |
| 1977 | 372 | 3,321 | 1,305 | 4,998 | 4,417 | 3,947 | 2,516 | 10,880 | 15,878 |
| 1978 | 471 | 3,489 | 1,918 | 5,878 | 5,064 | 4,963 | 2,548 | 12,575 | 18,453 |
| 1979 | 388 | 4,303 | 2,022 | 6,713 | 3,643 | 8,107 | 3,156 | 14,906 | 21,619 |
| 1980 | 1,027 | 3,834 | 1,640 | 6,501 | 3,834 | 4,763 | 3,299 | 11,896 | 18,453 |
| 1981 | 1,533 | 3,522 | 1,393 | 6,448 | 4,313 | 4,013 | 1,851 | 10,177 | 16,625 |
| 1982 | 1,169 | 4,530 | 1,723 | 7,422 | 4,035 | 5,329 | 1,867 | 11,231 | 18,653 |
| 1983 | 1,783 | 4,715 | 2,545 | 9,043 | 4,363 | 4,853 | 2,360 | 11,576 | 20,619 |
| 1984 | 1,675 | 5,639 | 3,143 | 10,457 | 4,210 | 5,378 | 2,057 | 11,645 | 22,102 |
| 1985 | 1,700 | 6,421 | 3,465 | 11,586 | 4,113 | 6,188 | 2,229 | 12,530 | 24,116 |
| 1986 | 2,030 | 6,585 | 3,225 | 11,840 | 3,822 | 5,736 | 1,600 | 12,158 | 23,998 |
| 1987 | 2,658 | 7,301 | 4,303 | 14,262 | 3,594 | 6,015 | 1,553 | 11,162 | 25,424 |
| 1988 | 1,035 | 10,410 | 4,692 | 16,137 | 2,020 | 7,696 | 1,450 | 11,166 | 27,303 |
| 1989 | 3,421 | 10,245 | 4,764 | 18,430 | 4,234 | 6,204 | 1,440 | 11,878 | 30,308 |
| 1990 | 2,238 | 10,004 | 5,183 | 17,515 | 4,370 | 6,180 | 1,647 | 12,197 | 29,712 |
| 1991 | 2,490 | 11,977 | 6,067 | 20,534 | 3,084 | 5,807 | 1,502 | 10,393 | 30,927 |
| 1992 | 877 | 12,150 | 5,712 | 18,739 | 2,861 | 6,659 | 1,557 | 11,077 | 29,816 |
| 1993 | 1,013 | 10,371 | 5,367 | 16,751 | 2,490 | 5,248 | 1,379 | 9,117 | 25,868 |

I. 전자상거래 현황

1. 현황

□ 전자상거래는 컴퓨터, 정보통신, 인터넷등 전자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 등장하기 시작한 새로운 형태의 상거래

- 80년대에는 EDI, CALS등 특정기업간의 업무 효율화를 위해 발전해 왔으나 90년대들어 인터넷의 등장으로 기업과 불특정 다수 소비자간의 Cyber Market시대 도래
- 전자상거래는 미국을 중심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여 전세계로 급속히 확산되기 시작하였으며 90년대 후반부터 Cyber Market등장
 - 국내 Cyber Shopping Mall은 약 300여개로 추산되고 있으며 2000년대에는 시장규모가 600억원 이상으로 추산

<전자상거래 시장규모>

(단위 : 천명)

| 구분 | | '94 | '95 | '96 | '97 | 2000 |
|------------------|--------------|--------|--------|--------|---------|---------|
| 인터넷 이용자 | 세계 | 22,170 | 45,820 | 94,720 | 128,810 | 200,000 |
| | 한국 | 145 | 386 | 700 | 1,250 | 4,200 |
| 시 장 규 모 | 세계 (백만달러) | | | | 1,188 | 6,570 |
| | 한국 (백만원) | | | | 6,285 | 61,396 |

자료 : 포레스트리서치, 한국전산원

□ 농축산물 전자상거래는 「롯데백화점 Shopping Mall」 등에서 건강식품, 지역특산품등 가공식품 위주로 거래되고 있으나 거래실적은 미미

- EDI는 「농협물류센터」와 「하나로클럽」 간 시범운영중이며 「서울청과」에서 '98. 4. 16 시연회 실시

2. 농축산물 전자상거래 제약요인

국내에서도 전자상거래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나 제도적, 기술적인 뒷받침이 부족하고 농축산물의 특성과 생산자와 소비자의 인식부족으로 농축산물 전자상거래 애로

전자상거래의 법률적 효력을 부여하고 소비자가 믿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뒷받침 필요

- 금년중 각부처에서 전자상거래 기본법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제정계획

전자지불시스템, 보안기술, 인증기술 등은 개발단계이며, 농촌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하여 정보통신망이 낙후되어 전자상거래 참여에 제약 요인

농축산물은 쉽게 부패하고 크기가 크며, 품질이 균일하지 못하여 전자상거래가 가능한 품목이 제한 되어 있음

인터넷이용자가 20-30대의 젊은지식층에 편중, 농축산물의 구매력을 가진 주부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전자상거래를 통한 농축산물의 거래 미미

대부분의 농민이나 영세가공업자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고 전자상거래에 참여할 만한 자금 및 기술부족

II. 추진계획

기본방향

- 전자상거래를 통한 농축산물 직거래 확대 추진
- 전자상거래가 촉진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홍보, 기술개발 등 추진
- 농촌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인프라 구축
- 전자상거래의 기술개발, 농축산물 유통여건등에 따라 점차적으로 확대추진
- 농업인 및 소비자의 정보화 마인드 확산

1. 농축산물 전문 「Cyber 장터」 개설운영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를 할 수 있는 「직거래마당」 과 생산자단체,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농축산물 Shopping Mall을 상호유기적으로 연계한 「농축산물 통합Mall」 을 운영함으로써 농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가. 현황 및 문제점

티폼목에 비해 농축산물은 전자상거래가 미미하게 이루어 지고 있는 실정

- 농축산물을 취급하는 민간 Shopping Mall이 적고 취급한다고 해도 구색용에 불과
- 농산물의 특성상 청과물의 취급이 어려워 가공농산물 위주로 취급

단위농협, 가공업체등이 전자상거래에 미온적이나 전자상거래에 대응할 능력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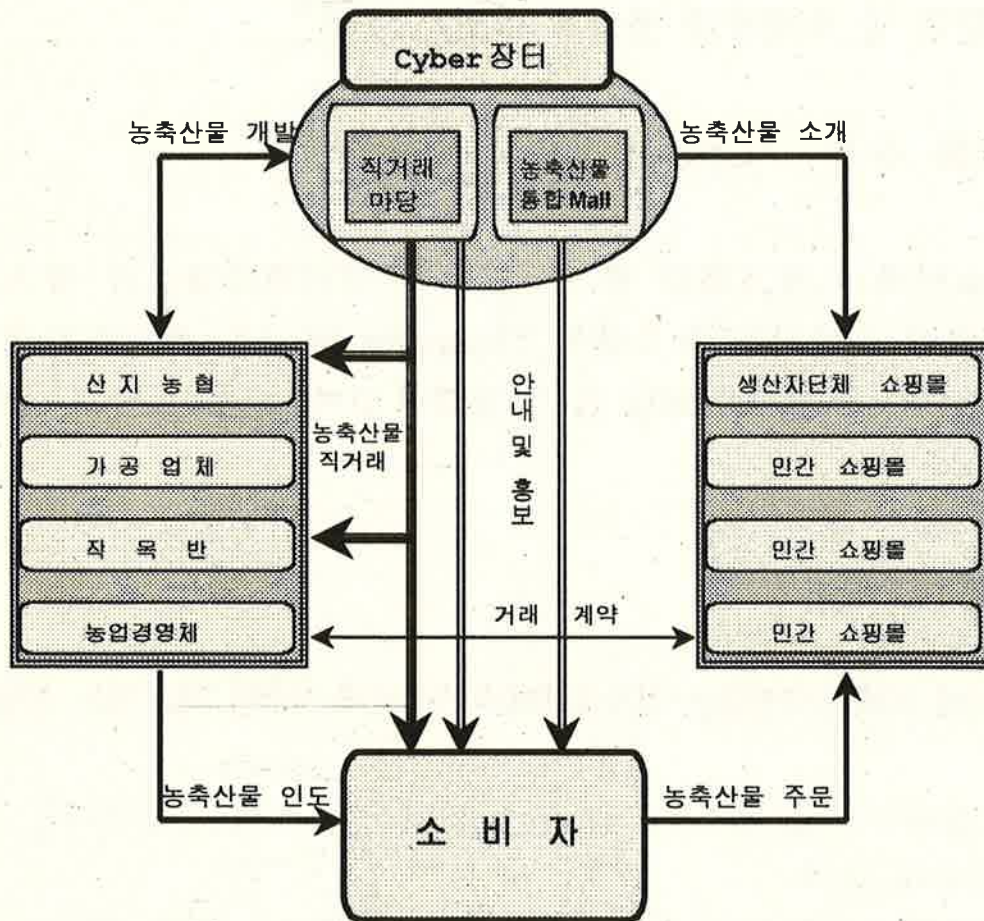
- 수수료, 수송비등의 부담이 생산자에게 귀착되어 산지농협 전자상거래의 이점이 없음
- 영세가공업체는 자금이나 기술면에서 전자상거래에 접근할 능력 부족

□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를 할 수 있는 정보 부족

-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생산자의 정보부족
- 생산자가 농축산물을 직접팔 수 있는 소비지 유통업체의 정보 부족

나. 세부사업계획

< 사업추진체계도 >



□ 직거래 마당 개설

-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생산자 및 소비지 유통업체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상호 직거래 촉진
 - Cyber상에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만남의장터」 마련

- 「직거래 마당」에 산지별 생산자 안내 및 거래방법등을 소개하여 소비자가 생산자에게 직접주문
- 소비자유통업체, 대형요식업체의 정보도 제공하여 생산자가 직접 관련업체와 직거래 유도

□ 농축산물 통합몰 운영

- 농림수산정보센터주관으로 생산자단체, 민간기업의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Shopping Mall을 통합연결하여 Mall of Malls 기능 수행
 - 생산자 단체 Shopping Mall간의 결제, 인증, 배송등을 상호유기 적으로 연결하여 중간비용을 줄이고 전자상거래의 효율성 도모
 - 농업경영체, 영세가공업체 등이 전자상거래에 참여 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지원, 홍보 등의 역할 수행
 - 유통정보와 연계하여 소비자들이 가격, 품질 등을 비교, 구매할 수 있는 정보 제공
- 농협 등 생산자단체별로 자체 농축산물 전문 Shopping Mall 구축운영
- 마이다스 동아, 롯데백화점 등 기타 민간 Shopping Mall에서도 농축산물 취급확대 유도
 - 공급자 알선, 홍보 등 지원실시

2. 전자상거래를 촉진 시키기 위한 기반확충

농축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농업전용의 초고속통신망 구축, 농축산물 품목코드 및 거래양식 표준화 등 정보화 인식확산을 위한 교육 실시

가. 현황 및 문제점

□ 도시지역에 비하여 농촌지역의 정보통신망이 낙후되어 있어 농업인의 인터넷, PC통신망 이용에 제약

- 농촌지역의 접속가능 회선수가 도시지역의 1/3수준으로 도시지역에 비해 정보화 여건이 열악

□ 사용기관, 사용목적에 따라 다양한종류의 품목코드 및 거래서식 사용

- 농림부, 물류센터, 도매법인등의 코드체계가 상이
- 제각기 사용되고 있는 송품장등 거래서식도 EDI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통일된 서식필요

□ 농업인의 PC통신, 인터넷등 첨단 정보통신에 대한 인식부족

- 농림부, 물류센터, 도매법인등의 코드체계가 상이

나. 세부사업계획

□ 농업전용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 낙후된 농업·농촌정보화 기반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농업전용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 농업인이 인터넷등에 쉽게 접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림관련 단체, 법인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정보체계를 강화

□ 농산물코드, 거래양식 표준화

- 산지(출하자)부터 소비자, 수출입거래까지 일관되게 사용될 수 있는 표준코드 개발
 - 품목, 출하자, 지역, 등급, 규격코드
- 전자상거래 환경 및 소매유통과 산지직거래를 감안한 통일서식 개발
 - 표준서식에 의한 전표제출 의무화
 - 출하/정산부터 수송, 물류코드연계, EDI/EC 기법의 적용에 대비한 문서개발 확대
- 추진반 운영
 - 주관기관 : 농림부
 - 간사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 협조기관 : 농·축·임·수협, 농림수산정보센터, 도매법인협회, 산업자원부 (재) 한국전자거래표준원
 - 전자문서개발전문위원회(농산물유통위원회) KEDI/FACT 표준안마련

농업인 정보화교육 확대

- 교육기관간 역할분담을 통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실시
 - 정보화 기본과정은 지자체에서, 전문과정은 농림수산정보센터에서 담당
 - 현재 년 4천명 ⇒ '99년 이후 년 15천 ~ 20천명 수준으로 확대
- 수요자 편의를 고려한 교육실시
 - 교육시기는 영농시기와 교육장 활용 가능성등을 고려하여 실시
- 농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실시
 - 농업인 대상의 쉽고 내실있는 교육과정 개발
 - 종전 남성위주의 교육에서 여성후계자, 마을부녀회원등 여성 농업인으로 교육 대상자를 확대(50%이상 참여 권장)

3. 농산물 EDI, CALS 시스템 도입확대

농축산물 전자상거래를 촉진시키고 유통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산지와 도매시장, 물류센터간 EDI를 점진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CALS 도입방안 강구

가. 현황 및 문제점

국내 EDI, CALS수준은 연구사업 또는 시범사업 수준임

- 국정과제로 조달EDI, 건설CALS, 국방CALS등 연구사업 추진중

농업분야는 물류센터에서 시범사업중이고, 서울청과에서 EDI시연회 개최 ('98. 4. 16)

산지의 전산화 환경이 미흡하고 농축산물의 등급화, 규격표준화 거래 부진

도매시장에서 전자경매실시는 EDI 도입을 촉진 시키는 요인

나. 세부사업계획

□ EDI 확대추진

- 농협물류센터와 하나로클럽간의 EDI시범사업을 산지농협까지 확대추진
- 도매시장 도매법인과 산지농협과의 거래를 EDI를 통해 실시 추진

□ 농산물 CALS/EC, 인터넷 EDI 연구사업추진

- 농림부문에 CALS/EC, 인터넷 EDI 체계 도입을 위한 연구 사업 추진
 - 농림부문에 적용가능한 CALS 종합계획서를 수립하여 단계별 계획추진

Ⅲ. 추진일정 및 예산

[단위:백만원]

| 사업량 | '99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계 |
|--------------------------------|-----|------|------|------|------|------|-----|
| ○ 전자상거래에의한 직거래시스템 구축 | | | | | | | |
| - 거래양식 표준화 | 50 | - | - | - | - | - | 50 |
| - 농산물 표준코드 제작 | 72 | 10 | 10 | 10 | 10 | 10 | 122 |
| - 각 기관 전문Cyber.Market 통합구축 | 50 | 5 | 5 | 5 | 5 | 5 | 75 |
| - 농산물 CALS/EC, 인터넷EDI등 연구사업 | 200 | - | - | - | - | - | 200 |
| 계 | 372 | 15 | 15 | 15 | 15 | 15 | 447 |

< 참고자료 >

1. 마이다스동아와 농산물전자상거래 추진

□ 추진배경

- 농림부 직원의 전자상거래 인식제고와 단위농협의 특산물 판로확대를 위하여
 - 농림부 인터넷 Home Page에 『우리농산물장터』란을 설치하고 우리 부 직원을 대상으로 인터넷 통신판매 실시 ('98. 1. 23부터)
 - * 161개 단협 300개 품목 대상 ('98. 3현재 : 60건, 110만원)
- 『마이다스동아』에서 우리부의 전자상거래 시범사업에 관심을 표시, 『마이다스 쇼핑물』에서 취급희망
 - * 『마이다스 쇼핑물』은 『(주)마이다스 동아』에서 개설한 인터넷 쇼핑물 임.
 - '98. 1. 15개장, 68개업체 324개 품목 취급
 - 목우촌 갈비세트 등 10개품목 판매중

□ 추진일정

- '98. 2. 5 농림부주관으로 마이다스동아, 농협통신판매 사업단과 1차 협의
 - 인터넷을 활용한 농산물직거래 추진을 원칙적으로 합의
- 3. 11 농림부주관으로 『마이다스 동아』 및 농협관계자와 2차협의
 - 농협이 수수료문제 등 요구조건을 제시, 『마이다스 동아』에서 수용키로 함.
- 4. 10 『마이다스 동아』와 농협간에 전자상거래 계약체결
- 5월 상순경 전자상거래 개시

□ 계약내용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 부터 1년(별도의사표시 없으면 자동연장)
 - 참여품목 : 31개조합 50개 품목
 - 수수료율 : 판매대금의 10%
 - 대금결제 : 상품공급일 익월 15일 결제
- ※기타특약 : 계약서에 명기하지 않았으나 향후 1년간 마이다스 동아가 독점적지위 보유

□ 향후추진계획

- 전자상거래 시연회개최
 - 농산물 전자상거래를 널리 홍보하기위하여 농림부, 동아일보, 농협이 참여하는 시연회개최
 - 시연회는 『마이다스 동아』에서 추진
- 농산물 전자상거래의 확대추진
 - 지역별로 성가가 높은 농특산품 중심으로 참여, 농산물확대 추진
 - 전통식품가공협회를 통해 전통식품업체들도 『마이다스동아』와 연계추진

2. 국내외 전자상거래의 현황

가. 전자상거래의 거래형태

-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란 “기업간 또는 기업과 소비자간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수행하는 상거래 활동”을 의미
 - 전자상거래에는 인터넷상거래, EDI, CALS등이 포함되는데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있는 것은 인터넷을 통한 Cyber Market임

□ Cyber Market 또는 Cyber Shopping Mall

- 인터넷상에 상품을 진열하고 구매 주문처리를 행하는 것으로서 현재 상업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분야
- 현재는 인터넷상에서 전자상거래가 완전 자동화되지 못하고 전화, FAX, 은행을 통한 지불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대금이 지불되도록 알려주면 대금지불 처리를 반자동화하여 처리
- 「마이다스동아 쇼핑몰」, 「메타랜드」 등이 대표적인 사례

□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 EDI란 “기업이나 기관간의 전자적 문서교환방식”을 의미
 - 기존의 문서교환방식을 컴퓨터로 대체하여 상거래시 정보처리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여, 생산성과 효율성을 증대
 - EDI는 1970년대 미국에서 도입되기 시작하여 조달, 무역 등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물류유통과정 등에 광범위하게 이용
 - 우리나라는 1980년대 후반부터 EDI가 도입되어 초기에는 무역업무분야에 도입되었으며 운송, 제조, 금융기관 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나 아직까지 법, 제도, 시장구조, 이용자 환경등 제반요소들이 미정착상태

□ CALS(Commerce At Light Speed)

- CALS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기업간의 수주, 조달, 납품 등의 거래활동과 기업내부의 개발, 생산 등 경영활동을 효율화하는 경영혁신 전략 수단
 - CALS는 1985년 미국에서 군 기술문서의 전자화에 의한 효과적인 후방지원 필요성에 의해 탄생
 - CALS의 궁극적인 목표는 정보공유화에 의한 전자상거래의 구현
 - 우리나라에서도 정부차원에서 국방조달CALS, 건설CALS를 추진하고 한국통신, 가전 3사등 민간차원에서 도입을 추진 중

나. 전자상거래의 확산배경

- 컴퓨터 네트워크를 활용한 상거래활동의 전자화는 EDI, PC통신을 이용한 On-Line Shopping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발전
 - 이러한 방법은 1대 1로 접속된 전용선 또는 공중망을 통해 문자, 숫자정보의 통신만 가능
- 최근 개방형 네트워크인 인터넷의 폭발적인 확산과 함께 멀티미디어, 통신기술 등 정보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전자상거래가 산업계의 총아로 등장
 - 현재 인터넷은 160여개국에서 1억 3천만 명이 사용하고 있으며 매년 80%씩 증가
 - 또한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음성, 화상 등의 멀티미디어정보를 쌍방향, 실시간으로 통신할 수 있게 됨으로서 컴퓨터 네트워크 상에서 불특정 다수의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상거래활동이 용이해 짐.
 - 이와 함께 암호화, 전자화폐 등 전자결제를 위한 기술도 개발완료단계에 있어 전자상거래가 가까운 시일 내에 가능
- 이에 따라 지금까지 인터넷을 상품광고, 기업홍보, 정보제공 등에만 활용하고 있었던 업체들이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준비를 서두르고 있으며 인터넷상에서의 상품 및 서비스판매활동이 크게 증가

다. 전자상거래의 특징

□ 짧은 유통채널

- 전자상거래는 네트워크를 통해 공급자와 구매자를 직접 연결하여 거래하기 때문에 도매점, 소매점 등의 중간 유통채널 불필요.

□ 시간과 공간의 벽이 사라짐

- 인터넷을 이용해 상거래활동을 수행할 경우 기업활동에 있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사라져 기업은 24시간 내내 지구촌 어디서나 상품판매 가능

□ 판매거점 불필요

- 기존의 상거래에서는 상품전시, 영업, 고객응대 등을 위한 판매공간이 필요했지만 전자상거래는 네트워크 상에서 매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판매거점 불필요

□ 고객정보 획득용이

- 전자상거래는 디지털통신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케팅 및 거래과정에서 확보된 고객정보는 별도의 가공 없이 바로 자사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가능

□ 효율적인 마케팅

- 축적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상품에 관심을 가질만한 특정고객을 대상으로 1대1 마케팅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효율적인 마케팅이 가능

□ 고객위주의 동적이며, 즉각적인 대응

- 네트워크 상에서는 실시간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고객의 불만사항 및 문의사항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며 고객위주의 변화를 신속히 포착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에 대한 동적 대응도 가능

□ 소액자본으로 사업전개

- 인터넷을 이용한 가상공간에서의 사업은 토지 및 건물구입비용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소자본으로도 사업이 가능

라. 국내외 동향

□ 국제동향

- 미국을 중심으로 전자상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OECD등 국제기구에서 국제규범화를 위한 논의가 진행중
- 전자지불시스템, 보안 등 요소기술이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되어 가까운 시일내에 실용화 가능

□ 국내동향

- 최근 국내에서도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범 정부적 차원에서 대처
 - 정부차원의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조달E야, 국방CALS, 건설CALS 등을 추진중이고 민간차원 에서도 EDI, CALS기술개발, 쇼핑몰 개설 등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심증대

< 각국의 전자상거래 추진 동향 >

□ 미 국

-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산업의 기술우위를 바탕으로 전자상거래에 대한 국제규범화를 주도
- 추진경과
 - '97. 7. 1 "A Framework for Global Electronic Commerce"를 발표
 - '97. 7. 14 Ira Magaziner 백악관 수석자문관이 한국·유럽·일본등을 방문하여 기본계획의 배경과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각국의 협조를 구함
-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기본원칙 : 정부규제를 최소화한 민간주도
 - 9개 이슈 : 관세 및 내국세, 전자지불제도, 통일상업규범 제정, 지적재산권 보호, 개인생활보호, 보안, 인프라와 정보기술, 인터넷 내용물, 기술표준

□ 일 본

- 민간주도의 미국과는 달리 일본의 전자상거래 도입 및 추진은 통산성, 우정성, 대장성 및 법무성 등 정부가 중심이 되어 추진
 - 통산성은 전자상거래진흥협회(ECOM)를 통하여 전자상거래에 대한 기술적·제도적 과제에 대한 프로젝트를 추진
 - 우정성은 사이버비즈니스협의회를 설립하였으며, 법무성은 전자서명을 위한 법안을 마련할 계획임.
- 미국의 기본계획 내용에 상당히 동조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전자화폐 등 전자지불제도의 실용화를 중점 추진

□ EU

- 추진경과
 - '97. 4월 “A European Initiative on Electronic Commerce” 를 채택
 - '97. 7. 6~8일 독일정부와 공동으로 “세계 정보네트워크”에 대한 각료회의를 개최하고, 각료선언(Bonn Declaration)을 채택
 - '97. 10. 1~3일 표준화 문제의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표준화회의(Global Standards Conference)를 개최
- 미국의 기본계획에 대하여는 원칙에는 동조하나, 개별 사안별로는 상당수 의견 충돌
 - 내국세부과 문제, 사생활보호의 강화, 암호화 S/W 및 기기의 국제적 자유이동 보장, 정부의 인터넷 내용물 규제 등
- '97. 12. 5 미·EU 정상회담에서 “전자상거래에 관한 공동성명(Joint Statement on EC)” 을 채택
 - 공동성명은 전자상거래 교역추진 지침과 향후 작업과제를 포함하며, '98. 2월 양측협의회에서 세부적으로 논의할 예정

< 국내의 전자상거래 동향 >

□ 전자상거래 현황

- 일부 선진국에 뒤져있지만 최근 들어 정부와 민간에서 전자상거래 확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
 - 진정한 의미의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시작은 1996년 인터넷에 쇼핑몰(인터파크, 롯데인터넷백화점)이 개설된 후부터임.
- 전자상거래 규모는 아직 미미한 실정이나, 세계적 추세와 마찬가지로 향후 크게 증가할 전망

(단위 : 천명, 백만원)

| 구 분 | '94년 | '95년 | '96년 | '97년 | 2000년 |
|---------|------|------|------|-------|--------|
| 인터넷 이용자 | 145 | 386 | 700 | 1,250 | 4,200 |
| 시 장 규 모 | - | - | - | 6,285 | 61,396 |

자료 : 한국전산원

□ 부문별 동향

◇ 법 제도분야

-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무역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등 전자상거래를 위한 일부 법령은 제개정되었으나 “전자상거래에관한법률” “전자결제자금이체에관한법률” 등은 아직도 검토단계에 있는 등 제도적 미비
- 또한 초고속정보통신망은 2010년에 가야 전국적으로 완료할 계획이며 인터넷 통신도 농촌지역은 기반이 정비되지 않아 이용에 불편
 - 접속속도가 느리거나 회선수가 모자라 접속에 애로

◇ 기술분야

- 전자상거래의 요소기술인 전자지불시스템, 보안기술, 상품정보지원기술, 동화 및 3차원 표현기술 등이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상태

◇ 사회경제적 분야

- 인터넷 사용자가 적고 사용 층도 젊은 남자 특히 지식층에 지나치게 편중
 - 전세계 인터넷 이용자는 '97년 1억3천만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125만 명 수준에 불과
 - 인터넷 사용자는 남자가 90% 이상이고, 그중 70%가 20~30대의 지식층 남자
- 기업이나 일반소비자 모두 전자 상거래에 대한 인식이 보편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최근 일부 기업에서 전자상거래에 발빠르게 대응
 - 최근 인터넷붐이 일면서 Cyber Shopping Mall 개설 등 전자상거래에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가 늘어나는 추세
 - 또한 EDI, CALS 등을 채용하거나 추진하는 업체도 늘어나는 추세

마. 주요기술의 개발현황

□ 전자지불시스템

- 전자상거래를 통해 물품을 구입한 뒤 대금을 지불하는 과정이 현실과 마찬가지로 네트워크 상에서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 현재 전자화폐, IC카드 등을 이용한 지불시스템을 시험하는 단계

□ 보안 및 암호화

- 인터넷은 개방형 네트워크이므로 신용카드번호의 도용등 거래시 마다 위험이 수반되므로 보안 및 암호화가 필수
 - 물품을 구입한 뒤 대금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신용카드 번호를 중간에서 가로채 부정사용
 - 가상상점을 허위로 개설하여 카드번호와 비밀번호만 빼낸 뒤 남용
-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에서 2000년까지 한국형 추진 중

□ 인 증

- 인터넷상 정상적으로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진 것을 보증하기 위한 인증시스템이 필요
 - 정상적인 상거래란 Cyber Shopping Mall이 정상적인 판매처리라는 것, 거래내역이 위조 변조되지 않았다는 것, 전자거래자체가 이루어 졌다는 것등을 인증기관이 보증
-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의 인증기관을 이용하고 있으나 한국통신등에서 인증시스템을 개발중

□ 통신기반시설

- 전자상거래를 위해서는 초고속 정보통신인프라 구축이 중요
 - 현재 우리나라는 전국 80개 중소도시까지는 T1급(1,544Mbps)이상의 광케이블이 설치되어 인터넷 이용등이 편리하나 농촌지역은 인터넷 이용환경이 상대적으로 낙후
- 2단계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계획에 따라 전국 144개지역까지 광케이블통신망이 구축되고, 2015년에는 가정까지 광케이블이 설치되면 통신기반환경이 완비 됨.

바. 전자상거래 국내주요 쇼핑몰 현황

신세계백화점(www.cybermall.co.kr) :

| | | | | | |
|--------|----------------------------------------------|------|---------|-------|--------|
| 서비스개설일 | '97.07.01 | 회원수 | 12,000명 | 하루이용자 | 3,000명 |
| 월매출액 | 3000만원 | 제품종류 | 2000종 | 지불방식 | 입금,카드 |
| 취급농산물 | 갈비(8),건강식품(6),주류(17),한과(19),기호식품(3),김치(13) 등 | | | | |

롯데백화점(www.club.shopping.co.kr) :

| | | | | | |
|--------|-------------------------------------------|------|----------|-------|---------|
| 서비스개설일 | '96.06.01 | 회원수 | 58,223명 | 하루이용자 | 14,778명 |
| 월매출액 | 15,000만원 | 제품종류 | 131종 중분류 | 지불방식 | 입금,카드 |
| 취급농산물 | 갈비(18),건강식품(24),주류(13),가공식품(18),전통차(13) 등 | | | | |

인터파크(www.interpark.com) : LG마트, 데이콤 제휴

| | | | | | |
|--------|----------------|------|---------|-------|----------|
| 서비스개설일 | '96.06.08 | 회원수 | 22,000명 | 하루이용자 | 2,000명 |
| 월매출액 | 4,000만원 | 제품종류 | 5,000종 | 지불방식 | 입금,카드,쿠폰 |
| 취급농산물 | 청과(15),김치(6) 등 | | | | |

한솔(www.hansolcs.co.kr) :

| | | | | | |
|--------|-----------|------|----------|-------|-------|
| 서비스개설일 | '97.06.11 | 회원수 | 150,000명 | 하루이용자 | 100명 |
| 월매출액 | 4,000만원 | 제품종류 | 40,000종 | 지불방식 | 입금,카드 |
| 취급농산물 | 건강식품(2) 등 | | | | |

국민카드(www.kookmincard.co.kr) :

| | | | | | |
|--------|-------------|------|----------|-------|------|
| 서비스개설일 | '97.06.23 | 회원수 | 2,000명 | 하루이용자 | 600명 |
| 월매출액 | 300만원 | 제품종류 | 가전,의류,잡화 | 지불방식 | 국민카드 |
| 취급농산물 | 지방특산품(10) 등 | | | | |

네오게이트(www.hiweb.kornet.nm.kr) : 한국PC통신(주)

| | | | | | |
|--------|-----------|------|--------|-------|--------|
| 서비스개설일 | '97.08.01 | 회원수 | 5,000명 | 하루이용자 | 1,000명 |
| 월매출액 | 700만원 | 제품종류 | 120종 | 지불방식 | 현금,카드 |
| 취급농산물 | 특산물(25) 등 | | | | |

신비몰(www.shinbimall.com) :

| | | | | | |
|--------|-----------|------|------|-------|------|
| 서비스개설일 | '97.08.01 | 회원수 | 650명 | 하루이용자 | 100명 |
| 월매출액 | 1,000만원 | 제품종류 | 500종 | 지불방식 | 입금 |
| 취급농산물 | 건강식품(3) 등 | | | | |

숍포인트(www.shoppoint.co.kr) : LG유통

| | | | | | |
|--------|-----------|------|--------|-------|--------|
| 서비스개설일 | '97.08.01 | 회원수 | 5,000명 | 하루이용자 | 1,000명 |
| 월매출액 | 5,000만원 | 제품종류 | 2,500종 | 지불방식 | 입금,카드 |
| 취급농산물 | 과일세트(2) 등 | | | | |

마이다스동아(www.ec.dongailbo.co.kr) : 동아일보사

| | | | | | |
|--------|--------------------------------------------|------|---------|-------|-------|
| 서비스개설일 | '98.01.15 | 회원수 | 10,000명 | 하루이용자 | 700명 |
| 월매출액 | 3,000만원 | 제품종류 | 800종 | 지불방식 | 입금,카드 |
| 취급농산물 | 건강식품(10),민속주(13),유기농산물(1),축산물(10),특산물(9) 등 | | | | |

메타랜드(www.metaland.co.kr) :

| | | | | | |
|--------|------------------------|------|--------|-------|---------|
| 서비스개설일 | '98.03.02 | 회원수 | 1,000명 | 하루이용자 | 50명 |
| 월매출액 | 1,000만원 | 제품종류 | 2,563종 | 지불방식 | 지불카드,카드 |
| 취급농산물 | 건강식품(1),약용(8),육가공(6) 등 | | | | |

트윈피아(www.twinpia.com) : LG-EDS

| | | | | | |
|--------|------------------------------|------|---------|-------|-------|
| 서비스개설일 | '97.09.01 | 회원수 | 12,000명 | 하루이용자 | 70명 |
| 월매출액 | 10,000만원 | 제품종류 | 4,000종 | 지불방식 | 입금,카드 |
| 취급농산물 | 갈비(10),건강식품(8),민속주(1),쌀(2) 등 | | | | |

삼성카드(www.scc.samsung.co.kr) :

| | | | | | |
|--------|------------------------------------------|------|------------|-------|------|
| 서비스개설일 | '98.03.02 | 회원수 | 4,000,000명 | 하루이용자 | 50명 |
| 월매출액 | 500만원 | 제품종류 | 300종 | 지불방식 | 삼성카드 |
| 취급농산물 | 강정(6),김치(6),건강식품(1),고추장(7),고추(2),전분(7) 등 | | | | |

3. 농업·농촌 광역통신망 구축

가. 사업개요

- 초고속국가통신망을 활용하여 전국 어디에서라도 농업인과 소비자등 일반국민이 편리하게 농업정보를 이용·교류하고 농업관련 기관단체가 효율적으로 정보를 수집·공유할 수 있는 농업·농촌 광역종합통신망을 구축하는 사업

나. 추진배경

- 도시지역에 비하여 농업·농촌의 정보통신망등 정보화여건이 극히 열악
 - 인터넷 이용을 위하여는 최저 28.8Kbps(적정수준 56Kbps)이상으로 접속하여야 하나 농업인들의 접속속도는 9.6Kbps에 불과하여 현실적인 이용불가
 - 정보이용을 위하여 도시이용자와 비교하여 4배의 시간(4배의 요금부담) 소비
 - 통신망품질이 떨어져 잦은 에러발생과 재접속에 따른 이용불편 및 추가 비용부담
 - 농촌지역의 접속가능회선수가 도시지역에 비하여 1/3이하 수준에 불과, 접속곤란

※ 국내PC통신 지역별 이용실태

| 구 분 | 서울 및 수도권 | 부산(경남)· 대구(경북) | 기타 광역시 및 도단위지역 | 합 계 |
|--------|----------|-------------------|-------------------|------|
| 가입회원비율 | 60% | 20% | 20% | 100% |

(’97 정보사회인식 및 실태조사, 한국정보문화센터)

- 전국단일접속망인 014XY망은(하이넷-P,DNS)은 서울·부산등 대도시에 집중중설되고 있어 향후에도 농업인의 통신환경 개선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

※ 한국통신의 고속정보통신망(01411) 설치 및 증설계획

(단위 : 회선)

| 구 분 | 서울 및 수도권 | | 부산(경남)· 대구(경북) | | 기타 광역시 및 도단위지역 | | 합 계 | |
|----------|----------|-----|-------------------|-----|-------------------|-----|--------|------|
| '97년말 현재 | 12,902 | 49% | 6,218 | 24% | 7,024 | 27% | 26,144 | 100% |
| '98년 계획 | 5,892 | 74% | 1,344 | 17% | 720 | 9% | 7,956 | 100% |
| 합 계 | 18,794 | 55% | 7,562 | 22% | 7,744 | 23% | 34,100 | 100% |

- 농촌지역에서 초고속정보망을 현실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2015년경에야 가능
- 인터넷전자상거래등을 농업인이 이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와 관련기관들이 추진하는 정보시스템구축사업등의 효과가 반감되고 농업현장에 적용애로
- 농업인의 정보수요나 이용욕구를 저하시키고 농업·농촌정보화 본격추진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

○ 농업관련 기관단체의 정보통신망에 대한 중복투자 및 불필요한 신규수요 발생

- 농림부를 비롯한 많은 기관이 업무처리를 위하여 개별적으로 전국단위의 전용회선을 임대하여 사용하는데 통신회선비용만 연간 110억원('97기준) 소요
- 유통, 검사·검역, 축산등 기관별·분야별 전국단위 초고속망 증설이나 신규설치등 고속통신망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

○ 전국광역단위까지의 기간망은 통합운영 가능하고 이를 기초로 기존의 농림수산종합정보망을 실질적인 정보공유 및 통합정보운용체계로 재구축할 필요성 시급

다. 구축계획

| 단 계 | 내 역 |
|----------------|---------------------------------------------------------------------------------------------------------------------------------------------------------|
| 1단계(1999-200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농촌 광역종합통신망의 기반 구축 - 2Mbps급의 전송망으로 사용자에게 56Kbps 서비스 제공 - 11개 노드 및 54개 접속관문국을 연결 |
| 2단계(2003-201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농촌 광역종합통신망 확산 - 45Mbps급으로 전송망 고속화 및 ATM 교환망으로 전환 - 15개 노드로 확산 |
| 3단계(2011-201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농촌 광역종합통신망 완성 - 155Mbps급이상으로 전송망 고도화 - ISDN 서비스를 비롯 초고속공중정보망 이용 실현 |

라. 추진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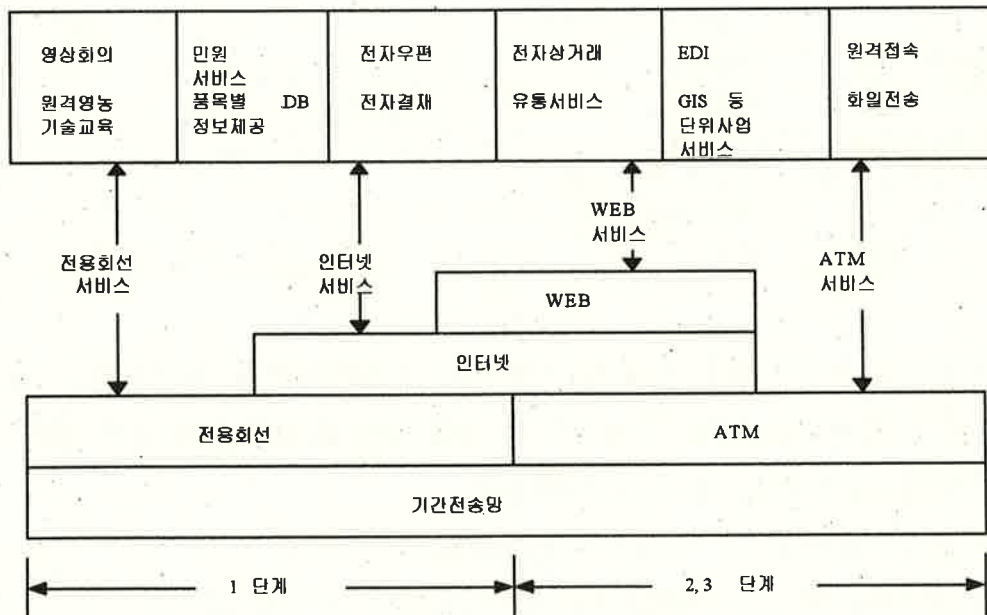
- 기관단체에서 사용하는 통신망과 농업정보를 제공하는 AFFIS망을 단일통신망으로 통합, 전국에서 접속가능한 농업·농촌 종합광역통신망(AGRI-NET) 구축
 - 농업인과 소비자등 일반국민 및 농업관련 기관단체 이용자는 전국 어디서나 '014XY'의 단일접속번호로 정보이용 및 업무처리
- 통신망 구성
 - 11개 광역시 및 도단위에 통신거점(Node) 구축
(서울은 농림수산정보센터, 광역시 및 각도는 농검(통계출장소)에 노드시설 설치)
 - 각 지역거점에 총 54개의 접속관문국(중소농촌도시) 개설
 - 각 접속관문국은 56Kbps로 5천명이 동시접속가능한 회선(Port) 확보
 - 농업관련 기관단체는 중앙조직과 정보센터간 전용회선으로 연결하고 산하기관 및 지방조직은 가장 인접한 통신거점과 전용회선 구축

- 구성내역

| 구 분 | 서울 | 인천 | 경기 | 충남 | 충북 | 전남 | 전북 | 경남 | 경북 | 강원 | 제주 | 합계 |
|--------|-------|----|-----|-----|-----|-----|-----|-----|-----|-----|-----|-------|
| 노드설치도시 | 서울 | 인천 | 수원 | 대전 | 충주 | 광주 | 전주 | 부산 | 대구 | 춘천 | 제주 | 11 |
| 접속관문국수 | 8 | 2 | 9 | 4 | 1 | 6 | 3 | 9 | 7 | 4 | 1 | 54 |
| 전용회선수 | 40 | 3 | 17 | 15 | 8 | 17 | 10 | 18 | 20 | 15 | 5 | 168 |
| 접속포트수 | 1,200 | 90 | 510 | 450 | 240 | 510 | 300 | 540 | 600 | 450 | 150 | 5,040 |

○ 시스템 구축

- 통신거점 : 서울은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기타 지역은 노드 설치 도시의 농산물검사소(농업통계과)에 설치하고 원격접근장치, 통신망 접속장치, 통신망관리시스템 등 확보
- 통신망 : 구축초기 이용자 15만명 기준 E1급 168회선 및 5,040Port 확보
- 통신망 이용체계



○ 망구축방안별 장단점

| 구분 | 개요 | 장점 | 단점 | 비고 |
|-----------|---------------------------------------------------------------------------------------------------------------------------|-----------------------------------------------------------------------------------------------------------------------------------------------|------------------------------------------------------------------------------------------------------------------------------------------------------------------------------------------------|---------------------------------------------------------------|
| Hinet-F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공중정보 회선인 Hinet-P망에서 Frame-relay 방식으로 대체 - 이용자는 기존 전화회선 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설비 투자 불필요 - 별도의 노드구축 불필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가 시군지역별로 별도의 전화번호 또는 01410/11 사용 - 이용자의 통신비용 과다 (56K 이용시 50만원/월) - 농업인 입장에서는 이용 방법은 현재와 동일 - 종합정보망의 기능수행 불가능 | 기존의 환경과 달라지는 것은 없고 농업인이 Frame-relay망을 신청/이용하면 되는 방식 |
| ISDN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회선으로 전화/인터넷/PC 통신 이용하는 디지털통신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장비등은 한국 통신의 기존시설 이용, 초기설비 투자 저렴(6억내외) - 별도의 노드구축 불필요 - 56Kbps 통신속도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 전화망의 ISDN 망으로 교체비용 소요 (카드구입비 및 가입비 30만원) - 사용자의 통신비용 증가 (기본료5천원+전화비용) - 종합정보망의 기능수행 불가능 | 기존의 환경과 달라지는 것은 없고 농업인이 ISDN망을 신청/이용하면 되는 방식 (현재는 일부 대도시만 가능) |
| 별도 광역망 구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14XY 단일 번호 부여받아 자체노드와 고속전용망구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14XY 단일번호로 농업인과 기관단체 공동이용 - 최저 56K 통신 속도지원 - 사용자 통신비용 저렴(전화비용의 3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드구축을 위한 초기 시설투자 소요 - 통신망 운영관리비 필요 | |

※ 기존 한국통신의 통신시설을 이용하는 방안은 초기투자비용 절감효과는 있으나

- 농업인의 입장에서는 기존 접속방식과 동일하며 요금부담이 대폭 증가
- 월 30시간을 이용하는 경우 통신비용은
 - 현재 또는 광역망 : 9,000원(128Kbps까지 동일)
 - Frame-relay망 : 500,000원(56Kbps 속도지원의 경우)
 - ISDN : 35,000원(개인장비 설치 및 가입비 300,000원 별도)
- '014XY'의 단일번호를 부여받을 수 없으며(별도의 통신장비를 설치하지 않고서는 전구간일 전화번호 부여나 기관단체의 공용망 구축등은 불가능)
- 기관단체의 공용망의 기능수행이 불가능해져 종합정보망의 역할은 할 수 없음 (기관단체의 경우 현재처럼 한국통신등에 별도 전용회선을 신청하고 비용지불)
- 상기 표의 Frame-relay망이나 ISDN방식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 현재도 사용자가 쓰고 싶으면 신청하여 사용하면 되는 개별적인 선택의 문제

○ 망구축 투자비용분석

(단위 : 억)

| 연 도 | | 1999 | 2000 | 2001 | 2002 |
|----------------|--------------------------------------------------|-------|-------|------|------|
| 비용 절감 효과 | 기관단체 전용회선 공동사용으로 인한 구축·유지비용 감소효과 ¹ | 33 | 39.6 | 47.5 | 57 |
| | 농업인의 통신비용 절감효과 ² | 2.6 | 3.9 | 5.3 | 6.6 |
| (a) | 소 계 | 35.6 | 43.5 | 52.8 | 63.6 |
| 비용 증가 효과 | 장비 및 회선 설치비 | 81 | - | 2 | 3 |
| | 회선사용 및 장비 운영유지비 | 4 | 10 | 16.5 | 19 |
| | 소 계 | 85 | 10 | 18.5 | 22 |
| (b) | | | | | |
| 경제적 이득(a-b) | | △49.4 | 33.5 | 29 | 41.6 |
| 누적 합 계 | | △49.4 | △15.9 | 13.1 | 54.7 |

※ 2003년부터는 서비스유료화를 통하여 비용증가분을 이용료에서 충당

주1) 농업부분 전용통신망 임차비용('98 기준 110억 예상)중에서 대체가능한 Backbone
과 지방회선의 비용을 전체의 30%로 계산. 전용망의 고속화와 기관별 통신망 수
요증가에 따라 연간 20%씩 전체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

주2) 현재 Affis 연간이용시간의 이동평균값과 회원증가추세에 근거하여 추정. 광역통신
망 이용에 따른 통신이용시간 단축효과(50%)를 고려하여 현재의 통신요금으로 환
산

○ 구축 및 운영방안

- 통신망 구축

- 한국농림수산물정보센터 : 각 기관의 단위 시스템과 연결을 위한 메뉴체
계 개발
- 각 도 농검(통계출장소) : 지역노드 설치환경 정비, 운영교육이수
- 시스템공급자 : 시스템구축 추진일정에 따라 관련장비의 납품, 설치 및
시험운 영 추진(시험운영기간동안 해당지역에 운영요원 1인이상 상주)

- 통신망 운영

- 농림부는 관련 법·제도등 이용환경 정비 및 단위시스템 연결확대
- 원격접근장치 및 국가초고속망은 한국농림수산물정보센터가 담당
- 노드유지보수는 각 지역에 지사가 있는 망관리전문업체에 위탁

- 활용방안(기존대체 또는 신규활용)
 - 전국공영도매시장에서 사용하는 56Kbps급 통신망
 - 서울과 각 지방을 연결하는 농산물 물류정보시스템의 전용통신망
 - 농산물무역/동식물검역 EDI시스템의 각 지사 및 창고
 - 원격영농기술 지도시스템의 농진청과 산하 연구소 및 지방조직
 - 농업지형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농진공, 농조연, 산림청의 전국조직
 - 가축개량/가축질병예찰/소수급 관리시스템등의 전국통신망
 - 통계조사, 재해관리등 지방조직과 연계된 농림부와 기관들의 행정 보고 시스템 구축 및 전자문서교환시스템

마. 기대효과

- 낙후된 농업·농촌정보화 기반을 개선하여 농업인·소비자 및 농업관련 기관단체가 농업·농촌 광역종합통신망을 이용하여 농업정보 이용·교류
- 농업인의 정보이용을 56Kbps급으로 고속화시킴으로써 인터넷 전자상거래등 분야별 농업정보화추진계획의 조기실현 및 농업·농촌정보화 촉진
- 인터넷등 농업정보이용을 위한 농업인의 과도한 비용지출을 막고 농업관련 기관단체의 정보통신망에 대한 기존 중복투자 해소 및 불요불급한 신규투자를 억제

바. 소요예산

- 초기시스템 구축비 : 8,500백만원(장비구입/통신회선 구축등 포함)
- 연차별 소요비용

(단위 : 백만원)

| 연 도 | 1999 | 2000 | 2001 | 2002 |
|-----------|-------|-------|-------|-------|
| 장비설치비 | 8,100 | | 200 | 300 |
| 회선사용료 | 1,400 | 2,900 | 3,100 | 3,300 |
| 운영, 유지보수비 | 50 | 150 | 650 | 700 |
| 합 계 | 9,550 | 3,050 | 3,950 | 4,300 |

1. 현 황

산지와 소비지의 유통정보, 도매시장 유통정보, 관측정보 등을 수집하여 인터넷, PC통신망 등을 통하여 수요자에게 제공

 농축수산물 유통정보시스템

- 농협등 산하단체가 수집한 산지가격, 도매가격, 소비자가격을 농림부가 취합하여 AFFIS를 통해 분산
 - 농축수산물 86개품목 154종류를 품목별, 산지별, 등급별로 제공

 공영도매시장 유통정보시스템

- 가락동 등 15개 공영도매시장의 유통정보를 시장별, 법인별, 품목별, 규격별 거래물량 및 경락가격을 제공
 - 법인별 거래내역을 관리공사를 통해 농림부가 취합하여 AFFIS를 이용하여 제공

 관측정보 등 기타정보

- 관측정보 및 기상정보는 AFFIS를 통해 제공되고 작물재배 의향조사, 재배면적조사 등은 홍보물로 대체

2. 문제점

□ 생산자가 출하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종합적·체계적 정보제공 미흡

- 시황정보, 기상정보, 관측정보, 생산정보 등이 체계적으로 분석되어 제공되지 못하고 단편적인 정보만 제공되고 있는 실정
 - 농림부와 농협등 산하단체가 제공하는 유통정보는 가격위주의 정보이고 도매시장은 경락가격과 물량정보만을 제공
- 출하시기 및 출하시장 판단 등을 위해서는 실시간대의 유통정보가 필요한데 현재는 전날가격이 익일 오후에 분산되는 실정
 - 도매시장 정보는 정산이 끝난 후 제공되고 있고 기타 가격정보도 조사되는 대로 즉각 제공하지 않고 전체 조사자료를 한꺼번에 제공하기 때문에 시차 발생
- 생산자는 산지별·법인별 출하물량, 경락가격 등이 중요한 정보인데 도매시장별 가격 및 물량 정보만 제공

□ 소비자를 위한 유통정보 제공노력 부족

- 소비지 유통정보는 정책판단을 위한 자료로서 조사해 왔기 때문에 지역별 평균가격만 제공되어 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 자료로는 미흡
 - 소비자는 하나로클럽, 가락시장 등 주요 판매처별 가격비교에 관심

□ 규격 등 표준화 수준이 낮아 가격비교 곤란

- 가격조사시 동일한 규격의 가격조사가 안되고 있어 시장별·지역별 가격비교 불가능
 - 같은 조사지역 내에서도 조사시점에 따라 상품의 기준이 다르고 조사자에 따라 차이

□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위한 전문인력 부족

- 산지가격은 농·축협이 담당하고 있으나 전문조사원이 없이 타업무와 겸임하고 있어 가격조사의 전문성 부족
- 농산물의 규격이나 품질에 대한 조사원의 전문성 부족

3. 추진계획

가. 출하 전략정보시스템 구축

- 각기관에 산재되어 제공되고 있는 유통정보를 체계적으로 종합분석하여 생산자가 출하의사 결정에 유용한 정보제공
 - 단순가격위주 정보에서 시황, 기상, 관측, 생산, 정책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제공
 - 도매시장 정보는 산지별가격 및 출하물량 등을 실시간대로 제공

□ 살아있는 시장정보 제공

- 도매시장 정보를 실시간대로 제공하여 생산자의 출하의사 결정에 유용한 자료로 이용될 수 있도록 단계적 추진
 - 전자경매가 되고 있는 도매법인부터 유통정보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간대에 생산자에게 제공
- 단순정보에서 주요산지별 출하물량, 가격정보와 시황분석 제공
 - 청과물의 경우 주요산지별 출하물량이나 경락가격이 출하시기 판단의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산지별 유통정보를 실시간대로 제공
 - 또한 생산정보, 기상정보, 관측정보 등을 종합하여 분석한 정보도 제공
- 신설공영도매시장, 농산물물류센터의 유통정보 제공
 - 2001년까지 전국에 34개 공영도매시장의 신규 건설계획에 맞춰 정보제공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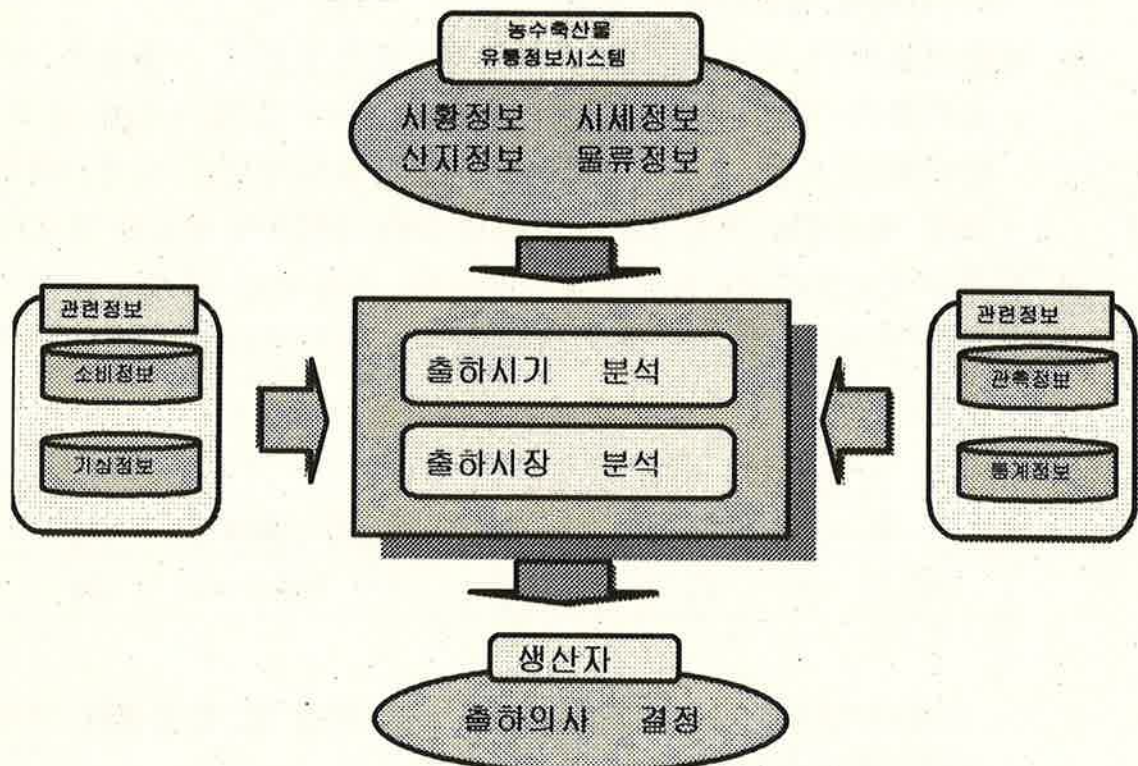
| 구 분 | '97까지 | '98 | '99~2001 | 계 |
|-----|-------|-----|----------|----|
| 개 소 | 17 | 2 | 15 | 34 |

- 농협의 양재동 물류센터의 유통정보 제공 및 물류센터 건설계획에 맞춰 정보제공 확대 추진

□ 시설채소 생산·유통종합정보화시스템 도입 확산

- 시설채소의 생산계획, 농자재, 농업기술, 유통, 출하, 판매 등 농업경영에 필요한 종합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영효율화 도모 및 시장 교섭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설채소 생산·유통정보화시범사업 추진
 - 시설오이, 풋고추, 참외를 대상으로 9개시군 200여 작목반, 단협, 산지공판장을 연계한 시범사업 운영중
- 시범사업의 성과를 철저히 분석·평가하여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
- 산지유통시설과 도매법인간의 EDI 및 CALS/EC 추진
 - 청과물종합처리장 및 포장센터 등 산지유통시설과 도매법인간의 농업·농촌 광역통신망을 활용한 EDI, CALS 기법 도입으로 살아있는 시장정보 제공
 - EDI 및 CALS의 도입을 위한 연구사업 추진

[출하전략정보시스템 체계도]



나. 소비자 유통정보의 내실화

- 생산자나 유통인을 위한 정보뿐 아니라 소비자가 구매결정을 하는데 이용할 수 있도록 대형소매점의 가격정보 제공
 - 소비자는 지역별 평균가격 보다는 하나로클럽 등 소비시장별 유통정보를 기대

□ 대형소매점 소비자가격 제공

- 전국 주요도시의 대형소매점과 연계하여 농산물의 판매가격을 조사하여 AFFIS와 인터넷에 제공
 - 대상지역, 대상소매점, 대상품목을 년차적으로 확대

□ 수입농산물 유통가격 조사

- 수입농산물에 대해서도 거래단계별 가격 조사

다. 조사 및 분산체제 강화

- 조사원의 전문화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
- 농촌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초고속 전용통신망을 확충

□ 조사원의 전문화

- 유통정보만 전담하는 조사원을 배치
 - 농산물의 품질, 규격 등이 동일한 기준에서 조사될 수 있도록 교육·실습 등으로 전문화
- 유통정보조사를 통계 또는 산하단체에서 전담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연차적으로 동일한 기관에서 조사하는 방안 강구

□ 초고속 전용통신망 확보 추진

- 도시지역에 비하여 농촌의 정보화 여건이 열악하여 농민이 유통정보에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우므로 농림수산정보센터가 초고속전용통신망을 구축

□ 농산물 코드 표준화 및 보급 확대

- 농산물의 코드표준화를 '98년중에 완료하여 동일한 품목간의 가격비교가 가능토록 추진
- 효율적인 자료수집 및 정보처리가 가능하도록 농산물코드 표준화 추진
-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 농산물이외에 수산물·축산물 코드 표준화를 '99년말까지 완료

□ 정보수요자 의견을 수렴하여 유통정보 개선 도모

- 생산자, 유통인, 소비자의 유통정보에 대한의견을 수렴하여 유통정보 개선에 적극 활용

4. 추진일정

□ 출하전략정보시스템 구축('99~2000)

- 1단계('98.5 ~ '98.12) : 표준화추진반 운영으로 농산물코드 표준화 제정
- 2단계('99 ~ 2000.6) : 농산물 유통종합DB 개발
- 3단계(2000.7 ~ 2000.12) : 출하전략정보시스템 구축

□ 수요자 위주의 주요 유통기구별 가격비교정보 제공

- 주요도시의 판매장별 소비자가격 조사계획 수립('98.7~9)
- 주요도시의 시장별·판매장별 소비자가격 정보 제공('99)

□ 신설공영도매시장의 경락정보 및 농산물물류센터의 유통정보 제공('99)

□ 시설채소 생산·유통정보화시스템 도입 확산

- 이용자 활용교육 실시('98.7~10)
- 성과분석 및 평가('98)
- 단계적으로 지역 및 품목확대 추진('99)

□ 농산물코드 표준화 제정

- 표준화추진반 구성 및 운영('98.5월)
- 각 기관사용 코드 비교검토, 농산물 표준코드 제정 및
관련기관 사용유도
 - 농산물, 임산물코드 표준화('98)
 - 축산물, 수산물코드 표준화('99)

□ 농산물 인터넷EDI, CALS/EC 등 첨단기법 적용을 위한
연구사업 추진('99.4 ~ 2000.6)

5. 추진일정 및 예산

[단위:백만원]

| 사 업 량 | '99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계 |
|----------------------|-------|------|------|------|------|------|-------|
| ○ 농산물 표준코드 | 72 | 10 | 10 | 10 | 10 | 10 | 122 |
| - 표준코드 제작 | 62 | | | | | | |
| - 표준코드 배포 및 유지관리 | 10 | 10 | 10 | 10 | 10 | 10 | |
| ○ 실시간정보처리 | 798 | 273 | 180 | 180 | 180 | 180 | 1,791 |
| - 휴대용 자료입력 장비보급 | 648 | 93 | | | | | |
| - 자료처리(입력·처리)프로그램 개발 | 30 | | | | | | |
| - 정보시스템유지보수 및 자료전송비 | 120 | 180 | 180 | 180 | 180 | 180 | |
| ○ 출하전략정보시스템 구축 | 200 | 100 | 30 | 30 | 30 | 30 | 420 |
| - 통합유통DB 구축 | 200 | | | | | | |
| - 출하전략정보시스템 구축 | | 100 | | | | | |
| -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 | | 30 | 30 | 30 | 30 | |
| 계 | 1,070 | 383 | 220 | 220 | 220 | 220 | 2,211 |

< 참고자료 >

1. 농수산물 유통가격조사

가. 조사목적

- 유통정보 수요자에게 시장출하 및 매매등에 관한 의사결정 지원
- 농수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대책 등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나. 법적근거 : 농·수·축산물유통통계조사 지침
(농림부 훈련 제550호 : '83. 4. 4)

다. 조사연혁

- '76. 10 : 농수산부 직제개정으로 경제통계담당관실에 유통통계업무 분장
- '77 : 5개품목 농수산물 유통사례 시험조사 실시
- '80 : 20개품목 농수산물 유통시험조사 실시
- '80 : 농수산부 전산실에 IBM 4341(2MB)용량증설
※ 농수산물 유통정보수집 및 전파체계화계획 시행
- '94 : 98개품목 농수산물 유통가격조사 실시

라. 조사품목(98품목 176종류)

| 구분 | 품목 | 종류 | 구분 | 품목 | 종류 |
|------|----|----|------|----|-----|
| 식량작물 | 9 | 10 | 특용작물 | 3 | 5 |
| 채소 | 21 | 29 | 축산물 | 12 | 40 |
| 과수 | 10 | 17 | 수산물 | 35 | 51 |
| 화훼 | 8 | 24 | 계 | 98 | 176 |

마. 조사기관별 조사품목 및 조사원부

| 조사기관 | 유통단계별 조사품목 | | | | 조사원부 |
|------|------------|----|----|-----|------|
| | 산지 | 경락 | 도매 | 소비자 | |
| 농협 | 18 | 31 | | | 93 |
| 축협 | 10 | 2 | 2 | | 80 |
| 수협 | 27 | 21 | | | 29 |
| 농유공 | | | 64 | 50 | 44 |
| 계 | 55 | 54 | 66 | 50 | 246 |

바. 조사방법

- 조사기관의 조사원이 농수산물 공(위)판장, 5일시장, 도·소매시장 등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품목별로 5개소이상 대상업소로부터 면접청취조사

사. 조사시기

- 품목별, 유통단계별로 매일, 5일, 10일 간격등으로 조사

아. 자료입력

- 축협 및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자체전산망을 활용 직접전산입력하고, 농·수협은 자체전산망 구축시까지 시·군농업통계출장소에 자료를 위탁하여 전산입력(농협은 '97. 2월말 자체 전산망 개통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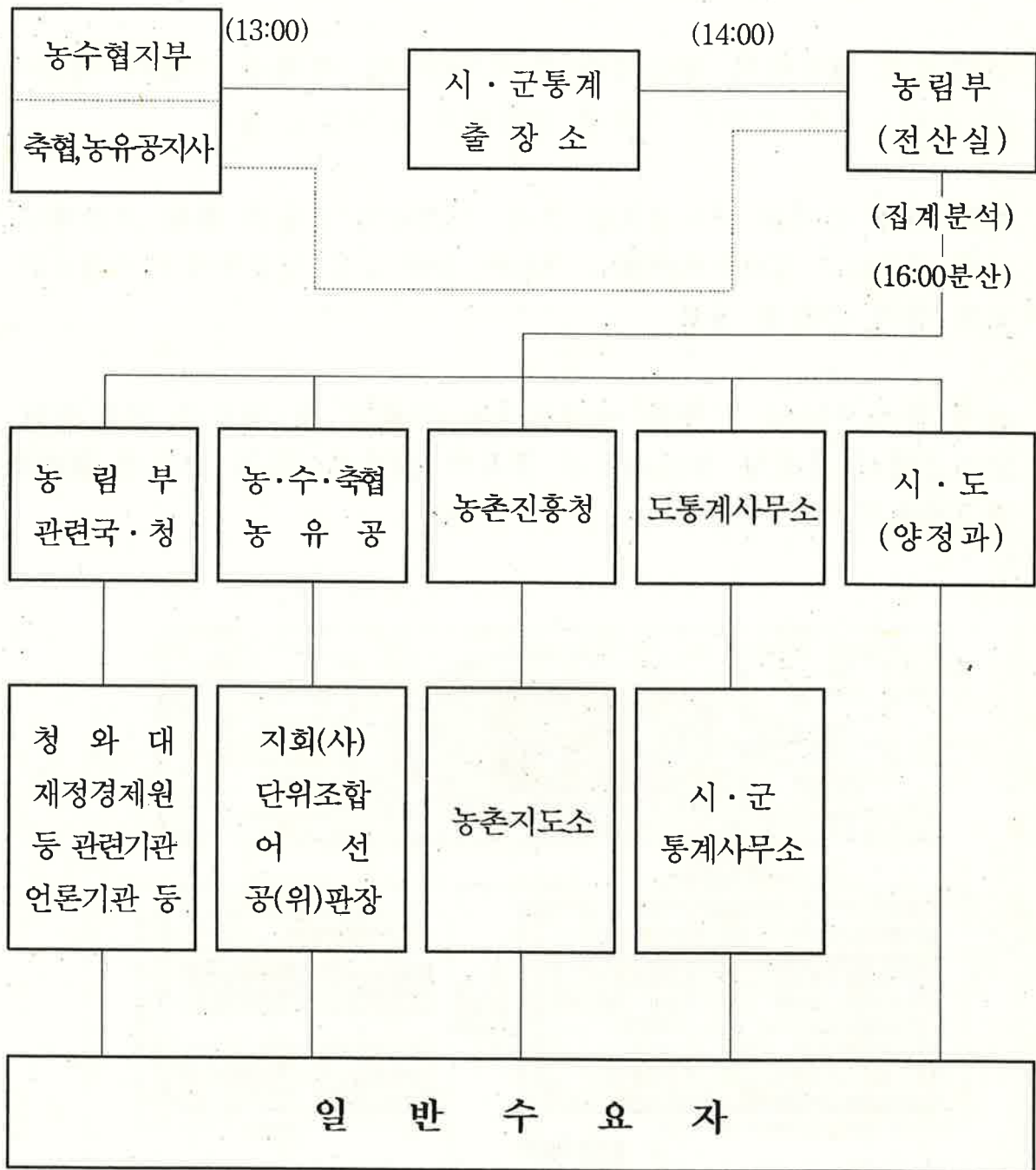
자. 정보분산

- 분산은 농림부 유통경제통계담당관실 주관하에 시·군단위 유관기관에 대한 분산은 시·군 농업통계출장소에서, 농·어민등 수요자에 대한 분산은 농림수산정보센터, 농·수·축협 및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촌진흥청등에서 분담 실시한다.

< 유통단계별 조사품목수 및 지역수 >

| 단계별 | 조사기관 | 품목수 | 종류 | 지역수 |
|----------|------|----------|------|-----------|
| 산지(위판)가격 | 농 협 | 농산물 : 18 | 32 | 산 지 : 93 |
| | 축 협 | 축산물 : 10 | 36 | 산 지 : 89 |
| | 수 협 | 수산물 : 27 | 35 | 위판장 : 18 |
| | 소 계 | 55품목 | 103종 | |
| 소비지경락가격 | 농 협 | 농산물 : 31 | 46 | 공판장 : 21 |
| | 축 협 | 축산물 : 2 | 3 | 공판장 : 9 |
| | 수 협 | 수산물 : 21 | 35 | 공판장 : 4 |
| | 소 계 | 54품목 | 84종 | |
| 소비지도매가격 | 축 협 | 축산물 : 2 | 2 | 주요도시 : 9 |
| | 농유공 | 농산물 : 42 | 66 | 주요도시 : 14 |
| | " | 화훼류 : 8 | 24 | 주요도시 : 4 |
| | " | 수산물 : 14 | 22 | 주요도시 : 14 |
| | 소 계 | 66품목 | 114종 | |
| 소비지가격 | 농유공 | 농산물 : 35 | 54 | 주요도시 : 12 |
| | " | 축산물 : 4 | 5 | 주요도시 : 12 |
| | " | 수산물 : 11 | 17 | 주요도시 : 12 |
| | 계 | 50품목 | 76종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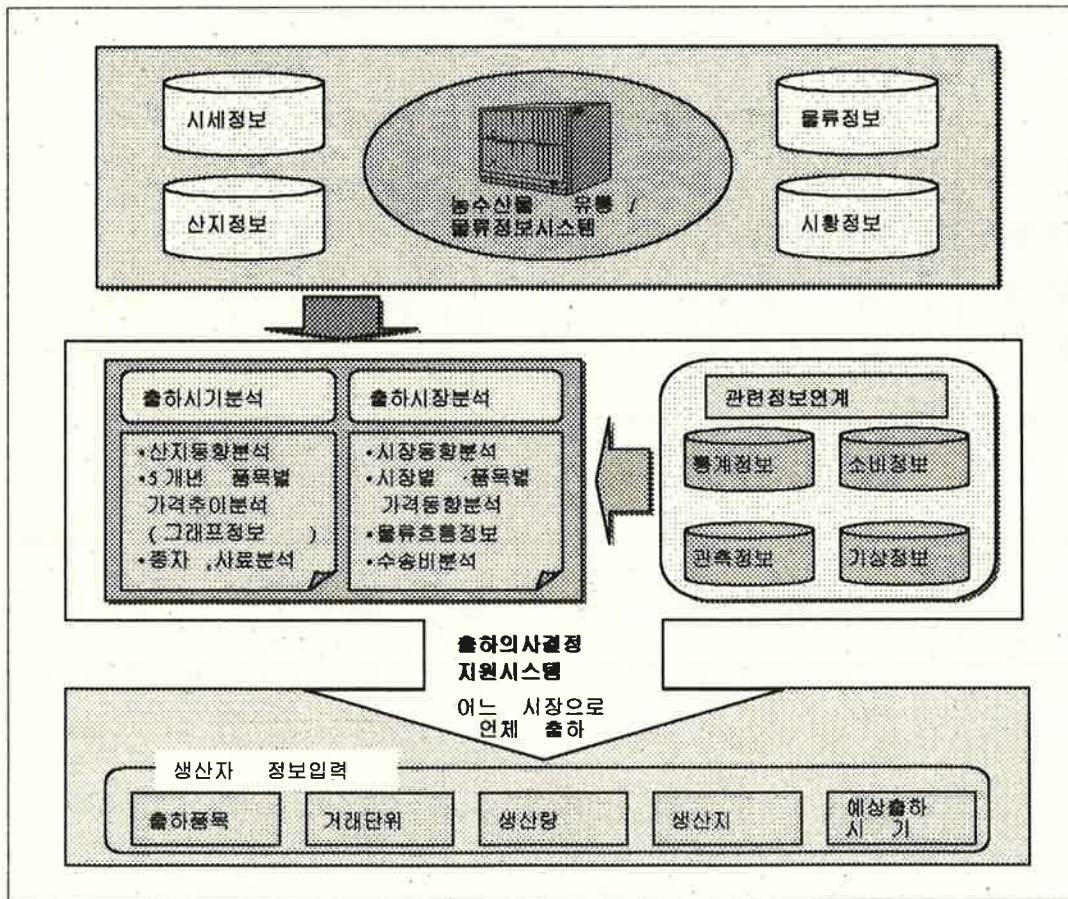
< 유통정보수집 및 분산체계 >



2. 출하전략정보시스템 구축

□ 출하전략정보시스템 구축

- 단순정보 제공에서 생산자의 판매전략수립 지원과 더불어 출하시기 및 출하시장의 선택이 가능한 고품질의 분석정보 제공
- 이를 위해 축적된 시장정보를 분석, 시계열분석 등을 통해 고급화된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구현방법도 그래프 추이 등을 도입하여 다차원적인 정보의 질적 수준을 향상
- 실제 출하하는데 정확한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일방적인 정보제공에서 쌍방향 정보제공과 동시에 판매컨설팅이 가능한 출하의사결정지원시스템 구축



3. 판매장별 소비자가격 조사

가. 조사목적

농산물 유통과정의 최종단계인 소매유통업체의 판매가격을 수집하여 신속·정확하게 분산함으로써



- 소비자에게는 피부로 느낄수 있는 살아 숨쉬는 생활정보 제공
- 판매장별로는 건전하고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유도하여



생산자·유통업체·소비자 모두를 보호

나. 정보수집

(1) 조사지역(연차적으로확대)

| '98년 | '99년 | 2,000년 | 2,000년이후 |
|-------------------------------|-------------------------|---------------------------------|------------------------|
| 서울,부산,대구 광주,대전 (전국5대도시) | 인천,울산 추가(전국 7대도시) | 춘천,수원, 청주,전주,제주 추가(12개도시) | 소비자 가격 조사지역으로 확대 |

(2) 조사대상처

- 조사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소매 유통업체
 - 서울 : 롯데백화점(본점),신세계백화점(본점),현대백화점(무역센터점),
한양쇼핑(잠실점),하나로클럽(양재)
 - 부산 : 현대백화점,롯데백화점,상록회관, LG슈퍼, E마트

- 대구 : 대구백화점, 동아백화점, 동아쇼핑, 대백프라자 알뜰하이퍼마켓
- 광주 : 송원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한미쇼핑, 빅마트, 거평
- 대전 : 대전백화점, 동양백화점, 삼부프라자, 아리랑하이퍼마켓, 까르프

(3) 조사대상품목

- 일상생활과 밀접한 기초 생필품(25개품목)
- 붙임 참조

(4) 조사방법

조사시간

- 조사당일 오후(15:00 ~ 17:00)에 담당직원이 조사대상처를 직접방문 현지 확인조사

조사단위

- 실거래 단위 가격을 조사하여 조사단위(kg, g)로 환산
- 실거래 단위 중량은 저울 등을 이용하여 정확히 측정된 후 조사단위로 환산

조사주기

- 반순별(1, 6, 11, 16, 21, 26일)로 조사

(5) 입력방법

입력표 작성

- 당일 조사가격의 입력표를 작성하여 익일에 입력시키며, 입력 날짜는 입력시키는 년,월,일을 기입

입력시간

- 전일 조사가격을 익일 15:00까지 입력 완료

입력방법

- 기존 유통정보 입력시 사용하는 본지사간 On-Line망 이용

다. 정보분산

(1) 분산매체

- ARS·FAX·KATI 정보서비스망을 이용
- 공사 인터넷 활용
- 정기간행물(월보)에 게재

(2) 분산방법

- 각지역·매장별 명칭을 실명으로 분산
예) : 서울 ○○백화점
- 매장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유형별로 분산
예) : 서울백화점, 재래시장
- 지역별로 분산

(3) 예상 문제점

- 실명으로 분산하는 방법이 정보이용자를 위해 가장 좋은 방안이나 조사대상처(백화점·유통업체)의 반발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사전 협의를 거쳐 문제점 해소

(4) 추진방안

(제1안) : 매장명칭을 실명으로 분산

- 조사대상처를 사전에 직접 방문 및 협조문 발송 등
우리공사의 조사취지를 충분히 설명한후 협조 요청
· 조사대상처를 널리 홍보할수 있다는 장점 부각.
- 조사기본 취지에 가장 부합되므로 적극 추진.

(제2안) : 유형별로 분산

- 조사·분산에 별 문제점이 없음.

(제3안) : 지역별로 분산

- 조사·분산에 별 문제점이 없음.

< 조사품목 및 기준 >

| 부류별 | 품 목 | 품 종 | 코 드 | 단 위 | 등 급 | 조사기준 |
|-------------------|------|------|-------|-------|-----|------------|
| 곡물류 (1) | 쌀 | 일반계 | 11101 | 20kg | 상품 | 유통정보기준 동일 |
| 채소류 (8) | 무 | - | 23100 | 1개 | 상품 | 유통정보기준 동일 |
| | 배 추 | - | 21100 | 1포기 | 상품 | " |
| | 양배추 | - | 21200 | 1포기 | 상품 | " |
| | 상 추 | 치 마 | 21402 | 1kg | 상품 | " |
| | 오 이 | 다다기 | 22302 | 10개 | 상품 | " |
| | 호 박 | 쥬키니 | 22402 | 10개 | 상품 | " |
| | 풋고추 | - | 24200 | 1kg | 상품 | " |
| | 감 자 | - | 15200 | 1kg | 상품 | " |
| 양념류 (3) | 마 늘 | 깎마늘 | 24405 | 1kg | 상품 | 유통정보기준 동일 |
| | 양 파 | - | 24500 | 1kg | 상품 | " |
| | 대 파 | - | 24600 | 1단 | 상품 | - 2~3개 묶은것 |
| 과일류 (3) | 사 과 | 후 지 | 41105 | 10개 | 상품 | 유통정보기준 동일 |
| | 배 | 신 고 | 41201 | 10개 | 상품 | " |
| | 감 껍 | - | 41500 | 10개 | 상품 | " |
| 건어물 (1) | 건멸치 | | 63800 | 1kg | 상품 | 유통정보기준 동일 |
| 축산물 (3) | 계 란 | 대 란 | 51600 | 10개 | - | 유통정보기준 동일 |
| | 쇠고기 | 등 심 | 51201 | 600g | - | - 국내산 |
| | 돼지고기 | 삼겹살 | 51400 | 600g | - | - 국내산 |
| 가 공 식 품 (6) | 식용유 | 콩기름 | 71000 | 1.8 l | - | 동방유량 |
| | 설탕 | 흰설탕 | 72000 | 3kg | - | 제일제당 |
| | 참기름 | 수입참깨 | 73000 | 500ml | - | 오뚜기 |
| | 밀가루 | - | 74000 | 1kg | - | 제일제당 |
| | 라면 | 신라면 | 75000 | 120g | - | 농심 |
| | 우 유 | 흰우유 | 53500 | 1 l | - | 매일우유 |

< 조사 대상 처 현황 >

| 지 역 | 상호명 | 주 소 | 대표자 | 전 화 |
|-----|------------------|---------------|-----|-----------|
| 서 울 | 롯데백화점 | 중구 소공동 1번지 | 이인원 | 752-2500 |
| | 신세계백화점 | 중구 충무로1가52-5 | 지창렬 | 754-1234 |
| | 현대백화점 | 강남구 삼성동 159-7 | 안소승 | 552-2233 |
| | 갤러리백화점 (구 한양) | 송파구 잠실3동 40 | 최상순 | 410-7114 |
| | 하나로클럽 | 서초구 양재동 230 | 이은성 | 3498-1000 |
| 부 산 | 롯데백화점 | 진구 부전동 503-15 | 양화윤 | 810-2500 |
| | 현대백화점 | 동구 범일동 62-5 | 김남종 | 647-2233 |
| | 상록회관 | 동구 범일동 828-9 | 신우균 | 646-3111 |
| | E - 마트 | 사상구 감전1동502-1 | 지산열 | 310-1234 |
| | LG 슈퍼 | 사상구 주례3동 515 | 김만길 | 327-8811 |
| 대 구 | 대구백화점 | 중구 동성로2가 174 | 구정모 | 423-1234 |
| | 동아백화점 | 중구 동문동 20-11 | 이익중 | 422-2111 |
| | 대백프라자 | 중구 대봉1동 214 | 구정모 | 426-1234 |
| | 동아쇼핑 | 중구 덕산동 53-36 | 이윤석 | 252-2111 |
| | 알뜰하이퍼마켓 | 남구 대명5동 58-3 | 강성철 | 625-5857 |
| 광 주 | 송원백화점 | 북구 신안동 6-1 | 고경주 | 510-7000 |
| | 신세계백화점 | 서구 광천동 49-1 | 권국주 | 360-1234 |
| | 한미쇼핑 | 동구 대인동 190-15 | 백선중 | 232-5111 |
| | 거평마트 | 광산구 우산동1589-1 | 조영호 | 940-8800 |
| | 빅 마트 | 남구 주월동 408-1 | 사성룡 | 650-2114 |
| 대 전 | 대전백화점 | 동구 원동 63-4 | 신제하 | 255-4000 |
| | 동양타임월드 | 서구 둔산동 1036 | 오경섭 | 480-5000 |
| | 삼부프라자 | 중구 태평동 395-1 | 전덕수 | 523-4151 |
| | 아리랑하이퍼 마켓 | 동구 홍도동 12 | 이종휘 | 628-1902 |
| | 까르프 | 서구 탄방동 591 | 자멜 | 488-8351 |

4. 수입농산물 유통실태조사

가. 조사목적

- WTO 체제 출범이후 수입개방으로 인한 외국산 농수산물의 국내시장 잠식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외국산 농수산물의 수입현황 및 유통실태를 조사하여 수입개방에 따른 수입 농산물의 파고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나. 조사품목(14개 품목)

- 곡물류(4) : 콩(백태), 팥, 녹두, 강낭콩
- 특작류(3) : 참깨, 들깨, 땅콩
- 과일류(5) : 오렌지, 레몬, 자몽, 포도, 건포도
- 견채소류(2) : 건고사리, 고구마 줄기

다. 조사시기 및 지역

| 조사 품 목 | 조 사 시 기 | | 조사지역 |
|-----------------------------------|-------------------|--------------------|----------|
| | 기초조사 (1차) | 현지실태조사 (2차) | |
| 곡물류(4) 콩(백태), 팥, 녹두, 강 낭콩 | 98. 4. 1 ~ 5. 31 | '98. 6. 1 ~ 7. 30 | 서울 및 수도권 |
| 과일류(5) 자몽, 포도, 레몬, 오렌지, 건포도 | '98. 4. 1 ~ 5. 31 | '98. 6. 1 ~ 8. 30 | “ |
| 특작류(3) 참깨, 들깨, 땅콩 | '98. 8. 1 ~ 8. 31 | '98. 9. 1 ~ 10. 31 | “ |
| 견채소류(2) 건고사리, 고구마줄기 | '98. 8. 1 ~ 8. 31 | '98. 9. 1 ~ 9. 30 | “ |

라. 조사방법

- 문헌 및 통계자료 확인조사
- 수입업체, 도매상, 소매상 등 유통주체를 대상으로 면담청취조사

마. 조사내용

(1) 일반현황

- 명칭(학명, 영명, 한문)
- 원산지 및 내력
- 세계 주요국별 생산량

(2) 수입현황

- 연도별 수입실적
- 국가별 수입실적

(3) 유통실태

- 수입상, 도매상, 소매상 등 유통 단계별 거래실태조사

(4) 유통경로

- 주요 유통경로 및 경로별 물량점유 비율

(5) 유통마진

- 경로별 점유비율이 가장높은 경로상의 단계별 마진
- 가격기준 : 유통량이 많은 동일 품위를 기준으로 각 단계별 동일시점의 실거래 가격(평균) 적용

- 유통비용 및 이윤산출
 - 유통과정상 발생하는 하역비, 운송비, 포장재비 등은 “직접비용”으로 계상

(6) 원산지 표시 이행실태

(7) 수입품의 상품성

- 포장규격 및 거래단위
- 상품특성(국내산과 수입산의 비교)

(8) 소비형태

- 주 소비대상처 및 소비용도

바. 조사결과 보고 및 활용

- 품목별 조사결과는 조사후 1개월이내에 보고
- '98. 12월중 총 조사결과 보고
- 조사결과를 자료집으로 발간
- 정기간행물(월보)게재 및 공사 인터넷, KATI 자료입력

5. 수입 농산물 조사

수입농산물의 국내가격동향 및 거래동향에 대한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관련기관과 유통종사자들에게 기초자료로 제공

가. 가격조사

(1) 정보수집

조사지역 : 전국 10개지역(각지사 소재지)

조사대상처 : 기존 소비자가격 조사상회

품목선정기준

- 수입자유화 이후 국내에서 유통량이 많은 품목

조사대상품목(11개품목)

- 곡물류(3) : 콩(백태), 팥, 녹두
- 특작류(3) : 참깨, 들깨, 땅콩
- 과일류(5) : 키위, 자몽, 레몬, 포도, 건포도

< 가격조사 기준 >

| 구 분 | 조사품종 | 조사단위 | 조 사 기 준 |
|-------|-------|------|----------------|
| 곡 물 류 | 콩(백태) | 1kg | 중품 |
| | 팥 | 1kg | 중품 |
| | 녹 두 | 1kg | 중품 |
| 특작류 | 참 깨 | 1kg | 중품 |
| | 들 깨 | 1kg | 중품 |
| | 땅 콩 | 1kg | 중품(볶음 땅콩) |
| 과 일 류 | 키 위 | 10개 | 개당 85g정도의 상품 |
| | 자 몽 | “ | 개당 550g정도의 상품 |
| | 레 몬 | “ | 개당 150g정도의 상품 |
| | 포 도 | 1kg | 송이당 800g정도의 상품 |
| | 건포도 | 1kg | 상품 |

□ 조사방법

○ 조사시간

- 조사당일 오후(15:00 ~ 17:00)에 조사담당 직원이 조사대상처를 직접방문 현지 확인조사

○ 조사단위

- 실거래 단위 가격을 조사하여 조사단위(kg, g, 개)로 환산
- 실거래 단위중량은 저울 등을 이용하여 정확히 측정된 후 조사단위별로 환산

○ 조사주기

- 순별(4일, 14일, 24일)로 조사

(2) 정보입력

□ 입력표 작성

- 당일 조사가격의 입력표를 작성하여 익일에 입력시키며, 입력표의 입력일은 입력일자를 기입

□ 입력시간

- 전일조사가격을 익일에 15:00까지 입력 완료

□ 입력방법

- 기존 도·소매가격 입력시 사용하는 본·지사간 ON - LINE망 이용
- 입·출력프로그램 개발

(3) 정보분산

- 분산매체
 - 기존 ARS, FAX, KATI 정보서비스망 이용
 - 공사 인터넷 활용
 - 정기간행물(월보)에 게재

나. 거래동향조사

(1) 정보수집

- 수입농산물 수입업체, 전문취급상, 소매상들을 대상으로 면담청취조사
 - 품목별 거래동향 및 유통실태 등을 조사
- 조사결과를 매월말까지 정기적으로 본사보고

(2) 정보분산

- 조사결과를 조사월보, 공사인터넷, KATI, 핸디오피스 등에 게재

6. 공영도매시장 정보화

가. 현 황

□ 대상지역 및 자료수집

- 대상지역 : 15개 공영도매시장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수원, 청주, 충주, 천안, 전주, 창원, 울산, 구리, 안양
- 공영도매시장 거래정보(경락가격, 거래물량등)를 매일 오후 5시까지 농림부로 자료전송
 - 서울 가락동 도매시장의 청과법인(6개)은 판매원표 입력이 당일 오후 6시이후나 익일 9시 전후에 끝남
 - 서울청과 : 익일 10시 30분
 - 농협공판장 : 익일 9시
 - 중앙청과 : 익일 10시
 - 동화청과 : 익일 9시 30분
 - 한국청과 : 익일 9시
 - 대아청과 : 익일 10시 30분
 - 이외 일부 도매시장을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5시 전후 보고

□ 분산체계

- 법인에서 관리사무소에 송신한 자료에 대해 1차 검증을 거쳐 농림부로 전송하면 자동으로 농림부 주전산기에 자료가 구축 되고 농림수산정보센터는 당일 자료를 받아 2차 검증을 한 후 가공·분석하여 공중망을 통해 일반이용자에게 정보 분산
 - 도매시장관리사무소와 법인은 로컬모뎀으로 연결되어 있어 쌍방향 정보통신이 어렵고, 단지 법인으로 부터 거래정보를 받을 수 만 있음

□ 정보서비스 내용

○ 품목별 분류

- 식량작물(두류, 잡곡류, 서류)
- 채소류(엽채류, 과채류, 조미채소류, 근채류, 양채류)
- 과일류(인과, 준인과, 견과, 핵과, 장과, 감귤류, 남양과류)
- 특용작물(유료류, 버섯류)
- 해면류(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수산, 해조류)
- 내수면(어류, 갑각류, 패류, 기타수산물, 조류)
- 수산가공(염장류, 조미가공류, 건제품, 냉동품, 연제품, 해조제품)

○ 품목별 경락정보

- 일일 경락정보
- 주간가격
- 주간거래량
- 월간경락정보

○ 법인별 거래정보

- 법인별 일일가격, 거래량
- 법인별 주간가격, 거래량
- 법인별 월간가격, 거래량

○ 지역별 출하정보

- 출하지역별 일일 경락정보
- 출하지역별 주간가격, 거래량
- 출하지역별 월간가격, 거래량

7. 시설채소 생산유통 정보화시범사업

가. 사업개요

(1) 추진배경

□ 농산물 생산·유통부문의 경쟁력 강화 절실

- WTO체제 출범에 따라 국내 농산물 시장 개방 불가피
 - 시장경쟁원리에 따른 수입농산물의 무차별 시장지배 위협
- 농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 가시화
 - 정부 : 농어촌구조개선 사업 중점추진(2005년까지 45조원 투자)
 - 농민 : 상대적으로 경쟁력있는 시설채소등으로 작목전환
- 농산물 생산·유통체계 개선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개혁대책 시행
 - 품목별 생산자조직 육성과 함께 공영도매시장 및 물류센터 확대 건설

□ 고품질적인 생산·수급불균형과 농산물 가격파동 지속

- 복잡한 유통구조와 높은 유통마진으로 생산농가의 수취가격 낮음
- 부정확한 수요예측과 다수의 독립된 정보부재의 개별농가의 자의적인 생산으로 구조적 수급 불균형 초래
- 복잡한 유통구조와 높은 유통마진으로 생산농가의 수취가격 낮음

□ 농업 및 농촌지역의 정보화 기반 취약

- 농민이 이용가능한 DB나 S/W 등의 부문에 대한 관심과 투자 미흡

(2) 추진목표

정보화에 기반을 둔 영농체계 확립

-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체계적인 농산물 생산 및 출하관리
- 농산물 가격정보 및 생산관련정보(종묘, 자재, 토양, 기상, 병해충, 작물식부면적 등) 제공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해당지역의 농산물 홍보 및 주문판매

□ 생산자 조직에 의한 생산·출하 조절기능 확립

- 시설작목 중심의 생산자조직(작목반)간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생산계획 및 출하상황등 정보공유
- 시기별·지역별로 생산자 자율에 의한 생산·출하 체계확립, 과잉·과소 생산방지 및 유통·소비 안정화 유도

□ 안정적인 생산·출하로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

- 안정적 농산물생산·출하로 농가이익 제고 및 소비자물가 안정 유도
- 공판장등 산지유통체계를 강화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위탁판매 등에 의한 생산농가의 위험부담을 최소화

□ 정보통신을 통한 품목별 주산단지 작목반간 정보공유 및 협력관계 구축

(3) 추진경위

- '96. 3.22 : 시설채소 생산·유통 시범사업 사업계획서 접수
- '96. 4 : 시설채소 생산·유통 시범사업 검토 및 보완
- '96. 5.17 : 농어촌 초고속시범사업 추진회의 개최
- '96. 6.25 : 시범사업 추진계획 보완 및 확정 요청
- '96. 8.29 : 정통부 시범사업 추진 최종확정
- '96. 9 : 농림부 사업추진계획 확정
- '96.11.26 : 설명회 개최
- '96.12. 6 : 제안서 접수
- '96.12.13 : 제안업체별 기술평가
- '96.12.24 : 사업자 계약체결
- '97.1 ~ '97.10. : 시설채소생산유통지원시스템 개발
- '97.11 ~ '98.5 : 시범운영 및 프로그램보완
- '98.6월 중 : 정식개통

(4) 기대효과

농업정보화의 선도시스템으로 확대적용을 위한 모델 및 비전 제시

- 타 농작물, 원예, 축산분야로의 확산 토대 마련
- 과학영농 및 농업정보화 촉진

가격형성과정에 대하여 생산자가 견제수단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 농산물 시장가격 유지

- 수집상, 중도매상에 의한 가격왜곡에 대한 견제수단 확보
- 출하시기·물량·시장조절에 의한 안정적인 수취가격 확보

산지유통체계 개선을 통한 물류비용의 절감

연중 안정된 가격과 물량의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여 도시 소비자 물가안정에 기여

농가경영 및 생산·유통에 대한 정확한 실물관측을 근간으로 농업관련 정책수립에 기여

나. 세부추진내역

(1) 사업내용

□ 사업개요

-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유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주요 시설채소 주산단지를 대상으로 초고속정보통신망을 활용하는 생산자간 정보시스템을 구축 하는 초고속정보화 시범사업

□ 주요시스템 내용

| 목표시스템 | 단위시스템 | 내 용 |
|------------------------|------------|------------------------------------------------------------------|
|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시스템 | 생산관리정보시스템 | 산지생산자의 생산계획 수립, 출하조정등 의사 결정에 필요한 산지생산자간 출하정보교환, 처리 |
| | 산지유통정보시스템 | 산지공판장 경매결과 처리, 안정적 판로확보계획 수립 및 출하물량 조정/분배 |
| | 시설채소DB시스템 | 시설채소 유통정보, 식부의향, 관측정보, 생산 환경, 재배기술등 품목별 전문정보를 멀티미디어 DB 구축 |
| | 시설채소 통신서비스 | 인터넷을 활용하여 지역내/지역간 생산농가 및 작목반간의 정보교환은 물론 도시소비자나 양판점등과의 농산물직거래 서비스 |

○ 생산관리정보시스템

| 서비스대상 | 기능 및 서비스 내용 |
|---------------|-------------------------------------------------------------------------------------------------------------------------------------------------------------------------------------------------------------------------------------------------------------------------------------------------------------------------------------------------------------------------------------------------------------------------------------------------------------------------------------------------------------------------------------------------------------------------------------------------------------------------------------------|
| 작목반 (생산농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목반 기초정보(인원/작목/규모/생산량등) 관리 - 작목결정지원(대체작목 비교/평가, 작부체계) - 예상소득/생산비 추정 - 생산량 추정 - 생산계획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별 생산.출하시기 스케줄링 . 시기별 시장가격 추이 . 지역간 상호 동시검색 - 작목반별 일일 생산.출하내역등 등록 - 타작목반 현황 비교자료 - 일일물량 연간누계/전년도 대비자료 - 생산.출하예정정보 시계열/지역간분석 - 품목별 시계열/시장/지역별 출하상황 분석 - 농가 생산.경영관리용 PC S/W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출하/경영관리 . 영농일정계획지원(농자재/영농자료/인력배분) |

○ 산지유통정보시스템

| 서비스대상 | 기능 및 서비스 내용 |
|---------------|-------------------------------------------------------------------------------------------------------------------------------------------------------------------------------------------------------------------------------|
| 단위농협 (공판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지공판장/경매식집하장/단위농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판장 경락정보(중매인/작목반/농가별) . 타공판장 및 도매시장 정보 비교검색 |
| 작목반 (생산농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매시장법인 경락정보 가격추이분석 (공판장 1개/법인 2개):가락동도매시장 - 전국도매시장/법인별 일일거래정보 출하량/가격동향분석 - 직거래백화점/대형유통업체 수요분석 - 수출대상국(일본) 및 시장 현지시황 제공 - 수출입 동향분석 |

○ 시설채소 전문DB

| 서비스대상 | 기능 및 서비스 내용 |
|---------------|-----------------------------------------------------------------------------------------------------------------------------------------------------------------------------------------------------------------|
| 작목반 (생산농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 연 2회 토양조사 실시 및 결과 자료 DB구축 - 해당 품목별 전문정보 제공(정책/기술/유통 등) - 동의어 유의어에 대한 조건 검색 - 통계.가격 데이터의 조건별 시계열 분석 및 제공 - 해당지역 기상정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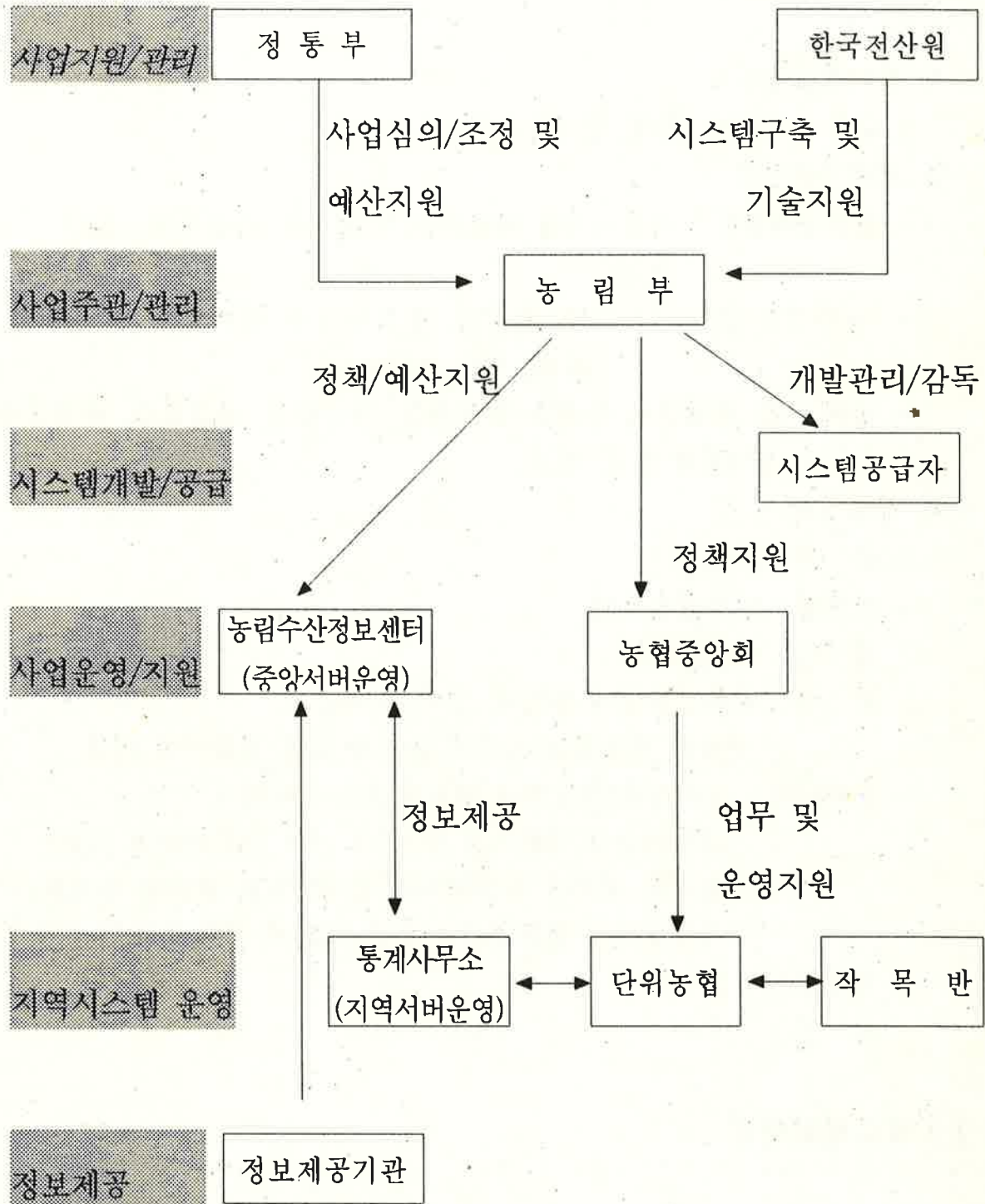
○ 시설채소 통신서비스

| 서비스대상 | 기능 및 서비스 내용 |
|---------------|-----------------------------------------------------------------------------------------------------------------------------------------------------------------------------------------------------------|
| 작목반 (생산농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뎀을 통한 인터넷 접속서비스 제공 - 전자우편(E-MAIL), 전자게시판(BBS), Chatting 서비스 - 성주군청 농산물 및 지역홍보 Homepage 서비스 - 작목반.단위농협 농산물 홍보 Homepage 서비스 |
| 일반User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주문상담 및 주문접수 - 특정정보의 FAX-OUT 서비스 - 국내 대규모 유통업체 및 해외바이어.수입업체 목록소개 |

□ 시스템 구축내역

| 구 분 | 기 준 | 범위 및 대상 |
|----------|----------------------------------------------------------------------------------|------------------------------------------------------------------------|
| 대상작목 | 가격등락폭이 커서 안정적인 가격조절이 필요하고 연중생산이 가능한 대중적인 농작물로서 주산단지 중심의 시장영향력이 큰 품목 | 시설오이, 시설풋고추, 시설참외 |
| 대상지역 | 조직화 용이한 생산자(작목반)로 구성된 대상품목의 품목의 주산단지로서 해당품목의 생산점유율이 높은 지역 | 전남 순천(광양, 고흥, 구례, 보성), 경남 진주·밀양(창녕), 경북 성주 |
| 지원대상 시스템 | - H/W : Server(UNIX) 및 PC - S/W : Web 및 기타 Application - N/W : 전용회선 및 전화회선 | 서버(중앙서버 1대 제외) 및 PC를 Intranet 기반기술로 통합 구축 |
| H/W 설치 | 시스템의 지속적인 유지·관리 및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장소 | 중앙서버 : 농림수산정보센터 지역서버 : 농림부 통계출장소 성주 군청 PC : 단위농협, 작목반, 여노스하버이 |
| 구축대상 기관 | 본 시스템개발/운영과 직접 관련되며 전용회선에 의한 통신망 구축이 필요한 기관이나 단체 | 농림부, 한국전산원, 농림수산정보센터 |

(2) 추진체계



(3) 자료구축내용 및 방법

□ 자료구축내용

- 종자공급량정보
 - 내용 : 종자명, 지역, 종자공급량
- 재배기술정보
 - 일반재배관리 : 생육시기별 재배관리(각 항목의 관련사진, 그림 포함)
 - 농자재가이드 : 농자재 용도별 우수농자재 선택요령(각 항목의 관련 사진, 그림 포함)
 - 병해 : 각 병해별로 부위별 발생증상, 발생원인, 발생환경, 방제대책을 증상사진과 함께 제공
- 상품정보
 - 품 목 : 오이
 - 상표명 : 남부청정오이
 - 회사명 : 서울종묘
 - 특 성 : 저온신장성이 좋으며, 잎이 크지않다
과형이 반듯하고 과피에 윤기가 있어 상품성이 있다
 - 유의사항 : 고온기에 육묘하면 암꽃착생이 적어진다
하우스내의 야간기온 8℃이하 지온 15℃이하가 되면 오이의 생육이 지연되거나 중지되므로 보온에 유의한다
흑종호박에 접목재배를 하면 저온기 생육이 좋아진다
 - 재배작형 : 표
 - 사 진 :

□ 자료제공방법

- 종자공급량
 - 종자공급량 입력화면을 만들어 정보제공자가 직접 입력
 - 각 사별로 입력된 종자공급량은 품목별로 취합하여 제공

- 재배기술 및 상품정보
 - 초기데이터 구축은 각 회사에서 입력할 형식에 맞추어 정리해
농림수산정보센터에서 일괄 등록
 - 차후 자료수정을 할 경우는 온라인처리로 관리

다. 향후 추진계획

(1) 물리적 확산계획

□ 주산단지간 연계 확대

- 남부지역 생산belt 중심에서 전국단위의 주산단지로 확대
- 품목별 전국 주산단지간 연계시스템 구축

□ 적용품목 확대

- 시범사업 및 지역확산을 통해 문제점 및 보완사항을 점검하는 등 시스템 운영이 정착되었을 때 단계적으로 추진
- 시설오이·시설풋고추·시설참외로 국한했던 품목을 1단계로는 시설 토마토·시설딸기 등 타 시설채소 품목으로 확대
- 장기적으로는 농가경제 및 일반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추진우선순위품목을 결정, 적용품목 확대

(2) 질적 발전계획

□ 생산·유통시스템의 질적 보완

- 산지내 농산물 물류비용 감소를 위하여 산지 또는 작업장으로터 직접 출하 하는 시스템 개발 추진
- 주산지간 시스템 연동을 통하여 생산·출하 조정 유도
- 직거래시스템의 참여폭을 확대, 일부 대도시 양판점에서 전국 대량 실수요자 중심으로 확대

- 출하조정 등의 기능을 강화, 생산자와 소비자(양판점이나 도매법인)간출하·구매예약시스템으로 발전

□ 정보서비스 및 DB의 부가가치 제고

- 생산·출하·시장판매에 관련된 각종 자료간 연계를 강화하여 장단기 예측이나 분석이 가능한 DB의 지속적 개발
- 물류정보시스템, 전자경매시스템등 향후 구축가능한 정보시스템과의 연동을 충분히 고려하여 산지생산자가 생산·출하단계에서 농산물의 생산량과 출하량·출하처를 판단·조정할 수 있도록 추진

(3) 제도적 보완계획

□ 사업추진에 필요한 안정적 예산 확보방안 검토

- 품목별 생산자조직 및 품목별 개선대책에 근거, 농안기금 활용
- 유통구조개선이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핵심의 하나인 만큼 관련 특별회계예산 등의 투자방안 모색

□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법령·제도 보완

V. 가격안정대책

1. 채소류 수급안정대책
2. 농안기금제도개선
3. 농산물 물가조사제도개선
4. 농업관측강화방안
5. 농산물가격안정제도개발

I. 검토 필요성

- 정부는 채소류 가격안정을 위해 수매비축, 가격안정대, 생산·출하약정, 출하조정, 채소가격안정사업 등 다양한 정부사업과 민간수매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왔음.
-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성출하기에 가격하락시 수매 또는 출하조정 등을 통한 가격지지로 농가소득을 보전하고 단경기에 비축물량 방출로 가격안정에 기여하는 등 성과가 있었으나,
- 채소류 자체 특성상 재배면적과 작황의 변동폭이 크고 저장성이 낮은 근본적인 제약으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가격급등락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등 구조적 가격안정 달성에는 아직 미흡
- 특히, 개방화 및 자율화시대를 맞아 농정여건의 획기적인 변화에 대응한 효율적인 가격안정제도의 개발이 요청됨.
 - 가격정책 수단을 무역정책 및 구조개선대책과 종합적으로 연계시키며,
 - 수매를 통한 단순한 가격지지 위주 정책에서 농업관측, 생산·출하조정, 계약재배 및 수매비축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키며,
 - 중앙정부의 획일적이고 직접적인 시장개입 방식을 지양하고 생산자 단체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전환 필요
- ⇒ 실질적인 생산·공급 조절과 유통개선이 가능하도록 생산자 조직 중심의 자율적인 가격안정을 위한 제도화 방안 모색

II. 그간 추진된 채소류 가격안정 시책의 내재적 한계 (문제점)

□ 수많은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실질적인 사업성과 미흡

- 마늘, 양파의 생산·출하약정사업은 면적조정 이행여부에 대한 실제 확인이 어렵고 미이행자에 대한 구속력이 미미
- 무·배추의 포전수매사업도 생산자의 계약위반 등으로 재정부담에 비해 실제 안정효과는 작고, 생산자조직화 및 공동규격출하시책과 상치
- 채소류 계약재배사업의 경우 농가의 위험분산은 어느정도 가능하나 생산조정효과는 기대하기 곤란
- 수매비축제의 경우도 생산조정과 연계되지 못한 채 추진되어 재원의 비효율적 사용 초래
 - 고추·마늘·양파 비축사업 손실액 : ('94) 239억원, ('95) 70, ('96) 126

□ 사전적 생산조정보다는 사후적 출하조정에 치중

- 농업관측체계의 정확성과 신뢰도가 낮아 체계적인 활용 미흡
 - 정부가 농업관측을 주관함에 따라 관측 결과 활용의 당사자인 생산자(조직)의 관측에 대한 무관심으로 면적조정, 출하조절 필요성 경시
 - 생산자가 정부의 유통예고를 따르기 보다는 오히려 역행(adverse selection)하여 전년도나 최근가격에 따라 재배면적 결정 경향 농후
 - “정부의 발표와 반대로 하면 성공한다”는 식의 냉소적 분위기
- 책임감과 의욕을 가지고 생산자 스스로 관측을 통한 자율조정을 추진해 나갈 조직과 인력 부족
 - 면적·생산조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보상프로 그램과 연계 곤란

□ 정부주도의 사업추진으로 생산자조직 참여와 시장기능 위축

- 가격안정사업의 추진주체가 되어야 할 생산자조직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사업성공의 핵심인 생산·출하조정에서 무관심과 비협조 다반사
 - 생산자(조직)은 구조적 가격안정 방안 모색보다는 과잉생산시 “정치력을 동원한 수매확대”에만 의존하는 등 정치적 로비에 주력

- “생산자조직 스스로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는 “정부에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 라는 정부의존적 인식이 팽배
- 농산물가격의 정상적인 변동까지 허용하지 않는 과도한 시장개입으로 민간시장기능 위축
 - WTO 등 국내시장 개방에 살아 남을 수 있는 경쟁력 제고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실정

□ 단기성 정책 위주로 예측가능성 결여

- 품목별 기준가격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제도화, 공식화되지 못하고 가격문제가 발생할 때 응급처방식 또는 정치적으로 결정
- 생산자가 불확실성하에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어 공급불안정이 일반화 되고, 정책결정 집행·결과간 시차성으로 인하여 정책효과 미흡

□ 사업·정책간 연계부족으로 실효성 저하

- 농업관측, 생산·출하조정, 매취사업, 공동규격출하사업, 수매비축 등 동일 목적의 개별사업이 다른 추진체에 의해 산발적으로 추진
- 가격안정을 위한 시책과 유통개선사업의 효과적인 연결 부족
- 시장개방에 따른 국내시장 보호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가격정책과 수출입 정책간 연계 부족

Ⅲ. 생산자조직 중심의 자율적인 채소류 가격안정 방안

기본정책방향 (5대원칙)

□ 생산자 조직이 중심이 되어 자율적으로 추진

- 「품목별 전국조직(협회)」이 중심이 되어 생산자 적극 참여 유도
 - 생산자조직의 자조금 구성에 따른 대응지원(matching-fund)
 - 독립채산원칙 반영으로 생산자조직이 자기책임하에 사업 운영
- 의사결정기구로 「생산자자율조정위원회」 구성·운영

□ 가격안정 사업의 일관적 추진

- 현행 계약재배사업을 중심으로 하여 농업관측에서 부터 생산·출하조정, 수매비축(정부수매사업 수탁)에 이르기까지 일관적 추진체계 확립
- 일관적 사업추진으로 적정생산과 적정공급을 통해 적정가격 수취에 중점

□ 사후적 공급조절에 병행하여 사전적 생산조정에 중점

- 생산자가 직접 관측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주도적으로 재배면적 조정 및 출하조정을 실행함으로써 사전생산조정에 중점
- 생산자단체 주도형 생산조정방식을 채택하여 생산자단체가 주도적으로 생산조정 또는 재배면적조정 담당

□ 생산·시장조절의 제도화

- 생산·출하조정 및 수매·방출 등의 자동 작동체제 구축
- 가격 급등락시 보완과 견제에 입각한 정부의 최소한의 시장개입

□ 가격안정사업과 유통개선 사업 연계 발전

- 대상품목에 대한 가격안정과 유통개선을 위한 기존 정책자금을 연계 지원
 - 농안사업자금을 통합하여 package 방식으로 지원하고 농특사업 등과도 연계시켜 시너지효과 거양
- 성과 우수조직에 대한 지원 강화로 무임승차자(free-rider) 문제 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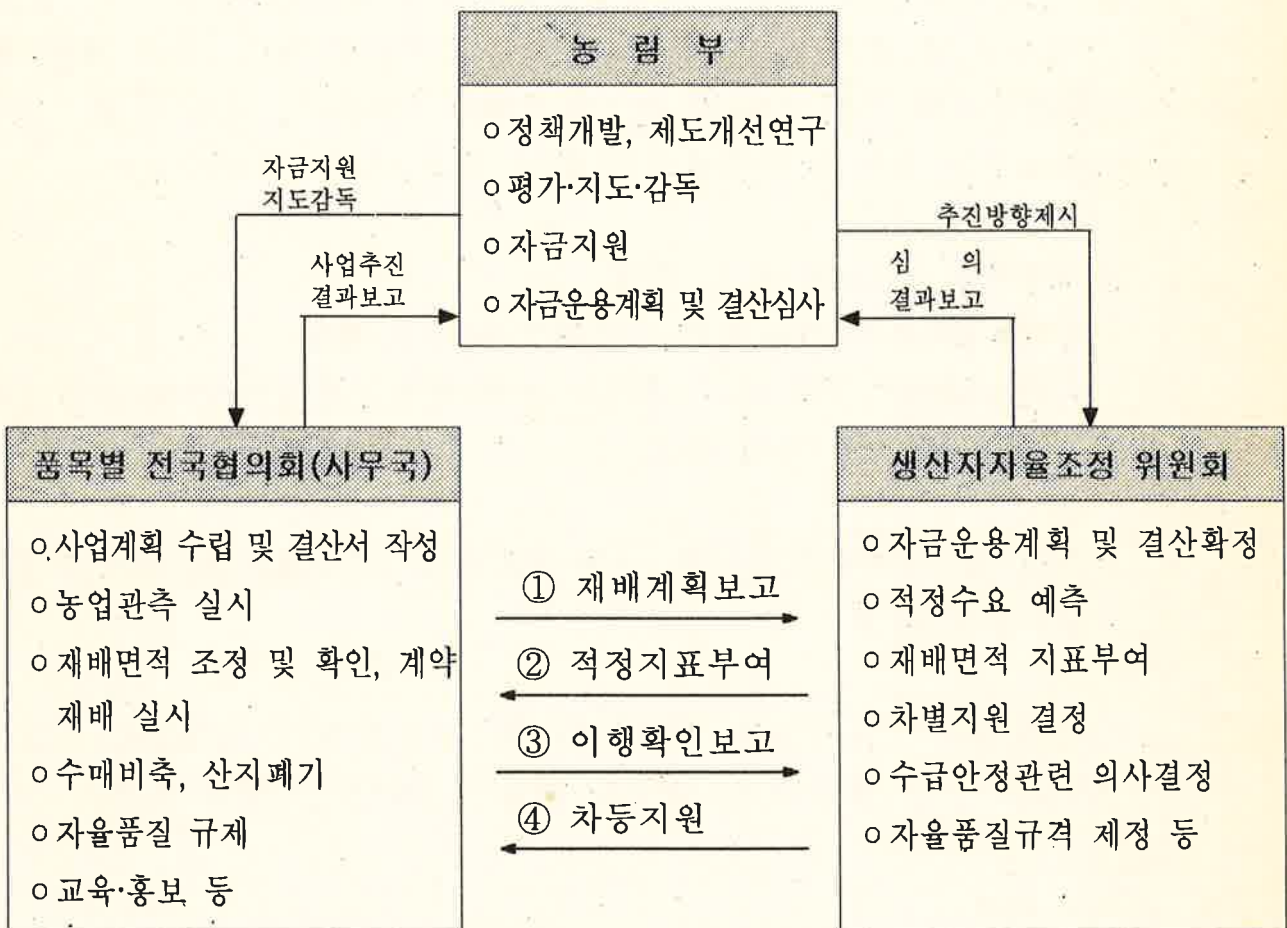
1. 생산자 조직 중심의 자율적·일관적 추진체계 확립

품목별 전국조직(협의회)을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추진하되, 「생산자 자율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농업관측, 계약재배, 생산·출하 조정, 매취사업, 수매비축·방출, 유통개선 등을 일관적으로 추진

□ 대상품목 : 무·배추, 마늘, 양파, 대파, 고추

- '98년 : 현행 채소가격안정사업 품목
 - 단, 품목특성(저장성 유무 등)에 적합한 사업추진방안 마련
- '99년 이후 : 대상품목 확대를 검토

□ 사업추진주체별 역할



<의사결정기구 : 생산자 자율조정 위원회>

- 설치 : 전국단위에 설치
 - 「엽채류 생산자 자율조정위원회」, 「양념류 생산자 자율조정 위원회」로 구분 운영
- 구성 : 공무원, 품목별 전국협의회, 생산자 대표, 학계, 유통관련인 등
- 기능 : 수요예측, 적정면적 산출, 지역별 지표부여, 수매·방출기준 및 사무국 운영, 자금운용계획·결산확정 등에 관한 사항

<집행기구 : 품목별 전국협의회 (사무국)>

- 「품목별 전국조직」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되, 농협 원예특작부를 강화·개편하여 품목별 전국협의회 「사무국」기능 담당
 - 「원특부」를 품목별 전담부서(채소부, 기타부서 등)로 확대 개편, 품목담당과를 두어 품목별 전국협의회의 「사무국」기능 담당
 - 채소부문 품목별 전국협의회 결성 확대 (가을 무·배추)
- 전국협의회 강화 및 문호 확대
 - 협의회를 점차 연합회로 강화하도록 유도·권고
 - 회원농협이외 규모화된 생산자 조직(영농조합법인등)에 가입자격 부여 및 적극적 가입 유도
- 작목반 및 영농조합법인을 생산·출하조정, 물류표준화, 공동계산의 핵심단위로 육성
- 사업추진시 「산지유통 시범농협」과 회원조직이 운영하는 「포장센타」를 적극 활용하고, 사업자 선정시 동사업 기여도 고려

□ 생산자 조직이 대상품목의 가격안정사업 일관 추진
(산지·소비지 연계)

| | |
|-------------------------------|--------------------------------------------------------------------------------------------------------------------------------------------------------------------------------------------------------------------------------------------------------|
| <p>농업관측</p> <p>↓</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목반장, 영농조합법인대표 등을 활용한 농업관측 실시로 적정 재배면적 유도 ○ 생산자 자율조정 위원회에서 시·도별, 시·군별, 작목반별로 적정면적 지표 부여하고 「계약재배」 실시 |
| <p>생산조정</p> <p>↓</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자 조직 중심으로 적정면적 지표에 따라 「면적 조정」 ○ 과잉생산 예상시 「산지폐기」, 과소생산 예상시 「예비묘 공급」 등 조치 |
| <p>출하조절</p> <p>↓</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재배물량 출하조절 실시 ○ 매취사업(회원조합육성사업)으로 출하조절 실시 |
| <p>비축·방출등</p> <p>↓</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잉 생산시 「수매비축」(수출 포함)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품목 정부수매비축사업을 농유공에서 농협으로 이관 - 농안법 실시요령을 개정하여 비축사업 실시기관으로 농협 중앙회 명기 ○ 과소 생산시 수매 비축물량 방출 |
| <p>유통개선과 연계</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물량의 출하를 법정도매시장, 물류센터, 직판장, 대형 유통업체 등 출하를 확인할 수 있는 장소로 한정 ○ 출하예약제 활용으로 출하예약 없이 출하하는 경우 불이익 조치 ○ 공동출하, 공동계산 유도 ○ 규격포장출하촉진 |

□ 계약재배사업을 보완·발전시켜 추진체계에 수용

- 현행 채소류 계약재배는 농가의 소득보장 및 위험분산은 어느 정도 가능하나 수급안정을 위한 생산·출하조정 효과는 미약
 - '97 사업규모 : 5개품목, 2,475억원 조성
 - 계약재배에 의한 출하물량 과소
 - 계약재배 물량이 전체 물량의 6%
 - 사업(출하)실적이 계약재배물량의 53.5% 수준에 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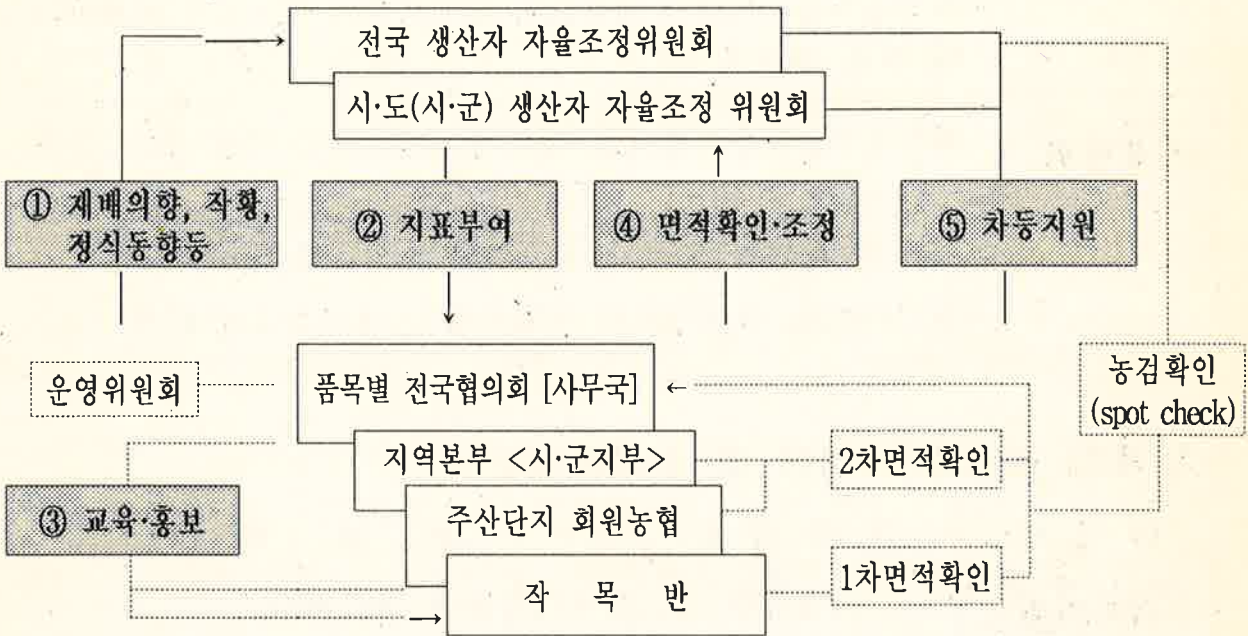
- 품목특성에 적합한 사업추진
 - 저장성 있는 품목과 저장성 없는 품목간 사업내용 차별화로 효율적 사업추진

- 계약재배사업을 생산조정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완·개선방안 모색
 - 사업추진 우수조직(계약 및 출하실적, 생산·출하조정 참여 등)에 차등 우대지원함으로써 무임승차자(free-rider) 문제 해소
 - 유통개선 등 간접지원사업과 연계
 - 사업손실대비 운용자금 차등지원 등
 - 가격안정대 탄력 조정
 - 현행 $\pm 20\%$ 로 고정적용 $\rightarrow \pm 10\sim 20\%$ 범위내에서 자율결정
 - 하한가보다 상한가 폭을 줄여 생산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여 계약재배에 적극 참여 유도
 - 사업조합 실비보상을 위해 사업조합 취급수수료 지급
 - 위약금부과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되 위약시 철저 징수
 - (현행) 계약보증금의 100% \rightarrow (개선) 50~100%

2. 농업관측 강화로 사전적 생산조정 중점 추진

식부의향, 재배면적, 작황 및 시장동향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 수집·분석·전파체계를 구축, 유통예고의 정확도 제고와 생산 조정의 합리적 추진

<기본모형>



<추진체계>

| | |
|-------------|--------------------------------------------------------------------------------------------------------------------------------------------------------------------|
| 관측조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협 또는 작목반장·영농법인대표가 중심이 되어 재배의향, 정식동향, 작황 등을 조사하여 「생산자 자율조정 위원회」에 보고 ○ 관측조사 지원을 위해 사무국에 「관측과」 신설 |
| 지표부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정수요량, 재배면적, 재배의향, 단수, MMA 물량 등을 감안, 식부지표를 부여하되 자율조정 ○ 중앙단위 → 도단위 → 시·군단위 → 협의회 소속 주산지 조직 순으로 하위지표 부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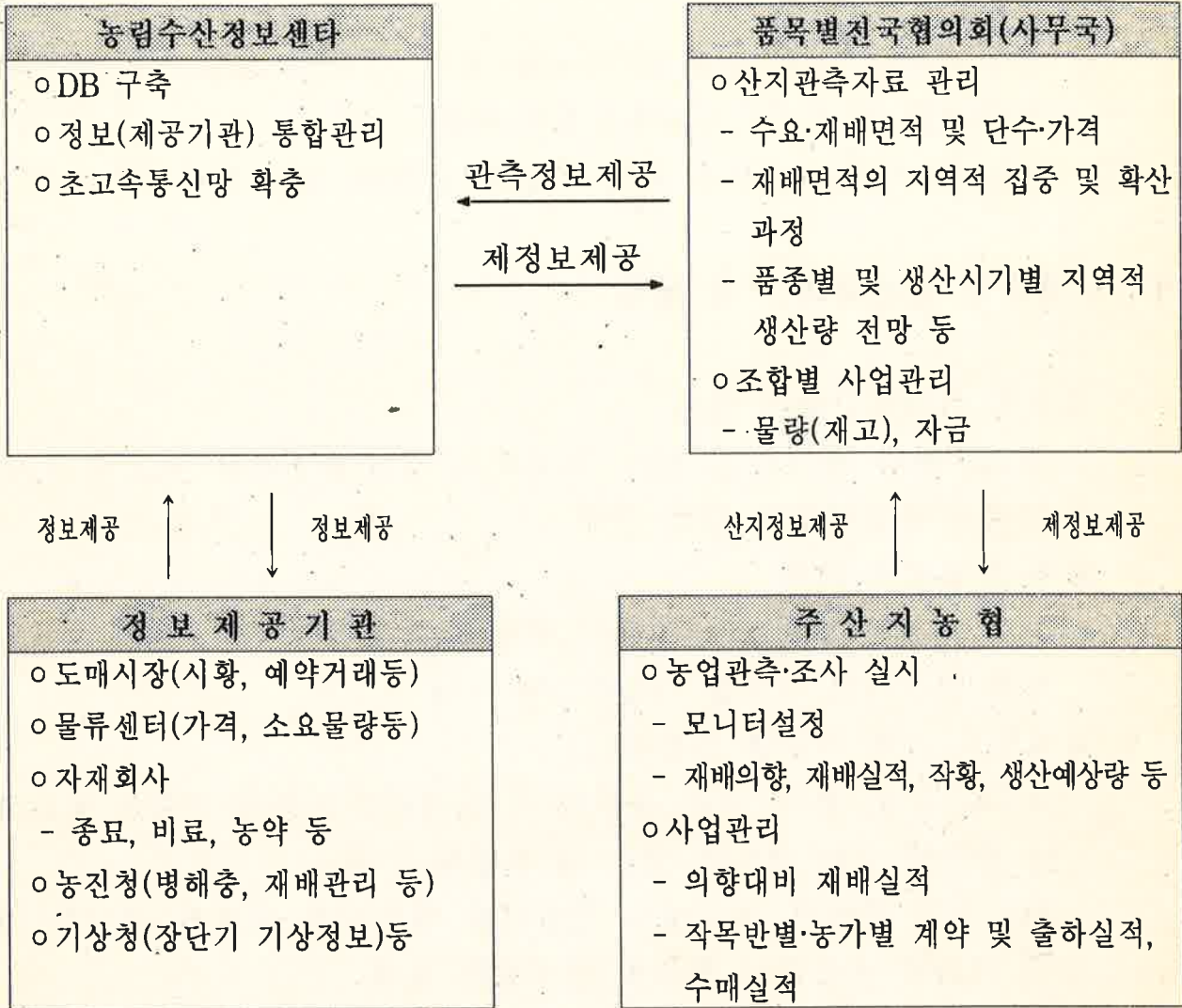
| | |
|-------------------|----------------------------------------------------------------------------------------------------------------------------------------------------------------------------------------------------------------------------------------------------------------------------------------------------------------|
| 교육·홍보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한기 계약농가 집합 교육 (작목반별 또는 읍면별) ○ 전담배부, 작목반장에게 동향을 수시로 일괄 fax 발송 ○ 지역방송, 농업전문지 게재, 반상회 등을 통한 교육 홍보 |
| 확 인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 자체적으로 지표이행 여부를 조사확인토록 하고, 타조합 직원·작목반장 등이 2차 표본조사 확인 (cross chec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적으로 농검이 무작위 추출조사(spot check)를 통해 확인 ○ 확인시 지적도와 전산처리된 재배면적 조사표를 대조 ○ 확인결과를 토대로 자율조정 위원회에서 부여면적 이행 독려 및 지표 재부여 |
| 차등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인결과, 의무이행여부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 (도·시군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취사업자금 및 공동규격출하자금 우선 확대지원, 비축수매 우선권 부여, 사업손실대비 운용자금 차등지원 등 ○ 장기적으로 생산자조직 지원사업을 생산조정과 연계 |

<단계별 농업관측 내용 및 조치계획>

| 단 계 별 | 관 측 내 용 | 조 치 계 획 |
|-------------------|------------------------------------|----------------------------------------------------------------------------------------------------------------------------------------------------------------------------|
| 식부이전 ↓ | 재배의향 종자판매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정면적 재배 유도 ○ 계약재배 |
| 파 종 기 ↓ | 파종상 면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정면적 재배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협 중심의 예비묘 확보·공급 ○ 지표부여로 면적조절 ○ 계약재배 |
| 생 육 기 ↓ | 작 황 병충해 예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에 의한 산지폐기 ○ 수출입 물량 검토 |
| 출 하 기 | 생 산 량 저 장 량 수출입량 시장동향(가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하조절 ○ 저장·가공, 비축수매 ○ 자율품질규제(부적합품 출하억제) ○ 소비촉진 ○ 수출입 |

<농업관측 및 사업관리의 전산체계(농업정보체계)>

□ 체계도



□ 산지관측자료 생성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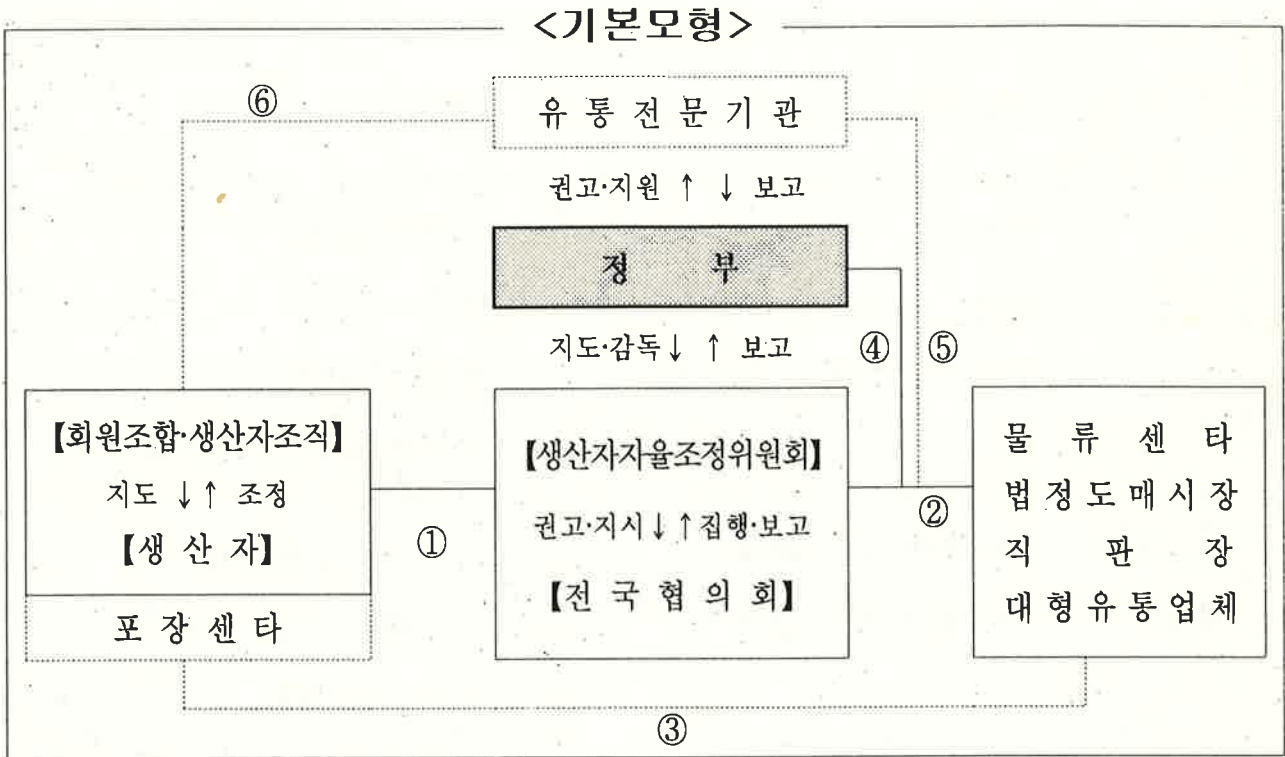
- 조사대상
 - 품목별 전수조사 또는 주산지 중심의 표본조사중 품목별 특성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 선택
- 자료입력 주체
 - 작목반별 조사표 작성후 단위농협에서 일괄 취합 보고 또는 작목반, 영농조합법인에서 개별 직접 보고
 - 주산지 경우는 직접보고, 비주산지의 경우는 단협에서 취합보고방식 채택 검토

- 자료입력방법
 - 자료입력 주체에 따라 조사표 기재, 입력프로그램 사용 등
 - 기존 조사하고 있는 농림부 통계조사의 조사요령 비교검토 및 협의
- 확인절차 및 방법
 - 기초자료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단계별 검증과정 제시와 전담자의 지정으로 자료추적경로 확보
 - 기초자료의 검증방법을 위한 기술적 검토와 방안 제시

□ 농업관측 전산체계 구축 방안

- 초고속 정보통신망과 연계
 - 농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 초고속 시범 사업의 개발업무와 상호 연계
- 농협 물류망과 연계
 - 현재 추진중인 소비지 중심의 농협 물류망에 산지농업관측정보를 상호 연결시켜 쌍방향 전송시스템 구축
- 농업정보 관련 기관별 역할분담
 - 자료의 수집, 분석, 가공, 분산의 각 단계별로 기관의 역할을 분담하여 전문성 있는 정보의 생산 및 제공에 주력
 - 단편적인 정보의 생산에서 종합적인 영농지원 정보의 생산을 위해 기관별 전문화된 정보의 연계방안 모색

3. 생산·시장조절의 제도화 체제 구축



□ ① 생산조정의 자율화·정형화

- 정확한 관측실시와 그 결과 활용으로 적정 재배면적 유도, 재배계약 체결, 예비묘 공급, 면적조정, 산지폐기 등 실시
- 생산조정 방식은 생산자(조직)의 자율조정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의 차등화를 통하여 목표관리에 동참 유도
- 면적조정·산지폐기 등은 생산자 자율조정 위원회에서 사전에 객관적 기준을 정하여 정형화

□ ② 공급조절의 정형화·자동화

| | 저장성 없는 품목 (무·배추) | 저장성 있는 품목 (마늘·양파·고추) |
|------------|-----------------------------------------------------------------------------------------------------------------------------------------------------------|---------------------------------------------------------------------------------------------------------------------------------------------------------|
| 가 격 폭락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하조정(포전 매취) 실시 - 대상 : 신고 농가중 의무이행 농가 - 배정 : 생산조정 이행과 연계 - 가격회복시 폐기·증여·수출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하조정 실시 - 보관물량은 우선 가공·수출 업체에 판매 ○ 비축수매실시 ○ 품질자율규제 - 규격품 이하 출하금지 |
| 가 격 폭등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물량 출하 확대 - 미이행시 지원 감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물량 출하확대 - 미이행시 지원 감축 ○ 비축물량 방출 - 생산자 위탁수매 비축물량과 수입비축물량 자동 방출 |

- 공급조절과 관련된 기준은 생산자 자율조정 위원회에서 결정
 - 단, 기준가격 수준은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점차 하향 조정
- 가격안정대(관리가격)를 벗어날 경우 시장개입 정책수단이 자동적으로 작동되는 시스템 구축
 - 적정가격 변동폭 인정 및 free rider 제거 효과 기대
- 물량방출 확인은 지정출하처 증빙서와 함께 전문기관 등 활용방안 모색
- 저장용 민간수매지원사업의 생산자단체로의 이관문제 검토
 - 유통공사 기능개편방향에 따라 조정

□ ③ 산지와 소비지간 안정적 물류 확보·유지

- 소비지 출하처와 사업수행하는 생산자(조직)·포장센타간에 계약재배 관리물량 출하(계약)를 장려
 - 계약재배를 통한 생산자 조직중심의 자율적인 생산·공급조절 체제가 성공적으로 구축되기 위해서는 동사업 관리물량의 안정적인 판로의 확보·유지가 필수
 - 출하처에 계약재배 관리물량 및 규격포장출하물량 처리실적 등에 따라 출하촉진자금을 지원하는 방안 검토
- 출하예약제를 적극 추진하여 단기 시장가격 진폭 완화
 - 출하예약없이 출하하는 경우는 판매후순위 조정 또는 출하장려금 미지급 권고등 불이익 조치
- 계약재배물량의 공동출하·공동계산제 적극 유도
 - 포장재 공급 → 등급·품위교육 → 생산자 자율로 포장·등급 산정 → 검수 → 공동출하 → 공동계산
 - 공동출하, 공동계산하는 생산자조직에 정책자금 집중 지원
- 규격포장화, 물류표준화 적극 추진

□ ④ 최소한의 정부역할 유지 (개입 최소화)

- 생산자 조직에게 생산조정뿐만아니라 정부수매를 포함한 공급조절 권한 확대 부여로 시장질서왜곡 개연성 증대
 - 생산자 우선 고려로 소비자 후생에 대한 관심 소홀
 - 가격지지 위주 사업추진으로 가격안정효과 기대 어려움.
- 시장질서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보완과 견제역할 충실
 - 소비자 가격안정 관리차원에서 수입물량 관리는 정부가 계속 담당
- 평가·지도사업 추진
 -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었는지 평가하여 점검과 지도 및 감독을 강화해 사업성과 거양
 - 평가를 제도개선과 보완에 적극 활용
- 「긴급수매자금」 일괄 대여·운용방식 도입
 - 불용자금 발생으로 인한 한은계정상 유보자금 최소화 및 기금증식 기여로 기금운용의 건전성 도모

□ 간접 통제방식에 의한 공급조정 보완체제 구축 [⑤ 공개시장 조작, ⑥ 선도거래제] : 장기도입가능제도

- 품목별 생산자 조직 중심의 수급조절 기능 확대 부여로 정부의 직접 통제물량(정부비축) 축소에 따른 보완시스템(장치) 구축으로 시장 안정(가격안정) 도모
 - 정부와 생산자 조직의 역할을 보완·견제토록 하여 위험분산을 다각화
 - 가격예측과 물량조절능력 제고
- 농수산물 유통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에 공개시장 조작기능과 선도거래(forward 거래) 권한 부여·실시 검토
 - 자체사업화하여 자율적인 손익판단에 따라 사업수행하는 방식 도입
 - 필요한 자금은 농안기금에서 저리융자 지원

4. 가격안정사업과 유통개선사업 연계 발전 등

□ 가격안정사업을 생산자 조직 중심으로 추진하고 이들 조직이 동시에 유통개선사업 주체임을 감안하여 양사업이 연계되어 발전되도록 통합지원 유도 (생산자 조직 육성)

- 유통개선 대상사업 : ① 집하장, 포장센터 등 산지유통시설
 - ② 물류시설·장비, 포장재 지원등 물류표준화 사업
 - ③ 농안기금중 작목반육성(공동규격출하)사업, 회원조합육성(매취)사업
- 자율적인 생산·공급조정 등에 참여하는 생산자(조직)에 유통개선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하여 비참여 조직·농가와 차별화
 - 주산지 생산자 조직 집중 육성·보장
 - 보다 많은 농가가 생산조정에 참여토록 유도하고 free-rider 발생 문제도 해소
- 연계방법 : 면적지표 이행 및 계약재배 출하 이행여부, 출하예약실적, 공동 규격출하, 공동 계산제 등과 연계
- 농안사업과 신청주의사업간 조화문제
 - 농업관련 재원을 종합지원하여 지원효과의 극대화 도모와 정책목표 달성의 시너지효과 제고

- 채소류의 경우 구조적 가격안정을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로 간주하여, 채소류 신청주의 사업의 지원방향을 생산자조직 중심의 자율적 생산·공급조정체제의 정착에 집중되도록 유도

□ 자조금 조성 유도

- 채소산업 특성상 다수의 영세농가 참여, 출하경로 복잡 등으로 당분간 생산자조직이 사업에 소요될 자조금 조성에 어려움 예상
- 농업관측, 조사·연구·홍보 등 지출사업을 위해 전국조직이 자조금 조성시 대응지원 matching-fund 검토

Ⅲ. 소요자금 및 예산

□ 사업 소요비용

- 사업소요자금
 - 사업대상품목에 지원되는 모든 농안사업자금을 package 방식으로 지원
 - 계약재배 사업비, 수매비측 사업비, 작목반육성(공동규격출하) 사업비, 회원조합육성(매취) 사업비
- 사업추진경비
 - 계약재배사업 실시, 농업관측 조사실비, 수매비측 사업손실, 교육·홍보비, 자율조정위원회 운용비, 이행여부 확인 실비 등

□ '98 자금조성 규모

<계약재배 사업규모에 따른 소요자금 추정>

(단위 : 천톤, 천원, 억원)

| 품 목 | 전체생산 ① | 톤당단가 ② | 사 업 비 ③ = ① × ② × ④ | | | | |
|------|-----------|-----------|---------------------|-------|-------|-------|-------|
| | | | 8%④ | 10% | 13% | 15% | 20% |
| 무·배추 | 4,426 | 279 | 980 | 1,240 | 1,600 | 1,850 | 2,470 |
| 고 추 | 185 | 6,250 | 940 | 1,160 | 1,500 | 1,730 | 2,310 |
| 마 늘 | 437 | 1,800 | 630 | 790 | 1,020 | 1,180 | 1,570 |
| 양 파 | 648 | 375 | 190 | 240 | 320 | 370 | 490 |
| 파 | 250 | 810 | 160 | 200 | 260 | 300 | 400 |
| 계 | 5,946 | | 2,900 | 3,630 | 4,700 | 5,430 | 7,240 |

- 주) 1. 전체생산은 평년생산기준
 2. 톤당 단가는 '97 사업 톤당 단가 적용

<'98년도 조성규모>

- '97년도 경우 계약재배물량이 전체물량의 6%에 불과하고 사업(출하) 실적이 계약재배물량의 53.5% 수준으로 미약
 - 따라서 급격한 사업규모 확대보다 사업내실화가 우선 필요하므로 사업물량을 전체 물량의 8% 정도로 하고 이후 점차 사업규모 확대 검토
- 계약재배 및 매취·공동규격출하 사업자금을 정부 80%, 생산자 20%로 분담하여 조달하고, 자조노력 확보 차원에서 점차 생산자 분담 비율 상향 조정
 - ※ 단, 생산자(농협중앙회, 단협) 추가부담분중 품목별 전국협의회 분담 비율을 확대
- 수매비축 및 매취·공동규격출하사업자금은 '98 운용계획에 편성된 예산을 사업자금으로 전도

< '98년도 사업자금 조성규모 >

(단위 : 억원)

| | 계약재배사업 | 작목반 육성자금 (공동규격출하자금) | 회원조합 육성사업 (매취사업) | 수매비축·출하 조정사업 등 | 계 |
|-----|------------|---------------------------|------------------------|-------------------|-------|
| 정 부 | 2,320(80%) | 360 | 120 | 500 | 3,300 |
| 농 협 | 580(20%) | 90 | 30 | - | 700 |
| 계 | 2,900 | 450 | 150 | 500 | 4,000 |

□ 사업비용 처리

- 사업비용은 운용자금 수익등 자체수익으로 충당함을 기본원칙으로 함
 - 계약재배사업 실시, 자율조정위원회 운영비 등
 - 단, 수매비축 사업손실은 시장통제가 가능한 사업규모 수준 (15%) 까지는 정부와 농협이 분담하여 부담하고, 이후 사업주체가 전액 부담하는 방안 검토
 - 분담비율은 추후 검토하되 생산자단체 부담분을 연차별 상향 조정

- 한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교육·홍보비, 농업 관측 조사실비, 이행여부 확인실비는 사업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일정기간, 농안기금에서 부분보조하는 방안도 검토
 - 자조금 조성과의 연계 (matching fund)

□ 자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 | |
|------------------------|-----------------|
| 자금운용과 사업계획 수립 및 결산서 작성 | 품목별 전국협의회 (사무국) |
| 자금운용계획 및 결산심사 | 농림부 (유통관리과) |
| 자금운용계획 및 결산확정 | 생산자 자율조정협의회 |

I.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현황

1. 설치목적

-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안정도모와 농수산물 유통 시설의 현대화 촉진(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44조)
- ※ 쌀·보리는 양곡관리특별회계, 축산물은 축산발전기금에서 담당

2. 기금의 재원 및 용도

□ 기금의 재원

- 출연금 및 차입금
-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수입이익금 부과금, 융자금 이자수입 등)

□ 기금의 용도

<지 출>

- 정부수매·수입사업과 당해사업의 관리
- 생산·출하조정에 의한 손실보전
- 유통구조개선에 관련된 조사·연구·홍보·교육훈련 및 해외시장개척
- 유통정보체계의 운용과 물류표준화의 촉진

<용 자>

- 농수산물의 가격조절과 생산출하의 장려 또는 조정
- 농수산물의 보관·관리·가공 및 수출촉진
- 도매시장과 공판장으로의 출하촉진·시설 및 운영자금

3. 운용체계

□ 기금사업 관련기관

- 사업시행계획기관 : 사업을 관리하고 지도·감독하는 농림부, 해양수산부 각 사업국 및 산림청
- 정부사업실시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 정부비축사업실시기관, 기금재산관리기관
 - 농협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 : 정부 농산물 구매 및 출하조정사업실시기관
 - 수협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 : 정부 수산물 구매 및 출하조정사업실시기관
- 민간융자사업 기금대출기관 : 농·림(축)·수협중앙회, 인삼협동조합중앙회, 농수산물유통공사

□ 융자사업자 선정방법

- 일반업체사업 : 기금대출기관이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선정하되,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협회의 추천을 받아 기금대출기관이 선정
- 농·림·수·인삼협회원조합사업 : 소속 중앙회에서 선정
- 농·어업인사업 : 농·림·수·인삼협중앙회가 그 회원조합에 사업계획을 시행하고, 회원조합이 영농회장·작목반장·어촌계를 통하거나 팜프렛 등을 이용한 홍보를 실시하여 선정

4. 조성 및 운용현황

□ 조성실태 (2조 87억원)

<농안기금 조성현황>

(단위 : 억원)

| 년 도 | 정부출연금 | 재특차입금 | 운용수익금 | 계 |
|---------|-----------|-----------|-------------|--------------|
| '68~'89 | 1,075 | 750 | 3,235 | 5,060 |
| '90~'96 | 400 | 780 | 11,996 | 13,176 |
| 계 | 1,475(8%) | 1,530(8%) | 15,231(84%) | 18,236(100%) |
| '97 | - | △250 | 2,101 | 1,851 |
| 합 계 | 1,475(7%) | 1,280(6%) | 17,332(87%) | 20,087(100%) |

<운용수익금 내역>

'97년말 현재 (단위 : 억원)

| 합 계 | 비 축 사 업 | | | | 이자수입등 |
|--------------|---------|--------|--------|-------------|------------|
| | 수 매 | 수 입 | 기 타 | 계 | |
| 17,332(100%) | △4,970 | 20,488 | △3,080 | 12,438(83%) | 4,894(1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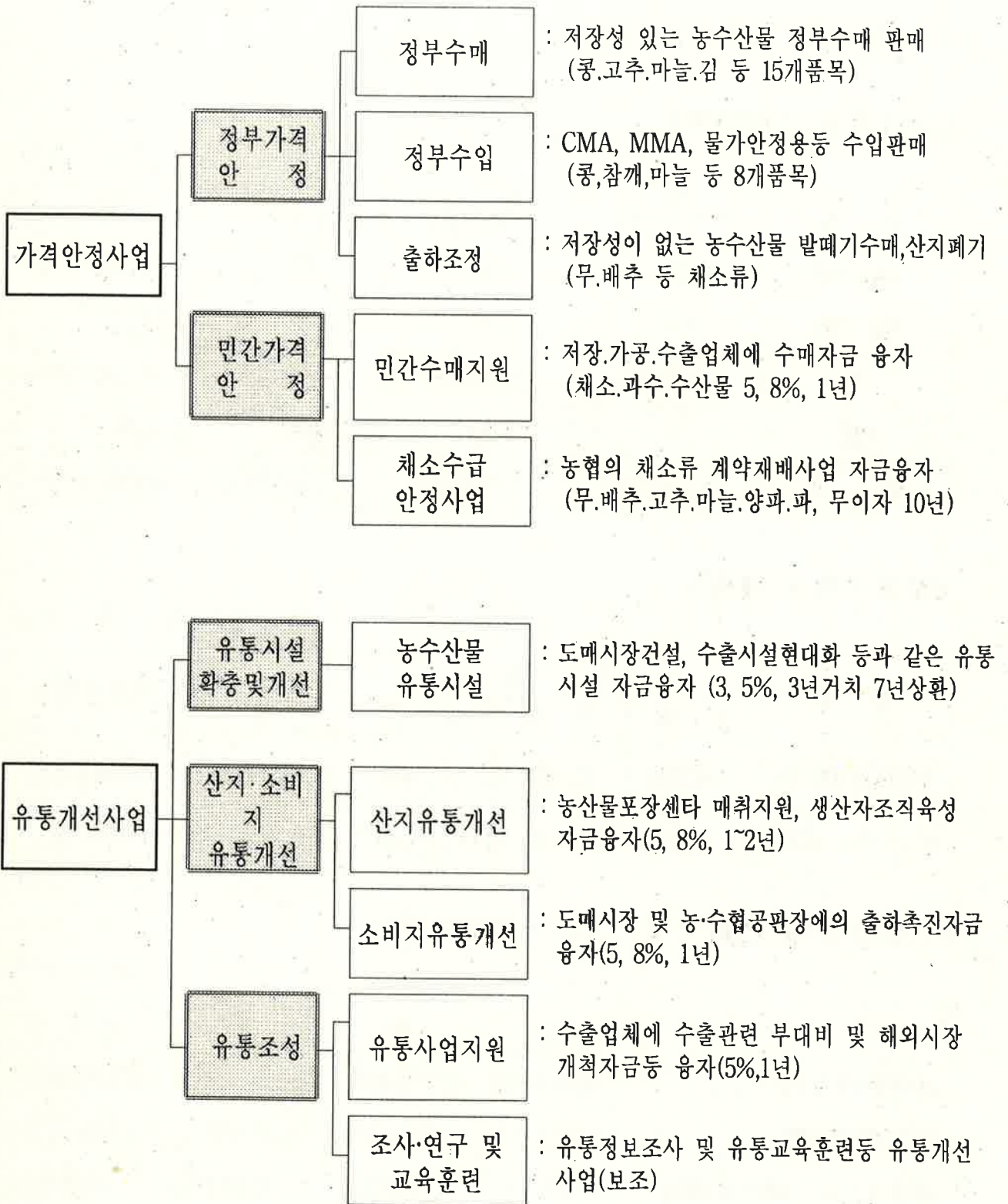
※ 기타 : 위탁료·교육·정보사업비 등. 참깨 수입이익금 부과금 : 1조 4,406억원

□ 운용실태 ('98수정 : 1조 8,686억원)

(단위 : 억원)

| 구 분 | '91 | '96 | '97 | '98 수정 |
|--------------|------------|------------|------------|------------|
| 가격안정사업 | 5,466(75%) | 2,569(48%) | 8,541(48%) | 9,019(48%) |
| 유통개선사업 | 1,620(22%) | 7,636(49%) | 8,489(48%) | 6,849(37%) |
| 차입금상환, 사업관리비 | 192(3%) | 453(3%) | 640(4%) | 692(4%) |
| 일시여유자금 | - | - | - | 2,126(11%) |
| 계 | 7,278 | 15,658 | 17,670 | 18,686 |

5. 기금사업 내용



※ 대출금리체계 : 도매시장건설 등 SOC 성격 3%, 생산자(조직)·수출업체 5%, 일반업체 8%

II. 농안사업의 문제점과 제약요인

1. 문제점

□ 사업논리체계가 경직적이어서 시장개방, 유통업발전 등 변화된 여건에 대한 적절한 수용 미흡으로 사업의 실효성 저하

- 점증예산, 답습예산 위주의 예산편성 경향
- 정부주도로 생산자조직이나 민간업체의 자율적 역할 미정립
 - 국경보호를 전제로 주로 price support 방식으로 기금을 운용하여 시장 mechanism 활용 도외시
- 새로이 형성되고 있는 유통체계변화에 대한 대응태세 부족
 - 물류센타·포장센타·대형유통업체(직거래)·환경농산물 등에 대한 지원 미흡

□ 사업관리체계가 부적합하여 운용규모에 비해 가격안정 및 유통 개선성과가 미흡하고, 성과의 확인도 어려움.

- 소요부서별 요구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나 자금회수 이외에는 효과 분석이 부진하고, 지원에 따른 사업자의 의무이행 강제장치 부족
 - 지원시 적절한 지원조건을 부여하지 못하고, 지원후에는 지원목적·목표에 따른 이행관리가 부실
- 시장개방에 따른 국내시장보호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가격 정책과 수출입 정책간 연계 부족
 - 산지가격 지지를 위한 수매보다는 수입에 치중한다는 오해 가능성

(단위 : 억원)

| | '90 | | | '93 | | | '96 | | |
|------|-------|-----|-----|-------|-------|-----|-------|-------|-----|
| | 계획 | 실적 | % | 계획 | 실적 | % | 계획 | 실적 | % |
| 정부수매 | 1,493 | 680 | 46 | 2,108 | 1,309 | 62 | 2,275 | 833 | 37 |
| 정부수입 | 499 | 927 | 186 | 952 | 1,372 | 144 | 2,185 | 2,276 | 104 |

- 사업자의 자율적인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평가후 차등지원 및 자조 프로그램에 대한 유인 수단 결여

2. 농안기금 및 농안사업이 지닌 제약요인

□ 사업추진체 발달 미흡 및 농업외부부문에 배타적 인식

- 가격안정 및 유통개선사업의 핵심체인 생산자조직의 조직화 정도가 낮아 사업추진에 걸림돌로 작용
 - 소비지의 산지에 대한 외부경제 효과 및 전후방관련 효과활용 미흡
 - 생산측면만 중시하여 소비시장 역할 경시
 - 민간 저장·가공·유통업체 지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 팽배
- ※ '97년 사업실적 : 생산자(조직) 51.2%, 저장·가공·수출업체 27.7%, 공공기관 21.1%

□ 자원배분방식상 한계

-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략부문에 집중 투자해야 하나 특정부문·주체에 대한 중점투자를 특혜로 인식하는 등 효율성과 형평성간 갈등 상존
 - 투자가 지출보다는 용자위주여서 가시적이고 과감한 사업추진에 한계
- ※ '97년 사업(정부가격안정사업 제외)중 용자사업이 99% (구조개선사업에 투자불가)
- ※ 축발기금은 구조개선 및 생산성 향상사업에 투자 가능

□ 예산(농특회계)사업과의 경계구분상 제약

- 유통 및 가격안정사업과 관련, 농특회계와 기금간 상호역할 구분 모호
 - 농특회계에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 기금에 의존하는 경향
- 기금사업중 지출을 늘려 예산사업과의 경계가 흐려질 경우 예산사업이 기금사업으로 전환되어 농업부문 전체 예산이 줄어들 가능성 경계

□ 사업대상 품목과 사업내용이 지나치게 다양하고 사업자가 다수

- 대상품목 : 쌀, 보리를 제외한 전 농축산물 (최근 축산물 지원요청)
- 대상사업 : 가격안정, 유통개선, 수출촉진, 가공산업지원, 교육훈련등
- 공동규격출하사업의 사업자수 : 6만 7천명

Ⅲ. 농안기금 운용개선 추진

농안사업을 둘러싼 비판(문제점)을 수용하고 제약요인을 극복하며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농업경영체 육성에 기여하고 유통
개혁 대책추진을 뒷받침

1. 예상되는 여건변화

□ 개방화·자유화 및 상업농화에 따라 민간역할 중요성 증대

- 개방폭 확대와 무역장벽 완화로 정부·민간수매비축제는 물론 국영무역의 사업효과 저하 및 사업범위 축소 불가피
- 정부주도에서 탈피하여 생산자조직 역할 확대 요청
- 상업농화의 진전에 따라 수요·공급의 탄력성이 더욱 비탄력화 됨에 따라 가격불안정성 심화 예상
- 생산위주의 농업관에서 유통위주의 농업관으로 인식전환

□ 국산 농축산물 절대가격 인하 압력 증대

- 가격파괴형 대형 할인매장 진출 가속화 및 직거래 추진 활성화
-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농산물 하역기계화, 물류표준화 시급
- 자원절약형 농법을 통한 생산비 인하문제에 관심 증대
- 상업적 농업활동이 급격히 진전됨에 따라 유통비용을 절감하여 유통 효율을 증대시키는 유통혁신이 가장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과제로 등장

□ 유통업 개방과 유통경로 다원화

- 규격·브랜드화 출하품을 생산·공급할 수 있는 전문생산자조직 육성 및 산지유통 거점시설 구축필요
- 직거래, 물류센타등으로 유통경로가 다원화되고 유통경로간 경쟁치열

2. 농안기금 운용개선 기본목표와 원칙

<기본 목표>

시장개방, 경영여건, 유통체계, 소비자보호등에 있어서 대변혁기를 맞아, 농안기금 관리 및 운용방식과 정책수단의 개선·혁신을 통해 농산물가격안정과 유통개선을 도모하여 구조개선 촉진과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로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 및 후생극대화에 기여



<농안기금 운용개선 원칙>

- 여건변화에 능동적 대응
 - 산지·소비지간 유통계열화 추진, 시장자율기능강화, 새로운 사업 분야 적극 수용
- 전략부문에 대한 투자집중화 및 재원의 합리적 이용 제고
 - 생산자조직육성, 수출진흥, 산지유통개선 등에 중점 지원
 - 평가강화를 통한 경쟁체제 구축과 벤치마킹 목표달성 유도,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자조노력에 대한 matching fund
- 지원체제 및 지원방식 변경
 - 기능별 지원 → 사업주체(대상자)별 종합지원
 - Menu방식 채택(농림사업 실시규정상 사업시행지침서에 반영), 선별·집중·차등지원,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검증거처 대상자 선정
- 이용자 편의 증진
 - 지원조건 합리화, 장기적으로 package 방식 지원 등

3. 개선(안) 주요내용

□ 농안기금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방식 개선

- 나뉘먹기식 지원에서 적정사업자선정 및 자구노력하는 사업자 중심지원
- 사업계획에 의거 지원하고, 평가를 통해 계속지원여부 결정

사업계획서 제출 → 타당성 검증 → 선별·차별·집중지원 → 평가 및 feed back

- 평가를 통한 벤치마킹 목표달성 유도로 경쟁원리 도입
- 「최우수, 우수, 일반지원」 대상으로 분류하여 각 발전단계에 적합한 차등지원 실시(이자율과 지원규모 등 차등)로 상호 경쟁체제 구축

□ 생산자조직(사업추진체) 집중육성 및 가격안정대책 추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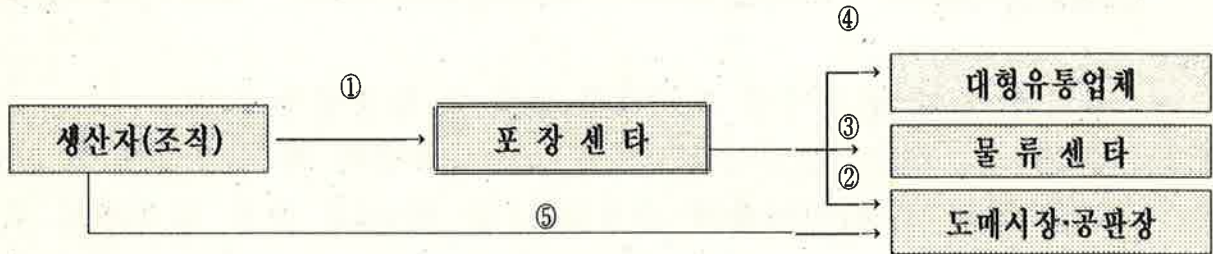
- 품목별 전국생산자조직이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의사결정하고 전국 단위로 당해 품목을 책임지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체제 구축 지원

차별화 → 전문화 → 조직화 → 자율화

- 장기적으로 농업관측, 생산·출하조정, 수매비축 및 유통 사업, 수출 등 사전적·사후적 가격안정대책을 품목별 전국조직이 일관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육성
- 생산·시장조절을 제도화·법칙화하는 방안 마련
※ 채소류에 대한 생산자조직 중심의 자율적 생산·공급조절체제 구축방안 마련 중
- 생산자(조직)에 대한 모든 지원자금을 품목별 전국생산자조직육성사업으로 통합하여 품목별 전국조직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되, package 방식으로 지원계획
- 품목별전국협의회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농안기금 배정권을 부여 받아 사업을 추진토록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지원타당성 점검
- 생산자조직의 자조금 조성을 유도하여 자구노력하는 조직에 matching fund
- 농업·농촌기본법에 자조금 지원근거규정 마련 계획

□ 산지·소비지간 유통계열화 추진

- 농산물 포장센터('97까지 78개소 → 2004년 160)를 중심으로 산지·소비지간 유통을 일관체제로 연결발전시켜 물류비용 절감과 규격포장 농산물의 대량공급체제 구축
 - 포장센터를 산지생산·유통의 중심시설로 집중육성하여 가격안정 및 유통혁신 유도
 - 포장센터·물류센터·도매시장을 평가, 차등지원하여 유통효율화 도모



- ◇ ① 농산물포장센터 매취사업자금 지원 : ('98) 289억원(신규)
- ◇ ②⑤ 도매시장·공판장 출하촉진자금 차별지원 : ('97) 2,459 → ('98) 2,544억원
 - 산물출하되는 ⑤의 경우 지원 취소
 - 기존시장은 점차 지원축소(가락시장은 2000년까지만 지원)하고 신설시장 중심으로 초기에 집중지원하되, 평가를 통해 차등지원하여 조기정착 유도
- ◇ ③ 물류센터 매취사업자금, 출하촉진자금 지원 : ('97) 62 → ('98) 200억원
- ◇ ④ 대형유통업체, 직거래업체의 규격상품 구입자금 지원 검토

□ 정부수매사업의 내실화 및 시장자율기능 강화

- 생산자조직을 생산·유통의 중심체(사업추진체)로 육성하여 저장·가공 기능 강화 및 정부수매사업 위탁 실시 계획
 - 가격안정기능의 다각화를 도모하되 생산자조직에 대한 저장·가공 자금 점차 지원 확대
 - 정부수매사업 위탁문제는 농수산물유통공사 기능개편과 연계된 문제
 - 고추·마늘·양파 등 채소류 부문부터 우선 실시 검토
- 정부수매사업 예산편성시 과잉생산을 전제로 적정생산량의 5% 수준 변경
 - 계상 → 최근실적(3개년 평균)에 따라 편성
 - ('96) 1,320 → ('97) 459 → ('98) 597억원(농산물)

- 민간의 자율적 수급조절 기능 확대·강화 지원 및 수입권 공매 단계적 확대
 - 민간저장·가공업체 구매지원 : ('97) 2,678 → ('98) 3,662억원
 - 수입권 공매 확대 : ('97) 134억원(참기름 428톤, 참깨 3,000톤) → ('98) 187억원(참기름 451톤, 참깨 5,000톤, 생강 300톤)
- 산업연관효과를 증진시키는 측면에서 가공산업육성 강화
 - 지원대상업체와 품목제한 없이 지원 : 모든 농산물가공업체로 지원 확대
 - 대기업 지원규모 및 비중 감소 : ('97) 32억원, 3% → ('98) 19억원, 1.5%
 - 생산자(조직)에 대한 지원강화 : ('96) 700억원 → ('97) 859 → 1,217

□ 수출진흥을 위한 지원 강화

- 수출진흥을 위한 지원의 지속 확대
 - ('91) 421억원 → ('94) 964 → ('97) 1,931 → ('98) 2,532
- 수출진흥관련 제 사업과 자금을 점진적으로 통합, package 방식으로 지원
 - 종합적인 수출진흥지원자금 조성·운영
 - 자금·경영·해외시장개척·기술지도 등을 연계하여 지원모색
- 농안기금 주요사업으로 가격안정과 유통개선에 수출진흥기능 추가
 - 농안법 시행령 제30조(기금의 지출대상범위)를 개정
 - ※ “농수산물 및 그 가공제품의 수출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홍보·기술개발 및 시장 개척 지원”을 포함
- 수출원료 구매자금 지원방식을 품목별 실적에 따라 운영
 - 품목별 신청액을 기초로 기금지원규모를 편성하여 지원 변경 → 수출 실적에 따라 지원액 증감 조정

□ 지원체제 및 운용방식 개선

- 지원체제 변경

<기능별 지원>

가격안정사업
 유통개선사업

<사업주체(대상자)별 종합지원>

⇒ 정부직접사업
 생산자(조직) 지원사업
 수출업체 지원사업
 유통 및 가공·저장업체 지원사업

- 지원방식 개선
 - 지원대상자별로 유사중복사업을 대상자별 단일사업으로 통합, package 방식으로 지원하여 자금운용의 탄력성과 사업의 자율성 보장
 - 자금신청, 사업자선정, 사후관리·평가 등을 동일 기금대출취급기관에서 담당토록 일원화하고, 기관별로 해당사업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지원
 - 농안사업을 전부 Menu 방식을 채택하여 「농림사업 실시규정상 사업시행지침서」에 반영
- 기대효과
 - 지원대상자별로 지원목적과 사업내용이 명확히 제시되어 각 사업별 평가, 사후관리, 종합적 발전대책 수립, 유사·중복사업의 통·폐합이 용이
 - 사업의 자율성 제고와 지원대상자의 의견반영 용이
 - 사업간 융통성있게 자금내역 변경 가능 및 전문경영체 육성방향에 부응

□ 유사중복사업 통합·정비

- 생산자 관련사업을 전국 생산자조직 육성사업으로 통합
 - 생산자조직육성, 공동규격출하, 매취사업, 출하조절사업 등을 품목별 전국생산자조직육성사업으로 통합하되, 장기적으로 수매지원사업 및 채소가격안정사업도 통·폐합
- 수출진흥을 위한 각종사업을 수출진흥사업으로 통합
 - 수출수매지원사업과 유통지원사업은 우선 통합하고, 중장기적으로 수출시설현대화 및 유망품목시장개척 지원사업도 통합
- 가공용 수매지원사업과 산지가공산업육성사업 통합
 - 산지가공산업육성사업 지원대상업체 제한없애고 품목구애 없이 지원 (현행) 정부(지자체)가 시설비 지원한 업체 → (개선) 모든 국산농수산물 가공업체
 통합
 - 가공용 수매지원사업 + 산지가공산업육성 → 수매지원사업(저장·가공용분리)

□ 차등지원을 통한 경쟁체제 도입 및 평가·지도사업 강화

- 기금을 지원하는 부문간, 사업간 추진여건과 실적, 사업관리현황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차별지원을 통해 경쟁을 통한 투자의 효율성 제고

확대

- '97년도에는 품목별 전국 생산자 조직 → 가공 및 저장업체, 수출업체, 도매시장법인, 포장센터 등도 평가대상에 포함
- 평가결과 (최)우수조직에 대해서는 「기금지원 확대, 금리인하(1%p, 0.5%p), 담보비율 상향조정」 등 실질적인 우대조치 실시 등 incentive제 도입
- 사업별 평가를 통해 사업현장에 대한 점검과 지도 및 교육을 강화하여 농안사업의 성과거양

□ 지원조건 조정

대출기간 통일

- 용자사업의 대출기간은 구매와 판매기간, 농안사업자금 조달능력 등을 고려하여 품목에 따라 5~11개월로 정하고 있으나,
- 자금조달능력 향상과 저장·가공기술의 발달에 따라 장기보관이 가능하고, 기업의 회계기간(1년)을 고려하여 대출기간을 연장하여 통일
 - (현행) 5~11개월 → (개선) 1년

금리조정

<금리 및 취급수수료율체계>

| 구 분 | 지 자 체 (도매시장 건설) | 생 산 자 | | 수출업체 | 일반업체 | 대출기관 산하조직 |
|--------|--------------------|-------|------|------|------|--------------|
| | | 농어업인 | 영농조합 | | | |
| 대 여 | 2.5 | 2.5 | 3.0 | 3.0 | 6.0 | 4.0 |
| 대 출 | 3.0 | 5.0 | | 5.0 | 8.0 | 5.0 |
| 취급수수료율 | 0.5 | 2.5 | 2.0 | 2.0 | 2.0 | 1.0 |

※ 평균 취급수수료율 : 농특회계 1.5%(대손적립 0.5% 포함), 축발기금 1.67%(대손적립 0.8% 포함), 농안기금 1.61%(대손적립 없음)

<조정방향>

- 대출금리는 현행 유지
 - 농특회계 대출금리 인상에 따른 농업재정간 상호 형평성 및 균형 유지 차원에서 농안기금의 금리도 함께 인상하여야 하나
 - 농안기금의 경우 금리인상요인이 없을뿐만 아니라 농특회계사업 및 농업경영자금과 사업성격이 유사하여 조정이 필요한 사업이 적고,

- IMF 체제하의 금융조달 곤란에 따른 사업자의 금융비용부담과 농가 부채 경감문제 등을 고려하여 대출금리 조정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 생산자(조직)와 일반업체간 경쟁여건 조성을 위한 대출금리 차등을 축소 계획
 - 일반업체 대출금리를 현행 8%에서 6%로 인하 검토
 - 단, 일반업체의 대출금리 하향조정 문제는 현재의 고회율·고금리 현상이 진정될 때까지는 현행체제 유지
- 사업평가후 차등우대지원토록 금리인하
 - 최우수조직(업체) : 금리 1%p 인하, 우수조직(업체) : 0.5%p 인하
 - '97년도에 품목별전국생산자조직을 평가하여 금리차등 내용 기 반영
- 취급수수료를 하향조정 검토

| 대상자별 | 대출취급기관 자체사업 | 도매시장 건 설 | 회원조합 | 수출·일반 업 체 | 생산자 (농·어업인) | 작목반 |
|-----------|----------------|-------------|------|--------------|----------------|------|
| 현재(6종류) | 0.0% | 0.5% | 1.0% | 2.0% | 2.5% | 3.5% |
| 1차조정(3종류) | 0.0% | 0.5% | | 2.0% | | |
| 2차조정 | 0.0% | 0.5% | | 1.5% | | |

□ 농업환경변화에 따라 대두되는 분야 적극 수용

-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물류조사·물류표준화, 하역기계화 등에 대한 지원 확대
 - ('97) 1,853억원 → ('98) 2,068억원
 - ※ ('98) 도매시장하역개선지원 21억5천만원
- 고품질 안전농산물에 대한 소비자관심과 수요증대로 환경유기농산물 수매자금 신규 지원
 - ('97) 136천만원
- 자원절약형 농업과 관련 생산비 인하를 위한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자금 지원
 - ('97) 50억원 → ('98) 50억원, 100억원 추가지원계획
- 원산지표시 부정유통단속 포상금 지원
 - ('96) 163백만원 → ('97) 256백만원
- 유통정보체계 운영사업 지원
 - ('98) 농업인 정보화 교육비(보조) 24천만원 지원

< 참고자료 >

1. 지원체제 변경시 모습

| 현 | | | 개 | | |
|------------------|----------------------|-------------|-----------------------|--------------|-------------|
| 사업별 | 사업내용 | '97계획 | 대상자별 | 사업내용 | '97계획 |
| 1. 가격안정사업 | | 억원 9,955 | 1. 정부사업 | | 억원 5,500 |
| 가. 정부사업 | | 4,887 | 가. 중앙정부사업 | | 4,887 |
| | o 비축사업 | 4,787 | | o 정부수매및수입 | 4,887 |
| | o 출하조정사업 | 100 | | | |
| 나. 민간사업 | | 5,068 | 나. 지자체사업 | | 613 |
| | o 구매자금지원 | 3,540 | | o 도매시장건설지원 | 613 |
| | o 생산자출하조정자금지원 | 428 | | | |
| | o 채소가격안정자금지원 | 1,100 | | | |
| 2. 유통개선사업 | | 7,348 | 2. 생산자조직사업 | | 5,561 |
| 가. 유통시설확충 및개선 | | 813 | | o 구매자금지원 | 861 |
| | o 도매시장건설지원 | 613 | | o 채소가격안정자금지원 | 1,100 |
| | o 수출시설현대화 지원 | 200 | | o 생산자조직육성지원 | 3,600 |
| 나. 산지유통개선 | | 4,127 | 3. 수출업체사업 | | 1,931 |
| | o 공동규격출하 지원 | 1,712 | | o 구매자금지원 | 1,221 |
| | o 생산자조직육성 지원 | 1,030 | | o 수출시설현대화 | 200 |
| | o 산지가공공장원료구입 지원 | 770 | | o 우수농산물유통지원등 | 510 |
| | o 농협매취사업등 기타 | 615 | | | |
| 다. 소비자유통개선 | | 1,898 | 4. 유통 및 저장· 가공업체사업 | | 4,311 |
| | o 도매시장및공판장출하 촉진지원 | 1,898 | | o 출하촉진자금지원 | 2,083 |
| 라. 유통조성지원 | | 510 | | o 구매자금지원 | 2,228 |
| | o 유망품목시장개척지원 | 160 | | | |
| | o 우수농산물유통지원 | 350 | | | |
| 계 | | 17,303 | 계 | | 17,303 |

2. 유사중복사업 통합·정비시 모습

| 대 상 자 | 현행사업내용 (19) |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7) |
|--------------------------------------------------------------------------------------|------------------------------------------------------------------------------------------|--------------------------------------------------------------------------------------------------------------------------------------------------------------------------------------------------------------------------------------------------------------------------------|
| 1. 정부 <div style="margin-left: 20px;"> ┌ 중앙정부 └ 지자체 </div> | 비축사업 출하조정 도매시장건설 | → 정부수매 → 도매시장건설 |
| 2. 생산자조직 | 구매지원 산지가공산업육성 공동규격출하 품목별조직육성 매취사업 출하조정 과실봉지생산지원 채소가격안정 규격출하(수산물) | → 구매지원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 품목별 전국 생산자조직육성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 채소가격안정 → 규격출하 (수산물) |
| 3. 수출업체 | 구매지원 수출시설현대화 우수농수산물유통지원 유망품목시장개척지원 | → 우수농수산물 진흥 |
| 4. 유통 및 저장·가공 업체 | 출하촉진자금 산지수집상출하선도 구매지원 산지가공산업육성 | → 출하촉진자금 → 구매지원 |

3 농산물 물가조사 제도개선

1. 현 황

<보합처리의 의의>

- 신선채소·과일 등 계절적으로 생산·출하되는 품목은 단경기중 가격조사를 중단하고,
- 조사기간이 아닌 시기에는 지난번 조사종료시의 가격을 계속 적용
- ※ “오이”는 9월~이듬해 3월중 보합처리, 이 기간중에는 8.25일 조사가격을 적용

□ 계절성 농산물 처리기법

- 부류별, 품목별 월별 고정가중치 사용
 - 신선채소 등 계절성 농산물의 월별 거래액 차이 미반영
- 구입량 또는 구입액이 평균월의 1/3 이하인 수개월간 보합처리
 - 정상거래가격이 조사되는 마지막달 하순가격을 단경기중 계속 적용

<'95기준 계절품목 현황>

| | | 품목수 | 품 목 내 역 |
|-------------|--------|-----|------------------------------------------------------|
| 식 료 품 | 채 소 | 12 | 무, 열무, 배추, 시금치, 오이, 호박, 가지, 토마토, 고구마, 풋고추, 부추, 마늘 |
| | 과 실 | 11 |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 밤, 밀감, 참외, 수박, 딸기, 꽃감 |
| | 어 개 | 4 | 조기, 갈치, 꽁치, 굴 |
| 계 | | 27 | |

※ 식료품 이외 29개품목 : 위의, 내의, 스웨터, 셔츠

2. 보합처리의 기준과 문제점

□ 보합기간 설정기준

- 보합기간은 품목별 도시가계 월별 지출액, 농산물의 월별 출하량 등을 기준으로 설정
- ※ ① 연평균 소비지출액의 1/3미만인 달 ② 연평균가격보다 50% 이상 상승한 달 ③ 월평균 출하량의 1/3 미만인 달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품목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결정

□ 신선채소류 보합처리의 문제점

- 출하초기에는 물량공급이 적어 통상 높은가격이 반영됨에 따라 농산물가격의 일시적 급등현상으로 물가지수를 크게 상승시킴
 - 단정기간 가격조사를 중단하고 보합해제시에 조사를 재개함으로써 실제가격이 반영되지 않다가 일시적으로 가격이 폭등하는 「단층」 발생
- 낮은 가격으로 보합에 들어간 품목은 다음번 보합해제시 물가상승에 실제보다 과장된 기여를 하게 됨
 - 보합가격이 극단적으로 높을 경우 보합처리 기간동안 계속 높은 가격 수준에서 처리하여 지수 왜곡
- 월별·품목별 고정가중치 적용으로 농산물의 계절적 특성 반영 미흡
 - 고정가중치로는 성출하기와 단정기간의 거래물량 차이 반영 곤란
 - 보합기간에도 거래가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함으로써 거래량이 적은 단정기에는 과대평가되고 성출하기에는 과소평가됨
- ※ 일본이나 독일은 계절품목을 물가지수 산정에서 제외하거나, 구성품목간 가중치를 변경하여 불규칙한 가격변동으로 인한 현실가격 왜곡을 완화

3. 개선방향

□ 계절품목 처리기법 개선 검토

- 2000년 기준 물가지수편제 개편시, 월별 변동가중치 적용 등 계절 품목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문제 협의 추진

<월별 변동가중치의 채택>

개 요

- 계절성 농산물의 거래물량에 따라 월별 변동가중치 적용
 - 유별 가중치는 연중 고정시키고, 품목별 가중치는 소비지출액을 감안하여 월별로 차등 적용

장 점

- 계절요인에 의해 거래량, 가격의 변동이 큰 품목에 대해선 물가지수 산정상 이론적으로는 가장 타당
 - 거래물량이 클수록 지수에 더 큰 영향을 미쳐 계절적 특성 반영
 - 단정기에 거래가 전혀 없을 경우 극단적으로 가중치가 "0"이 되어 보합처리 등 가공의 가격을 적용할 필요가 없음
- 수급안정시에는 고정가중치 적용시보다 물가안정 효과가 크게 나타남
 - 수급상황이 양호했던 '92, '95년의 21개월중 18개월의 상승률이 고정가중치 적용시보다 낮게 나타났음
 - '88~'89, '92~'95년 69개월중 53개월이 고정가중치 적용시보다 낮은 상승률을 보임

단 점

- 흉작으로 공급부족시기에는 고정가중치 적용시보다 훨씬 높은 상승률을 보일 수 있음
 - 채소류 작황이 부진했던 '94년중 12개월의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음
- 가격변동없이 가중치 변동만으로도 지수가 변동할 소지

결 론

- 최근 농산물 수급이 안정되어 가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월별로 변동가중치를 적용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 추진
- ※ 통계청도 이를 위해 현재 단경기중에도 예비가격조사 등 준비작업중
- 아울러 계절변동요인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계절조정지수를 보조 지수로 개발 활용
- ※ 계절조정지수 : 장기적 물가변동율을 추정하기 위하여 계절적 변동요인에 의한 잔차를 제거하여 기존지수에 대한 보조지수로 활용(미국 등에서 활용 : ARIMA 기법 사용)

<현행 물가지수와 월별 가중치 적용시 물가지수 비교 : '92~'95>

| | '92 | | '93 | | '94 | | '95 | |
|--------------------|-----------|-----------|------|-----------|------|------|------|-----------|
| | 고정 | 변동 | 고정 | 변동 | 고정 | 변동 | 고정 | 변동 |
| · 최고상승율 (전년말대비) | 7.0% | 11.0 | 22.2 | 13.5 | 31.4 | 37.7 | 7.2 | 4.7 |
| · 최저상승율 (전년말대비) | △11. 2 | △23. 7 | 5.8 | △15. 4 | 5.9 | △5.3 | △4.2 | △32. 5 |

< 참고자료 >

1. 지수관리상 계절품목 처리방법 비교

| | 주요 내용 | 장 점 | 문 제 점 |
|-----------------------|-----------------------------------------------|---------------------------------------------------------------|-------------------------------------------------------|
| 한 국 | 단경기중 보합처리 | 품목별, 시점별 가격 및 지수계열의 비교 가능 | 단경기동안 가중치 사장, 불규칙한 가격 변동시 현실왜곡 심화 |
| 일 본 (유사 : 프랑스·영 국) | 신선식품류 전체의 가중치는 일정하나, 구성품목간 가중치를 매월 변경 | 신선식품의 가격변동이 계절적 요인에 따른 공급량 변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이론상 물가변동 파악에 가장 적절 | 당해 품목의 가격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중치의 구조변화에 따라 신선식품 전체의 가격이 변동 |
| 캐나다 (유사 : 미국·호 주) | 단경기중 당해 품목의 가격은 유별내 조사가능 품목의 가격변동률에 기초하여 귀속처리 | 단경기중 당해 품목의 지수계열상의 단층과 가중치의 사장 방지 가능 | 당해 품목의 일관된 월별 가격비교 곤란 |
| 독 일 (유사 : 홍콩) | 단기간만 시장출하되는 계절품목은 지수 산정에서 제외 | 계절적 요인에 따른 지수 왜곡 방지 | 피부체감물가와 지수 물가의 괴리 가능성 |

2. 월별 보험해제·개시품목

| | 생산자 물가 (16품목) | | 소비자 물가 (23품목) | |
|-----|----------------------|---------------------|----------------------------------|------------------------------------|
| | 보험 해제 | 보험 개시 | 보험 해제 | 보험 개시 |
| 1월 | - | 무, 배추(가을) 마늘, 감자 | - | 무(가을), 마늘, 배추(가을) |
| 2월 | - | - | - | 고구마 |
| 3월 | - | 배, 밤 | 부추 | 배 |
| 4월 | 딸기 | 고구마, 감귤 | 오이, 호박, 딸기 토마토, 풋고추 | 감, 밤, 감귤 |
| 5월 | 오이, 배추(봄) | 사과 | 무(봄), 배추(봄) 열무, 가지, 마늘, 참외 | 사과, 꽃감 |
| 6월 | 호박, 마늘, 감자 수박, 참외 | 딸기 | 수박 | 시금치, 딸기 |
| 7월 | - | 시금치, 생강 | 무(여름), 복숭아, 배추(여름) | 무(봄), 배추(봄) |
| 8월 | - | - | 포도 | 토마토 |
| 9월 | 고구마, 배, 밤 | 수박, 참외 | 고구마, 배, 밤, 꽃감 | 오이, 참외, 수박 |
| 10월 | 사과, 감귤, 생강 | 오이 | 시금치, 사과, 감 | 복숭아, 포도 |
| 11월 | 무, 배추(가을), 시금치 | 호박, 배추(여름) | 무(가을), 감귤, 배추(가을) | 무(여름), 열무 배추(여름), 가지 풋고추, 부추 |
| 12월 | - | - | - | 호박 |

3. 농축산물 품목별 가중치

| | 가중치 | 보합기간 | | 가중치 | 보합기간 |
|-------------|--------------|------|--------------|-------------|------|
| 농축산물 | 120.4 | | 과 실 | 23.3 | |
| 곡 물 | 29.7 | | 사 과 | 4.7 | 5~9 |
| 쌀 | 27.6 | | 배 | 1.5 | 3~8 |
| 찰 | 0.8 | | 송 아 | 0.8 | 10~6 |
| 찰 | 0.2 | | 포 도 | 2.5 | 10~7 |
| 리찰 | 0.7 | | 감 | 1.2 | 4~9 |
| 콩 | 0.2 | | 밤 | 0.4 | 4~8 |
| 팥 | 0.2 | | 감 | 3.3 | 4~10 |
| 두 | 0.2 | | 오 렌 | 0.2 | |
| 채 소 | 23.4 | | 참 수 | 2.1 | 9~4 |
| 무 | 1.8 | 1~4월 | 외 박 | 4.3 | 9~5 |
| 열 배 | 0.8 | 11~4 | 기 타 | 1.7 | 6~3 |
| 양 배 | 3.7 | 1~4 | 추 | 0.5 | |
| 양 배 | 0.2 | | 가 | 0.1 | 5~8 |
| 파 | 1.7 | | 마 | | |
| 양 시 | 0.9 | | 생 | 11.0 | |
| 콩 나 | 0.8 | 6~9 | 참 | 2.5 | |
| 상 물 | 1.1 | | 땅 | 2.0 | 1~4월 |
| 당 근 | 1.1 | | 인 | 2.4 | |
| 오 이 | 0.5 | | 생 | 0.3 | |
| 호 박 | 1.5 | 9~3 | 화 | 0.9 | |
| 가 지 | 0.7 | 12~3 | | 0.3 | |
| 토 마 | 0.2 | 11~4 | | 1.3 | |
| 감 토 | 1.3 | 8~3 | | 1.3 | |
| 고 자 | 1.7 | | 축 산 물 | 33.0 | |
| 고 구 | 0.7 | 2~8 | 한우 | 9.9 | |
| 도 라 | 0.4 | | 수입 | 5.6 | |
| 버 지 | 1.0 | | 소 | 3.3 | |
| 고 사 | 0.9 | | 돼지 | 8.3 | |
| 꽃 고 | 1.2 | 11~3 | 닭 | 2.3 | |
| 미 나 | 0.4 | | 달 | 2.7 | |
| 깻 잎 | 0.4 | | 꿀 | 0.9 | |
| 부 추 | 0.4 | 11~2 | | | |

※ '95년편제 : 추가(미나리, 깻잎, 부추, 오렌지, 쇠갈비), 탈락(정부미, 사과[홍옥])

1. 현 황

가. 관측정보의 수집

관측품목(채소류) : 6개(무, 배추, 고추, 마늘, 양파, 파)

관측기관 : 농림부, 농진청, 농협, 유통공사, 농경연, 종자협회

관측내용 및 관측방법

- 종자판매량 : 종자협회가 회원사(47개)를 대상으로 조사
- 재배의향 : 농림부, 농협, 농경연
 - 농림부, 농경연 : 표본농가 면접청취(농림부), 모니터 우편(농경연)
 - 농협 : 주산단지내 작목반을 대상으로 전수조사
- 재배면적 및 작황 : 농림부, 농진청, 농협, 유통공사, 농경연
 - 농림부 : 표본구 실측조사
 - 농진청 : 주산단지내 농가 및 포장 표본조사
 - 유통공사, 농경연 : 모니터 우편 및 현지출장조사
 - 농협 : 주산단지내 작목반을 대상으로 전수조사
- 생산량 : 농림부가 수확기에 표본구 실측조사

나. 수집정보의 분석

분석기관 : 농촌경제연구원

분석방법 : 기관별로 수집된 정보를 농업관측협의회 품목별 소위원회를 통해 분석

- 농업관측협의회 : 위원장을 포함한 30인이내(현재 20명)
 - 위원장 : 농림부 농산원예국장
 - 품목별 소위원회 : 6개(고추, 마늘, 양파, 파, 고랭지무 · 배추, 가을무 · 배추)

다. 관측정보의 분산

□ 분산기관 : 농협, 농경연

□ 분산방법 : 관측월보 발행, 공중통신망, 농업전문지 게재

- 관측월보 : '96.9월부터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제작배포(매회 6만부)
- '96.9월 이전에는 농가재배의향 조사결과만 전단지 제작 배포
- 공중통신망 : '96.9월부터 관측월보내용을 AFFIS에 올려 천리안, 하이텔을 통해 이용
- 농업전문지 : 농민신문등 전문지에 관측월보내용 게재

2. 개선 필요성

가. 관측정보의 수집

- 농가의 영농계획이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고 파종·정식기에 앞서 가격동향등에 따라 결정
⇒ 농가재배의향 조사결과에 대한 확신부족으로 적극적인 면적 조정에 어려움.
- 재배면적 조사가 파종직후 이루어지지 못하고 수확중 또는 수확기에 앞서 조사(예: 마늘·양파재배면적 조사집계 4.10일경)
⇒ 수급판단이 늦어져 가격안정 및 생산조정에 어려움.

나. 관측정보의 분석

- 수집된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품목별 전문가 부재
⇒ 농가기대수준의 정보공급 미흡
- 관측결과 분석을 연구기관인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담당(축산물 : 축협)
⇒ 인력과 전문성이 부족하고 현장감이 떨어져 농가기대 수준의 정보공급에 한계

다. 관측과 생산조정연계

- 관측정보에 대한 농가의 무관심과 다른사람이 줄이겠지 하는 생각 등으로 광행적인 재배
→ 관측과 연계한 적정면적 재배 및 생산조정에 한계

3. 세부 추진계획

가. 관측정보의 수집

- 농가재배의향 조사 표본을 현실에 맞게 설계
- (현행) 농가경제표본농가 + 주산단지일부농가 → (개선) 최근 재배면적 분포 등을 감안
- 관측(재배의향, 재배면적, 작황등) 일정을 수요자 필요한 시기와 수급조정과 연계할 수 있도록 조정
- 통계정보관실에서 조사되지 않는 재고물량등은 현행과 같이 관련 기관을 통해 조사

나. 관측정보의 분석

- 정보 수요자 요구에 신속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품목별 전문가를 확보
- 농업기상정보, 지역별 작황, 소비동향, 해외시장정보등 사전예측적 기능을 갖는 가공정보의 생산보급
- 관측정보에는 수급 및 가격전망분석과 농가의 생산·출하방향까지 제시
- 관측정보의 분석을 현실감과 농가 기대수준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생산자단체가 주관
- 관측협의회운영등에 관한 일부경비 지원

다. 관측정보의 분산

- 관측내용은 전문지(농민신문)와 공중통신망을 통해 신속분산하고 관측월보를 통해 배포
- 필요시 FAX등을 이용하여 신속 배포

라. 관측정보를 생산조정과 연계

- 농업관측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농가교육으로 관측에 대한 관심 부여
- 관측사업의 효과를 측정하여 사전적 수급조절 능력 제고
- 생산자단체 중심의 적정면적 재배추진
 - 생산자조직에 가격안정사업 손실 보전을 위한 자조금 조성지원 추진
 - 장기적으로 생산자 조직에게 정부수매사업등을 위탁 검토

마.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 초고속 시범사업 실시

- 대상작물 : 시설오이, 풋고추, 참외
- 사업내용 : 전남, 경북, 경남 주산단지에 PC 200대(단협 41대, 작목반 159대)를 설치하고 통계사무소에 지역서버 설치
 - 산지생산자의 생산계획·출하정보 교환처리
 - 산지공판장 경매결과 공급으로 출하물량 조절
 - 시설채소 식부의향, 재배기술, 유통정보등 품목별 전문정보 DB구축
 - 인터넷을 통하여 지역내 지역간 정보교환
- 소요예산 : 2,170백만원(정통부 1,480, 농림부 690)
- ※ 시범사업 실시결과에 따라 단계적 확대

4. 투융자 계획

(단위 : 백만원)

| | '97실적 | '98예산 | '99요구 | 2000~2002 | 2003~2004 | 계 |
|--------|-------|-------|-------|-----------|-----------|-----|
| ○ 사업량 | | | | | | |
| ○ 사업비 | 114 | 57 | 100 | 300 | 200 | 771 |
| - 국 고 | - | - | - | - | - | - |
| - 농안기금 | 114 | 57 | 100 | 300 | 200 | 771 |

| | |
|---|---------------|
| 5 |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개발 |
|---|---------------|

1. 현 황

□ 현행제도

- 구매비축사업(민간구매지원사업)
 - 성출하기 과잉공급시 구매 후, 단경기 물량부족시 방출
- 생산출하약정사업
 - 적정면적을 농가와 농협간에 약정체결, 약정이행농가에 한하여 약정물량의 25% 하한가격 보장
- 출하조정사업(포전매취사업)
 - 수확전 산지가격으로 매취한 물량을 출하조절 및 산지폐기를 통하여 급격한 가격변동 방지
- 채소가격안정사업
 - 파종기(정식기)에 사전 계약을 체결하여 물량 확보
 - 수확기 출하조절 및 계약가격 수준의 농가소득 보장

< 가격정책 수단 >

| 정책(제도) | 품 목 | 실시기간 | 재 원 | 추진기관 |
|------------------|---------------------|---------|-------------|---------------|
| 수 매 비 축 | 고추, 마늘, 양파 | - | 농안기금 | 농림부 농유공,농협 |
| 민간구매지원 | 고추, 마늘, 양파 등 | - | 농안기금 | 농림부, 농유공 |
| 생산출하약정 사 업 | 마늘,양파 | '90~'96 | 농안기금 | 농림부,농협 |
| 출하조정사업 | 무,배추 등 | '91~ | 농안기금 농 협 | 농림부,농협 |
| 채소가격안정 사 업 | 무,배추,마늘, 양파,고추 등 | '95~ | 농안기금 농 협 | 농림부,농협 |

2. 성과 및 문제점

□ 성과

- 성출하기 가격하락시 수매 또는 출하조정을 통한 가격지지로 농가 소득 보장
- 단경기 수매물량 방출로 가격안정에 일정 기여

□ 문제점

- 정부주도의 정책 추진으로 생산자조직의 자율적인 수급안정기능 위축
 - 생산자조직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의 정책개발 필요
- 사전적 생산조정보다는 사후적 출하조절에 치중
 - 농업관측, 유통예고 등 재배면적 및 생산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 부족으로 수급조정에 대한 근본적 한계 내재
 - 생산출하약정사업 : 면적조정 이행여부에 대한 실제확인 지남
 - 채소가격안정사업 : 사전 생산조정과 직접 연계 미흡
 - 출하조정사업, 수매비축사업 : 생산 이후 정책수단
- 사업성과에 비해 재정부담이 큼.
 - 사업시기 일실, 무임승차자 발생, 사업추진기관의 분산 등으로 투입예산에 비해 효율성 저하
 -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폭락시 수매물량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없음
 - * 고추,마늘,양파 수매비축손실액 : ('94)239억원, ('96)126억원
- 사업·정책간의 연계추진 부족
 - 유통조성사업, 유통개선사업 등과 효과적인 연계 부족

3. 개선방안

기 본 방 향

□ 생산자조직이 수급 및 농가소득안정에 주도적인 역할 수행

- 『품목별전국협의회』를 자율생산조정기능을 가진 조직체로 육성
- 농업관측,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자조금 형태로 조성

□ 사전적 생산조정과 사후적 출하조절 병행 추진

- 생산자조직이 직접 관측하여 재배면적 조정하고, 이와 연계하여 출하조절 및 사후 보상 실시

□ 생산자조직이 수급안정정책 일관 추진

- 현행 채소가격안정사업을 중심으로 농업관측에서부터 생산조정, 수매비축(포전매취)에 이르기까지 일관 추진체계 확립
- 생산자 조직의 책임의식 강화

□ 생산 및 출하조절의 자동개입체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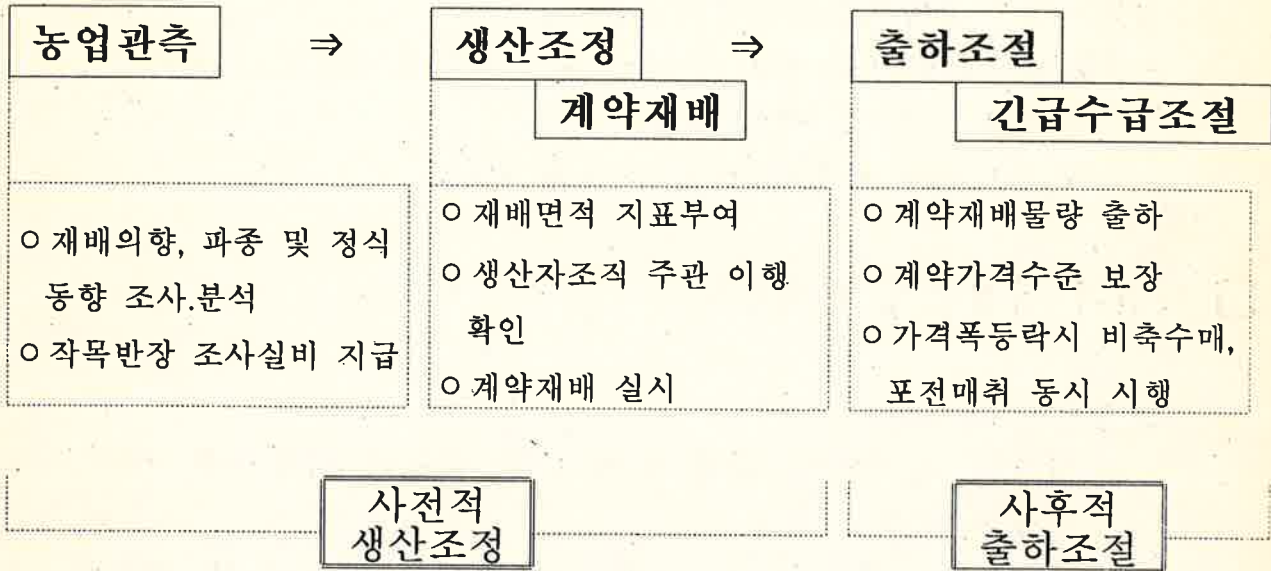
- 수매비축, 출하조절의 정형화, 자동화로 가격폭등락시 신속 개입

□ 가격안정사업과 유통개선사업과 연계

- 대상품목 유통개선을 위한 정책자금과 지원 연계
- 사업추진 우수조직에 대한 지원차별화로 무임승차자문제 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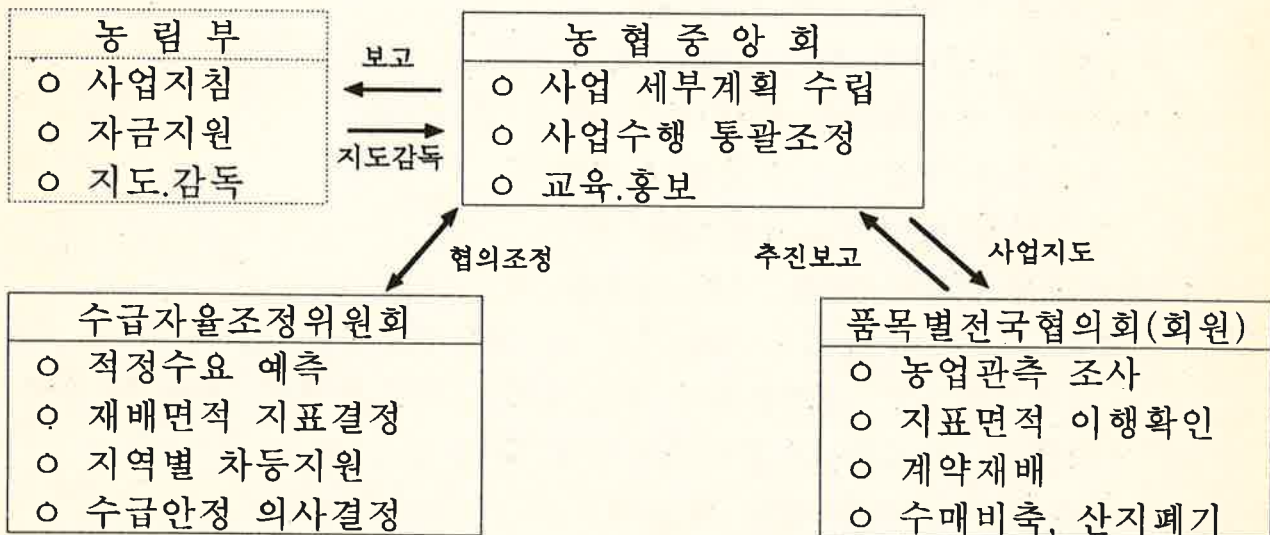
□ 생산자조직 중심의 수급안정체제 구축

- 추진체계 : 사전적 생산조정과 사후적 출하조절 일관적으로 추진
 - 수급조정 주체인 생산자조직에게 권한과 동시에 책임 부여



- 대상품목 : 현행 채소가격안정사업 품목
 - 무, 배추, 마늘, 양파, 고추, 파, 당근

○ 추진기관별 역할



- 의사결정기구(신규) : 수급자율조정위원회
 - 설치 : 시군, 시도, 중앙단위
 - 중앙 : 『엽채류 수급자율조정위원회』, 『양념류 “』 구분 운영
 - 지역 : 『채소류 수급자율조정위원회』로 통합 운영
 - 구성 : 중앙 및 지방정부, 품목별전국협의회, 학계, 연구기관, 유통관련인, 소비자대표 등
- 집행기구 : 품목별전국협의회
 - 품목별전국협의회 강화 및 문호개방(영농조합법인 가입확대)
 - 협의회 기능 및 역할 확대
 - 시군, 시도단위 품목별 협의회 구성 지도

□ 사전적 적정면적 재배유도

- 농업관측 내실화
 - 재배의향, 재배면적, 작황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수집·분석·전파체계를 구축
 - 단위 조직인 작목반장(영농회장)에 대해 재배의향 및 시기별 정식동향 조사시 조사실비 지급 - 책임의식 고취(연4회, 25천원/회)
- 적정 재배면적 지표부여
 - 농업관측 결과를 토대로 적정수요량, 지역별단수, 비축물량(MMA포함)등을 감안하여 적정면적 지표 부여
 - 작목반장, 농협이 관내 재배면적 보고
- 지표면적 이행에 대한 확인
 - 1차 : 읍면단위 확인, 2차 : 시군, 시도단위 교체 확인
- 재배면적 조사결과를 토대로 2차적인 생산조정
 - 과잉생산 예상시 : 수확전 산지폐기
 - 과소생산 예상시 : 예비묘 공급
- 지표면적 이행에 대한 지원 차별화
 - 읍면, 시군, 도단위로 차등지원 ⇒ 공동책임의식 고취
 - 가격하락으로 비축수매시 우수지역은 기준가격의 +10%로 수매
 - 작목반육성자금, 포장재지원사업 등 우선 지원
 - 작목반별로 차등 지원 가능

□ 제도보완을 통한 가격안정사업 확대

○ 사업물량 및 자금조성 확대

- ('98) 전체생산량의 6% → (2000) 10% →(2004) 20%

(천톤, 억원)

| 구 분 | '98 | 2000 | 2004 |
|---------|---------|----------|------------|
| 적정생산량 | 6,370 | 6,370 | 6,370 |
| 계약물량(%) | 354(6%) | 637(10%) | 1,274(20%) |
| 자금 조성 | 2,685 | 4,475 | 9,000 |

· 자금구성 : 정부80%, 농협중앙회 15%, 회원농협 5%

○ 사업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 사업농협 위험부담 완화

- 조합별 사업추진 발대식을 통한 사업 홍보 및 일체감 조성

- 계약안정대 품목별로 탄력 적용 : ±10%, ±20%

- 손실부담이 큰 품목(마늘,고추)에 대한 운영자금 지원 확대

- 저장성있는 품목(고추,마늘,양파)에 대한 계약농가 정산방법 개선 ⇒ 산지가격을 감안 수매시점 정산

- 위약금 징수기준 완화

- 우수조합 인센티브 지원 및 영농조합법인 사업참여 확대

- 계약물량 규격출하로 거래표준화 및 신물류시스템 조기정착 유도

○ 품목별 전국협의회별로 자조금 조성

- 조성 : 계약재배사업으로 지원되는 자금을 의하여 발생하는 자금 운영 수익율의 일부를 조합별로 출연 - 자금운영수익금액의 10% 수준(사업규모가 3,000억원일 경우 25억원 조성이 가능하며, 정부에서 50%보조시 50억원 조성 가능)

- 사 용

· 계약재배사업 손실 보전

· 농업관측, 수급자율조정위원회 운영, 지표면적확인 등에 따른 비용

- 교육, 홍보비 등

□ 계약물량 출하조절 및 수급조절사업 자동개입

- 계약물량 출하조절
 - 일정별 출하계획에 의거 출하물량 조정. 통제
 - 출하예약제 적극 추진
 - 공동출하, 공동계산제 적극 유도
 - 작목반육성자금 등 규격포장 출하에 필요한 자금 우선 지원
 - 작목반 단위 출하 및 순회수집 확대
- 긴급수급조절사업 자동 개입
 - 개입시기, 물량, 가격 등은 『수급자율조정위원회』에서 사전결정
 - 개입방법

| 구 분 | 무.배추 등 | 마늘,양파,고추 등 |
|-------|-----------------------|---------------------------------------|
| 가격폭락시 | ○포전매취사업 ○산지폐기 | ○수확전 폐기 ○수매비축사업 |
| 가격폭등시 | ○계약물량 출하확대 ○예비묘 공급 | ○계약물량 출하확대 ○수매물량 방출 ○MMA물량 관리협조 |

- 소요자금

(억원)

| 연 도 | '98 | 2000 | 2004 |
|-----|-----|-------|-------|
| 금 액 | 500 | 1,000 | 1,500 |

- 조성 : 정부자금 (추후 생산자조직 일정비율 부담)
- 수매에 따른 손실액은 미사용자금 운용수익으로 보전
(부족시 정부자금으로 보전)

< 참고 자료 >

1. 고랭지배추, 양파의 밭떼기거래 실태

가. 농가 판매실태

- 농가조사결과 산지 수집상과 밭떼기거래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

| 구분 | 밭떼기거래 | 계약재배 | 자체출하 | 기타 | 계 |
|-------|-------|-------|-------|-------|------|
| 고랭지배추 | 67.6% | 16.8% | 11.4% | 4.2% | 100% |
| 양 파 | 47.9% | 12.3% | 19.4% | 20.4% | 100% |

나. 밭떼기거래 성행이유

- 고랭지배추의 경우 수확기 가격불안에 대한 우려, 양파의 경우 일손부족으로 조사
 - 고랭지배추 : 가격불안(58.8%), 일손부족(3.8%)
 - 양 파 : 가격불안(15.1%), 일손부족(66%)

다. 밭떼기거래의 문제점

- 수집상은 가격상승 예상시 밭떼기거래에 경쟁적으로 참여하는 반면 가격하락 예상시는 밭떼기거래 참여를 기피함
- 밭떼기거래에서 농가가 직면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계약시 가격결정이며, 상인들의 계약이행에 대한 우려도 상당히 큼
- 따라서, 사전적 생산조정을 통한 계약재배로 수급불안 채소류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현행 가격안정사업 제도를 보완, 확대 추진하여 조기정착이 시급한 과제임
 - 금후 자조금 조성 확대를 통한 가격차보전제도 도입 검토

2. 외국의 채소류 수급안정제도

가. 일 본

(1) 관련법규 : 채소생산출하안정법(1966년)

- 채소공급안정기금을 통하여 산지의 생산 및 출하안정과 소비지의 채소 수급 및 가격안정 도모

(2) 채소공급안정기금(1976년)

- 주요업무
 - 기금조성 및 가격하락시 차액보전
 - 가격급등시 대비 매입, 보관, 방출
 -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 채소에 관한 다양한 정보제공
- 조성규모 : 932억엔('97.3월말)
 - 자금조성비율(%)

| 구 분 | | 중앙정부 | 지방정부 | 등록출하단체 |
|--------|------|------|------|--------|
| 지정채소 | 일반채소 | 60 | 20 | 20 |
| | 중요채소 | 65 | 17.5 | 17.5 |
| 특정채소 등 | 특정채소 | 33.3 | 33.3 | 33.3 |
| | 지정채소 | 50 | 25 | 25 |

- 상근직원 : 50여명

(3) 기관별 추진사항

| 중앙정부 지방정부 | 채소공급안정 기 금 | 전국채소수급 조 정 기 구 | 채소가격안정 법인(도도부현) | 등록출하단체 (농협 등) |
|-------------------|--------------------------|-------------------------|------------------------|-------------------------|
| -지도 감독 -보조금 지원 | 수급 및 가격 안정 통할기능 수행 | 중요채소 긴급수급조절 기능 수행 | 특정채소 등 가격안정사업 수행 | -위탁출하 -공동출하 -규격출하 |

□ 중요채소 긴급수급조정사업

- 개요 : 지정채소 중 특히 수급안정이 필요한 4개 품목(양파, 양배추, 무, 배추)에 대하여 일정요건 발생시 실시하는 수급조정사업
- 시행주체 : 전국채소수급조정기구
 - 전농, 현경제련, 농림중앙금고 등이 출자(56개 회원)
 - 상근직원 4명, 출자금 807백만엔
- 추진방법
 - ① 출하예정지역 도매가격이 기준가격의 80%이하, 150%상회시
 - ☞ 산지조정 : 출하억제, 출하촉진
 - ② 출하예정지역 도매가격이 기준가격의 70% 이하시
 - ☞ 출하조정 : 가격이 보다 좋은 타지역에 출하처 변경
 - ☞ 산지처리 : 저장, 가공용판매, 산지폐기

□ 채소 매매보관사업

- 개요 : 채소가격의 현저한 가격상승에 대처하기 위해 채소공급안정기금으로 매입,보관하여 도매시장을 통해 판매하는 사업
- 시행주체 : 채소공급안정기금
- 대상품목 : 양파, 양배추
 - 대상지역 : 4대 소비지역을 대상으로 실시
- 추진방법
 - 추가적 공급원이 될 수 있는 재배농가와 계약후 매입
 - 매입한 물량의 일정량은 소비지에 보관후 매년 단경기 방출

□ 특정채소 등 가격안정사업

- 개요 : 지방정부가 주관이 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중앙정부 지정 채소가격안정사업과 유사
- 시행주체 : 도도부현 구역단위로 설립된 민법법인(현법인)
- 대상품목(39개) : 특정채소(27개품목) + 지정채소(양파,감자를 제외한 12개품목)
- 가격보전 : 판매가격이 보증기준가격이하 형성시 차액보전
 - ☞ $(\text{보증기준가격} - \text{평균판매가격}) \times 0.8 \times \text{출하수량}$
 - ※ 보증기준가격 : 과거 도매시장 평균가격에 0.8을 곱한 가격
단, 지정채소는 0.9를 곱한 가격

나. 미 국

(1) 관련법규 : 농산물유통협정법(1937년)

(2) Marketing Order(M.O.) 의의 : 생산자의 요청에 의하여 농무장관 권한으로 발표된 행정명령으로 규정된 지역에서의 모든 농민과 유통업자에 대해 구속을 지니는 법률

(3) M.O. 유형

| 구 분 | 유 형 | | 내 용 |
|---------|----------|-------|--------------------------------------------|
| 물량통제 | 판매 규제 | 생산자할당 | ○ 개별 생산자에게 판매량 할당 - 생산자가격을 높이는 데 가장 효과적 |
| | | 시장할당 | ○ 특정시장에 출하하는 물량 규제 - 가격차별화 이론을 청과물에 적용 |
| | | 출하유보 | ○ 저장을 통한 판매 규제 |
| | 유통 규제 | 취급자할당 | ○ 일정 기간동안에 취급물량 규제 |
| | | 출하휴일 | ○ 특정 기간동안 시장 출하 금지 - 일반적으로 공휴일 전후 |
| 품 질 통 제 | | | ○ 시장출하 농산물의 등급, 규격 통제 |
| 수 요 촉 진 | | | ○ 포장 및 유통의 규격화, 연구, 보조, 광고 |

(4) M.O.의 집행

- M.O. Board는 매년 수확, 출하기 이전에 당해연도 유통대책을 작성, 농무부에 보고하고, M.O.를 통해 어떤 내용의 규제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 시행
- M.O. 시행을 위해 정부의 직접적인 예산부담 없음

다. E.U

(1) 관련법규 : 로마조약(1957년)

(2) 규격설정

- 대상품목 : 채소 16개 품목, 과실류 9개 품목
- 등급 : 특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 3등급은 유통이 금지되나 공급부족등 특별상황 발생시 유통

(3) 수급조절제도

시장격리(market withdrawal)

- 결정주체 : 생산자단체
 - ※ 생산자단체 육성
 - 자금 지원 : 3년간(생산가액의1-3%)
- 기금조성 및 사용
 - ┌ 재원 : 판매량에 따른 농가로부터의 징수금 및 정부보조금
 - └ 사용 : 시장격리 수행시 대농가 보상금
- 격리가격은 수매가격+기준가격의 10%의 범위내

공공수매(Public Buying-in)

- 대상품목 : 생산자단체가 시장격리하지 않은 품목
- 수매시기 : EU 대표시장가격이 3일 연속 수매가격이하로 하락시
- 수매중단 : 시장가격이 3일연속 수매가격 이상 상승시

※ 기준가격 및 수매가격

- 기준가격 : 과거 3개년 시장가격과 생산자소득지지 수준
- 수매가격 : 품목별로 기준가격의 30 - 65% 사이에서 결정

< 부 록 >

1. 농산물유통개혁대책(한국농촌경제연구원)
2. 농산물유통사업의 평가와 대책(삼성연구소)
3. 농산물유통개혁에 대한 제안(무안양념채소영농조합법인)
4. 농산물유통시설 현황도

< 부록 1 >

농산물 유통개혁대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병률)

1. 유통환경의 변화와 발전방향

1.1. 유통환경의 변화

1.1.1. 유통시장의 개방

- 1981년 7월부터 외국인 투자허용대상사업으로 국내유통시장이 개방되기 시작하여 1996년 1월 1일 외국인 투자 소매점포수와 매장면적에 대한 규제가 완전히 철폐되면서 외국유통업체가 국내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
 - 선진 유통업체들은 자본력과 현대적 경영기법을 바탕으로 할인점 중심으로 시장에 진입함으로써 소매시장이 대형화, 체인화되고 있음.
- 농산물시장이 개방됨으로써 국내에 진입한 외국의 유통업체들은 시장침투가 성공하고 외국산 저가상품 구입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확산될 경우 농산식품, 심지어 신선채소류에 대해서도 가격이 저렴한 외국농산물을 본격적으로 수입, 판매하기 위해 신속한 수입경로를 개발하게 될 것임.

1.1.2. 유통경로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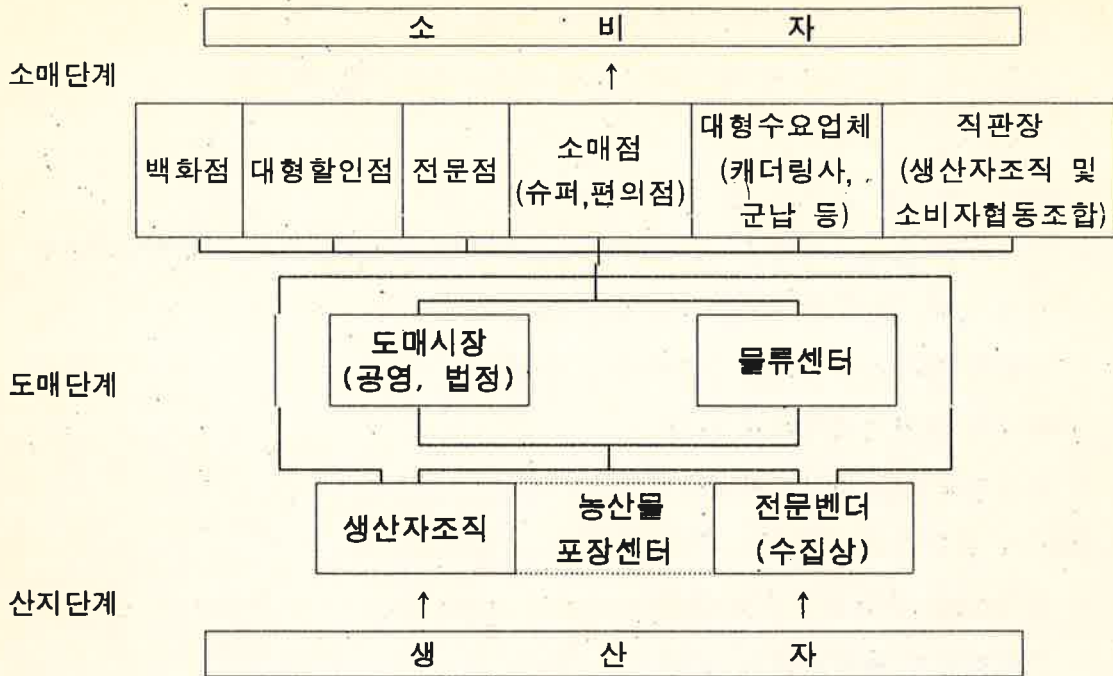
- 산지시장의 경우 협동조합의 판매사업이 확대되고 영농조합법인의 증가로 생산자조직의 공동출하가 확대됨에 따라 수집상 유통경로 비중이 축소되고 있음.
- 특히 소비지시장에서 할인점 중심의 대형 소매점 증가로 산지의 생산자조직과 수집상으로부터의 농산물 직거래가 확대됨으로써 유통경로가 다양화됨.
 - 1993년 11월 할인점이 국내에 처음 등장한 이후 대형 종합소매점(디스카운트 스토어, 슈퍼센터, 하이퍼마켓, 도매클럽)은 1995년 23개점에서 1996년 66개점으로 늘고 1997년에는 118개점으로 증가 전망
- 일반상품 뿐만 아니라 식료품부문에서도 대형 소매유통업체의 시장지배력이 증가함에 따라 가격결정방식도 유통업체에서 소매가격과 유통마진을 정한 후 차감하여 구매가격을 결정하는 비용차감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음.

- 소비지 유통업체가 급증함에 따라 일부 유통업체의 경영이 악화되어 도산하거나 업체간 인수합병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따라 유통업체들이 도산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생산자조직들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1.2. 농산물유통의 발전방향

- 농산물 소비의 다양화에 대응한 생산 및 상품 차별화 유도
 - 다양한 규격상품의 표준화, 품질인증 수준의 다양화와 원산지표시제 강화
- 생산자조직의 전문화(생산조직, 유통조직, 가공조직)로 거래교섭력 강화 및 생산·출하조절 능력 배양
 - 유통, 가공의 전문화, 효율화를 위해 산지의 민간유통조직, 가공업체의 육성
과 차등지원 축소
 - 품목별 전문조합 육성으로 자율적인 수급 및 가격안정체제 확립
 - 생산자조직 중심의 공동계산제, 계열화로 공동판매방식 확산
- 농산물 포장센터 중심의 산지유통시설 지원
 - 소비지수요에 대응해 산지 유통시설 중심으로 신선농산물의 완결 포장 유도
 - 대포장 뿐만 아니라 소비자 구매단위의 소분포장도 수행
- 물류표준화로 유통비용 절감
 - 파레트, 화물적재차량의 단위화물적재시스템(ULS) 및 국제표준규격 일치
- 콜드체인시스템 구축으로 신선농산물 공급체계 구축
 - 산지, 도매 및 소비지에 예냉·저온저장시설이 완비되고 냉장차량에 의한 수송으로 소비자에게 신선농산물 판매
- 거래방식의 다양화, 전산화, 표준화로 공정거래질서 정착
 - 소비지 유통업체와 공정 거래계약 및 안전한 계약이행을 위한 안전장치 마련
- 농업관측 전담기구의 구성 및 활동으로 다양한 유통정보 생산과 신속한 정보 제공
- 수입농산물의 검역제도 강화와 수출농산물의 안전성 강화
- 도매시장의 현대화계획 추진과 물류센터 운영활성화

그림 1-1 2004년 유통모델 전망



2. 유통개혁대책의 추진과 성과

2.1. 유통개혁대책의 추진

2.1.1. 유통개혁대책('94.9)의 주요내용

(1) 기본방향

- 품목별 생산자조직 육성(산지유통시설 투자 확대, 가공공장 확대, 품질인증, 관측정보 제공으로 생산 및 출하조절)
- 산지, 소비지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수집상등록제, 상장경매 확대 등)
- 물류 흐름의 다원화(물류센터, 직거래)
- 유통정보 제공

(2) 분야별 주요 유통개혁대책

- 산지유통개혁
 - 산지 유통시설의 획기적 확대 : 농산물 포장센터, 청과물종합처리장, 간이집하장, 산지가공공장, 산지 경매식집하장의 공판장화

- 품목별 전문조직 육성 : 품목 전문조합 설립시 인가기준 완화, 영농조합 설립 지역제한 폐지. 각종 자금의 우선 지원
- 표준규격, 품질인증제, 원산지표시제 정착, 포전매매 제도화
- 공영도매시장 개혁
 - 공영도매시장 조기 건설
 - 도매시장 관리·운영을 전담하는 공공출자법인 설립 허용 : 지정도매법인 평가제 강화, 법인별 차액보전공제금 적립 제도화
 - 전품목 상장경매 실시, 상장수수료 인하
 - 출하자 최저가격제시제 도입
 - 중매인제도를 중도매인제도로 개선
- 소비지 유통경로 다원화
 - 물류센터, 종합물류단지 건설
 - 생산자단체 유통자회사 설립
 - 농어민장터 등 직거래사업 활성화
- 유통정보체계 확립
 - 전국권 유통정보망 구축(유통정보 D/B 구축 등)
 - 유통업무 전담기구, 전문인력 육성 : 정보센터 육성, 농업관측위원회 설립
- 기타 대책
 - 양곡유통, 축산물유통, 수산물 유통개선

2.1.2. 주요 유통시설의 투융자 실적

- 농수산물 유통부문(가공 포함)에는 1994~2004년간 42조 구조개선사업의 19.8%인 8조3천억원과 15조 농특세사업의 9.7%인 1조5천억원을 합쳐 9조8천억이 지원되도록 함으로써 전체 투융자금액인 57조원중 17.1%가 배분됨.
 - 농산물 유통부문 투융자는 주로 산지 및 소비지 유통시설 확충에 대한 지원이 중심이 되고 있음.

표 2-1 유통시설의 연차별 지원개소수와 개소당 지원액

단위: 개소, 백만원

| | | 1994 | 1995 | 1996 | 1997 | 개소당 지원액 |
|---------------------|---------------------|-------|-------|-------|-------|---------|
| 산지 유통시설 지원사업 | 1. 간이집하장 설치(자율) | 1,083 | 871 | 1,078 | 200 | 50 |
| | 2. 농산물 포장센터 설치(공공) | - | 21 | 28 | 29 | 519 |
| | 3.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자율) | 147 | 47 | 35 | 35 | 1,139 |
| | 4. 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공공) | 3 | 2 | 5 | (2) | 2,721 |
| | 5.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공공) | 906 | 147 | 160 | 134 | 1,560 |
| 소비지 유통시설 지원사업 | 1. 도매시장 건설(공공) | 21 | 6(12) | 6(18) | 1(17) | 35,382 |
| | 2. 공판장 건설(공공) | 47 | 4 | 6 | 7 | 3,075 |
| | 3. 물류센터 건설(공공) | 1 | 3 | 4 | 2 | 63,856 |

주 1) 1994년 가공산업 지원개소수는 1989-94년까지의 누계이며, 축산물처리장의 ()는 최근 추가

2) 도매시장, 공판장의 1994년 개소수는 누계임.

3) 도매시장의 ()안은 계속사업을 포함한 지원개소수임.

2.2. 유통개혁대책의 성과

2.2.1. 산지 유통시설 지원으로 산지유통의 획기적 변화 시작

- '94년 이후 시설확충 목표에 의해 농산물 포장센터, 간이집하장, 미곡종합처리장, 축산물종합처리장 등 산지 유통시설에 집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산지에서 선별·포장하여 규격품을 출하할 수 있는 기반이 획기적으로 조성되었음.

표 2-2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의 투융자계획 달성도

| | 지원년도 | 계획량 (개소) | 추진량 (개소) | 달성도 (%) |
|----------|---------|----------|----------|---------|
| 간이집하장 | 1994-97 | 4,000 | 3,032 | 76 |
| 농산물 포장센터 | 1995-04 | 160 | 49 | 31 |
| 미곡종합처리장 | 1991-04 | 400 | 220 | 55 |
| 축산물종합처리장 | 1994-00 | 10 | 10 | 100 |
| 가공산업 육성 | 1989-04 | 2,000 | 1,231 | 62 |

- 간이집하장 지원사업으로 생산자조직 중심의 공동생산, 공동출하 활동이 점차 활발해지고 있음.
 - 농협의 경우, 기존의 노후화된 창고시설이 간이집하장사업으로 대부분 200평 단위의 편리한 시설로 교체됨으로써 공동출하 농산물의 집하, 출하, 수매농산물의 보관, 농자재 보관 등으로 용이하게 이용되고 있음.
 - 영농조합법인과 작목반의 경우 부분적으로는 개인적인 이용시설로 전락되는 경우가 있으나, 기존에 농가창고, 비닐온실 등에서 선별, 출하되던 농산물이 집하장을 통해 집하, 공동선별, 출하되고 농자재보관 및 회의장 등으로 활용

- 농산물 포장센터가 생산자조직 중심으로 설립, 운영되어 공동선별 및 규격품 출하 측면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
 - 과일의 경우 포장센터의 설립으로 중량선별 뿐만 아니라 색채선별까지 이루어지기 시작하여 특히 수출과일의 선별포장에 큰 진전을 나타내었음.
 - 채소의 경우 소분포장기계, 세척기까지 포장센터에 보급되어 양파를 비롯하여 소비자 구매단위의 소포장단위 출하가 가능하게 되었음.
- 미곡종합처리장 중심으로 쌀의 산지유통이 개편됨으로써 규격화되고 다양한 상품을 소비자들에게 공급하고 수확후 관리비용이 크게 절감됨.
 - 미곡종합처리장 유통량 비율 : ('93) 3.1% ⇒ ('96) 19.7%
 - 수확후 관리비용 절감 : 관행 포대관리방식보다 30% 정도 저렴
- 축산물종합처리장이 건설되기 시작하여 농가와 유통주체 사이의 계열화 체제가 구축되기 시작하고, 도축·가공시설을 현대화하여 기존의 지육, 냉동육 중심의 유통에서 냉장육, 부분육, 브랜드육 중심의 유통으로 전환되고 있음.
- 농산물 가공산업의 육성을 위해 정부에서는 '89년부터 '96년까지 1,231개소에 대해 총 2,583억원을 지원하여 다음과 같은 성과를 나타내었음.
 - ① 건설중인 200개소를 제외하고 정상가동중에 있는 883개소중 판매실적조사에 응한 851개 가공공장의 '96년 매출액은 4,533억원이 되어 전체 식음료산업 매출액의 2% 정도를 점유하게 되었음.
 - ② 이와 같은 직접적인 효과 외에도 생산자조직에 의해 과일류, 채소류, 김치류, 장류, 주류 등의 가공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확산되어 대기업을 비롯한 민간가공업체의 농산물 가공산업 참여를 촉발함으로써 가공산업이 획기적으로 변모하였음.
 - ③ 정부지원에 의해 설립된 산지 가공공장의 운영으로 이 부문의 고용창출효과가 연간 1만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96년말).
 - ④ 정부에서 '91~'96년간 1,538개소에 대해 가공원료 구입자금 2,090억원을 지원함으로써 성출하기 가공용 원료구매로 농산물 가격안정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으며, 민간가공업체가 주로 구매하던 가공용 원료시장에 정부지원 가공공장이 참여함으로써 원료가격 인상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⑤ 산지의 가공공장에서 농민들의 농산물, 특히 등외품 농산물을 구입해 주거나 계약생산을 함으로써 농가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
 - ⑥ 그밖에 가공제품의 포장디자인 개선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상품성이 제고되었으며, 가공제품 품질인증제도의 운영으로 품질향상에 기여하였음.

표 2-3 가공산업 육성 지원현황, 1989~96

단위 : 개소, 백만원

| | 합 계 | 전통식품 가공공장 | | | | | 산지일반 가공공장 | | |
|-------|----------------|--------------|--------------|--------------|------------|------------|-------------|-------------|------------|
| | | 계 | 전통식품 | | | 특산 단지 | 계 | 생산자단 체 | 일반 업체 |
| | | | 소 계 | 농어가 공동 | 생산자 단체 | | | | |
| 사 업 량 | 1,231 (160) | 958 (123) | 481 (112) | 382 (112) | 99 (11) | 477 (-) | 273 (37) | 124 (31) | 149 (6) |
| 지 원 액 | 258,290 | 98,704 | 64,664 | 51,905 | 12,759 | 34,040 | 159,586 | 106,309 | 53,277 |

주: ()안은 추가지원 내역이며, 사업량에는 포함되지 않음.

자료: 농림부 가공산업과

2.2.2. 소비자 유통시설 확충으로 경쟁여건 조성

- 소비자 유통시설의 다양화를 위해 도매시장의 건설을 앞당기고, 공판장 건설을 지원하는 한편, 물류센타를 처음으로 도입하는 등 소비자 유통시설의 확충에 집중 지원하여 사업지원의 달성도면에서 소기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음.

표 2-4 농산물 유통시설의 투융자사업 달성도

| | 지원년도 | 계획량 (개소) | 추진량 (개소) | 달성도 (%) |
|-------|---------|----------|----------|---------|
| 도매시장 | 1984-98 | 34 | 33 | 97 |
| 공 판 장 | -98 | 67 | 64 | 95 |
| 물류센터 | 1995-04 | 16 | 8 | 50 |

- 농수산물의 대량유통체계 구축과 공정거래 촉진을 위해 전국 주요도시에 공영도매시장 건설을 당초 2001년에서 '98년까지 조기완료키로 하고 집중 지원함에 따라, 현재 건설되어 운영중에 있는 공영도매시장은 14개소가 되었으며, 나머지 20개소도 건설중에 있음.
 - 이에 따라 법정도매시장과 유사도매시장, 공판장이 신규 건설되는 공영도매시장에 흡수되어 제도권시장의 유통비율 증가
 - 금후 나머지 20개소의 공영도매시장이 건설되면 법정도매시장, 유사도매시장 및 공판장 총 149개중 96개(20개소×4.8법인)가 공영도매시장에 흡수되고 53개소만 남게 될 것임.
 - 수도권지역의 10개 공영도매시장 규모는 개소수에 있어서는 훨씬 적지만 전국권 도매시장 전체규모에 비해 부지면적은 43.9%, 건물면적은 47.5%에 해당되어 인구비례와 비슷한 수준임. 이는 도매시장의 지역별 배치차원에서는 바람직한 배치라 할 수 있음.

- 또한 기존의 도매시장과 달리 산지의 생산자조직과 소비지 소매업체, 대형수요처를 직접 연결하여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유통경로를 다원화하기 위해 '94년부터 2004년까지 소비지에 대형 물류센타를 16개소 건설하기로 하였음.
- 이에 따라 농산물 물류센타는 2004년까지 전국적으로 16개소를 건설하기로 하고 현재 10개소가 선정되어 건설중에 있음.

2.2.3. 유통관련 제도 정비로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 전품목 상장거래 실시로 도매시장 거래질서 개선
 - 도매시장 상장거래 비율 확대 : ('85) 40% 미만 ⇒ ('95) 93.5%
 - 경매가 어려웠던 무, 배추 등의 상장경매 실시
- 산지 수집상 등록제 실시로 수집상의 제도권 흡수
- 상장수수료 인하(가락동시장 1~1.5%, 대전 0.5%)로 농업인 부담 경감
- 품질인증제 확대, 원산지표시제 강화, 안전성 검사제도 도입 등으로 국내 농산물의 품질차별화 진전
 - 품질인증제 확대 : ('93) 63품목 3만톤 ⇒ ('96) 76품목 12만톤
 - 원산지표시제 대상품목 확대로 이행률 향상
 - 대상품목 확대 : ('93) 189품목 ⇒ ('96) 358품목
 - 명예감시원 위촉(1,161명), 고발포상금제 시행('95.3)
 - 원산지표시제 이행률 : 백화점 등 대형점 92%, 재래시장 69%(농검, '96.5)
 - 생산출하단계의 농산물안전성조사제도 도입('96.8)

2.2.4. 포장규격화, 브랜드화 진전

- 쌀 : 미곡종합처리장 중심의 유통량이 20%에 달하고 브랜드화가 진전됨.
 - 군단위 이상 브랜드 등록 : ('93) 2건 ⇒ ('96) 44건
- 축산물 : 계열화의 진전과 브랜드화
 - 브랜드 : 한우 49개, 돼지고기 46개, 닭고기 18개, 계란 68개
- 과일, 채소 : 포장화 정착
 - 포장화율 : 사과 86%, 배 99%, 감귤 99%, 오이 99%

2.2.5. 농업관측, 유통정보의 수집, 분산체계 정비

- 농림수산정보센타를 중심으로 농업관련 통합정보네트워크 구축
- 농업관측정보의 수시 제공과 관측월보의 전국적 제공('96.9)

3. 유통개혁대책의 보완과제

3.1. 산지유통시설의 활용도 제고와 지원제도 조정

3.1.1. 간이집하장 이용률 제고

문제점

- 농산물 생산의 계절성으로 인해 집하장시설에서 농산물을 집하, 출하할 수 있는 기간이 실제로 2~3개월에 한정됨으로써 이용률이 저조함.
- '94~'95년에 지원되어 운영중인 간이집하장 1,954개에 대해 전수조사한 결과에 의하면¹⁾, 연간 이용일수가 68.7일로 심한 계절성을 띠고 있음.

표 3-5 '94~'95년 정부지원 간이집하장의 규모별 연평균 이용일수

단위 : 일

| | 50평 | 60평 | 80평 | 100평 | 150평 | 200평 | 평균 |
|-----------|------|------|------|------|------|------|------|
| 연 평균 이용일수 | 57.8 | 78.6 | 75.4 | 74.3 | 83.1 | 83.2 | 68.7 |

자료: 농림부·농수산물유통공사,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및 이용현황」, 1996.12

- 영농회단위 지원집하장의 이용일수가 가장 낮으며, 중대규모의 농협 집하장과 중규모 중심의 영농조합 집하장의 이용일수는 상대적으로 높음. 소규모 생산자조직의 경우 주로 단일작목 위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농산물 생산의 계절성이 바로 집하장 이용의 계절성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3-6 간이집하장 운영주체별 규모별 연평균 이용일수

단위: 일

| 운영주체 | 50~60평 | 80~100평 | 150~200평 | 평균 |
|--------|--------------|---------------|---------------|--------------|
| 농 협 | 81.2 (29) | 90.3 (26) | 104.2 (17) | 89.9 (72) |
| 영 농 회 | 53.7 (43) | 68.4 (14) | 53.6 (13) | 56.6 (70) |
| 작 목 반 | 72.7 (50) | 81.4 (15) | 100 (15) | 79.5 (80) |
| 영 농 조합 | 89.9 (35) | 100.2 (22) | 72.1 (14) | 86.8 (56) |

주: ()안은 '94~'95년 지원된 1,954개의 간이집하장중 임의추출한 개소수임.

1) 농림부·농수산물유통공사,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및 이용현황」, 1996.12

○ 집하장 관련 지원사업의 연계성 부족

- 집하장이 포함되는 정부의 지원사업 종류에는 유통부문에서 지원하는 간이집하장지원사업, 농산물포장센터 및 청과물종합처리장사업 등이 있으며, 생산유통지원사업(시설채소, 화훼, 과실, 양념채소, 특작중 생약부문)에 의해 생산시설과 팩키지로 지원되는 집하장과 선과장 등 4,400여개소나 되어 지원사업간 연계성이 결여됨으로써 집하장 설치에 대한 시기별, 지역별, 생산자조직별 조정기능이 취약함.

표 3-7 농산물 집하장의 관련 사업별 지원현황

| 관련된 지원사업명 | 지원년도 | 집하장 갯수 (1996년까지) | 내용 |
|--------------|-----------|---------------------|-----------------------|
| ○ 농산물 간이집하장 | 1994년부터 | 3,032 | ○ 80% 보조, 50~200평 |
| ○ 농산물 포장센터 | 1995년부터 | 49 | ○ 70%('97년부터 60%) 보조, |
| ○ 청과물 종합유통시설 | 1992~93년 | 25 | ○ 70% 보조, 개소당 평균 220평 |
| ○ 청과물종합처리장 | 1995년 | 3 | ○ 100% 보조 |
| ○ 생산유통지원사업 | | | |
| - 시설채소 | 1991년부터 | 103 | ○ 50% 보조('97년부터 40%) |
| - 과실 | 1994년부터 | 393 | |
| - 양념채소 | 1994년부터 | 97 | |
| - 화훼 | 1991년부터 | 103 | |
| 소 계 | - | 3,805 | - |
| 생산자조직 자체집하장 | '96.10 현재 | 627 | |
| 합 계 | | 4,435 | |

- 주 1) 청과물 종합유통시설의 경우 집하장과 선과장 포함.
 2) 생산유통지원사업의 집하장은 50평 기준으로 통일 적용, 집하장 및 선과장 포함.
 3) 시설채소의 경우, '94년 이전에는 '91~'93년 성장작목 종합시범단지조성사업, '92~'93년 시설채소 시범단지조성사업명으로 유사한 지원사업이 있어 이를 포함하였음.

- 또한 중앙부처인 농림부에서도 유통시설에 대해서는 유통정책국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생산시설과 팩키지로 지원되는 집하장과 선과장에 대해서는 원예특작국의 사업과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부서별 조정에도 한계가 있음.

보완과제

○ 집하장의 기능 다양화로 인식 제고

- 간이집하장의 실제 운영년수가 2년 정도에 불과하여 집하장 활용에 대한 농가들의 인식이 부족하고, 소규모 생산자조직의 경우 농산물생산의 계절성으로 인해 이용률이 낮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집하장의 용도를 다양화하여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함.
- 이를 위해 집하장 기능을 현재 농산물의 집하, 출하위주에서 선별, 포장, 농자재 보관, 생산자조직 공동회의장 등으로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 집하장의 포장센터화 지원
 - 간이집하장에 선별기, 소분포장기, 세척기 등의 시설 설비 및 저온저장고 시설 추가로 생산자조직 규모에 적합한 포장센터 지원
 - 이를 위해 '97년까지 지원되는 간이집하장 설치 지원은 예정대로 종료하고, 농산물 포장센터 지원방식 보완하여 기존의 간이집하장(또는 선과장, 저온저장고)이 있는 지역이나 생산자조직에 대해서도 포장센터 지원사업에서 시설 보완 지원함으로써 포장센터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
- 각종 지원사업에 포함된 집하장 지원을 포장센터사업으로 통합 관리
 - 지원방법 : 집하장만에 대한 신규수요(저온저장고도 마찬가지로)는 앞으로도 계속 창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농산물 포장센터 지원사업에서 집하장 명목으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저온저장고도 마찬가지로 적용).
 - 보조율 개선 : 다만 간이집하장에 대한 보조율(80%)은 농산물 포장센터 보조율로 통일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3.1.2. 농산물 포장센터의 기능다양화와 운영 지원.

문제점

- '92~93년에 건설되어 3~4년 운영해 온 청과물 종합유통시설과 '95년에 건설되어 1년간 운영한 농산물 포장센터 대부분이 적자운영중에 있음.
 - 특히 규모가 큰 시설일수록 운영미숙과 원료확보 부족 등으로 적자폭이 커져 자금부담을 겪고 있음.
 - 농산물 포장센터가 적자를 나타내고 있는 이유로는 대부분의 포장센터가 생산자조직에서 선과료, 저장료를 조합원에 대한 서비스차원에서 낮게 책정하고 있으며, 주로 단일농산물 주산지에 설립되어 있어 계절적인 운영에 따른 가동률 저조와 물량확보의 어려움 때문임.

보완과제

- 포장센터 설치지원 강화
 - 금후 농산물유통이 통명거래, 예약주문거래, 견본거래 등 선진적인 거래형태로 나아가기 위해 모든 농산물이 산지부터 표준규격화되어 거래될 필요가 있으므로, 이 기능을 수행하는 농산물 포장센터는 산지유통의 구심점이 될 것임.

- 따라서 현 상태에서는 여건 미비로 포장센터에서 다소의 적자가 발생하고는 있으나 점차 이용율이 높아질 것이므로 포장센터 설치지원은 계속되어야 함.
- 특히 기존 시설중에서 규모가 큰 포장센터의 경우 원료확보 부족, 경영능력 부족 등으로 적자폭이 크기 때문에, 신규시설은 중규모(5~10억)의 시설 지원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 기능다양화
 - 포장센터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농산물 집하, 선별, 포장 및 저장기능 외에도 1차 가공기능과 농산물 운송사업 알선기능 뿐만 아니라 농촌의 농업 노동력 중개알선기능 등 보다 적극적인 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운영자금 지원
 - 농산물 포장센터의 경우에도 연중 선과, 저장을 위한 원료 확보 등이 필요하므로 미곡종합처리장과 농산물 가공공장에 지원되는 수준의 운영자금(원료 확보) 지원
- 시설 보완 및 확장을 위한 지원
 - 농산물 포장센터 운영과정에서 시설의 개보수 및 소분포장기계, 지게차, 팔레트, 운반상자 등에 대한 추가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시설 운영이 활성화될 경우 시설보완, 확장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므로 추가지원 필요(저리융자)
- 생산자조직의 공동판매활동 강화
 - 기존 시설과 마찬가지로 신규시설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생산농가들의 공동계산제나 계열화가 필요하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이 제도를 도입하는 생산자조직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3.1.3. 미곡종합처리장의 시설보완과 수탁판매 확대

- 도정시설이 전국적으로 과잉인 점을 감안하여 400개 이상의 증설은 중기적으로 필요치 않으며, 기존 시설에서 보완이 필요한 건조·저장시설에 대해 추가 지원
- 현금수요가 많은 매취판매방식보다는 수탁판매방식을 유도함으로써 벼 매입자금 부족문제를 완화하도록 함.
- 미곡종합처리장과 양곡도소매상들 간의 안전한 판매대금 정산을 보장할 수 있도록 농협중앙회 등에 양곡도소매업체에 대한 신용보증기능 운영 유도

3.1.4. 축산물 종합처리장 중심의 축산계열화 확대

- 종합처리장 중심의 전후방 계열화사업 확대
 - 사육농가, 생산자조직과 종합처리장 사이에 다양한 계약방법에 의한 계열화(수직통합) 생산과 유통의 전문화 유도
 - 종합처리장은 소비지 판매점들과 계약에 의한 계열화 유도
- 냉장육 유통체계 확립을 위한 전 유통과정의 위생처리시스템 정비 지원
 - 4년밖에 남지 않은 쇠고기시장의 전면 개방에 대응해 한우의 고급육 유통을 위해서 종합처리장, 도축장에서부터 수송차량, 판매장,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전 유통과정이 청결위생처리되도록 정비되어야 함.

3.1.5. 농산물 가공공장의 운영 활성화

문제점

- '96년까지 1,231개소의 농산물 가공공장이 지원되어 건설, 운영중에 있으나, 건설중에 있는 200개 업체를 제외한 1,031개소중 14.6%인 151개소가 부실화되어 95개소는 공장건설중 또는 사업도중 사업을 포기하여 정부지원금이 회수하고 다른 용도로 전환하였으나, 56개소가 현재 부실운영중에 있음.
 - 특히 지정취소되어 타용도로 전환된 95개 업체는 대부분이 산지일반가공 및 특산단지사업에서 발생하였으며, 대부분 공장건설중 자부담 조달능력 부족, 원료확보 곤란, 판매부진 등의 원인으로 취소되었음.
 - 또한 현재 정상가동중에 있는 업체 중에도 많은 업체가 가족노동력에 주로 의존하는 소규모 가내수공업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어 기업경영적인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음.
- 산지가공공장의 부실화 원인
 - ① 일부 가공공장의 경우 부적절한 품목의 선정, 낮은 생산성, 판매부진 등으로 경영 부실
 - ② 젓갈류, 김, 미역가공 등 특별한 가공기술이 필요없고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공장설립이 가능하고 시장진입도 용이한 품목의 경우 지원업체 사이에 경쟁이 되어 제품판매 부진

- ③ 일부 생산업체는 민간 가공업체에 비해 사용원료와 생산기술이 제약되어 경쟁력 저하
- ④ 가공공장의 규모 영세로 대리점 확보, 판매촉진 활동 등 판로개척 어려움
- 특히 산지가공공장 부실화의 대표적인 이유로 판매 부진 및 판로 확보 어려움을 들고 있어 가공품의 생산과 판매방식에서 획기적인 방향전환이 필요함.
 - 조사대상 가공공장중 65%가 농협계통판매 위탁, 16.4%가 자체판매망을 통해 판매하고 있어 판매망 구축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대두됨.

표 3-8 농산물 가공공장 가동현황('96.12월 현재)

| | 지원업체 | 정상가동 업체 | | 부실가동 업체 | 업종전환 업체 | 건설중인 업체 |
|------|-------|---------|----------------|---------|---------|---------|
| | | 계 | 그중 판매실적 있는 공장수 | | | |
| 전통식품 | 481 | 336 | 329 | 14 | 1 | 130 |
| 산지일반 | 273 | 162 | 162 | 22 | 19 | 70 |
| 특산단지 | 477 | 385 | 360 | 17 | 75 | - |
| 계 | 1,231 | 883 | 851 | 53 | 95 | 200 |

주: 정상가동 업체중 판매실적이 없는 업체는 원료 숙성중에 있거나 품목 전환, 사업다각화를 위해 또는 행정규제에 따라 공장가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업체임.

자료: 농림부에서 시,군을 통해 전수조사한 자료

보완과제

- 가공공장 신규지원 축소와 운영활성화
 - 가공공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부실화되는 경우를 방지하고 이들 공장을 규모화시켜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현상태의 농수산물 가공공장 지원사업은 사업물량을 늘리는 양적인 지원에서 사업체의 경영수준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질적인 지원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금후에는 지원할 사업량을 줄이는 대신 기존의 가공공장 운영활성화에 대한 지원 필요
- 가공공장의 생산 및 판매방식 전환 유도
 - ① 대기업이나 민간기업의 시장지배력이 높은 대중음료(과일음료, 채소음료 등)
 - 반제품 가공을 유도하여 대기업이나 대규모 완제품 가공공장에 공급하거나 주문생산방식(OEM)에 의해 생산할 수 있도록 전문화
 - ② 지역의 특수성이 있는 생산품이나 전국적인 수요가 있는 품목(특정음료, 차류, 장류, 식용유 등)
 - 직접적인 판로 개척이나 수송을 지양하고 생산에만 전문화하는 한편, 전문 판매사업단을 조직하여 공동판매 또는 위탁판매방식을 추진하거나 전문판매회사와의 판권계약방식 등으로 생산과 판매 분리

- 금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우편주문판매, 텔레마케팅 등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재고 축소와 주문생산체제 구축
- ③ 상품의 차별성이 크게 없지만 제품에 대한 대중적인 수요가 있는 품목(김치류, 절임류, 장류 등)
 - 인근 소비지역에 대한 공급을 기반으로 하되, 권역별로 유사품목 가공업체를 통합하여 규모화하거나 계열화하여 공장경영의 전문화 유도
- 정부지원의 보완
 - 신규업자 선정시 사업자가 보다 신중히 사업에 참가할 수 있도록 보조지원은 용자로 전환
 - 지역별로 유사업체의 통폐합을 통해 규모화를 추구하거나 계열화를 통해 다공장 식품기업형태로 발전하는 사업체에 대해 특별지원
 - 시설 현대화, 안전식품 생산을 위한 시설대체 및 추가시설에 대한 지원
 - 소규모 산지가공공장과 대기업 및 대규모 민간가공업체와의 연계 지원
 - 가공업자에 대한 기술 및 경영 교육프로그램 개발 집중 지원

3.2. 소비지 유통시설의 현대화 지원

3.2.1. 도매시장의 무리한 건설 추진 지양과 현대화계획 추진

문제점

- 도매시장 건설계획에 유통환경 변화 반영이 미흡하고, 실제 사업 추진도 지연되는 등 무리한 건설 추진으로 시행착오 우려
 - 소비지 유통여건이 유통단계의 축소, 물류효율화, 정보화에 의한 수송거리 및 시간의 최적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도매시장 건설의 조기건설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성급히 사업계획 및 공사가 추진됨으로써 유통환경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가 미흡함.
 - '98년까지 34개의 도매시장이 건설되어 운영되면 전체 시장유통량의 50%를 공영도매시장에서 취급하게 될 것으로 계산되나 물류센타 및 대형 유통업체의 직거래체제 확대 등으로 유통경로의 다양화가 진행되면 도매시장에 따라 취급물량 부족문제와 운영부실이 발생할 수 있음.

보완과제

- 지역실정에 맞고 유통환경을 충분히 반영한 시설이 계획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무리한 건설 추진 지양
- 현재 운영중인 공영도매시장과 앞으로 건설될 도매시장에 대해 기존의 시장기능인 수집·분산기능, 가격결정기능을 대폭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정비계획을 추진 필요
 - 이를 위해 기존 도매시장에 대해서는 기능 재정립과 시설재배치 및 확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건설중인 도매시장에 대해서도 사업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정비계획을 보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현대화계획 보완시설 : 하역기계화시설(운반시설), 집배송시설, 저온저장시설(경매장 저온시설), 정보화시설, 품질점검 및 관리시설 등

3.2.2. 농산물 물류센터 운영활성화 지원 강화

문제점

- 농산물 물류센터는 유통여건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기존의 도매시장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물류체계를 구축하여 유통경로를 다원화하고 농어민들의 출하선택폭을 넓힌다는 취지에서 지원키로 한 시험적이고 도전적인 지원사업임.
- 농가조사 결과에 의하면, 정부의 물류센터 건설지원에 대해 총 990농가중 515농가가 '도매시장과 함께 육성하여 판로의 다양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응답함으로써 소비자 물류센터에 대한 기대가 큰 것으로 나타났음.

표 3-9 정부의 소비자 물류센터 건설지원에 대한 농가의견

단위: 명, %

| 문 항 | 인 원 | 비 율 |
|-----------------------------|-----|------|
| ① 도매시장과 기능 중복으로 불필요한 기구 | 43 | 4.3 |
| ② 도매시장을 대체하는 기구로 적극지원 육성 필요 | 238 | 24.0 |
| ③ 도매시장과 함께 육성하여 판로다양화 필요 | 515 | 52.0 |
| ④ 잘 모르겠다 | 194 | 19.6 |
| 합 계 | 990 | 100 |

주: 조사시점 - '97.4월중, 조사농가수 - 990농가

- 그러나 2004년까지 건설 지원되는 16개소의 물류센타는 아직까지 운영단계에 들어가지 않아 도매시장과의 경합성 정도, 물량취급 정도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사업량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움.

보완과제

- 물류센타의 시범운영을 평가한 후 지원물량, 규모, 조건의 재조정
 - 물류센타는 농산물의 소비지 유통경로를 도매시장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다양화하기 위해 처음으로 지원, 도입되는 시설로서 선진국들의 사례를 볼 때에는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시설운영의 사례가 없고 유통여건이 성숙되어 있지 않아, 우선 기선정된 물류센타(양재동, 창동 물류센타)의 운영을 시범적으로 평가하고 지원물량, 지원규모 및 지원조건 조정 필요
- 물류센타 운영활성화를 위한 집중적인 지원시스템 구축
 - 우선 현재까지 선정된 물류센타의 조속한 건설과 운영을 위해 농안법 관련규정을 보완하고 물류센터 시설을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에 조속히 포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도매시장과 달리 처음 도입되는 유통시스템인데도 불구하고 대규모 시설과 자금이 투자되므로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도록 운영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타당성 검토 필요 및 운영시스템 구축에 대한 지원 필요
- 사업대상자에 공공기관의 참여 지양
 - 물류센타 사업선정대상에 지자체도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이에 따라 현재 건설중인 10개소중 지자체의 컨소시엄 참여가 2개소), 물류센타는 민간기업에 적합한 사업영역이므로 유통활동에 대한 공공기관의 참여는 가능한 한 지양할 필요가 있음.

3.3. 도매시장 거래제도에 대한 불신 해소

문제점

- 도매시장의 상장경매제도에 대한 불신 상존
 - 일부 도매법인의 형식적 기록상장행위 등 불공정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출하농민, 생산자조직 및 중도매인의 경매에 대한 불신 상존
 - 중도매인, 경매사들의 공정경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여 출하농민들의 불신 만연
- 도매시장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 농가설문조사 결과, 경매제도가 가장 문제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하역문제와 중도매인문제도 비교적 문제가 많은 부분으로 지적하고 있음.

표 3-10 설문농가의 도매시장 문제 지적(3순위 응답농가 및 비율)

단위: 명, (%)

| 구 분 | 순 위 법 | | | 계 |
|--------|-----------|-----------|-----------|-----------|
| | 1 순위 | 2 순위 | 3 순위 | |
| ① 경매제도 | 307(35.6) | 103(11.9) | 25(2.9) | 487(56.4) |
| ② 하역문제 | 204(23.6) | 31(3.6) | 30(3.5) | 294(34.1) |
| ③ 중도매인 | 88(10.2) | 214(24.8) | 105(12.2) | 444(51.4) |
| ④ 수수료 | 75(8.7) | 163(18.9) | 92(10.7) | 378(43.8) |
| ⑤ 수송문제 | 50(5.8) | 62(7.2) | 142(16.5) | 284(32.9) |
| ⑥ 경매사 | 23(2.7) | 102(11.8) | 181(1.0) | 343(39.7) |
| ④ 도매법인 | 15(1.7) | 42(4.9) | 31(3.6) | 96(11.1) |
| ⑧ 시설문제 | 12(1.4) | 18(2.1) | 102(11.8) | 148(17.1) |

주 1) 조사시점 : 1997.4월중

2) 순위법의 응답비율은 총응답자 863명에 대한 응답자의 비율임.

3) 순위법의 계는 순위별 응답과 무순위 응답을 합산한 수치임.

보완과제

- 도매시장 거래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및 불신 해소방안 모색으로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 구축
 - 기록상장의 실태와 원인, 거래방식별 비교와 효과, 시장간 전송물량 파악과 원인, 경매사·중도매인의 경매행위 분석 등

3.4. 농업관측제도 강화

문제점

- 현재의 농업관측제도는 최근에 실시하기 시작하여 관측소위원회 활동과 관측월보의 발행 등에 국한됨에 따라 품목별로 체계적인 조사와 분석이 부족하고 관측결과의 정보 확산 및 홍보 부족으로 신뢰성과 이용도 저하
- 농업관측 통계조사의 업무중복으로 예산낭비
- 정보의 생산기관과 이용기관간의 협조 부족

보완과제

- 농업관측정보의 생산과 활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농업관측 전담기구의 확대와 전문가조직 구성
 - 품목별, 기능별 전문가로 구성된 조직을 별도의 기구로 구성하여 정확하고 객관성 있는 농업관측의 수행
- 품목별 생산자조직, 도매시장 등 유통기구는 농업관측을 위한 조사기구로 활용

3.5. 생산자조직의 생산·출하조정 능력 배양

문제점

- 농산물의 생산조정과 출하조정이 생산자조직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수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품목별로 전국단위의 생산·출하조정을 할 수 있는 조직이 구성되어 있지 않음.
 - 현재 구성되어 있는 품목별 전국협의회는 지역농협 중심으로 하향식으로 형성되어 있어 농협 이외의 조직이 제외되어 있고 품목별 생산농민들의 실질적인 구심체가 되지 못하고 있음.

보완과제

- 생산자조직에서 자율적으로 생산조정과 출하조정을 할 수 있는 체계 정립 및 지원제도 확립
 - 품목별 전국 생산자조직의 실질적인 육성을 위해 상향식 제조직화 등 근본적인 방안 마련
 - 생산·출하조정과 가격안정제도를 품목별 전국 생산자조직(품목특정)과 종합적 전국 생산자조직(품목비특정)이 전담하여 추진할 수 있는 제도 수립

< 부록 2 >

농산물 유통사업의 평가와 대책

(삼성연구소 민승규)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 현재 우리나라 농업은 대내적으로 생산구조와 소비구조 등이 급격히 변화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세계무역기구(WTO) 출범과 OECD 가입에 따라 농산물 시장 및 유통시장 개방이 가속화되고 있음
- '80년대 중반이후 정부는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제도개선과 투자증대에 노력해 왔으나 투자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고, 이에 유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민정부 들어서 막대한 규모의 투자를 보이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투자규모에도 불구하고 그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고, 최근 들어 유통환경변화 역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어 새로운 농산물 유통정책의 모색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유통정책 또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음

2. 연구목적

- 본 연구에서는 급변하는 유통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지금까지의 유통부문 투융자실적을 평가하고, 향후의 유통체계를 전망하여 앞으로의 투융자계획에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음
-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유통환경변화와 유통체계의 변화를 전망하고,
 - 투융자사업의 효율성 및 적합성을 평가하여
 - 향후 농산물 유통체계의 변화에 기초한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며,
 - 유통분야 투융자사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정부 유통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

3. 연구방법

- 정책자료의 분석
 - 농림사업 시행지침서, 농수산물 유통개혁 대책 등 정책자료를 적극 활용
- 기존 연구문헌의 활용
 - 기존에 연구된 내용을 분석하여 제시되지 않거나 소홀히 취급된 부분을 재검토
 - 향후 유통방향을 정확히 설정하여 검토된 내용과 비교 분석하여 향후 정책 방향 제시
- 국가 정보통신정책 및 선진사례 조사
 -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등 국가정보통신 정책을 분석하여 향후 정보화기반 시설 전망
 - 선진국의 농산물유통에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사례 자료수집
- 정보통신전문가, 유통전문가 등 자문회의 적극 활용

4. 연구내용

- 농산물 유통여건의 변화와 유통체계의 전망
- 농산물 유통정책의 추진실태
- 농산물 유통부문의 투융자사업의 평가
- 투융자사업의 평가를 중심으로 농산물 유통정책의 발전방향과 투융자사업의 효율성 제고방안 마련

II. 농산물 유통환경의 변화와 전망

1. 농산물 유통환경의 변화

1) 생산부문의 변화

- 국내 농업생산구조가 자급자족적 농업생산에서 시장판매를 목적으로하는 상업적 생산구조로 급속히 전환
 - 상업적 농업경영은 축산·과수·화훼·채소 부문의 주도하에 빠르게 진전
 - 연간 농축산물 판매농가수(96) : 1,375천호(총농가의 91.6%)
 - 연간 판매금액 5천만원 이상 농가(96) : 14천호(0.9%)
 - 영농형태별 연간 판매금액 5천만원 이상 농가 비중(96) : 논벼 0.2%, 채소 0.7%, 과수 1.5%, 축산 4.4%, 화훼 4.3%
- 비닐하우스등 자본집약적인 시설재배면적이 확대되어 생산의 계절성이 감소, 이에 따라 채소류, 과실류의 생산증가 및 규모화가 진행되고, 축산부분의 규모화도 진행
 - '96년 채소류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389천ha, 10,209천톤, 과실류는 173천ha, 2,207천톤으로 '90년 비해 증가¹⁾
- 이런 변화는 유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변화를 초래
 - 소득작목으로의 생산집중이 진행됨에 따라 집중작목의 과잉생산, 기타작목의 과소생산이 이루어져 해당작목의 가격폭락과 폭등현상이 심화
 - 특히 수입농산물의 증가로 만성적인 공급과잉의 잠재력이 커지고, 국내 농산물과의 소비대체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
 - 경영전문화와 규모가 진행되면서 고정자산의 증대로 공급의 가격탄력성 (Price Elasticity of Supply)이 보다 비탄력적이 되어 가격불안정성 증대
 - 생산의 계절성 감소로 취급상인의 전문성이 증진되고 해당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가공업체의 가동률이 증가되어 가공산업의 발전여건이 확대. 이에 따라 산지에서의 선별, 포장작업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

1) 농림부, 농림업 주요통계, 1997. 6

2) 소비부문의 변화

- 국민소득의 증대에 따라 소비자의 식품소비형태의 변화초래
 - 소비성향이 고급화·다양화·간편화·건강위주로 급속 변화
 - 채소, 과일, 및 육류소비가 증가하고, 쌀등 곡물류소비는 감소²⁾
 - 채소류 1인당 연간소비량 : (95) 158.5kg → (96) 145.7kg
 - 과일류 1인당 연간소비량 : (95) 55.4kg → (96) 52.3kg
 - 육류 1인당 연간소비량 : (95) 27.4kg → (96) 28.7kg
 - 곡류 1인당 연간소비량 : (95) 160.0kg → (96) 160.4kg
 - 가공식품의 소비증가와 외식비지출의 증대
- 소비자의 식품구매형태의 변화
 - 다품목 소량구매경향이 강하고, 일괄구매(one-stop shopping)를 선호
 - CATV, PC통신 등 편리한 유통채널의 이용이 점차 증가
 - 외국농산물의 수입증가와 대중매체 접근이 간편하여 소비자의 선택폭 증대
 - 쓰레기 종량제 실시등으로 과일포장용기 기피, 폐자원의 재활용(recycling)등 환경에 관심이 증대
- 이런 소비부문 변화는 농산물유통과 관련, 다음과 같은 중요한 변화를 초래
 - 농산물 수요의 탄력성 및 가격탄력성이 비탄력화하여 가격불안정성이 확대
 - 소비패턴의 고급화·다양화는 농산물유통 영역을 확대하고, 청과물, 축산물 중심의 소비는 저장·수송·가격안정기능의 중요성을 증대
 - 가공식품과 외식산업의 확대는 농산물 가공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
 - 식품안정성에 대한 욕구증대에 따라 검사·검역기능의 강화 필요

3) 유통부문의 변화

- 유통시장의 개방과 대형유통업체의 확산
 - '89년 유통시장 제1단계의 개방과 '93년 제3단계의 개방을 거쳐 '96년 1월 외국인 투자 소매점포수와 매장면적에 대한 규제가 완전히 철폐되면서 외국유통업체가 국내시장에 본격 진출
 - 이와 같은 선진유통업체들은 자본력과 현대적 경영기법을 바탕으로 할인점 중심으로 국내시장에 진입함으로써 소매시장이 대형화·체인화되고 있음
 - 국내 대기업이 유통업에 진출하여 할인산업태와 도매클럽 등이 대폭 증가

2) 농림부, 농림업 주요통계, 1997. 6

- 유통경로의 변화
 - 산지유통시설을 기반으로하여 생산자조직의 공동출하가 확대됨에 따라 기존의 수집상 유통경로는 감소
 - 할인점 중심의 대형소매점 증가로 직거래가 활발히 진행되어 소비지 유통경로가 다양화됨
 - 또한 CATV, PC통신을 통한 전자상거래 등 간편한 유통채널의 이용증가와 그에 따른 택배의 증가
- 이와 같은 환경변화에 따라 국내 농산물유통은 외국 선진유통업체에 의해 급속히 잠식당할 것으로 전망되며, 정보통신기술의 활용등 유통업체의 경영합리화 투자가 본격화되고 있음. 또한 다양한 소비지 유통경로의 등장으로 유통구조의 전환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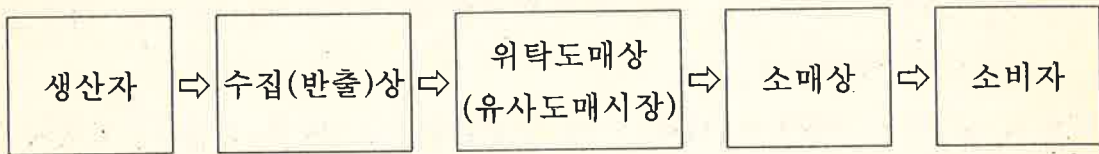
4)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농산물 유통혁명

- 급속한 사회변화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농산물유통에도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
 - 본격적인 유통정보의 수집전파로 농산물을 적시, 적지, 적량화와 적정가격으로 판매를 촉진
 - 유통기구간 수평적 연결과 수직적 연결을 통해 유통경로를 단축하고, 재고비용등 유통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
 - 유통업체의 비용절감을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경영합리화를 촉진
 - 특히 선진국에서는 인터넷 전자상거래(CALS/EC)를 활용한 국가간 무역거래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농산물무역전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
- 우리나라는 선물거래법을 '95년 제정, '96. 7.1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준비와 기반조성이 완료되어 있으나 선물시장은 아직 개설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향후 선물거래제도가 도입되어 국내 농산물 유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이러한 거래방식의 전산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농산물의 표준화·규격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상품의 포장화, 브랜드화 등이 선행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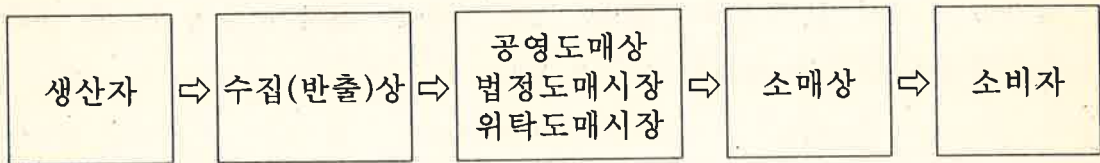
2. 농산물 유통체계의 전망

○ 농산물의 일반적인 유통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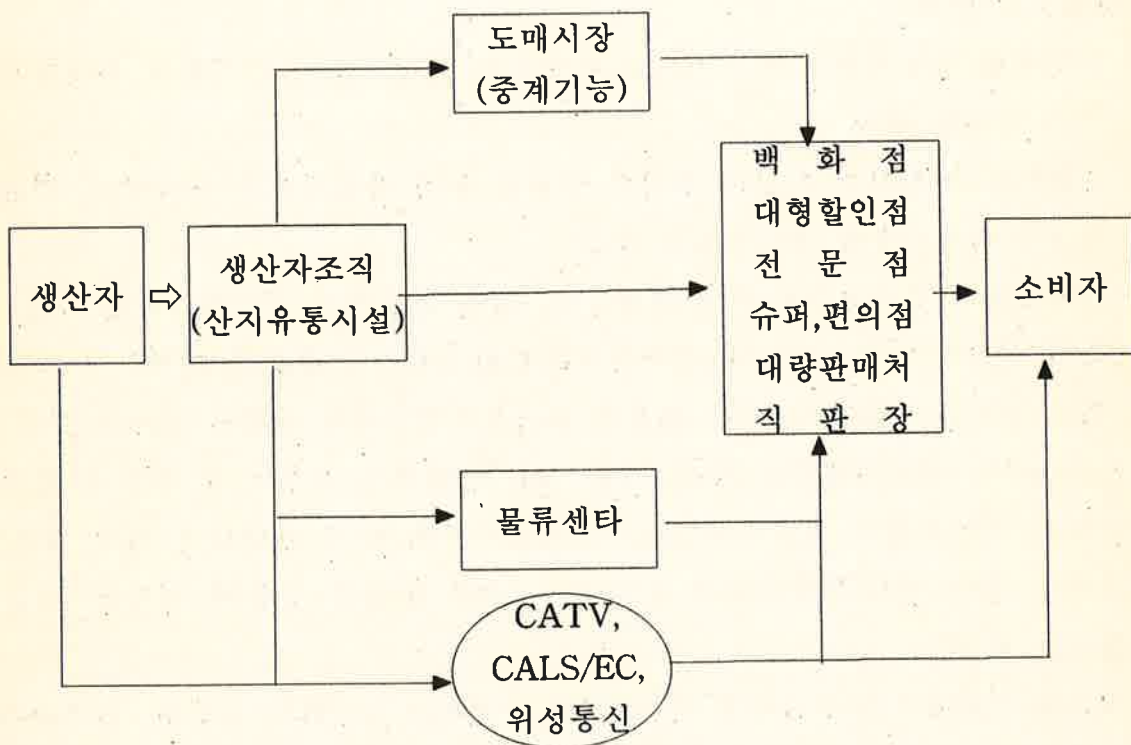
- 1980년이전 전국권 공영도매시장이 건설되기 이전



- 공영도매시장 설립이후



○ 향후에 전개될 유통경로의 전망



- 앞으로의 농산물 유통경로는 크게 도매시장과 물류센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차츰 거래규모가 큰 생산자조직이 활성화되면 직거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
-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대형유통업체들의 고품질 브랜드 확보 및 안정적인 상품공급라인 구축, 재고비용 등 각종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생산에서부터 판매에까지 전용라인(PSDN)의 구축 및 각종 통신라인의 활용에 따라 직거래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
- 또한 생산자는 인터넷등 손쉬운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직접 소비자와 접촉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전자상거래(CALS/EC)의 시대가 본격 개막될 것으로 전망됨
- 농산물 유통이 소비자 지향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소비정보가 중요해지고, 소비자와 생산자와의 쌍방향 정보통신에 의해 소비자(소매업체)가 원하는 주문생산이 시도될 것으로 예상
- 소매업체 중심의 소비유통이 가속화될 경우 가격결정역할이 도매시장에서 소매시장으로 넘어가고, 생산자는 소매업체의 요구사항에 따라 주문생산이 이루어질 것임
- 결국 농산물 유통시장이 크게 변함에 따라 유통기구간 수직적·수평적 통합이 이루어질 것이며, 거래방법도 전자상거래등 예약을 중심으로한 신용거래가 본격화될 것임

Ⅲ. 농산물 유통정책의 추진실태

1. 농산물 유통개혁 추진목표

- 품목별 생산자조직의 육성과 이를 중심으로한 산지유통활동을 강화하여 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증대
 - 간이집하장, 포장센터, 미곡종합처리장 등 산지유통시설 확대
 - 선별·포장규격화로 공동 출하 촉진
 - 품질인증, 유통정보 제공으로 생산자조직을 중심으로 생산·출하조절
- 소비지 공영도매시장 건설확대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
 - 34개 공영도매시장을 2001년까지 건설하여 전국권 대량유통망 형성
 - 수집상 등록제, 상장경매제 확대
- 유통경로의 다원화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여 유통비용 절감
 - 물류센터 건설, 직거래등 활성화
- 살아있는 유통정보의 제공
 - 실제 활용 가능한 다양한 정보의 수집·분산체계 확립
 - 유통정보 담당 전문기관 육성 및 인력 보강

2. 분야별 유통개혁대책

1) 산지유통개혁

- 품목별 전문조직 육성
 - 생산자조직이 생산·출하·가공·판매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자금 집중 지원
 - 품목별 전문조합 설립을 신고제로 전환, 영농조합법인의 지역제한 철폐

- 표준규격, 품질인증제, 원산지표시제 정착, 발매기 거래의 제도화
 - 고품질 생산유도 및 국산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위해 표준규격, 품질인증제, 원산지표시제 정착
 - 발매기의 제도화로 산지유통의 공정거래 실현
- 산지유통시설에 대한 투자의 획기적 확대
 - 농산물 포장센터(160개소)와 청과물종합처리장(24개소) 설치로 상품성 제고
 - 간이집하장을 확대 설치(3,232개소)하여 산지수집, 출하기능 강화
 - 산지가공공장을 육성(2,000개소)하여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
 - 주산지 경매식집하장을 공판장화하여 산지경매기능 활성화

2) 공영도매시장의 개혁

- 도매시장 관리·운영을 전담하는 「공공출자법인」 설립 허용등 지정도매법인의 서비스 기능 제고
 - 지정도매법인에 대한 평가제 강화로 공정거래활동 강화
 - 도매시장별 「차액보전공제금」 적립 제도화
- 상장수수료 인하와 전품목 상장거래 실시
 - 지정도매법인의 상장수수료 인화로 출하자 부담경감
 - 도매시장에 입하되는 전품목의 상장거래 추진
- 경매과정의 투명성 제고 및 출하자의 최저가격제 도입
 - 경매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경매사의 소속제 개선과 경락가격 및 낙찰자 즉시 공개
 - 출하자가 희망할 경우 최적가격 제시
- 중매인제도를 중도매인제도로 개선
 - 중개만을 하도록 되어 있는 중매인제도를 개선하여 물류흐름을 원활하게함
- 공영도매시장의 조기건설과 출하자 편의시설 확충
 - '98년까지 34개시장 건설

3) 소비지 유통경로의 다원화

- 물류센터 및 종합물류단지 건설
 - 2004년까지 물류센터 16개소 건설
 - 부지조성과 기간설비 등을 정부가 지원하는 대규모 종합물류단지 건설

- 생산자단체의 유통자회사 설립
- 직거래사업의 활성화로 유통단계 축소

4) 유통정보체계의 확립

- 전국권 유통정보망 구축(유통정보 구축등)
- 유통정보 담당 전문기관 육성 및 인력 보강

3. 투융자계획 및 실적

1) 투융자계획

- 농림수산 투융자계획중 유통부문의 투융자는 농어촌구조개선사업 42조원의 19.8%인 8조3천억원과 농특세 15조원의 9.7%인 1조5천억원을 합쳐 9조8천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전체 투융자금액인 57조원중 17.1%가 배분됨

<농수산물 유통부문의 투융자 계획>

(단위:억원)

| 사 업 별 | '94 | '95 | '96~'98 | '99~2004 | 합 계 |
|------------------------|-------|-------|---------|----------|--------|
| 1. 42조사업 | 4,864 | 7,002 | 23,619 | 47,639 | 83,124 |
| · 원예특작부문 생산유통지원사업 | 230 | 358 | 1,763 | 2,138 | 4,489 |
| · 농수산물 유통개선(도매시장, 공판장) | 1,382 | 2,070 | 6,036 | 1,229 | 10,717 |
| · 축산, 수산, 임산물 유통개선 | 920 | 1,314 | 3,455 | 3,061 | 8,750 |
| · 농산물 가공사업 | 1,081 | 1,509 | 4,958 | 22,865 | 30,413 |
| · 축산, 임산, 수산물 가공사업 | 769 | 1,277 | 5,939 | 15,760 | 23,745 |
| · 수출촉진지원(해외전시,국제박람회 등) | 482 | 474 | 1,468 | 2,586 | 5,010 |
| 2. 농특세사업 | 700 | 1,870 | 6,710 | 5,270 | 14,550 |
| · 농수산물 물류센터(16개소) | 200 | 824 | 5,077 | 4,116 | 10,217 |
| · 간이집하장(4,000개소) | 500 | 420 | 680 | - | 1,600 |
| · 농산물 포장센터(160개소) | - | 126 | 378 | 581 | 1,085 |
| · 기타사업 | - | 500 | 575 | 573 | 1,648 |
| 합 계 | 5,564 | 8,872 | 30,329 | 52,909 | 97,674 |

<자료 : 농림부, 농림사업 시행지침서, 1996. 12>

- 사업별 지원규모는 가공산업 육성, 도매시장 건설, 물류센터 건설, 채소·과수·화훼 유통지원, 간이집하장 건설, 농산물 포장센터 건설 등의 순서로 많음
- 농산물 유통부문 투융자는 주로 가공산업 육성과 산지 및 소비지 유통시설 확충에 대한 지원이 중심이 되고 있음
- 원예특작부문의 생산유통지원중 유통부분은 저장시설(저온저장고, 저온처리실, 예냉시설), 전처리 및 가공시설(종합처리장, 가공시설, 생약 조제시설, 차제다시설 등), 선별포장시설(선과장, 선별처리장, 절화선별결속기), 집하장, 수송차량(일반차량, 냉동차량) 등에 2004년까지 총사업액 5조5천2백7십8억원중 8.1%인 4천4백8십9억원임

<원예특작부문 생산유통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개소)

| 구 분 | 계 | '92~'95 | '96 | '97 | '98 | '99~2004 |
|--------------|--------------------|------------------|------------------|------------------|------------------|--------------------|
|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 | 1,778,148 (530) | 268,398* (80) | 167,750 (50) | 80,520 (40) | 154,330 (50) | 1,107,150 (310) |
| 과실 생산유통지원 | 1,404,231 (900) | 315,231 (150) | 189,000 (150) | 222,450 (150) | 225,000 (150) | 452,550 (300) |
| 양념채소 생산유통지원 | 555,560 (170) | 65,360* (20) | 32,680 (10) | 32,680 (10) | 32,680 (10) | 392,160 (120) |
| 고랭지채소 생산유통지원 | 127,630 (280) | 19,030* (40) | 10,550 (20) | 14,285 (29) | 10,550 (20) | 73,215 (171) |
| 화훼 생산유통지원 | 917,270 (235) | 106,250 (35) | 77,240 (20) | 57,930 (15) | 115,860 (30) | 559,990 (145) |
| 특용작물 생산유통지원 | 681,527 (1,339) | 90,127 (80) | 59,904 (138) | 66,437 (139) | 66,437 (139) | 398,622 (834) |

*표시의 시설채소, 양념채소, 고랭지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은 '94~'95년 지원 계획임

- 이러한 생산유통지원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은 1996년까지 보조 50%(국비 25, 지방비 25), 융자 30%, 자부담 20%이며, 융자조건은 연리 5%, 3년거치 5~17년 분할상환이었으나, 1997년부터는 보조 40%, 융자 40%, 자부담 20%로 보조비율을 낮추고 융자비율을 높임

<생산유통지원사업의 지원조건>

(단위 : %)

| 구 분 | 국비보조 | 지방비보조 | 용자 | 자부담 |
|--------------------------------|------------|------------|----|------------|
|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 | 20 | 20 | 40 | 20 |
| 과실 생산유통지원 | 20 | 20 | 40 | 20 |
| 양념채소 생산유통지원 | 20 | 20 | 40 | 20 |
| 고랭지채소 생산유통지원 (그중 암반관정 관수시설) | 20 (50) | 20 (30) | 40 | 20 (20) |
| 화훼 생산유통지원 | 20 | 20 | 40 | 20 |
| 특용작물 생산유통지원 (버섯, 생약, 차잡업) | 20 | 20 | 40 | 20 |

- 산지 및 소비자 유통시설 지원사업은 산지의 선별·포장 및 규격품 출하를 위한 시설 확충을 위한 간이집하장 4,000개소, 농산물 포장센터 160개소, 미곡종합처리장 400개소를 설치하고, 소비자 유통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공영도매시장 34개 건설, 농산물공판장 67개를 건설하고, 가공산업 2,000개소를 육성할 계획임

<산지 및 소비자 유통시설>

(단위 : 개소, 억원)

| 구 분 | 산지 유통 시설 | | | | | | 소비자 유통 시설 | | |
|----------|----------|-------|-----|-------|-------|--------|-----------|-----|--------|
| | 미곡 | 청과물 | 축산물 | 집하장 | 포장센터 | 가공산업 | 도매시장 | 공판장 | 물류센터 |
| '92 | 30 | - | - | 1,250 | - | - | 7 | 47 | - |
| '92~'94 | 122 | - | - | | - | 906* | 3(11) | | 1 |
| '95 | 50 | 3 | 3 | 810 | 21 | 147 | 6 | 4 | 3 |
| '96~'98 | 98 | 9 | | 1,940 | 63 | 424 | 7 | 16 | 8 |
| '99~2004 | 100 | 12 | - | - | 76 | 523 | - | - | 4 |
| 계 | 400 | 24 | 10 | 4,000 | 160 | 2,000 | 34 | 67 | 16 |
| 사업비 | 4,556 | 1,200 | 285 | 1,600 | 1,085 | 30,413 | 13,719 | 927 | 10,217 |

*표시는 '91~'94년임

- 산지유통가공시설에 지원되는 자금의 보조·용자·자부담 비율은 '97년부터 보조대신 용자비율이 높아지고, 자부담비율도 사업에 따라 부분적으로 높아짐. 소비지유통시설은 공판장을 제외하고 대부분 정부 보조로 건설되고 있음

<산지 및 소비지 유통시설에 대한 지원조건>

| 구 분 | 산지유통시설 지원조건 | | | | 소비지유통시설 지원조건 | | |
|-------|-------------|---------------|-------------|--------------|--------------|------------|--------------|
| | 간-이 집하장 | 농 산 물 포장센터 | RPC 설치운영 | 농수산물 가공산업 | 도매시장 건 설 | 공판장 건 설 | 농수산물 물류센터 |
| 국비보조 | 40 | 40 | 50 | 30(-) | 30(50) | 40 | 50 |
| 지방비보조 | 40 | 20 | - | -(-) | 70(50) | 20 | - |
| 용 자 | - | 20 | 30 | 50(70) | - | 20 | 50(60) |
| 자 부 담 | 20 | 20 | 20 | 20(30) | - | 20 | |

※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의 ()은 일반인 경우이고, 도매시장의 ()은 특별시, 광역시를 제외한 기타 일반시임. 또한 물류센터는 지자체, 생산자단체와 구별하여 ()은 민간유통업자에게 60%를 용자

2) 투융자 실적

- '94~'96년간 투자된 금액은 1조9,600억원으로 9조8,000억원중 20%가 투자되고 있음
- 산지유통체계 추진실적
 - 산지 유통시설 투융자사업 추진실적

| 구 분 | 지원년도 | 계획량 | 추진량 | 추진실적 |
|------------|------------|---------|---------|--------|
| · 간이집하장 | 1994~1997년 | 4,000개소 | 3,032개소 | 75.8% |
| · 농산물 포장센터 | 1995~2004년 | 160개소 | 49개소 | 30.6% |
| · 미곡종합처리장 | 1991~2004년 | 400개소 | 220개소 | 55.0% |
| · 축산물종합처리장 | 1994~2000년 | 10개소 | 10개소 | 100.0% |

- 품목별 특성에 따라 규격화·계열화·브랜드화 진전
 - 쌀 미곡종합처리장 유통량 : (93) 3.1% → (96) 19.7%
 - 축산물 브랜드화 현황 : 한우 49개, 돼지고기 46개, 닭고기 18개, 계란 68개
 - 과실류·채소류 포장화율 : 사과 85.8%, 배 98.6%, 감귤 99.0%, 오이 98.6%
- 가공산업 육성사업 추진실적 : (계획) 2,000개소, (실적) 1,231개소(61.6%)

○ 소비유통체계 추진실적

- 소비지 유통시설 투융자사업 추진실적

| 구 분 | 지원년도 | 계획량 | 추진량 | 추진실적 |
|---------|------------|------|------|-------|
| · 도매시장 | 1984~1998년 | 34개소 | 33개소 | 97.1% |
| · 공 판 장 | 1989~1998년 | 67개소 | 64개소 | 95.5% |
| · 물류센타 | 1995~2004년 | 16개소 | 8개소 | 50.0% |

- 공영도매시장 거래질서 개선 : 전품목 상장거래·산지수집상 등록제 실시

○ 국내 우수농산물 차별화제도 마련과 민간유통 활성화 여건 마련

- 품질인증제 확대 : (93) 63개 품목 → (96) 76개 품목
- 원산지품목 확대 : (93) 189개품목 → (96) 358개품목
- 쌀값 계절진폭 : (93) 12.1% → (96) 14.6%

○ 농업관측, 유통정보 추진실적

- 농업관측 실시 : 농업관측협의회를 구성하여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파에 관한 관측정보를 제공
- 살아있는 유통정보 구축 : 전국 14개 공영도매시장에 전산화를 실시하여 유통정보 통합네트워크에 의한 가격정보 제공

4. 투용자사업의 추진체제와 제도개선

1) 투용자사업의 운영체제

- 투용자사업의 운영체제를 사업관리와 자금관리로 이원화, 운영하면서 농업인의 자율적인 선택과 계획으로 사업지원을 신청하고, 지자체가 사업타당성 검토와 대상자를 선택하여 예산지원을 요구하는 상향식 농정체제로 전환
- 농정추진체제가 상향식으로 전환되면서 농어촌발전심의회가 중요한 기구로 부각
- 한편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사업을 종합조정하고 평가 및 사후관리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농정추진체제상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및 농어촌발전심의회 업무와 기능이 조정됨

<농정추진기관별 업무와 기능>

| 구 분 | 업 무 와 기 능 |
|------------|------------------------------------------------------------------------------------------------------------------------------------------------------------------------------------------------------------------------------------------------------------------------------------------------------------------------------------|
| 중앙정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위사업별로 사업설명서와 품목별 투용자 수립지침을 제시 ○ 개별 단위사업을 품목별로 통합작성 |
| 지방정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차별 투용자 신청한도 농어민에게 공고 |
| 시군농어촌발전위원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과위원회 : 계획수립, 지원조정, 농촌지도소, 농수축협 ○ 사업의 타당성 : 자격유무, 군종합계획과의 조화 등 제반사항검토 : 사업집행상황을 분기별로 검토(농어촌발전대책회의) ○ 농어촌발전계획과 연차별 투용자계획의 범위내에서 품목별, 사업별 신청액 조정 농어촌 발전계획으로 확정 ○ 세부사업 : 품목별(사업별) 분과위원회에서 조정 ○ 전체회의 : 농어민의 참여 허용 공개실시 ○ 공개적인 자체평가 실시 |
| 도 중앙농발심의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연도, 중복투자 조정 ○ 중앙단위 : 년2회 농어촌발전대책회의 개최 ○ 도 단 위 : 분기별로 개최 |

<자료 : 김용택, 농어촌 투용자사업의 실적과 향후 정책방향, 농정연구포럼, 1995. 2>

- 농림사업의 추진과정을 평가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 평가제도는 자율사업과 공공사업을 분리하여 실시하게 되어 있음
 - 자율사업은 소관사업국이 평가주체가 되는 사업추진실태 점검평가와 행정기관, 독농가, 전문가, 관련기관으로 구성되는 합동평가단에 의해 평가
 - 공공사업에 대해서는 농림부 장관 또는 청장, 시·도지사에게 의한 사업추진상황의 점검·평가와 사업완료 이후의 후속 평가를 시행

2) 「농안법」의 재개정

- '94년 11월에 재개정된 주요내용
 - 도매시장 관리·운영의 일원화를 위한 공공출자법인의 설립허용
 - 중매인의 도매행위허용
 - 상장수수료를 감소 (상장-5%, 중개-4%)
 - 상인의 자격요건 강화

※ 주요 개정내용

| 구 분 | 구농안법(93) | 개정농안법(94) |
|---------------|--------------------|----------------|
| 도매시장 관리·운영일원화 | 이원화 | 이원화, 공공출자법인 허용 |
| 유사도매시장 | - | 시·도지사 정비계획 수립 |
| 중매인 | 도매행위금지 | 도매행위허용 |
| 경매인 | 법인소속 | 법인소속 |
| 수수료체계 | 상장-6%(청과) 중개-4% | 상장-5% 중개-4% |
| 하역노조 | 별도 체제 | 별도 체제 |

IV. 농산물 유통정책의 평가

1. 목표 및 방향설정

- 구체적인 농산물 유통정책을 평가하기에 앞서 투융자사업의 성격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으로 그 투자효과가 단기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1단계 투융자사업에서 중단하기 보다는 앞으로 계속해서 투자함으로써 향후 나타날 투자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 유통구조의 전면적 개혁을 주장했던 문제의 현실진단과 실천과의 괴리
 - 지금까지 추진되어온 유통정책은 유통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보다는 산지·소비지의 유통시설 확충등 과거 지속되어온 유통구조개선에 중점 추진
 - 따라서 농산물 유통단계의 축소등 과감한 유통구조개선책을 마련하여, 우리 농업의 구조전환을 꾀한다는 정책목표에는 문제가 있음
- 산지유통과 소비지유통이 별개로 추진되어 산지에서부터 소비지까지 연결되는 유기체적 유통정책추진이 미흡
 - 양적인 시설확충에도 불구하고 생산자조직의 시설활용도가 낮고, 공동출하, 공동계산과 대량 규격상품 출하체제 미흡
 - 생산자조직과 소비지 유통업체간의 유기적인 정책추진 및 시설확충이 부족
- 소비지 유통시설의 투자 확대로 유통경로간 경쟁분위기는 확산되고 있으나 (공영도매시장과 공판장의 건설이 증가하고 있으며, 제도권 유통시장 비율이 '93년 33%에서 '95년 43%로 증가), 현재 소비지 유통시설이 도매시장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획기적인 유통개선을 마련하기에는 미약함
 - 최근 정보화를 통한 유통혁명등 환경변화가 급속히 이뤄지고 있는 상태에서 도매시장의 출하비율의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KREI가 발표한 「농수산물 유통개혁방안」은 2004년의 도매시장 출하비율을 '96년 43%에서 2001년 50%, 2004년 50%로 전망하고 있음)
 - 반면 현재 건설중인 물류센터 출하비율은 2001년에 15%에서 2004년에는 25%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므로써 유통단계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앞으로 정보통신에 의한 전자상거래등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대비책을 준비해야 할 것임
- 유통하부시설이 기업자금등 외부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입시키지 못함으로써 경쟁력이 한층 저하
- 가격정책의 후퇴
 - 농산물 가격진폭은 완화되고 있으나('91-'93년에는 연 7.6%였으나 '94-'96년에는 연 6.0%로 완화) 아직 가격안정화에는 미흡한 실정임
 - 가격안정화 자금이 변동이 없거나 가격안정사업이 민간기능으로 이관되어 실질적인 지원이 미흡
 - '94년의 경우 「농안기금」의 운영상황은 정부 투자증가분보다 농산물 수입에서 얻은 수익으로 확대되고 있음
- 한편 정부예산중 농림부예산의 비중이 획기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농어촌 투융자사업을 효율적으로 계획하고 집행하며, 평가하는 과정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대두
- 앞으로 전개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의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할 발전적인 정책제시 미흡
 - 향후 21세기 사회가 정보화사회로 진점됨으로써 기존 농산물 유통시설등 하드웨어적 투자보다는 기존시설에 소프트웨어적, 즉 자동화 요소와 정보 요소를 투자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일반산업분야의 경우 이미 정보통신기술의 접목에 의한 획기적인 물류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유통에는 그에 대한 세부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음
 - 또한 산지·소비지 유통시설이 건물위주의 건설에 치중되어 있어 향후 정보화의 활용이 본격화될 때 새로운 시설의 추가 또는 재시설이 필요
 -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을 위해 기반이 되는 농산물의 표준·규격화, 코드화를 위한 정책은 미흡함
- 유통정보 제공을 위한 정책추진의 의지 부족
 - 계획은 있으나 실질적인 지원계획은 없음('96의 경우 공영도매시장 전산화는 「유통발전협회기금」에서 약 3억원 지원하여 정부의 능동적인 정책수립 및 기반투자라고 보기 어려움)

- 현재 공영도매시장 관리사무소(가락동도매시장의 경우 가락동관리공사는 제외)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어 유통정보의 1차 수집·정리 및 제공을 위한 전문인력이 제대로 배치되지 못하고 있으며, 유통정보 제공을 위해 전문기관 육성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미흡
- 가공산업에 대한 여러차례의 실태점검 및 경영평가에도 불구하고 가공업체가 안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음
 - 생산위주의 지원으로 가공업체의 대부분이 판로상의 문제점을 안고 있음
 - 경쟁력있는 품목 및 자격업체 선정 등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음 <부실화업체 137개소(11%)>
 - 유사품의 근절등 가공업체 육성을 위한 제반정책의 보완이 필요함과 동시에 급변화하고 있는 여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정·보완이 필요

2. 유통시설의 사업규모 평가

1) 간이집하장

- 생산유통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집하장을 제외하고 현재까지 설치된 간이집하장은 4,437개소로, 전국 농촌지역 읍면당 3,129개소, 9개리당 1개소씩 설치되어 있음. 이것은 1개집하장이 338농가, 원예작물 생산면적 169ha, 경종작물 생산액 약 30억이 해당됨
- '94~'96년까지 건설된 3,032개의 간이집하장은 단기간에 많은 물량이 설치되어 단일품목으로 재배되는 지역은 이용률이 저조
 - '94~'96년에 지원되어 운영중인 간이집하장 1,954개를 조사한 결과 연간 개소당 평균 이용일수가 160일로 심한 계절성을 보이고 있음³⁾
- 따라서 간이집하장에 선별포장기능, 농산물 일시보관장, 농자재 보관기능, 생산 지원기능과 생산자의 회의장 활용 등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지 않는다면 투자효과의 부실이 우려

3) 농림부·농유통, '96 농산물 간이집하장 활용실적 분석 및 평가결과, 1997. 5

2) 농산물 포장센터

- 농산물 포장센터는 농경연의 연구결과 2004년까지 필요 포장센터는 적어도 101개 이상으로 추정됨에 따라 2004년까지 지원될 개소수인 160개는 적어도 계속 지원될 필요가 있고, 그 후에도 계속 지원될 필요가 있음
- 한편 건설되어 운영중인 농산물포장센터 대부분이 운영미숙과 원료확보 부족 등으로 적자폭이 커져 자금부담을 겪고 있음
- 그러나 향후 전자상거래등 선진적인 거래형태로 나아가기 위해 표준·규격화의 역할수행거점으로 포장센터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

3) 공영도매시장

- 농림부가 농산물 유통개혁 2단계 대책에서 밝힌 바와 같이 도매시장의 출하비율이 '96년에는 43%에서 2001년에는 50%로 늘어나고, 2004년에는 계속 50%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도매시장을 통한 출하비율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물류센터의 등장, 생산자조직과 대형유통업체간 직거래 등으로 농산물 유통경로가 다원화되어 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계획된 34개외에 신규건설보다는 건설된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에 초점을 맞춰 정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특히 앞으로 정보통신기술을 응용한 전자상거래등 도매시장을 통하지 않고 유통되는 시장의 유통물량이 급격히 증가되어 도매시장 취급물량이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98년까지의 계획량 34개 도매시장 건설외 신규건설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함
-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향후 발달된 정보통신 기술을 응용하여 도매시장 경매방법을 전자경매화하거나, 시장간 네트워크 연결 등 각종 전산화에 의해 도매시장 운영을 효율화해야 할 것임

4) 농산물 물류센터

- 물류센터는 현재 건설되고 있는 사업으로 정확한 평가가 불가능한 상태로 현재 건설중인 물류센터가 운영에 들어가는 내년 상반기 이후에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

- 다만 농산물 유통시장의 완전개방과 대형유통업체의 확산에 따라 산지유통 체계의 재정립이 절실하고, 물류비용 절감과 도매시장 기능의 보완이 필요함에 따라 물류센터 건설이 중요해 질 것으로 전망
- 그리고 미국등 선진국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물류센터는 계속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단기적인 계획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유통경로를 단축시키는 새로운 시설투자 계획으로 정착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5)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 '96년까지 지원된 가공업체 수는 1,231개 업체로서 주로 생산위주의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현재 지원업체중에는 제품판로문제에 부딪쳐 가동을 하지 않는 업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지원금 때문에 중단하지 못한채 가동되고 있는 곳도 많음
- 이처럼 현재 지원된 가공업체는 문제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향후 지원업체 선정시 보다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 선정하여 부실화를 방지하고(사업량은 부실하기 때문에 지원을 중단한다는 것은 농업을 1·2·3차 복합 서비스 응용산업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정책의 기본방향과 상이), 이미 지원된 업체는 운영자금을 지원과 판로확보를 위한 가공농산물 사이버마켓(Cyber market) 개설 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

3. 사업추진체계와 지원방식의 평가

1) 사업추진체계

- 대부분 투융자사업의 사업주관과 지도감독은 주로 농림부의 주관부서, 시도·시군의 담당부서에서 처리하여 막대한 자금투자에 따른 처리사업량이 너무 많고,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전문가가 부족하여 주관 및 지도 감독에 형식적
- 또한 투융자사업이 상향식 자율농정,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농정을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율농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업간 우선순위에 대한 결정이 중앙정부의 자금배정에 의해 원칙적으로 규제되고 있음. 즉 시·군에서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사업별 중요도와 사업량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사업별로 중앙정부와 시·도의 소관부서에서 사업량과 자금을 배정하고 있어 지역여건에 기초한 사업 우선순위와는 다를 수가 있음

- 유통시설사업의 경우 도매시장 건설과 물류센터 건설을 제외하고 간이집하장, 농산물포장센터, 가공공장 건설 등의 사업기간을 1년으로 적용함에 따라 부실건설 및 사업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사업자 선정의 경우 정치적 개입에 의한 지역안배의 사업배치 등의 소지가 있고, 시·군 농발심의위원회 위원의 주관적 의견반영등 객관적인 심의가 문제가 되고 있음
- 특히 전국적인 사업배치를 일선 주관부서에서 검토할 자료가 없어 사업의 중복투자의 소지가 있고, 각 사업에 관한 적정시설등 충분한 자료가 없어 객관적인 평가에는 문제가 있음
- 사업시행으로 볼 때 선정된 사업자가 생산자조직의 대표로 부적절한 사업 추진, 부실공사 및 이면계약 등 각종 부조리의 발생소지가 잔존

2) 지원방식

- 지원대상은 대부분이 생산자조직에 국한되어 추진되고 있으나 대규모 개별 농업인 또는 규모는 작지만 전문기술을 보유한 농업인에게까지 확대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
-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기본이 생산에서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복합 서비스 산업으로 육성하는데 있다면, 현재 지원되는 부문지원방식을 탈피하여 생산 지원은 물론 판로개척등 그 운영에도 지속 지원되어야 함
- 또한 산지 유통시설에서부터 소비지 유통시설까지 계열화될 수 있도록 사업별 지원이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제3섹타방식을 이용한 민자유치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함
- 투융자의 우선순위는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문제로 전체적인 농산물 유통방향을 설정한 후 그에 따른 우선순위 및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
- 지원금액의 보조, 융자비율은 현재 사업별로 획일적으로 결정되어 지원되고 있으나, 사업규모에 따라 비율을 달리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4. 농업인의 사업 인지도 평가

- 이 조사는 농협중앙회가 농어촌구조개선자금의 농가이용실태를 바탕으로 자금 공급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효율적 운영방안을 모색코자, 시설채소생산·유통지원자금에 대한 비닐은실농가 100명을 대상으로 '96년 7월~8월까지 설문 조사)한 것을 정리한 내용임

- 투융자사업에 대한 농업인의 인지도는 46.8%로 절반이상이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투융자사업에 대한 인지도>

| 구 분 | 응답자수(명) | 구성비(%) |
|-----------|---------|--------|
| 들어본 적이 있다 | 37 | 46.8 |
| 들어본 적이 없다 | 42 | 53.2 |
| 계 | 79 | 100.0 |

-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자금 신청시기에 대한 인식정도의 질문에 대하여 자금 신청시기를 정확히 알고 있는 농가는 17.7%에 불과해 대부분이 신청시기를 잘못 알고 있고, 더구나 투융자사업에 대하여 들어 본 적이 있는 37농가중 정확히 알고 있는 농가는 37.8%로 대부분이 신청시기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자금 신청시기에 대한 인지도>

| 구 분 | 응답자수(명) | 구성비(%) |
|-----------------|---------|--------|
| '98년 1월말까지 | 5 | 6.3 |
| '97년 12월말까지 | 9 | 11.4 |
| '97년 6월말까지 | 22 | 27.8 |
| '97년 1월말까지 | 14 | 17.7 |
| 늦어도 '96년 12월말까지 | 13 | 16.5 |
| 잘 모르겠다 | 16 | 20.3 |
| 계 | 79 | 100.0 |

4) 농어촌구조개선자금의 효율적 공급방안 연구, 농협중앙회, 1996

V. 농산물 유통정책의 발전방향

1. 21세기 유통정책 기본방향

- 지금까지 추진되어온 유통정책은 미래지향적이라기보다 과거의 흐름을 보다 효율화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음
- 향후 21세기는 산업적 생산양식(Production mode of industrial)이 정보적 생산양식(production mode of information)으로 변화되는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될 것임. 따라서 농산물 유통정책도 과거의 상관습을 따라가기 보다는 주도적으로 새로운 방향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농산물 유통정책의 기본방향을 유통구조의 개혁, 유통흐름의 효율화 및 유통인프라의 구축 등에 두고 기존의 시설활용의 극대화 및 신규시설 및 제도를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임

2. 유통구조개혁을 위한 전략

· 현재의 다단계·비효율적인 농산물 유통의 개혁은 기존에 존재해온 관행적인 문제해결에서 벗어나 21세기의 새로운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모색되어야 함

· 이를 위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을 아직도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우리 농산물유통에 과감히 접목시킴으로써 선진화를 추진

- 농산물 유통개혁차원에서 기존의 유통경로를 단순화·효율화할 수 있는 다양한 유통구조를 모색
 - 유통시설의 확충을 계속 추진하면서 시설의 현대화와 새로운 시설의 투자 및 정보화 시설을 추가, 농산물 유통의 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방안 모색(단기적)
 - 기존 유통경로를 다원화하고, 생산자→소비자, 대량판매처등과 직거래위주의 획기적인 정책방안 모색(장기적)
- 기존 유통경로의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각종 시설의 설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생산지와 소비지간에 물류망(EDI/EC)이 구축되어야 하며, 건설된 유통시설과 향후 설치될 시설에 정보통신기기 등 최첨단 시설이 설비되어야 함

- 이러한 농산물 물류망 구축을 위해서는 농산물의 표준화·규격화·코드화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
- 결국 농산물의 단순화·효율화된 유통구조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상관습과 제도에 얽매이지 않는 새로운 시각에서 그 활로를 생각해야 하고, 특히 현재의 사회가 급격히 정보화사회로 진전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농산물 유통에서도 정보통신을 활용, 선진농산물유통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함
- 이를 위해 기존 제도, 시설 등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함과 아울러 현재 국가 정보화사업은 국가지원과 더불어 민간참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있는 점을 감안, 선진농산물유통의 건설에도 제3섹터의 민자유치를 도입하고, 특히 정보통신시설에 민간 참여를 적극적으로 추진

3. 유통흐름의 효율화

- 농산물유통의 환경변화 및 소비자 욕구변화에 대한 대응력 제고를 통해 상거래 및 물류 등 유통흐름을 효율화
- 생산부문과 소비부문, 유통부문의 변화는 과거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가 요구됨에 따라 원활한 농산물 흐름을 위해서는 유통조성기능이 완비되어야 함
- 특히 정보교류가 촉진되어 시·공간을 초월한 농산물 유통흐름이 예상됨에 따라 이의 효율화를 극대시킴

- 전국권 농산물 물류망 구축과 더불어 체계적인 유통정보를 개발하여 이를 바탕으로 농산물의 시간적·공간적 흐름을 적정화하고, 체계화하여야 함
- 특히 농산물 유통에서의 권력구조가 소매업체 중심으로 바뀌고 있으며, 앞으로 소비자지향의 시장이 가속화될 경우를 대비, 생산자의 시장교섭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유통정보 구축
- 유통정보에는 관측정보, 가격정보, 재배면적 및 생산량통계, 기상정보, 수출입 통계, 소비정보 등이 포함

- 이와 같은 유통정보중 생산자 스스로가 생산 및 출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수급 및 가격안정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현재 정부가 조사하고 있는 '재배면적
및 생산량통계'의 사후적 정보를 생산자조직이 재배상황에 따라 조사자료를
직접 입력하고 이를 통계사무소가 검증하는 살아있는 정보로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
- 한편 유통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유통조성기능이 완비되어야 하는데
무엇보다도 표준·규격화, 상품코드화 등이 수행되어야 하며, 유통관련 법규가
새로운 환경에 맞게 준비되어야 함
- 또한 식품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수입농산물에 대한 검역강화, 외국농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 강화, 유기 또는 무공해 농산물에 대한
품질보증체계확립. 또한 농산물유통에 있어 견제세력으로서 소비자단체의
역할강화를 위한 행정지원이 확대되어야 함
- 그리고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선물거래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의 국가적 차원의 대비와 전문민간업체 육성이 시급

4. 유통인프라의 구축

- 기존에 계획된 유통시설을 계속 확충하여 계획된 사업량을 완비. 다만 각종
시설을 자동화하고 정보통신 시설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산지유통시설의 경우 공동출하가 가능한 조직을 적극 육성하여 생산자중심의
운영이 되도록 지원하고, 미곡종합처리장, 농산물 포장센터 등은 향후 산지
유통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존시설에 정보화시설을 추가하고, 파렛트·지게
차 등 하역기계화장비, 계약재배·매취자금, 포장재 등 운영자금을 집중 지원
- 활용도가 낮은 간이집하장은 신규건설을 중단하고, 시설을 보강하여 농산물
포장센터로 발전
- 산지가공공장은 기존시설을 확충하고, 경영개선에 주력. 특히 생산에는 문제가
없으나 대부분 가공공장이 판로에 애로점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대형유통업체와
합작투자 및 자본유입을 적극 도입하고, 농산물 가공품 사이버마켓(Cyber
market) 개설등 판로해결책 마련

- 소비지 유통시설의 경우 유통시장이 전면 개방되어 외국 대형유통업체의 국내 진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영도매시장등 그 운영이 시급히 개선, 보완되어야 함
 - 거래투명성의 보장과 효율화를 위해 전자경매제를 적극적으로 도입
 - 하역시설등 모든 시설에 대해 첨단화하여 경비를 줄여야 함
 - 도매법인, 중매인 등 유통인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경영관리소프트웨어 도입, 정보통신을 이용한 정산시스템 등 정보화사업에의 적극적인 투자
- 또한 요즘 급부상하고 있는 인터넷을 활용한 전자상거래(EC)의 도입은 유통 혁명을 일으키는 새로운 제도로 이의 도입과 제도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함. 특히 미국은 전자상거래를 또다른 무역거래의 수단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무역마찰에 대한 대비책이 준비되어야 함

5. 투융자계획의 개선방안

1) 투융자 우선순위 및 예산조정

- 투융자의 우선순위는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앞서 밝힌 투융자사업의 평가와 향후 유통발전의 방향을 감안할 때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되어야 함
 - 정부가 주도적으로 다단계·비효율적인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기존 구조의 틀속에서 새로운 시설을 추가하여 유통흐름을 원활히 하고, 장기적으로는 정보통신을 활용, 직거래위주의 유통단계의 축소가 가능한 유통구조로 개선, 생산자를 보호하고, 국가경제인여를 증대할 수 있는 정책에 우선하여 투융자사업을 재편
 - 이를 위해 지금까지의 유통시설 등 하드웨어 부문중심의 투자를 표준·규격화, 상품코드화와 정보화시설 등 소프트웨어중심의 투자에도 그 순위 및 규모를 적절히 배분
 - 도매시장건설등 소비지 유통시설투자를 산지 유통시설투자에 보다 중심을 두어 추진되어야 하며, 그 운영을 생산자조직이 할 수 있도록 운영자금 지원을 계속. 동시에 산지와 소비지의 계열화차원의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
 - 유통시설투자중 기존의 건물위주의 지원을 기계시설 확충과 운영자금에 중점 지원하고, 특히 정보화시설의 추가 및 신규건설에 적극 지원

- 이와 같은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한 유통개혁을 위해서는 전국적인 물류망 구축이 이뤄져야 하며, 유통관련 정보의 개발과 생산자조직 및 유통시설의 전산화에 대한 지원이 우선되어야 함
 - 물류망 구축과 유통관련정보의 개발, 제도마련은 국가차원에서 시행하고,
 - 표준규격화·코드화는 관련기관과 생산자가 공동 참여하여 추진
 - 생산자조직의 전산화와 유통시설 전산화는 민간부문을 적극 참여케 하여 유통조직간 계열화의 고리를 마련
- 투융자사업중 생산유통지원사업의 유통부문 지원이 개별 간이집하장, 농산물 포장센터와 중복되므로 통합조정이 필요하며, 4,000개소의 간이집하장은 기능을 보강하여 농산물 포장센터사업에 통합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사업별 사업규모량 및 사업시기 조정

- 농산물 포장센터는 사후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시설물에 대한 과잉투자를 지양하고, 중소규모로 건설되는 것이 바람직
-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은 사업규모로 적절하게 책정되어 있거나 배치가 되어 있으나, 향후 신유통체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앞당겨진 사업량을 일시에 추진하는 것보다는 추이를 보면서 시행될 수 있도록 조정
- 농산물 가공공장의 경우 137개소(11%)가 부실업체로 조사된바, 운영가능한 업체를 재조사하여 신규지원보다는 기존 가공공장의 운영자금지원에 중점
- 사업기간이 도매시장과 물류센터를 제외하고 간이집하장, 농산물포장센터, 가공공장 건설 등이 1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부실시공과 사업지연이 나타나지 않도록 규모나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사업기간을 적용

3) 사업추진체계 및 지원방식의 조정

- 사업주관 및 지도감독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전문분야별 배치와 양성 및 부서이동을 억제
- 투융자 사업간 우선순위에 대한 결정이 중앙정부의 자금배정에 의해 원칙적으로 규제되고 있는 점과 관련하여 투융자사업 운영의 효율성의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주어진 범위안에서 지역여건에 맞는 사업우선순위와 사업량을 결정케 하고, 지원방식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자 선정시 객관적인 평가표를 개발하여 적용하고, 정치적 개입 및 평가위원의 주관적인 견해를 배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
- 사업시행에서 부적절한 사업추진, 부실공사 및 이면계약 등 각종 부조리를 제거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관리 시행
- 현재의 투융자사업의 지원대상을 생산자조직과 대규모 개별농업인 또는 규모는 작지만 전문기술을 보유한 농업인에게까지 확대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
- 현재 가공산업 육성등 생산위주의 부문지원방식을 탈피하여 생산지원은 물론 판로개척등 그 운영까지 지원
- 산지 유통시설에서부터 소비지 유통시설까지 계열화가 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의 연계 및 그를 위한 상업자본 유입도 검토되어야 함. 또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지원규모를 형평성있게 지원함으로써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사업참여를 유도
- 지원금액의 보조, 융자비율은 현재 사업별로 획일적으로 결정되어 지원되고 있으나, 사업규모에 따라 비율을 달리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4) 투융자사업의 홍보강화와 생산자의 유통교육 강화

-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자금의 경우 많은 농가가 사업자체 및 자금신청시기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감안, 투융자사업에 대한 현재의 홍보방법을 다양화하여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그 방법에는 현재 활자매체를 이용하여 관련기관을 통해 농업인에게 소개하고 있으나, 이를 개선, 활자매체는 물론 전자정보매체를 활용(CD롬, 인터넷)하여 직접 생산자조직이나 농업인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 한편 생산자에게 농산물 유통교육을 실시하여 생산자가 생산 뿐만 아니라 유통에도 참여케 하는 정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추진이 필요
- 또한 향후 정보화가 농산물 유통의 효율성에 대해 지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속하고 정확한 유통정보를 수집·분산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육성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함

5) 투융자사업의 평가관리 강화

- 농산물 유통정책에 대한 평가제도를 개선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하는 매카니즘의 개발과 표준성과제도의 도입 필요
- 지역별 사업추진현황 및 진척률을 전국적으로 종합 평가할 수 있는 매카니즘을 개발하고, 지역간 동일 사업의 평가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필요
- 특히 동일사업을 전국적으로 비교평가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일선 담당자가 언제 어느때고 사업추진상황과 변동사업을 알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투융자사업의 운영체계를 온라인화
- 이를 위해 투융자사업평가 시스템의 구축 및 관련기관간 전국적인 네트워크 연결 필요

< 요약 >

- 본 보고서의 목적은 WTO의 출범과 지방자치시대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등 농정여건이 급변함에 따라 이와 같은 여건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농정의 기본 목표를 농업구조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두고, 농어촌을 회생시키기 위한 대책으로 「농어촌발전대책과 농정개혁추진방안(94. 6)」을 마련하여 과거의 획일적인 하향식 농정운영방식을 개선하여 농업인과 지방자치단체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상향식 자율농정체제를 기본바탕으로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 투융자사업에 관한 농산물 유통부문의 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
- '96년까지의 투융자사업은 20%가 투자되어 생산자조직과 산지유통시설을 확충하여 산지유통기반을 구축하고, 소비지 유통시설 투자 확대로 경쟁분위기를 확산시켰으며, 미약하나마 유통정보 체제 구축과 민간유통 활성화의 여건을 마련해 오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투자규모에도 불구하고 그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고, 최근 들어 유통환경변화 역시 급변하게 진행되고 있어 농산물 유통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추진되어온 유통정책 또한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음
- 이와 같이 지금까지의 투융자사업은 양적인 투자규모에도 불구하고 생산자조직의 유통시설 활용도가 미흡하고 가공업체의 운영부실화 등 단위사업마다 부분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통시장의 전면적인 개방과 정보통신기술의 진전 등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에 따라가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 따라서 단위사업이 안고 있는 부분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고 상향식 농정추진체제를 강화하여 사업우선 순위등 사업추진체제를 개선하며, 사업규모량 및 사업시기는 내실있게 실천될 수 있도록 조정. 또한 투융자사업 평가관리를 강화하고, 향후 추진되는 투융자사업을 전체 농업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가 강화되어야 함
- 또한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감안하여 근본적인 유통구조를 개혁할 수 있도록 농산물유통에 정보통신기술의 적극적인 도입과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정책개발과 투자 및 제도개선 등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함

농산물 유통개혁에 대한 제안

제안자 : 배 종 열
무안양념채소영농조합

새 국민정부가 들어서고 김대중대통령의 농업에 대한 애정과 농산물유통개혁에 대한 의지의 표현, 농산물 직거래에 대한 누차의 강조에 따라 국민 농관련단체가 총체적으로 농산물 유통개혁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인은 농민운동가로서 몇 년 동안 생산자단체의 육성과 농산물유통 개혁에 몸부림쳐 온 사람으로 새 정부의 농산물 유통개혁에 일조가 될까 하여 다음을 제안하는 바이다.

I. 농산물유통개혁의 방향

1. 생산자와 소비자를 중심축으로 개혁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농산물의 유통에도 고도의 전문성과 성실성, 근면성을 필요로 하는데 성실하고 근면한 전문 인력을 육성하지 않고 생산자와 소비자만 강조하다 보면 개혁방향이 배가 산을 향해 가듯 전도되는 수가 있다. 러시아가 혁명을 통해 노동자나라를 세웠으나 혁명 후 몇 년이 되지 않아 짜르 치하의 전문가가 소련의 중요 관직을 장악하고 말았던 것이다. 생산자와 소비자 중심의 농산물유통이 되려면 생산자와 소비자가 겸허히 농산물유통인들에게서 배워야하고 정부는 이러한 유통교육을 지원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역대 정부가 농산물유통을 상업자본에만 일방적으로 지원했으나 이제 정부가 생산자조합 및 소비자조합 중심으로 방향전환의 의지를 가졌다면 기치를 올리고 캠페인을 벌려서가 아니고 전문인력을 교육 훈련시키고 시장 원리에 맞게 현실시장에서 상인들과 경쟁하며 배우고 승리해야 한다고 믿는다. 정부의 과보호로는 자랄 수 없다. 철저한 경쟁과 훈련이 필요하다.

2. 농산물의 직거래사업은 적극 추진하되 보다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고 본다. 그것은 우리 선조들의 5일시장의 경험과 외국의 사례들에서 배워야 할 것이다.

3. 현재 청과물의 85~90%를 유통시키고 있는 법정공영도매시장과 유사도매시장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산물유통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음에 틀림 없다. 앞으로 많은 농산물물류센터, 직거래센터와 외국농산물유통센터 등의 대거 개장으로 그 거래 점유율이 줄어들겠지만 어쨌든 현재까지는 농산물유통의 대부분을 거래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량을 거래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농안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해야 한다.**

4. 현재까지의 농산물유통이 소비자유통을 중심으로 산자유통이 종속되어 왔는데 우리나라 산지의 특성상이나 생산자, 소비자, 유통인의 처우의 형평성에서도 소비자유통과 산자유통의 형평성 확립을 위해 주요 농산물의 주산단지에 **산지도매시장의 설립과 활성화**를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

II. 농산물유통개혁의 중점과제

1. 직거래 활성화

새정부가 농.수.축협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 직거래 운동은 김대통령께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한 농산물유통의 대개혁의 실천방안이라고 사료되나 현재 직거래 점유율은 5~7%에 불과하므로 한계가 있고 의욕적으로 실천할 때 많은 성과를 거두겠지만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된다.

【문제점】

1) 농산물의 특성에 따라 직거래가 용이한 풋고추, 오이, 피망, 토마토, 방울토마토, 딸기, 부추처럼 수확기간이 장기간인 것은 생산자단체에 의해 수집도 가능하고 직거래가 쉽지만, 무, 배추, 감자, 마늘, 양파, 수박, 사과, 배등은 수확, 집하, 저장, 수송 등에 전문성이 필요하고 물류의 단위량을 확보해야 하는 등 직거래가 물류비용을 더 줄일 수도 더 많이 파생할 수도 있다.

2) 새 국민정부에서 방향을 제시하고 협동조합들이 전향적으로 직거래 사업에 착수하며 물류센터에 많은 투자를 하고 광역시의 구단위마다 직매

장을 마련하는데 농산물유통의 전문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외국유통체인을 극복하기 어렵고 농산물의 신선도 확보에도 문제가 따를 수 있다.

3) 농림부 실무팀에서는 몰류센타와 직거래의 거래량을 2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모리스 톱의 소련 경제사에 보면 소련의 공무원들이 계획 달성을 위해 계수만 조작한 예가 많았는데 몇 년을 지나고 나니 바닥이 났다고 기록되어 있다. 각급 조합에 지나친 계획을 세우면 도매시장에서 기록상장이 되듯이 수집상의 물건이 생산자단체 것으로 탈바꿈하는 것은 과거에도 있었는데 더 늘어나지 않겠는가?

4) 신선채소의 경우 당일 판매하지 못한 농산물의 잔량에 대한 상품성 하락 및 상품성 상실에 대한 보전문제가 발생한다고 본다, (현재 벌써 발생하고 있는데 광주매일신문 '98.3.16경제면에 농산물직거래사업에 뛰어들 농협직원들 채소재고처리 "머리 아파요")

【외국의 직거래 사례】

1) 미국은 도시마다 생산농민과 소비자가 만나는 직거래 자유시장을 시청에서 마련해주고 있다. 예로서 미국 뉴욕 맨하탄에는 주 4일간씩 Farmers Market이 개장된다. 이 장터에는 대단위 유통체인에 참여하기에는 물량이 부족한 소농들이 참여하는데 값은 싸지는 않지만 청과류가 신선하고 안전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선호한다고 한다. (KBS영상사업단이 제작한 '선진농업이 뛰고 있다' 8, 선진유통 이것이 다르다.)

2) 프랑스의 Rungis도매시장은 파리의 도심에서 남쪽 13km지점에 있는 도매시장인데 도매상 884명 생산자판매상 843명으로 자유시장이다. 이 자료를 고찰하면 이시장에는 우리나라와 같이 특권을 누리는 도매법인도 없을 뿐 아니라, 우리 나라 중도매인보다 더 자율적인 생산자판매상이 상인도매상의 수와 거의 비슷하게 판매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3) 독일 Central Farmers Market

본, 쾰른, 라인,루르지역 1,500여만명에 달하는 소비자들의 청과물 소비량 중 85%정도를 공급하는 독일의 중심적 도매시장으로서 농민단체가 시장

구조법에 의해 설립, 운영하며 채소류 700명, 과일류 300명이 참여 조직한 농민조직인데 독일의 생산자조직은 우리나라와 같은 농협 뿐 아니라 시장 구조법에 의해 7명 이상의 농민이 참여하여 법에 의한 동종 또는 유사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일정량의 유통량이 있을 때 지원한다. (이상 2사례는 경제기획원 한국농산물도매시장 사례분석 94.6)

이상을 참고 하건데 우리나라의 농산물 직거래가 활성화 되려면

(1) 법정도매시장마다 농민이 자유롭게 참가하는 장터를 마련해 주어야 하며 도시 공터에도 이러한 자유시장을 개설해야 한다. 현재도 가락동 도매시장 내에는 '낮장'이 활성화되고 있다. 주로 근교 농민의 출하품이 거래되는 '낮장'은 도매시장의 거래가 밤에만 이루어지고 있는 틈새를 이용하여 서는 시장이다. 이 '낮장'을 합법화시키고 활성화시키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다. (농수산유통 1998. 2. p35)

또한 뉴욕 맨하탄 농민자유시장과 같은 시장을 인구 20만 이상의 도시마다 시청이나 구청이 개설해 주도록 하는 일이다.

(2) 법정도매시장마다 전국의 주산지에서 우수한 출하실적을 가지고 있는 농.수.축협이나 영농조합법인, 작목반들이 미국이나 유럽처럼 도매상(우리나라 중매인) 제도로 허용하는 일이다. 반문하기를 양재동물류센터가 있지 않느냐고 말할지 모르나 양재동물류센터는 회원농협만의 농산물을 받아 주고 비회원농협이나 영농조합법인, 작목반들은 납품할 기회가 없을 뿐 아니라 가락동도매시장이 1일 70억원 정도 거래하는데 반해 양재동물류센터는 1억원을 거래한다. (한겨레신문 98. 3. 9 7면) 많은 회원농협도 납품이 어려운데 여타 생산자단체의 참여는 더더욱 어렵기 때문이다.

(3) 생산자와 생산자단체를 보호하고 정부의 막대한 투자를 통해 이룩한 포장센터의 규격포장화된 농산물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매시장내에서의 재포장을 금지하고 산지 포장센터에서 규격출하된 농산물이 도매시장내에서 자유 거래되도록 특별 점포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그동안 포장센터에서 포장된 농산물을 시장 출하하면 중매인들이 가격을 하한가로 입찰할 뿐 아니라 포장센터에서 출하한 농산물을 해체시켜 버리

는 사례가 발생 했었다. 그것은 중매인들이 도매시장에서 재포장시에 무게를 조작하는 상행위 때문이었다. 이것은 영국 노동자들의 기계과괴운동과 유사하다. 정부는 포장센타를 개설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포장된 농산물의 도매시장 내에서 우대가 실현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포장된 농산물은 물류센타나 백화점등에 납품하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그 일은 가격은 더 받을 수 있을지 모르나 납품 경쟁에서 오는 간접비용과 부조리는 경험하지 않고는 이해하지 못한다. 대량 물량에 의한 물류비용의 절감은 도매시장 개혁에서 온다고 감이 강조 드린다.

(4) 주문에 의한 농산물 직거래방안

별첨서류와 같음

2. 농산물의 유통개혁은 산지도매시장의 육성이 시급하다.

시장경제의 우수국으로 유럽인들이 자랑하는 나라! 농업의 모범국! 네델란드는 농산물도매시장이 도시에 설비되어 있지 않고 생산현장에 생산자 등에 의해서 설립하여 생산자단체가 경영한다.

네델란드의 알스메어(Aalsmeer)등 5대 화훼도매시장은 2만 생산농민에 의해 설립하여 생산자에 의해 운영되며, 웨스트랜드(WESTLAND) 채소공판장은 3천생산농민에 의해 설립하여 농민에 의해 경영된다. (KBS영상사업단체작 선진유통 이것이 다르다. 협동조합연구 95. 9. 10월호 p71 이태근 해피 농업 견학기)

우리나라에서도 별표(농수산물유통공사 '97.12 발간한 “주요농산물 유통실태”)에 의하면 수박, 참외, 배, 단감의 경우 산지공판장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농수산물유통” '98. 2월호 P35 이신우씨 기고에 의하면 우리나라 주산지 40여 곳에서 산지공판이 이루어 진다고 한다. 본인이 답사한 바로는 경남 창령군 남지농협의 공판장이 활성화되어 있고, 나주 원협의 공판장도 잘 운영되는 편이다. 또한 전북 고창군 대산면의 수박 계절공판장이 운영된다. 이렇게 볼 때 우리 나라도 정부의 의지만 뚜렷하다면 네델란드 못지 않게 산지도매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고 이 길만이 농산물유통의 올바른 길이 될 것이다.

산지도매시장 설립의 중요한 필요성

첫째,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 대만이나 유럽과도 다르게 대부분 중요농산물의 가격이 산지에서 일차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이다. 수집상에 의해서 평균 70%이상이 포전거래되는 것이며 양파, 마늘, 사과, 배, 단감, 고구마, 월동배추등은 산지에서 매매되어 저장창고에 저장된다. 이러한 농산물의 생산자, 수집상, 생산자단체의 실무자, 저장업자등 화주가 참가할 수 없는 조건인 원거리인 대도시의 도매시장에서 매수할 상인과 공익법인도 아닌 영리법인(상업자본)인 도매법인에 속한 경매사에 의해 상장경매 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미 생산자에게 가격을 치루고 매수한 농산물을 도매법인이 경매사에 의해 상장경매하게 되어 과정에서 오는 위험 부담은 고스란히 생산자에 돌아가기 때문에 생산자를 보호하고 유통의 선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산지 공판이 이루어져야하고 여기에 참여하는 중매인은 대도시 중매인들과 산지 수집상 중에서 능력있는 사람들을 골라 외국의 판운상과 같은 제도를 도입하여 이들이 산지도매시장에서 매수해서 도시의 도매시장에서 자유롭게 팔도록 해야 한다. 산지에서 일차경매된 농수축산물은 이중경매를 지향하고 중매인은 그 농산물을 자유로이 판매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도매시장의 상장경매가 불합리한 경우는 배추, 무, 양배추, 수박등 물류비용이 많이 드는 농산물이 대도시 도매시장에 상장경매하는 경우 가격이 폭락할 때는 운송비마저 나올 수 없을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만일 산지에 도매시장이 있다면 그 생산자는 가격이 폭락하여 물류비용도 없다면 아예 수확작업을 포기하여 작업비용과 운송비용등 많은 비용이 절감되어 생산자의 적자가 줄어들 뿐 아니라 도시의 쓰레기처리의 어려움이나 교통소통에도 일조하게 될 것이다.

산지도매시장 개설의 중요한 조건

○ 산지 도매시장은 농안법을 개정하여 공판장이라 명명한 것을 산지 “도매시장” 이라고하고 도시가 아니라도 예를 들어 감귤 주산지인 제주, 양파·마늘의 최대주산지인 전남무안과 경남 창령, 배추의 주산지 강원 평창, 정선, 전남해남, 무의 주산지 전북의 고창, 전남의 나주, 영암등지에 도매시장을 개설토록 해야한다.

○ 산지 공판장은 현행법에는 회원농협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비회원 조합과 영농조합법인이나 우수저장업체(일정부분만),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산지 도매시장을 활성화하려면 산지 도매시장의 경매사에 의해 포전 거래의 경매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산지 도매시장을 활성화하려면 산지에서 포전 경매가 되던 도매시장에서 경매가 되던 소비지 도매시장에서의 이중경매가 되지 않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

○ 법정도매시장의 도매법인에 주어지는 농안기금을 산지도매법인에도 배정되어야 한다.

3. 공영도매시장의 개혁과 활성화

새 국민정부가 농산물유통개혁에 전력하고 있고, 농·수·축협에 의한 직거래의 활성화, 농산물 물류센타의 16개처로 확대등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많은 변화가 오리라고 믿지만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직거래는 현재 5-7%선에 그치고 있고, 양재동 물류센타가 현재 1일 1억을 거래한다니 가락동 도매시장 1/70에 해당한다.

농림부 계획대로 직거래와 물류센타 유통을 25%까지 신장시키겠다고 했는데 그 성과가 100% 달성되더라도 75%의 농산물은 법정도매시장과 유사 도매시장등에서 거래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공영도매시장(소비지, 산지공히)의 활성화는 농산물유통개혁의 중요한 과제라 생각되어 농안법을 별첨과 같이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농안법개정의 핵심요지

제안 : 농산물유통연구소

배 중 열

▷ 산지유통개혁

1) 산지공판장(산지도매시장이라고 명명한다) 개설요건의 완화 및 지원확대
- 회원농협이외에도 생산자단체(품목별 생산자조직, 영농조합법인등) 자치단체, 냉장업체(일정부분만)등이 산지공판장을 개설하고 산지공판장의 경매거래에 소비지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대형소비자가 참여하여 상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농안기금의 지원이 최우선되어야 한다.

2) 포전 경매 활성화

- 산지에서의 경매는 수집상의 산지장악을 억제하고 생산자가 경매과정을 직접확인하기가 용이함으로 경매 부조리 발생의 소지가 축소되며, 포장센터등과 연계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농어촌 구조조정 사업의 부실화를 예방할 수 있다.

3) 연중 지속적인 출하가 가능한 규모화 된 생산자조직의 공영도매시장 내에 중도매인 입주 허용

- 농수산물 유통구조의 개선이란 결국은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농수산물을 공급함에 있어서 유통의 단계와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의 모색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규모화된 생산자단체중 도매시장의 출하실적을 점검하여 년 중 자기생산물의 지속적인 출하가 가능한 조직에게는 일정한 요건을 구비할 시 공영도매시장에 중도매인으로 입주를 허용하고 이들 조직이 최소한의 비용을 부담하고 자기 생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판매(상장경매 적용제외)할 수 있도록 한다.

예) 해남참다래유통, 무안양념채소영농조합 등

4) 출하손실보전제의 실질적 시행 및 시행주체를 중앙 및 지방정부로 전환

▷ 도매시장 유통

5) 2중경매제의 폐지

- 산지에서 경매되었거나 서울 가락동 농산물도매시장에서 경매된 농수산물에는 증빙제도를 도입 이중경매를 막아야 한다. 이로서 2~4차의 경매에서 오는 비용을 절감하고 경매 때마다 하역작업에서 오는 농수산물의 신선도의 훼손을 방지시켜 농가수취가격의 제고와 소비자에게 신선하고 저가의 농수산물을 공급을 꾀한다.

6) 기록상장제, 형식경매의 근절

- 기록상장, 형식경매는 상품의 집하 능력이 부족한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의 단합에 의해 발생하는 불합리한 유통관행으로 유통구조 왜곡의 주범이라 할 것임. 이러한 문제점은 농안법에 정한 상장거래 예외품목으로 고시되면 해결되는 것이나 농안법에 정한 유통정책의 근간인 상장경매거래가 위협받음을 이유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기록상장, 형식경매가 노정되고 있는 품목의 경우 일정기한을 정하여 중도매인과 도매시장법인간 수탁 및 집하의 주체에 대하여 검증작업을 하고 집하능력이 우수한 주체로 하여금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수탁의 주체가 되도록 조치(가락시장 대아청과의 경우와 동일)함으로서 기록상장, 형식경매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여야 함.

7) 유사도매시장의 제도권으로의 수용을 통한 조항 신설

- 유사 도매시장이 농산물유통의 60%를 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안법에 불법화 하므로서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 시장을 개설해가고 있는데 그 시장이나 점포의 취급물량의 50%이상이 농수산물인 경우 농안법에 의해 수용되도록 조항을 신설해야한다.

8) 거래방법으로 경매와 수의매매로 병행함과 동시에 「경매사의 공영제」 실시

- 거래제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정부일각에서 상장경매를 고집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1단계로 수도권과 경기지방에는 서울가락농산물도매시장, 중부권에는 대전중앙도매시장, 영남권에는 대구와 부산의 공영도매시장, 호남권에는 광주각하동 도매시장에만 상장경매제도를 엄격히 시행하고 인천을 포함 전 중소도시의 도매시장들은 지자체의 자유의사에 맡기도록 한다. 그러나 서울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등 중점도매시장에서도 산지경매된 농수산물은 중도매인에 의해 자유롭게 거래되도록 허용해야 한다.

9) 중도매인의 법인화 촉진

10) 중도매인의 점포의 불법임대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항의 마련

11) 전문 전산회사의 설립

12) 전국 도매시장에 대한 총괄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도매시장 관리위원회」의 신설

13) 공영도매시장의 일부 공간을 직접생산자가 참여하는 직거래장터로 이용하는 조항 신설

▷ 소매시장 유통

14)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 관장되고 있는 소매유통 부분 중 농수산물 취급매출이 50%이상인 것은 농안법에서 관장토록 조정

15) 농안법에서 관장하는 소매유통기구에 대한 지원 확대

▷ 기타

16) 유기농산물 유통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항 신설

17) 수입 농수산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조항 신설

18) 지금까지 도매시장법인과 유통공사를 통한 개별상인과 저온시설업자와 수집상에게 지원되는 농안기금의 지원폐지.

- 이제 IMF 구조금융시대에 농업부문예산이 축소되는 상황인데 균형을 잃는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농안기금의 지원 및 산지농수산물 유통의 왜곡화를 주도해온 저온창고 업자나 수집상에게 농안기금의 지원을 농업발전의 저해요인이며 본말이 전도되므로 폐지되어야하고 이러한 예산은 농가수취가격의 향상을 위한 가격안정기금, 생산자단체에 매취자금, 포장센터 및 산지가공시설의 운영자금등에 활용되어야 한다.

< 부록 4 >

농산물유통시설 현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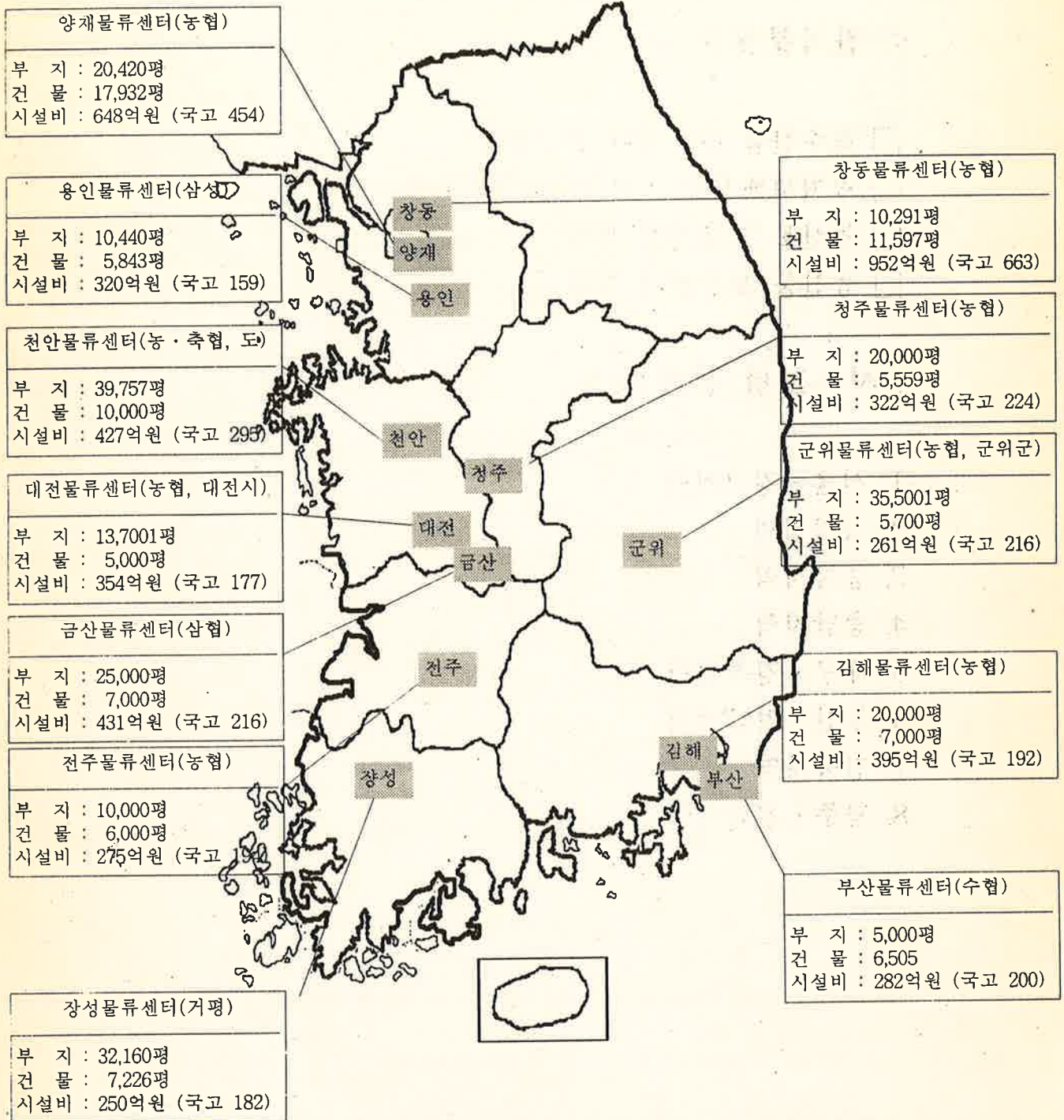
< 전국분포도 >

- 농수산물 물류센터 건설현황
- 공영도매시장 거래량('97 청과부류)
- 농산물 유통시설 현황
- 농산물 포장센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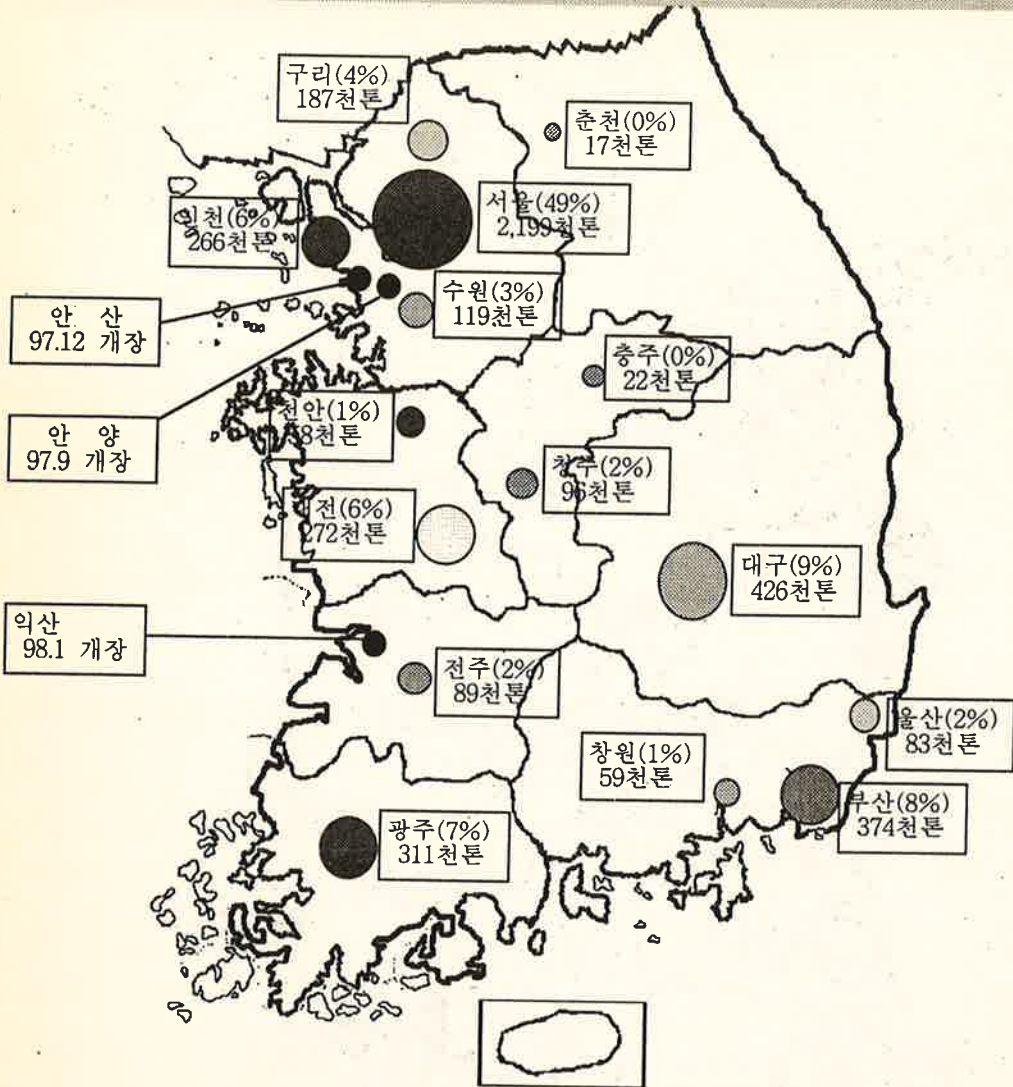
< 시·도별 분포도 >

1. 서울·경기지역
2. 강원지역
3. 충북지역
4. 충남지역
5. 대구·경북지역
6. 부산·경남지역
7. 전북지역
8. 광주·전남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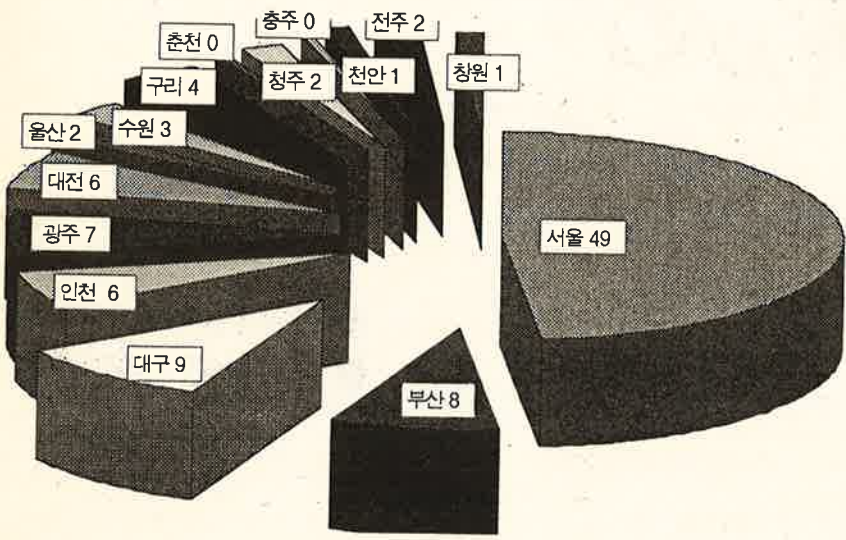
農水産物 物流센터 建設現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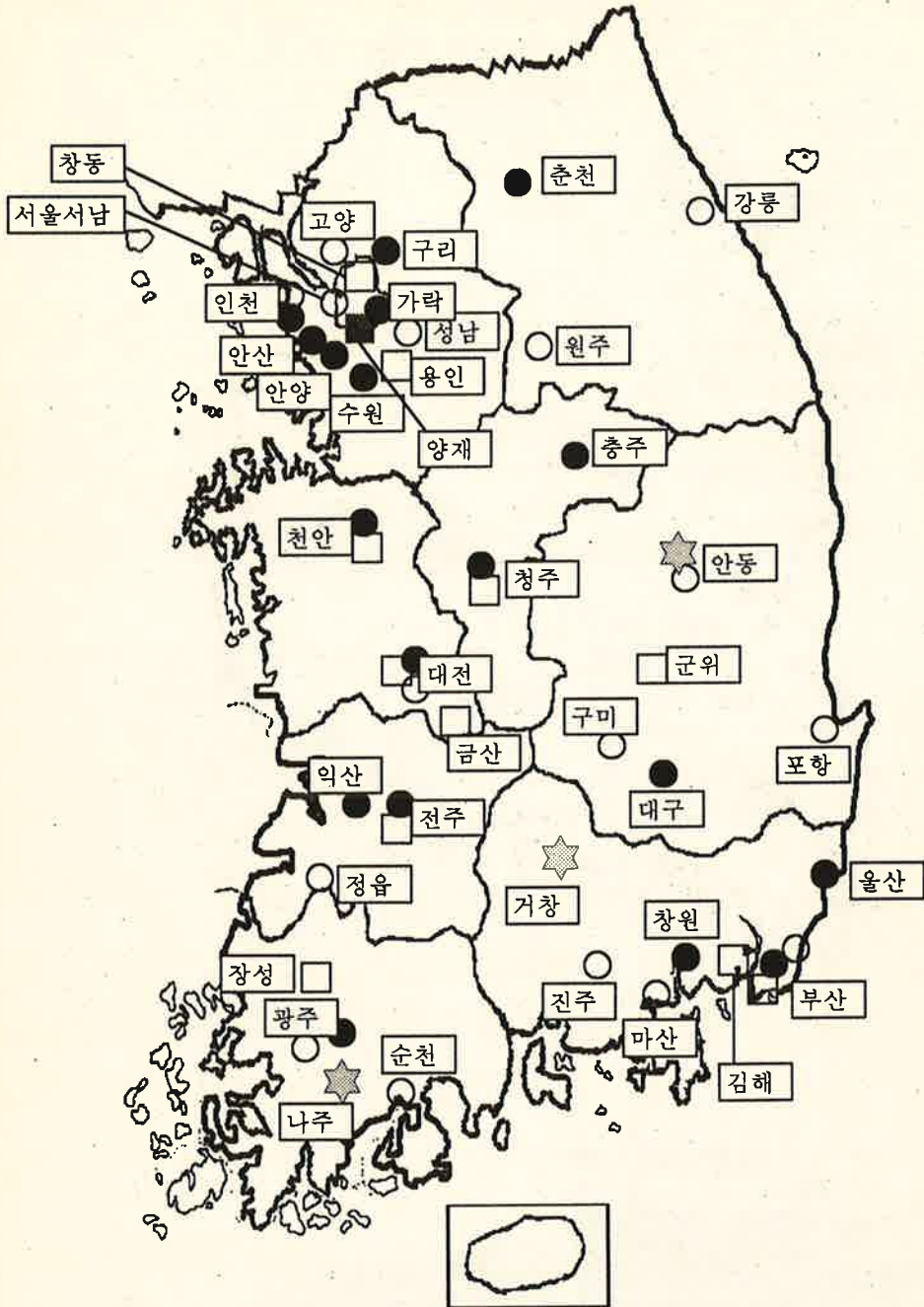
公營都賣市場 去來量('97 靑果部類)



안산 개장 97.12
 안양 개장 97.9
 익산 개장 9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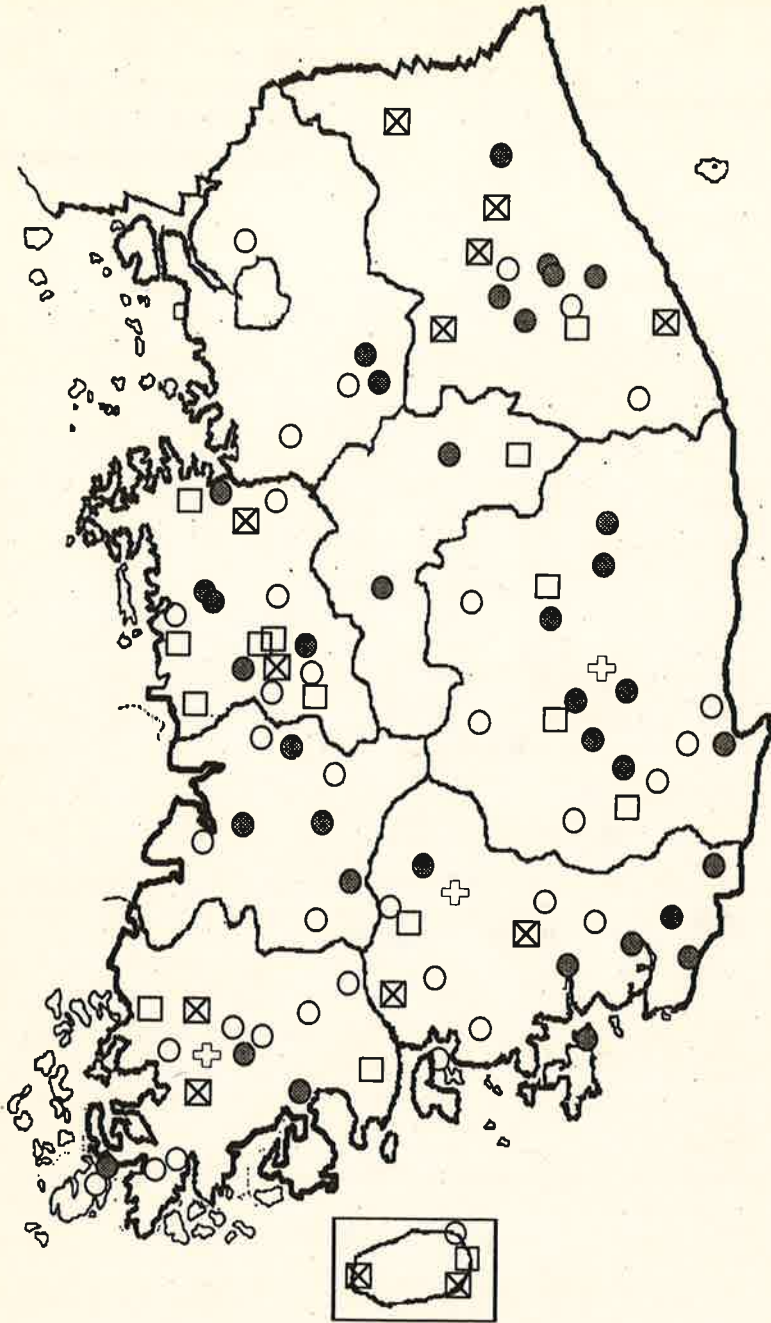


農産物 流通施設 現況



- 범례 -
- 공영도매시장 (○ 미개장)
 - 물류센터 (□ 미개장)
 - ★ 청과물종합처리장

農産物 包裝센터 建設 現況



- 범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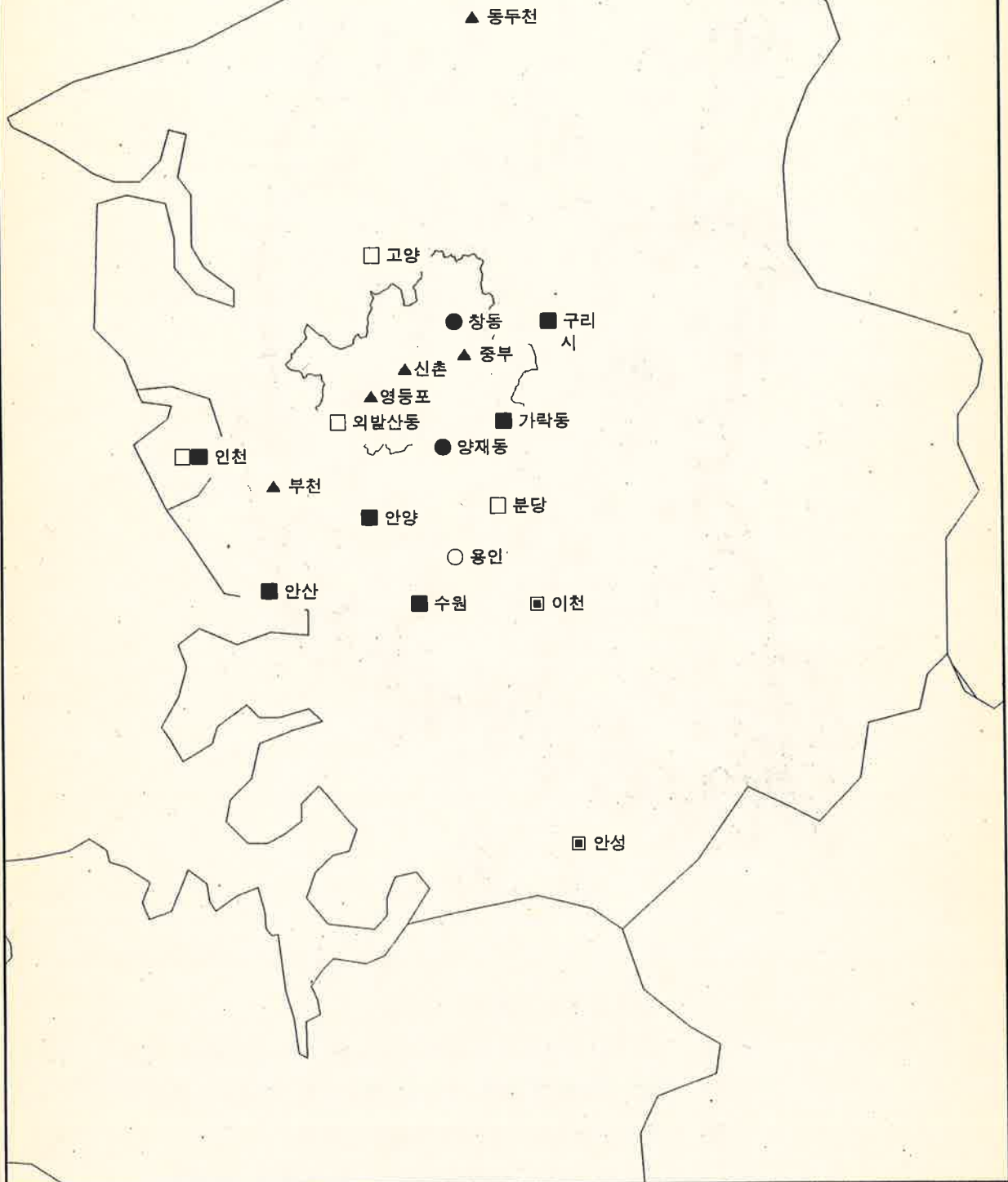
- ⊕ : 청과물종합처리장 : 3개소
- : '93, '94(청과물종합유통시설), '95, '96 포장센터 사업자 : 37개소
- : '95, '96 포장센터 사업자(영농조합, 임협) : 36개소
- ⊠ : '97 포장센터 사업자(농협) : 14개소
- : '97 포장센터 사업자(영농조합, 임협) : 16개소

1. 서울·경기지역

▶ 인구비중 : 40.19%
▶ 농산물 생산비중 : 8.82%

- 범례 -

- 도매시장 개장, 운영 (6개소)
- 도매시장 건설중 (4개소)
- ▲ 공판장 개장, 운영 (5개소)
- 물류센터 개장, 운영 (2개소)
- 물류센터 건설중 (1개소)
- ▣ 농산물 포장센터 (2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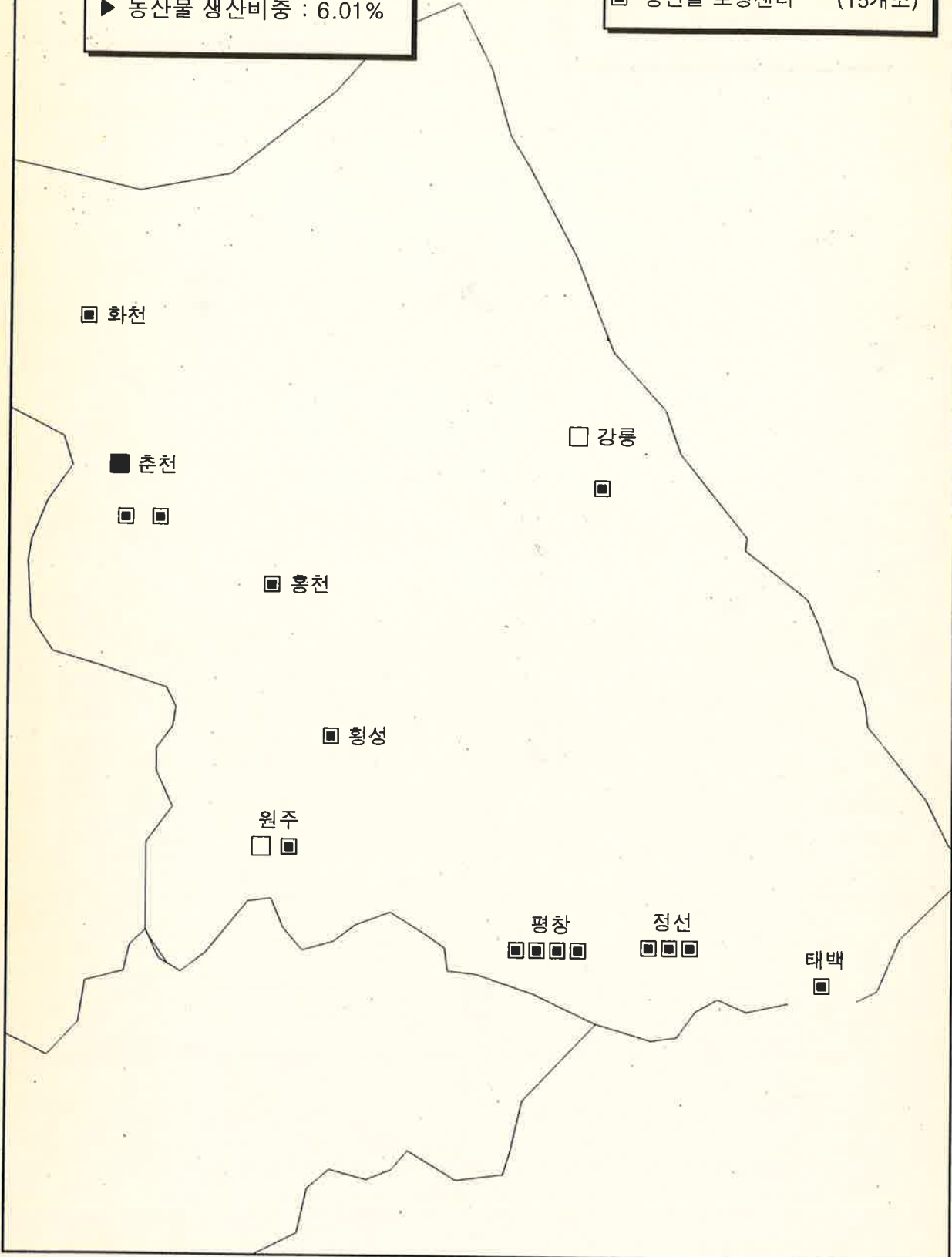


2. 강원지역

▶ 인구비중 : 3.30%
▶ 농산물 생산비중 : 6.01%

- 범례 -

- 도매시장 개장, 운영 (1개소)
- 도매시장 건설중 (2개소)
- ▣ 농산물 포장센터 (15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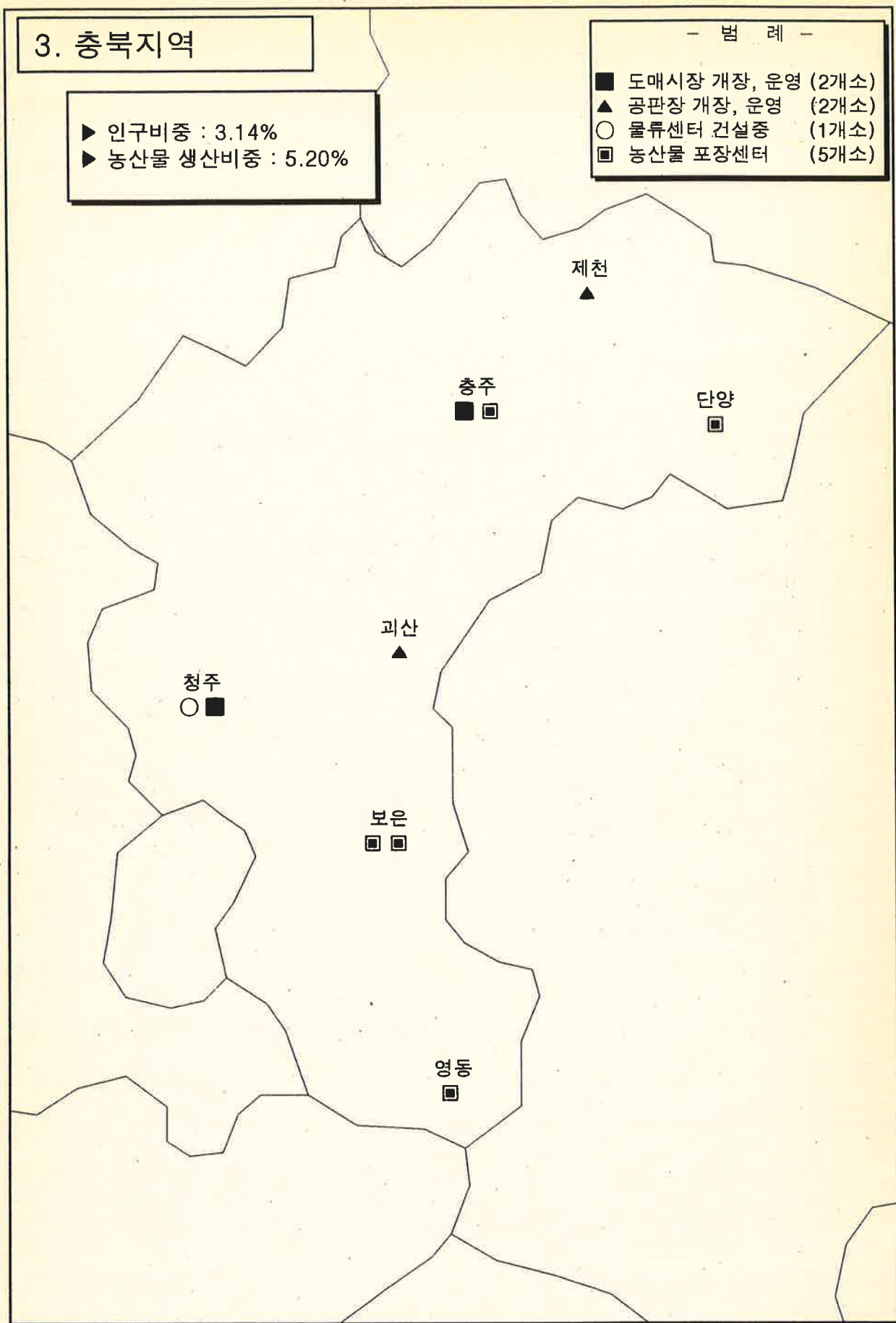


3. 충북지역

▶ 인구비중 : 3.14%
▶ 농산물 생산비중 : 5.20%

- 범례 -

- 도매시장 개장, 운영 (2개소)
- ▲ 공판장 개장, 운영 (2개소)
- 물류센터 건설중 (1개소)
- ▣ 농산물 포장센터 (5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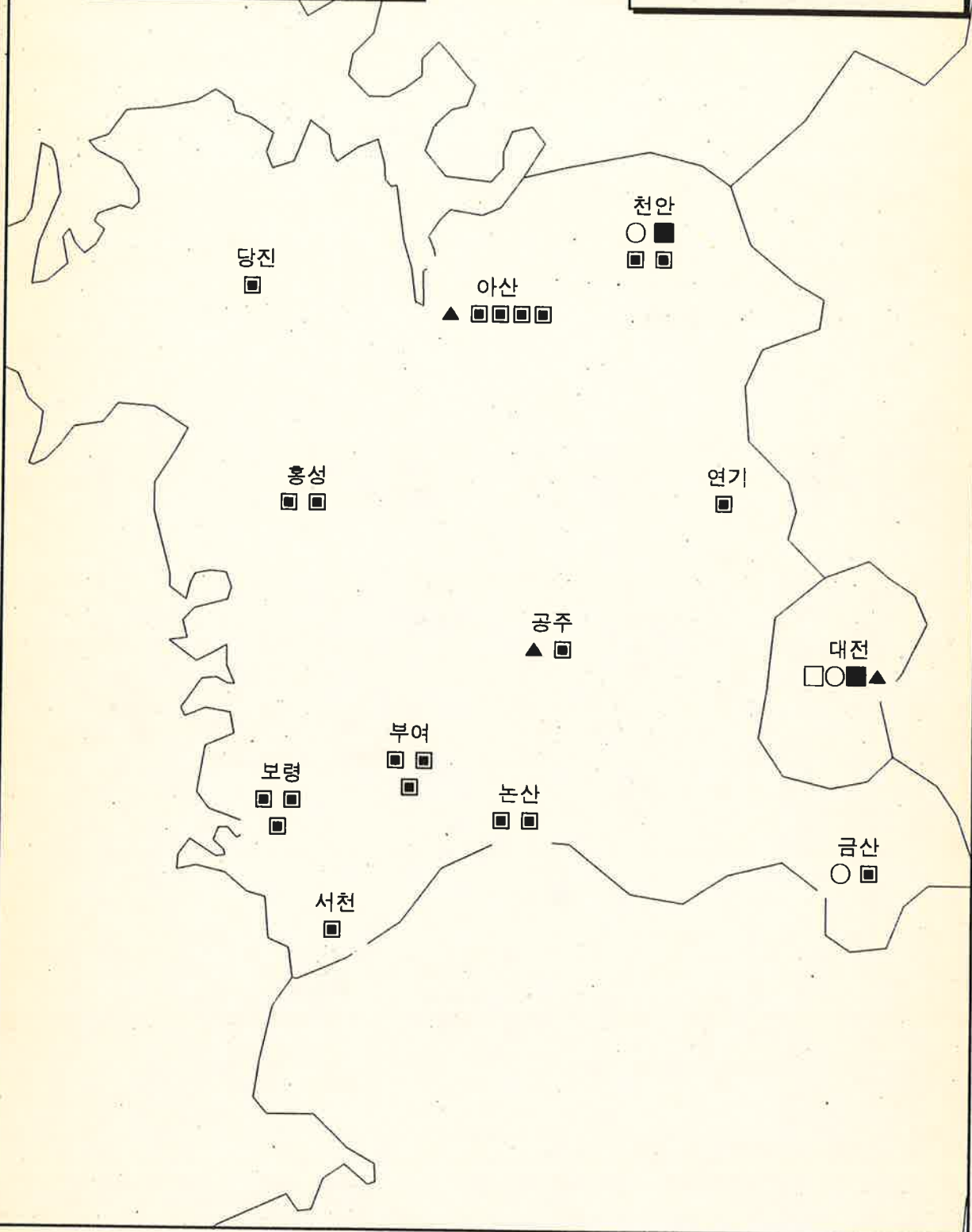


4. 충남지역

▶ 인구비중 : 4.04%
▶ 농산물 생산비중 : 10.78%

- 범례 -

- 도매시장 개장, 운영 (2개소)
- 도매시장 건설중 (1개소)
- ▲ 공판장 개장, 운영 (3개소)
- 물류센터 건설중 (3개소)
- ▣ 농산물 포장센터 (21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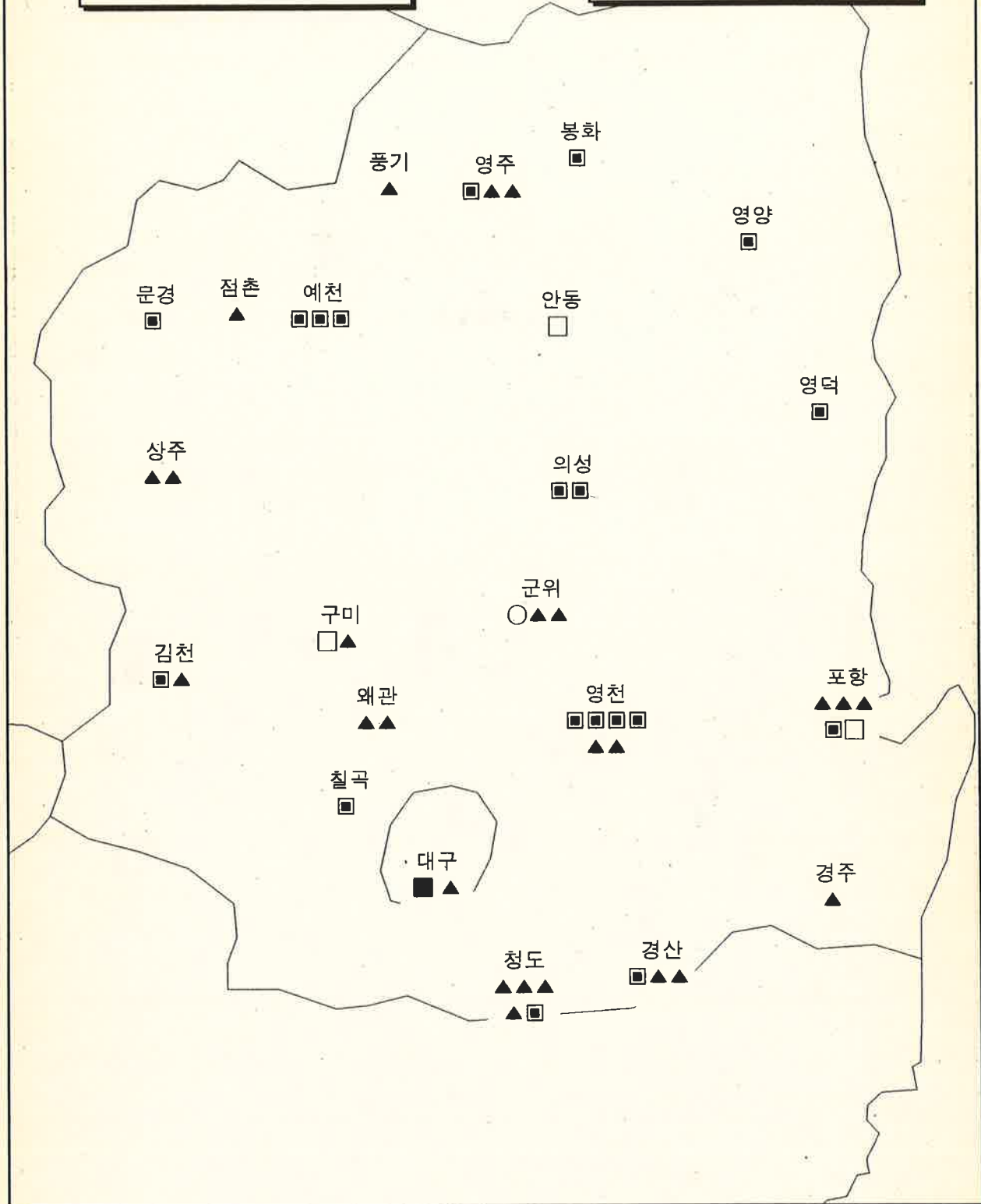


5. 대구·경북지역

▶ 인구비중 : 11.39%
▶ 농산물 생산비중 : 17.04%

- 범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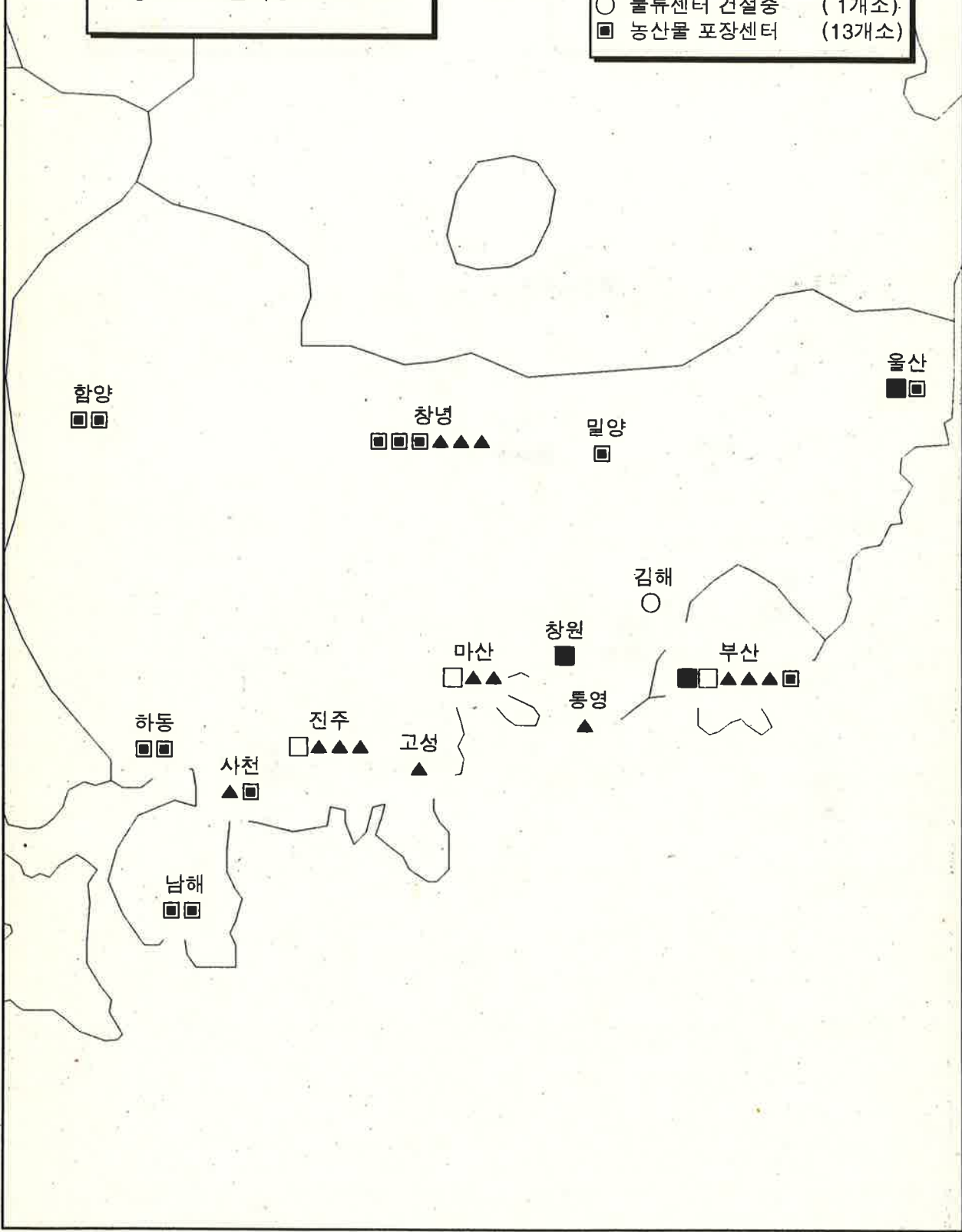
- 도매시장 개장, 운영 (1개소)
- 도매시장 건설중 (3개소)
- ▲ 공판장 개장, 운영 (25개소)
- 물류센터 건설중 (1개소)
- ▣ 농산물 포장센터 (19개소)



6. 부산·경남지역

▶ 인구비중 : 17.01%
▶ 농산물 생산비중 : 13.72%

- 범례 -
- 도매시장 개장, 운영 (3개소)
 - 도매시장 건설중 (3개소)
 - ▲ 공판장 개장, 운영 (14개소)
 - 물류센터 건설중 (1개소)
 - ▣ 농산물 포장센터 (13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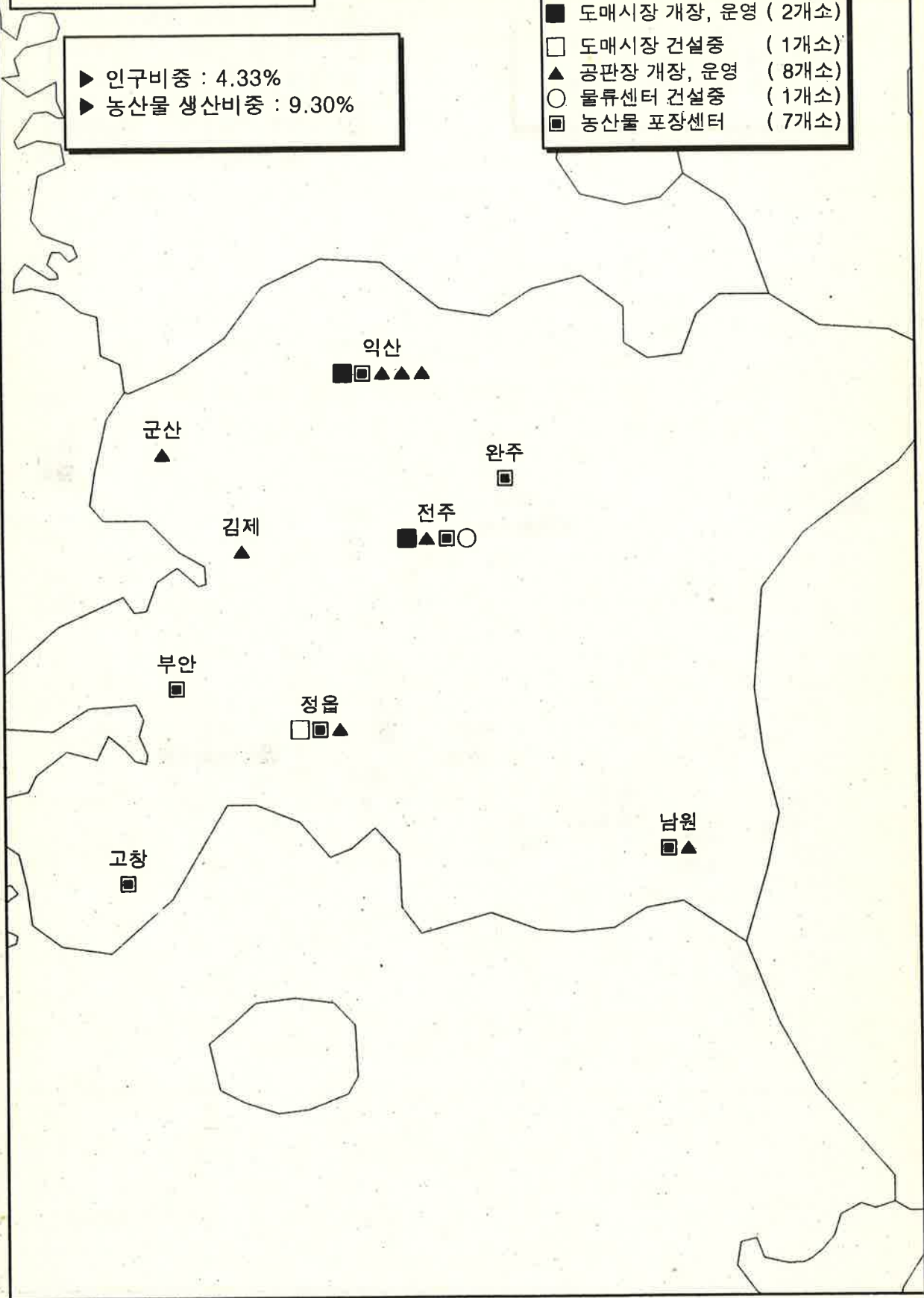


7. 전북지역

▶ 인구비중 : 4.33%
▶ 농산물 생산비중 : 9.30%

- 범례 -

- 도매시장 개장, 운영 (2개소)
- 도매시장 건설중 (1개소)
- ▲ 공판장 개장, 운영 (8개소)
- 물류센터 건설중 (1개소)
- ▣ 농산물 포장센터 (7개소)



8. 광주·전남지역

▶ 인구비중 : 4.69%
▶ 농산물 생산비중 : 18.23%

- 범례 -

- 도매시장 개장, 운영 (1개소)
- 도매시장 건설중 (2개소)
- ▲ 공판장 개장, 운영 (9개소)
- 물류센터 건설중 (1개소)
- ▣ 농산물 포장센터 (20개소)

